

韓國書院學報

제
17
호

韓國書院學會
2023.12



목차

■ 기획논문 1 : 호계서원과 조선후기 영남공론(嶺南公論)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 노력 이 욱 ◦ 7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와 호계서원의 대응 김지은 ◦ 37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강윤정 ◦ 69

■ 기획논문 2 :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구조와 무형유산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관련 문헌 자료의 전승 양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 이광우 ◦ 97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와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이해준 ◦ 13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 9개 서원 홀기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한재훈 ◦ 165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김무진 ◦ 207

■ 일반논문

조선후기 금산 성곡서원의 창건과 운영 이경동 ◦ 271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의 장서(藏書) 운영 윤혜민 ◦ 303

조선후기 華陽書院의 건립과 『華陽誌』 편찬의 의미	임근실 ◦ 333
海原君 李健의 流配를 통해 본 조선후기 宗親의 존재 양상	노춘수 ◦ 363
청대 駐防 旗人서원과 교육	김수경 ◦ 405
<i>Studia</i> and Monastic Itinerancy. The Case of S. Giusto in Volterra after the Black Plague	Andrea Barsacchi ◦ 443

■ 휘보

- 연혁·활동 보고 | 467
- 회칙 | 469
- 편집 규정 | 476
- 논문투고 규정 | 480
- 원고작성 규정 | 486
- 연구윤리 규정 | 490
- 임원 및 편집위원 | 493

■ 기획논문 1 : 호계서원과 조선후기 영남공론(嶺南公論)

- ▣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
- ▣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와 호계서원의 대응
- ▣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 노력

이 옥*

- I. 머리말
- II. 이현일 신원 운동
- III. 김상헌 서원 건립 시비
- IV. 무신창의록과 사도세자신원만인소
- V. 맺음말

【국문초록】

18세기 호계서원은 이현일 제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안동의 공론을 장악하고 주도하기에는 정치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이현일이 명 의죄인에서 신원되지 않은 점과 이현일 문인 중 일부가 무신란 동조자로 지목된 점 때문에 정치적 운신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영조는 이현일이 죄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실이 김성탁의 이현일 변무소를 계기로 분명해졌다. 이후 노론은 남인을 공격할 때 반드시 무신란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비난과 함께 명의죄인 이현일의 문인들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게다가 남인에 적대적인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안동지역의 노론과 합세하여 안동에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상헌 서원 건립 시도가 그것 이었다. 안동향교는 호계서원과 관련 깊은 사족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당연히 그 시도를 적극적으로 좌절시켰다. 노론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호계서원 원장을 안 동 부사가 맡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동 지역 공론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호 계서원이 중심이 된 안동의 사족들은 무신 여열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 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명의죄인과 연결시키는 노론의 공격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호계서원 인사들은 그 해결책을 사도세자 신원에서 찾

* 국립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 Lwwsh@scnu.ac.kr

었다.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이 있는 노론 역시 역적의 혐의가 있다는 논리였다. 정조의 즉위로 이 작전은 주효하였다. 1776년 9월 정조는 소론이나 노론 모두 총신과 함께 역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공식화하였다. 나아가 1782년에는 영남 남인과 무신란이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무신 여얼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호계서원 인사들은 무신 여얼의 혐의를 벗게 되자 정치적 진출과 안동 지역 공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자만인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주제어 : 공론, 김상헌서원 건립, 안동, 이현일, 호계서원

I. 머리말

호계서원은 도산서원, 이산서원과 함께 이황을 주향으로 모시는 대표적인 서원이고, 안동의 중심적인 서원이었다. 호계서원은 류성룡과 김성일만 배향함으로써 서애계와 학봉계가 공존하면서 안동지역 퇴계학파의 구심점으로서 공론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호계서원은 학봉계, 그 중에서도 갈암 이현일의 문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들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갑술환국의 여파로 이현일은 노론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고, 그 후손과 문인들의 정치적 진출이 좌절되었다. 게다가 1728년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무신란이 일어났고, 갈암의 문인들이 그에 호응하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적 시련은 갈암 문인이 주축을 이룬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를 제약하였다. 집권당인 노론은 갈암 문인을 비롯한 영남 남인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그치지 않았고, 이를 틈 타 노론을 표방하며 안동의 향권을 장악하려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권 회복은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현일을 신원하고 그 문인들이 무신란에 동

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는 노론 세력의 안동 향권에 대한 도전을 여하히 막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글은 김성탁의 이현일 신원소와 김상헌 서원 건립 시비를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호계서원이 퇴계학과와 안동지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호계서원에 김성일과 류성룡만을 배향한 것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였고,¹⁾ 호계서원의 건립에서 휘철 과정을 분석하면서 퇴계학과와의 분화와 성격을 밝히기도 하였다.²⁾ 호계서원 역대 원장들의 명단을 통해 호계서원의 주도 세력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18세기 이후에는 이현일과 이재 문인들이 호계서원의 주류가 되었음을 밝혔다.³⁾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강학 활동을 통해 호계서원의 위상과 학풍도 그 면모가 드러났다.⁴⁾

한편 18세기 정국 동향과 안동 사족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있다.⁵⁾ 이를 통해 이현일 신원운동과 김상헌 서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그 윤곽이 밝혀졌다. 아울러 이현일 신원운동⁶⁾과 김상헌 서원 건립 시비를 고찰하여 그 안에 내포한 정치 세력간의 갈등이나 사회세력의 등장을 밝힌 연구도 있다.⁷⁾

-
- 1)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朝鮮時代の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 2) 설석규, 「퇴계학과와의 분화와 병호시비(II)」, 『退溪學과 韓國文化』 45, 2009.
 - 3) 김영나, 「17~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2.
 - 4)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2021 ;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 5)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7 ; 이재현, 「영조 초기 안동 지역 남인의 정치적 동향」, 『대구사학』 144, 2021.
 - 6) 정만조, 「숙종후반~영조초의 정국과 밀암 이재의 정치론」, 『밀암 이재 연구』, 영남대출판부, 2001 ;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신원운동과 추승사업」, 『대구사학』 117, 2014.
 - 7) 정만조, 「英祖 14년 安東 金尙憲書院 建立是非」, 『韓國學研究』 1, 1982(『朝鮮時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주도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는 거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호계서원 인사들이 불리한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안동지역의 공론을 주도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이현일 신원 운동

1. 명의죄인과 무신란 여얼이라는 혐의

당쟁 과정에서 패퇴한 이현일은 노론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가혹한 보복과 탄압을 받았다. 이현일은 정인홍, 윤희와 함께 가장 극악한 역적으로 지목받았고 한말까지 철저히 탄압당했다. 노론이 규정한 이현일의 죄목은 ① 인현왕후를 謀害하는 상소를 올린 것 ② 숙빈 최씨가 왕자를 낳자 민암과 이의징의 사주를 받고 왕의 의사를 살피기 위한 진언을 했다는 것 ③ 정경세의 비문을 찬술하면서 그 내외자손록에 인현왕후의 기술을 의도적으로 빼서 무시했다는 것 ④ 서인의 영수 김수항과 민정중을 처벌하라고 주청한 것 등이었다.⁸⁾

후술하겠지만 ①번은 노론, ②번은 영조의 분노를 받았으며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현일 문인들의 신원은 ①번에 집중되었지만, ②번의 혐의 때문에 영조로부터 신원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탄압을 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한편 무신란 당시 이인좌 등의 역모에 이현일의 문인인 권구, 권덕수, 김

代書院研究』, 집문당, 1997 재수록) ; 김형수, 「1738년(영조 14년)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17, 2010 ; 정진영,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8) 이수환, 「영해 인산서원의 설립과 휘철」, 『대구사학』 63, 2001, 88쪽.

민행, 류몽서 등이 동조했다는 혐의는 국왕과 소론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호계서원 인사들의 정치적 진출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⁹⁾ 그것은 우선 류관현, 김성탁을 비롯한 이현일 문인들이 의병을 주도하였기 때문이었다.¹⁰⁾ 의병장의 면면을 보더라도 이현일 문인이 주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영조 역시 안동 사족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박사수가 권구에 대해 다시 국문할 것을 청하는 것에 대해, 영조도 권구를 선불리 석방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만 다시 그들을 국문할 경우 소요가 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감해주고 민심을 위무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¹¹⁾

그래서 노론의 반발을 무릅쓰고, 1728년(영조 4) 4월 경상감사 박문수에게 권덕수 등과 안동 사족들을 직접 불러 자신의 뜻이 담긴 유서를 읽어주게 하였다.¹²⁾ 이 유서에서 영조는, 권덕수 등이 이용죄를 꾸짖었다고 한 정의련의 공초가 이인좌의 그것보다 사실에 가깝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안동 사람들이 順逆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 증거라고 하였다. 아울러 처음에 이인좌 등의 꺾임에 빠졌을 수도 있으나 바로 잘못을 깨닫고 따르지 않은 것은 안동이 지닌 충효의 전통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권덕수 등의 죄를 탕척해주시니 안심할 것이며, 더욱 충의의 기풍에 힘쓰라고 하였다. 아울러 안동의 사족들에게도 좋은 풍속을 가지고 있음을 가상히 여긴다고 하였다.¹³⁾

이처럼 영조는 일말의 의구심은 품고 있었지만 안동 민심의 이반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염려하여 이현일 문인의 무신란 동조설은 불문에 붙였다. 그만큼 호계서원은 무신란 주모자와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운신의 폭이 있었다.

9) 이하 무신란과 안동 사족의 관계에 대한 서술은, 이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에 의거하였다.

10) 안동 의병의 지휘부 구성은 『戊申倡義錄』 권乾, 「安東義兵軍門座目」에 상세하다.

11) 『承政院日記』 660책, 영조 4년 4월 24일.

12) 『英祖實錄』 권17, 영조 4년 4월 己酉.

13) 權德秀, 『黃猿日記』 무신 5월 14일.

그러나 노론은 이들에 대한 의심과 혐의를 거두지 않았다. 노론은 무신란과 관련된 안동 지역 사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박사수가 안무사 때 올린 장계에서는, 경상도의 상도, 즉 안동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¹⁴⁾ 그러나 난이 평정된 후 영조에게 보고하기를, ‘자신의 이전 보고는 잘못되었다. 정희량이 그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안동에서 거사를 일으키려 하였고, 이 사실을 안동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안동 사족을 조사할 것을 청하고 있다.¹⁵⁾ 오원 역시 상소를 통해, 역적의 공초에 나온 영남 사족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고식적인 대책이고, 오히려 영남인을 부끄럽게 하는 처사라고 반발하였다.¹⁶⁾ 심지어 영조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영남 남인들이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¹⁷⁾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대되어, 영남 남인들은 무신란에 직접 가담하였으나 용케 살아남았거나, 비록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가담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까지 인식하였다.¹⁸⁾

그들은 남인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탄압해야 할 국민에서는 반드시 무신란 여얼이나 그 후손이라는 명분을 들어 공격하였다. 후술할 김성탁 신원소를 통해 영조의 이현일에 대한 미움을 알게 된 다음에는 무신란 여얼과 기사 명의죄인을 결부시켜 공격하였다. 그럴 경우 호계서원 인사들의 입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무신란 여얼이라는 혐의는 비슷한 혐의를 노론에게서 찾아 공략할 때 해결될 수 있었다. 그것은 정조대에야 가능한 일이었다.

14) 『戊申別牘錄』 3월 21일, 「嶺南按撫使兼安東府使朴師洙狀啓」.

15) 『承政院日記』 660책, 영조 4년 4월 24일.

16) 『英祖實錄』 권21, 영조 5년 3월 癸亥.

17) 『承政院日記』 823책, 영조 12 4월 4일.

18) 『湛軒書』 內集, 권3, 「與鄭光鉉書」, “今之所謂南人 兼有此二者矣 當戊申之變 其不入於希麟之黨而贊稱兵犯闕之謀者幾希 身入之而幸而免者有之矣 身雖不入而心之不入者未之有也 心若不入 則乃西也非南也”.

2. 이현일 신원운동과 김성탁의 이현일 신원소

이현일을 신원하고자 하는 호계서원의 움직임은 소론과 남인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경종이 즉위하면서 두 차례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신원 운동은 노론뿐 아니라 소론측의 반대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¹⁹⁾

영조 즉위 후에도 이현일을 신원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1년 전 이현일 신원을 발의했던 나학천이 영조의 구언에 따라 응지소를 올리면서, 목래선과 이현일의 신원을 요구하였다.²⁰⁾ 영조는 이현일 신원 문제는 당론과 관계되니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였고 처벌하지는 않았다. 이때 나학천은 노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며 영조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하였다.

이듬해 10월에는 역시 경종대 1차 신원운동 당시 호계서원 원장이었던 조덕린이 사간원 사간이라는 언론의 자격으로 상소문을 올렸다.²¹⁾ 을사년에 올려진 10개 조의 상소문이라 하여 ‘乙巳十條疏’로 불리는 이 글은 국왕으로서의 영조가 유념하여야 할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 것이었다. 조덕린은 이 상소문에서 당쟁의 폐단을 격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영조의 집권을 후원하고 권력을 장악한 노론의 전횡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나학천의 경우와 달리 조덕린에 대해서 영조는 강하게 질책했고, 유배형에 처하였다. 아울러 노론들은 조덕린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이후 무신란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여 탄압하였다.²²⁾

영조는 이현일 신원이나 다른 당파에 대한 비판을 당쟁의 한 형태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이현일의 문인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호계서원에서조차 이현일 신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문인 중 일부 세력이 무신란과 연관이 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그 노력은 더욱 제한

19) 경종대 이현일 신원운동에 대한 서술은 이재현, 2014, 앞의 논문 참조.

20) 『영조실록』 권2, 영조 즉위년 11월 기미.

21) 『영조실록』 권8, 영조 원년 10월 갑신.

22) 김문식, 「조선후기 京南과 嶺南의 교류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무신란은 호계서원측 갈암 문인들에게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되었다. 영조가 영남 남인들을 위무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킨 인사들을 등용하였던 것이다. 이현일의 아들인 이재를 사간에 제수하였고,²³⁾ 연로한 이유로 관직에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李樾 역시 김성탁과 함께 추천을 받았다.²⁴⁾ 김성탁 역시 영릉 참봉직을 제수받았다.²⁵⁾

이현일에 대한 혐의 때문에 이재 등의 출사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영조는 이현일과 그 자제와 제자는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성탁에 대해서는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였고 예우를 다하였다.

김성탁은 당색과 무관하게 중앙 정계의 다양한 인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1730년(영조 6) 안핵사로 영남에 파견되었던 오광운은 김성탁의 인품을 보고 조정으로 돌아와 그를 가장 먼저 추천하였다.²⁶⁾ 조현명 역시 성이홍, 이만 등과 함께 김성탁을 추천하였고, 그들이 제대로 등용되지 않자 그들의 등용을 촉구하기도 하였다.²⁷⁾ 嶺南監賑御史李宗白도 영조가 김성탁에 대해 묻자 학식과 行誼가 있는 인물이라 평하면서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뿐만 아니라 송인명,²⁹⁾ 김재로³⁰⁾ 등도 김성탁을 인재로 추천하였다.

이러한 추천에 따라 김성탁을 인견하고 治國의 방도를 주제로 대화한 영조는 그의 학문과 식견을 높게 평가하였다.³¹⁾ 당시 천연두가 유행하였기 때문에 김성탁은 이를 피해 안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하지만 첫

23) 『영조실록』 권17, 영조 4년 11월 신묘.

24) 『영조실록』 권33, 영조 9년 1월 을미.

25) 『승정원일기』 708책, 영조 6년 8월 11일.

26) 金聖鐸, 『霽山先生文集』 부록, 「遺事」, “嶺南按覈使吳公光運來訪 禮貌甚恭 及還朝 首薦公 有金玉其人等語”.

27) 『영조실록』 권33, 영조 9년 1월 을미.

28) 『영조실록』 권34, 영조 9년 6월 무오.

29)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9월 경인.

30)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4월 갑진.

31) 『승정원일기』 790책, 영조 10년 11월 5일.

인상이 강렬했던 영조는 이를 뒤에 다시 김성탁을 불러 학문적인 토론을 나누었고,³²⁾ 그의 증조인 金是樞에게 3품관의 증직을 내리는 은전을 베풀기도 하였다.³³⁾ 이듬해 2월에는 경상 감사로 부임하는 민응수에게 하교하여, 영조가 김성탁을 잊지 못하고 있음을 전하고 아울러 그에게 벼슬에 나오도록 권유하라고 하였다.³⁴⁾

이러한 김성탁에 대한 호의는 호계서원 사족들의 관직 진출로도 이어졌다. 1735년 시행한 증광문과에서는 모두 42명이 급제하였다. 이 중 안동 출신은 5명이었는데, 그들 모두 호계서원의 유림이었다. 김성탁을 비롯해, 류관현, 류정원, 김경필, 이상정이 그들이었다. 특히 영조는 김성탁이 과거에 급제하자 바로 불러서 홍문관 관원에 임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어제시를 지어 내리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하였다.³⁵⁾

그런데 의외의 상황에서 이현일의 신원 문제가 터졌다. 1736년(영조 12) 李麟至 등 4천 여 명의 영남유생이 올린 兩宋文廟從祀反對上疏가 발단이였다.³⁶⁾ 김성탁은 애초에는 이 상소를 만류하였다.³⁷⁾ 그런데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서 예천 현감 민통수가 유생들을 채찍으로 마구 구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³⁸⁾ 김성탁은 인관으로서 이를 문제 삼는 상소를 올렸다.³⁹⁾ 이 상소에서 김성탁은 송시열과 송준길을 문묘에 종사하는 것이 공론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임금을 속이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역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예천 현감을 중용하여 유생들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횡포를 자행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영조의 탕평책에 반하는 행동이

32) 『승정원일기』 790책, 영조 10년 11월 7일.

33) 『영조실록』 권39, 영조 10년 11월 신사.

34) 『영조실록』 권40, 영조 11년 2월 경오.

35) 『승정원일기』 799책, 영조 11년 윤4월 12일.

36) 『영조실록』 권41, 영조 12년 3월 병오.

37) 『승정원일기』 823책, 영조 12년 4월 5일.

38) 『승정원일기』 821책, 영조 12년 3월 12일.

39) 『승정원일기』 823책, 영조 121년 4월 12일.

며 자기 당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아울러 하였다. 송시열 등의 문묘중사를 추진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해로 등은 양송의 陞廡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이인지와 그를 옹호한 김성탁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⁴⁰⁾ 이때 이해로 등은 이인지와 김성탁 등이 회퇴변척소를 올렸던 정인홍, 우율 승무 반대소를 올렸던 柳櫻 등과 같은 죄인이라고 비난하였다. 정인홍 등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희량이나 이응보와 같은 변란 주동자가 나타나 무신란을 일으켰으며, 영조가 관용을 베풀었으면 개과천선해야 하는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김성탁 등을 엄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비판은 문묘중사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했던 이인지, 김성탁의 죄를 무신란과 연결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상소에 대해 영조는 정희량 등이 무신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영남의 유생 전부가 역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란은 영남에서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⁴¹⁾

이에 경상도 유생 신현 등이 재차 상소를 올렸다. 그는 이인지와 김성탁을 공격하면서, 정인홍과 이현일에 의해 영남의 士論이 크게 타락하였고 그것이 조덕린의 凶疏와 무신란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다.⁴²⁾

김성탁은 영남의 윤리가 쇠퇴하고 반역의 고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자신의 스승인 이현일이라는 주장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스승의 무고함을 설파하는 변무소를 올렸다.⁴³⁾ 변무소에서 그가 주장하는 요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상소 때문에 스승이 옥을 당하였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똑같이 섬기는 의리, 즉 ‘生三事’의 의리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 둘째, 이현일이 죄를 얻게 된 것은 기사년의 응지상소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인현왕후를

40) 『승정원일기』 823책, 영조 12년 4월 4일.

41) 『승정원일기』 823책, 영조 12년 4월 5일.

42) 『영조실록』 권44, 영조 12년 8월 신사.

43)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5월 기유.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여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701년 완전히 석방되었고, 1720년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복관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현일이 흥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셋째, 이미 영조가 기사년에 있었던 일은 지나간 일로 치부하기로 했다. 즉 ‘付之先天’했음을 알지만, 자신 때문에 사문이 모욕을 당하였기 때문에 기회를 범한다는 것이었다.

이 상소에 대해 영조는 매우 분노하였다. 영조가 문제 삼은 것은 첫 번째 ‘生三事’과 세 번째 ‘付之先天’이었다. 영조는 ‘스승을 칭탁하여 난역을 비호하고 임금의 마음을 억측하여 업신여겼으니, 이것으로 죄목을 삼더라도 사형에 처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⁴⁴⁾ 김재로도 영조의 전교를 근거로 들어 ‘付之先天’한 것은 경종 연간의 신임사화 관련 당론에 대한 것이지, 기사년의 일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영조 역시 김재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현일의 기사년 상소는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하면서, 김성탁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⁴⁵⁾

영조는 이현일이 흥역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인현왕후에 대한 이현일의 언급보다는, 이현일이 기사년에 올렸던 상소에서 ‘숙빈 최씨가 영조의 형을 낳았을 때 적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조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영조는 김성탁을 추국하는 과정에서 이현일의 鞫案을 열람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국안을 보고 처음으로 嫡庶를 분명히 하자는 일이 있었음을 알았으니 ... 지금 위로는 聖母에 대해, 아래로는 景宗과 나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임금의 마음이 西人을 등용하는 여부를 몰래 엿보고 탐지한 것은 더욱 극도로 놀랍고 분하다.⁴⁶⁾

44)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5월 을묘.

45)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5월 기유.

46)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5월 을묘.

영조는 비록 처음 알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현일의 발언은 자기 생모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영조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때문에 이현일이 자신의 모친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김성탁이 스승이라는 이유로 이현일을 변호하는 것이 매우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김성탁은 스승이, 자신은 부모가 모욕을 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김성탁은 스승이 모욕당했다고 스승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부모가 모욕 당한 자신은 이미 ‘없던 일, 즉 부지선천’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영조의 분노는 상당히 컸다. 게다가 과거 급제 이전부터 관직에 등용하고 자신으로서의 최대한의 예우와 총애를 보였던 김성탁이기에 더욱 분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조덕린보다 더욱 엄한 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김성탁을 伸救하려 했던 조현명까지 처벌하였던 것이다.⁴⁷⁾

다만 김성탁이 이현일의 ‘적서’ 관련 발언은 알지 못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⁴⁸⁾ ‘김성탁이 이미 閔黯과 李義徵이 亂逆을 한 것은 알았으나, 적자와 서자를 밝히자는 설에 이르러서는 그 무리가 서로 숨겨서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성탁의 행동은 어리석고 어두운 데서 나왔기 때문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특별히 사형을 감하여 절도에 圍籬安置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를 통해 영조가 이현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이현일의 문인 뿐 아니라 노론들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후 이현일의 문인들은 적어도 영조 연간에는 이현일의 신원을 언급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노론은 남인을 공격할 때 무신 여얼이라는 비난과 함께 반드시 명의죄인 이현일의 후

47)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7월 신축.

48) 『영조실록』 권44, 영조 13년 6월 기미.

예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현일의 문인들이 주축이었던 호계서원의 지역 공론 주도권 역시 이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Ⅲ. 김상헌 서원 건립 시비

갑술환국 이후 영남 남인은 중앙 정계에서 소외되었다. 이후 퇴계 학통과 남인이라는 정치색이 뚜렷했던 영남에서도 노론을 표방하는 세력이 나타나고 점차 세력을 확대해갔다. 그러나 안동은 여전히 남인이 대다수이고 공론을 주도하는 전통을 유지하였다. 특히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퇴계-학봉-경당-갈암으로 연결되는 학문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남인의 세론을 더욱 고수하였다. 이 때문에 안동이 영남 남인의 공론을 주도하는 지역임은 경상도 다른 지역 사족들도 인정하는 바였다. 용궁현 사립은 ‘영남의 正氣가 사라지지 않은 것은 오직 안동이 있기 때문’⁴⁹⁾이라고 하였다. 경상우도 사람들은 ‘영남의 士論이 반드시 안동에서 나온다. 안동은 예로부터 鄒魯之鄉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하였다.⁵⁰⁾

경상도로의 세력 확대를 꾀했던 노론의 입장에서는 영남 남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 노론을 상징하는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김상헌을 배향하는 서원의 건립이었다. 안동은 김상헌의 先鄉이었을 뿐 아니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김상헌이 寓居했던 곳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1721년과 1732년 두 차례의 서원 건립 시도가 있었다. 1721년에는 안동부사 金鑣玉이 주도하여 거의 서원을 건립하는 단계까지 갔으나 신임사화로 중단되었다.⁵¹⁾ 1732년에는 안동부사 李德孚가 서원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냈고 안동 법전 출신으로 안동으로 이거한 姜元一이 서원 건립을 주도하였다.⁵²⁾ 강원

49) 『무오일기』 「龍宮通文」.

50) 『법성일기』 「嶺南右道士林通安東鄉校文」.

51) 『법성일기』 「與督運使金漢喆書」.

일은 서원 건립 여부를 안동 향교에 논의하게 하였으나, 반대가 많아 부결되었다.⁵³⁾ 안동 향교에서는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서 존경하는 것도 다르다. 우리 고장의 선비들은 지향을 바꿀 수 없고 공론도 같지 않다.’⁵⁴⁾ 하면서 서원 창건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이로써 두 번째 서원 건립 시도도 무위에 그쳤다.

이후 중앙 정국에 변화가 있었다. 1737년 8월 鄭履儉은 김성탁을 伸救하다가 노론으로부터 배척당한 조현명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를 계기로 노론 준론 세력이 점차 조정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⁵⁵⁾ 그리고 1738년 노론 준론으로서 영남 남인에 대해 공격적 입장을 지녔던 俞拓基와 魚有龍이 각각 경상 감사와 안동 부사로 있었다. 안동 부사 어유룡은 김상헌 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안우석, 강원일 등과 의논하였다.⁵⁶⁾ 이에 1738년 3월 안동에서 노론의 입장에 서있던 안우석, 강원일, 안택준 등은 예안 현감 이매신, 독운사 김한철 등과 서원 건립을 논의하는 한편 경상도 각 군현에 통문을 보냈다.⁵⁷⁾ 그리고 경상 감영과 안동부에 문文하여 서원 건립에 필요한 인부와 물력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감사와 부사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받았다.⁵⁸⁾

이를 보면 1738년의 김상헌 서원 건립도 강원일, 안우석 등이 전면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동 부사의 제안과 경상 감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었다. 안동의 사족들은 영남 남인의 본거지이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안동에 노론계 서원이 건립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더구나 안동 지역에 노론계 내지 이에 동조하는 유림의 기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고,

52) 『법성일기』 「上府伯李德孚書」.

53) 『법성일기』 「安東校中通文」.

54) 『법성일기』 「安東鄉校答通」.

55) 鄭萬祚,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역사학보』 111, 1986, 74~78쪽.

56) 『법성일기』 「與督運使金漢詰書」.

57) 『법성일기』 「日記」 (戊午) 3월.

58) 『법성일기』 「士林呈監營文」, 「道會時本府呈文」.

이에 대한 남인들의 경계심과 위구심도 따라서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론계의 김상헌 서원 건립 시도는 단순히 김상헌의 충절을 기리는 서원 건립에 그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질 수는 없었다. 그것은 안동내의 노론 근거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남인을 진압하기 위한 노론측의 또 하나의 정치적 공격이란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⁵⁹⁾

서원의 건립은 지역의 공론에 따르는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지역 공론을 대표하는 안동 향교가 중심이 되어 노론 측의 서원 건립에 대응하였다. 안동 향교의 유생들은 안동 부사에게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서원 건립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첫째, 서원의 건립은 고을의 공론에서 나와야 한다. 둘째, 서원 건립을 주도하는 자는 남인에서 변절한 자로, 그들의 서원 건립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 오히려 안동부에 많은 폐단을 초래할 것이다. 셋째, 안동이 김상헌과 연고가 있음에도 서원이 없었던 것은 서로 존송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안동은 백 년의 純鄉, 즉 남인만의 순수성을 지킨 곳인데 이제 노론의 서원이 건립되면 안동이 분열하고 결국 몰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⁶⁰⁾

그러나 안동 부사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김상헌이 서인이라는 이유로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것을 질책하였다. 안동 향교 유생들은 안택준 등이 김상헌을 존경하기 때문에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으나, 별 효과는 없었다.⁶¹⁾

이후에도 적게는 70여 명⁶²⁾, 많게는 6, 700여 명⁶³⁾에 가까운 인원이 안동 부 앞에 모여 시위하였고, 반대 근거도 추가하였다. 안동 김씨의 허가도 없이 멋대로 안동 김씨 소유의 빈 사당 건물을 헐어서 부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안동 부사도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부사는 안동 김

59) 정만조, 앞의 논문, 1982(1997, 앞의 책, 22쪽).

60) 『무오일기』 1738년 4월 25일.

61) 『무오일기』 1738년 4월 26일.

62) 『무오일기』 1738년 5월 15일.

63) 『무오일기』 1738년 5월 12일.

씨 문중에서 안택준과 시비를 가려 해당 목재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였다.⁶⁴⁾

이에 안동 향교 유생들은 서원 건립을 중지시키고 건축 부재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노론측의 반발이 거셌다. 그 과정에서 안동 향교측은 ‘멋대로 성문을 폐쇄했다’거나,⁶⁵⁾ ‘횡군들을 동원하였다’고 노론측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⁶⁶⁾ 이를 빌미로 경상 감영에서는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도자들을 처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그 결과 도유사가 수감되었다.⁶⁷⁾

안동 향교 유생들은 이제 새로 짓는 사당과 사직단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을 문제 삼았다. 그리고 김상헌이 은거했던 목석거에 서원을 건립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안동 부사는 이 타협안을 받아들여려고 하였으나, 강원일 등의 반대로 이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⁶⁸⁾ 이 문제로 경상 감영에 문주하였으나, 경상 감사는 데김도 내리지 않고 각하시켰다.⁶⁹⁾

안동 향교 유생들은 전략을 바꾸어 ‘서울에 상언하였으니 상언에 대한 비답이 내려올 때까지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정문에 대해 안동 부사는 “알아서 할테니 따지지 말라.”고 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대응할 뿐이었다.⁷⁰⁾ 이에 1738년 5월 20일 기우제를 핑계로 안동 부사가 관아를 비우자 향교의 유생들은 인부를 동원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른 서원을 허물어 버렸다.⁷¹⁾ 다음날 관아로 돌아온 부사는 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수 金夢濂을 잡아들여 하옥하고 公事員 柳鼎和도 가두고 감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감영에서는 죄수와 주모자를 적발하여 엄형하라는 제사를 내렸다.⁷²⁾

64) 『무오일기』 1738년 5월 4일.

65) 『무오일기』 1738년 5월 7일.

66) 『무오일기』 1738년 5월 8일.

67) 『무오일기』 1738년 5월 10일.

68) 『무오일기』 1738년 5월 11일.

69) 『무오일기』 1738년 5월 18일.

70) 『무오일기』 1738년 5월 19일.

71) 『무오일기』 1738년 5월 20일.

안동에서 이러한 사달이 있는 동안 서울에서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박문수가 5월 18일 입시한 자리에서, 안동에서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는 서원을 건립하여 향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하면서 건립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영조는 서원 건립을 중지하라고 하교하였다.⁷³⁾ 해당 전교는 5월 23일 안동에 도착하였다. 서원 건립을 금지하고 1725년 이후 건립된 서원도 일일이 조사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급반전하자 서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세력은 김경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기사년의 명의죄인이고, 이후에는 정희량과 혼인을 한 집안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엄한 처벌을 주장하였다.⁷⁴⁾ 그리고 이와 비슷한 주장이 중앙 정계에서도 제기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 박사수가 상소를 올려, 서원을 허문 자들은 역적 정희량의 친인척이거나 이현일의 제자들로서, 그들을 위해 앞장섰다고 주장하였다.⁷⁵⁾

중앙과 안동의 노론 모두 김상헌 서원 건립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현일과 정희량의 난역 세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적의 혐의를 덧씌우고자 했다. 조정에서는 그 처리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고, 결국 영조는 “서원을 세우고자 한 측도 김상헌을 尊慕하려는 순수한 뜻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또 건립을 반대하는 측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私慾에서 나왔으니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도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멋대로 서원 건립을 허가했을 뿐 아니라 서원을 허물어버린 세력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와 부사를 파직하고, 毀院 儒生들은 亂民의 예에 따라 엄벌하되 그 주동자에게만 국한시키도록 전교하였다. 그리고 서원을 다시 건립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다.⁷⁶⁾

이후 노론 측에서는 서원 건립을 반대하는 측이 이현일 등 명의죄인과 무

72) 정진영, 앞의 논문, 2015, 246쪽.

73) 『승정원일기』 872책, 영조 14년 5월 18일.

74) 『법성일기』 「日記」(戊午) 5월 23일.

75) 『승정원일기』 873책, 영조 14년 6월 20일.

76) 『승정원일기』 873책, 영조 14년 6월 23일.

신란 주동자와 관련이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에 대한 엄벌과 서원의 재건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이해수는 서원 재건립을 주장하면서, 서원 건립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신란 주모자인 정희량이나 기사년의 명의죄인 이현일의 친척과 문인으로 단정하고 이들이 안동 향권을 쥐고 발호하고 있다. 이로써 純鄉이나 純論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깨뜨려서 그 기세를 흐트러뜨려야 한다고 하였다.⁷⁷⁾ 안동의 강원일 역시 서원을 건립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신년과 같은 逆亂이 300년 추로지향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⁸⁾

이처럼 서원 건립 반대 세력을 이현일과 연결시키는 주장이 나왔던 것은 서원 건립 반대를 주도했던 안동향교가 호계서원측 인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호계서원은 안동부 및 안동 향교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설립, 운영되었으며, 호계서원의 주도세력이었던 퇴계 문도들은 16세기 안동 향교의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다.⁷⁹⁾ 이러한 상황은 호계서원의 주도권이 학봉-갈암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조현명이 경상감사로 재직하며 향교 교육을 진흥하는 정책을 펴면서, 1731년 李樞, 金聖鐸, 李光庭을 안동 향교의 훈장으로 임명하고, 유생을 선발하여 향교에 모아 서명, 태극도설 등을 강학하게 하였다.⁸⁰⁾ 모두 이현일의 문인들이자 호계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향교와 호계서원에서 강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호계서원과 안동 향교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졌다.

실제 서원 훼파와 관련해서 관에 검거되거나 성균관으로부터 付黃의 처벌을 받은 이들은 모두 44명이며, 그 중 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은 김몽렴, 김경헌, 류정화를 포함해 모두 20인이다.⁸¹⁾ 이 중 호계서원 원장을 지내거나

77) 『승정원일기』 875책, 영조 14년 7월 22일.

78) 『법성일기』 「本院士林初疏」(戊午八月).

79) 김자운, 앞의 논문, 2021, 99쪽.

80) 허권수, 「霽山 金聖鐸의 사상과 문학」, 『東方漢文學』 12, 1996, 36쪽.

81) 김형수, 앞의 논문, 194~195쪽.

원장과 관련있는 사람이 모두 8명이다. 향교 교임이었던 김경현은 원장을 지낸 김성구의 손자이며 이현일의 문인인 김여건의 아들이다. 그의 사촌인 김경필도 원장을 지냈다. 이여경은 두 차례 원장을 역임한 이후여의 증손, 권진은 권치의 스승 권구의 아들이다. 이만리, 김세열, 김성흠, 권치는 본인이 훗날 호계서원 원장을 지냈다. 특히 이만리는 사건 이듬해인 1739년 원장을 지냈다. 그리고 김몽렴은 사건 전해인 1736년 호계서원 원장이었던 김몽수의 형이자 김시추의 손자였다.⁸²⁾

이처럼 호계서원 인사들이 안동 향교를 장악하여 안동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노론들은 파악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집요하게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여 기반을 만들고 이를 발판으로 안동의 향론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안동을 장악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1739년 9월 서원 재건립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안상휘에 대해 영조가 강경하게 처분하면서 서원 건립 시도는 중지되었다.⁸³⁾

영조는 안동에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려는 노론의 의도가 영남을 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져 영남 남인이 진압되면 노론의 독주와 전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여기에 따라 소론과 남인의 반발도 더욱 격화될 것이 분명하였다.⁸⁴⁾ 이는 영조의 탕평책과 위배되기 때문에 건립을 금지했던 것이다.

이후 노론은 안동 향교와 호계서원을 직접 장악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전환하였다. 그 중심에는 安鍊石으로 대표되는 가구 안씨가 있었다.⁸⁵⁾

82) 김영나, 앞의 논문, 143쪽.

83) 정만조, 앞의 책, 241~243쪽.

84) 정진영, 『『무오일기』 해제』 『국역 무오일기』, 청량산박물관, 2015, 15쪽.

85) 『戊申倡義所日記略』(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原情草, “本府之積困 根莖專出於一夫之亂鄉 卽故安復駿之家也 自知不容於清議 欲爲脅制一鄉”. 이 자료는 권덕수 후손가에서 작성한 것인데, 그들은 남인을 공격하는 주도자로 안복준을 지목하고 있다. 안복준은 노론으로 선화한 안연석의 아들이다. 이들은 순흥 안씨로 안동 가구에 세거하였기 때문에, 이들 일족을 세칭 가구 안씨라 하였고 안동 지역에서

이들은 무신란과 관련된 자를 향안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즉, 1740년(영조 16) 그들은 유향소에서 향중 여론을 수합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신란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받던 권덕수 등 3인의 이름을 향안에서 삭제하였다.⁸⁶⁾ 이 해는 조정에서 노론의 정치적 우위가 결정되었던 해였다. 노론들은 우위가 확실해지자, 관권의 지원을 받아 안동에서 노론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다. 남인측 인사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의논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권덕수 등이 다시 향안에 입록하게 된 것은 이보혁이 안동부사이던 1748년(영조 24)이었다.⁸⁷⁾

이올러 호계서원의 원장을 안동 부사가 겸직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호계입록』에 의하면 1740년 가을부터 1742년까지 안동 부사가 호계서원 원장을 맡았다.⁸⁸⁾

이 사태의 배후에는 당시 경상 감사이던 鄭益河와 李重慶이 있었다.⁸⁹⁾ 이들은 남인은 곧 무신란의 역적이라는 인식하에, 남인 주도의 향론을 노론 주도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래서 정익하는 안동 鄉廳에 「歸正錄」이라는 名案을 비치하고 여기에 이름을 올리면 무거운 죄를 짓더라도 용서해주면서 남인이 노론으로 전향하는 것을 권장하였다.⁹⁰⁾ 이중경도 안동 부사에서 체임된 이후 영조와 만난 자리에서, 스스로 ‘안동에는 무신년에 관련된 자가 많은데 나라에서 제대로 다스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범망을 벗어난 자들이 제멋대로 黨論을 일삼았다. 그래서 내가 道臣과 의논하여 형벌로 다스린 경우가 많았다.

남인에서 노론으로 전향한 대표적인 문중의 하나이다.

86) 『戊申後鄉案事蹟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本府報狀.

87) 『戊申後鄉案事蹟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鄉老自明單子 庚申 4월 26일 金起溟 등.

88) 우인수, 앞의 논문, 24쪽.

89) 『戊申倡義所日記略』(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原情草, “往在庚申良中 陰職監司臣鄭益河 府使臣李重慶 迫脅座首 叱賊之家 并削去案錄 而鄉議憤慨 至戊辰而還書”.

90) 成樂薰,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Ⅱ』,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386쪽.

또 鄉權을 나누어 남인만이 그 직임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였다⁹¹⁾고 할 정도였다. 남인을 주장하는 자들은 곧 무신란의 여당이라는 인식하에 형벌을 가했을 뿐 아니라, 유향소를 남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것이다.⁹²⁾

다시 말해 영조년간 내내 안동, 특히 갈암학파가 중심인 호계서원은 무신란의 여당이라는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노론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IV. 무신창의록과 사도세자신원만인소

이처럼 영남 남인, 특히 호계서원은 영조와 소론의 옹호에 힘입어 정치적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노론측으로부터 가해지는 명의죄인의 후예라는 혐의와 무신란 역적의 도당이라는 인식과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방법은 노론 역시 역적의 혐의를 가지고 있음을 설파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 국왕이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한 점에서 정조의 즉위는 좋은 기회로 생각되었다. 당시 정국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 중 상당수가 정조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조가 즉위한지 5개월 뒤인 1776년 8월 안동 유생 이응원이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관련자의 처벌을 청원하는 상소를 올렸다.⁹³⁾ 이응원은 이도현의 아들인데, 이도현은 이광정의 제자였다. 이들은 봉화에 세거하는 전주이씨로, 호계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이었다. 사도세자가 노론들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정조의 호감과 관심을 사는 한편, 노론도 역적의 혐의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91) 『영조실록』 권 56, 영조 18년 9월 庚辰.

92) 이육, 앞의 논문, 2011, 155~156쪽.

93)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을사.

이때의 시도는 일부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는 정조의 왕권이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다. 조정에는 노론이 득세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도세자의 신원을 바라가지 않던 정조였지만, 이응원을 대역죄인으로 처벌하였고, 그들의 고향인 안동은 ‘부(府)’에서 ‘현(縣)’으로 강등되었다.⁹⁴⁾ 그러나 1776년 9월 정조가 직접 신임의리를 확정지으면서도, 소론이나 노론 모두 충신과 함께 역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성공이었다.⁹⁵⁾ 남인과 노론이 모두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1782년(정조 6)에는 더욱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다. 정조가 “경상도가 추로지향(鄒魯之鄉)이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곳이며, 무신란 때에도 이인좌 등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충성심을 표하였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관리 등용에서 영남 남인을 우대하라는 내용의 전교를 내렸기 때문이다.⁹⁶⁾ 영남 남인을 자신의 우익으로 삼겠다는 의중을 강하게 표한 것이며, 대부분의 영남 남인은 무신란과 무관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영남남인에 대한 복권은 정조가 왕권을 확립한 1788년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다. 1788년(정조 12) 1월 친위 군영인 장용영을 발족시킴으로써 군권(軍權)을 장악하고, 2월에는 노론 김치인이 영의정인 상황에서 소론의 이성원을 좌의정으로 임명하면서 남인인 채제공을 우의정으로 특배하여 득의의 탕평정국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⁹⁷⁾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채제공의 건의로 무신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안동 출신의 인사들을 추증하였고, 경상 감사에게 무신란 때 도내의 순절인 및 유공자를 조사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경상 감사는 정조의 지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진동이 주도하여 무신란 때 안동과 상주 등 영

94) 『정조실록』 권2, 정조 즉위년 8월 병오, 무오.

95) 이육, 「사도세자 관련 만민소의 정치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35, 2018, 176쪽.

96) 『정조실록』 권13, 정조 6년 3월 신유.

97)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69쪽.

남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동을 모아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상소를 올려 『무신창의록』을 직접 정조에게 바쳤다. 이에 정조는 상소를 주도한 이진동을 직접 접견하였고, 영남 유림의 건의대로 조덕린과 황익재를 신원해 주었다. 이 두 사람은 무신란 때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지만, 이후 이인좌 세력과 연루되었다고 하여 정치적 공격을 당했던 인물들이었다. 아울러 이진동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조는 추로지향인 영남을 반역의 고장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유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노론의 극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지만, 반대로 영남 남인에게는 정조의 배려가 확실하게 각인되었다.⁹⁸⁾

그런데 정조의 영남 남인 우대의 상징은 호계서원이 아닌 도산서원에게로 향했다. 1792년(정조 16) 3월 정조는 규장각 각신 이만수를 영남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만수는 왕명에 의거해 경주 옥산서원과 예안 도산서원에서 치제하였다. 두 서원에는 각각 영남 남인의 정신적 지주라 할 수 있는 이언적과 이황이 배향되어 있었다. 거기다 도산서원에서는 별시를 거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천주교에 오염되지 않은 영남 사림을 가상히 여겨, 도산서원에서 특별히 과거 시험을 열었던 것이다.

1792년 3월 25일 도산서원 앞에 과장이 열리니, 과거에 응시하려는 유생들과 구경꾼이 모여 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응시자만 7,228명, 거둔 시권만 3,632장이었다. 정조는 시권을 직접 살펴 본 후, 강제백과 김희락을 합격시켰다. 그리고 시험 친 사실을 책자로 발간하라고 지시하였다. 陶山別科의 거행은 정조가 영남 지방 사림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배려였다.⁹⁹⁾

이처럼 도산서원이 정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문적·정치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게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호계서원의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했다. 곧 도산서원이나 호계서원이 다같이 이황을 주향으

98) 이상의 서술은 이육, 앞의 논문, 2018, 176~177쪽 참조.

99) 이수환, 「조선 후기 영남 만인소」,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2017, 74쪽.

로 하는 사액서원이라 할지라도 도산서원이 퇴계학파의 대표성을 견지하는 한 호계서원은 자연 부차적 성격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퇴계학파 전반의 공론은 도산서원에 결집되기에 이르렀고 호계서원은 서애계와 학봉계가 학파의 주도적 계파로서 공동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만 유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서애계가 병산서원을 주된 무대로 하여 결속하는 동안 호계서원에는 학봉계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학봉계는 호계서원을 배경으로 계파의 세계관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사회적 결집을 위한 토대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이상정과 그 문인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정의 조카인 이우가 임오의리를 제기한 영남만민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촌에서 계파의 결속을 통한 공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는 것이기도 했다.¹⁰⁰⁾

V.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겠다.

18세기 호계서원은 갈암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그들은 이현일이 명의죄인에서 신원되지 않은 점과 무신란 동조자로 문인 중 일부가 지목된 점 때문에 정치적 운신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무신란 동조자라는 혐의는 영조와 소론이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그 제약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노론은 남인을 공격하는 명분으로 이 점을 활용하였다.

100)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 『退溪學과 韓國文化』 45, 2009, 352~354쪽.

반면 이현일의 명의죄인이라는 명목에 대해서는 영조의 태도가 분명하였다. 그는 이현일이 명의죄인임을 확신하였다. 그것은 노론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인현왕후와의 관계가 아닌 자신의 생모를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성탁의 이현일 변무소는 이현일에 대한 영조의 잠재된 분노를 격발시켰다. 이후 영조가 이현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이현일의 문인 뿐 아니라 노론들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현일의 문인들은 적어도 영조 연간에는 이현일의 신원을 더 이상 언급하지 못하였다. 노론은 남인을 공격할 때 반드시 무신 여얼이라는 비난과 함께 명의죄인 이현일의 후예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현일의 문인들이 주축이었던 호계서원의 지역 공론의 주도권 역시 이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남인에 적대적인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안동지역의 노론과 합세하여 안동에 정치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상헌 서원 건립 시도가 그것이었다. 호계서원 인사들이 주축이 된 안동 향교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좌절시켰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던 김상헌 서원을 훼파하였다. 그러나 이를 주도했던 이들은 처벌되었고, 명의죄인 이현일의 문인이며 무신란의 잔당이라는 노론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무신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상헌 서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조에 의해 김상헌 서원을 건립하려는 노론의 시도는 실패하였다. 노론은 안동 부사가 호계서원 원장이 되는 방식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안동 지역 공론을 좌우하고자 하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2년여 동안 안동 부사가 호계서원 원장을 겸임하였지만, 이후에는 다시 이전대로 갈암이나 밀암의 문인이 원장을 맡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한 노론의 공론 장악 시도가 여의치 않았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호계서원 인사들은 무신 여얼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빌미로 명의죄인과 연결시키는 노론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호계서원 인사들은 그 해결책을 사도세자 신원에서 찾았다. 사도세자 죽음과 관련이 있는 노론 역시 역적의 혐의가 있다는 논리였다. 정조의 즉위로 이 작전은 주효하였다. 1776년 9월 정조는 소

론이나 노론 모두 충신과 함께 역적도 포함되어 있음을 공식화하였다. 나아가 1782년에는 영남 남인과 무신란이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를 통해 무신 여얼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호계서원 인사들은 무신 여얼의 혐의를 벗게되자 정치적 진출과 안동 지역 공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자만인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法城日記』
『戊申倡義錄』
『戊申倡義所日記略』
『戊申後鄉案事蹟抄』
『戊午日記』
『黃猿日記』

2. 연구 논저

유봉학, 『개혁과 갈등의 시대』, 신구문화사, 2009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7.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김문식, 「조선후기 京南과 嶺南의 교류 양상」, 『한국사상과 문화』 15, 2002.
김영나, 「17~18세기 안동지역 사족의 虎溪書院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73, 2015.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2021.
金鶴洙, 「廬江書院과 嶺南學統」,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 조선사회연구회, 1998.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김형수, 「1738년(영조 14년) 안동 학동서원의 치폐와 지방관의 역할」, 『영남학』 17, 2010.
설석규, 「퇴계학파의 분화와 병호시비(II)」, 『退溪學과 韓國文化』 45, 2009.
成樂薰, 『韓國黨爭史』 『韓國文化史大系II』, 고대 민족문화연구소, 1965
우인수, 「경상도 안동 호계서원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2.
이수환, 「조선후기 영남 만인소」,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2017.
이수환, 「영해 인산서원의 설립과 휘철」, 『대구사학』 63, 2001.
이 욱, 「조선 영조대 무신란과 안동 지방의 ‘의병」, 『한국사학보』 42, 2011.

- 이 욱, 「사도세자 관련 만인소의 정치적 의미」, 『남도문화연구』 35, 2018.
- 이재현, 「18세기 이현일 문인의 신원운동과 추승사업」, 『대구사학』 117, 2014.
- 이재현, 「영조 초기 안동 지역 남인의 정치적 동향」, 『대구사학』 144, 2021.
- 정만조, 「숙종후반~영조초의 정국과 밀암 이재의 정치론」, 『밀암 이재 연구』, 영남대출판부, 2001.
- 鄭萬祚, 「英祖代 中半의 政局과 蕩平策의 再定立」, 『역사학보』 111, 1986.
- 정재훈, 「호계서원의 강학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 정진영, 「18세기 서원 건립을 둘러싼 향촌사회의 갈등관계」, 『조선시대사학보』 72, 2015.
- 허권수, 「霽山 金聖鐸의 사상과 문학」, 『東方漢文學』 12, 1996.

Abstract

Political trends And Efforts to lead the public opinion of Hogye Seowon in the 18th century

Lee, Uk*

In the 18th century, Hogye Seowon was dominated by Lee Hyun-il's disciples. However, political conditions were not good for them to dominate and lead Andong's public opinion. They were heavily restricted in their political movements because of the fact that Lee Hyun-il was a criminal of ethics and that some of Lee Hyun-il's disciples were a sympathizer of the Musin-ran(1728's rebellion). In particular, King Yeongjo was convinced that Lee Hyun-il was a criminal of ethics. This fact became clear that Kim Sung-tak's an exculpatory appeal for Lee Hyun-il was the trigger. Later, Noron criticized that Namin was a sympathizer of the Musin-ran(1728's rebellion), and mentioned that they were disciples of Lee Hyun-il, a criminal of ethics.

Furthermore, Noron, who was hostile to Namin, took control. They tried to establish a political base in Andong by joining Noron in the Andong area. It was an attempt to build Kim Sang-heon Seowon. Andong Hyanggyo, led by Hogye Seowon Sarim, actively frustrated it. Noron did not stop there, but tried to dominate the Andong area's public opinion in various ways, such as allowing the Andong president to take charge of Hogyeseowon.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escape the charge that Hogye seowon Sarim was a a sympathizer of the Musin-ran(1728's rebellion). Otherwise, it would not be free

* Professo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 Lwwsh@scnu.ac.kr

from Noron's attack to connect with a criminal of ethics under the pretext of this. Hogye Seowon Sarim found the solution in the innocence of Crown Prince Sado. Noron, who was related to the death of Crown Prince Sado, was also suspected of being a traitor. With the accession of King Jeongjo, this operation was effective. In September 1776, King Jeongjo made it official that both Soron and Noron included both loyalists and adversaries. Furthermore, in 1782, it was officially declared that Yeongnam Namin was not involved in the Musinran. Through this, they were freed from the charge of being a sympathizer of the Musin-ran. When Hogyeseowon Sarim was cleared of the charges of a sympathizer of the Musin-ran,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Imja Maninso to secure political advancement and the initiative in public opinion in Andong.

Key word : Andong, Hogye seowon, Kim Sang-heon Seowon, Lee Hyun-il, public opinion

논문 투고일: 2023. 11. 18 심사 완료일: 2023. 12. 05 게재 확정일: 2023. 12. 06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와 호계서원의 대응

김 지 은*

- I. 머리말
- II. 강회를 통한 결속력 강화
- III. 정학의 수호를 위한 서원훼철 반대
- IV. 척사만인소의 참여와 안동의병 주도
- V. 맺음말

【국문초록】

안동을 대표하는 서원 중 하나인 호계서원은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한 영남유림의 활동에서 구심점으로 기능하였다. 김성일 이후 이상정-류치명으로 이어진 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은 퇴계학맥의 적전을 있다는 학문적 사명감과 우월감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강회를 주도하며 결속력을 다졌고, 인적 관계망을 확대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세기 후반 서원훼철이라는 국내적 위기와 천주교 확산 및 외세와의 무력 충돌이라는 국외적 위기에 대응해 정학의 수호를 위한 서원훼철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일본 및 서양과의 통상이 현실이 되고, 기독교까지 위협해 오는 상황에 맞서 척사만인소라는 조직적이고 단합된 운동을 이끌어갔다.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지자 영남유림은 의병을 조직하고 이끌어가며 그들의 척사론을 무력을 동원한 적극적인 저항운동으로 표출하였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호계서원이 있었다. 호계서원은 그들에게 학문적 자긍심이었으며, 인적·물적 기반이 되었다.

19세기 후반 호계서원은 훼철이라는 시련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나 호계서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경북대학교 신입교원 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원을 통해 이어진 학문과 정신은 여전히 영남 유림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20세기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주제어 : 호계서원, 서원훼철, 만인소, 척사, 의병운동

I. 머리말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은 국내외의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었다. 고종의 즉위로 정권을 장악한 대원군은 건국 초의 강한 왕실을 지향하며, 왕권과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였다. 경복궁 중건으로 국가 권력의 주체는 왕실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세도정권 아래 국정운영에서 소외되었던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추구하며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인적 기반을 구성하였다. 남인으로 柳厚祚가 300년 만에 정승에 오르는 등 대원군은 영남에 우호적이었으며, 영남유림은 정치적 재개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전통 체제의 고수를 추구하며 완고하고 강한 척사의 자세를 지닌 그들의 보수적 성향은 대원군의 정책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남 내부에서는 퇴계학에 대한 이해와 지향점의 차이에 따라 계파의 분화 양상이 뚜렷해졌고, '屏派'와 '虎派'로 대표되는 안동 유림 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다. 이는 영남유림이 통합된 정치세력으로 대원군의 파트너가 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또 대원군이 사회·경제적 폐단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계적 서원 정리를 추진하면서 다수의 재야 유생의 불만이 축적되어 갔다. 결국 1871년(고종 8) 47개의 사액원사를 제외한 모든 서원의 훼철이 시행되자 정치적 열세에 있던 영남 유림은 사회적·경제적 기반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대원군에게 등을 돌리고 서원 복설을 위한 상소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국외의 변화는 영남유림에게 훨씬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천주교의 확산과 이양선 출몰의 증가로 본격화된 외세의 접근은 1866년(고종 3)의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의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 대원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외세에 대응하며 유림과 뜻을 같이 하였지만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倭’로 칭해지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비하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일본은 1868년 시작된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에 성공하였고, 얼마 뒤 무력을 앞세워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였다. 결국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고, 조선은 제국주의가 중심이 되는 만국공법의 국제 질서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모든 과정이 영남유림에게는 천하의 질서가 뒤집히고 금수가 인륜을 어지럽힌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유교적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 강경한 척사론을 전개하였으며, 일제의 국정 개입이 가속화되고 고종이 주도하는 근대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영남유림의 저항은 의병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영남유림의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 형성을 통한 명분의 확보와 단합된 조직력에 기반한 실천의 성공이었다. 학맥으로 계승된 퇴계학의 심화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천이 되었으며, 인적·물적 자원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의 호계서원은 19세기 후반 이항 이후 ‘김성일-장홍효-이현일-이재-이상정-류치명’으로 이어진 학맥을 상징하는 곳이자 ‘호파’로 일컬어지는 영남유림의 활동에 구심점으로 기능하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에 대응한 영남유림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집단 상소운동인 ‘만인소’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영남 유림의 동향을 살피거나 학파별·개인별 위정척사운동 및 의병운동의 과정과 특징에 대한 고찰 등이 연구의 주된 흐름이었다.¹⁾

1)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4, 1997 ;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 강윤정, 「定齋學派의 現實認識과 救國運動」, 단국대학교 박사학

이 과정에서 관찬 사료 및 관련 인물의 문집이 주로 활용되었고, 일기와 고문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상이 면밀히 밝혀지기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전개된 다양한 영남유림의 현실대응을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호계서원은 대부분의 서원이 제 기능을 상실한 19세기 후반에도 그 위상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결집하였던 류치명의 문인들은 척사운동에서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호계서원을 재조명하는 것은 조선후기 서원의 다양한 역할과 의미에 대한 확장된 이해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세기 호계서원에서 행해진 강회를 통해 영남유림이 학문적 정체성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이어 3장에서는 대원군의 서원훼철에 반대하는 상소운동을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호계서원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해 보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강경한 척사론에서 비롯된 1881년 척사만인소와 1895년 안동의병의 전개 양상을 살핀 후 이미 훼철 당한 호계서원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규명해 보겠다.

Ⅱ. 강회를 통한 결속력 강화

18세기 이후 서원은 각 당파와 문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상징되며 증설과 첩설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많은 서원이 강화 등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단순한 선현 향사 기구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위논문, 2006 ; 설석규, 「조선후기 嶺南儒生의 公論形成과 柳道朱의 萬人疏」,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 김문식 외, 『만인의 청원, 만인소』, 한국국학진흥원, 2019 ; 김지은, 『조선후기 류치명의 시대인식과 문인집단』, 경인문화사, 2022 등을 꼽을 수 있다.

러나 일부 서원은 講會를 중심으로 한 교육의 전통을 발전시켜 가며 그 명맥을 지켜가고 있었다.²⁾ 호계서원은 안동대도호부에 설립된 이황을 모신 서원으로 그의 대표 문인들이 건립과 운영에 참여하였고, 훗날 류성룡·김성일의 배향과 사액서원으로서의 위상이 더해져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나아가 18세기 중엽까지 원장에 선임된 이들이 대부분 대과나 소과에 급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도산서원·병산서원 원장을 역임한 이들도 많아 안동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는 확고하였다.³⁾

19세기 국내의 변화와 위기에 맞서 영남유림은 한층 더 보수적인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강화해 나갔으며, 학문적 이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인식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학맥에 연원을 두고, 독자적 문제의식과 학설에 기반한 학파의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⁴⁾ 안동에서는 김성일 이후 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으로 이어진 학맥을 계승한 柳致明(1777~1861)이 퇴계학맥의嫡傳을 자처하며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저술과 강학활동을 통해 호파를 중심으로 한 道統의 정립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호계서원은 그들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림의 학맥과 결속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19세기 호계서원의 강학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이

2)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2, 2009, 67~79쪽.

3) 우인수, 「경상도 안동 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2.

4) 안동 외 상주에서는 류성룡 이후의 학맥을 계승한 柳鵬臺(1813~1872)이 문인집단을 이루었고, 칠곡에서는 張福樞(1815~1900)가 장현광의 학맥을 잇고 있었다. 성주에서는 李震相(1818~1885)이 퇴계학의 재해석을 시도하며 문인집단을 형성하였으며, 김해에서는 성호 이익의 학맥을 계승한 許傳(1797~1886)이 2년 6개월간 김해부사로 부임하면서 활발한 강학을 펼쳐 많은 문인을 이끌었다. 이 같은 19세기 영남학계의 분화와 학파별 사상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4, 2004 ;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 2009 ;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2018」을 참고할 수 있다.

5)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

시기 강회는 총 6차례 이뤄졌다. 1801년 7월에 이상정의 문인 金墟(1739~1816)이 『심경』을 교재로 강회를 진행하였고, 1831년에는 이상정의 손자이자 문인인 李秉遠(1774~1840)이 洞主 謁講席을 맡아 강회를 열고 『태극도설』, 『근사록』, 『중용』, 『대학혹문』을 강론하였다.⁶⁾ 이 강회에는 이병원의 문인인 金岱鎭 외 류치명의 문인인 柳聖文, 柳致皜, 柳致孝, 柳致復과 李相聖, 金性銓 등이 참여하였다.⁷⁾

1856년(철종 7) 11월의 대규모 강회는 경상감사 申錫愚(1805~1865)의 興學策에 의한 것이었다.⁸⁾ 그는 여러 읍에 공문을 내려 선비를 뽑아 강학할 것을 권하였고, 안동부사 趙在應은 關文으로 강회 소식을 호계서원에 전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호계서원이 안동을 대표하는 학문적 위상과 강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소식을 들은 관계자들은 호계서원에 모여 훈장에 류치호, 權鍾夏, 金弘洛을 추천하였으나 류치호가 건강상의 문제로 제의를 거절하였고 강회는 지연되었다. 이에 그들의 스승인 류치명이 직접 나서서 향중의 논의를 거쳐 강회 날짜를 정하였고, 11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강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때 정해진 임원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11월 17일부터 『심경』을 주교재로 삼아 5일간의 강론이 시작되었다. 그들

베개, 2003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2012 ; 김자운, 「조선시대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2021 ; 정재훈,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2022. 이후의 내용은 위 연구성과들을 종합·정리해 서술하였다.

6) 이병원은 이상정의 문인 중 李宗洙(1722~1797)·柳長源(1724~1796)과 함께 ‘湖門三老’로 칭해지는 金宗德(1724~1797)의 문인이기도 하다.

7) 『訂窩續集』 권2, 雜著 「廬院講會問答節略」.

8) 이와 관련해서는 『虎溪講錄』(『고문서집성』 49-안동 범흥 고성이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 「호계서원 강회 일기」,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 2007 ; 『定齋集』 권11, 書 「答虎溪講會諸生問目 丙辰」에 자세하다.

은 이황으로부터 시작된 『심경』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학맥으로 이어진 퇴계학의 계승의식을 강화하였다. 나아가 『心經附註』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이상정의 견해를 근거로 논의를 이어가면서 추승에 기반한 학파의 결속력을 강화해 나갔다.⁹⁾ <표 1>의 강록유사를 맡은 김도화와 권세연이 이후 안동의진의 의병장을 역임하는 것은 이때 호계서원의 강회가 갖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표 1> 1856년 호계서원 강회 임원 명단

	이름	자	호	본관	생몰년	비고	문인록 ¹⁰⁾
	丈席 柳致明	誠伯	定齋	全州	1777~1861		
	洞主 金健壽	文瑞	止庵	義城	1804~1866	1837년 진사시	34
	訓長 柳致高	濯叟	東林	全州	1800~1862	1845년 학행으로 천거	22
	執禮 李敦禹	始能	肯庵	韓山	1807~1884	이상정 현손/ 1850년 문과	62
	司儀 柳致儼	仲思	萬山	全州	1810~1876	1879년 경학으로 천거	100
直月	(權建夏)	可器	頤齋	安東	1813~1896	(喪中으로 권정하로 교체)	128
	權定夏	禹弼		安東	1814~1868		
	金弘洛	恭伯	西林	義城	1817~1869		172
直日	李祺稷	稚祥	午山	韓山	1817~1877		197
	金鎮愨	誠仲		義城	1821~?		211
講錄 有司	柳致淑	道峻	近庵	全州	1823~1881		230
	金毅壽	茂弘		義城	1824~?		240
	柳肯鎬	乃宇	博羅	全州	1823~1871	병인양요 때 총융청 참모	226
	金道和	達民	拓菴	義城	1825~1912	1896년 안동의진 2대 의병장	262
	金斗永	建直		義城	1832~?	1870년 생원시	332
	權世淵	祖源	星臺	安東	1836~1899	1895년 안동의진 1대 의병장	390
齋有司	李文稷	法祖	靜村	韓山	1809~1877		99
	朴馨壽						

9) 권오영, 앞의 책, 2003, 320쪽 ; 정재훈, 앞의 논문, 2022, 59~63쪽.

10) 류치명의 문인록인 「及門諸子錄」에 수록된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강회를 마치고 동주 김건수는 향음주례를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의 이 모임은 참으로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성대한 행사입니다. 大老께서 찾아와 주시고 고을의 수재가 모두 모여서 이로 인해 향음주례를 행하여 지금 여러 선비로 하여금 우러러 보아서 성대의 化民成俗의 가르침을 드러내고, 현명한 관찰사의 예를 숭상하고 학문을 흥하게 하려는 뜻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¹¹⁾

수일에 걸친 강회에 대한 만족감과 학문적 수준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강회에 참석한 200여 명의 유생들은 김건수의 제안에 모두 동의하며 향음주례에 동참하였다.

1856년 호계서원에서 이뤄진 대규모 강회를 통해 영남유림은 류치명으로 이어진 퇴계학맥의 계승자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였고, 유대감을 강화해 나갔다. 강회에 참석한 김홍락 또한 “장차 마치려 할 때 향음주례를 행하였는데 받들어 준석(隤席)에 모셨다. 선생은 기운과 모습이 맑고 건강하며 행동이 규례에 맞았으므로 보는 이들이 공경하였다.”라는 소회를 밝히며,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강회에 대한 흡족함을 표하였다.¹²⁾

1863년 가을에는 김대진이 훈장이 되어 『西銘』을 교재로 강회를 열었다. 1891년 5월에는 김홍라이 호계서당에서 「玉山講義」로 강회를 열고 마칠 때 향음주례를 행하여 흥기한 효과를 보았으며,¹³⁾ 1892년 2월에도 廬江講會가 열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처럼 19세기 호계서원에서는 꾸준히 강회가 활성화 되어있었다. 학과 내에서 자발적으로 개최된 강회도 있었으며, 지방관의 흥학책에 부응해 열린

11) 「호계서원 강회 일기」,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 2007, 592쪽.

12) 『定齋集附錄』 권3, 行狀金興濬 ; 『국역 서산선생문집』 5, 한국국학진흥원, 2016, 87쪽.

13) 『국역 서산선생문집』 5, 한국국학진흥원, 2016, 106쪽 ; 122쪽.

강회도 있었다. 이 강회를 이끌어 간 이들은 이상정과 류치명으로 이어지는 학맥의 구성원이었으며, 특히 <표 1>과 같이 1856년의 대규모 강회를 주도한 임원 대부분은 류치명의 문인이었다. 그들은 강독과 발문, 토론을 중심으로 한 강회를 통해 학맥으로 계승된 퇴계학의 심도 있는 이해를 추구하였다. 여기에 강회 후 행해지는 향음주례는 참여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류치명의 문인집단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은 호계서원에서 이뤄진 강회를 통해 결속력을 다져가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기반을 공유하였다.¹⁴⁾

Ⅲ. 정학의 수호를 위한 서원훼철 반대

1863년 12월 고종이 11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대왕대비 조씨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고, 모든 권력은 흥선대원군에게 위임되었다. 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세도정권을 약화하고 국정운영을 안정화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통치기구의 정비와 함께 대원군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에 따른 사회의 안정화였다. 특히 18세기 이후 지방의 서원과 鄕祠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 전세와 부역을 면제받았으며, 인근 백성들에게 사적으로 재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원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당론과 문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대원군은 집권 후 바로 서원훼철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864년(고종 원년) 4월, 전국 각읍에 분포한 서원·鄕賢祠 등의 경제적 기반을 상세히 조사해

14) 19세기 정재학파를 중심으로 한 안동유림이 서원(고산정사, 호계서원, 청성서원 등)이나 산사(봉정사, 황산사 등), 정자(만우정) 등에서 대소 규모의 학술 활동을 통해 찾고자 했던 사상적 명제는 ‘인의예지’에 대한 이해와 그 仁을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평소의 학습 과정에서 탐구된 ‘입지, 거경, 궁리, 역행’의 내용은 19세기 급변하는 시국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힘이 되었다(권오영, 앞의 책, 2003, 331쪽).

보고하도록 하고, 중첩되거나 사설된 경우를 조사하였다. 다음 해 3월, 시험 조치로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만동묘 철폐를 단행하였고, 1868년(고종 5)에는 사액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미사액서원·향현사에 대한 대규모 철폐를 시행하였다. 이에 영남에서는 사액을 받은 72개소를 제외한 미사액 639개소의 원사 대부분이 휘철되었고, 안동에서는 도산서원, 호계서원, 병산서원, 三溪書院, 周溪書院, 西礪祠 등이 휘철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3년 뒤인 1871년(고종 8) 3월 20일, 문묘에 배향된 諸賢과 忠節과 大義가 남달리 뛰어난 인물을 배향하는 47개 원사를 제외한 모든 원사의 철폐를 단행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그 결과 도산서원과 함께 병산서원만 존속이 확정되었고, 호계서원을 포함한 다른 안동의 서원들이 모두 휘철 대상이 되었다.¹⁵⁾

4월 9일 호계서원의 휘철을 명하는 관문이 안동에 도착하였다.¹⁶⁾ 호계서원은 상주의 도남서원과 함께 서원휘철에 반대하는 공문을 모아 소를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4월 15일 호계서원의 발의로 휘철대상의 경상좌도 원사의 유림들이 모여 안동의 西岳寺에서 도회를 개최하였다. 그들은 회의를 거쳐 公事員 李中振·金鎮誠, 曹司 李有基·金若裕, 製通 李彙潑, 柳健欽, 會員 金遇洙, 柳星鎮 등 83명의 이름으로 4월 28일 의성향교에서 서원휘철 반대 유소와 관련한 도회를 연다는 통문을 발송하였다.¹⁷⁾ 여기서 김진성, 류건홍, 김우수, 류성진은 류치명의 문인으로 이들이 서원휘철 반대 논의를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

15) 이수환, 「大院君의 書院毀撤과 嶺南儒疏」,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2001, 346~369쪽.

16) 당시의 상황과 이후의 서원휘철을 반대하는 상소운동과 관련해서는 『羅巖隨錄』(朴周大), 『疏事始末』(李承穆), 『疏行日錄』(鄭直愚) 등의 일기를 바탕으로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4, 1997 ; 이수환, 위의 책, 2001 ; 권오영, 앞의 책, 2003 ; 설석규, 「조선시대 嶺南儒生의 公論形成과 柳道洙의 萬人疏」,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이후의 서술은 이들의 성과를 참고하였다.

17) 『疏事始末』(李承穆, 안동 범흥 고성이씨 임청각 소장/ 디지털 장서각 : https://jsg.aks.ac.kr/dir/view?dataId=ANC_G002%2BAKS%2BKSM-XG.1871.1111-20190131.B032a_000_B10000271, 4면)

수 있다. 4월 19일 통문은 상주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도남서원에서 휘철 대상의 경상우도 원사의 유림 44명이 모여 국가와 영남의 存亡이 서원의 휘철 여부에 달려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의성향교 도회를 알리는 통문을 발송하였다.

4월 28일 의성향교에서 열린 도회에서는 200여 명의 유생이 모여 정경세의 후손인 鄭民秉(1800~1882)을 소수로 선출하고, 疏任 300여 명을 정하였다. 정민병은 “내 나이 팔십에 육박하였는데 어찌 삶과 죽음을 근심할 것이 있겠는가? 공자가 ‘아침에 올바른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내가 진실로 죽을 곳을 얻었구나”라고 하며 자신의 직무를 받아 들였다.¹⁸⁾ 5월 24일 상소문은 류치명의 제자인 권연하가 지은 것이 채택되었다. 상소에서 권연하는 서원 휘철령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원의 폐해는 이를 운영하는 유생들의 잘못된 뿐 그곳에 모셔진 선현과 서원 자체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하였다. 나아가 서원과 학문의 중요성을 나라의 근본과 연결시켜 말하며 휘철한 서원을 복설 해주길 청하였다.¹⁹⁾

6월 2일 소수 정민병은 10,027명이 연명한 서원휘철 반대 만인소를 올리기 위해 疏行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鄭直愚(1823~1880)가 쓴 『疏行日錄』에는 소행을 함께한 113명의 명단이 ‘同苦錄’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다.²⁰⁾ 류치명의 문인으로 서원휘철 반대 만인소에 참여한 이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13명의 명단 가운데 15명의 참여가 확인되는데, 이는 전체의 13.3%에 달하는 수치이다. 『소행일록』에 의하면 의성 도회에서 배정된 63읍(365명) 중 실제로 소행에 참여한 지역은 26읍(113명)에 불과하였으며, 그중 안동(35명)과 상주(21명)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²¹⁾

18) 『拓菴集』 권32, 行狀 「敦寧府都正箕疇鄭公行狀」; 『국역 척암선생문집』 6, 한국국학진흥원, 2023, 209쪽.

19) 『頤齋集』 권2, 疏 「請勿毀書院疏 代道儒作」.

20) 『疏行日錄』(鄭直愚, 계명대학교 도서관 소장/ 전자버전 : <http://dcollection.km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91416>, 55~63면)

21) 이수환, 앞의 책, 2001, 378쪽.

〈표 2〉 『疏行日錄』 내 「同苦錄」 수록 류치명 문인 명단

직임	이름	자	호	본관	생몰년	비고	문인록
掌議	金遇洙	景淵	下齋	義城	1804~1877	1835년 생원시, 호계서원 휘철에 저항하다 투옥	44
疏色	李震相	汝雷	寒洲	星州	1818~1886	1849년 생원시, 서원휘철 및 척사 운동 참여	183
	金道和	達民	拓庵	義城	1825~1912	1896년 안동의진 2대 의병장	262
	柳建欽	剛仲	廣林	全州	1825~1891		257
寫疏	金平壽	天老		義城	1825~1891		254
	許 鑄	誨民		河陽	1830~?		310
陪疏	金爽洛	景保	靜窩	義城	1821~1895		214
都廳	柳建鎬	彝執	石下	全州	1826~1903		276
	金馮林	鳴會		義城	1827~?		281
	權世淵	祖源	星臺	安東	1836~1899	1895년 안동의진 1대 의병장	390
	李承穆	君顯		固城	1837~1873	이상룡의 아버지	392
	李炳夏	安叟		眞城	1830~?		321
治疏	李 王集	元振	平泉	固城	1822~1895		215
	柳基鎬	鞏甫	石隱	全州	1823~1886		227
	金養鎭	正伯	愚軒	義城	1829~1901		303

이를 〈표 2〉와 비교해 본다면 서원휘철 반대 만인소에 참여한 안동 유림의 대부분이 호계서원 운영을 주도하였던 류치명의 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호계서원은 실제 소행의 발의부터 실행까지를 주도하며, 서원휘철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다. 6월 15일 상소는 봉입되었지만, 대원군의 강한 경고와 함께 무력으로 해산되고 만 것이다.

결국 서원은 휘철의 수순에 들어갔다. 만인소 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도남 서원은 7월 9일 휘철되었지만, 호계서원 휘철은 유생들의 반발로 쉽게 되지 않았다. 그들은 열한 차례의 휘철 공문에도 강한 저항을 이어갔으며, 결국 7월 25일에는 김우수, 류치임, 金鎭大, 김평수, 權進博, 류치호 등 6명이 관청에 불러가 구타를 당한 후 투옥되었다. 김홍락도 휘철을 거절하는 뜻을 거듭 밝히자 안동부사는 8월 2일 아침 관권을 동원해 이황·류성룡·김성일의 위패

를 사당 뒤에 묻었고, 9월 9일에는 廚司까지 혈어 호계서원을 완전히 해체하였다.²²⁾ 류치명 문인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림은 호계서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국정운영의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서원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수백 년을 이어 온 학문적 정체성과 결속력까지 와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호파를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은 19세기 후반의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맞서 호계서원을 구심점으로 학적·인적 관계망에 기반한 조직력을 강화해 갔으며, 몇 년 뒤에는 강당을 복원해 강회를 이어가는 등 서원 복설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토록 서원 훼손을 반대하고 복설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서원으로 상징되는 正學을 지켜 유교적 가치관과 사회 질서가 부정되고 있는 현실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1856년 호계서원 강회에서 집례를 맡았던 李敦禹(1807~1884)는 1832년(순조 31)부터 조부 李秉運의 권유로 류치명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대표 제자가 되었다.²³⁾ 1850년(철종 1) 문과에 급제한 이돈우는 이후 몇몇 관직을 제수 받았으나 대부분 거절하였고, 스승의 학문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고종 대에도 흥문관수찬·형조참의·승정원동부승지 등 몇몇 관직에 제수되었으며, 1877년(고종 14)에는 副護軍의 위치에서 학문의 부흥을 포함해 임금의 도리에 관한 3강 9목의 상소를 올려 “진달한 바는 마땅히 가슴속 깊이 유념하겠다”는 고종의 비답을 받기도 하였다.²⁴⁾

세 번째는 학문을 일으키는 興學입니다. ...(중략)... 각 서원을 철폐한 뒤로는 선비들이 경전을 끌어안은 채 가서 의지할 곳이 없고 유림은 적막해져 元氣가 막혀 통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이미 성스러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

22) 권오영, 앞의 책, 2003, 373쪽.

23) 『肯庵集附錄』, 「年譜」.

24) 『고종실록』 권14, 고종 14년 3월 4일(경신) ; 『승정원일기』 고종 14년 3월 4일(경신) ; 『肯庵集』 권2, 疏 「應旨陳三綱九目疏」. 그가 제시한 3강 9목의 각 조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서양 오랑캐들이 틈을 엿보고 있어서 형세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이 학문을 밝히지 않으면 이단의 무리가 횡행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 학문은 멸절시키기가 어렵고 저 가짜 학문은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 道를 힘써 행하여 더욱더 빛나고 밝아지게 하면 저들의 邪說은 마치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중략)... 이어 팔도에 사액서원을 다시 설치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의 마음과 선비들의 취향이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서 저절로 성취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재주와 기예가 부쩍 자라나고 선발에 대한 영예가 구름처럼 피어오를 것이니, 이들을 뽑아다가 조정에서 논의하여 재주에 따라 직책을 주어 각자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이돈우는 상소에서 '興學' 즉 학문의 부흥을 시대의 급무로 꼽으며, 그 방안으로 과거제의 개선과 함께 서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서원이 휘철된 이후 선비들이 학문 진작을 위해 의지할 곳이 없고 유림은 적막해져 元氣가 막혔다'고 하며 서원 휘철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문을 밝히지 않으면 외세의 침입을 물리칠 수 없으며, '우리의 道를 힘써 행하여 더욱 빛나고 밝아지게 하면 邪說은 눈 녹듯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하였다. 이는 정확을 지키는 것이 척사의 핵심이라는 영남유림의 전통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하여 '팔도에 사액서원을 다시 설치하여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의지할 곳이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원 복

綱	目
(1) 體天(천도를 실천할 것)	① 立志(뜻을 세울 것) ② 居敬(마음을 바르게 해서 품행을 닦을 것) ③ 納諫(간언을 받아들일 것)
(2) 順天(천심에 순응할 것)	④ 恤民(백성들을 보살필 것) ⑤ 尙儉(검소함을 숭상할 것) ⑥ 愷公(공도를 넓힐 것)
(3) 畏天(천명을 두려워할 것)	⑦ 立綱(기강을 세울 것) ⑧ 斥邪(邪道を 배척할 것) ⑨ 興學(학문을 부흥시킬 것)

설을 학문 부흥의 효과적 방법으로 꼽았다. 이 같은 그의 견해는 호계서원 복설을 최우선에 두었던 동문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²⁵⁾

IV. 척사만인소의 참여와 안동의병 주도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개항은 현실이 되었고, 조선은 전통적인 중화 질서와 서구의 만국공법 질서 사이에 놓인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고종은 문호개방을 통한 개화 정책을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불평등한 통상 관계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외 교류를 확대해 갔다. 다수의 보수 유림은 국정운영에 불만을 표하며 척사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1877년 이돈우가 올린 '3강 9목'에는 국방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척사의 시행과 서양 재화의 유통과 사용을 엄격히 금하길 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는 영남유림을 포함한 재야 유림의 보편적 인식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880년 일본과의 통상조약 시정을 위해 수신사로 파견되었던 金弘集(1842~1896)이 가져온 『朝鮮策略』이 조정을 비롯해 전국에 유포되었다. 고종은 러시아를 견제하고 자주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조

25) 서원 복설 문제는 이후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유생들은 시무책을 건의할 때나, 正學인 유교를 지키자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제나 서원 복설을 청원하였다. 또 1877년 겨울에도 이들을 중심으로 서원 복설을 청하는 대규모 상소 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들은 소수로 추대된 권연하가 병을 이유로 물러나자 예천의 朴周鍾(1813~1887)을 소수로 뽑아 소행을 강행하였고, 이듬해 1월 25일 만인소를 올렸다(권오영, 앞의 책, 2003, 377쪽; 김도형, 「19세기 후반 河回 "屏儒"의 家學과 斥邪 활동」,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2014, 25~27쪽). 이에 고종은 "이것이 어찌 갑자기 의논할 일이겠는가? 그 대들은 물러가 학업에 힘쓰라"는 비답을 내렸다(『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1월 25일(을해)).

선책략』에 담긴 ‘親中國－結日本－聯美國’의 외교 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미국과의 통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유림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으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에서는 조정의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집단적인 척사운동을 준비하였다.²⁶⁾

1880년 11월부터 도산서원에서 척사만인소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영남 유림의 통합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도산서원과 이황의 후손들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이었다. 11월 26일 안동향교에서 열린 도회에서 李晩孫(1811~1891)이 소수로 추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柳必永·金碩圭·김양진·黃蘭善·이진상 등 류치명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상소 준비를 이끌었다. 그리고 명망 있는 유림들에 의해 소초가 작성되었는데, 김도화도 『조선책략』과 외국과의 통상에 대한 자신의 척사론을 정리해 ‘사설을 배척하는 상소[斥邪說疏]’를 작성하였다.²⁷⁾

이 상소에서 그는 『조선책략』이 조정에 전해져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를 ‘妖書’로 규정하고 그 내용은 ‘誣妄’하여 믿을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특히 “耶穌가 天主에 있어서, 얼굴이 비록 바뀌긴 했으나 그 술책은 일치하고 名目이 비록 구별되지만 그 실체는 하나입니다”고 하며 ‘야소교’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전통적인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세와의 통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였다.

김도화는 『조선책략』의 핵심인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야소교로 인한 풍속의 문란을 경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6) 1881년 척사만인소의 작성 경위와 전개 양상에 대해서는 ‘권오영, 「1881년의 嶺南萬人疏」, 『尹炳奭教授華甲紀念韓國近代史論叢』, 지식산업사, 1990 ; 정진영, 앞의 논문, 1997 ; 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2020’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서술은 위 연구성과를 종합·정리한 것이다.

27) 『拓菴續集』 권2, 疏 「斥邪說疏」 ; 『국역 척암선생문집』 7, 한국국학진흥원, 2023, 106~114쪽.

私擬冊子(『私擬朝鮮策略』)에 수록된 야소에 대한 설은 그 몰래 품은 모략이 모두 재화를 빼앗고 여색을 음란하게 하는 데에 있으니, 저들이 재물을 넉넉히 하고 백성을 풍족히 한다는 말과 병사를 강하게 하여 적을 제압한다는 명목은 외면을 꾸미고 진정한 속내를 감추어서 사람을 속이고 유혹하는 바탕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중략)… 재화를 뺏는 것은 그래도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색이 음란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실로 천하 국가의 흥망이 관계되는 바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중략)… 사설을 그치게 하는 근본은 유학을 扶植하는 데에 있고 도를 보위하는 근본은 성학을 講明하는 데에 있으며, 성학의 요체의 경우는 先正臣 이황이 지은 『성학십도』에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통상으로 인한 위험성을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일로 평가하고, 풍속의 문란을 국가의 흥망과 연결한 그의 주장은 당시 국제관계 및 정세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김도화는 보수 유림의 보편적 인식과 궤를 같이하며 이황의 『성학십도』를 현실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유학의 수호를 통한 사학의 소멸’이라는 전통적 사고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학을 통해 이상정으로 이어진 퇴계학맥을 접하였고,²⁸⁾ 1849년(헌종 15) 25세에 류치명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스승을 통해 학문을 심화시켜 갔고, 호계서원 강회에서 임원을 맡는 등 유림 내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류치명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敍傳」을 지었으며, 김홍락과 함께 『정재집』을 교정하는 등 스승의 학문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고 1871년의 서원훼철 반대 만인소에도 적극 참여하며 현실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통해 김도화의 척사론이 호계서원을 구심점으로 한 영남유

28) 그의 증조인 金垸은 이상정의 문인이었고, 조부 金弼秉역시 이상정의 문인이었던 金宗德에게 수학하였다. 부친 金若洙는 정종로의 손자이자 남한조의 외손이기도 한 鄭象觀에게 수학하며 그의 사위가 되었다. 김약수 후에 이상정의 손자 李秉運에게 나아가 학업을 닦았다(徐錫弘, 「拓菴 金道和 研究」, 『안동한문학논집』 4, 안동한문학회, 1994, 255쪽).

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1881년 1월, 수습 통의 소초를 검토한 결과 소론인 姜晉奎의 소가 채택되었고,²⁹⁾ 2월부터 4월 말까지 4차에 걸친 척사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류치명의 문인들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류기호는 상소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문중과 서원의 지원금 납부를 독려하였고, 2차 ~ 4차 상소에서는 金祖永, 김석규, 金鑣淳이 각 상소의 소두를 맡아 척사운동을 이끌었다.³⁰⁾ 이 과정에서 소수 등 상소의 주도자들이 처벌받기도 하였지만,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한 강한 배척에 공감한 전국 의 유생들은 당론과 지역을 초월한 연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영남의 척사 만인소에서 촉발된 전국적인 상소운동은 그해 8월 대원군의 서자 李載先을 추대하려고 시도한 安驥泳의 역모 사건에 남인이 연루된 것을 계기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³¹⁾

이후 영남유림의 척사운동은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그해 11월에 내려진 단발령을 계기로 적극적인 저항 즉 의병운동으로 발전하였다.³²⁾

29) 권오영은 남인의 본거지인 영남에서 소론 강진규의 소를 채택한 것은 소초의 내용이 현실 인식을 잘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야 세력을 결집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권오영, 「유치명 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조선 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79쪽). 이광우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소초를 제출한 사람은 안동의 강진규, 榮川의 김석규, 의성의 金鑣善, 성주의 宋仁護·李種杞·李承熙 등이었다. 이광우는 강진규의 소초가 선정된 이유를 문과 급제 후 예조참판을 지낸 그의 경력으로 다른 소초 작성자들에 비해 서양 세력에 대한 식견이 남달랐기 때문으로 보았다(이광우, 앞의 논문, 2020, 105~106쪽).

30) 金鑣淳은 류치명의 문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及門諸子錄」과 「定齋門人錄」에는 빠져있다.

31) 정진영, 앞의 논문, 1997, 220~221쪽.

32) 이 시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의병운동과 관련해서는 이규연(李玼淵, 1847~1925)이 작성한 『乙未義兵日記』를 활용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중 김희곤, 「안동 의병장 拓菴 金道和(1825~1912)의 항일투쟁」, 『역사교육논집』 23, 1999; _____, 「西山 金興洛(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15, 2000; 권오영, 위의 책, 돌베개, 2003; _____, 「19세기 후반 영남 理學의 실천적 변모—창의대장 權世淵(1836~1899)의 위정척사이념의 실천—」, 『한문학보』 18, 2008;

1894년 5월 동학농민전쟁이 확대되자 조선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도 제물포조약과 갑신정변 이후 체결된 텐진조약을 근거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고, 6월 21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한 뒤 곧이어 청일전쟁을 일으켰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내정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청과의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요동 반도의 할양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일본의 만주 진출을 경계하며 독일·프랑스와 함께 삼국간섭을 가했고, 그 결과 요동 반도는 다시 중국에 반환되었으며 조선에서의 영향력 또한 약화 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은 러시아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갑오개혁 정부는 일본의 후원 아래 단발령 등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11월 15일 내려진 단발령은 11월 27일 안동에 전해졌다. 이에 11월 29일 예안통문을 시작으로 안동에서는 의병 봉기가 논의되었다. 이어 三溪書院의 삼계통문, 靑城書院과 鏡光書院이 청경통문을 발표하였다. 삼계통문에는 김홍락이 발의자로 참여하였는데, ‘머리는 한번 깎이면 영원토록 오랑개가 되는 것’이라고 하며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길 촉구하였다.³³⁾ 청경통문에서는 ‘오백년 衣服文物之鄉에 하루 아침에 단발은 불가’라고 선언하며, 12월 3일 봉정사에서 모일 것을 통지하였다.³⁴⁾

12월 1일 호계서원에서도 통문이 작성되었다.³⁵⁾

김상기, 『한말 정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의 연구를 주로 참고해 사건의 경위를 서술하였다.

33) 김희곤, 앞의 논문, 2000, 10~11쪽.

34) 김상기, 위의 책, 2009, 199~200쪽.

35)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이광연의 『乙未義兵日記』에 의거 호계통문의 발의는 12월 2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895년~1896년에 발의된 통문·격문·포고문 등 다양한 문서를 수록한 『乙丙隨得錄』에는 호계통문 작성일이 12월 1일로 적혀 있다(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 2012 과 스토리테마파크(http://story.ugyo.net/front/sub01/sub0103.do?chkId=S_KHJ_4208#self)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호계통문은 12월 1일 작성되었고, 다음날 공식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호계서원 통문 을미년(1895) 12월 초1일

오른쪽은 통유하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환난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와 강상의 큰 변고에도 한 손으로 부지하지 못한다면 몸이 그를 따라서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근일 서울에서 온 소문은 이미 지극하여 할 말이 없는데다, 관찰사의 고시를 보니 불길한 기운의 포박함이 코앞에 박두하였습니다. 하늘을 이고 땅을 디딘 모든 자가 함께 입안의 밥을 뱉고 피를 끓일 일이니, 그렇다면 한 소리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의 의견만이 아니라 실로 한 고을 한 지방 한 나라의 의견이며, 또한 온 천하 만세의 의견입니다.

아아, 원통합니다. 예법의 몸이 비린내 나는 오랑캐가 되고, 추로의 예속이 바뀌어 도깨비의 풍속이 되었습니다. 비록 못이 기울고 바다가 뒤집히는 형세 속에서도, 한 줄기 갈잎으로 버틸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실날같은 목숨이 이 광대한 하늘 아래 밭 디딜 땅 한 조각도 없게 되었다면 어찌 끓는 물이라도 달려가지 않겠으며 가마솥이라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달 초 3일로 본부 향교에서 모이기로 정했습니다. 이 의거에는 상하도 없고 노소도 없으니, 진실로 몸이 있다면 자기의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약속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는 자는 더러운 무리입니다. 앞도려 바라건대, 각자 떨쳐 일어나서 머리를 모으고 서로 의논하여 오백 년 아름답게 배양한 은택을 우리러 보답하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습니다.

호계통문에서는 단발령 등의 조치를 ‘하늘을 이고 땅을 디딘 모든 자가 함께 입안의 밥을 뱉고 피를 끓일 일’이라 규정하며, 이는 한 고을과 한 지방을 넘어 천하의 의견이라 하였다. 그리고 ‘예법의 몸이 비린내 나는 오랑캐가 되고, 鄒魯의 예속이 바뀌어 도깨비의 풍속이 되었다’고 한탄하며, 유교적 예법이 무너진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이어 안동부에서 개최될 모임에 ‘상하도 없고, 노소도 없이’이 모두 참여하길 권하면서 ‘각자 떨치고 일어나 머리를 모으고 서로 의논하여 오백 년 아름답게 배양한 은택을 우리러 보답할 것’을 촉구하였다.

호계통문에는 都有司 김도화를 시작으로, 齋有司 金潤樸 외 김흥락, 金常

壽, 柳止鎬, 김양진 등의 이름이 실려있다.³⁶⁾ 이들은 류치명의 문인으로 강희와 서원 훼철 반대 상소운동 참여 등을 통해 수년 전부터 호계서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오고 있었다. 그 결속력을 바탕으로 단발령에 반대하는 안동 유림의 의병 봉기 움직임에 맞서 빠른 시간에 공론을 모아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12월 3일 봉정사 회합에 이어 4일 안동부에서는 천여 명이 참석한 향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호계서원에 都所를 차리고 6일 창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2월 6일 아침 안동부 三隅堂에서 1만여 명이 모여 의병을 조직하였다. 이때 首座에는 김홍락, 류지호, 김도화와 함께 하회의 柳道性和 柳芝榮 등이 함께 앉아 영남 유림이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자리에서 권세연이 의병대장에 추대되었고, 그는 향교에 본부를 차린 뒤 의병 동참을 촉구하는 격문을 발표하였다.³⁷⁾

의병의 안동부 장악에 위협을 느낀 관찰사 金奭中은 도주하였지만, 곧 대구부의 관군을 이끌고 안동부 탈환을 시도하였다. 안동의병은 맞서 싸웠지만 12월 16일 안동부는 다시 관군이 접수하였고, 김석중은 단발을 강요하며 의병을 탄압하였다. 이 가운데 예안에서는 李中麟이 이끄는 의진이 편성되었고, 예천에서는 朴周大가 의진을 형성하였다. 권세연 또한 의진을 수습하며 반격을 준비하였다. 김석중은 상황의 불리함을 느껴 다시 안동부를 빠져나갔지만, 문경의 이강년 의진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권세연의 의진은 1월 13일 안동

36) 『乙未義兵日記』(李絳淵), 『고문서집성 41-안동 주촌 진성이씨편(1)-』(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고문서자료관: https://archive.aks.ac.kr/insp/item.do#view.do?dataId=G002+AKS+KSM-XG.1895.0000-20101008.B027a_042_00386_XXX, 1면)

37) 권오영은 이때 발표한 권세연의 격문은 임진왜란 때 김성일의 招諭文에 담긴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김홍락과 류지호 등이 창의격문 작성과 교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았다(권오영, 「19세기 후반 영남 理學의 실천적 변모-창의대장 權世淵(1836~1899)의 위정척사이념의 실천-」, 『한문학보』 18, 2008, 1191~1192).

부에 무혈입성하였고, 환호 속에 향교에 본부를 차리고 진열을 정비하였다.

안동부를 되찾은 의병부대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의병부대를 향한 의연금 기부로 이어졌다. 1월 16일 향회에서 2천 냥의 의연금이 모였고, 21일 다시 향회를 열어 안동 일대의 각 문중과 서원 등에서 의연금을 기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때 향교와 서원 등 40곳에 할당된 의연금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1896년 향교·서원·사우별 안동창의소 의연금 할당 현황³⁸⁾

	할당 의연금	향교·서원·사우 등
1	600냥	鄉校
2	800냥	虎溪
3	600냥	三溪, 臨川
4	520냥	龜溪
5	400냥	屏山, 泗濱, 銅陽壇
6	320냥	臨湖, 默溪, 高山, 鏡光
6	240냥	陶淵, 柏鹿, 歧陽
7	200냥	青城, 龍溪, 道筰, 花川
8	160냥	明湖, 魯林, 鶴岩, 周溪, 丹阜, 汶陽, 鶴山
9	80냥	西澗, 流岩, 魯東, 梧溪
10	60냥	洛淵
11	40냥	道溪, 道淵, 松川, 道林, 筰潭, 公山, 西山, 龍岩, 東山
	8,980냥	40곳

총 8,980냥의 군자금을 의연토록 하였는데, 호계서원의 할당 금액이 800냥으로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향교의 600냥보다 많은 것으로 할당 금액이 가장 적은 곳에 비해 20배가 많은 금액이다. 이를 통해 당시 안

38) 이 표는 우인수, 「경상도 안동 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202, 19쪽의 <표 3>을 기본으로 「安東倡義所各門中分排記(丙申 正月)」의 내용을 보충해 재구성한 것이다(「安東倡義所各門中分排記(丙申 正月)」 『고문서집성 41-안동 주촌 진성이씨편(Ⅰ)』-(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한국고문서자료관 : https://archive.aks.ac.kr/link.do?dataUCI=G002+AKS+KSM-XG.1896.0000-20101008.B027a_042_00357_YYY, 13~15면).

동에서 호계서원이 가진 위세와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³⁹⁾

이와 함께 총 152개 문중에도 11,882냥의 의연금을 할당하였다. 하회의 풍산류씨 문중과 유곡의 안동권씨 문중, 수곡의 전주류씨 문중에 각 1천 냥씩의 의연금이 할당되었다. 이어 천전의 의성김씨 문중이 800냥이었으며 금계의 의성김씨 문중, 범흥의 고성이씨 문중, 해저의 의성김씨 문중이 500냥씩을 할당받았다. 즉 참여 문중의 4.6%를 차지하는 7개 문중이 전체 의연금의 44.6%에 달하는 5,300냥을 부담한 것이다. 이는 당시 7개 문중의 영향력과 성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풍산류씨를 제외한 다섯 문중은 모두 호계서원과 학맥·훈맥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곳으로, <표 3>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월 29일 권세연은 의병장을 사임하였다. 이에 김도화가 2대 대장으로 선출되었고, 김홍락은 지휘장을 맡았다. 이후 안동의병은 태봉의 일본 병참부대 공격을 목표로 서상렬 의진을 비롯한 인근의 의병들과 연합 작전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연합 의진의 조직화와 무기의 열세·훈련의 부족 등으로 일본군에게 거듭 패전하다가 의병 해산을 권하는 고종의 효유문을 받고 6월 초 해산되었다.

김도화는 의병을 해산한 후 自明疏를 작성해 일본이 국정을 장악해 가는 데 큰 우려를 표하며 ‘일단 의병을 남겨두고 군량미를 지급해 별일이 없으면 이들을 훈련하게 하고, 일이 생기면 이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열국에 명성과 위세를 떨쳐 끝없이 비상사태를 대비하게 한다면 실로 만전의 계책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하며 忠情에서 비롯한 의병운동의 가치를 알아주길 희망하였다.⁴⁰⁾

1895년 12월 이후 1896년 6월까지 이어진 의병운동 과정에서 호계서원은 인적·물적으로 이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먼저 호계서원은 최초의 도소

39) 우인수, 앞의 논문, 2022, 19~20쪽.

40) 『拓菴別集』 권1, 疏 「破兵後自明疏」; 『국역 척암선생문집』 9, 한국국학진흥원, 2023, 494~499쪽.

로 선정되어 의병부대를 조직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또 권세연과 김도화는 의병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고, 김홍락 등 많은 류치명의 문인들은 의병운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직접 참여하며 시대의 고난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표 3>을 통해 확인된 호계서원의 위세와 관련 문중의 영향력은 의병을 규합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과 1907년 군대해산을 거치며 국내의 지식인들은 계몽운동과 의병전쟁이라는 양 갈래에서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였다. 이때 안동에서는 류인식, 이상룡 등 혁신 유림을 중심으로 협동학교가 설립되며 활발한 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학맥을 기반으로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여러 면의 지원을 받아 가산서당에 협동학교를 설립하였다.⁴¹⁾ 호계서원은 19세기 말 휘철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서원이라는 공간이 사라졌다고 해서 수백 년을 이어 온 서원의 위상과 명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호계서원은 휘철된 이후에도 의병운동의 구심점으로 기능하였고, 20세기 초에도 영남유림의 다양한 활동에 유효한 의미로 존재하고 있었다.

V. 맺음말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는 그 어느 때 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고종의 즉위로 정권을 잡은 대원군은 새로운 인적 기반으로 영남 남인을 주목하였고, 그들 또한 대원군의 보수적 성향과 척사의 입장에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주도로 서원휘철이 시행되자 영남 남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재야 유림은 거센 반대를 이어가며 대원군에게 등을 돌렸다. 이 가운데 병인양

41) 이계형, 「한말 안동지역 혁신 유림과 신민회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요와 신미양요를 겪으며 외세와의 무력 충돌은 현실이 되었고, 親政을 시작한 고종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며 조선은 만국공법의 국제질서 속으로 편입되었다. 외국과의 통상과 개화 정책에 반대한 영남유림은 강경한 척사론을 내세우며 상소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들의 저항은 의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호계서원은 국내의 정세변화에 대응한 영남유림의 활동에서 구심점으로 기능하였다. 18세기 이후 많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지만, 호계서원은 안동을 대표하는 학문적 입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19세기에 도 이황 이후 김성일에서 이상정-류치명으로 이어진 학맥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강회가 이뤄졌다. 자발적으로 개최된 소규모 강회도 있었으며, 경상감사와 안동부사의 지시로 열린 대규모 강회도 있었다. 그들은 강독과 토론 등을 거치며 학맥으로 계승된 퇴계학을 깊이 이해하였고,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나이가 강회 후 행해지는 향음주례를 통해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해 갔다. 이 과정에서 류치명 문인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상적 기반을 공유하며,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조직력을 갖추어 갔다.

1871년(고종 8)에 내려진 서원훼철령에서 호계서원이 그 대상에 포함되자 즉시 서원훼철에 반대하는 대규모 상소 운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상주의 도남서원과 함께 진행한 서원훼철 반대 만인소를 주도한 이들은 류치명의 문인들이었으며, 이들은 소행의 발의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서원훼철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의 강한 의지로 만인소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고, 호계서원은 그해 9월 9일 최종 훼철되었다. 영남유림은 당시 국내외 혼란과 변화의 원인을 유교적 가치관과 질서가 부정되는 현실에서 찾으며, 정학을 지키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서원복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돈우는 고종에게 '3강 9목'의 상소를 올리며 서원훼철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였고, 척사를 위해서라도 팔도에 사액서원을 다시 설치해 학문을 부흥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림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개항 이후 개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어 청·일본·미국과의 외교 정책을 중요하게 다룬 『조선책략』이 유포되었다. 영남유림은 조정의 정책에 거세게 항의하며 집단적인 척사운동을 시작하였다. 1880년 11월부터 척사만인소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 또한 상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김도화는 소초를 작성하며 『조선책략』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야소교와 통상 등 풍속의 문란을 염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세의 변화를 판단하는 부분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영남유림이 처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도화 외에도 류치명의 문인들은 상소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거나, 2차 척사만인소부터 소두를 맡는 등 척사운동을 이끌어 갔다.

1895년 11월에 내려진 단발령은 수년간 축적되어 온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과 유교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명감이 의병 봉기라는 영남유림의 집단적인 무력 저항으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때도 호계서원은 호계 통문을 시작으로 의병운동을 인적·물적으로 주도하였다. 최초의 도소가 호계서원에 차려졌고, 1대·2대 대장을 권세연과 김도화가 맡으면서 의병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수많은 동문이 의병운동을 지원·참여 하며 큰 힘이 되어주었다. 여기에 호계서원과 관련한 인적 구성원의 위세와 경제적 영향력 등은 안동 의병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6세기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수많은 서원이 건립되었고, 조선후기 정치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서원의 본래 기능과 위상 또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8세기 이후 다수의 서원은 先賢祭享과 학문연구를 위한 공적 공간이기보다는 특정 당파 또는 문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적 공간이자 전세와 부역을 면제받는 특권적 공간으로 존재하였다. 이에 대원군은 집권 초부터 사회폐단을 시정하는 중요 개혁 중 하나로 서원훼철을 추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호계서원은 달랐다. 이황과 함께 류성룡·김성일을 배향한 학문적 위상은 오랜 기간 안동의 대표 서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충분한 것이었고, 19세까지 지속된 활

발한 강학활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후반 국내외 정세변화 속에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유림은 학문적 정체성과 결속을 바탕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호계서원은 휘철이라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거스를 수 없었다. 그러나 호계서원을 통해 이어진 학문과 정신은 이후 영남유림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20세기 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참고문헌】

1. 사료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肯庵集』, 『頤齋集』, 『訂窩集』, 『定齋集』, 『拓菴集』

『疏事始末』, 『疏行日錄』, 『乙未義兵日記』, 『乙丙隨得錄』, 『虎溪講錄』

2. 저서

권오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도화, 『국역 척암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23.

김상기, 『한말 정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지은, 『조선후기 류치명의 시대인식과 문인집단』, 경인문화사, 2022.

김홍락, 『국역 서산선생문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일조각, 2001.

한국국학진흥원, 『(국역)조선후기 서원일기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국학진흥원, 2007.

3. 논문

권오영, 「19세기 후반 영남 理學의 실천적 변모 - 창의대장 權世淵(1836~1899)의 위정척사이념의 실천 -」,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_____, 「19세기 영남유림의 사상적 동향」, 『민족문화논총』 7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18.

금장태, 「19세기 한국성리학의 지역적 전개와 시대인식」, 『국학연구』 15, 한국국학진흥원, 2009.

김도형, 「19세기 후반 河回 “屏儒”의 家學과 斥邪 활동」, 『퇴계학과 유교문화』 55,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4.

김자운, 「조선후기 호계서원(虎溪書院)의 위상과 강학활동」, 『유학연구』 55, 충남

- 대 유학연구소, 2021.
- 김종석, 「한말 영남 유학계의 동향과 지역별 특징」,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 김희곤, 「안동 의병장 拓菴 金道和(1825~1912)의 항일투쟁」, 『역사교육논집』 23, 역사교육학회, 1999.
- _____, 「西山 金興洛(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19-2, 교육사학회, 2009.
- 서석홍, 「拓菴 金道和 研究」, 『안동한문학회』 4, 안동한문학회, 1994.
- 설석규, 「조선시대 嶺南儒生の 公論形成과 柳道洙의 萬人疏」,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9.
- 우인수, 「경상도 안동 虎溪書院의 건립과 위상」,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이계형, 「한말 안동지역 혁신 유림과 신민회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한국근현대사학회, 2022.
- 이광우, 「안동 유림 李壽琰의 『疏廳日錄』을 통해 본 1881년 嶺南萬人疏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59,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 정재훈, 「호계서원(虎溪書院)의 강학 활동과 학풍」,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정진영, 「19세기 후반 嶺南儒林의 정치적 동향-萬人疏를 중심으로-」, 『지역과역사』 4, 부경역사연구소, 1997.
- 최광만,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2-1, 교육사학연구, 2012.

Abstract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in the late 19th century and the response of Hogye Seowon(虎溪書院)

Kim, Ji-eun*

Hogye Seowon, one of the Andong's representative Confucian academies, served as the center of the activities of Confucian scholars of the Yeongnam in response to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 the late 19th century. After Kim Seong-il(金誠一), the writers who inherited the academic line that led to Lee Sang-jeong(李象靖) and Ryu Chi-myeong(柳致明) established their identity based on the academic mission and superiority of continuing the Toegye academic line. They strengthened their solidarity by leading lectures centered on Hogye Seowon and expanded their personal network. Based on this, in the late 19th century, a campaign against Seowon demolition was launched to protect Neo-Confucianism in response to the domestic crisis of the Seowon demolition, the spread of Catholicism, and an armed conflict with foreign powers. Furthermore, it led an organized and united movement called Cheoksa(斥邪) Maninso(萬人疏) against the situation in which trade with Japan and the West became a reality and threatened Christianity. When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was issued in 1895, Confucian scholars of the Yeongnam organized and led the righteous army and expressed their theory of Cheoksa as an active resistance movement using

* Assistant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jjeunkim@knu.ac.kr

force. Hogye Seowon Confucian Academy was at the center of all these processes. Hogye Seowon Confucian Academy was an academic pride to them and became a human and material basis.

In the late 19th century, Hogye Seowon Confucian Academy could not resist the ordeal of demolition. However, the scholarship and spirit that continued through Hogye Seowon still had a great influence on Yeongnam Confucian scholars and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20th century.

Key word : Hogye Seowon, demolishing of seowons, Maninso, Cheoksa, Righteous Army Movement

논문 투고일: 2023. 11. 15 심사 완료일: 2023. 11. 30 게재 확정일: 2023. 12. 01

안동유림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

강 윤 정*

- I. 머리말
- II. 의병항쟁과 호계서원
- III. 협동학교 설립과 호계서원
- IV. 망국이후 협동학교 계열의 항일투쟁
- V. 맺음말

【국문초록】

안동유림들은 의병항쟁기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의병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고, 호계서원에 본부를 두고 무력으로 항쟁하였다. 이 시기 호계서원은 공고한 집결의 장이었다. 그러나 협동학교 설립을 계기로 그 공론화의 장에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호계서원을 유지하려는 쪽과 새로운 학교를 세우려는 쪽으로 나뉘어 신규 유림은 대립하였다. 그러나 호계서원의 재원이 협동학교로 흡수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는 호계서원이 지니고 있었던 영향력의 상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러한 흐름은 항일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이후 만주망명을 선택한 대다수의 유림들은 협동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안동유림의 만주지역에서의 활약은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 첫째, 이들의 노선은 방략적 측면에서 독립전쟁론이, 이념적 측면에서 공화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의병의 무장항일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의 경험을 아울러 낸 것이다. 둘째, 가족공동체의 역할이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이후 지속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없었던 만주에서 이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호계서원-협동학교-만주신흥 무관학교를 중심 축으로 전개되는 안동유림의 항일투쟁사에서 호계서원은 그 출발

* 안동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sanman0115@daum.net

로서 사회적·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주제어 : 호계서원, 안동유림, 의병항쟁, 협동학교, 만주망명, 무장항일투쟁

I. 머리말

한국 근대 시기 안동인의 항일투쟁은 1894년부터 1945년까지 다양한 이념과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그 시작은 위정척사론에 기초한 의병항쟁이었다. 첫 의병은 1894년에 있었지만, 안동 유림의 본격적 거의는 1895년(음)부터 시작되었다. 안동 유림의 의병항쟁은 중·후기 의병 시기에도 이어졌다. 을사늑약이 있었던 1905년에는 을사오적을 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국공법에 의거 해서라도 일본의 침략성을 단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만국공법'을 의리론의 시각으로 바라본 변화였다. 한편 1905년을 전후로 혁신 유림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현실 인식을 통해 근대적 개념의 '국가'와 '민족'을 인식하였으며, 민력양성(民力養成)을 위한 구국 계몽운동을 지향하였다.

1910년 국망 직후 안동 유림은 순국 자정과 만주 망명이라는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척사 유림은 임금의 신하가 된 자로 '적의 백성'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한 자진의 길을 택하였고, 혁신 유림은 만주 망명이라는 탄력적 선택으로 서간도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자가 의리론에 입각한 자진(自盡)으로 제국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면, 후자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20년대 들어서는 이들의 후속세대들이 다양한 이념과 방략을 수용하고 항일투쟁을 이어 나갔다.

이러한 안동 유림의 항일투쟁에서 호계서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연원에 해당하는 의병항쟁을 공론으로 끌어낸 사회적 공간이자, 실제 본

부로 활용된 물리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지금까지 안동인의 항일투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 글에서 중심에 두고자 하는 부분은 안동 유림의 항일투쟁에서 호계서원이 가지는 위치와 역학관계이다. 특히 호계서원을 기반으로 한 공고한 결집력에 균열을 야기한 신교육기관 설립, 즉 협동학교의 설립은 다각도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때문에 본 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동 유림은 호계서원을 중심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동의 동유(東儒, 혹은 虎儒)를 지칭하는 용어임을 미리 밝혀둔다.

II. 의병항쟁과 호계서원

개항기 안동 유림의 위정척사운동은 주로 상소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이는 의병항쟁으로 전환되었다. 안동지역에서 일어난 첫 의병은 1894년의 갑오의병이었지만, 안동 유림의 본격적 거의는 1895~1896년이었다. 안동 유림들은 갑오·을미 개혁기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한 척왜(斥倭)의 논리로 현실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른 거의(擧義)로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화이관(華夷觀)에 근거하여 일본을 이(夷), 혹은 금수(禽獸)로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인식 아래 일본의 침탈을 도(道)의 위기로 파악하고, 의병항쟁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예의문명에 대한 강한 자존의 표현임과 동시에 오도(吾道)를 지키기 위한 의지의 발로였다. 이는 안동의 전기 의병에서 일관되게 공유된 의식이다.¹⁾

그동안의 연구에서 안동지역 위정척사운동과 전기 의병(을미·병신년)은 정재(定齋) 류치명(柳致明)의 문인들로 형성된 ‘정재학파’를 중심으로 전개되

1) 강윤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강윤정, 『사적에서 만나는 안동독립운동』, 2013, 18~21쪽.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류치명의 직전 제자였던 서산 김홍락을 비롯한 척암 김도화 등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자의 역할을 넘어 병호시비(屏虎是非)의 과정에서 형성된 류치명 계열의 결속력이 운동사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17세기부터 꾸준히 형성되었던 동성마을을 세거지로 삼으면서, 마을을 넘어 문중과 혼반, 학맥으로 엮인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다. 의성김씨·전주류씨·한산이씨·고성이씨의 세거지인 임하·임동·일직·법흥이 그 중심지였다.²⁾ 이들의 결집에 호계서원은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근대 안동 유림이 전개한 의병항쟁사에서 호계서원은 공론의 장이자, 실제 항쟁 본부로서 기능하였다. 특히 전기 의병 시기 활동했던 유림들은 정재 류치명을 잇고 있는 호파(虎派)계열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줄고에서 일부를 밝혀두었다.³⁾ 여기에서는 의병항쟁 당시 호계서원이 공론 형성과 실제 항쟁의 공간으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중점에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 호계서원은 의병 거의를 위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구체적인 움직임은 거의를 중용하는 통문(通文) 발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단발령에서 촉발되었다. 단발령 문서가 안동에 도착한 시기는 1895년 11월 27일(양 1896. 1. 11)이었고, 이틀 뒤인 29일(양 1. 13)부터 의병을 일으키자는 통문이 돌기 시작했다. 안동지역에 발의된 통문은 현재 8개의 통문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예안통문」·「삼계통문」·「청경통문」·「청경사통」·「호계통문」은 창의(倡義)를 중용하는 것이고, 「안동격문」·「안동하리통문」·「안동의병소통문」은 의병항쟁의 당위성을 천명한 것이었다.⁴⁾ 이들 통문

2) 권오영, 「영남만인소」,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340~355쪽 ; 강윤정, 「定齋學派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0~24쪽.

3) 이는 강윤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4) 김희곤, 「西山 金興洛(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

은 1895년 을미의병 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삼계통문(三溪通文)」은 곽종석(郭鍾錫)·김도화(金道和)·김흥락(金興洛)·권진연(權晉淵)·강육(姜鏞) 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류치명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김흥락과 김도화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통문이지만, 본 고에서는 호계서원을 중심에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호계통문」은 을미년 12월 초 1일(양 1896. 1. 15)에 작성되었다.⁵⁾ 작성자로 기록된 인물은 ‘호계(虎溪) 도유사(都有司) 도사(都事) 김도화(金道和), 재유사(齋有司) 유학(幼學) 김윤모(金潤謨), 전임(前任) 전(前) 지평(持平) 김학락(金學洛), 유학(幼學) 김상수(金常壽), 전(前) 도정(都正) 유지호(柳止鎬)요, 회원(會員)으로 유학(幼學) 김양진(金養鎭)으로 확인된다. “이하는 모두 기록하지 못한다.”는 문구로 보아 이들 외에 수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통문에는 당시의 정국에 대한 극명한 우려와 함께 죽음으로 맞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죽음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윤리와 강상이 변화하는 형국을 맞아 몸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리론이 깔려있다. 이 시기까지 안동의 호유는 일본의 침략 상에 대한 인식보다는 단발령이 선포되면서 예의와 법도가 무너지는 데 대한 위기의식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 위기의식에 기초하여 의병 거의의 당위성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 의하여 안동부 향교에서 열리는 향회에 참여해 줄 것을 중용하였다.

죽고 사는 큰 문제가 걸린 것으로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는 것은 윤리 기강이 크게 변하게 됨에 한 손으로만은 그것을 부지할 수 없게 되니 자신의 몸을 던져 함께 죽으려는 것이다. 근일에 서신이 왔는데, 들리는 바는 이미 그 극에 달해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관찰사의 고시(告示)를 보니 요망한 기운이 크게 일어나 숨 쉬는 데까지 도달했다. 그렇기에 모든 하늘을 이고 땅에다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

근현대사연구회, 2000.

5) 『을병수등록』(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경북지역 의병자료』, 도서출판 선인, 2012, 270~271쪽).

두가 밥을 토하고 피를 뿌리며 한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살아서 보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한 고을, 한 도, 한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천하 만세의 견해인 것이다. 아 슬프고 애통하도대! 예의와 법도를 지켜온 몸이 변하여 비린내 나는 상태가 되며, 추로(鄒魯)의 풍속이 갑자기 바뀌어 귀신을 숭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저들이 비록 강과 바닷물처럼 뒤덮는 형세라 할지라도 갈대와 같이 약한 상태로도 저들에 대항할 수 있거든, 하물며 이처럼 잔약(孱弱)한 목숨으로 이 넓은 천하에 어느 한 곳이라도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없는 우리가 어찌 저 끓는 물에 뛰어들고 저 무서운 형틀을 밟고 지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달 초 3일에 안동부(安東府) 향교에서 서로 모이는 것이다. 이 의거는 상하(上下)도 없고 노소(老小)도 없으며 자신의 몸이 있다면 자기가 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약속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더러운 무리일 것이다. 바라는 바는 각자가 떨쳐 일어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위로는 우리의 열성조(列聖朝)께서 5백 년 동안 길러왔던 은택(恩澤)에 보답하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겠다.⁶⁾

둘째, 의병 창 의 과정에서 호계서원은 여론을 주도하였다. 호계통문은 발문 이튿날인 12월 2일부터 각지에 도착하였다.⁷⁾ 이공연의 을미의병일기에는 12월 2일,⁸⁾ 김정섭의 일록에는 12월 3일 도착한 것으로 기록하였다.⁹⁾ 우선 「청경사통」에서 제의한 대로 12월 3일(양 1896. 1. 17) 봉정사에서 40~50명의 유림 대표가 면회(面會)를 가지고, 거병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림 대표들은 이 봉정사 회합에서 안동부에 들어가 의병을 일으키자고 협의하였다. 이

6) 이공연, 『을미의병일기』, 을미년 12월 2일 (김희곤·권대웅 편저, 『한말의병일기-을미의병일기·적원일기』, 국가보훈처, 2003, 116~117쪽).

7) 이공연의 일기에 의하면 가장 먼저 발의된 통문이 「靑城通文」과 「鏡光通文」이며, 그 이튿날 도착한 통문이 「虎溪通文」이다.

8) 이공연, 『을미의병일기』, 12월 2일(김희곤·권대웅 편저, 『한말의병일기-을미의병일기·적원일기』, 국가보훈처, 2003, 116쪽).

9) 김정섭, 『일록』, 1895년 12월 초3일(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경북지역 의병자료』, 도서출판선인, 2012, 40쪽): 마을에서 서너 명이 면회에 참석하니, 모인 사람이 수백 명이었다. 禮安鄕校 통문과 호계서원 통문, 그리고 임천서의 사통(私通)이 이르렀는데, 모두 이 일 때문이었다.

날의 결의와 「호계통문」의 제의 대로 다음 날 안동부(安東府) 향교(鄕校)에서 유림대회의 성격을 띠는 향회가 열렸다. 여기에 1천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호계서원에 본부 또는 도소(都所)를 차리고, 12월 6일(양 1. 20)에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였다. 봉정사 면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도소를 설치한 것인데, 바꾸어 말하면 안동 의병 준비위원회인 셈이다.¹⁰⁾ 김정섭의 기록은 향회 시에 호계서원 인사들의 참여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나중에 전해 들으니, 모인 사람이 매우 많았는데 하회(河回)에서는 아래 윗 동네 합해 100여 명이, 풍산(豊山)에서는 30여 명이 왔으며 호계서원(虎溪書院) 쪽 각 집안에서는 석권(席捲)하여 왔다고 한다. 우리 가문에서는 단 5명뿐인데 다 더구나 한 고을에서 고립된 처지임에랴?¹¹⁾

이는 이후 지휘부 조직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안동의진의 초기 지휘부를 알려주는 <표 1>에서 그 주도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서산 김홍락과 척암 김도화의 문인들이다. 파록에 등장하는 46명의 인물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강 씨 3인, 권 씨 8인, 김 씨 14인, 류 씨 10인, 이 씨 10인이다. 이중 김 씨는 대부분 의성김씨로 확인되며, 류 씨 중 8인이 전주류씨이다. 의성김씨와 전주류씨가 초기 의병항쟁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봉화 유곡의 안동 권씨(권세연·권옥연), 안동 범흥동의 고성 이씨(이건·이중만·이중삼), 안동 와룡면 주촌의 진성 이씨(이의호) 등이 주요 지도층으로 참여하였다.¹²⁾

10) 김희근,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지식산업사, 2007, 93쪽.

11) 김정섭, 『일록』, 1895년 12월 초5일(『국역경북지역 의병자료』, 42~43쪽)

12) 강윤정, 「定齋學派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01~102쪽.

〈표 1〉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

직 임	성 명	직 임	성 명	직 임	성 명
大將	權世淵	招募將	權玉淵	從事官	金瑞洛
副將	郭鍾錫	都書記	柳廷鎬	“	柳昌植
參謀	柳淵博	“	李건(王+建)	出令	柳憲鎬
“	李相基	“	柳必永	“	金浩洛
“	柳善榮	“	姜 璜	中軍	柳 玩
“	權炳鍾	“	李廷佐	管糧	金鍾淵
“	金震林	書 記	李雲九	管財	金恒洛
內防將	金鎮懿	“	金夏林	募兵都監	-
外防將	姜담(金+覃)	“	金縉輝	有司	-
“	柳膺睦	“	柳淵楫	募糧都監	-
左翼將	李運鎬	“	金翰洛	有司	-
右翼將	權用鉉	“	李鍾萬	司兵都監	-
前鋒將	金翼張	“	李性求	有司	-
突擊將	權鎮淳	“	柳晦植	行負商都總	權敦淵
游擊將	金繪洛	整齊有司	金周秉	軍門都總	-
“	權仁述	“	金潤模	直 日	姜鳳元
石擊將	權在鍾	“	李萬求	“	李壽炳
斥候將	金鴻洛	從事官	李重三		

호계서원을 중심 공간으로 화이관과 의리론에 입각하여 의병항쟁을 주도하던 안동의 척사 유림은 1905년 을사늑약이 있자 상소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만도(李晩燾)·이중언(李中彦)·김도화 등이다. 상소문의 내용은 을사5적을 참하고, 만국공법에 호소해 일본의 침략성을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만도는 통감부 설치를 크게 우려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황실은 물론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이만도를 비롯한 안동 유림이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던 의식은 만국공법에 물어서라도 협박에서 나온 조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서구를 사(邪)로 규정하고, 금수로 여겼던 안동 유림의 인식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만국공법’이라는 새로운 국제여론을 인식하고, 이를 정통론적 의리론의 체계 속에 수용한 것이다.¹³⁾

Ⅲ. 협동학교 설립과 호계서원

위정척사에서 출발한 척사 유림의 의병항쟁에서 호계서원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호계서원은 정재 류치명 계열의 공문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전후로 의병항쟁을 주도했던 안동의 유림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유림이 등장하였다. 류인식(柳寅植)·김동삼(金東三)·이상룡(李相龍)·김대락(金大洛)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위정척사적 의식과 항일투쟁 방법론에서 전환하여 서구 학문 수용을 통한 민지계발을 지향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 유림(革新儒林)’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 핵심에 안동의 협동학교(協東學校)가 있었다. 이는 안동지역 항일투쟁의 새로운 장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안동지역 동유(東儒)의 분열을 의미하기도 했다.

협동학교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희곤과 이계형의 연구가 있다. 김희곤은 협동학교의 설립 과정과 교육과정, 배출 인물, 일제의 탄압과 관련 인사들의 만주 망명에 대해 규명하였다. 이는 대한제국기 협동학교의 구국 계몽운동에 중심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계형의 연구는 협동학교 인사와 신민회(新民會) 인사와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¹⁵⁾ 특히 이계형의 연구는 협동학교

13) 강운정, 「定齋學派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01~102쪽.

14) 김희곤, 「안동 협동학교의 독립운동」,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7, 180~198(이후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7;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지식산업사, 2007에 수록된 글은 이를 바탕으로 하였음).

15) 이계형, 「한말 안동지역 혁신유림과 신민회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교명과 설립 경위에 대해 한층 진전을 보였다. 이 글은 이들 선행연구 위에서 협동학교와 호계서원과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희곤의 연구에서 ‘협동학교 설립 기성회와 개최 장소’와 ‘협동학교 재원’에 관해 소략하게 규명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토지조사부』 등을 바탕으로 그 상관성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첫째, 협동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호계서원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설립 주체의 개별자적 의지와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당대 주류적 목소리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지 않은 안동 인사들이 공론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동산문고(東山文稿)』의 다음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 이해 겨울에 조정에서 각처 서원에 학교를 세우라고 영남에 綸音을 내렸다. 선생이 金進洙와 학교설립을 상의하자, 완고한 구파가 여강서원(호계서원-필자 주)에 크게 모여 서원 곁에 구덩이를 파고 선창한 사람을 기다리니, 조정의 명령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중략) 정미년(1907) 봄에 石洲 선생이 大韓協會를 창설하였다. 당시 상부에서 유림의 公物을 조사하고 몰수하여 지방비로 쓰게 하였다. 선생은 당시 面長을 맡고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의 기본 자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에 金厚秉¹⁶⁾·河中煥¹⁷⁾·金東三과 학교설립을 상의하고 여강서원(호계서원-필

구』 10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22, 7~31쪽.

- 16) 김후병(金厚秉, 1874~1954) : 1907년 안동의 혁신유림인 김대탁(金大沍)·이상룡(李相龍)·류인식(柳寅植)·김동삼(金東三) 등이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인 협동학교(協東學校)에서 교사로 활동하였다. 교남교육회(嶠南教育會)·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에서 활동하였고 교육 구국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17) 하중환(河中煥 : 1875~1954) : 본관은 진주이며 사후면 교동 출신이다. 1907년 류인식·김후병 등과 함께 협동학교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1909년 지방의 公物을 몰수하여 지방비로 쓰게 하는 조치가 있자, 학부의 승인을 얻어 호계서원의 재산을 협동학교에 귀속시켰다.

자 주)에서 기성회를 정하자 한 무리의 유림이 모두 모여 찬성하였다. 선생은 김후병·하중환과 더불어 당국과 교섭하고 학부의 승인을 받아 유림의 物件을 조사하여 협동학교에 귀속시켜 校舍를 수리하고 생도를 모집하여 며칠 만에 개학하였다.¹⁸⁾

이 자료의 '이해 겨울 조정'은 1906년 고종이 내린 「흥학조칙」과 경상도관찰사 「흥학훈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⁹⁾ 조정의 조치에 힘입어 류인식·김진수(金進洙) 등이 학교설립에 관해 상의하였다. 김진수는 1904년 8월 서울에서 조직한 총의사와 1908년 3월 15일 재경 영남 인사들이 창립한 교남교육회(嶠南教育會)에 참여한 인물이다.²⁰⁾ 총의사는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재경 유생층이 참여한 단체이며, 교남교육회는 영남지역 신교육 부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 단체이다. 김진수의 학교설립 논의는 그 사이의 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906년 시점에서 이들의 신학교설립 논의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였다. “완고한 구파가 호계서원에 대거 모여 구덩이를 파고, 학교설립 주창자를 기다렸다.”는 표현이 당시의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교설립의 주체와 이를 저지하는 유림이 모두 호계서원을 공론회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그 뒤에도 신학교와 관련된 공론회는 계속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1) 을사년(1905) 이후로는 중사가 기울어지는 불행을 슬퍼하고 육대주의 사조가 변하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낡은 습속이 무용지물이 됨을 깊이 알고서 곧 신학문을 급히 배워야 함을 깨달았다. 이에 김후병·김공식(김동삼·필자 주) 등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 도모하여 협동학교를 세우고 한마음으로

18) 『동산유고』(부록), 「略曆」: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동산문고』, 2021, 387~392쪽.

19) 『조선왕조실록』 1906년 3월 26일; 「논설: 對中觀察興學訓令警告實行」, 『황성신문』 1906년 3월 27일자(김희곤, 「동산 유인식의 생애와 독립운동」).

20) 『남은선생유집(서명록)』: 『교남교육회잡지(회원명부)』(김희곤, 『안동독립운동 인물사전』, 안동독립운동기념관·도서출판선인, 2010, 162쪽).

노력하여 백성들의 기운을 고취시키고, 나라의 혼을 불러일으킨 것이 마치 화살이 과녁을 꿰뚫는 것과 같았다.〔壙記, 『동산문고』²¹⁾

자료 2) 그 뒤 병오년(1906)에 태상황께서 영남에 학교를 일으키라는 勅諭를 내리심에 그 당시 郡內 인사들이 협의하여 찬성했으나 반대파의 기세가 막강하였으므로 두려워 떨다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후로 외세의 멸시는 날로 더해지고 압박은 갈수록 고통스러워졌으므로 드디어 몇몇 동지들이 눈물로써 맹세하고 협동학교를 창설하여, 한 지역의 생도들을 불러 모아 교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에는 꺼리거나 관망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라의 앞길이 암울하고 재앙의 조짐이 하늘에 가득한데 수구과는 질시하고 원수들은 서로 긴밀히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上金拓庵先生[戊申], 『동산문고』²²⁾

자료 3) 저 또한 10년 전에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오년(1906)과 정미년(1907) 이후에 천하의 사변을 한 번 겪고, 나라 안의 명사들과 교제를 맺으며, 해외의 기이한 책을 열람했습니다. 이에 놀랍고 두려우면서도 시원하게 깨달아서 유신 사상에 견잡을 수 없이 쏠리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川前의 諸公들과 협동학교를 창설하자고 눈물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기세가 날마다 더욱 팽창하고 원한이 서로 이어지고 재앙의 번고가 끝이 없어 이제껏 험난함은 말하려고 하면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중략)

1906년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한 공문화 시도는 실패했지만, 1907년 이후 협동학교 설립은 다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료 3)의 “저 또한 10년 전에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오년과 정미년 이후에 천하의 사변을 한 번 겪고, 유신 사상에 마음이 쏠리었고, 그 때문에 천전(川前)의 제공(諸公)들과 협동학교를 창설하자고 눈물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맹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에서 이를 짐작 할 수 있다. 이때 안동 내앞마을의 김동삼·김후병 등의 인사들이 적극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계서원 재산의 협동학교 전환과정이다. 협동학교는 창설 과정도 어

21)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동산문고』, 「壙記」, 406~411쪽.

22) 「上金拓庵先生[戊申]」 척암 김선생께 올린다 [무신년(1908)].

려웠지만, 사실상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향내 인사들의 비난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도 큰 과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협동학교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사립학교령」 반포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학부에서는 1908년 8월 26일자 「사립학교령」을 반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의 설립 시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부대신이 폐교를 명령할 수 있게 하였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신설되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²³⁾ 이에 따라 협동학교 또한 인가 취득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의 「협동창설」²⁴⁾·「협동권면」²⁵⁾은 모두 이를 전후한 시기의 정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 취해진 1909년 4월 조정의 「지방비법」 선포는 협동학교 재원 마련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동산문고』의 「약력」의 기록은 이러한 정황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미년(1907) ---- 당시 상부에서 유림의 公物을 조사하고 몰수하여 지방비로 쓰게 하였다. 선생은 당시 면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의 기본 자금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에 김후병·하중환·김동삼과 학교 설립을 상의하고 여강서원에서 기성회를 정하자 한 무리의 유림이 모두 모여 찬성하였다. 선생은 김후병·하중환과 더불어 당국과 교섭하고 학부의 승인을 받아 유림의 물건을 조사하여 협동학교에 귀속시켜 교사(校舍)를 수리하고 생도를 모집하여 며칠 만에 개학하였다. (중략) 드디어 임원 생도들과 함께 일제히 머리를 깎았다.²⁶⁾

23) 유한철, 「한말 사립학교령 이후 일제의 사학탄압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목적·위치·학칙을 비롯해 교지·교사의 평면도, 1개년의 수지 예산 및 유지 방법, 설립자 및 교직원 이력서, 그리고 교과용 도서명 등이었다. 또, 폐교 명령은 법령과 규정 위반, 안녕질서나 풍속 문란, 6개월 이상 규정 수업 불이행, 그리고 설비·수업, 기타 사항에 대해 학부대신이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다.)

24) 『황성신문』, 1908년 9월 27일자.

25) 『황성신문』, 1908년 10월 7일자.

그러나 이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다. 이 시기 안동사회에서 유림 재산의 협동학교 귀속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실제 이와 관련하여 『대한매일신보』(1909년 9월 25일자)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려있다. 1909년 9월 서원 배향 후손들이 흥선대원군 시기에 훼손된 임천서원(臨川書院)·청성서원(靑城書院)·묵계서원(默溪書院) 등을 앞다투어 복설하려고 고위 관리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까지 뇌물을 주었는데, 호계서원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 李述·柳鏞 등이 협동학교에 부속된 ‘儒物’을 빼앗아 서원을 복설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²⁷⁾ 이는 호계서원과 협동학교의 대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밖에 여러 자료에서 당시의 정황이 확인한다.

자료 1) 저 인식이 눈물로 진술하기를 청합니다. 죄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또한 일일이 모두 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략) 협동학교를 건립하자고 발기할 때 약간의 유림의 재물은 이미 宋郡守가 조사해 놓은 것으로 협동학교 사람들이 京鄕을 뛰어다님으로써 이미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아 기본 資産으로 집적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협동학교 사람들의 죄인(罪案)이라 할 수 있습니까? 소위 ‘유림의 재물’이라는 것은 선대 어른들께서 고생스럽게 노력하여 吾道를 保衛하고 土類를 기르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절제 없이 낭비하여 한갓 먹고 마시는 데에 사용될 뿐이라면 차라리 학교로 이관하여 청년들의 교육에 사용하는 계책이 적어 事理에 매우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마땅히 儕輩들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지, 사문계 세세히 설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몸을 훼손했다는 한 조목은 저 인식의 입으로 백 마디를 떠들지라도 어찌 사문의 의혹을 풀어드릴 수

26) 『동산유고』(부록), 「略曆」: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동산문고』, 2021, 387~392쪽.

27)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하였다. 이때 안동의 서원이 “先賢을 慕함이 아니라 只是他人의 傀儡됨이니 君輩는 早悔할 지어다”라며 이를 비난하는가 하면, “雖然이나 正義는 最後의 勝利를 得하는 者니 維願安東에 新教育을 主唱하는 志士는 壹時魔戲로 因하여 退沮치 말지어다”라며 격려하기도 하였다(이계형, 「한말 안동지역 혁신유림과 신민회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22, 12~13쪽)

있겠습니까? 『역경』에 “때에 따라 변통하여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천하의 수많은 도리가 단지 ‘變 자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天時가 한 번 변하는 運數에 해당하므로 비록 구습을 고수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上金拓庵先生[戊申], 『동산문고』)²⁸⁾

자료 2) 대개 岐社에 관한 일의 처음과 끝은 숙주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조사는 제가 미리 알던 바가 아니며, 기부는 제가 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조사하고 기부하였기 때문에 각 소의 전답과 토지를 같이 섞어 학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與恬庵族叔淵龜, 『동산문고』)²⁹⁾

자료 3) 이 편지가 가면 학교 안에 반드시 행패 부리고 성낼 단서가 생길 것이니 자네는 깊이 헤아려서 행동해야 할 것이고, 또 향후 조처도 반드시 숙려해서 해야 하네. 만일 내가 아무 이익도 없는데 공연히 그 학교가 脫空되게 한다면 매우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겠지. 더구나 내가 그 중간에 잔뜩 비방을 받게 되는 데이겠는가? 면장 회의에서는 협동학교에 무슨 좋은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나는 실로 모르네. 만일 보통학교가 탈공하게 된다면, 협회(대한협회 안동지회-필자 주)에서 소비한 7백여 금의 돈을 가지고 저들은 반드시 죽기로 하고 말썽을 일으킬 것일세. 깊이 헤아려서 협동학교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에 처리하게.(「又季君忙奉, 『석주유고』)³⁰⁾

위의 자료 1)은 1908년 류인식이 스승인 척암 김도화에게 올린 편지이다. 유림 재산의 협동학교 전환과 관련하여 향내 비판이 만만치 않음을 읽을 수 있다. 자료 2)는 류인식이 족속 류연귀(柳淵龜)에게 보낸 것으로 임동의 기양사(岐陽社)에 소속된 재원의 협동학교 전환 문제와 관련된 사료이다. 여기에는 전주류씨 문중에서 기봉(岐峰) 류복기(柳復起, 1555~1617)의 배향을 위해 수곡(水谷)에 설립한 문중 결사인 기양사의 전답과 토지의 학교 귀속 문제를 두

28)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동산문고』, 「上金拓庵先生[戊申], 57쪽.

29)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동산문고』 「與恬庵族叔淵龜」, 2011 110~128쪽

30)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역 석주유고』 하 「又季君忙奉」, 2008, 435쪽

고 류인식이 문중 측과 소송을 치렀던 정황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 3)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대한협회 안동지회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호계서원을 비롯한 유림의 공물이 어느정도 협동학교로 전환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1912~1914년 일제의 임시토지 조사국에 신고된 『토지조사부』에서 협동학교와 호계서원 토지에서 그 단서를 얻을 만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안동군 지역 내에 협동학교 재산으로 파악되는 토지는 모두 84,611평이다, 지목별로는 답 56,245평, 전 26,885평, 대지 1,481평이다.³¹⁾

〈표 2〉 호계서원·도산서원·병산서원 소유 토지(1914년)

구분	토지 소재지	전	답	입야	대지	사사지	합계
호계서원	동후면 도곡동	1,197	4,393	0	3,433	0	9,023
도산서원	동후면 나소동	1,637	1,124	0	0	0	2,761
	예안면 부포동	544	0	0	0	0	544
	예안면 신남동	0	511	0	0	0	511
	도산면 원천동	3,297	150		0	0	3,447
	도산면 의촌동	29,110	8,246	1,652	5,372	0	44,380
	도산면 태자동	16,251	1,596	0	569	0	18,416
	도산면 토계동	2,212	674	0	0	1,824	4,710
	합계	53,051	12,301	1,652	5,941	1,824	74,769
병산서원	풍남면 병산동	37,164	18,549	5,827	5,104	922	67,566
	풍산면 안교동	0	956	0	0	0	956
	합계	37,164	19,505	5,827	5,104	922	68,522

토지 분포 지역도 상당히 넓다. 7개 면(임동면·임현내면·임북면·임서면·길안면·동후면·와룡면) 22개 동에 걸쳐있다. 「협동창설」(취지문)에 학교의 설립에 동쪽 지역 7개 면이 합동하였다고 하였는데,³²⁾ 실제 토지재산의 위치

31)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土地調査簿』(1912~1914).

를 보면 모두 안동의 동쪽 지역 7개 면의 토지임을 알 수 있다. 협동학교의 토지 가운데는 호계서원 소유 토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1914년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토지 소유 현황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도산서원이 74,700여 평, 병산서원이 68,500여 평의 토지를 소유한 데 견주어, 호계서원 토지는 9,000여 평에 불과했다. 이는 『동산문고』의 재산 전환에 대한 그 규모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부록 표 참조]

이상을 종합하면 협동학교는 늦어도 1908년 봄 이전에 발기 및 창설되었으며, 「사립학교령」 및 「지방비법」에 따라 호계서원 등 유림의 공물을 조사하여 협동학교에 귀속시키면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석주 이상룡의 “협동학교 일은 조금씩 두서가 잡혀가니 다행으로 여기네. 7일에 회관에서 서로 만나자는 약속이 잡혀있어 벌써부터 기대된다네.”라는 글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상룡이 송기식에게 보낸 서신으로, ‘회관에서 만나자’는 기록으로 보아, 1909년 5월 5일 대한협회 안동지회 설립 이후 시점의 기록이다.³²⁾ 백하 김대락이 자신의 집을 협동학교 교사로 제공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³³⁾ 그러나 한편으로 협동학교의 설립은 호계서원 중심의 공물에 큰 균열을 야기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즉 위정척사운동기와 의병항쟁기 호계서원은 안동의 동부 유림의 결집의 장으로 중요한 기능을 했다면, 신학교인 협동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균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균열은 이후 항일투쟁사에서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기능하였다.

IV. 망국 이후 협동학교 계열의 항일투쟁

망국 이후 협동학교 관계자들은 항일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의 활동은 크게

32) 『황성신문』, 1908년 9월 27일자.

33) 『答宋釋鞏』, 『석주유고』.

34)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자.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만주지역에서의 항일투쟁이며, 하나는 1919년 3·1 운동 참여와 이후 사회활동이다. 전자를 이끌었던 유림이 김대락·이상룡·김동삼 등이라면, 후자를 이끌었던 유림은 류인식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안동 유림의 항일투쟁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손꼽힌다. 가족·문중 단위의 집단망명이 이루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세대를 이어 지속적 투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의병항쟁시기부터 일관되게 흐르고 있던 유가적 공동체 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안동 유림의 망명길에는 대부분 온 가족이 함께하였다. 김대락 일가는(一家)는 만삭의 임부(妊婦)인 손녀와 손서(孫婦)까지 대동하였다. 곧이 1월의 강추위와 위협을 무릅쓰고 만삭의 임신부까지 함께 떠났다. 여기에는 다음 몇 가지 인식이 작용하였다. 첫째, 적(敵)의 지배로 도(道)가 무너진 땅에 일인(一人)의 가족도 남겨 두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들은 식민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물론, 조상에게 제사(祭祀)하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다. 둘째, 이들은 완전한 광복을 이룰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결심이었고, 그 때문에 일제의 압제 아래 가족을 남겨 둘 수 없었다. 이상룡은 자신의 가족을 핍박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으며, 자신 또한 목숨을 버릴지언정 일제 아래 살 수는 없었다.³⁵⁾ 셋째, 이들은 유가적 가족공동체가 만주 한인사회의 근간이 되길 희망하였다. 즉 가족공동체를 항일투쟁의 기초 단위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상룡의 「가족단서(家族團序)」에 잘 드러난다.³⁶⁾ 이러한 남성들의 인식에 여성들도 대부분 뜻을 같이하였다.

35) 「二十七日渡江」, 『石州遺稿』: “즐거운 樂土 우리 부모의 나라를 지금은 그 누가 차지해버렸는가. 나의 밭과 집을 벌써 빼앗아 갔고 거기에는 다시 내 처자마저 넘보나니, 차라리 이 머리 베일지언정 이 무릎 꿇어 종이 되지 않으리라.”

36) 단체는 한 남편, 한 아내에게서 시작되어 가족이 되고, 여러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여러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된다. 그렇다면 가족이 국가와 사회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내의 동지들과 더불어 가족단 하나를 조직하였는데, 미처 완료하지 못한 채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건너왔다. 국가·사회는 가족에 기반을 두며, 가족은 개인의 身心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각자

드물게는 만주망명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대부분 광복을 대의로 여기고 함께 망명하였다.³⁷⁾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여성들이 함께하였고, 이들은 사적(私的) 공간은 곧 공적(公的)이기도 했다. 이는 안동유림의 만주항일 투쟁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들 유림일가는 1910년대 서간도 삼원포 일대에서 독립운동기지 건설과 독립전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한인(韓人)의 생활 안정과 한인사회 확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망명 초기 한인사회는 ‘독립운동 기지개척을 위한 안정적 터전 마련’이라는 큰 과제를 앞에 두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존의 근간이 될 산업의 마련, 즉 안정적 농업 경영이었다. 소작농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기술인 논농사의 성공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작업이었다. 그 때문에 만주에서는 ‘新 풀이’라 불린 황무지와 습지를 개간하여 수전(水田)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모든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남성들이 이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다면, 여성들은 실제 생활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 설립과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자치단체는 밖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이자, 안으로는 동포들의 힘을 집결시켜 독립운동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공동체였다. 이러한 공동체를 운영에 가족 구성원 개개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항일투쟁을 지속할 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에 기여하였다. 안동인들은 망명지에서 신홍강습소를 시작으로 신홍중학교와 신홍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어려운 상황에도 석주 이상룡은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 남성 구성원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담당할 주체였다면, 여성들은 학생들의 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였

그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이상룡, 『家族團序』, 『石州遺稿』).

37) 이와 관련해서는 강운정, 『경북여성 독립운동 이야기-만주로 간 경북 여성들』, 韓國國學振興院, 2018, 16~21쪽 참조.

다. 1910년대 안동 유림가의 여성들이 수학과 교수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 한계점은 있지만, 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³⁸⁾

셋째, 독립전쟁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남성들이 백서농장·서로군정서와 같은 병영을 조직하고 이를 운영한 주체라면, 여성들은 대원들의 의·식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성들을 비롯한 노약자층은 광목과 솜뭉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대량으로 대원들의 옷을 생산했으며, 먹거리 제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을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은 독립전쟁 수행에 필요한 후방 보급기지 역할을 해냈다고 할 수 있다.³⁹⁾

다섯째, 항일투쟁 후속세대를 길러, 1920~30년대 항일투쟁을 지속하게 했다는 점이다. 1910년대 전반기 경북인의 망명길에는 나이 어린 소녀·소년들이 있었다. 이상룡의 손녀 이후석(李厚錫, 11세)과 손자 이병화(李炳華, 5세), 조카 이광국(李光國, 2세), 이원일의 딸 이해동(李海東, 7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망명지에서 구성원들은 이들 후속세대를 길러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혼인을 통해 항일투쟁을 지속해 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였다.⁴⁰⁾ 유림가계의 후속세대들은 1920~30년대 항일투쟁을 지속해 나갔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안동지역 동유(東儒, 호유)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에 대해 살펴 보았다. 안동 유림들은 의병항쟁기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의병의 당위성을 공론화하고, 호계서원에 본부를 두고 무력으로 항쟁하였다. 이 시기 호계서원

38) “집이 멀거나 다른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애국지사들이 각각 나누어 맡아 下宿하였다.”(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39) “조직원들을 해 먹이는 자체가 큰 役事였으며, 작은 국가 하나 경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40) 許蔞의 넷째 아들 허국과 혼인한 李厚錫, 李炳華와 혼인한 許銀, 金東三의 며느리가 된 李海東 등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은 공고한 집결의 장이었다. 그러나 협동학교 설립을 계기로 그 공문화의 장에는 균열이 발생하였다. 호계서원을 유지하려는 쪽과 새로운 학교를 세우려는 쪽으로 나뉘어 신구 유림은 대립하였다. 그러나 호계서원의 재원이 협동학교로 흡수되면서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는 호계서원이 지니고 있었던 영향력의 상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에서 이러한 흐름은 항일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이후 만주 망명을 선택한 대다수의 동유들은 협동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받은 인물이다. 안동유림의 만주지역에서의 활약은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 첫째, 이들의 노선은 방략적 측면에서 독립전쟁론이, 이념적 측면에서 공화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는 의병의 무장항일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의 경험을 아울러 낸 것이다. 둘째, 가족공동체의 역할이 독립운동기 지 건설과 이후 지속적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없었던 만주에서 이들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호계서원-협동학교-신흥무관학교를 중심 축으로 전개되는 안동 동유의 항일투쟁의 근간에는 호계서원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내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부록

협동학교·호계서원 토지 지역별 현황

구 분		답	전	대지	계
협동학교	와룡 가야동	1,997	0	0	1,997
	동후 노산동	10,440	4,364	0	14,804
	동후 도곡동	4,195	3,281	44	7,520
	동후 절갈동	1,584	2,291	0	3,875
	동후 주진동	1,035	1,419	81	2,535
	임동 갈전동	360	482	0	842
	임동 고천동	4,047	0	0	4,047
	임동 수곡동	8,502	1,749	0	10,251
	임북 계곡동	510	0	0	510
	임북 구룡동	337	0	0	337
	임북 기사동	554	0	0	554
	임북 미질동	1,206	0	0	1,206
	임서 신탕동	223	2,873	0	3,096
	임서 금소동	1,135	941	0	2,076
	임서 오대동	1,891	0	0	1,891
	임서 현하동	1,706	2,767	1,356	5,829
	길안 천지동	5,310	405	0	5,715
	길안 구수동	682	0	0	682
	길안 만음동	3,427	2,384	0	5,811
	길안 용계동	993	1,525	0	2,518
	임현내 천전동	1,851	0	0	1,851
임현내 사의동	4,260	2,404	0	6,664	
합계	56,245	26,885	1,481	84,611	
호계서원	동후면 도곡동	1,197	4,393	3,433	9,023

【참고문헌】

- 김정섭, 『일록』; 이상룡, 『석주유고』; 류인식 『동산문고』; 『을병수등록』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土地調査簿』(1912~1914).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이해동, 『만주생활 77년』, 명지출판사, 1990.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민족문제연구소, 2010.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국역 석주유고』, 2007.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경북지역 의병자료』, 도서출판선인, 2012.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국역 동산문고』, 2021.
김희곤·권대웅 편저, 『한말의병일기-을미의병일기·적원일기』, 국가보훈처, 2003.
- 강윤정, 「定齋學派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강윤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연구』 6, 백범학술원, 2009.
권오영, 「영남만인소」,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희곤, 「西山 金興洛(1827~1899)의 의병항쟁」, 『한국근현대사연구』 1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0.
김희곤, 「안동 협동학교의 독립운동」,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7.
이계형, 「한말 안동지역 혁신유림과 신민회와의 상관성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103,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22.
- 강윤정, 『사적에서 만나는 안동독립운동』, 2013.
강윤정, 『만주로 간 경북 여성들』, 한국국학진흥원, 2018.
김희곤, 『안동의 독립운동사』, 안동시, 1997.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안동독립운동기념관·지식산업사, 2007.
김희곤, 『안동독립운동인물사건』, 안동독립운동기념관·도서출판선인, 2010.
김희곤, 『안동사람들이 만주에서 펼친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11.
박결순, 『시대의 선각자 류인식』, 지식산업서사, 2009.
이정철, 『협동학교』, 민속원, 2019.

Abstract

Andong Yurim's Anti-Japanese Struggle and Hogye Seowon

Kang Yun Jeong*

Andong Yurims publicized the legitimacy of righteous army around Hogye Seowon during the righteous army resistance period, and fought by force at Hogye Seowon. During this period, Hogyeseowon Confucian Academy was a place for solid gathering. However,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chool, a crack occurred in the field of public debate. The old Yurim was divided into two sides: maintaining Hogye Seowon and establishing a new school. However, as the financial resources of Hogye Seowon Confucian Academy were absorbed into the cooperative school, considerable changes were encountered. This was also the loss of influence that Hogye Seowon had. However, on the other hand, this trend served as a new driving force for the anti-Japanese struggle. Since then, most of the Confucian scholars who chose to defect to Manchuria have been directly related to or influenced by cooperative schools. Andong Yurim's activities in Manchuria show a unique character. First, their line was mainly based on the theory of independence war in terms of strategy and republicanism in terms of ideology. Second, the role of the family communit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base and subsequent continuous activities. In Manchuria, where there was no boundary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 Deputy Professor of History at Andong University / sanman0115@daum.net

spheres, these family members played roles in their respective spheres. In Andong Yurim's anti-Japanese struggle history, which is centered on Hogyewon Confucian Academy, Cooperative School, and Manju Shinheung Military School, Hogye Seongwon served as a social and physical space as its start.

Key word : Hogye Seowon, Andong Yurim, righteous army resistance, cooperative school, Manchurian exile, armed anti-Japanese struggle

논문 투고일: 2023. 11. 15 심사 완료일: 2023. 12. 06 게재 확정일: 2023. 12. 07

■ 기획논문 2 :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구조와 무형유산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관련 문헌 자료의 전승 양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와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 9개 서원 홀기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 ▣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관련 문헌 자료의 전승 양상

—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을 중심으로 —

이 광 우*

- I. 머리말
- II. 서원 제례 관련 문헌의 전승 양상
- III. 서원 제례 문헌의 유형별 활용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에 전승되고 있는 祭禮관련 문헌 자료를 살펴 본 것이다. 16세기 중반 서원은 官學의 대안처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 시대 동안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 서원 운영을 주도하던 사대부 계층은 講學보다 ‘尊賢’을 위한 제례에 주안점을 두었다. 서원 제례를 통해 사대부 계층은 향촌사회에서 祭享인의 정치·학문적 계승자임을 천명할 수 있었고, 이를 매개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유지해 나갔다. 한편으로 서원 제례로서 당색과 학파를 공유하던 사대부 세력 간에 결속력을 다지고, 질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관계로 서원에는 제례 관련 기록이 다수 전승되어 있으나, 그간 서원 연구가 정치·사회·경제·교육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기록을 文集類, 書院誌, 古文書·成冊類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들 자료에는 서원 제례와 관련된 규식, 목적과 취지, 제례 참석자 명단, 운영 실태가 기록되어 있다. 제례 관련 자료를 다시 내용별로 살펴보면 크게 享祀 등 정기 의례의 규식과 祝을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ikw38@ynu.ac.kr

담고 있는 笏記類·賜額禮·致祭禮·追享禮·還安禮 등의 특수 의례 관련 자료, 주로 문집류에 수록된 祝文類와 祭文, 獻官 및 執事와 같은 祭官과 일반 謁廟者 및 제례 참석자를 기록한 명부류로 구분된다. 서원 제례 자료는 중국에서 유래한 서원 문화가 조선 시기를 거쳐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근거이다. 또한 현대로 접어들면서 변형되어 가고 있는 서원 제례의 옛 전승 양식을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 홀기, 향사, 특수 의례

I. 머리말

祭禮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고 삶을 영위한 이래, 그 시대의 정치·사회적 지향이 여러 제례 형식으로 표현되어 왔다. 제례를 통해 구성원 간 결속력을 다지고, 질서를 확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각종 기념식과 의례를 통해 해당 조직과 단체의 위계 파악이 가능하다. 가깝게는 명절의 茶禮와 忌祭祀에서 가정과 집안의 질서가 드러난다.

지역 사회의 권력 구조도 제례 속에 반영되어 있다. 초기 국가 시절부터 지역의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祭天儀式을 주도하고, 蘇塗와 같은 제례 영역을 점유하였다. 고대 국가의 중앙집권화 이후에는 여러 사유 체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가 지역에서 거행되는 각종 제례를 대신해 나갔다. 고대에는 豪族, 고려 시대에는 鄉吏 집단이 香徒로 대표되는 결사체를 만들어 각종 불교 사업과 제례를 주도하였다. 권력 집단은 제례를 주관함으로써, 조상·天神, 그리고 부처의 권위를 빌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확보할 수 있었다.

고려 후기 성리학이 도입되고 새 왕조의 국가 이념으로 정착함에 따라, 자

연스레 지역의 권력 구조도 성리학적 체계 내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어느 새 향리 세력이 주도하던 향도는 文廟의 釋奠大祭로 대체되었다. 석전대제는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지방관과 새로운 지배 계층인 사대부가 주도하였다. 이는 조선 시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향촌 질서의 재편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대부 계층은 문묘 석전대제를 중심으로 확립된 향촌 질서에 만족하지 않았다. 문묘의 석전대제가 사대부 중심의 질서 체제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성리학의 확산과 향촌 개발은 많은 사대부를 재생산하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례 체계가 필요해졌다. 사대부 세력은 향촌사회에서 학과·당색·혈연을 매개로 자신들 주도의 지배 질서를 확립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문묘 석전대제의 보완요법으로 서원 제례가 사대부 문화로 정착하게 된다.

서원 제례는 祭享人에 대한 ‘尊賢’을 넘어 정치·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서원 제례를 거행함으로써, 해당 집단은 스스로 왕조의 이념 체계인 성리학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 서원은 私學이지만, 賜額 유무를 막론하고 관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았다. 이는 곧 서원 제례 주체를 국가 권력 차원에서 공인함을 뜻한다. 따라서 享祀를 비롯한 서원 제례에도 당시 사대부 중심의 정치·사회적 질서가 함축되어 있다.¹⁾ 향촌 개발과 향촌사회의 다양화를 한국사의 발전 양상으로 이해한다면, 서원 제례가 가지는 의미도 충분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원 제례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기원과 변천 과정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얽힌 여러 사회·경제적 상황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원 제례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헌 자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원 제례 관련 문헌 검토는 그리 활발하지 않다. 조선 시대 서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실상 ‘존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

1)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48~49쪽.

제례는 비교적 늦게 관심을 받았다.²⁾ 거기다 서원 제례는 국가 의례가 아닌 私的 제례로서 법제화 되지 않았고, 향촌의 사대부 계층의 관습에 따라 무형 유산의 형태로 전승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9개소에³⁾ 전승되고 있는 서원 제례 관련 자료의 전승과 유형별 검토 양상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서원 연구가 향촌사회사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만큼, 상대적으로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번 정리를 통해 향후 서원 제례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규명하고, 그것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서원 제례 관련 문헌의 전승 양상⁴⁾

조선 시대 서원 자료는 1980년대 이래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동과 향촌

-
- 2) 정순우, 「조선 시대 제향 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 진단학회, 2000 ;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한재훈, 「퇴계의 서원 향사례 정초에 대한 고찰-백운동서원 향사례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추향례·치제례·사액례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3) 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
- 4) 본 논문에서 활용한 9개 서원의 문헌 자료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전승기록 및 무형유산 지정가치 연구> 팀에 참여 중인 김순한·박소희·백지국·이병훈·채광수 선생님과 함께 조사한 것임을 밝힌다.

지배 질서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관찬 사료 및 문집 자료뿐만 아니라, 서원 운영 과정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수·발급한 古文書 및 成冊類 자료도 적극 활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서원 관련 문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별로 서원 소장 자료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진행되었다.⁵⁾ 다만, 지금까지 서원 자료는 목록과 간단한 해제 위주로 진행되어 서원 제례와 같은 주제별 검토는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9개 서원은 일찍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다. 각 지역의 首院으로서, 향촌사회를 넘어 특정 당색과 학파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조선 시대 향촌사회를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었다. 지역 사대부와 중앙 정부의 많은 관심 속에 9개 서원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文籍이 전한다. 따라서 9개 서원과 관련 된 문헌 자료는 관찬 사료부터 문집, 고문서·성책류까지 다양한 편이다.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문헌 자료도 이들 속에서 검토할 수 있다.

먼저 관찬 사료에는 서원 장려책과 지방 교화의 목적으로 사액을 하거나 치제하는 기사가 짙막하게 수록되어 있다. 단편적인 기록이지만, 서원의 특수 의례와 관련된 기사로서 9개 서원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직접적으로 보여 준다.

제향인의 문집 부록에는 서원 제향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致祭文·奉安文·告由文·上樑文·常享祝文 등의 祝文類 및 제문을 수록한 경우가 많다. 이는 당대 저명한 학자·관료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당연히 해당 인물의 문집에서도 확인된다. 서원 문화가 정착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대부의 문집에는 제례 규식을 정하고 그 절차를 문의하는 글들이 晝와 雜著 편 등에 산재해 있다. 이들 자료에는 서원 제례의 정립 과정과 서원을 통한 道統 의식이 드러난다.

5)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434~435쪽.

고문서·성책류 자료는 서원 운영 과정에서 직접 생산된 것으로 笏記·執事 分定記·謁廟錄類, 제례 관련 單子·通告類·所志類 및 각종 置簿類 자료를 망라한다. 다만, 고문서·성책류의 전승 규모는 소장처에 따라 편차가 있다. 또한 DB 구축⁶⁾, 書院誌·자료집⁷⁾ 발간 유무에 따라 자료 접근이 용이한 서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서원도 있으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자료도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한다.

문집류에 수록된 각종 축문류와 제문의 수량은 해당 서원의 제향인 규모, 이권·중수의 빈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고문서·성책류는 대체로 영남 서원에 잘 전승되고 있는 반면, 필암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 서원지 발간을 통해 주요 제례 자료를 정리해 놓았다.

제례 관련 문헌 중에서도 주요 문집과 고문서·성책류 자료의 전승 양상을 9개 서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紹修書院

영주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서원으로서 安昞·安軸·安輔·周世鵬을 제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원의 모범이 된 까닭에 사대부 층은 이른 시기

6)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 유교넷(<https://www.ugyo.net>) ;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7) 본 논문에서 활용한 서원지와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무성서원, 『무성서원원지』, 1931 ;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58 ; 필암서원, 『필암서원지』, 1975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0-병산서원편-, 1994 ;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9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1995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 ; 영남문화연구소,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 한국국학진흥원,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무성서원지』, 2021 ; 영주시, 『소수서원 고문서 문화재 지정 신청 보고서』, 2023.

부터 소수서원 관련 문헌을 주목하였다. 특히 서원 제례의 일정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훗날 여러 서원이 소수서원 사례를 바탕으로 제례를 정립해 나갔다.

먼저 소수서원 제례와 관련된 핵심 자료는 『竹溪誌』이다. 『죽계지』는 白雲洞書院 건립을 주도한 周世鵬이 엮은 것으로 이후 몇 차례 중간이 이루어졌다. 제향 관련 기록은 『죽계지』 行錄後와 雜錄後에 있는데, 여기에는 제향인 봉안 때 작성된 제문과 주세붕이 지은 景幾體歌 가사로서 향사 때 부르는 〈道東曲 九章〉, 진설도에 따라 여러 가지 제물 쓰는 법식인 〈依圖祭用雜物式〉을 수록하였다. 또한 雜錄後의 〈원규〉에는 제례와 관련해 제향일, 獻官과 執事 인원, 齋戒日의 목가짐을 규정해 놓았다. 특히 〈원규〉 첫 번째 조항에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로 구성된 5대 강령을 제시하였다.⁸⁾ 이는 초창기 서원에서 ‘존현’, 즉 제례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창건 시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소수서원 관련 기사를 엮어 놓은 『雲院雜錄』과 문집류 자료의 제례 관련 기록 대부분은 여러 명현이 남긴 제문·고유문·봉안문 등으로서, 소수서원의 제향 연혁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李滉의 〈安文成公享圖【配位同】〉⁹⁾ 주세붕이 제정한 것으로 알려진 『죽계지』 수록 홀기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16세기 서원 향사 제례가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¹⁰⁾

고문서·성책류 자료로는 주세붕과 이황이 제정한 홀기가 전하고 있다. 이황의 〈안문성공향도【배위동】〉와 더불어 서원 향사의 정립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歲謁錄〉은 1730년(영조 6) 1월 5일 申弼夏를 비롯해 20명의 사대부가 소수서원 文成公廟를 歲謁한 후, 그 성명과 이때 지어진 차운시를 엮어 놓은 것이다. 〈影幀處變時事蹟〉에는 1911년 10월 도난당한 안향 영정을 1912년 새롭게 봉안하게 된 경위와 이때 작성된 고유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8) 『竹溪誌』, 雜錄後, 〈院規〉, “一日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9) 『退溪續集』 卷8, 雜著, 〈安文成公享圖【配位圖】〉.

10) 한재훈, 앞의 논문, 2013, 7~9쪽.

〈표 1〉 소수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竹溪誌』	〈白雲洞文成公廟開基祭后土文〉, 〈奉安文成公祭文〉 〈祭告文成廟從祀文貞文敬文〉, 〈奉安文貞公祭文〉, 〈道東曲 九章〉 〈依圖祭用雜物式〉, 〈祭式〉, 〈院規〉
『雲院雜錄』	〈己未十月十八日告由祭文〉(李滉), 〈十一月初四日還安祭〉(黃後良) 〈方伯安公珰行祭于文成公廟〉(安珰), 〈祭紹修廟祭文〉(沈通源) 〈己四月朔後孫榮川郡守祭文〉(安瑞), 〈告歸祭文〉(安瑞) 〈白雲洞文成公廟秋享序〉(郭山+晉), 〈敬公位版改造移還安告由文〉 〈壬寅十月初四日 影禎移安告由文〉, 〈丁酉春享 在三月上丁〉 〈辛丑秋事 退行告由文〉
文集類	〈紹修書院追享時告安文成公文〉(周世鵬), 〈文成公影禎還安祭文〉(安憲) 〈文成公影禎還安記〉(安憲), 〈安文成公享圖【配位圖】〉(李滉) 〈祭安文成公文〉(李滉), 〈祭文成公文〉(李埈), 〈祭周慎齋文〉(李埈) 〈祭安文成裕公文貞輔文敬軸文〉(李埈), 〈紹修書院影禎奉安文〉(李德馨) 〈修書院文成公畫像重修〉(郭山+晉), 〈紹修書院慎齋先生躋享告由〉(朴璵) 〈紹修書院慎齋周先生追享時告元位〉(權綏), 〈慎齋周先生奉安祝文〉(權綏) 〈己卯神道碑印告廟文〉(安瑗), 〈辛巳修廟後告〉(安瑗) 〈紹修書院祭安文貞公安公〉(安應昌), 〈謁紹修書院祭慎齋周先生〉(安應昌) 〈祭先祖晦軒夫子紹修書院像文〉(安應昌) 〈先祖晦軒夫子遺像描時告由文〉(安應昌) 〈安文成公位版奉安文〉(李玄逸), 〈修書院慎齋周先生躋享告由文〉(朴璵) 〈修書院廟宇改葺移安告文〉(黃是), 〈眉叟先生畫像奉安文〉(成彥根) 〈紹修書院廟宇修繕時告由文〉(黃永祖)
古文書·成冊類	〈周慎齋先生手筆笏記〉, 〈退溪先生親筆笏記〉 〈歲謁錄〉, 〈影禎處變時事蹟〉

2. 濼溪書院

함양 남계서원은 鄭汝昌을 필두로 鄭蘊·姜翼을 제향하는 곳으로 우리나라 두 번째 서원이다. 그 밖에도 兪好仁和 鄭弘緒를 別廟에 제향하고 있다. 관찬 사료에는 청액 및 사액 기사와 더불어 1740년(영조 16) 위판 분실 사건이¹¹⁾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남계서원 관련 자료는 1935년과 1962년 발간된 『남계서원지』를 통해 정

11) 『書院謄錄』, 庚申二月二十八日.

리되었다. 1935년 『남계서원지』에는 〈陳設圖〉와 〈春秋享祝文〉, 〈享禮儀節〉, 〈祭器目錄〉 등 향사 제례와 관련된 자료가 엮여져 있으며, 고유문과 계문, 별묘와 관련된 기사 등을 수록하였다.

문집류에는 남계서원 운영을 주도했던 명현들의 상향문·봉안문 등이 있다. 특히 17세기 초반 남계서원 복구 과정에서 작성된 문적이 주목된다. 그 중 1617년(광해군 9) 文景虎가 함양 사람에게 보낸 통문은 남계서원 제례 규칙이 曹植 제향의 龍巖書院 사례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것임을 언급해 놓았다.¹²⁾ 현재 뚜렷이 전하는 것은 없으나, 南溟學派 계열 향사 제례의 전승 양상을 짐작 할 수 있다.

〈표 2〉 남계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濶溪書院誌』 (1935)	〈陳設圖〉, 〈春秋享祝文〉(盧禎) 〈告先生文【介菴別廟奉安時】〉(鄭弘緒) 〈告先生文【桐溪陞醮時】〉(鄭光淵, 〈告桐溪文【陞醮時】〉) 〈告先生文【介菴陞醮時】〉(梁泰濟, 〈告先生文【介菴陞醮時】〉(姜命世) 〈告介菴文【陞醮時】〉, 〈享禮儀節〉, 〈祭器目錄〉, 〈別廟事蹟〉
文集類	〈通諭咸陽士林【丁巳】〉(文景虎, 〈濶溪書院祭文〉(鄭縑) 〈濶溪書院陞享文【丁巳八月十三日】〉(鄭縑), 〈濶溪書院常享文〉(鄭縑) 〈濶溪書院奉安文【壬午】〉(鄭縑), 〈濶溪書院春秋享祝文〉(盧禎)
古文書·成冊類	〈祇謁錄〉, 〈參祭錄〉 8건, 〈濶溪書院春秋享禮儀節〉 〈濶溪書院春秋享禮笏記〉, 〈祭需記〉

고문서·성책류 자료 중 〈祇謁錄〉은 1902년 3월부터 1981년까지 남계서원 사당을 祇謁한 인사 99명의 성명·본관·거주지를 기록한 명부이다. 〈參祭錄〉 8건에는 1911년부터 2001년까지 춘추향사 시 헌관과 여러 집사의 성명을 기록해 놓았다. 〈濶溪書院春秋享禮儀節〉, 〈濶溪書院春秋享禮笏記〉는 향사 절차

12) 『嶧陽集』 卷4, 雜著, 〈通諭咸陽士林【丁巳】〉, “故濶溪之院則每於春秋享祀 執事無形 無以成禮 此在吾士林中 實莫大可愧事 誠不忍使聞於他 不得已今與僉尊 更議處置 別立新規 略放此龍巖書院之例”.

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남계서원지』에 수록된 절차와 대동소이하다.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의 入齋 시기가 5일전인데 반해, 나머지 2종은 3일 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홀기의 선후 관계가 기נם된다. <祭需記>는 향사 시 사용되는 제수 물품을 망라한 것이다.

3. 玉山書院

경주 옥산서원은 李彥迪의 제향처로서, 국보로 지정된 『三國史記』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서원 중 가장 많은 藏書를 보유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1993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소장 자료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고문서·성책을 선별해서 『옥산서원지』로 간행하였으나, 지금까지 많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찬 사료에는 사액과 치제 관련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정조 연간 치제 기록이 주목된다. 정조는 왕권 강화와 남인 우대를 위해 1781년과 1792년 영남 양대 서원인 옥산·도산서원에 치제하였다. 특히 1792년(정조 16) 치제문은 천주교가 확산되는 가운데, 영남만이 邪學에 물들지 않았으며, 이를 예우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¹³⁾ 당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南宋 시대 正學 수호와 異端 배척을 위해 서원 보급에 앞장섰던 주자의 취지가¹⁴⁾ 제례를 통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옥산서원은 조선 후기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일 뿐만 아니라, 명승지였던 관계로 당색과 학파에 관계없이 많은 인사들이 방문하였다. 이들은 옥산서원 體仁廟를 배알하였고, 그 소회를 남긴 詩文을 자신의 문집에 남겼다. 그 외

13) 『正祖實錄』 卷34, 16년 3月 2日(辛巳), “정학을 존승하려면 마땅히 선현을 존승해야 한다. 어제 옥산서원에 제사를 지내라고 명하였는데, 옥산서원에 제사를 지내고 도산 서원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지난번 邪學이 점차 번질 때에 오직 영남의 인사들이 先正의 학문을 지켜 흔들리지도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으므로, 그 후부터 나의 仰慕가 더해졌다”.

14) 『敬齋集』 卷2, 雜著, <續白鹿洞學規>, “故力排異端 以扶正道”.

정조의 치제문이 『弘齋全書』에 수록되어 있으며, 張顯光의 문집에는 옥산서원 유생들이 제향 의식을 묻는 편지가 실렸다.¹⁵⁾

방대한 전적을 소장하고 있는 만큼 옥산서원에는 제례 과정에서 작성된 치부류 문서가 다수 남아 있다. 우선 향사 절차를 수록한 〈홀기〉와 향사 시헌관 및 제 집사의 위치를 기재한 〈享祀時序位圖〉, 1585년부터 현대까지 역대 헌관 및 제 집사의 성명을 기록해 놓은 〈執事記〉가 전한다. 그 밖에도 향사 시 제수 물품과 경비 등을 기록한 〈祭需單子〉와 〈食床都錄〉, 향사 일지를 통보하는 〈回文〉 등이 전하여 16세기 이후 향사 의식과 더불어 참여 인원의 변화, 재정적 기반 등 향사의 제반 사항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05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尋院錄〉을 통해서도 평상시 옥산서원을 방문하고 謁廟를 거행한 인사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옥산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玉山書院致祭文〉(正祖), 〈答玉山書院〉(張顯光) 〈答臨臯書院〉(張顯光)
古文書·成冊類	〈笏記〉, 〈太宗陵笏記〉, 〈享祀時序位圖〉, 〈執事記〉 15건 〈祭需單子〉 74건, 〈食床都錄〉, 〈回文〉 42건, 〈尋院錄〉 105건 〈致祭文〉 4건, 〈致祭時日記〉, 〈求仁堂重建日記〉, 〈賜祭時到記〉 2건 〈到記〉, 〈玉山書院宣額時士林祇延到記〉, 〈賜祭時都廳下記〉 〈揭額時都廳下記〉, 〈額板祇延時下記〉, 〈賜祭時鄉執事〉 〈香祝祇迎節目〉, 〈祇迎節目〉 2건, 〈賜祭時節目〉, 〈致祭時節目〉 〈■■■■應行都節目〉, 〈宣額後院儒及本孫祇受謝恩行禮儀〉

옥산서원 제례 관련 고문서·성책류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특수 의례 자료가 다수 전한다는 것이다. 1781년, 1792년, 1839년, 1840년 작성된 4건의 〈치제문〉 뿐만 아니라, 그 경위를 정리한 일기와 의절, 참석자 명단인 時到記, 집행 경비를 망라해 놓은 下記 등이 전한다. 그 중에서도 〈致祭時日記〉는 1792년 3월의 치제 당시의 일정을 정리한 것이며, 1840년의 〈求仁堂重建日

15) 『旅軒續集』 卷2, 答問目, 〈答玉山書院〉; 書, 〈答臨臯書院〉.

記)에는 재사액과 치제 때 활용한 賜額禮·致祭禮 儀節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표제가 훼손된 〈□□□應行都節目〉에는 치제문 편액을 맞이하는 영액례와 이를 사당에 알리는 고유제, 강당에 편액을 거는 계액례 절차가 있으며, 〈宣額後院儒及本孫祗受謝恩行禮儀〉는 1839년 옥산서원 재사액 편액이 내려왔을 때 원유와 본손들이 사은례를 행한 의절이다.

4. 陶山書院

안동 도산서원은 이황을 주향으로 하고, 그의 문인 趙穆을 중향하는 서원이다. 이황은 16세기 중·후반 사람의 藏修處로서 전국에 서원이 확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원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의 규칙을 정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이황은 주세붕이 제정한 소수서원 의절에 의문을 가지고, 이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영남 지역 서원 향사 규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도산서원 역시 관찬 사료에 치제와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영·정조 연간 국왕은 옥산서원과 더불어 도산서원을 영남의 대표 서원으로 인식하고, 이황과 영남 남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거듭 치제하였다.

문집류에는 정조가 찬한 치제문을 비롯해 退溪學派의 도통 의식이 드러나는 봉안문·축문·고유문 등이 전한다. 鄭述의 문집에는 조목 중향에 따른 제물 마련과 위판을 쓰는 것에 대한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¹⁶⁾ 金道和·許薰 등의 상소는 19세기 후반 발생한 도산서원 위판 도난 사건과 관련해 復造를 청원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¹⁷⁾

도산서원 향사의 절차 전반을 명시해 둔 기록으로는 1916년에 엮은 것으로 알려진 〈陶山書院儀節草〉가 전한다. 이 책자는 도산서원 운영과 의례 등

16) 『寒岡集』 卷6, 問答, 〈答金施普〉; 〈答鄭彥宏〉.

17) 『拓菴集』 卷3, 疏, 〈陶山書院廟變後請復疏【代士林作】〉; 『舫山集』 卷6, 疏,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 卷8, 祭文,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

을 간략히 정리한 일종의 지침서이다. 그 외의 제례 관련 자료는 고문서·성책류 형태로 전한다.¹⁸⁾ 제례 규칙인 흘기 중 〈笏記〉라는 제목으로 엮여진 2건과 〈致祭時笏記〉, 〈陶山書院致祭儀〉는 모두 치제 때 활용된 것이다. 〈先生遺墨〉이란 표제의 자료는 이항이 소수서원 흘기를 고증한 〈안문성공향도【배위동】〉의 초고로 확인된다.¹⁹⁾

정기 제례에 참석한 유림은 ‘시도기’란 성책 자료로 엮여져 있다. 도산서원에는 153건의 시도기가 전하는데 대부분 정기 제례인 향사와 正謁禮 때 작성한 명부이다. 68건에 이르는 〈심원록〉에는 평상시 도산서원을 방문한 인사들을 기록해 놓았다.

〈표 4〉 도산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p>文集類</p>	<p>〈陶山書院致祭文〉(正祖), 〈陶山書院奉安文〉(趙穆) 〈陶山書院尙德祠春秋常用祝文〉(趙穆) 〈陶山書院從享賜祭文〉(趙穆), 〈答金施普【龍澤】〉(鄭述), 〈答西溪書院儒生〉(鄭述), 〈答鄭彥宏〉(鄭述), 〈謁陶山書院記〉(李璣) 〈陶山退溪書院致祭文〉(吳瑗), 陶山書院賜祭時告由文(李璣) 〈陶山書院致祭時告由文〉(李頤淳), 〈陶山書院致祭文【代知製教作】〉(李源祚) 〈陶山書院廟變後請復疏【代士林作】〉(金道和) 〈請復造陶山書院位版疏【爲士林作】〉(許薰)</p>
<p>古文書·成冊類</p>	<p>〈陶山書院儀節草〉, 〈笏記〉 2건, 〈致祭時笏記〉, 〈陶山書院致祭儀〉 〈先生遺墨〉, 〈乙未七月二十九日還安後行祀時儀節〉, 〈獻官執事案〉 2건 〈告由文〉 51건, 〈賜祭文〉 8건, 〈享禮時執事錄〉 10건, 〈尋院錄〉 68건 〈賜祭日記〉, 〈賜祭時日記〉, 〈從祀位改題日記〉 〈陶山書院廟變時日記〉, 〈舊位版埋安擇日記〉, 〈辛丑尙德祠還安時執事錄〉 〈請陶山書院尙德祠復位版疏爬錄〉, 〈尙德祠復位版奉安時執事錄〉 〈己亥十月二十一日卯時移安時執事〉, 〈尙德祠還安時執事錄〉 2건 〈尙德祠還安告由時爬錄〉</p>

도산서원은 치제례를 비롯해 특수 의례를 여러 차례 거행하였다. 그 당시

18) 2006년 간행 ‘한국국학진흥원, 앞의 책, 2006, 201~302쪽’에는 2,128점의 고문서·성책류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해 놓았다.

19) 한재훈, 앞의 논문, 2013, 9~10쪽.

의례의 과정과 절차를 기록해 놓은 일기도 전한다. 〈賜祭日記〉는 1733년, 1756년, 1781년, 1785년, 1792년의 치제를 하나로 엮은 것이며, 〈賜祭時日記〉는 1796년 치제 때의 일기이다. 〈從祀位改題日記〉는 1809년 조목 위판에서 뱀이 발견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 위판을 쓰는 의절을 정하고 봉안례를 거행한 기록이다. 〈陶山書院廟變時日記〉는 1901년 괴한에 의해 이황의 위판이 도난당하고 조목 위판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을 수습하고 새롭게 위판을 봉안하면서 고유제·慰安祭 등을 거행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그 밖에도 환안례·이안례·봉안례 등 특수 의례 때 임명된 집사 명부가 여러 건 전한다.

5. 筆巖書院

장성 필암서원은 金麟厚를 주향으로 하고, 그의 문인 梁子激을 종향하는 서원이다. 관찬 사료에는 1786년(정조 10) 양자징의 종향을 허락한 기사와 1796년 치제 이후 김인후의 위판을 고쳐 쓴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필암서원과 관련된 주요 문헌은 1949년과 1975년 간행된 『필암서원지』로 정리되었다. 우선 현종·정조·순조·철종의 〈賜祭文〉을 수록하여, 필암서원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院儀節〉, 〈舊院規〉, 〈新院規〉는 필암서원 원규인데 제정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원의절〉에는 朔望焚香 때 원임, 향사 때 제관·집사·유림이 입재하는 시기, 제관 및 집사의 薦望 기준을 규정해 놓았다. 〈구원규〉와 〈신원규〉에는 분향과 향사 때 원임의 역할과 주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필암서원지』의 〈祀典〉에는 필암서원에서 거행되는 향사를 비롯해 土相見禮·鄉飲酒禮·鄉射禮·鄉約禮 등 각종 鄉禮 규식을 수록하였다. 이 중 서원 제례와 관련해서는 제관·제복·제기·제수·祭官望帖·送祭官望帖書式·常享祝·享祀笏記·瞻謁禮笏이 있어, 향사와 일상 제례의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필암서원지』와 문집류에 수록된 봉안문·축문·예성제문 등은 주로 畿湖學派 계열의 여러 명현이 남긴 것으로서, 필암서원을 중심으로 한 기호 사림의

도통 의식을 보여준다. 『필암서원지』의 〈參祭錄〉은 1710~1714년, 1900~1944년, 1951~1975년 향사 때 참여한 제관 명단이다. 그 밖에도 필암서원 축이 제례와 관련해 관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제반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稟目〉 및 〈文報〉 12건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표 5〉 필암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筆巖書院誌』 (1975)	〈賜祭文〉 4건, 〈陳設圖〉, 〈祭器圖說〉, 〈禮服圖〉, 〈瞻謁禮圖〉 〈院儀節〉, 〈舊院規〉, 〈新院規〉, 〈祀典〉, 〈祠宇上梁文〉(金友伋) 〈廓然樓上梁文〉(宋明欽), 〈祠宇上梁文〉(奇挺翼) 〈祠宇重修上梁文〉(閔丙承), 〈祠宇重修上梁文〉(金載石) 〈春秋釋菜祝文〉(徐台壽), 〈書院移建奉安文〉(宋時烈) 〈鼓巖追配時告先生文〉(鄭枋), 〈鼓巖先生奉安文〉(鄭枋) 〈鼓巖各祀時告先生文〉(宋達洙), 〈告鼓巖先生文〉(宋達洙) 〈鼓巖先生禮成祭文〉(金履鉞), 〈祠宇重建後還安祝文〉(金漢翼) 〈純貞孝皇后因山前停春享告由文〉(邊時淵), 〈重修畢告由文〉 〈參祭錄〉, 〈稟目〉 및 〈文報〉 12건
文集類	〈長城筆巖書院移建告由文〉(宋浚吉), 〈移建後春秋享祀祝文【增】〉(宋時烈)

6. 道東書院

달성 도동서원은 金宏弼을 주향으로 하고, 훗날 鄭述를 추향한 서원이다. 또한 별묘에 鄉賢인 郭起·郭承華·裴紳·元凱를 제향하였다.

관찬 사료에는 도동서원과 관련해서 사액·치제·추향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그 중에서도 1609년(광해군 1) 8월 1일의 『光海君日記』 기사는 慶尙道觀察使 姜籤이 馳啟하여 중국 주자 서원의 예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제 때 “조정의 명령을 삼가 받들어 지낸다(恭承朝命)”라는 구절을 축문에 넣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이에 앞선 도동서원 사제 때의 축문에 별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건의하였는데, 당시 광해군은 이를 허락하였다.²⁰⁾ 도동서원 축식에는 해

20) 『光海君日記』 卷19, 1年 8月 1日(己酉).

당 구절이 삭제되어 있지만, 흘기에는 그 흔적이 ‘敬奉朝命’으로 남아 있다.²¹⁾

문집류 기록에서는 정구의 문적이 주목된다. 정구는 봉안문과 축문을 작성하였으며, 도동서원을 위해 직접 〈원규〉를 제정하기도 했다. 도동서원 〈원규〉는 8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목이 향사와 관련된 ‘謹享祀’이다. 이 조목에는 향사 일자와 불참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정하여,²²⁾ 서원 운영에서 향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상도관찰사 崔璿에게 보낸 편지에는 服色과 정부에서 내린 축문 규칙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²³⁾ 축문 규칙은 앞서 살펴 본 강침의 치계와 관련된 것이다.

도동서원에 소장된 고문서·성책류는 1997년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도동서원지』에 선별되어 있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다. 이 가운데 〈제문〉은 1605년부터 1720년까지 작성된 각종 축문·고유문, 그리고 묘제 시 축문을 엮어 놓은 것이다. 흘기로는 2건의 〈祭儀〉와 〈笏記【墓祭】〉가 있다. 〈祭儀〉 중 1건은 김굉필 향사 흘기와 묘제 흘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나머지 1건에는 흘기 외에도 ‘移還安節目’, ‘墓祀祝詞’ 등이 부기되어 있다. 〈흘기〉는 墓祭 때 흘기이다. 도동서원 제례의 가장 큰 특징은 향사 때 묘제를 지내는 것이다. 『도동서원지』에 수록된 〈道東書院刱建事蹟〉에 따르면 도동서원 뒷 편에 김굉필 묘소가 있는데, 정구가 중국 武夷故事에 의거하여 향사 때 묘사를 지내게 했으니, 이것이 도동서원 향사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⁴⁾ 〈흘기〉는 묘제 흘기이지만 훼손이 심하고, 대신 〈제 의〉 2건에 묘제 흘기가 같이 수록되어 있다.

〈奉安時諸執事分定記〉는 1610~1803년까지의 현관과 집사 명부이다. 도동서원 제례 관련 기록 중 명부 자료가 가장 많이 전한다. 〈참계록〉 8건은 1611~1682년의 향사와 묘제, 〈謁祠錄〉 24건은 1692~1870년의 향사·묘제·

21) 최순권, 앞의 논문, 2013, 189~190쪽.

22) 『寒岡續集』 卷4, 雜著, 〈院規【爲道東作】〉.

23) 『寒岡集』 卷5, 書, 〈答崔監司【璿】〉.

24) 최순권, 앞의 논문, 2013, 198~199쪽.

삭망분향례 참여자 명부이다. 그 밖에도 1791~1848년의 〈敦祠錄〉과 〈祠宇重修時敦祠錄〉, 1905~1915년의 〈焚香錄〉, 1606년부터 평상시 도동서원 방문자들의 알묘 기록인 〈심원록〉 25건 등이 전한다.

〈표 6〉 도동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答崔監司【權】〉, 〈院規【爲道東作】〉(鄭述) 〈道東書院奉安寒暄堂金先生文〉(鄭述), 〈道東春秋享祀文〉(鄭述) 〈道東書院傍祠常享祝〉(鄭宗魯), 〈道東書院謁寒暄金先生〉(安鼎呂)
古文書·成冊類	〈祭文〉, 〈祭儀〉 2건, 〈笏記〉, 〈道東書院奠物單子〉 〈奉安時諸執事分定記〉, 〈道東書院重修還安紀念詩帖〉, 〈抄請回文〉 〈招請狀〉, 〈奉安時諸執事分定記〉, 〈別祠奉安時諸執事分定記〉 〈參祭錄〉 8건, 〈謁祠錄〉 24건, 〈焚香錄〉, 〈敦祠錄〉 〈祠宇重修時敦祠錄〉, 〈尋院錄〉 25건, 〈時到記〉, 〈墓享時【時到記】〉

7. 屏山書院

안동 병산서원은 柳成龍과 그의 아들 柳軫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병산서원은 9개 서원 중 가장 늦은 시기인 1863년(철종 14) 사액을 받았다. 이에 『承政院日記』에는 병산서원 사액을 청원하는 사람들의 상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집류의 병산서원 관련 제례 기록은 주로 축문·봉안문·치제문이다. ‘이황-류성룡’을 계승한 西厓學派의 주요 인사들이 제문을 찬하며, 도통 의식을 드러내었다.

병산서원은 안동 지역을 대표하던 서원으로서 많은 전적 자료를 소장하였다. 1965년 忠孝堂 永慕閣으로 이전되어 문중 자료와 함께 전해진다. 서책과 달리 고문서·성책류는 문중 자료와 구분이 용이하지만,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병산서원 소장 고문서·성책류 중 〈제문〉 2건에는 각각 1629년 류성룡 북향과 1689년 류진 중향 때 쓴 것을 베껴 놓았다. 〈제기〉는 1615년과 1617년 병산서원 소장 제기의 인수인계이며, 〈祭需物目〉은 正位 류성룡과 從祀位 류

진의 제향에 필요한 물품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서원과 달리 초창기 홀기·진설도와 같이 제례 규식을 기록한 자료는 전하지 않는다.

나머지 제례 관련 기록은 명부이다. 〈奉安錄〉에는 류성룡의 병산서원 봉안과 관련해 1610~1614년의 제 집사 및 有司 명단과 각종 제문을 엮어 놓았다. 〈春秋享祀執事分定記〉 4건은 1614~1639년, 1658~1664년, 1666~1698년, 1723~1735년 동안 거행된 향사의 헌관 및 제 집사 명단이다. 〈焚香錄〉은 1823~1826년 朔望禮 때의 것이다.

〈표 7〉 병산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文集類	〈屏山尊德祠復享〉(李埈), 〈屏山常享祝文〉(李埈) 〈屏山書院享祀祝文〉(鄭經世), 〈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鄭經世) 〈屏山書院西厓先生位版再奉安祭文〉(鄭經世) 〈屏山書院修巖奉安文〉(洪汝河) 〈屏山書院從享文〉(洪汝河), 〈屏山書院謁西崖柳先生祠文〉(安鼎呂) 〈屏山書院賜額時致祭文〉(李種祥)
古文書·成冊類	〈祭文〉 2건, 〈祭器〉, 〈祭需物目〉, 〈奉安錄〉 〈春秋享祀執事分定記〉 4건, 〈焚香錄〉

8. 武城書院

정읍 무성서원은 崔致遠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申潛·丁克仁·宋世琳·鄭彥忠·金若默·金寬의 위판도 함께 봉안하였다. 무성서원 관련 자료는 1931년 간행된 『武城書院院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무성서원원지』에 수록된 〈홀기〉, 〈제수물목〉, 〈진설도〉는 향사 때 규식이다. 〈延額儀節〉은 특수 의례인 사액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치제문도 함께 수록하였다.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을 비롯해 〈奉安日記〉, 〈奉安祝文〉 등은 1784년(정조 8) 최치원 영정 봉안 경위와 관련 축문을 엮어 놓은 것이다. 〈원규〉는 1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조목이 향사 관련 규정이다.

고문서·성책류로는 〈延額記事〉, 〈심원록〉 5건, 〈奉審錄〉 3건이 전한다.

〈연액기사〉는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의 사액 경위와 관련 의절, 축문 및 이후 전개되는 여러 제례의 헌관 및 제 집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심원록〉은 1607~1658년, 1780~1831년, 1813~1829년, 1831~1876년, 1858~1879년의 것이 전한다. 평상시 또는 향사 때 특별히 알묘한 인사를 기재해 놓았다. 이후에는 표제를 〈봉심록〉으로 엮어 놓았는데, 1875~1915년, 1933~1967년, 1962~1974년 것이 전한다.

〈표 8〉 무성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武城書院院誌』 (1931)	〈延額儀節〉, 〈祭文〉, 〈祝文記〉, 〈笏記〉 〈文昌侯崔先生影幀奉安事蹟〉, 〈奉安日記〉, 〈奉安祝文〉 〈移安祝文〉, 〈還安祝文〉, 〈奉安祭祝文〉, 〈院規〉 〈祭物目錄〉, 〈陳設圖〉
古文書·成冊類	〈延額記事〉, 〈尋院錄〉 5건, 〈奉審錄〉 3건

9. 遯巖書院

논산 돈암서원은 金長生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金集·宋浚吉·宋時烈을 추향하였다. 제향인 모두가 기호학파의 도통을 잇는 명현이자, 文廟에 從祀된 만큼, 기호 사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돈암서원 제례 관련 자료는 1958년 간행된 『돈암서원지』에 정리되어 있다. 『돈암서원지』에 수록된 〈遯巖書院院規〉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이 ‘先賢敬慕’, 제3장이 ‘俎豆必謹’으로서 제례의 중요성을 부각해 놓았다. 그 밖에도 각종 제례 때 작성된 축문류와 제문을 비롯해 향사 때 규식인 〈春秋享祀儀節〉, 〈홀기〉, 〈진설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송준길과 송시열의 추향 때 활용한 〈奉安時行禮儀節〉이 주목된다. 또한 김장생·김집·송준길·송시열의 위패 봉안 때 작성된 시도기를 모두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돈암서원지』와 여러 문집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봉안문과 제문 등은 기호학파 명현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계열의 도통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돈암서원의 고문서·성책류는 2014~2015년 조사되었다.²⁵⁾ 이 중 제례 관련 자료로는 〈홀기〉를 비롯해 헌관 및 제 집사, 〈시도기〉와 같은 제례 참여자 명부인데, 대부분 근래에 작성된 것이다.

〈표 9〉 돈암서원 제례 관련 주요 문헌

『遜巖書院誌』 (1958)	〈特殊物品及祭用器具〉, 〈上樑文〉(金尙憲), 〈奉安文〉, 〈祝文〉 〈文元公沙溪金先生奉安時儒生到記〉, 〈賜額書院祭文〉(顯宗) 〈春秋享祀儀節〉, 〈笏記〉, 〈陳設圖〉, 〈春秋享祀祝文〉 〈中丁國忌相值季丁退行告由文〉, 〈國恤中停焚香告由〉, 〈停享祀告由〉 〈廟宇修利葺告由〉, 〈慎獨齋從享奉安文〉 〈文敬公慎獨齋金先生奉安時儒生到記〉 〈遜巖書院文敬公奉安時告文元公沙溪老先生文〉(李惟泰) 〈同春堂從享奉安文〉 〈文正公同春堂宋先生奉安時儒生到記〉, 〈奉安時行禮儀節【同春先生】〉 〈文正公尤菴宋先生奉安時儒生到記〉, 〈奉安時行禮儀節【尤菴先生】〉
文集類	〈賜額遜巖書院祭文〉(顯宗), 〈遜巖書院奉安文〉(鄭弘溟) 〈遜巖書院請額疏略〉(宋時烈), 〈連山遜巖書院從享祭文〉(俞榮) 〈遜巖書院祭清陰金先生文〉(宋浚吉) 〈遜巖書院文敬公奉安時 告文元公沙溪老先生文〉(李惟泰) 〈遜巖書院賜祭文〉(趙復陽), 〈遜巖書院合享同春先生祭文〉(李翔) 〈連山遜巖書院尤齋宋先生奉安祭文〉(李奮) 〈遜巖書院移建後奉安文〉(宋秉善)
古文書·成冊類	〈笏記〉, 〈獻官錄〉 2건, 〈本院祭官錄庚申春享時〉 〈遜巖書院奉審錄〉 2건, 〈貿易記〉, 〈時到記〉 28건

Ⅲ. 서원 제례 문헌의 유형별 활용

1. 홀기류

홀기는 집회나 각종 제례 때 의식을 기록한 후 그 순서를 낭독하는 문서로서, 이를 사용하는 집단의 종교·풍속·교육·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25)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앞의 책, 2015, 37~47쪽.

가 된다. 유교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거행되는 각종 의례 때도 홀기를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 민간에서 거행하는 가장 대규모 의례는 단연 서원 제례였다. 따라서 홀기류 분석을 통해 서원 제례가 가지는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지금까지 서원 제례 연구 대부분은 홀기류를 활용한 것이다.

서원 홀기에는 제례 때 집례자가 낭독하는 의례 순서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진설도와 축문, 기본적인 규식을 수록한 것도 있다. 서원에 따라서는 남계서원의 〈남계서원춘추향례의절〉, 도산서원의 〈도산서원의절초〉, 필암서원의 〈원의절〉, 돈암서원의 〈춘추향사의절〉처럼 ‘의절’이라는 제목으로 향례 또는 관련 제례 전반의 규식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기도 한다.

다만, 서원 제례와 관련된 홀기 및 의절 검토는 향사에 집중되었다. 서원 제례는 크게 정기 제례와 부정기 제례로 구분된다. 정기 제례는 식망분향례와 정알례가 있지만, 가장 큰 규모는 향사이다. 부정기 제례는 이안례·환안례·치제례·사액례 등이 있으나,²⁶⁾ 검토된 사례는 별로 없다. 제례 규식이 향사 위주로 전래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원 제례는 법제화되지 않은 채 사적 영역에서 거행되었다. 중국에서도 서원 제례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서원은 明·清기를 거치면서 관료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존현’의 성격이 강화되던 우리나라 서원과 성격을 달리한다. 일정한 규식이 없었기에²⁷⁾ 우리나라 명현들

26) 윤희면, 앞의 논문, 2000, 58~59쪽.

27) 『正祖實錄』 卷47, 21年 7月 14日(辛巳), “掌令 朴道翔이 상소를 올려 ... ‘둘째는 서원의 폐단입니다. 國朝의 典禮에는 애당초 서원에 관한 定制가 없습니다. 대개 順興 백운동서원이 서원 창설의 시초인데 그 일은 『五禮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례의』에는 본디 서원 享祠에 관한 예절이 언급되지 않았고, 『大典通編』 안에도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 『常變通攷』 卷27, 學校禮, 〈獻爵拜〉, “공적인 제례나 사적인 제례나 모두 獻爵한 뒤에 절하는 절차가 있는데, 유독 본 서원의 홀기에는 이 한 가지 절차가 미흡하여, 지난날 참 의심했었다. 다른 데는 논할 게 없고 滄洲精舍의 釋菜儀節을 준거로 삼음이 합당한데, 바라건대 入齋한 여러 현자들과 논의해서 실추된 의식을 거행함이 어떠한가?”.

은 『國朝五禮儀』와 주자의 〈滄洲精舍釋菜儀〉를 참고하여, 서원에 적용할 규식을 제각기 만들었다.

그런 관계로 백운동서원의 주세붕 흘기와 이를 수정한 이황의 흘기는 우리나라 서원 향사의 규식화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에 소수서원의 주세붕·이황 흘기와 이황의 〈안문성공춘추대향도【정배위】〉, 그리고 도산서원 소장 〈선생유묵〉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황이 주세붕의 규식에서 진설, 受胙와 飲福 순서, 향사 때 부르는 〈도동곡〉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하였고, 그에 의해 흘기가 새롭게 정립되는 모습을 규명하였다.²⁸⁾ 이를 바탕으로 9개 서원의 향사 기일, 省牲, 陳設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루어졌고,²⁹⁾ 폭을 넓혀 남인·서인계 서원의 향사일, 제관, 제물, 의식 절차를 비교하기도 했다.³⁰⁾ 〈도산서원의절초〉를 중심으로 현대 서원 향사의 변화 양상과³¹⁾ 도산서원·병산서원을 비롯해 안동 지역 21개 서원의 진설도를 바탕으로 제례 음식을 비교한 연구도 주목된다.³²⁾

그러나 9개 서원 중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의 흘기 작성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비교·검토도 현대의 향사 규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조선 시대 사대부 계층의 다양성을 투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번 정해진 흘기·진설·축문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³³⁾ 그것이 정리되기까지는 분명히 여러 논의를 거쳤을 것이다. 현재 전하는 9개서원의 흘기류 자료와 관련 인사의 의견을 담은 단편적인 문답으로는 이를 규명하기 어렵다. 9개 서원에 한정하지 않고, 학파나 지역별로 원구나 규식의 모범이 된 서원

28) 한재훈, 앞의 논문, 2013, 9~15쪽.

29) 한재훈, 앞의 논문, 2017, 335~347쪽.

30) '임근실, 앞의 논문, 2020' 참조.

31) '김미영, 앞의 논문, 2013' 참조.

32) 윤숙경, 「향교와 서원의 제례에 따른 제수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8, 255~259쪽.

33) 권삼문, 「향사의 지속과 변화」, 『민속연구』 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184쪽.

의 사례와 개별 사대부가 남긴 禮書 등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그것의 정리 과정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서원의 특수 의례 관련 자료

서원의 부정기 제례로는 이안례·환안례·치제례·사액례 등의 특수 의례가 있다. 이들 제례는 서원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거행된다. 정부의 치제와 사액, 추향, 대규모 공사, 피치 못할 일로 인한 위패 이동이 원인이 되어 치러졌다.

특수 의례는 해당 서원의 연혁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에 거행되었다. 그렇지만 특수 의례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서원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논고의 일부로 다루어질 뿐이었다. 근래, 일기 자료를 활용하여 도산서원 치제례의 실체가 규명되기도 했지만,³⁴⁾ 9개 서원에 관련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일기와 규식 등 특수 의례 관련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9개 서원의 특수 의례 관련 문헌

	사액·치제·사제	추향·봉안
紹修書院	-	〈影嶺處變時事蹟〉
玉山書院	〈求仁堂重建日記〉 〈宣額後院儒及本孫祇受謝恩行禮儀〉 〈■□■應行都節目〉 〈致祭時日記〉, 〈香祝祇迎節目〉 〈祇迎節目〉, 〈賜祭時節目〉 〈致祭時節目〉	-
陶山書院	〈賜祭時笏記〉, 〈賜祭日記〉 〈賜祭時日記〉	〈乙未七月二十九日還安後行祀時儀節〉 〈從祀位改題日記〉 〈陶山書院廟變時日記〉
道東書院	-	〈道東書院重修還安紀念詩帖〉
遯巖書院	-	〈奉安時行禮儀節【同春先生】〉 〈奉安時行禮儀節【尤庵先生】〉

34) 채광수, 앞의 논문, 2020, 209~216쪽.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말과 관련 자료를 일기와 사적으로 엮어 둠으로써, 훗날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상고하는 자료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옥산서원·도산서원에는 사액 및 치제와 관련된 일기가 남아 있으며, 소수서원·도산서원에는 사당에서 발생한 변고와 그것의 처리 과정을 일기가 있다. 자료에 따라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제례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활용한 규식이나 당시 참여자 명부도 수록해 놓았다.

특수 의례 때 사용되는 홀기와 의절도 기록으로 남아 있다. 도산서원에는 사제 때 홀기, 돈암서원에는 추향 때 사용한 의절이 전한다. 옥산서원에는 치제 때 규식을 절목으로 상세히 남겨 놓았다. 그 밖에도 〈선액후원유급본손지수사은행례의〉는 옥산서원 재사액 후 후손들이 펼친 일종의 사은행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수 의례는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정기 제례보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대목은 함께 전하는 당시의 下記와 집사록·시도기를 통해 확인된다. 특수 의례는 서원 제례의 검토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통 시대 서원을 중심으로 결집하던 사대부 집단의 지향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축문류와 제문

남송 시대 주자는 滄洲精舍에 공자와 四聖을 봉안하였고, 南康軍知事 재임 중에는 廉溪祠를 짓고 周敦頤와 二程을 제향하였다. 여기에는 서원 보급을 통해 성리학 도통을 확고히 하려는 주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³⁵⁾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되었다.

16세기 후반 이후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이 확산되는데, 이른바 학파의 분화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각 학파는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경쟁적으로 특

35) 方彥壽, 「朱熹書院祭祀制度的建构、完善与传承」,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130~134쪽.

정 학파의 주요 인사를 서원에 제향해 나갔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도통의 계승자임을 천명할 수 있었다.

서원과 관련된 여러 문헌 자료 중 도통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상향축문·봉안문·환안문·이안문·상량문 등의 축문류와 제문일 것이다. 대체로 축문류는 해당 서원과 연고가 있는 명현들이 썼다. 이러한 글은 곧 서원의 권위와 직결된다. 그런 관계로 축문류는 제향인과 찬자의 문집 및 서원지에 수록되거나, 현판으로 제작하여 서원에 揭板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축문류 자료에 드러나는 의식과 지향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鄭經世는 병산서원에 스승 류성룡의 위패를 봉안하며 쓴 제문에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뺏어났네, 선생[이황] 문하에 가서 종사했나니 만나 뵈매 그 자리서 인정받았고 계합되어 의심하는 맘 없었나니”³⁶⁾라며, ‘이황-류성룡’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도통을 드러내었다. 나아가 洪汝河는 柳軫의 병산서원 제향 때 쓴 봉안문에서 “공경히 생각건대 文忠公[류성룡]은 ... 우뚝이 유럽의 종장이 되었네. 아! 우리 선생은 家學을 잘 이어 받아서”³⁷⁾라는 구절로 ‘이황-류성룡-류진’으로 이어지는 서애학파의 가학 전통을 강조하였다.³⁸⁾

여기에 드러나는 제향인의 학문적 계보는 서원 운영 집단의 도통 의식을 상징한다. 현재 축문류 및 제문은 9개 서원뿐만 아니라, 서원 관련 문헌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제향인과 찬자, 찬자와 서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만 활용되었다. 따라서 축문류 및 제문에 드러난 도통 의식과 정치·사회적 함의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36) 『愚伏集』 卷16, 祭文, 〈屏山書院奉安西厓先生祭文【甲寅】〉, “迥粹髫年 往從于師 見而知之 有契無疑”.

37) 『木齋集』 卷7, 〈屏山書院修巖奉安文〉, “恭惟文忠 ... 蔚爲儒宗 繫我先生 克紹家學”.

38) 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151~159쪽.

4. 명부류

서원에서는 다양한 명부류를 작성하였다. 院任案과 院生案은 서원 운영 주체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명부 자료를 통해 해당 서원의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구성원의 지위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다. 서원에는 임원 및 구성원 명부 외에도 다양한 명부가 전승되고 있다. 제례와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역할을 분담한 일종의 분정기와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평상시 방문자들의 성명도 심원록·알모록 등과 같은 방명록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원임안·원생안을 제외한 제례 명부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편이다. 원임안·원생안과 비교해 서원의 운영 주체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제례 관련 명부는 여러 가지 표제로 작성되었다. 9개 서원에 소장된 자료를 성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명부

제관 분정	執事分定記, 參祭錄, 執事錄, 執事記, 獻官執事案, 爬錄, 奉安錄
정알례·삭망분향례	歲謁錄, 焚香錄
일반 알모	謁詞錄, 敦詞錄, 祇謁錄, 奉審錄, 尋院錄
행사 참석	時到記, 到記

이 중 향사와 각종 제례 때 제관을 분정해 놓은 명부는 서원 내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 서원의 제관 분정이 일종의 정치·사회적 절차로 진행된다는 평가처럼,³⁹⁾ 제례 때 각기 맡은 역할을 통해 구성원 간의 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제관은 서원 제례의 전승 주체임을 유념해야 한다. 각 서원의

39) 권삼문, 앞의 논문, 2001, 58쪽.

제례는 집사분정기·참제록·집사록 등에 기재된 현관 및 집사들에 의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서원 방문자 중 사대부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면, 으레 사당을 찾아 알묘를 한다. 그리고 알사록·돈사록·봉심록 등의 명부에 성명을 기록하였다. 일반 방명록인 심원록에도 알묘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9개 서원에는 다양한 표제의 일반 알묘 기록이 전한다. 그러나 심원록을⁴⁰⁾ 제외하고 이러한 명부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서원에서 거행되는 가장 일상적인 제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알묘의 의미는 그간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시도기도 마찬가지로이다. 정기 향사와 특수 의례 및 행사가 있을 때 서원에서는 방문자 명부인 시도기를 작성하였다. 그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는 특수 의례일 것이다. 치제례나 봉안례 때는 많은 사대부가 참석한다. 제례의 또 다른 목적은 대외적으로 조직의 위상을 과시하는데 있다. 반대로 본다면 시도기에 기재된 참석자 범위는 서원의 대외적 영향력 또는 일종의 관계망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이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인 9개 서원 관련 문헌 자료의 전승과 그것이 활용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서원의 운영 목적은 교육보다 ‘존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원에서의 ‘존현’은 제례를 통해 구현되었다. 한편으로 서원 제례는 주도 세력의 정체성 및 지위를 반영한다. 그런 관계로 서원 보급 이래 사대부 세력은 제례와 관련된 규칙, 목적과 취지, 참석

40) 김명자, 『『심원록』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이병훈, 「19세기 한중서원 자료를 통해 본 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 경주 옥산서원과 광주 광아서원을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회』 14, 한국서원학회, 2022 ; 한중수, 「18~19세기 영광 정씨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 내용을 중심으로 -」, 『역사문화학회』 25,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2.

자, 운영 실태를 기록으로 남겨 놓았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서원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난 2019년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서원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된 외래 문물이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의 서원 전통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일정한 형식이 없거나 조선의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이 있다면, 여러 문헌과 사례를 고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게 서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 받은 것도 서원 문화의 독자성에서 찾을 수 있다.

9개 서원의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중국에서 유래한 서원 문화가 조선 시기를 거쳐 자연스레 우리의 것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우리의 선현들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서원 제례 규칙을 정비하였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다. 현재 전하는 제례 관련 문헌 자료에는 중국과 달리 ‘존현’의 가치를 내세운 한국 서원의 기록 문화가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서원 제례는 사대부가 주축이 된 지역 공동체가 오랜 기간 공유해 왔던 문화이다. 이를 통해 전통 사회의 구조와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사회는 급변하였고, 서원 제례는 하나의 전통문화로만 계승되고 있다. 예전처럼 서원 제례는 지역 공동체의 권력 구조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는 곧 서원 제례의 변형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제례 계승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례의 간소화는 피할 수 없었다.

물론, 서원 제례의 원형을 확정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처음 서원 제례가 보급된 이래, 명현들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해 나갔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에는 계승의 어려움 때문에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변형되고 있다. 실제 현재 거행되는 9개 서원의 향사는 흥기에 기재된 내용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로 변형되었는지 고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변형 이전의 제례가 문자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원형 복원이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 서원의 제례 관련 문헌 자료는 옛 전승 양식을 재구성하는데

사실상 유일한 전거이다. 따라서 9개 서원뿐만 아니라 여러 서원에 전해지는 문헌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제 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서원 제례의 전통가치를 확립하고, 체계적 전승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書院謄錄』, 『常變通攷』, 『退溪續集』, 『嶧陽集』, 『寒岡集』, 『寒岡涑集』, 『旅軒續集』, 『愚伏集』, 『木齋集』, 『拓菴集』

2. 연구논저

-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12,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 _____, 「향사의 지속과 변화」, 『민속연구』 9,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9.
- 김명자, 「『심원록』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서원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한국국학진흥원, 2013.
- 논산시·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 돈암서원, 『돈암서원지』, 1958.
- _____, 『돈암서원지』, 1995.
- 무성서원, 『무성서원원지』, 1931.
- 方彦壽, 「朱熹書院祭祀制度的建構、完善與傳承」, 『한국서원학회』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동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 _____, 『옥산서원지』, 영남대학교출판부, 1993.
- 영남문화연구원, 『소수서원지』, 소수서원, 2007.
- 영주시, 『소수서원 고문서 문화재 지정 신청 보고서』, 2023.
- 윤숙경, 「향교와 서원의 제례에 따른 제수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98.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 진단학회, 2000.
- 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회』 12, 한국서원학회, 2021.

- 이병훈, 「19세기 한중서원 자료를 통해 본 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 -경주 옥산서원과 광주 광아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4, 한국서원학회, 2022.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1, 한국서원학회, 2020.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무성서원지』, 2021.
- 정순우, 「조선 시대 제향 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학회, 1998.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추향례·치제례·사액례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0, 한국서원학회, 2020.
-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필암서원, 『필암서원지』, 1975.
- 한국국학진흥원, 『도산서원 고전적』, 2006.
- _____,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0- 병산서원편-, 1994.
- _____,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1995.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영남퇴계학연구원, 2017.
- _____, 「퇴계의 서원 향사례 정초에 대한 고찰-백운동서원 향사례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 한중수, 「18~19세기 영광 정씨 문중활동 연구-무성서원 심원록 내용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25, 지방사와 지방문화, 2022.

디지털장서각(<https://jsg.aks.ac.kr>)

유교넷(<https://www.ugyo.net>)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https://kostma.aks.ac.kr>)

Abstract

A Trend of Succession for Bibliographic Data Related to the ‘Memorial Ceremony in Seowon(書院),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Focusing 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for UNESCO World Heritage—

Yi, Gwang-woo*

This thesis contemplates the bibliographic data related to the memorial rituals handed down i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for UNESCO World Heritage. Seowon in the mid-16C was emerged as an alternative venue for government and academics. However, the noble classes that led the Seowon operation under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uring the Joseon Era had the main focal points in the ritual ceremonies for ‘johyeon (尊賢)’ rather than the academic studies. Through the Seowon ritual ceremonies, the noble classes were able to pronounce that they are the political and academic successors of the religious service personnel in the rural village communitie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y sustained and maintained their social status thereof. In the meantime, it is feasible to build up the solidarity between the noble classes that shared the political factions and academic factions and confirm the order with the ritual ceremonies in Seowon. In this aspect, Seowon has handed down with a number of records related to ritual ceremonies, but the studies on Seowon have not attracted a great attention as

* Yeungnam University / ikw38@ynu.ac.kr

such studies were focused on politics, social and economic affairs, education and so forth. Therefore, the records related to the ritual ceremonies for primarily 9 Seowons designated as the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for UNESCO World Heritage are classified for each type as in literature collections, Seowon journals, ancient documents, and publications. These data have the record on Seowon ceremony related rules and styles, purpose, name list of attendees in the ritual, and operation status. Looking for each contents again with respect to the ritual ceremony related data, those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he holgiryu(笏記類) that contained the rules, styles and rituals of the regular ritual ceremony, such as, shrine or the like, data related to special ritual ceremonies, such as, saeak-rye(賜額禮), chije-rye(致祭禮), chuhyang-rye(追享禮), hwanan-rye(還安禮) and others, written ritual writings and ritual writings listed mainly on literature collections, and the name lists of ceremony officers, such as, dedication officer and administrator, general almyoja and attendees to the ritual ceremonies. The Seowon ritual data is the most impeccable foundation to show that the Seowon culture originated from China has naturally ascended to the culture of Korea through the Joseon Dynasty era. In addition, it may be facilitated as an important turning point for restructuring the ancient transformation of the Seowon memorial ceremony that has been transforming to turning into contemporary period.

Key word :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memorial ceremony, holgi, ritual ceremony, special ritual ceremonies

논문 투고일: 2023. 11. 09 심사 완료일: 2023. 12. 05 게재 확정일: 2023. 12. 06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와 지속·발전을 위한 방안 제안

이 해 준*

- I. 머리말
- II.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 전통
- III. ‘한국의 서원’ 서원별 제향의례와 자료
- IV. 제향의례 가치와 지속·발전 제안

【국문초록】

‘한국의 서원’이 지난 4-500년 전통의 서원 제향의례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서원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 서원이 ‘강학(講學) 위주인데 반하여, 한국의 서원은 독특한 제향(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별로 추앙하는 상징적인 선현을 선정하여 사상적 멘토를 삼고 그를 추송하고 제향 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제향과 함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 공간이었던 것이다.

또한 서원의 제향의례가 온전하게 남아 시행되는 경우는 한국뿐으로,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는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유교식 제향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는 9개 서원의 제향의례는 후손, 지방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고,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9개 서원의 제향의례 원형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정립, 전승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를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leehj@kongju.ac.kr

지정하였으면 한다.

주제어 :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제향 의례, 제향인물, 제례 원형 복원, 무형유산 지정

I. 머리말

본고에서 발제자는 한국 서원 제향의례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과 관련하여, 부족하지만 ‘한국의 서원’이 지닌 4~500년 전통의 서원 제향의례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서원제도는 중국에서 비롯되었지만 중국과 한국의 서원을 비교하면, 중국의 서원이 講學 위주인데 반하여, 한국의 서원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인물 ‘祭享’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한국의 서원은 서원 별로 추앙하는 상징적인 선현을 선정하여 사상적 멘토를 삼고 그를 추송하고 제향 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제향과 함께 고급 인재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접촉, 교류했던 거점 공간이었다.¹⁾

특히 한국 서원은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의 학덕과 행의를 추앙하고, 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정신과 문화를 널리 확산, 정착시키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제향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여러 형태의 생활의례들은 서원이 사회교육의 실현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면이다.

또한 서원의 제향의례가 온전하게 남은 경우는 한국뿐으로,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는 세계에서 가장 완비된 형태로 재현되는 유교식 제향 의식이라 할

1) 이혜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 유산- 제향의례-』, 2014 ;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기록문화와 제향-』, 2021.

수 있다. 한국서원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서 9개 서원의 제향의례는 조선의 패망이나 일본의 조선 합병 등 국난과 관계없이 서원이 건립된 후로 한번도 끊이지 않고 후학들이나 후손, 지방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어 왔다.²⁾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³⁾의 제향의례는 무형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간소화되고 변형되면서 그 원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간략화 된 제례가 지속될 경우 그 가치와 위상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무형문화 유산으로 지정가치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9개 서원의 제향의례 원형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재정립, 전승 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를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면 한다.

II.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 전통

1.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국 서원의 ‘제향(祭享)’ 가치와 의미, 특징은 이러한 탁월하고 특별한 사례로서 주목된다.⁴⁾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창건 후 400여 년 동안 특이한 제향 기능을 독보적으로 전승하고 존속하여 왔다. 즉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제향은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을 함께 계승하는 고귀한 의식으로 창건 이후 서원별로 독특한 제향 의례를 지속하여 왔고다.

2) 최순권, 이명진,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 한국의 서원 등재추진단, 2013.

3)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총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 정승모, 이해준, 최순권,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 최순권, 이명진,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한국의 서원은 교육·강학기능과 함께 제향의례를 통하여 선현(先賢)의 학덕(學德)과 행의(行誼)를 추앙하고, 그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할 뿐만 아니라,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서원 유생들은 평소에는 강당에 모여 글 공부를 하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 등 삭망(朔望)에 분향을 하는 알묘(謁廟)를 하고, 봄과 가을 두 차례 사당에서 향사를 지내어 서원을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하였다.

특히 향교나 중국, 일본의 유학시설들과는 달리, 공자를 제향하지 않고 서원 설립자의 스승을 향사하는 것은 한국 서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하고 주목되는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스스로 지식인의 계보를 정립하고 이를 롤-모델로서 계승함으로써 학문과 지식인에 대한 존송을 표방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유산 한국의 9개 서원에 제향되고 있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사 및 지식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로서, 이들은 한국 성리학의 역사와 발전을 상징한다. 지역의 사람들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대표·상징적인 학맥과, 그들의 거점과 근거지를 확보하여 지역과 학파에 따른 전통과 독특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본 발제에서 발제자가 강조하고 주목하듯이 한국의 서원은 제향 인물과 제향 의례전통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다른 유교문화 유산과의 차별성, 특이성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역별 서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지역의 대표, 상징적인 인물을 제향하는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서원의 제향 의례는 각 지역별로 학맥별로 독특한 제의 방식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자부심과 독자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서원 제례는 정기적인 춘추제향(春秋祭享)과 매월 삭망,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하여 분향하는 삭망례(朔望禮),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 등도 있었다.⁵⁾ 제향 의례는 서원마다 독자적인

5) 이밖에 서원건물을 수리하거나 이건할 때 거행하는 移安祭, 還安祭가 있고 불의

의례를 지녀 왔으며, 관련 자료들이 홀기(笏記) 및 춘추향사축문(春秋享祀祝文), 봉안축문(奉安祭文), 그리고 참제록(參祭錄) 등으로 남아 전한다. 그리고 제향 이외의 기타 의례로 향음주례(鄉飲酒禮)와 사상견례(土相見禮), 양로연(養老宴), 기로연(耆老宴), 백일장(白日場) 등의 행사가 시행되었으며 강학 의례나 재회(齋會)의 의례 등도 유념할 유형 유산이다.⁶⁾

2. 서원 제향의례의 전통

서원 제향은 주세붕이 1543년(중종 38)에 안향을 모시는 서원을 세우고 제례를 위해 제례를 위해 제식(祭式)과 홀기(笏記)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주세붕은 향교 석전(釋奠)과 『가례(家禮)』 등을 참고하여 향사 홀기와 진설도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예전인 『국조오례의』에도 서원 제향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주세붕은 향교 석전이나 『가례』 등을 모방하여 제식과 향사홀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이황도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백운동서원의 제식을 개정하였다.

참고로 널리 알려진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제향 의례 모습을 먼저 간략하게 인용하여 본다. 특히 9개 서원 중에서도 도산서원은 오랜 전통과 규범이 잘 전승된 곳으로 유명하다. 도산서원의 제향은 향례 3일전에 유사들이 전교당(典教堂) 아래 동서 재실(弘毅齋, 博約齋)에 입재(入齋)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상음례(相揖禮)를 한 뒤 제관과 집사들을 선정 망보(望報)하며 2일전에

의 재난이나 환란이 있을 때 올리는 慰安祭, 그리고 위패를 새로 제작하여 봉안할 때 올리는 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宣額祭 등도 있었다(윤희면, 2000, 「조선시대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 진단학회).

- 6) 특히 제향 의례와 함께 유념할 것이 講學禮로 이는 서원의 교육과 의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원 교육 강화 기능의 본체인 강학례는 매우 귀하고 엄격하게 실행되어왔고 서원마다 특성이 있는 의례였다. 학규와 함께 講書의 순서, 講案의 마련과 居齋儀節, 相揖禮, 賞罰 등등 관련 자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는 모두 입재하여 축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일 전에는 정성을 다하여 알묘례(謁廟禮) → 척기(滌器) → 간품례(看品禮) → 봉존(奉尊) → 석미(浙米) → 진설(陳設)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향례일에 일반적인 행사(行祀) 절차가 치러진다. 제향을 마친 후에는 종헌관이 음복을 한 후 제물을 모두 치우고 헌관과 집사들이 함께 재배함으로써 행사를 마친다. 이어 제공사를 한 뒤 파죄하여 음복례를 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도산서원에서는 음복례를 위해 전교당에 향례 참여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재유사가 향약의 약문을 읽는다.

제향의례가 끝난 후 참여한 유생들이 음복하는 복주(福酒)나, 서원의 중대 사안과 고을의 유립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나 정치적 문제, 그리고 강상윤리와 관련한 포상과 처벌 등등을 논의하는 유회(儒會)도 함께 주목대상이다.

○ 춘추향사(春秋享祀) 제향 의례

정기 춘추향사 제향 절차는 주로 주세붕의 소수서원 흥기를 따르기는 했지만, 이황 역시 향교 석전을 참조하여 개정하였듯이, 주로 향교의 석전 내용을 참조하거나, 또는 주자(朱子)의 창주정사(滄洲精舍) 석채의(釋菜儀)를 참조하였다.

정기적인 서원의 향사(享祀), 제향에는 매년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삭망,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하여 분향하는 삭망례(朔望禮),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 등도 있었다.

서원 제향에는 매년 봄·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는 삭망례, 정월 초 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가 있다. 춘추 향사는 처음에는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지냈다. 그러다가 향교 석전이 치워지는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춘추 향사와 중복되고 어려워 대부분 3월과 9월에 지냈다.

그리하여 서원별로 서원의 주향인이나 배향인, 종향인, 또는 그 문하생들

의 학규나 제향 해석에 따라 향사흘기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향사 절차와 행례 내용을 보여준다. 이에 서원마다 절차에 따라 행례를 하면서 여러 절차가 합쳐지거나, 행례 내용이 아예 다른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각 서원마다 각기 다른 향사 절차와 고유한 전통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소수서원의 춘추 향사 시기는 주세붕과 이황의 소수서원 흘기에는 계춘(季春 : 음력 3월)과 계추(季秋 : 음력 9월)로 되어 있다. 이황이 정한 백운동 소수서원원규에 “춘추의 두 번 향사는 계절의 상정에 지내고, 상정이 유고이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하여, 소수서원에서는 현재에도 매년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지낸다. 다른 서원들도 대개 소수서원의 규약을 따라 향교 석전제와 중복되지 않게 음력 3월과 9월에 향사를 행하였다. 서원마다 제향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춘추 향사는 기본적으로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삼헌례(三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망료례(望燎禮)로 이루어진다.

서원의 제구(祭具)·제기(祭器)의 종류나 형태는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제구들은 서원마다 다소 차이도 있다. 곡식을 담은 제기는 구리로 만든 보(簋)와 궤(簠)이다. 보에는 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을 담는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배치하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 오른쪽에 궤를 놓는다. 반찬인 제물은 변(籩)과 두(豆)에 담는데 과(果), 포(脯) 등 마른 제물은 변에, 해(醢), 저(醢) 등 젓은 제물은 두에 담는다.

그리고 서원 향사에서는 희생⁷⁾을 담은 제기로 적대라고 흔히 부르는 조(俎)가 있고, 작(爵)은 헌작 때 올리는 구리로 만든 술잔으로 두 기둥에 세 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坩)에는 축점(祝坩)과 작점(爵坩)이 있어 그 위에 축판이나 술잔을 올려놓는다.

제주(祭酒)는 용수로 거른 맑은 술로 준(罇)에 담아 봉하는데, 이를 봉준(封

7) 성균관 석전에는 소·양·돼지 三牲을, 향교 석전에는 양과 돼지 二牲을 올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서원 초창기인 소수서원의 주세붕과 이황의 진설도에는 雉脰, 즉 꿩을 올리거나, 도산서원의 祝辭에도 翰音醑⁷⁾이라 하여 닭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樽), 또는 봉준(封尊)이라고 한다. 준(樽)에는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禮齊)를 담은 준은 소 모양의 희준(犧樽), 아헌에 올리는 양제(盎齊)를 담은 준은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樽), 중헌에 올리는 청주(淸酒)를 담은 준은 산 문양을 새긴 산뢰(山罍)라 한다.

작(勺)은 헌작이나 관세 때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로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된 작은 용작(龍勺), 먹(鬯)은 술항아리를 덮는 덮개다. 먹이 없는 경우 한지로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먹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밖의 제구로는 유기로 만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 등이 있고, 제수로는 그밖에도 향나무, 향축, 필묵, 양초, 축지 등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흰 종이로 싸 두었다가 입재 후에 근봉(謹封)한다.

한편 서원 향사에 입는 제복(祭服)은 많이 변형되어 현재는 대개 3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헌관 및 집례, 축은 관복, 집사는 도포를 입거나, 아니면 제관 모두 도포를 입되 헌관만 검정 또는 남색 등 색을 달리하거나, 모두 향교 석전과 같이 제복을 입는다.

일반적으로 서원이 사적인 교육기관이지만 국가로부터 사액을 받은 경우 토지 및 노비 등을 지원 받기 때문에 향사에는 지역 수령이나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에 의해 향사가 치러졌다. 이에 헌관의 경우 흥배를 단 단령에 복두를 착용하고 홀을 쥐는 관복을 입었다. 관직이 없는 경우는 자신들이 준비한 유건, 치포관, 갓에 도포를 입었는데 헌관만 색을 달리하였다.⁸⁾

○ 향사(享祀) 준비

향사의 준비와 시작은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서원에 따라서는 이를 초집(招集, 抄執)이라고 한다. 옥산서

8) 대부분 최근에는 향교 석전과 같이 금관에 후수와 패옥을 착용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서원에서 마련한 옥색 도포를 입고 향사를 지내기도 한다.

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초집을 갖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獻官) 3명과 대축(大祝) 1명, 그리고 집례(執禮) 1명 등 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하여 보낸다.

- **제물(祭物) 준비** : 서원 고직사(庫直舍)에서는 향사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향 진행을 맡은 유사와 임원들은 2~3일 전에 미리 제물을 장만한다.
- **입재(入齋)** :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미리 서원 강당에 모이는데 이를 입재(入齋)라 한다. 제관으로서 마음을 경건하게 보존하는 재계(齋戒)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본래 향례는 축시(丑時), 즉 새벽 한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 이하 참사자들은 하루 전날 오전에 서원으로 온다. 그리고 강당에 모여 개좌읍례(開坐揖禮)로써 서로 인사를 나누어 입재의 예를 갖추었다. 그러나 제향 시간이 새벽이 아닌 오전으로 옮겨진 서원에서는 유사와 임원 외에는 제향 당일에 입재하는 곳이 많아졌다.
- **성생례(省牲禮)** : 성생례는 감생례(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라고도 하는데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다. 서원 정문 밖에서 예를 치르는데 삼헌관은 북향하고, 희생의 머리는 사당으로 향하게 한다.
- **집사 분정(執事 分定)** : 분정은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서 시도록을 가지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찬자)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 분정을 하고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에 적고, 분방(分榜) 또는 창방(唱榜)이라 하여 분정된 집사들에게 각기 역할을 알리고 분정기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⁹⁾
- **사축(寫祝)** : 분정을 마치면 대축은 사당에 가서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祝文)을 작성하고 초헌관에게 축문을 확인 받은 뒤, 축판이나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제상 아래 향탁의 좌측에 둔다.
- **제수 근봉(祭需 謹封)** : 제관들은 제물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보와 궤, 변과 두 등 각종 제기(祭器)에 미리 손질한 제수를 담는다. 제기(祭器)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수들은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근봉(謹封)이

9) 분정된 집사명과 인원수는 대개 獻官 3인(초헌·아헌·중헌관), 大祝 1인, 贊者 1인, 謁者 1인, 陳設 6인, 司罇 1인, 奉香 2인, 奉壺 3인, 奉爵 3인, 奠爵 3인, 掌饌 1인, 掌牲 1인, 盥洗位 1인, 學生 1인, 直日 1인이다.

라고 써서 봉한다.

- **진설(陳設)** : 교의(交椅)의 신위 앞 좌측에 보, 우측에 궤를 놓으며, 보 좌측에 변 4기, 궤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보와 궤의 앞 중앙에 조를 두고 그 앞에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보에는 멍쌀을 담고, 궤에는 기장쌀을 담으며, 변에는 마른 대추, 시슴포, 밤, 생선포 등 마른 제수를 놓고, 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부추, 생무 등 젖은 제수를 놓고, 조에는 생(牲)을 얹는다.

○ 제향 절차(祭享 節次), 향사 의례(享祀 儀禮)

향사 절차도 많은 경우 주세봉의 소수서원 흥기를 따르기는 했지만, 이항이 향교 석전을 참조하여 개정하였듯이, 주로 향교의 석전 내용을 따르거나, 또는 주자(朱子)가 정한 창주서원(滄洲書院) 석채의(釋菜儀)를 바탕으로 하여, 각 서원별로 상황에 맞게 절차를 제정하였다. 따라서 서원마다 각기 다른 향사 절차와 고유한 전통이 형성되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제향의 모든 절차는 예에 어긋남이 없이 엄격히 거행되었다. 의례 집행자가 제향 절차가 기록된 흥기를 낭독하면 그에 따라 제관들이 질서 있고 경건하게 움직이며 진행되었다. 서원마다 제향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춘추 제향은 기본적으로 사당앞 취위(就位),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초헌례(初獻禮), 독축(讀祝),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수조례(飲福受胙禮), 철반두(撤籩豆), 망예(望瘞, 望瘳禮)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서원 향사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고, 각 지역의 사족들이 흥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서원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향사는 요즘에는 오전에 제향을 갖는 곳도 많지만 원래는 새벽 1시에 향사를 지냈다. 향사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들은 의관을 정제한다. 집사나 관리인은 그 시각에 사당문을 열고 제상 좌우에 놓인 축대에 불을 밝힌다.

향례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집사들은 강당에 모여 상음례(相揖禮)를 행한다. 향사는 집례 또는 찬자가 향례 진행순서인 흥기(笏記)를 낭독하는 것(唱笏)으로 시작한다. 제관들은 창홀에 따라 움직이며 맡은 임무를 행한다.

찬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먼저 진설을 점검하고, 이어 대축이 위패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讀)을 행한다.

- **취위(就位)** : 초헌관은 먼저 진설을 점검하고, 대축은 위판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讀)을 한다. 그리고 향사를 안내할 집례와 찬인, 알자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제 자리로 나간다. 집례의 본격적인 창홀에 따라, 제관들은 배위에 나가 재배를 하고 각자 위치에 나아가며, 삼헌관은 사당으로 들어와 재배를 한다.
- **분향례(焚香禮)** : 초헌관이 알자(謁者)의 도움을 받아 신위 앞에서 삼상향(三上香), 즉 세 번 분향하는 분향례를 행한다.
-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로, 대축이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을 든 다음 다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다.
-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전폐례를 마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에 따라 준소(樽所)로 올라와 동쪽편에서 서쪽을 향해 선 다음 작주(酌酒)를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신위전 앞에서 작을 받아 헌작을 하고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작을 다시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 **독축(讀祝)** :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데, 모든 서원에서는 이때 참사자 모두가 부복을 한다.
-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 앞에 두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행례는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 앞에 세 번째로 작을 올리는 절차이다. 행례는 아헌례와 같다. 다만 일부 서원에서는 헌작 후 재배라고 하여, 종헌례가 끝나면 삼헌관이 함께 재배를 하기도 한다.
- **음복수조례(飲福受祚禮)** : 초헌관이 대표로 신에게 복을 받는 절차이다. 초헌관이 음복 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것이다. 대개의 서원에서는 음복수조례 후에 헌관 이하 또는 헌관만 재배를 한다.
- **철변두(撤邊豆)** : 철변두는 진설된 제물을 물린다는 의미로, 대축이 변과 두를 조금 움직여 예를 표한다. 사신(辭神)의 의미로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철변두 후에 헌관 이하 재배를 하는데, 도동서원과 같이 헌관만 재배를 하기도 한다.
- **망료례(望燎禮)** : 망료례는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우는 예다. 축문을 폐백과 함께 묻는다고 하여 망예례(望瘞禮)라 하지만, 영조대 이후로 묻지 않고 태

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망료례를 마치면 향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예 필(禮畢)’이라고 고하고 3헌관과 참사자들을 인도하여 나간다. 그런 다음에 알자는 다시 돌아와 대축 및 집사들과 함께 재배를 하며, 대축은 합독(闔楮), 즉 위패의 뚜껑을 닫고 재배를 한다.

향사가 끝나면 향사가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로 제공사(祭公事), 또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행한다. 이것이 끝나면, 강당에 모여 향약문(鄉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거나 음복(飲福) 식사를 한다. 그리고 행사에 쓴 제물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의식으로 ‘봉송’을 주고 파좌(罷坐)한다.

○ 정알례와 삭망례

정알례(正謁禮)는 매년 정초에 알묘하는 것을 정알(正謁) 또는 정조알묘례(正朝謁廟禮)라 한다. 정월 초4일 원장과 재유사 및 향중의 여러 유림들이 입원하여 초5일 새벽 5시 경에 행한다.

삭망례(朔望禮)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焚香禮)로 향알례(香謁禮), 또는 삭망알묘(朔望謁廟)라고도 한다. 매월 삭망일 하루 전날 재유사(齋有司)가 입재하여 삭망 당일 새벽 6시 경에 의관(유건과 도포)을 정제하고 봉향. 봉로 한 사람씩을 앞세워 묘정에 나아가 관세위에 손을 씻고 계단 사이에 마련한 향로에 세 번 향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그리고 묘우 안에 들어가 신위를 봉심(奉審)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제향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비정기적인 제향 의례로는 위패를 임시로 다른 곳에 옮겼다가 다시 제자리에 모실 때 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불시의 재난을 입었을 때 올리는 위안제(慰安祭),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禮成祭), 사액을 받았을 때 올리는 사액례(賜額禮),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지내는 치제(致祭) 등도 있었다.¹⁰⁾

II. ‘한국의 서원’ 서원별 제향 의례

○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

우리나라 서원 제향 의례의 전례를 마련한 것이 소수서원이라 할 수 있다. 소수서원의 춘추 향례 절차는 서원을 창설한 주세붕이 처음 정한 것이다. 『국조오례의』에 서원 제례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세붕은 향교 석전이나 가례 등을 모방하여 제식을 만들었다. 향사는 춘추 3월과 9월 첫 정일(丁日) 자시에 올리고, 성생(腥性)으로 꿩을 썼는데, 현재에도 계절(季月)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지낸다.

이항도 주세붕이 만든 제식이다 향교 석전을 참고하여 백운동서원의 제식을 작성하였다. 즉 진설도에서 제수 중 밀과(密果)는 설미(饌味)이므로 학(學)에서 사용할 수 없고, 과(果)를 두(豆)에 올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여 녹해(鹿醢)로 대체하였으며, 우사두(右四豆)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좌사변(左四籩)에 황율(黃栗)을 어숙(魚鱸)으로 대체하여 진설 위치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향례 절차에는 상향례(上香禮)와 초헌례(初獻禮)를 구분하였고, 음복(飲福) 후 수조를 하고 배례(拜禮)하게 하였다.

소수서원 춘추 향사의 가장 큰 특징은 3헌관이 잔을 올릴 때마다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는 것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1541년(중종 31)에 지은 9장의 경기체가로, 안향에 의해 중국의 도학이 조선에 전래되어 널리 전파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향사 의례에서 도동곡이 불리는 절차는 주세붕과 이항이 작성한 홀기에는 나오지 않고, 『죽계지』 「행록후」의 제

10) 그리고 서원별 고유·특이한 의례의 관행으로 주목되는 사례도 많다. 예컨대 도동곡을 부르는 소수서원, 예를 갖추어 쌀을 아홉 번 씻는(漸米) 도산서원, 묘제도 지내는 도동서원, 제향 전 간식으로 야하(夜下)를 제공하는 옥산서원, 제향 공간과 제물준비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병산서원, 계생비(繫牲碑)가 있는 필암서원, 황토를 깔아 신도(神道)를 만드는 무성서원, 원회(院會)에서 제관을 결정하는 남계서원, 장의(掌議) 회의에 제관 결정을 위임하는 돈암서원 등등이 그것들이다.

사 법식에 등장한다. 도동곡은 초헌, 아헌, 종헌관이 문성공 신위 앞에 헌작(獻爵)한 후에 부르며, 도동곡에 익숙한 장로 1인과 젊은 유생 1인이 항상 묘정에 마주 서서 같이 부르게 한다. 이는 도동곡의 전승을 위한 것이다. 젊은 유생은 초헌, 아헌, 종헌 때마다 교체하며, 장로 1인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부른다. 다른 서원의 향사에는 원래 제례악이 없으며, 현재 한국의 제례에서 종묘(宗廟)와 문묘(文廟)를 제외하고 악장을 부르는 유일한 곳이 바로 소수서원이다.

일반적인 서원 출입은 동계로 올라 동계로 내려오며, 사당의 출입은 보통 중문은 신도(神道)로 여겨 출입을 금하고,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오거나, 동문으로 들어갔다 동문으로 나온다. 그러나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경우 동계로 올라 가운데 기둥을 돌아 중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는 동문으로 나온 뒤 다시 가운데 기둥을 돌아 동계로 내려오며, 서문은 헌관과 대축이 망료례 때만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 함양 남계서원(濼溪書院, 1552년 건립)

남계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 새벽 5시 경에 지내며, 미리 입재한 헌관 이하 제관들이 의관을 갖춘 후 흰죽으로 허기를 달랠 겸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 제향에 임한다. 남계서원에서는 원회(院會)를 통해 미리 제관을 모두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원장을 비롯하여 함양 유림 30여 명이 모인다. 3헌관과 기타 제관에 대한 선정을 마치면 바로 이들에 대한 망기(望記)를 작성한다.

제수는 제향 이틀 전에 함양읍내의 재래시장에서 준비한다. 생으로는 검은 색의 살아있는 돼지를 사와 묘정의 성생단에서 성생례를 한 후 고직사로 가져가 잡는다. 돼지의 머리와 앞 두 다리는 주벽에 올리고, 뒷다리는 하나씩 배위에 올린다. 그러나 다른 제수는 주벽과 차이가 없다. 쌀과 기장을 익혀 고두밥을 만들어 제물로 올리는 것이 또한 이 서원의 제례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향이 끝난 후 별도의 음복례가 없는 대신 자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계서원의 홀기첩(笏記帖)에는 향사일과 재계일(齋戒日)을 앞에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고 건너 띄어서도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재계는 향사 3일 전에 참례자가 모두 모여 산재(散齋) 2일간 함부로 술을 마시지 않고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더럽고 험한 일은 같이하지 않는다. 그리고 1일 전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향사 절차에 다른 서원과 비교하여 특이한 사항이 발견된다. 도동서원과 같이 삼상향과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으나, 각 신위마다 전폐(奠幣) 다음에 재배를 하며, 헌작은 창주서원 석채의와 같이 각 신위마다 헌관이 삼궤주(三祭酒)하여 올리며 헌작 다음에 재배를 한다. 이때까지 재배는 사당 내 신위 앞에서 한다. 또 초헌관이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재배를 하고 음복을 하며, 수조 후에 또 재배를 하고 초헌관이 자리에 돌아오면 재위자가 모두 재배를 하는데, 이때 초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는다. 철변두 후에는 헌관 및 학생이 모두 재배를 한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삭망례 절차도 다른 서원과 차이가 있다. 우선 사당 중문은 열어놓고 신위마다 분향을 하며, 이어 행하는 부복례(俯伏禮)나 배례(拜禮)를 각 신위 앞에서 하지 않고 사당을 나와 중문 밖에서 제관들이 일동 재배한다.

○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옥산서원 제향은 새벽 1시경에 시작된다. 이보다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은 의관을 정제한 뒤 제관들은 강당 대청, 또는 서재에서 야하(夜下)를 받는다. '야하'란 글자 그대로 밤에 내린다는 뜻인데,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라고 제공하는 미음 간식을 일컫는 말이다. 미음 죽을 제공하는 이유는 구갑(口瘡), 즉 시창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궁

극적으로 제사는 첫째가 엄숙해야 하고 다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야하를 제공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제향의절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변화되면서 진화(進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14년 2월에 작성된 흘기와 현재의 흘기를 비교해 보면 변화된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옛 흘기의 진설도를 보면 2보 2궤에 4변 4두이며 치성(雉脰)이 그려져 있다. 제주도 주세붕이 정한 백운동서원의 문성공묘제(文成公廟祭)의 진설도와 같으나, 옥산서원에는 폐비(幣篋)가 없다. 현재의 진설도는 1보 1궤에 4변 4두이고 제주도 좌측의 밀과(密果)는 녹해(鹿醢)로, 우측의 백지(柏子)는 어포(魚脯)로 바꾸었다. 치성(雉脰)도 시생(豕牲)으로 변경되고 폐(幣)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옥산서원에서는 축문 작성을 사당에서 행한다. 즉 분정이 끝나면 대축은 체인묘 사당 문을 열어둔 채 내삼문 밖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삼헌관은 알자와 찬인의 인도 하에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좌정하여 이를 지켜보고, 축문 작성이 끝나면 헌관에게 확인을 받고 축문을 조그만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그리고 다른 서원과 달리, 희생을 운반할 때 누각인 무변루와 강당, 사묘까지 사다리를 설치해두고 가자(架子)에 실어 중문을 통해 옮기는 것도 특이하다.

1614년의 흘기에는 전폐례가 없고 각 헌관이 헌작한 다음에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고 자리에 돌아오며, 음복은 대축이 종헌주(終獻酒)를 따라와서 헌관이 복주 및 수조를 하고 철변두 없이 망료례를 한다. 현행 흘기에는 삼상향 후에 전폐례를 하며, 각 헌관이 헌작한 다음 자리에 돌아와서 기다렸다가 종헌례가 끝난 후 모든 헌관이 함께 배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음복도 대축이 존소(樽所)에서 복주를 가져와서 초헌관이 복주(福酒)를 하도록 바꾸고, 수조 후에 초헌관이 자리로 돌아와 헌관 모두가 재배하도록 추가되었으며, 철변두의 절차도 추가하여 대축이 철변두를 하고 헌관과 학생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다.

옥산서원의 향사는 다른 서원의 모범이 될 정도로 오랜 전통과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다. 제관이나 집사 모두 향사 경험이 많아서인지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다. 흥기에 따라 정확히 움직이고 시간도 여유 있게 진행한다. 향례를 마치고 제사공문을 따로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또한 초집(抄執)을 바로 전의 삭망례와 연결하여 가짐으로써 향사 전체 일정에 여유를 갖는 것도 이 서원이 갖는 특징이다.

제물로서 희생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생간례(省看禮) 또는 간품례(看品禮)를 옥산서원에서는 감생(贖牲) 또는 감생(監牲)이라고 한다. 역락문(亦樂門) 밖에 단과 모든 유생의 자리를 설치하여 깨끗한 자리와 관세대야를 바르게 하고 헌관 이하 모든 집사가 차례로 나와 서면 시생 담당자가 의대(衣帶)를 갖추어 시생(豕牲)을 메고 나아가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읍례를 한다. 헌관은 시생 남북향으로 서면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좌로 돌면서 세 번 손을 씻고 닭은 다음 꿩어 앉아 시생을 문지르고 헌관을 향하여 읍을 하며 돌(膷)을 고 하면 헌관은 충(充)으로 답을 한다. 이렇게 감생을 마치면 시생을 주사(廚舍)로 옮겨 제수준비를 한다. 전체 진행에서 유사의 비중이 큰 것도 옥산서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

도산서원의 제향의식은, 퇴계가 개정한 소수서원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진설도에 치성(雉脰)을 시생(豕牲)으로 고치고, 2보 2괘를 ‘계미국감(癸未國減)’이라 하여 1보 1괘로 하였으며, 전폐(奠幣)도 ‘무진국감(戊辰國減)’이라 하여 전폐례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주향인 이황 신위에는 2번 2두를, 종향인 조목 신위에는 1번 1두를 진설한다.

도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퇴계가 개정한 소수서원 의례를 그대로 적용하며 서원 제향의례의 전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도산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음복수조와 철변두 다음에 ‘헌관이하 개재배(獻官以下皆再拜)’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음복수조 다음의 배례는 수희배(受禧拜)이고, 철변두(撤饗豆) 다음

의 배례는 예필배(禮畢拜)이다.”라고 한 퇴계의 소수서원 흥기 개정문에 따라, 배석에 있는 헌관 뿐만 아니라 일반 참례자도 함께 재배를 하는 것이다.

도산서원의 향사는 일찍이 다른 서원의 전형이 되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도산서원만이 갖는 특징을 찾아내기 힘들다. 다만 헌관 집사 분정 후 축문을 쓰는 축문봉치 의식과 제물을 준비할 때 쌀을 씻는 과정 등은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다.

제관 전원이 입재하여 강당인 전교당(典教堂)에서 집사 분정을 마치면, 대축이 상덕사(尙德祠)에 들어가서 축관이 담겨있는 함을 받들어 전교당 중앙에 좌정하여 축문을 쓴다. 이때 축관이 직접 축지(祝紙)를 재단하고 봉인된 먹을 개봉하여 갈아 새 붓으로 축문을 써 축관에 붙여 함에 넣고, 다시 상덕사의 축상(祝床)에 봉치(奉置)한다. 이 때 축함이 전교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일어서서 축함을 향하여 음례(揖禮)를 하며 축관은 사당의 중문으로 출입하게 된다. 축문을 쓰는데 사용한 먹과 붓은 대축에게 지급한다. 1980년대 이전에는 퇴계선생이 사용한 매화연(梅花硯)을 가져다 사용하였으나, 유물 도난 사건 이후부터는 한존재에서 사용하는 벼루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점심식사 후에는 희생의 상태를 살피는 간품례를 전교당 앞뜰에서 하고, 저녁식사가 끝나면 ‘석미(浙米)’를 시작한다. 참사자들은 전교당 앞뜰에 모여 두 줄로 북쪽부터 순서대로 동서향으로 마주 보고 섰다가 재유사가 시사를 데리고 전사청에 들어가 제미(祭米)를 받들고 뜰로 나오면 모두 음례를 한다. 시사들이 햇불을 밝히고 제미를 단지에 담아 들고 재유사들이 그 뒤를 따라 진도문(進道門)으로 나가 ‘열정(冽井)’ 우물로 간다. 단지에 물을 부어 흔들어 씻어 내는데 불결하다고 하여 손을 대지 않으며, 씻는 것을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수를 세는데 첫 번째를 ‘새로’라고 하며 두 번째부터는 ‘둘’, ‘셋’ 등으로 불러 아홉까지 세며 그때마다 재유사 5명이 함께 복창한다. 이는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이다. 1975년 안동댐 축조 이전에는 강변으로 나아가 배를 타고 중류에 이르러 제미를 9회씩 정세(精洗)하였다.

석미가 끝나면 즉시 돌아와 진도문으로 들어오면 기다리던 제관들은 남쪽

부터 순서대로 서서 이들을 맞이하고 재유사가 제미를 전사청에 환봉(還奉)하면 서있던 자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북쪽부터 순서대로 서 있다가 재유사가 돌아오면 정읍례(庭揖禮)를 행한 후 각자의 처소로 돌아간다.

○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에서는 여타 서원과 달리, 성생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간례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필암서원의 사당인 우동사(祐東祠) 앞에는 계생비(繫牲碑)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이는 춘추 향사에 제물로 쓸 가축을 묶어놓는 비석으로, 전면에는 ‘필암서원계생비(筆巖書院繫牲碑)’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향사 준비 절차의 하나로 제관들은 계생비에 묶인 가축의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쓰기에 적당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향례 2일전에 유사는 서원 내외를 청소하고 1일전에 생간례(省看禮)를 계생비 앞에서 시행한다. 이때 헌관은 생(牲)의 남북향으로 서고 대축이 생(牲)의 동서향으로 서면 장생(掌牲)이 물을 세 번 붓고 찬인(贊引)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세 바퀴를 돌면 대축이 따라 돈 다음 대축이 헌관 왼편에서 ‘충(充)’이라 고하면 헌관은 ‘돌(膺)’이라 답한다. 일반 서원에서는 성생단에서 주로 생간례를 시행하나, 필암서원에서는 이와 같이 계생비에 가축을 묶어놓고 생간례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에서는 유사가 충(充)을 고하는데, 필암서원에서는 대축이 하고 있음도 특이하다.

그리고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도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청사에서 제복을 입고 행한다. 별도로 대축의 위치를 여러 제관이 서로 볼 수 있는 곳에 마련하는데, 대축이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를 탁자 위에 놓고 조항마다 호칭을 한다. 알자가 제물을 받들어 여러 제관 앞으로 돌면 제관은 읊을 하고, 대축은 점으로 표시를 하는데, 알자는 제물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 이것이 끝나면 제관은 일어나 계단으로 내려가 읊을 하고, 축은 장찬(掌饌)을 이끌고 제물을 받들어 사당 안으로 들어간다. 필암서원의 춘추 향사는 향교 석전에 준

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진설은 1보 1궐, 4번 4두로 하고, 전폐례를 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서원은 주향(主享)에만 독축을 하나, 필암서원은 배향위(配享位)에도 별도의 독축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례를 마친 후에 분포례(分脯禮)도 별도로 봉행(奉行)한다. 절차는 헌관 이하가 청절당(淸節堂)에 차례로 좌정하면 알자(謁者)가 작은 상(床)을 하나씩 모든 제관 앞에 놓고 조육(胙肉)을 올리면 제관은 음을 하며 받는다. 또 찬자(贊者)가 청구 한 잔을 올리면 헌관 이하가 다 같이 마신다. 그리고 나서 전원이 일어나서 동서로 마주하여 상읍례(相揖禮)를 하고, 다시 앉아 백록동학규를 돌아가며 읽는다.

○ 대구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1605년 건립)

도동서원의 강당인 중정당(中正堂) 옆에는 초석 위에 넓적한 사각 석판(石板)을 엮어 만든 별도의 성생단(省牲壇)이 있어 이곳에서 성생례를 행한다. 춘추 향사는 다른 서원과 달리 축시인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거행하는데, 상향례와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고 초헌관이 삼상향과 전폐례를 봉행한 뒤 바로 초헌례를 봉행한다. 그리고 헌작 때 삼궐주(三祭酒)를 해서, 다른 서원에는 없는 모사(茅沙)가 향합 옆에 있다. 도동서원에서는 신위 앞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중헌례 후에 헌관들이 모두 배위로 나와 재배를 한다.

음복수조례에도 음복위로 나아가 음복과 수조 다음에 재배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면 자리에 있는 모든 참사자가 재배를 하는데, 이때 초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는다. 또한 망요례도 독특하게 사당 서편 담장 중간에 사방 벽돌 2개 크기로 구멍을 낸 감(坎)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축문 및 폐백을 태운다.

도동서원의 향사는 일반 서원과 다른 행례 내용도 보이지만, 서원이 주체가 되어 주향(主享)인 김굉필에 대한 묘제를 후손이 아닌 서원이 주체가 되어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서원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한강 정구가 무이고사(武夷故事)를 인용해 서원 뒤에 있는 묘소의 춘추묘사를

서원에서 설행하도록 조치하고, 조정에서 묘소를 수호할 산직(山直) 10명을 획급한 이래로, 이 서원의 유사들은 춘추 향사 외에도 음력 3월 10일과 10월 2일에 주향인 김굉필의 묘소에서 춘추 묘제를 지냈는데, 7년 전부터는 가을 묘제만 지내고 있다.

묘제 날 아침에 유사들은 묘소 앞에 모여 차일을 치는 등 묘제 준비를 한다. 진설은 서원 향사와 일반 묘제의 제수를 같이 쓰고 있다. 즉 과일은 대추, 밤, 잣, 과자, 연실(蓮實), 감, 채소는 부추, 미나리, 무, 포해는 어포, 육포, 젓갈, 탕은 어탕과 육탕 각 두 그릇, 국수와 떡과 식초 등을 올리는데, 밥과 국은 올리지 않는다. 진설을 마치면 서쪽의 김굉필 아버지 묘제를 봉행한 다음에 김굉필의 묘제를 봉행한다. 절차는 일반 묘제와 같은데, 밥과 국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헌작 후에 유식례 없이 바로 사신재배를 한다.

그리고 다른 제례에서 시행하지 않는 준례(饌禮)를 행하고 있다. 묘제 봉행 후 준례는 묘소가 아닌 서원 강당에서 행한다. 먼저 중앙의 소반 위 잔에 술을 부어 놓고 대축(大祝)이 모든 자리를 향하여 재배를 하고 잔을 비운다. 그리고 대축이 다시 잔에 술을 부어 초헌관 앞에 놓고 초헌관과 맞재배를 하며, 또 잔을 비우고 아헌관 종헌관 등 모든 집사와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린다. 대축의 순배가 끝나면 집례가 대축과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리고, 집례의 순배(巡杯)가 끝나면 초헌관도 대축이 행한 순배와 같은 방법으로 술잔을 돌리는 것으로 준례를 끝마친다.

○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

병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소수서원과 같이 계월(3월과 9월)의 상정일에 행하는데, 축문 작성은 옥산서원과 같이 존덕사 사당에서 행한다. 집사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초헌관을 모시고 사당 월대 위 서단에서 축문을 쓴다. 대축은 북향하여 축문을 쓰고, 초헌관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이를 감독한다. 축문을 작성한 후에는 향사에 올리는 제물을 제기에 올리기 전에 초헌관 및 재유사

가 4인의 입회하에 근봉 의례를 행한다. 제물 봉치는 정해진 향사물목단자와 대조하면서 제수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근봉한다. 근봉한 이후에는 향사를 올릴 때까지 열어볼 수 없다. 제물 근봉이 끝나면 사당으로 옮기는데, 이때 초헌관을 비롯하여 모든 제관들은 사당 아래에 2열로 도열하였다가 제물이 사당 중문을 통해 들어갈 때 읊으로 예를 표한다.

병산서원의 향례 절차는 도산서원과 같이 전폐례가 없고, 주향위에는 삼헌 및 독축을, 종향위에는 독축 없이 단헌(분헌례)을 한다. 종헌례에 종헌관과 분헌관(分獻官)이 함께 올라 종헌관은 주향위에, 분헌관은 종향위에 헌작을 하게 되는데, 분헌관이 헌작에 앞서 종향위에 삼상향을 하는 것이 다른 서원과 다르다. 또한 병산서원의 망예례(望瘞禮)도 특징적인데, 초헌관이 음복례로 수조를 마치면 대축이 돼지 귀를 축문에 싣 다음 망예례를 위해 사당 서편 지정된 곳에 설치한 감(坎)에다 묻고 뚜껑을 덮는다.

그리고 향사 절차를 모두 끝내고 참사자들이 음복례를 행하기에 앞서 이번 향사가 절차상 실례가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병산서원에서는 이것을 제사공론(祭祀公論)이라 한다. 진행은 글씨를 담당하는 조사(曹司)가 하는데, 집사 중에 나이가 어린 순서로 3인을 택하여 먼저 “제사공론 합시다.”라고 말하면 “제사에 결례는 없었습니다.”라고 물어본다. 공론이 다 오고가면 “제사공론 파합시다.”라고 한다.

○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

무성서원의 춘추 향사는 매년 2월과 8월 중정일에 지내다가 봄 향사 1회로 축소되었다. 향사 이틀 전에 장의들이 입재하여 집사를 정하는 분방(分榜) 의식을 행한다. 다음날 시장에 가서 희생과 폐백 등 제수를 구입하는데, 주향위와 배향위의 제물은 주향위에는 소나 돼지 머리를 놓고 배향위에는 고기를 올리는 등 희생에서만 차이가 난다.

향사가 시작되면 준비한 제물을 가자(架子)에 담아 현가루부터 사당까지

중앙의 문을 통과하여 운반한다. 제수가 통과하는 길을 신도(神道)라고 하는데, 이 때 다른 서원과 달리 신도 양쪽으로 드문드문 황토를 깐다. 이는 황토를 깐 안쪽이 신도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제물에 부정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성서원의 향사에서 특이한 것은 1보 1궤에 4번 4두를 진설하고, 시성(冢脞) 옆에 형염(刑鹽)이 더 있다는 것이다. 형염은 향교 석전의 8번, 또는 남한산성 현절사의 4번에 올리는 제수의 하나인데, 희생 옆에 형염을 놓는 것은 집안제사의 적(炙) 위에 소금을 올려놓은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성서원지』의 홀기에 따르면, 향사 절차는 상향례와 초헌례가 구별되지 않고, 상향 후 전폐례를 행하고 바로 초헌례를 행한다. 최치원과 신잠 2위가 주향이었던 당시에는, 주향에만 독축을 하고, 나머지 배향 5위에 대해서는 독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복수조와 칠변두(撒籩豆) 다음에 헌관 이하 모두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30여년 전에 최치원만 주향으로 하고, 신잠을 배향으로 하면서 주향위에만 독축을 한다. 그리고 종헌 및 음복례 후에 삼헌관만 재배를 하고, 칠변두(撒籩豆) 다음에는 헌관은 재배를 하지 않고 유생 모두가 재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

돈암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앞두고 장의회의를 여는데, 이때 원장, 총무장의, 재무장의 등 임원진 10여 명이 모여 향사를 진행할 제관들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로 망기에 해당하는 천장(薦狀)을 만들어 각 제관 집으로 보낸다. 제물은 재무장의 등이 향사 2~3일 전에 장에 가서 장만한다.

돈암서원의 규약은 의례를 준수(遵守)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어 있다. 의례준수를 위하여 사전 사후의 제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여 결례 없이 봉행토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돈암서원 춘추 향사의 특징은 다른 서원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진설도에

서 찾을 수 있다. 진설은 1보 1궤이고, 3변 3두이다. 제수도 변(邊)에 녹포(鹿脯), 황율(黃栗), 능인(菱仁)을, 두(豆)에 녹해(鹿醢), 무(菁菹), 부추(韭菹)를 올린다. 녹포는 우포(牛脯)로, 능인은 개암(榛子) 또는 잣(柏子)으로 대용할 수 있고, 녹해는 토해(兔醢)나 치해(雉醢), 어해(魚醢)로 대용할 수 있다. 생(牲)은 돼지 혹은 염소로 한다. 3변 3두도 특이하지만 제수에서도 능인을 쓰는 경우와 능인이 없으면 개암으로 대용한다는 것과 녹해가 없으면 토해나 치해로 대용하는 것도 다른 서원 의례에서는 찾기 힘든 특이한 사항이다.

또한 돈암서원의 향사 절차에서 특이한 것은 향사를 시작하기 전 사당의 신위 앞에서 고종 때 왕실에서 하사한 내사연(벼루)에 먹을 갈아 축문에 초헌관의 이름을 써놓으며, 옥 등잔에 불을 밝히고 제향을 봉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례가 끝난 후에도 양성당 앞에서 선 채로 둘러서서 직일공사(直日公事)를 한다. 직일공사란 초헌관이 직일에게 행사 진행에 대해 감사를 받는 일을 말한다.

Ⅲ. 제향 의례 가치와 지속·발전 제안

서원의 제향에는 정기적으로 일년에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 향사와 매월 삭망(朔望),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謁廟)하여 분향하는 삭망례, 또는 향알례(香謁禮),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가 있었다. 이러한 제향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1. 제향 인물의 상징·대표성

한국의 서원은 지역별, 학맥별로 제향하는 인물의 상징성과 대표성에 주목, 존송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즉 한국의 서원은 한국 성리학의 학맥별 계보를 형성해온 주요한 인물과 그들의 학문을 숭상하며, 지식인으로서

올바로 성장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강학과 교화를 하나의 전통으로 일구어온 지식인들의 전당이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하는 9개 서원에서 제향되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사 및 지성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상징적인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사립들은 성리학의 발전과정에서 자신들과의 연계성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대표·상징적인 학맥과, 그들이 이상으로 삼은 인물들을 제향함으로써 그들의 거점과 근거지를 확보하여 지역과 학파에 따른 전통과 독특성을 유지하였고, 지역의 사족문화를 상호 경쟁하며 발전시켰다. 그런 점에서 서원은 다른 유적보다도 서원 인물과의 연관성과, 그를 보여주는 지역별·서원별 제향의례 모습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들이 제향하는 인물들은 한국 성리학의 발전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자, 학맥과 학통의 상징적 인물들이었다. 아주 중요한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서원 제향과 관련하여 서원별로 제향인물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성리학은 영주의 소수서원(紹修書院, 1543년 건립)의 제향인물인 안향(安珦)은 당시 중국에서 성리학을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로 성리학과 관련된 주요한 텍스트를 보급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여 선구적인 학문인 성리학을 한국 사회에 소개해주었다.

다음으로 지역별 지식인 집단으로 사림(士林) 형성은 도동서원의 제향인물 김굉필(金宏弼)을 기점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교육을 통해 후속 세대를 양성하였고, 제자들은 성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중앙정계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경남 함양의 남계서원(濼溪書院, 1552년 건립)의 제향인물인 정여창(丁汝昌)은 진보적 견해들을 중앙정계에 제시하였다.

특히 성리학의 개념인 이(理)와 기(氣)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관련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던 경북 경주의 옥산서원(玉山書院, 1573년 건립) 제

향의 이언적(李彦迪), 성리학 이론을 도설(圖說)로 만든 전남 장성의 필암서원(筆巖書院, 1590년 건립)의 김인후(金麟厚), 그리고 16세기 중반 이기론과 도설을 집대성한 인물은 경북 안동의 도산서원(陶山書院, 1574년 건립)에 제향되는 이황(李滉)이다. 퇴계 이황은 성리학 연구뿐만 아니라, 서원의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로 이황에 의해 크게 집대성된 성리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16세기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학자뿐만 아니라, 지방 관료의 역할도 주목된다. 소수서원은 당시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던 주세붕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 1615년 건립)은 지방관이었던 신잠과 정극인에 의해 건립되어 발전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인재양성과 향촌교화에 있었는데 최치원을 성리학 도입이전의 대표 인물로 제향하는 특이한 곳이었다. 그리고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향약이 마련 운영된 것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17세기에 들어와 성리학은 지방사림의 성향을 결정하는 모습인데 이 시기에 활동한 인물들은 16세기에 활동했던 인물들의 후속 세대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나아가 심화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한다.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1613년 건립)의 류성룡(柳成龍)은 국난 극복의 실천적 지식인상을 보여주고 있고, 충남 논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 1634년 건립)의 김장생(金長生)은 실천적 성리학 이론의 전형인 예학의 완성과 건축적 구현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신청유산의 제향인물들은 한국에서 성리학이 정착,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요한 인물들이다. 이들을 통해 한국 성리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서원 제향의례의 가치

한국 서원이 가지고 있는 제의(祭儀)·제향(祭享)에서 보이는 특성과 가치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또는 베트남 서원에서는 제례가 한국 서원처럼 강조되지 않았다. 특히 잘 알려지듯 중국과 한국서원의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중국의 서원은 제향 공간의 규모는 크지만 제향보다는 강학을 중요시하였고, 한국의 서원은 강학 공간의 규모는 제향공간보다 규모가 크지만 제향을 더 중시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서원건축은 건축배치와 공간 형성에서 탁월한 사례를 보여 주는데, 바로 앞이 낮고 뒤가 높은 경사지 위에 세워지는 전저후고(前低後高), 강당을 앞에 두고 사묘를 뒤에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 형식을 취하였다. 지대가 낮은 곳에는 강당과 재사로 구성되는 강학공간을 두었고, 지대가 높은 곳에는 사묘를 중심으로 하는 제향공간을 두었다. 제향공간을 서원 영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독립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함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위치하는 곳임을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 소개 정리한 것처럼 ‘한국의 서원’ 제향 의례는 주세붕과 이황에 의해 소수서원에서 기획한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서원의 제향인물이나 건립주체들의 제향 해석에 따라 제향 의례를 제정하면서 서원마다 다른 제향의 절차와 내용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별 제향인물의 제향 의례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사우에 분향을 하는 알묘와 함께 춘추로 지내는 향사를 중심으로 각 서원에서 중요한 의례로 특성을 마련하고 있다. 서원 춘추제향은 첫 날은 제물 준비, 성생례, 집사분정, 사축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향사의 진행 순서를 홀기에 따라 향사의 본격 진행이 이루어진다

이들 한국의 서원이 지닌 가치와 특성을 역사성, 학술성, 고유성, 대표성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역사성** : 우리나라 서원은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의 윤리를 실천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풍기 출신 유학자인 안향을 모시는 문성공묘를 세우고, 제례를 위해 제식과 홀기(笏記)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중반에 걸쳐 건립되면서 서원의 정형을 대표하며, 조선시대 말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제향 의례가 지속되고 있다.

·**학술성** : 9개 서원은 정기적인 춘·추 향사와 삭망례 이외에 사액, 영정 봉안 등의 고유제와 알묘 등 비정기적인 제례 의식을 기록으로 남겼다. 서원의 제례 기록유산은 그 당시 사회, 경제 및 인적 교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 광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유성** : 한국의 서원이 제향 대상을 지역 선현으로 모신 것은 전래된 문화가 독자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정착되는 가시적인 증거이며, 중국 서원에서 보이는 기복적 성격의 민간신앙을 배제한 것은 한국 서원 제향의 순수성을 보여준다. 서원 제향의례 중 대표적인 향사 절차는 취위, 상향, 전폐, 초헌, 독축, 아헌, 종헌, 음복수조, 철변두, 망료례, 음복례 순으로 진행되는데, 9개 서원은 학규나 제향 해석에 따라 독자적인 홀기를 제정하여 각 서원만의 독특한 전통을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다.

한국의 서원이 지니고 있는 제향의례는 특이하고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지역별 서원별로 제향 하는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을 계승하는 고귀한 의식이며, 제향의 지속성은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국가 지정 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보호되고 있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살아남아 오랜 조선시대의 유교의례와 전통을 간직한 특별한 성격,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3. 지속·발전 제안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은 국가지정 유산인 '사적'으

로 지정되어 관리·보호되고 있다. 이들 9개 서원은 400~5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서원이면서, 지역적 차별성과 특성을 지녀 주목되고 있다. 제향의례의 경우 성균관이나 향교처럼 통일된 규례로 지역의 각 향교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면, 이들 서원은 독자적인 제향의례를 정착, 정례화한 사례로 특별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제향 인물의 철학과 실천을 계승하고 지역의 후학과 후손들의 참여로 각 서원의 전통 제향의례를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도 하였지만 특이하게 9개 서원별로 특화된 고유의 제향의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서원의 전통 제향의례가 변형되고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간략화 되어 가는 제례가 일반화되어 고유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할 우려도 보인다. 따라서 미래 무형문화 발굴육성 사업으로 이들 서원 제향 무형유산의 원래 전통가치를 재확립하고, 전승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 즉 이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의 제향의례 원형보존 및 가치를 확산하였으면 한다.

한편 일부 조사가 되기는 하였지만, 이들 9개 서원의 제향관련 기록과 고문서, 유물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세계유산인 '한국의 서원'의 제향의례는 무형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 이들 '한국의 서원' 9개 서원 제향의례의 경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준수시키는 무형 유산으로서 특별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특별한 유산이다. 그리하여 이들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를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원형을 보존하고 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향후 세계유산한국의서원 통합관리센터가 사업관리 주체가 되어, 9개 서원들이 무형의 서원제례를 보존하고, 가치를 전승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구체적인 향후 과제는 기존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향의례 관련 자료를 좀더 구체적 면밀하게 재조사 정리하여 문화유산 지정가치를 증대시켰으면 한다. 우선 이들 자료는 16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이면서 내용과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9개 서원별 기록문서 목록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기록문화와 제향-』(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2021)에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다.

그리하여

- 서원 제향의례 보존 및 가치 전승
- 서원 전통 제례 문화의 조사, 연구, 복원
- 국가 무형유산 지정 제안

하고, 이들 9개 서원의 제례 원형 복원, 그리고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속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할 서원 제례 전승자의 발굴, 향후 계승활용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게도 된다. 아울러 9개 서원 간 교류를 통해 서원 제향 의례와 향후 전승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저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 2011, 2012.
이동구, 『한국의 서원 의절』,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협의회, 2013.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문화』, 2014.
한국서원연합회, 『한국의 서원유산』, 2014.
한국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 서원유산-제향의례-』, 2014.
이해준 외, 『한국서원의 전통가치와 현대적 계승』, 한국학중앙연구원(공저), 2018.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기록문화와 제향-』, 202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202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한국 서원의 로컬리즘』, 2023.

2. 논문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제례와 위치」, 『진단학보』 90, 2000.
이해준, 「한국 서원 유형·무형유산의 특징」, 『한국서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국가브랜드위원회,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병산서원 옥산서원-,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노강서원 돈암서원-,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남계서원 도동서원-,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서원향사』-무성서원 필암서원-, 2013.
한재훈, 「퇴계의 서원 향사례 定礎에 대한 고찰」,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김미영, 「서원 향사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국학연구』 22, 2013.
정승모, 이해준, 최순권,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문화』, 한국서원연합회, 2014.
최순권, 이명진, 「한국 서원의 제향의례」, 『한국의 서원-제향의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14.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개 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

계학논집』 20, 2017.

이해준, 「‘한국의 서원’의 통합관리 정책」,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등재 이후의 과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국제학술포럼, (재)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2021.

한재훈, 「한국 서원의례의 유형과 특징」,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임근실, 「조선 지식인, 서원 향사의례를 지내다」,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이해준, 「조선시대 서원의 지역적 성격」, 『한국 서원의 로컬리즘』,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3.

Abstract

World Heritage Memorial Rites of “Korean Seowon” and Proposal of Measures for Sustainability and Development

Lee, Hae Jun*

We would like to explore and propose measures to foster the cultural heritage valu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4,500-year-old Seowon memorial rites of “Seowon in Korea.”

Although the private Confucian academy system (Seowon) originated in China, the Korean academy system maintains a unique tradition of “ancestral rites,” which differs from the Chinese academy system that is centered on “semi-style lectures.” A Korean Seowon was a space where a symbolic ancient sage, who was worshipped by each Seowon, was selected as a mentor and revered through ancestral rites. In addition to its role in ancestral rites, it was a space where some of the high class talented persons made contact and interact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Korea is the only place where the Seowon memorial rites are practiced unchanged, and the Korean Seowon memorial rites can be said to be the most completely reproduced Confucian-style memorial rites in the world. The memorial rites of the “Korean Seowons,” collectively designated as World Heritage Sites, have been practiced by descendants and local Confucian scholars in the nine Seowons, and have sufficient historical, academic, and

* Emeritus Professor, Kongju National University / leehj@kongju.ac.kr

artistic value to constitute intangible heritage.

Therefore, we would like to designate the “Korean Seowon” memorial rites, protected und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s a nationally designated intangible heritage by preserving their original form, redefining their value, and establishing a transmission system for them.

Key word : Korean Seowon, memorial rites, memorial figures, restoration of memorial rites, intangible heritage designation

논문 투고일: 2023. 11. 14 심사 완료일: 2023. 11. 30 게재 확정일: 2023. 12. 01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 전승 구조와 현황

—9개 서원 홀기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 재 훈*

- I. 들어가는 말
- II. 기일(期日)과 성생(省牲)
- III. 진설(陳設)
- IV. 행례(行禮)
- V. 나오는 말

【국문초록】

한국 서원의 향사는 국학(國學) 즉, 성균관이나 향교에서 봉행하는 석전(釋奠)을 기준으로 삼아 모방하면서도, 그 대상과 규모 그리고 의식절차 등에서는 융쇄(隆殺)의 차등을 견지한다. 서원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퇴계 이황은 신재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폭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특히 제품의 진설과 의절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였고, 제관의 구분과 수행조건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공했다. 이후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이러한 퇴계의 작업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아 계승과 비판 그리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갔다.

한국의 서원은 자신의 위상을 국학(國學)과 향사(鄉祠)의 중간에 설정하려는 의식을 강하게 보여준다. 특히 서원의 향사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석전을 참고하면서도 융쇄의 차등을 견지하려고 긴장했다. 이러한 긴장과 고민의 과정을 통해 조선시대 서원들은 한국적 서원 향사례를 조성해나갔다. 현존하는 서원들 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

*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대우교수 / kjdyst@daum.net

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의 향사례를 ‘홀기(笏記)’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의 서원향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전승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경우 9개 서원들 간에도 차이가 있고, 이외의 서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원의 향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립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 향사례가 대동(大同)을 유지하면서도 소이(小異) 또한 존속케 했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주제어 : 서원, 9개 서원, 향사, 홀기, 의례

I. 들어가는 말

에당초 서원(書院)은 당대(唐代)에 장서(藏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 강학(講學)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던 당대의 서원은 아직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인 시설이었는데, 북송(北宋)에 이르러 비로소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특히 북송의 서원은 장서와 강학의 기능에 향사(享祀) 기능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원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¹⁾ 서원의 초기 향사례는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진(東晉) 시대에 국자학(國子學) 서쪽에 공자묘(孔子廟)를 건립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관학(官學)의 묘학제도(廟學制度)를 전범으로 삼아 모방과 변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비되어 갔다.²⁾

1)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页.

2)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6

그러한 서원 향사례가 독자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아무래도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창주정사(滄洲精舍)에서 봉행한 석채의(釋菜儀)를 기점으로 형성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주자는 이 석채의에서 공자(孔子)를 선성(先聖)으로 하고, 안자(顏子)·증자(曾子)·자사(子思)·맹자(孟子)를 선사(先師)로 하였을 뿐 아니라,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사마광(司馬光)·장재(張載)·이동(李侗)을 선현으로 하여 향사를 봉행했다.³⁾ 그러면서 주자는 “공자는 학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⁴⁾고 하면서, 안자·증자·자사·맹자를 배향한 이유와⁵⁾ 송대의 칠현을 중시한 이유⁶⁾를 모두 도통(道統)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중국의 서원문화를 수용하여 정착시켜 갔던 한국의 서원 향사례는 향사 대상의 선정이나 향사 의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우선 향사 대상을 선정할 때는 서원이 위치한 지역과 연고가 있는 향현(鄉賢) 중에서 도의와 충절이 있는 인물로 선정하되 도학의 수준이나 기여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했다.⁷⁾ 이는 공자가 향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없

頁.

- 3) 『朱子語類』 卷90: “宣聖像居中; 兗國公顏氏、郈侯曾氏、沂水侯孔氏、鄒國公孟氏 西向配北上, 並紙牌子; 濂溪周先生東一、明道程先生西一、伊川程先生東二、康節邵先生西二、司馬溫國文正公東三、 橫渠張先生西三、延平李先生東四從祀, 亦紙牌子, 並設於地.”
- 4) 『朱子語類』 卷90: “祭孔子必於學.”
- 5) 『朱子語類』 卷90: “配享只當論傳道, 合以顏子、曾子、子思、孟子配.”
- 6) 『朱子全書』 卷86 『滄洲精舍告先聖文』: “千有餘年, 乃曰有繼. 周、程授受, 萬理一原. 曰邵、曰張, 爰及司馬, 學雖殊轍, 道則同歸.”
- 7)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영봉서원(迎鳳書院)의 봉안 대상의 위치(位次)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논의이다. 영봉서원 위치 시비와 관련해서는 鄭萬祚, 『退溪 李滉의 書院論』(『韓活泐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에 그 전말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의 서원은 중국과 달리 제향인물을 선정하고 그 위치를 정할 때 반드시 ‘도학’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퇴계(이황)와 금계(황준량)의 생각과 관련해서는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研究』(『역사교육 논집』 54, 2015)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는 중국의 서원과 구별되는 한국 서원만의 특징이다.⁸⁾ 이러한 대상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제품(祭品)의 규모나 기일(期日) 등 향사 규모의 차이로 연결되었다. 즉, 한국 서원의 향사 규모는 국학이나 향교의 석전(釋奠)에 준하되 용쇄(隆殺)의 차등을 두게 된 것이다.⁹⁾

한국 서원의 향사는 국학의 석전 등을 모방하되 이와 같은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주자의 창주정사 석채의에 담긴 유학의 도통의식을 담아내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갖추어 갔다. 아래에서 비교·검토하게 될 9개 서원 홀기의 내용은 한국의 서원들이 저마다 같으면서도 다른 다채로운 향사 문화를 간직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차이는 옹고그림의 문제라기보다 개별 서원이 선현을 받드는 방식의 최선이 서로 달랐음을 보여준다.

II. 기일(期日)과 성생(省牲)

1. 기일(期日)

조선시대 서원 향사의 기일은 중춘(仲春: 음력 2월)과 중추(仲秋: 음력 8월)의 중정일(中丁日)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몇 서원에서는 계춘(季春: 음력 3월)과 계추(季秋: 음력 9월)의 상정일(上丁日)에 향사를 봉행한다. 9개 서원의 경우도 7곳은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소수서원과 병산서원에서만 계춘과 계추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한다.

8) 柳肅, 「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9) 이와 관련해서는 尹熙勉, 「朝韓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진단학보』 90, 2000) 참조.

〈도표 1〉 9개 서원 향사 기일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기일 (期日)	季春·秋 上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季春·秋 上丁	仲春·秋 中丁	仲春·秋 中丁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향사를 봉행하는 이유는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성균관이나 향교 등 국학에서 선성·선사·선현 등에게 석전을 봉행하기¹⁰⁾ 때 문에 이와 차등을 두기 위해서이다. 이는 1605년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된 도동서원(道東書院)의 원규를 제정한 한강(寒岡) 정구(鄭述, 1543~1620)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교가 실은 본원이 되는 곳임에도 근래에 너무 심하게 퇴폐한 관계로, 학식이 있는 선비들조차 유속에 뒤섞여서 (향교의 제향을) 남의 집 제사 보듯 하니 이 어찌 성인을 존중하고 도를 옹위하려는 국가의 뜻이겠는가. 이제부터는 원임(院任)이 상정일에 지역 유생들을 인솔하고 먼저 석전에 참여하고, 그런 다음 본원의 향사는 중정일에 봉행한다면 향교와 서원이 한 몸이면서도 선후의 질서가 있게 될 것이다.¹¹⁾

이렇게 국학과 서원의 향사 기일에 차등을 둬으로써 관학과 사학 사이의

- 10) 『朱子全書』別集卷8「釋奠申禮部檢狀【見臨漳語錄】」：“釋奠時日，注云：‘仲春上丁，仲秋下丁。’某檢準紹興、乾道、淳熙令，並云‘二月、八月上丁釋奠文宣王，即無‘下丁’之文。又嘗竊見『五禮』申明冊內有當時州郡申請，禮局已改‘下丁’爲‘上丁’訖，其後又見數敷文閣待制薛弼任杭州教授時所申。今到本州檢尋頒降舊本，却無此條。恐是前後節次頒降，致有漏落。將來如蒙別行鑿板，即乞先於儀內改‘下丁’作‘上丁’字。仍檢申明冊內，備錄此條全文，附載篇末，以證元本之失。’ / 『國朝五禮序例』吉禮·時日：“仲春、仲秋上丁，釋奠文宣王。”
- 11) 『寒岡集』續集卷4「院規【爲道東作】」：“鄉校實爲本原之地，而近來頹敝太甚，雖有識之士，亦不免自混於流俗，而如視他人家事，此豈國家之尊聖衛道之意哉？自今院任每值上丁，率境內儒生，先期齊會釋尊後，本院祀事行於中丁，庶幾彼此一體，先後有倫也。”

질서를 분명히 하고자 했던 생각은 서원과 향사(鄉祠)의 기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향사의 기일은 보통 중춘과 중추의 하정일(下丁日)로 정하게 되었다.¹²⁾

국학과 서원 그리고 향사의 기일 사이에 이러한 질서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서원에서는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향사를 봉행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우선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춘추대향은 보통의 경우 계월 상정으로 하고, 상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정으로 바꾼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세붕은 백운동서원의 원규에서 향사일을 ‘계월 상정’으로 정하게 된 이유를 “상사(上巳)의 청명한 날과 중양(重陽)의 아름다운 계절에는 생전에 공께서 이곳에서 즐겁게 놀았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면 기꺼이 강림하여 흠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¹³⁾ 다음으로는 그 뒤에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지만, 기일과 관련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은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병산서원 역시 소수서원처럼 계춘과 계추의 상정을 향사 기일로 정하였으나 그 이유가 소수서원과 다른 점도 있다. 스승인 퇴계의 도산서원 향사가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행해지기 때문에 제자인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을 모신 병산서원에서는 이를 피해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에 행하도록 하였다.

소수서원이나 병산서원과 다른 이유로 향사 기일을 계춘과 계추의 상정일로 정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도남서원(道南書院)의 원생들이 “가을장마에 물이 불어나면 서원의 향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중월 중정에 향사를 봉행하던 것을 계월 상정으로 바꾸면 어땠겠느냐”며 정구에게 자문을 구했을 때, 정구는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 의절에 관해 많

12) 『睡谷集』 卷10 「報恩縣成東洲趙重峯兩先生鄉祠記: “每春秋仲月下丁, 一縣儒品長少畢會, 具牲牢以薦獻, 如釋菜之儀. …… 其用下丁, 以院亭在中丁也.”

13) 『竹溪志』·「雜錄後」 院規: “上巳之清明, 重陽之佳節, 卽公平生所浴禊遊賞於此者, 追而祭之, 公必樂而降歆.”

은 내용을 개정하면서도 향사 기일만큼은 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열 상정으로 기일을 정해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¹⁴⁾

2. 성생(省牲)

성생은 향사에 바칠 희생이 살이 차서 튼실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의식이다.¹⁵⁾ 이를 옥산서원에서는 감생(瞰牲), 도산서원에서는 생간품(牲看品), 필암서원에서는 충돌례(充臚禮)라고 달리 부르고 있지만 같은 의식이다. 성생은 정해진 의식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신당서(新唐書)』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알자는 태상경을 인도하고 찬인은 어사를 인도한다. 단에 이르면 동쪽 계단으로 올라 씻는 것을 살펴본다. 그런 뒤 내려와 성생위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선다. 능희령이 조금 앞으로 나와 “성생을 하십시오”라고 외치면, 태상경이 성생을 한다. 능희령이 북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찼습니까?[돌(臚)]”라고 하면, 모든 태축들이 각자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서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찼습니다.[충(充)]”라고 한다. 모든 태축들과 능희령은 줄을 지어 희생을 끌고 푸줏간으로 가서 태관에게 넘겨준다.¹⁶⁾

14) 『寒岡集』 卷3, 「答道南院生」 道南院生問: “院在長江大川之間, 每遇秋雨大浸, 則四方士子至者甚少. 竊念書院享祀, 國中通用仲月中丁, 不敢有異議, 而事勢如右, 欲用季月上丁, 以避水潦, 得免闕事之患. 此又非全無所據, 嘗見周慎齋所定紹修儀範, 軌中未穩處, 退溪先生多所評改, 而祭用季月上丁一段則不改. 若是大段未安, 則必不仍存, 就季月上丁以行何如?”

15) 『舊唐書』 卷24, 志第4·禮儀4: “太牢皆棧飼於廩犧署, 以至充臚. 臨祭, 視其充瘦, 謂之省牲.”

16) 『新唐書』 卷11, 禮樂志第1: “謁者引太常卿, 贊引引御史, 入詣壇東陛升, 視滌濯, 降就省牲位, 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太常卿省牲. 廩犧令北面舉手曰‘臚’,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曰‘充’. 諸太祝與廩犧令以次率牲詣厨授太官.” / 참고로 『大唐開元禮』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唐開元禮』 卷16, 吉禮·省牲器: “謁者引太常卿, 就省牲位南向立, 廩犧令少前, 曰‘請省牲’, 退復位. 太常卿省牲. 廩犧令又前, 北面舉手, 曰‘臚’, 還本位. 諸太祝各循牲一匝, 西向舉手, 曰‘充’, 俱還本位. 諸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의식절차가 실려 있다.¹⁷⁾ 다만 문선왕(文宣王: 孔子)에게 올리는 석전은 중사(中祀)에 속하는데, 여기에서는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한다. 모두 평상복 차림으로 희생의 충돌(充臚)을 살핀다”고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¹⁸⁾ 물론 이것은 서원에서 성생을 하는 의식은 아니고 국가 전례이다. 그러나 헌관들이 성생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성생을 할 때 ‘돌(臚)’과 ‘충(充)’을 외치면서 희생의 상태를 교차 점검하는 의식은 서원의 성생에도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서원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전례를 참고하였겠지만 정해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서원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인다. 소수서원의 경우 「성생홀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성생위에 이른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다. 축은 희생의 서쪽에서 동쪽을 향한다. 사생은 희생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한다. 축이 희생의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동쪽을 향해 손을 들며 “살이 찢습니다(充)”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생이 조금 앞으로 나서 손을 들며 “살이 찢습니다(臚)”라고 한 뒤 물러나 자리로 돌아온다. 사생은 희생을 끌고 부엌으로 가서 전사관에 넘겨준다.¹⁹⁾

소수서원의 성생은 앞서 살펴본 국가 전례에서 행해지는 성생의 의식절차

太祝與廩犧令以次牽牲詣廚，授太官令。”

- 17)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終獻官,【若領議政爲亞獻, 則亞獻官省牲器。】贊引引監察升自阼階, 視滌濯, 執事者皆舉羈告潔。訖, 引降就省牲位, 南向立, 掌牲令小前曰“請省牲”, 退復位, 終獻官省牲。掌牲令又前, 舉手曰“臚”, 復位, 諸大祝各巡牲一匝, 西向舉手曰“充”, 俱復位。請大祝與掌牲令, 以次牽牲詣廚, 授典祀官。”
- 18)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省牲器: “謁者引獻官, 贊引引監察【外則無監察。】俱以常服, 視牲充臚。”
- 19) 『紹修書院誌』: “謁者引獻官, 詣省牲位。○近南北向。○祝位於牲西東向。○司牲位於牲東西向。○祝巡牲一匝。○東向舉手曰“充”。○退復位。○司牲少前舉手曰“臚”。○退復位。○司牲牽牲詣廚。○授典祀官。”

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 전례에서는 능희령 또는 장생령이 먼저 “살이 찼습니까(臙)?”라고 물으면, 이에 대해 태축(또는 대축)이 “살이 찼습니다(充).”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 비해,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축이 먼저 “살이 찼습니다(充)”라고 말하면, 이에 대해 사생이 “살이 찼습니까(臙)”라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전례의 성생례는 희생을 담당한 부서에서 희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희생으로서 충분한지를 물으면 제관들이 이를 살펴본 다음 충분하다고 답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제관(축)이 먼저 말하고 담당자(사생)가 나중에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성생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서원에서 국가 전례처럼 희생을 키워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희생으로서 충분함을 교차 확인하는 수준에서 성생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옥산서원의 경우는 유사가 묻고 헌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헌관이 희생의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선다. 재유사는 서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희생의 주위를 세 바퀴 돈 뒤, 손을 씻고 꿇어앉아 희생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헌관을 향해 “살이 찼습니까(臙)”라고 하면, 헌관은 “살이 찼습니다(充)”라고 말한다. 옥산서원에서는 이 의식을 감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별도로 축과 장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와 헌관이 감생을 진행한다 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할 때 ‘충(充)’이라 하고, 답할 때 ‘돌(臙)’이라 하기도 한다.”는 말을 첨부해두었다.²⁰⁾

도산서원의 경우에도 옥산서원과 마찬가지로 유사와 헌관이 희생의 충(充)·돌(臙)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좀 더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다.

유사가 희생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국궁을 하고 “충”이라고 고하

20) 『玉山書院笈記帖』: “獻官立於牲南北向。齋有司自西折旋而左巡者三, 盥水呪手, 跪而檢摩牲, 向獻官揖告曰‘臙’, 獻官曰‘充’。【或告充答臙。】”

면, 현관은 희생의 동쪽으로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현관은 다시 희생의 남쪽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 유사는 다시 희생의 북쪽으로 나아가 남쪽을 향해 서서 “충”이라고 고하면, 현관은 다시 희생의 서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해 서서 “돌”이라고 답한다.²¹⁾

이밖에 남계서원과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충’을 고하면 현관이 ‘돌’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도동서원의 경우에는 축이 ‘돌’을 고하면 현관이 ‘충’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병산서원, 무성서원, 돈암서원은 성생하는 절차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서원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서원의 향사례 자체가 정해진 예제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국가 전례를 참고하면서도 그것과 차별을 두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²²⁾ 따라서 국가 전례 가운데 어떤 점은 수용해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표 2〉 9개 서원 성생례(省牲禮)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성생 (省牲)	祝: 充 司牲: 膺	祝: 充 獻官: 膺	有司: 膺 獻官: 充	有司: 充 獻官: 膺	祝: 充 獻官: 膺	祝: 膺 獻官: 充	×	×	×

21) 『陶山書院儀節』: “有司就牲前北向立, 鞠躬告曰‘充’. 獻官就牲東西向立, 應曰‘膺’. ○有司又就牲西東向立, 告曰‘充’. 獻官又就牲南北向立, 應曰‘膺’. ○有司又就牲北南向立, 告曰‘充’. 獻官又就牲西東向立, 應曰‘膺’.”
 22) 『寒岡集』 卷6, 「答李景發」: (問)“『勿記』無省牲儀. 國學則初獻官省牲, 而祝告充膺; 州縣則終獻官省牲, 而不告充膺, 未知院享則何以爲之?” (答)“『舊儀』, 初獻官以下就繫牲處列立, 祝告充膺.”【右川谷奉安】

Ⅲ. 진설(陳設)

1. 보궈(篋簋)·변두(籩豆)

서원에서 진설하는 제기(祭器)의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국학에서 시행하는 석전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보면 국학에서 시행하는 선성과 선사에게 올리는 석전의 경우 “보(篋)·궈(簋) 각각 2개, 변(籩)·두(豆) 각각 10개 그리고 등(甑)과 형(鉶)과 조(俎)는 각각 3개”라고 했고, 주현(향교)에서 봉행하는 석전의 경우 “보·궈 각각 2개, 변·두 각각 8개 그리고 조는 각각 3개”라고 했다.²³⁾ 『국조오례의』에서도 주현의 경우 조가 2개라는 것만 다를 뿐 대부분 『대당개원례』의 형식과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²⁴⁾

서원의 향사는 대체로 보·궈는 각각 1개, 변·두는 각각 4개로 하는 규모를 채택하였다. 이는 국학이나 향교보다는 간소하지만 국학이나 향교의 종향위(從享位)에 올리는 규모(변두 각각 2개, 보궈 각각 1개 그리고 조 1개)²⁵⁾보다는 융숭한 것으로, 국학이나 향교의 전례를 참고는 하되 그것과는 융쇄(隆殺)의 차등을 분명히 하려는 모습을 읽을 수 있다.

9개 서원 별로 진설되는 보·궈와 변·두의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9개 서원에서 진설하는 보·궈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표 3>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서원은 보·궈가 각각 1개씩인 데 비해 소수서원과 도산서원만 보·궈가 각각 2개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백운동서원의 향사례를 제정했던 주세붕이 보·궈는 주현(향교)과 같게 하는 대

23) 『大唐開元禮』卷1 『序例上』: “春秋釋奠於孔宣父、九十五坐、先聖、先師各籩十、豆十、簋二、篋二、甑三、鉶三、俎三.” 같은 책 같은 곳: “州縣祭社稷、先聖、釋奠於先師、每坐各籩八、豆八、簋二、篋二、俎三.”

24)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惟配位無羊腥熟】」와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2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釋奠從享【州縣同】」 참조.

신 변·두와 조의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격의 차이를 두었는데 이를 이황이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 9개 서원 진설: 보(藁)·괘(藁)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보(藁)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도(稻)
	량(梁)			량(梁)					
괘(藁)	서(黍)	서(黍)	서(黍)	서(黍)	서(黍)	서(黍)		서(黍)	량(梁)
	직(稷)			직(稷)			직(稷)		

도산서원의 경우는 생전에 이황이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수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다만 도산서원의 경우에는 ‘계미국감(癸未國減)²⁶⁾ 이후에는 보·괘를 1개씩 진설하고 있으며, 소수서원도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보·괘를 1개씩 진설하고 있다.

한편, 보·괘에 담는 내용물 역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원래 보·괘가 2개씩 인 경우에는 보에 도(稻)·량(梁)을 담고, 괘에는 서(黍)·직(稷)을 담는다. 그런데 보·괘를 1개씩으로 줄이면서 대체로 보에는 도·량 중에 도를 담고, 괘에는 서·직 중에 서를 담는다. 그러나 병산서원과 돈암서원의 경우에 보에 도를 담는 것은 동일하지만, 괘에 담는 내용물이 다른 서원들과 차이가 있다. 병산서원에서는 괘에 서·직 중에 직을 담도록 하였고, 돈암서원에서는 괘에 서·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보에 담았어야 할 량을 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9개 서원에서 진설하는 변·두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26) 계미국감(癸未國減) : ‘국감(國減)’은 나라에서 해당 의식이나 진설을 감쇄(減殺)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계미년에 보·괘를 각각 2개에서 1개로 감쇄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계미년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표 4〉 9개 서원 진설: 변(籩)·두(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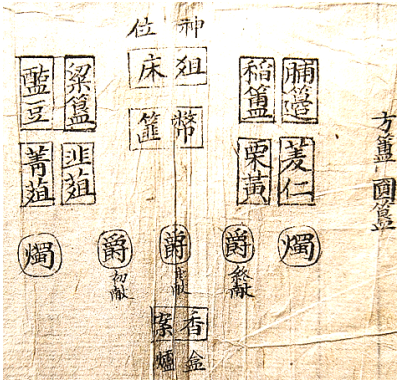
		소수	남계	옥산 ²⁷⁾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둔암
변 (籩)	포 (脯)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²⁸⁾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능인(菱仁)
	과 (果)	조(棗)	조(棗)	조(棗)	조(棗)	행(杏)	조(棗)	조(棗)	조(棗)	울(栗)
		백(柏)	울(栗)	울(栗)	백(柏)	울(栗)	울(栗)	울(栗)	울(栗)	
두 (豆)	해 (醢)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녹(鹿) ²⁹⁾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어(魚)	구(韭)
	저 (菹)	구(韭)	구(韭)	근(芹)	구(韭)	근(芹)	구(韭)	구(韭)	근(芹)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청(菁)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9개 서원 가운데 8개 서원은 4변·4두를 진설하고 있으며,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변에는 주로 포(脯)와 과(果) 같은 물기가 없는 제수를 담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두에는 주로 해(醢)와 저(菹) 같은 물기가 있는 절임류의 제수를 담는다. 포에는 녹포(鹿脯)와 어숙(魚鱗), 해에는 녹해(鹿醢)와 어해(魚醢)를 사용하고, 저에는 채소의 절임류를 사용하여 맛은편의 과일과 짝이 되도록 하였다.

이때 거의 모든 서원에서는 녹포(鹿脯)와 녹해(鹿醢)를 장만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슴고기 대신 쇠고기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일 역시 서원마다 달라서, 대추(棗)와 밤(栗)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잣(柏)과 은행(杏) 또는 마름열매(菱仁)가 사용되기도 한다. 야채도 무(菁)는 모든 서원에서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부추(韭) 또는 미나리(芹)를 사용하는 차이가 확인된다.

이러한 대동소이한 진설에서 두드러지게 다른 형식의 진설을 하는 곳이

- 27) 옥산서원의 구(舊)진설도는 퇴계가 수정하기 이전 백운동서원의 진설도와 같았다(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玉山書院誌』, 1993, 39쪽 참조).
- 28) 둔암서원에서 진설하는 포(脯)는 녹포(鹿脯)를 사용하되 장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우포(牛脯)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 29) 둔암서원에서 진설하는 해(醢)는 녹해(鹿醢)를 사용하되, 장만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토해(兔醢)-치해(雉醢)-어해(魚醢) 순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참고: 돈암서원 진설도]

돈암서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돈암서원에서는 보·궤에 각각 도·량을 담도록 하여 다른 서원들이 도·량 중에 하나를 보에 담고 서·직 중에 하나를 궤에 담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돈암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변·두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 다른 서원들이 모두 4변·4두를 사용하는 데 비해 돈암서원에서는 3변·3두를 진설하고 있다.³⁰⁾

이렇게 서원 향사에서 변과 두에 육(녹)포와 어숙 육(녹)해와 어해가 각각 균형을 이루면서 진설되고, 또 다른 변과 두에 과일과 채소가 역시 2개씩 균형을 이루면서 진설되는 데는 1549년 이황이 수정한 백운동서원 향사례에서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황은 백운동서원의 향사에서 시행되어 온 진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밀과(蜜果)’를 진설해온 관행을 끈다. 이황이 진설에서 밀과의 사용을 문제로 지적한 대표적 이유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풍속(國俗)에 따른 ‘설미(饗味)’이기 때문이었다. 즉, 엄연한 교육기관인 서원의 향사에 이런 ‘설미’를 진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더구나 밀과를 변(籩)이 아닌 두(豆)에 진설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황은 지적했다.³¹⁾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황은 밀과를 진설에서 제거한 것은 물론이고, 좌측 변과 우측 두에 올리는 제수 역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30) 돈암서원에서 3변·3두를 진설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돈암서원 관계자들도 <진설도>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한다.

31)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謹按『竹溪志』本圖, 右二豆用軟蜜果. 周氏之意, 豈不以文成諸公東人也, 循國俗而祭用蜜果, 固爲無妨也耶? 雖然, 東人既祭於學, 則所當倣古而行, 豈可以蜜果饗味, 用之於學中乎? 且果而盛于豆, 尤非所宜.”

이제 밀과를 제거하고 녹해로 대체하며, 좌측 첫 번째 변 역시 이에 대응하여 과일을 제거하고 어숙(魚鱸)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되면 좌변(左邊)의 포·과와 우두(右豆)의 해·저가 돌씩 서로 대응하여 어긋남이 없게 될 것이다.³²⁾

이항은 기존의 진설에서 우측 두에 ‘밀과’를 올렸던 관행을 고쳐 ‘녹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와 더불어 좌측 변에도 세 종류의 과일을 올리던 것을 두 종류로 줄이는 대신 나머지 한 곳은 ‘어숙’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좌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변[左四邊]과 우측에 진설하는 네 개의 두[右四豆]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즉, 좌측 변에 두 종의 포[녹포와 어숙]를 진설하고 우측 두에 두 종의 해[녹해와 오해]를 진설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가 하면, 좌측 변에 두 종의 과[대추와 잣]을 진설하고 우측 두에 두 종의 저[무와 부추]를 진설함으로써 역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던 것이다.³³⁾ (아래 <표 5> 참고)

<표 5> 소수서원 춘추향도 수정 전·후 비교

愼齋 制定: 安文成公春秋大享圖						退溪 修正: 安文成公春秋享圖					
右四豆		神位		左四邊		右四豆		神位		左四邊	
魚醢	蜜果	籩(黍)	籩(稻)	乾棗	鹿脯	魚醢	鹿醢	籩(黍)	籩(稻)	魚鱸	鹿脯
菁菹	韭菹	籩(稷)	籩(梁)	栢子	栗黃	菁菹	韭菹	籩(稷)	籩(梁)	乾棗	栢子
		鷄腥俎						鷄腥俎			
		幣篚						幣篚			
燭		香爐			燭	燭		香爐			燭
	爵	爵			爵		爵	爵			爵

32)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1999), I. 紹修書院資料, 7. 退溪笏記, (121쪽): “今去蜜果, 代以鹿醢, 左一邊亦對此而去果, 代以魚鱸, 則左邊脯·果, 右豆醢·菹, 兩兩相對, 無參差矣.”

33)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한재훈,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 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참조.

흥미로운 것은 이때 이황은 혹시 녹해와 어숙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균형 잡힌 진설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해두기도 하였다는 점이다.

차라리 녹해 대신 근저(芹菹: 미나리)를 올리고, 예전처럼 어숙 대신 다른 과일을 올린다. 그리하면 예의 본의를 잃지 않을 것이며, 밀과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³⁴⁾

이렇게 녹해 대신 근저를 올리고 어숙 대신 과일 올리게 되면, 좌변에는 포 1종과 과일 3종[一脯三果]이 올려지고 우두에는 해 1종과 야채 3종[一醢三蕒]이 올려지게 되어 역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렇게 이황은 서원 향사례의 진설에서 좌변과 우두의 균형을 매우 중시했다.

2. 생(牲)·폐(幣)

향사에서 올리는 생(牲)은 조(俎)에 올려서 진설을 하게 된다. 따라서 진설되는 조의 개수가 곧 생의 규모를 나타낸다. 원칙적으로 국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에서는 태뢰(太牢) 즉, 우(牛)·양(羊)·시(豕)를 올리기 때문에 조가 3개이고, 주현의 향교에서는 양성(羊腥)과 시성(豕腥)만 올리기 때문에 조가 2개이다. 그러나 국학과 향교에서도 종향(從享)에게는 조가 1개이고 이 경우에는 시성을 올린다.³⁵⁾ 조선의 서원에서는 대부분 시성만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향교의 석전과 비교했을 때 융쇄의 차등을 두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다만 시성을 올릴 때 원래는 요즘에 와서는 돼지머리만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원래는 성생(省牲)을 하는 의식이 있다는 점을

34)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若鹿醢·魚鱸有未備, 則寧以芹菹代鹿醢, 而仍以果代魚鱸, 庶不失禮之本意, 蜜果恐不可用也.

35)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 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감안하면 당연히 돼지 1마리 전체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각 서원 별로 진설 되는 생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 9개 서원 진설: 생(牲)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생(牲)	시(豕) ^{*36)}	시(豕)	시(豕)*	시(豕)*	시(豕)	시(豕)	저(猪)	시(豕)	시(豕)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서는 특이하게도 원래 계성(鷄腥)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계(鷄)는 『주례(周禮)』에 등장하는 육생(六牲) 중 하나이고,³⁷⁾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는 오생(五牲)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으며,³⁸⁾ 『예기(禮記)』에도 여러 희생들 중 우(牛)·시(豕/豚)·양(羊) 다음으로 언급되어 있다.³⁹⁾ 이런 전거들에 비추어 볼 때, 계가 우·양·시와 차등을 가지면서도 주요한 희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수서원 등에서 희생으로 계성을 채택한 까닭 역시 서원의 위상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대안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서원의 향사례에서 계성을 올리는 것은 백운동서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준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황이 이를 용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산서원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준용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한동안 서원 향사례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정구의 고제인 동호(東湖) 이서(李筵, 1566~1651)도 “도산서원과 서계서원의 준례에 따라 계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⁴⁰⁾ 하지만 계생을 쓰는 것은 적어도

36) 시(豕)* : 원래는 계성(雞腥)이었던 것이 나중에 시성(豕腥)으로 바뀐 경우이다.

37) 『周禮』·「地官·牧人」: “掌牧六牲而阜蕃其物, 以共祭祀之牲粢。” 鄭玄: “六牲, 謂牛、馬、羊、豕、犬、鷄。”

38) 『左傳』 昭公十一年: “五牲不相爲用。” 杜預: “五牲, 牛、羊、豕、犬、鷄。”

39) 『禮記』·「曲禮下」: “凡祭宗廟之禮, 牛曰一元大武, 豕曰剛鬣, 豚曰腍肥, 羊曰柔毛, 鷄曰翰音, …… .”

40) 『東湖集』 卷1 「答金圓菴以謙」: “書院之不用鷄牲, 先生嘗言其非. …… 依陶山、西

17세기 초반 이후에는 서원의 향사례로서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을 주었고,⁴¹⁾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서원에서 시생으로 바꿨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본래 계성을 올리던 소수서원과 옥산서원 그리고 도산서원에도 시생으로 바꾸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폐(幣)는 비(篋)에 담아서 진설을 하게 된다.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 역시 향사의 위상과 규모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된다. 국학과 향교의 석전인 경우 문선왕과 배위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향을 한 뒤에 이것을 올리라”[上香後奠此]고 명시되어 있는 데 반해, 종향의 진설도에는 폐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⁴²⁾ 서원 향사례의 경우에는 서원 별로 폐비를 진설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며, 도산서원의 경우는 처음에는 폐비를 진설하다가 나중에 ‘무진국감(戊辰國減)⁴³⁾’의 조치에 따라 진설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었다. 각 서원 별로 폐비가 진설되었는지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9개 서원 진설: 폐(幣)

	소수	남계	옥산	도산	필암	도동	병산	무성	돈암
폐(幣)	◎ ⁴⁴⁾	○	◎	×	○	○	×	○	○

폐비를 진설하느냐의 여부는 향사의절에서 전폐례를 시행하느냐와 직접적

溪例用鷄牲，則正是先生之遺意也。”

- 41) 『无悶堂集』別集卷1 「龍淵書院請額疏[周榮]」: “春秋享祀，亦多苟簡，薄酒鷄牲，未成儀式。” 참고로 무민당(无悶堂) 박인(朴紉, 1583~1640)은 17세기 초반에 활동했다.
- 42)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의 「親享先農及配位【親享文宣王及配位同。惟配位無羊腥熟。】와 「釋奠從享【州縣同。】 및 「州縣釋奠正配位【從享與國學同。】」 참조.
- 43) 무진국감(戊辰國減) : 여기에서 말하는 무진년이 몇 년도를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서원철폐령이 내려진 1868년(고종 5)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 44) ◎ : 처음에는 폐(幣)를 올리지 않다가 나중에 올린 서원을 뜻한다.

으로 연관이 있으며, 망예(望瘞) 또는 망료(望療)를 할 때 축문과 폐를 함께 묻거나 불사르느냐 아니면 축문만 묻거나 불사르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전폐를 할 경우에는 축문에도 이를 명시하므로 축문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수서원의 경우 진설도에는 폐비가 명시되어 있지만, 주세붕은 「의도제용잡물식」에서 “별제(別祭)가 아니면 폐를 사용하지 말라”⁴⁵⁾고 하였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하는 절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황이 백운동서원 향사례를 수정할 때에도 고치지 않았다. 옥산서원 역시 현전하는 흘기의 진설도에는 폐가 명시되어 있지만 구진설도에는 폐가 그려져 있지 않고, 현행 축식에는 “청작생폐(淸酌牲幣)”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축식에는 “청작결생(淸酌潔牲)”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폐에 대한 언급은 없다.⁴⁶⁾ 따라서 현전하는 흘기에 전폐례가 있고 망료례를 행할 때도 축문과 폐를 함께 불사르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후대에 개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병산서원은 진설도에도 폐비가 없을 뿐 아니라 향사의절에도 전폐례가 없으며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도록 되어 있다.

이 서원들과 달리 나머지 서원들에서는 폐비를 대부분 진설하고 있다.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폐포(幣布)는 29척(정위: 18척, 배위: 11척)”이라고 폐의 종류와 규모까지 명시하고 있다.⁴⁷⁾ 돈암서원에서도 “폐는 저포(苧布)를 사용하고, 길이는 조례기척(造禮器尺)으로 1장8척이다. 저포가 없을 경우 백포(白布)나 백면포(白綿布)로 대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⁴⁸⁾ 도산서원의 경우는 진설도에 폐가 명시되어 있어서 원래는 폐를 진설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좌우에 ‘무진국감(戊辰國減)’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조치에 따

45) 『竹溪志』·「依圖祭用雜物式」: “非別祭, 勿用幣.”

46)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玉山書院誌』, 1993, 영남대학교출판부, 39쪽.

47)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幣布二十九尺【正位十八尺, 配位十一尺.】”

48) 遜巖書院, 『遜巖書院誌』: “幣【用苧布, 長一丈八尺, 用造禮器尺. 無則代以白布, 或白綿布.】”

라 더 이상 폐를 진설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홀기에도 전폐례에 관한 글귀들 위에 종이를 붙여서 보이지 않게 하였고, 망예를 할 때도 축문만 묻게 하였다.

IV. 행례(行禮)

이제 본격적으로 향사의 행례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향사를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을 홀기에 반영하여 기술한 서원도 있고, 내용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홀기 자체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기술한 서원도 있다. 여기에서는 9개 서원의 홀기를 효과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본격적으로 향사를 진행하기 위해 헌관(獻官) 이하 참석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취위(就位)이다. 둘째는 초헌관(初獻官)이 신위(神位)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상향(上香)·전폐(奠幣)이다. 셋째는 초헌관이 신위에 첫 번째 잔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 초헌(初獻)이다. 넷째는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신위에 두 번째 잔과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亞獻)·종헌(終獻)이다.(원래 아헌과 종헌은 별도의 절차이지만 행례 내용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함께 합쳐서 다루었다.) 다섯째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음복을 하는 음복(飲福)·수조(受胙)이다. 여섯째는 제기를 치우고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움으로써 향사 의식을 정리하는 철번두(撤籩豆)·망예(望瘞)이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여섯 단계 각각의 내용을 9개 서원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단계별로 비교·검토하였다.

1. 취위(就位)

서원 향사에서 헌관 이하 제관(祭官)들 및 학생 등 일반 참석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취위(就位)라고 하며, 입정(入定) 또는 입정(立定)이라고도 한다. 서원 향사의 본격적인 행례는 이 취위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서원에 따라서는 장찬(掌饌)이 제사음식을 진설하는 것부터 행례를 기록하는 홀기도 있고, 초헌관이 이미 진설된 것을 점시(點視)하는 것부터 기록하는 홀기도 있다.

취위의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향사 의례를 진행하는 집사(執事)들이 먼저 외위(外位, 또는 門外位)에 이른다. 이어서 삼헌관(三獻官)이 외위에 이른다. 그런 다음 집사들이 먼저 절을 올리는 배위(拜位)로 가서 절을 올리고, 손을 씻는 관세위(盥洗位)로 가서 손을 씻은 다음 각자의 위치로 간다. 다음으로 삼헌관이 배위로 가면, 알자나 찬자가 초헌관에게 와서 제사를 봉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보고를 하고, 삼헌관이 절을 올림으로써 본격적인 행례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상의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서원별 홀기에 따라 상세함의 정도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큰 줄거리는 위와 같다. 다만, 이 과정과 관련하여 서원 별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이 신위의 독(櫛)을 여는 개독(開櫛)과 진설한 보·궤의 뚜껑을 여는 개개(開蓋)에 관한 절차이다.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아예 개독과 개개가 홀기에 기입되어 있지 않고, 남계서원의 경우에는 개독만 기술되어 있고 개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행례를 하기 전에 미리 열어놓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두 서원을 제외한 나머지 서원의 홀기에는 개독과 개개가 모두 기술되어 있으나, 개독과 개개 하는 순서에 차이가 있다. 도산서원·도동서원·무성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 다음에 개독·개개를 하도록 하였고, 필암서원·병산서원·돈암서원에서는 삼헌관이 배위로 가기 직전에 하도록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옥산서원의 경우에는 초헌례에서 “축문을 읽기(讀祝) 직전에 “보·궤의 뚜껑을 열도록(開簠簋蓋)” 하였다.

취위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표 8〉 9개 서원 행례: 취위(就位)

소수	<p>①[제집사]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外位]→②[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③[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④[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⑤[축·제집사]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⑥[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p>
남계	<p>①[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②[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③[초헌관]아래로 내려온다[降]/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門外位]→④[아헌관]이하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⑤[초헌관]이하뜰 중앙의 자리에 나아간다[就庭中位]→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⑦[축·제집사]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초헌관]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p>
옥산	<p>①[제집사]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外位]→②[삼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③[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④[대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⑤[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⑦[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헌관·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p>
도산	<p>①[제집사]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外位]→②[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③[집사]자신위의 독을 연다[開櫛·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④[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⑤[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⑦[축·제집사]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⑧[삼헌관·분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p>
필암	<p>①[헌관]이하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②[집사·알자·찬자·찬인]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③[집사·알자·찬자·찬인]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④[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⑤[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⑥[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촛불을 켜다[點燭]→⑦[헌관·학생]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헌관·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p>
도동	<p>①[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②[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③[초헌관]내려간다[降]/중문 밖 자리에 이른다[詣門外位]→④[아헌]이하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⑤[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취위→⑦[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⑧[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⑨[헌관]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p>

병산	①[찬자·알자·찬인]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②[삼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外位]→③[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④[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⑤[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⑥[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⑦[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
무성	①[헌관·제집사·학생]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②[장친]손을 씻는다[盥洗]/진설→③[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④[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춧불을 켜다[點燭]→⑤[집례·축·찬자·찬인]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⑥[학생·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⑦[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⑧[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⑨[유사]향사를 행할 것을 청한다[請行事]→⑩[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둔암	①[초헌관]진설한 것을 점검한다[點視陳設]→②[제집사·학생]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③[집례·알자·찬인·찬자]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④[학생]자리로 나아간다[就位]→⑤[삼헌관]중문 밖 자리에 나아간다[就門外位]→⑥[축·제집사]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재배한다[再拜]→⑦[축·제집사]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就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각자 자신의 위치로 간다[各就位]→⑧[축]신위의 독을 연다[開櫛]·보·궤의 뚜껑을 연다[開蓋]→⑨[삼헌관]절하는 자리에 나아간다[就拜位]→⑩[헌관·제집사]모두 재배한다[皆再拜]

2. 상향(上香)·전폐(奠幣)

상향(上香)·전폐(奠幣)는 초헌관에 신위 전에 나아가 향을 세 번 피우고 폐백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모두 초헌관이 행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초헌관은 먼저 손을 씻는 자리[盥洗位]로 가서 손을 씻고, 신위 전에 꿇어앉아 향을 피우고 이어서 폐백을 올린 다음 부복(俯伏)했다가 일어난다. 이때 사당에 정위(正位)와 배위(配位)가 함께 모셔져 있다면 정위에 먼저 상향·전폐를 행하고, 이어서 배위에 같은 방식으로 행한다. 만약에 정위와 종향위(從享位)가 모셔져 있다면 종향위에는 별도로 상향·전폐를 행하지 않는다.(도산서원·병산서원) 이 의식이 갖는 의미는 초헌관이 참석자를 대표하여 향을 피워 신의 강림을 청하고 폐백을 바침으로써 서원의 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상향과 전폐는 서원별 홀기에 따라 상향·전폐례를 다른 의식과 구분하여 표제어로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무성서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 예를 들면, 취위의 과정 속에 포함시켜서 기술한 경우도 있고(도산서원·필암서원·병산서원), 상향례만 표제어로 제시하고 전폐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으며(소수서원), 반대로 전폐례만 표제어로 제시하고 상향례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옥산서원·돈암서원⁴⁹⁾). 어차피 이 의식을 모두 초헌관이 행하기 때문에 초헌례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다(남계서원·도동서원).

참고로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진 이황은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홀기에서 상향례와 초헌례를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 중에 춘추향(春秋享)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의식과 절차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구홀기(舊笏記)에서는 상향(上香)을 하지마자 초헌(初獻)을 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너무 검소한(太儉) 것이다.⁵⁰⁾

상향·전폐와 관련하여 9개 서원의 홀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에서는 상향례만 행하고 전폐례는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도산서원에서 전폐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무진국감’ 이후의 일이며, 병산서원에서 전폐례를 행하지 않는 것도 아마 도산서원의 전례에 따른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② 다른 서원들에서는 상향·전폐를 마치면 초헌관이 강(降)·복

49) 참고로 돈암서원의 경우에는 홀기 전체가 모든 절차에 표제어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창홀(唱笏: 홀기의 내용을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할 때 “이제 전폐례를 행하겠습니다(於是行奠幣禮)”라는 방식으로 행례 과정에서 구분하도록 하였다. 이하 의식도 모두 동일하다.

50) 『退溪全書』續集卷8, 「安文成公享圖(配位同)」: 今此廟祭, 無大於春秋享, 固當備儀, 而舊笏記, 旋上香而旋初獻, 是爲太儉.

위(復位)를 하도록 하였는데,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강·복위를 하는 의식이 없다. 이는 이들 두 서원이 상향·전폐를 초헌례 안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초헌관이 초헌을 하는 과정 안에서 상향과 전폐를 행하기 때문에 복위를 했다가 다시 초헌례를 위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③ 다른 서원에서는 상향·전폐를 행한 다음 엎드렸다가 일어날 뿐 재배(再拜)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계서원에서만 재배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남계서원에서만 재배를 하도록 한 이유는 자상치 않다.

상향·전폐에 관한 9개 서원의 흘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표 9〉 9개 서원 행례: 상향(上香)·전폐(奠幣)

소수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北向跪)→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남계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北向跪)→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초헌관재배한다(再拜)→⑦(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
옥산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에신위전/궤)→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도산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에신위전/궤)→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삼헌관·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필암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궤)→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삼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⑦(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도동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궤)→③[초헌관분향)→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
병산	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에신위전/궤)→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⑤[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p>무성</p>	<p>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궀→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다 일어나다[俯伏·興]→⑥(배배위전 상향·전폐 같은 방식)→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p>돈암</p>	<p>①[초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궀→③[초헌관세 번 향을 피운다[三上香]→④[초헌관폐백을 바친다[奠幣]→⑤[초헌관엎드렸다다 일어나다[俯伏·興]→⑥(배위전 상향·전폐도 같은 방식)→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3. 초헌(初獻)

초헌관은 초헌례를 행하기 위해 제주(祭酒)가 담긴 술동이(樽)가 있는 준소(尊所 또는 樽所)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준(司尊 또는 司樽)이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본다. 그런 다음 초헌관은 신위 앞으로 가서 꿇어앉는다. 봉작(奉爵)이 초헌관에게 술잔을 주면, 초헌관은 술잔을 받아서 전작(奠爵)에게 주고, 전작은 술잔을 받아서 신위 앞에 올린다. 그런 다음 초헌관은 엎드렸다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다시 꿇어앉는다. 그러면 축(祝)이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 읽기가 끝나면 초헌관은 엎드렸다다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초헌례와 관련하여 9개 서원의 흥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① 초헌관이 초헌례를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로, 남계서원이나 도동서원에서는 준소에 가기 전에 술잔을 씻는 작세위(爵洗位)에 먼저 들러서 술잔을 씻는 것부터 지켜보도록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② 배위(配位)와 종향위(從享位)가 있는 서원에서 발견되는 향사례의 차이이다. 먼저 배위가 있는 서원에서는 모두 정위(正位)에 대한 헌작과 독축을 마친 다음 배위에도 같은 방식으로 헌작을 한다. 하지만 독축 여부는 서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수서원·필암서원·무성서원처럼 배위에도 각각 독축을 하는 서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배위에 대한 독축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처럼 종향위가 있는 경우에는 종향위에 대

해 삼헌을 다 행하지 않고 중헌례를 행할 때 분헌관(分獻官)이 한 잔만 올린다. ③ 초헌관이 초헌례를 마친 다음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의 서원 홀기에는 재배를 올리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남계서원 홀기에는 재배를 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이는 앞서 상향·전폐례에서도 마찬가지로였으며, 아래 이헌례와 중헌례에서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옥산서원에서는 보·궤의 뚜껑을 여는 이른바 ‘개개(開蓋)’를 축이 독축을 하기 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서원이 개개를 개독과 함께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절차이다.

초헌례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표 10〉 9개 서원 행례: 초헌(初獻)

소수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 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배위전 현작·독축도 같은 방식)→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남계	①[초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②[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⑥[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⑦[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⑧(배위전 현작도 같은 방식. 독축은 없음)→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옥산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 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집사보·궤의 뚜껑을 연다(開籠蓋)→⑥[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⑦[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도산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 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필암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 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⑦(배위전 현작·독축도 같은 방식)→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도동	①[초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②[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跪]→④[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⑥[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⑦[축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興·復位]→[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⑧(배위전 현작도 같은 방식. 독축은 없음)→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병산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무성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⑦(배위전 현작·독축도 같은 방식)→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돈암	①[초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초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③[초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④[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少退·跪]→⑤[축축문을 읽는다[讀祝]→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나다[俯伏·興]→⑦(배위전 현작도 같은 방식. 단, 독축은 없음)→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4. 아헌(亞獻)·종헌(終獻)

서원 향사례에서 헌관(獻官)은 초헌관·아헌관·종헌관 모두 세 명이다. 따라서 초헌관이 행하는 초헌례와 아헌관과 종헌관이 각각 행하는 아헌례와 종헌례는 모두 별개의 중요한 의식들이다. 하지만 아헌관과 종헌관의 의식절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로 합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아헌관(종헌관도 동일함)은 먼저 손을 씻는 관세위로 가서 손을 씻고, 준소로 가서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을 지켜본다.(남계서원과 도동서원은 초헌례와 마찬가지로 준소로 가기 전에 작세위에 먼저 가서 술잔 씻는 것을 지켜본다.) 그런 다음 신위 앞으로 가서 꿇어앉아 술잔으로 올린 다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만일 배위가 있다면, 정위에 대한 현작을 마친 뒤 차례대로 배위에 현작한다. 그리고 종향위가 있는 서원에서는 종헌관이 정위에 현작할

때 분헌관이 종향위에 헌작을 한다. 아헌례와 종헌례는 서원별로 특별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헌·종헌에 관한 9개 서원의 흘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표 11〉 9개 서원 행례: 아헌(亞獻)·종헌(終獻)

소수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종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남계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③[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④[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⑤[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아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종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③[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④[종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⑤[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종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⑦(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⑧[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옥산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①[종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종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종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종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종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종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도산	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꿇어앉는다(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p>①[중헌관·분헌관⁵¹]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중헌관·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중헌관·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꿨어앉는다[跪]→④[중헌관·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중헌관·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중헌관·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필암	<p>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아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꿨어앉는다[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배위전 현좌도 같은 방식]→⑦[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p>①[중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중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중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꿨어앉는다[跪]→④[중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중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배위전 현좌도 같은 방식]→⑦[중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⁵²]</p>
도동	<p>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③[아헌관]예정위준소→④[아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꿨어앉는다[跪]→⑤[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⑦[배위전 현좌도 같은 방식]→⑧[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p>①[중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중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③[중헌관]예정위준소→④[중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꿨어앉는다[跪]→⑤[중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중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⑦[배위전 현좌도 같은 방식]→⑧[중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⑨[삼헌관]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p>
병산	<p>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꿨어앉는다[跪]→④[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p>①[중헌관·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중헌관·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중헌관·분헌관]신위 앞에 이른다[詣神位前/꿨어앉는다[跪]→④[중헌관·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⑤[중헌관·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⑥[중헌관·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무성	<p>①[아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③[아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④[아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꿨어앉는다[跪]→⑤[아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아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⑦[배위전 현좌도 같은 방식]→⑧[아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p> <p>①[중헌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중헌관]술잔을 씻는 곳에 이른다[詣爵洗位]→③[중헌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④[중헌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꿨어앉는다[跪]→⑤[중헌관]잔을 바친다[獻爵]→⑥[중헌관]엎드렸다가 일어난다[俯伏·興]→⑦[배위전 현좌도 같은 방식]→⑧[중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⑨[삼헌관]재배</p>

돈암	①[아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아현관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③[아현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跪]→④[아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⑤[아현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현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①[중현관손 씻는 곳에 나아간다[詣盥洗位]/손을 씻는다[盥洗]→②[중현관예정위준소→③[중현관정위 앞에 이른다[詣正位前]/꿇어앉는다[跪]→④[중현관잔을 바친다[獻爵]→⑤[중현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⑥(배위전 헌작도 같은 방식)→⑦[아현관 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

5. 음복(飮福)·수조(受胙)

인간이 정성껏 제수를 장만한 뒤에 향을 피워 신을 청하고 폐백을 바친 다음 석 잔의 술을 올림으로써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제향은 끝난 것이다. 이제 신이 인간의 정성에 감격하여 복을 내릴 차례이다. 음복(飮福)과 수조(受胙)는 바로 인간이 신이 주시는 복주(福酒)를 받아 마시고 신이 드시고 남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향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의식이다. 음복·수조 역시 초현관이 대표로 행하는데, 그 의식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현관은 음복하는 자리(飮福位)로 가서 꿇어앉아 복주를 마시고, 조육을 받는다. 그런 다음 신위에 감사의 재배를 올린다.

음복·수조와 관련하여 9개 서원의 흘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① 초현관이 음복하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것이다. 즉, 서원에 따라 초현관이 음복위에 나아간 뒤에 집사자(또는 축)가 복주를 따르는 경우도 있고[남계·옥산·도동·무성], 집사자(또는 축)가 복주를 따른 뒤에 초현관이 음복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소수·도산·필암·병산·돈암]. ② 어떤 술을 복주로 사용하는냐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대부

51) 분현관은 종향위(從享位)에 잔을 올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종향위를 모시는 곳에서는 종헌(終獻)을 할 때 종헌관은 정위에 헌작을 하고, 분현관은 배향위에 헌작을 한다.

52) 1975년 필암서원 흘기에서는 삼헌관이 재배하는 것이 없었으나, 2010년 흘기에는 삼헌관이 재배하도록 수정되었다.

분의 서원에서는 (정위의) 준소에 가서 복주로 사용할 술을 새로 따르는데, 남계서원에서는 정위와 배위 각각에 초헌으로 올렸던 술을 복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도동서원에서는 중헌관이 (정위에?) 올렸던 술을 복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③ 조육으로 어떤 고기를 사용하느냐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정위 한 분에게 올렸던 조육을 조금 떼내어 사용하는 데 비해, 남계서원에서는 정위와 배위 각각에 올렸던 조육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④ 복주를 마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복주가 담긴 잔을 받으면 모두 마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복주가 담긴 잔을 받고는 입술만 대는 정도로 마시고, 조육을 받은 뒤에 복주가 담긴 잔을 비우도록 하였다. ⑤ 초헌관이 음복위에 가서 꿏어앉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해 꿏어앉는 데 비해,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해 서 있다가 집사자가 복주를 잔에 따른 다음 꿏어앉는다고 하였다. 특히 남계서원에서는 이 과정에서 재배를 하고 꿏어앉도록 하였다. 이 절차와 관련하여 특히 색다른 것은 나머지 서원에서는 초헌관이 음복위에서 서쪽을 향해 꿏어앉도록 한 데 비해 도산서원에 서만 북쪽을 향해 꿏어앉도록 했다는 점이다. ⑥ 음복·수조가 끝난 다음 올리는 재배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다. 첫째는 음복·수조가 끝나고 다음 초헌관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다음 재배를 올리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소수서원처럼 삼헌관 이하 모두가 함께 재배를 올리는 경우와 옥산·필암·병산·무성·돈암 서원처럼 삼헌관만 함께 재배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둘째는 음복·수조가 끝난 다음 초헌관 먼저 재배를 올리고 이후에 아헌관 이하 모두가 재배를 올리는 경우이다. 여기에도 남계서원과 도동서원처럼 초헌관이 재배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와 도산서원처럼 자리로 돌아온 초헌관이 먼저 재배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

음복·수조에 관한 9개 서원의 흘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표 12〉 9개 서원 행례: 음복(飲福)·수조(受胙)

소수	①[집사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②[집사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③[집사 조육을 떼낸다[減俎肉]→④[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꿇어 앉는다[西向跪]→⑤[초헌관복주를 마신다[飲福]→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⑨[헌관 이하 제집사]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남계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선다[西向立]→②[집사]각 위에 첫 번째 올린 잔의 술을 따른다[酌各位初獻之酒]→③[초헌관]재배하고 꿇어앉는다[再拜·跪]→④[초헌관]복주를 조금만 입에 댄다[啐酒]→⑤[집사]각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各位前俎肉]→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⑧[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⑩[아헌관 이하 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
옥산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②[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③[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④[축신]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神位前俎肉]→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도산	①[집사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집사]조육을 떼낸다[減俎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北向跪]→④[초헌관]복주를 마신다[飲福]→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초헌관]재배한다[再拜]→⑨[헌관 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
필암	①[봉작]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축]정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正位前俎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④[초헌관]복주를 마신다[飲福]→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도동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선다[西向立]→②[집사]마지막 올린 잔의 술을 따른다[酌終獻酒 ⁵³⁾ →③[초헌관]꿇어앉는다[跪]→④[초헌관]복주를 조금만 입에 댄다[啐酒]→⑤[집사]조육을 떼낸다[減俎肉]→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⑧[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재배한다[再拜]→⑨[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⑩[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초헌관은 절하지 않는다)
병산	①[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②[축]조육을 떼낸다[減俎肉]→③[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④[초헌관]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⑤[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⑥[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胙]→⑦[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⑧[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⑨[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무성	①[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②[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③[장찬신위 앞의 조육을 떼낸다[減神位前俎肉]→④[초헌관복주를 조금만 입에 댄다[啐爵]→⑤[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胾]→⑥[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⑦[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⑧[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돈암	①[축]술동이 있는 곳에 이른다[詣尊所]/복주를 따른다[酌福酒]→[축]정위의 조육을 떼낸다[減正位俎肉]→[초헌관음복하는 자리에 이른다[詣飲福位]/서쪽을 향해 꿇어앉는다[西向跪]→[초헌관복주를 모두 마신다[飲卒爵]→[초헌관조육을 받는다[受胾]→[초헌관엎드렸다 일어났다[俯伏·興]→[초헌관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6. 철변두(撤饗豆)·망예(望瘞)

이상의 절차를 통해 엄격한 의미의 향사례는 모두 끝났다고 볼 수 있으며, 철변두와 망예는 의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절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변두는 제사음식을 진설했던 제기를 치우는 것이고, 망예는 신위에 고했던 축문과 신위에 바쳤던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절차이다. 9개 서원 가운데는 홀기에 철변두(撤饗豆)와 망예(望瘞)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교·검토의 편의를 위해 통합해서 비교하였다.

먼저, 철변두는 표현 그대로라면 제기에 올려진 제사음식을 모두 치우고 제기도 정리해야 하겠으나 약식으로 대신한다. 즉, 축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변과 두의 위치를 약간 옮기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축이 이렇게 변과 두의 위치를 약간 옮기는 것으로 철변두를 행하고 나면 제사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함께 재배를 올린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병산서원에서는 이렇게 모두가 재배를 올리고 나면 축이 신위의 독을 다시 담은 폐독(閉饋)을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서원의 경우에는 망예까지 끝나고 모두가 나갈 때 폐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3) 도동서원에서는 종헌주를 음복주로 사용함.

다음으로 망예례이다. 초헌관은 사당의 서쪽에 마련된 망예위(望壘位)에 나아가 축이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것을 바라본다. 물론,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처럼 폐백을 올리지 않는 서원에서는 축문만 묻게 되며, 필암서원의 경우에는 축문을 불에 태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알자(謁者) 또는 찬인(贊引) 등이 모든 예식이 끝났음을 초헌관에게 고하고, 삼헌관 이하 모든 참가자는 차례로 사당을 나가게 된다.

철변두·망예에 관한 9개 서원의 홀기 내용 비교는 아래 도표에 정리하였다.

〈표 13〉 9개 서원 행례: 철변두(撤籩豆)·망예(望壘)

소수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壘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판을 취한다(取祝板/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壘坎)→④[알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남계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축]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③[초헌관 이하]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축]취폐·축→②[축]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가간다(就望壘位)→③[축]구덩이에 묻는다(壘坎)→④[찬인]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옥산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헌관·학생]재배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壘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판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壘坎)→④[알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도산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재위자]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壘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판을 취한다(取祝板/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壘坎)
필암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헌관·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壘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판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壘坎)→④[찬인]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도동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籩豆)→②[축]내려가 자리로 돌아간다(降·復位)→③[삼헌관]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壘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판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壘坎)→④[찬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병산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籓豆)→②[재위자·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③[축]신위의 독을 닫는다[閉(櫛)]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座位)/북쪽을 향해 꿇어앉는다[北向(跪)→②[축]축판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알자]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무성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籓豆)→②[학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座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축판과 폐비를 취한다[取(祝)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④[축]예식이 끝났음을 고한다[告禮(畢)]
돈암	①[축]변두를 거둔다[撤(籓豆)→②[헌관·제생]모두 재배한다[皆再拜]→③[축]위판을 독에 넣는다[納(櫛)] ①[초헌관]예감을 바라보는 자리에 이른다[詣望(座位)/북쪽을 향해 선다[北向(立)→②[축]정위의 축판과 배위의 폐비를 취한다[取(正位)祝·配位(幣/내려간다[降]→③[축]구덩이에 묻는다[瘞(坎)]

V. 나오는 말

중국 당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발전해 온 서원은 북송대에 향사의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서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남송대에 이르러서 서원의 향사는 독자적인 위상을 갖게 된다. 서원의 향사는 국학이나 주현의 학에서 봉행하는 석전을 기준으로 삼아 모방을 하면서도, 그 대상과 규모 그리고 의식절차 등에서는 용쇄의 차등을 견지한다. 특히 대상을 선정할 때는 이른바 신유학의 도통의식을 강력하게 반영하는가 하면, 의식절차에서는 훨씬 간소화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서원 향사례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1543년 창건한 백운동서원이며, 이 서원은 이황의 주선으로 조선시대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 된다. 이러한 서원 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황은 주세붕이 제정한 백운동서원의 향사례에 대폭 수정을 가함으로써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특히 제품의 진설과 의절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표준을 제시하는 등 서원 향사례의 표준을 제공했다. 이후 조선시대 서원 향사례는 이러한 이황의 결과물을 기준으로 삼아 계승과 비판 그리고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갔다.

본 연구는 한국의 9개 서원(소수서원·남계서원·옥산서원·도산서원·필암서원·도동서원·병산서원·무성서원·돈암서원)의 향사례 활기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서원 간에 존재하는 향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로써 한국 서원 향사례의 구조와 전승 현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한국의 서원은 향사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향교의 석전을 참고하면서도 용쇄의 차등을 견지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향사의 기일은 향교의 춘추 석전이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에 거행되는 것을 감안해 서원의 향사는 대체로 중춘과 중추의 중정일에 진행했다. 제품 진설과 관련해서도 제기의 개수와 그에 연동하는 제수의 품목을 향교보다 간소한 형태로 조정하였고, 특히 생의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폐를 진설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공통적 기초 위에서도 한국의 9개 서원은 서원별로 그 의식절차에 다양한 차별성을 만들어 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항목들의 경우 9개 서원 간에도 차이가 있고, 이외의 서원들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서원의 향사례를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여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립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서원 향사례가 대동(大同)을 유지하면서도 소이(小異) 또한 존속케 했던 것이 이를 대변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은 서원의 향사례를 넘어 조선시대의 서원문화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 갔을 것이라는 증거이다.

【참고문헌】

1. 사료

『禮記』, 『周禮』, 『左傳』, 『後漢書』, 『舊唐書』, 『新唐書』, 『大唐開元禮』,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序例』

朱 熹, 『朱子語類』

朱 熹, 『朱子全書』

李 滉, 『退溪全書』

鄭 述, 『寒岡集』

李 筮, 『東湖集』

朴 綱, 『无悶堂集』

李 畚, 『睡谷集』

『竹溪志』

紹修書院所藏, 『紹修書院誌』, 2007.

玉山書院所藏, 『玉山書院笏記帖』

陶山書院所藏, 『陶山書院儀節』

遯巖書院, 『遯巖書院誌』, 1994.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소수서원·도산서원』(2011) ; 『서원향사- 병산서원·옥산서원』(2012) ; 『서원향사- 돈암서원·노강서원』(2012) ;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2013) ; 『서원향사- 필암서원·무성서원』(2013).

國史編纂委員會,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I. 紹修書院資料, 199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玉山書院誌』, 嶺南大學校出版部, 1993.

영남문화연구소, 『紹修書院誌』, 2007.

한국국학진흥원, 古文書資料(資料番號: 國學資料 KS0069-2-83-00007)

邊時淵 編, 『筆巖書院誌』, 文苑編刊會, 1975.

尹熙勉, 『朝鮮時代 書院의 祭禮와 位次』, 『진단학보』 90, 2000.

이수환, 『星州 迎鳳書院 研究』, 『역사교육논집』 54, 2015.

鄭萬祚, 『退溪 李滉의 書院論』,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한재훈,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柳 肃, 「儒家祭祀文化与东亚书院建筑的仪式空间」, 『湖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7年 第6期

朱汉民, 「南宋书院的学祠与学统」, 『湖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5年 第2期.

Abstract

A Study on Sacrificial Rite of Seo-won in the Joseon Dynasty

Han, Jae-hoon*

Sacrificial rite of Seo-won base on Seok-jeon(釋奠) was held in the government school such as Hyang-gyo and imitate it, but drew a sharp distinction about the subject, the scale and the ritual. Especially, it strongly reflected the sense of authenticity lineage(道統) when select the subject, but it adopted relatively small scale and simple ritual. These characteristics of sacrificial rite of Seo-won outstandingly appeared in the Joseon Dynasty.

Toe-gye Yi-hwang laid the groundwork for sacrificial rite of Seo-won in the Joseon Dynasty by making extensive retouching the sacrificial rite of Baekwoondong-seo-won was established by Sin-jae Joo-seboong. Since then, acrificial Rite of Seo-won in the Joseon Dynasty has developed through inheritance and criticism about this Toe-gye's work.

Joseon Dynasty Seo-won was under tension and worry to set own stature in the middle of Hyang-gyo(鄉校) which is the government school and Hyang-sa(鄉祠) which is the town shrine. And it could form unique ritual style of sacrificial rite of Joseon Dynasty Seo-won through these tension and worry.

This study is designed in order to identify empirically that sacrificial rite of Seo-won how to development in Joseon Dynasty by comparison the Nine representative Seo-won in Joseon Dynasty: So-su-seo-won(紹修書院), Nam-gye-

* Sungkongho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orary Professor
/ kjydist@hanmail.net

seo-won(澗溪書院), Ok-san-seo-won(玉山書院), Do-san-seo-won(陶山書院), Pil-Am-seo-won(筆巖書院), Do-dong-seo-won(道東書院), Byeong-san-seo-won(屏山書院), Mu-seong-seo-won(武城書院), Don-am-seo-won(遯巖書院).

Specific rituals are difference between the Nine Seo-won, if it includes the other Seo-wons, the difference is more. However the existence of this difference itself shows that various academic communities autonomously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distress and debate. Sacrificial rite of Seo-won in Joseon Dynasty maintained general similarity, but also maintained negligible differences, it represents diversity of Seo-won culture in in Joseon Dynasty.

Key word : Seo-won, Korea' s nine Seo-won, Sacrificial Rite, Hol-gi, Ritual.

논문 투고일: 2023. 11. 14 심사 완료일: 2023. 12. 05 게재 확정일: 2023. 12. 06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김 무 진*

- I. 들어가는 말
- II.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와 제향의례
- III. 서원의 역사적 성격
- IV.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적 의미
- V. 서원 제향의례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VI. 나오는 말

【국문초록】

서원은 조선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념인 유학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그 가치를 재생산하고 그 가치가 지향하는 질서를 확장하는 사회의 단위 조직 가운데 하나이었다. 서원은 유학을 전수하고 학습하는 교육기구이었으며 아울러 그 가치를 앞서 궁구하고 실천한 인물들을 제향하는 기구이었다.

서원의 제향 의례는 국가의 공적 의례인 향교의 석전처럼 학교 의례라는 성격을 지니면서 제례가 사회 일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유교적 가치체계의 구현으로서의 의례이었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서원이 가지는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원에 따라 일부 행례를 조정하면서 준행되었다. 아울러 서원에서는 향촌사회의 각종의 의례가 제향의례와 결합하여 준행되든지 아니면 별개의 의례로 서원의 의례로 구성되었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문화 구현을 통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으며 그것은 단순한 의례의 전승만이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과 기능의 전승을 의미한다. 또한, 서원 제향의례에 관한 기록물을 생성하여 보존함으로써 원형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 誠泉역사문화연구소

주제어 : 유학, 선현봉사, 제향의례, 공공성, 문화전승

I. 들어가는 말

서원은 조선사회의 보편적 가치이념인 유학을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그 가치를 재생산하고 그 가치가 지향하는 질서를 확장하는 사회의 단위 조직 가운데 하나이었다. 서원은 유학을 전수하고 학습하는 교육기구이었으며 아울러 그 가치를 앞서 궁구하고 실천한 인물들을 제향하는 기구이었다.

조선사회에서 군현마다 1邑1校의 원칙에 따라 향교가 세워져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교육기구인 서원이 건립되었다. 이 시기 교육수요의 증가에는 크게 보아 몇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조선국가의 중앙집권적 관료제 운영의 필수요소인 관료의 확보이었다. 이들 관료는 유학을 수업하였고 그를 통하여 통치행정에 쓰일수 있는 행정능력을 가졌으며 公論의 정치를 견인할 지식을 갖춘 자들이었다. 종전보다 높아진 생산력을 바탕으로 자영 내지 중소지주로 성장할 위치에 다다른 양인층은 점차 열리고 확대되는 入仕의 경로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았다. 이들은 조선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동의하고 그 가치에 기반한 지식을 수학한 자들이었다. 이러한 가치의 수학과 전승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이었다.

두 번째 교육수요 증가의 배경은 성리학 연구의 확산이었다. 이들이 수학할 家塾 이상의 교육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학문연구의 진전에 따라 선진적 인물들의 학문성과를 학습하고 전승하는 학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조선사회의 교육기구는 설립주체, 규모, 교과과정, 학습내용 등이 매우 다양하였다.

셋째는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의 확대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야하는 敎化의 중심기구가 요구되었다. 여말선초 이래의 신진 유학자들은 중앙의 관료 예비층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향촌사회의 지식인층으

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향론을 이끌며 향촌사회를 유교적 가치로 질서화하는 주도세력이었다. 교육과 교화라는 그 두 가지 문제의 접점이 학교기구의 확대이었다. 교육대상으로 鄉曲賤庶나 小民이 거론되는 이유이었다. 그러한 교육기구의 공급은 국가만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는 가치관의 보급과 그에 따른 행위규범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 행위규범은 곧 유교적 의례이었으며 그것은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보급되었다. 국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야할 의례의 전범인 祀典을 정비하였다. 개인 차원의 의례는 가례에 집중되었다. 조선전기에는 특히 혼례와 상·제례를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새롭게 조정하고 정리하였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의례 규범인 「五禮儀」의 향교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家廟祭와 함께 향촌사회의 중요한 제례로 자리 잡아갔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서원향사의 기본 자료인 「笏記」와 각종 의례가 검토되었다. 그러한 연구는 서원의 제향의례를 다룬 것들과 그 외의 일반의례에 관하여 다룬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그를 바탕으로 서원 향사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개관한 글들이 제출되었다.¹⁾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

1) A. 제향의례에 관한 연구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 제례와 位次」, 『진단학보』 90, 2000 ; 김미영,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2013 ;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韓國書院學報』 2, 2013 ; 한재훈, 「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대서원 향사의례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2017 ;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1, 2020.

B. 일반적인 서원의례

김자운,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 『民族文化論叢』 76, 2020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0, 2020 ; 한재훈,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 강학례, 향사례 그리고 향음주례」, 『韓國書院學報』 11, 2020.

를 바탕으로 서원을 둘러싼 관계망을 확인하고 서원이 갖는 공공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원 제향의례의 특징과 그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른 의례와의 결합 양상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살피고자 한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행된 흔적의 일부를 확인하여 약간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그를 바탕으로 서원 제향의례가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검토코자 한다.

II.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와 제향의례

유교에서의 의례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 상호간에 지키는 행위규범이었다. 그 의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례가 적용되는 절차나 사건의 성격 그리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상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관·혼·상·제례에서 가족이나 친족과 같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의 위상이나 혹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적용하는 의례의 내용이 달리 나타났다.

또한 의례를 준용하는 당사자들의 다양한 상태의 관계를 전제로 하였다. 군신관계, 부부관계, 장유관계, 사제관계 등 다양하였다. 흔히 말하는 삼강오륜이라는 도덕적 가치의 기준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례를 결정하였다. 때로는 살아있는 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과의 사이도 규정하였다. 喪禮는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제례는 또 다른 관계의 확인이었다. 제례 역시 망자와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산자와 죽은 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이었다. 제례는 군신관계, 사제관계, 가족관계 등 생전의 관계를 본질로 하는 그 의례의 변형이었다. 상례에 참여하였

C. 자료 및 종합적 개관

李東壽編, 『韓國의 書院 儀節』, 世界文化遺產 韓國의書院協議會, 2013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2011-20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2021.

던 일부의 사람들이 제례에 참여하였다.

국가적 차원의 유교적 가치규범의 확산과 개인의 유교가치관의 정립은 상호연관성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국조오례의』와 같은 국가적 사전에서 상제례를 규정하고 개인 차원에서 상제례 준용을 권장하는 것이 다른 지향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歷代始祖 제향은 그러한 점점을 보여준다. 선초부터 국가 사전의 정비 과정에서 始祖廟 제사가 거론되고 조정되었다. 시조묘는 追遠報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실현이고, 역사계승과 정통성을 천명하는 의미이었다. 그러한 시조묘 봉사는 법령으로 뒷받침되었다. 시조묘 제사는 국가적 사전에 中祀로 규정되면서 公祭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는데 다른한편 그것은 家廟祭라는 사적인 제사 곧 私祭의 보다 넓은 실행에 의해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둘은 모두 유교적 가치관의 실천인 의례이고 좁혀서 말하자면 그 중에 제례이었다. 국가의 제사가 대사·중사·소사로 나뉘어 규정되었다면 사적인 제사는 가묘제의 운영에 집중되어 실행되었다. 사립 시설인 서원에서 행하는 서원의 제향 의례는 국가의 공적 의례인 향교의 석전처럼 학교 의례라는 동일한 성격을 지니면서 제례가 사회 일반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²⁾

1. 국가 祀典의 정비와 公祭

조선전기에 국가는 유교적 질서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개인은 사회적 신분과 처지에 따라 그에 반응하기도 하였다. 국가의 유교화는 통치의 측면에서는 禮治의 문제이었다. 조선국가가 지향하는 유교가치의 실현이 곧 예치이었고 그에 따른 국가와 개인의 행위규범을 고민해야 했다. 유교적 가치의 행위규범은 바로 禮이었기에 국가적 차원의 의례규범이 논의되고 정리되어야 했다. 유교라는 사회 운영의 원리가 지향하는 사회에서 사회의 여

2)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12, 2001. 50쪽. 이 글에서는 서원의 향사가 국가의례인 석전과 민간의례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진술하였다.

러 관계를 유지하는 질서는 궁극적으로 유교가 지향하는 가치 위에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할 때에 각각의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규범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과제로 부상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왕실의 제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제례를 정비하여 國家祀典을 마련하였다. 오례를 정리하고 그 실행에 따른 여러 行禮儀를 규정하였다. 1411년(태종 11)에 제향 때의 재계(祭享齋戒)를 논의하였는데, 이 때에 종묘 제사의 祭儀를 정하였다.³⁾ 이와 같은 일은 각종 의례를 실행해야 하였던 선초 이래 지속적인 과제가 되었다. 그 이듬해에 「諸祀齋戒法」 등 여러 종류의 祀儀를 정리하고,⁴⁾ 1448년(세종 30)에는 「遣官行禮儀」를 정비하였다.⁵⁾ 1460년(세조 6)에는 「親祭儀」를 마련하였다.⁶⁾ 그 과정에서 오례의가 정비되어 「國朝五禮儀」로 『실록』에 수록되고 후에 독립적으로 『국조오례의』로 편찬되었다.⁷⁾ 『國朝五禮儀序例』, 『國朝五禮儀考異』 등이 편찬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국조오례의』를 보완하는 典禮書들이 속간되었다. 『國朝續五禮儀』(1744, 영조 20), 『국조속오례의서례』(1744, 영조 20), 『國朝續五禮儀

3)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11일.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9월 27일.

4)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1월 29일.

5)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3월 18일.

6) 『세조실록』 22권, 세조 6년 10월 17일.

7) 姜制勳, 「朝鮮初期 國家儀禮 정비의 지향과 원칙-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8, 2015. 144쪽에는 조선 전시기 의례정비의 큰 열개를 제시하였다. 조선국가의 예치와 의례의 정비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예제의 정비에 주목하였으며 그에 관한 법령의 정비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깊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국가 의례에 관한 연구는 강재훈, 「조선 세종조의 國家禮 정비와 五禮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2021, 주 6)과 7)에 제시한 연구논저들과 다음의 저서들이 참고 된다.

이범직,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1991 ; 한형주,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 일조각, 2002 ; 김해영, 『朝鮮初期 祭祀典禮 研究』, 집문당, 2003 ; 李範稷, 『朝鮮時代 禮學研究』, 국학자료원, 2004 ; 이욱, 『조선시대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 한형주의,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補』(1751, 영조 27), 『국조속오례의보서례』 (1751, 영조 27), 『國朝喪禮補編』 (영조대)이 간행되었다. 柳義養(1718, 숙종 44-미상)은 왕명으로 『春官通考』 (1788, 정조 12)를 편찬하였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국가체제가 제국으로 바뀐 것에 맞추어 『大韓禮典』이 편찬되었다.

또한 제례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제례 준용의 대상으로 삼았다. 제사의 예를 구분하여 天神에게는 ‘祀’라 하고, 地祇에게는 ‘祭’라 하고, 人鬼에게는 ‘享’이라 하고, 文宣王에게는 ‘釋奠’이라 하였다.⁸⁾

제사는 대·중·소사로 나누었는데 社稷, 宗廟, 永寧殿의 제사가 대사이었다. 중사는 風雲雷雨와 嶽·海·瀆, 先農, 先蠶, 雩祀와 문선왕, 역대시조의 제사이었다. 소사에는 靈星, 老人星, 馬祖, 名山·大川, 司寒, 先牧, 馬社, 馬步, 禱祭, 祭祭, 醕祭, 七祀, 蠶祭, 厲祭가 해당되었다. 그리고 몇 祈告와 왕실 관련 몇 俗祭 그리고 주현의 사직, 문선왕, 포제, 여제, 영제가 해당되었다.⁹⁾

위에서 보듯이 공자에 대한 제사는 성균관의 중사와 주현의 소사가 있었다. 『경국대전』에도 그와 같은 것이 규정되었다.¹⁰⁾ 이 주현 곧 향교의 석전이 서원 향사의 기준이 되었다. 서원은 이보다 격을 낮추어 제를 지내는 것이었다.

2. 『주자가례』의 보급과 私祭

1) 예제의 준행과 윤리서의 보급

『周禮』는 통치의 틀을 세우는 기준과 전범이었고 일상의 생활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규범은 『주자가례』를 준거로

8)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辨祀.

9)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辨祀.

10) 『經國大典』 禮典「祭禮」, “凡祭祀日期, 本曹先期三朔啓聞, 移文京·外各衙門. 中略. 文宣王, 春·秋仲月上丁. 文宣王朔望祭, 竝以略禮行”.

삼았다.¹¹⁾

『주자가례』는 조선전기에 넓게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鄭述는 1611년(광해군 3) 『五先生禮說分類』의 서문을 쓰면서 덧붙이기를 “『가례』로 말하면 이미 당대에 성행하는 책으로, 어느 집이든 없는 집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익히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라 하였다.¹²⁾ 정구는 예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각종의 예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주자가례』를 제외한 기존의 禮說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물론 예제는 각종의 예설을 이해한다고 정립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조선국가는 가장 중심되는 법전에서도 예치를 법으로 뒷받침하였다. 『경국대전』의 「예전」을 정비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각종의 의례와 관련된 교령을 반포하였다. 사적인 가례의 혼례나 상제례가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점차 내용이 증보되는 교령들에는 혼례, 상례, 제례 등에 관한 조항 등이 지속적으로 등재되었다.

관혼상제가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준수해야 하는 법의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교화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인 ‘위에서 솔선수범하고 그를 본받아 따라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예치의 현실에서의 모습이었다. 국가는 한편에서는 지향하는 가치관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치관에 반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보면 예치를 德政의 실현이라고 하지만 刑政에 의한 강제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한 가치를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들을 褒獎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그를

11) 임민혁, 「朱子家禮를 통해 본 朝鮮의 禮治」, 『정신문화연구』 80(23권 3호), 2000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 혜안, 2005.

12) 『寒岡集』 제10권 序, 〈五先生禮說分類序〉, “若家禮之書. 夫既盛行於當世矣. 家無不有. 人無不講.”

견인하고 권장하였다. 그러한 가치관을 지킨 절의자, 혹은 선정신, 선현들을 포장하였으며 때로는 정표정책을 펼쳐 지향하는 가치를 확실하게 알렸다. 한 편으로는 각종의 신앙체계 등이 음사로 규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서 나타났던 신앙 행위를 정비된 국가의 사전 체계 안에 수용하기도 하였다.¹³⁾ 이러한 유교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예서를 보급하였다. 1346년(충목왕 2)에 權溥가 편찬한 『孝行錄』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최초의 윤리서이었다.¹⁴⁾ 1405년(태종 5)에 권근은 계림에서 구한 『효행록』을 개정하였다.¹⁵⁾

1434(세종 16)에는 이 『효행록』을 대체하는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고, 이후 이 책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윤리서가 되었다. 『효행록』에 담긴 유교 윤리가 敬順論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족윤리였다면 『삼강행실도』에는 『효행록』에는 담기지 않았던 節義라는 가치가 강조되었다. 이렇게 시기적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윤리서가 편찬되었는데 1465년(세조 11)에는 『五倫錄』을 찬집하였다.¹⁶⁾ 『삼강행실도』에 실리지 않았던 ‘長幼有序’와 ‘朋友有信’의 두 가지 덕목을 담고 있는 『二倫行實圖』가 편찬된 것은 1517년(중종 12)이었다.¹⁷⁾

위와 같은 윤리서들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필요한 의례서가 간행되었다. 이언적의 『奉先雜儀』도 이러한 사정에서 만든 제례에 관한 책으로서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의 예설을 모으고 우리나라의 속례를 창작하여 편찬해서 보급하려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가모제가 가장 보편적인 제례로 강조되고 시행을 독려하고 있을 때에 그 제례에 관한 각종 설과 우리의 풍속 등을 정리하여 의식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었다.

13) 韓治功, 「朝鮮王朝 初期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祀祭問題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3, 1976.

14) 김훈식, 「朝鮮前期 倫理書 보급의 변화」, 『코기토 81』, 2017 ; 『효종실록』 20권, 효종 9년 12월 25일, 「完南府院君 李厚源上劄」.

15) 『陽村先生文集』 卷20, 序類, 〈孝行錄後序〉.

16)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7월 25일.

17) 이상 윤리서에 대해서는 金勳植, 「『三綱行實圖』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1998 ; 김훈식, 앞의 논문(2017) 등을 참고하였다.

2) 가묘제의 시행

조선초에 삼국 및 고려의 역대시조를 봉사하는 始祖廟 건립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그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어 갔다. 한편으로 개인에게는 가묘를 건립하여 祖先奉祀토록 독려하였다. 가묘제는 私祭禮이었다.¹⁸⁾ 그것은 고려 이래의 가묘제 시행의 계승이었다.¹⁹⁾

고려의 鄭公權(1333~1382)이 관직에 있을 때에 “가묘제가 폐지되었으나 자신은 제사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고려말 가묘제는 시행되다가 일시 정지한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1390년(공양왕 2)에 가묘를 세워 관품에 따라 봉사하는 대수를 정하여 삭망에 반드시 제물을 올리고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고하도록 하였다. 四仲에 해당하는 달에는 반드시 향식하고 햇곡식을 반드시 바치며 기일에 필히 제사하도록 하였다. 시행 일자까지 규정한 매우 상세한 결정 사항이었다. 이듬해에는 제사의 범위를 증조부모의 기일에까지 확대하였다.²¹⁾

정몽주가 처음으로 양반들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를 세워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고 하는데²²⁾ 앞서의 정공권의 사례나 『주자가례』를 따랐다고 하는 尹龜生(1317~1381)의 사례²³⁾ 등으로 보아 고려말 가묘제가 일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준 역시 가묘를 두도록 건의하였다.²⁴⁾

18) 『春官通考』 卷45, 吉禮 「私祭禮」.

19) 朱雄英, 「家廟의 設立背景과 그 機能—麗末鮮初의 社會變化를 중심으로—」, 『歷史教育論集』 7, 1985. 고려말 가묘 설립의 배경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고려말 가묘 건립의 구체적인 사례 등은 소개되지 않았다.

20) 『高麗史』 卷106, 列傳19 諸臣, 「鄭堦 鄭公權」.

21) 『高麗史』 卷13, 志17 禮五, 「吉禮小祀」; 『高麗史』 卷64, 志18, 禮 六, 凶禮, 「百官忌暇」.

22) 『高麗史』 卷117, 列傳30, 諸臣 「鄭夢周」.

23) 『高麗史』 卷121, 列傳34, 孝友 「尹龜生」.

24) 『高麗史』 卷108, 列傳31, 諸臣 「趙浚」.

가묘제는 ‘報本追遠之意’를 표방하고 있기에 신분을 가릴 일이 아니었지만 조선사회에서의 가묘제의 시행은 왕실이나 공신가로부터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은 왕실의 왕후 등의 친정의 가묘제의 참석에 따른 奠物의 관급을 규정하였다. 가묘의 봉사 대상자가 代盡일 경우 별도의 실을 세워 제사토록 하였다.²⁵⁾ 조선전기 가묘제가 보급되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대수가 다하였더라도 神主를 옮기지 않고 한 개의 室을 별도로 세운다”는 공신에 대한 불천위 규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⁶⁾

선조 士와 大夫에 따라 조선봉사의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양반층에 있어서 는 종법적 질서 수립의 문제이었다. 또한 봉사 대상의 한정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사대부의 두 아내 이상은 모두 신주를 사당에 함께 봉안하여 제사지낸다.’라는 규정은 처첩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가족 구성의 원칙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²⁷⁾

다시 말하자면 가묘제의 문제는 집안에 사당을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넘어서 처첩제와 같은 가족 구성원칙의 문제, 혼인 이후 사는 곳을 선택하는 거주율의 문제, 조선 봉사를 하면서 소종과 대종 그리고 친족 범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종전의 여묘제 시행의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1392년(태조 1)의 도평의사사의 22개 조목의 상언에도 들어있었으나 조선 전기 내내 가묘제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제안될 정도로 실행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이었다. 가묘 건립을 법으로 정하고 신분에 따른 시행 기한을 정하기도 하는 등 강제력을 발동하였지만 뜻과 같지 않았다.²⁸⁾ 가묘 건립이 강

25) 『經國大典』禮典「致祭」, “宗廟各室王后考妣忌日·四仲月·俗節家廟祭, 官給奠物. 俗節, 則墓所同. ○ 奉祀者代盡, 則別立一室祭之.

26) 『經國大典』禮典「奉祀」, “始爲功臣者, 代雖盡, 不遷, 別立一室.

27) 『經國大典』禮典「奉祀」, “士大夫二妻以上, 並祔” 喪妻 등의 이유로 재혼한 경우를 염두에 두면 이 조항은 처첩제의 문제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28)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4월 25일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6월 9 ; 『세종실록』 35권, 세종 9년 2월 10일.

조될 때마다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가묘를 세우면 누구를 모실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고²⁹⁾ 직질의 고하에 따라 제사를 모시는 대수를 제한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³⁰⁾ 1429년(세종 11) 儀禮詳定所가 마련한 「大小人員家廟祭禮條件」은 가묘의 제례 논의가 아직 관원들의 시행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었다.

가묘제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장자를 통한 제사와 종통의 계승을 확실히 하는 것이었다.³¹⁾ 그에 따라 현실의 문제가 드러났다. 1430년(세종 12) 가묘를 세운 집은 승중하는 종자에게 주도록 법에서 보장토록 하였다. 사당을 세운다는 것은 사당을 포함한 건축물들을 소유한다는 의미이었다. 따라서, 繼母나 繼祖母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서 사당을 세우겠다는 것은 그를 빌미로 사당이 있는 곳의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와 같이 그것은 단지 봉사라는 제사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상속이라는 경제적인 문제도 겹치고 있었다. 제사를 주도하는 봉사자는 祭位田뿐만 아니라 제사공간인 가묘와 家畬를 관리하여야 했다. 主祭者의 지위는 그가 살고 있는 집을 世傳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세월이 오래되어서 퇴락하고 새로 지을 힘이 없으면 튼튼한 집으로 바꾸어야만 하고 자식이 없다 하여 팔아넘길 수는 없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사당의 유지가 있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봉사자로 결정되는 것은 사당이 있는 집(祠堂家畬)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次子가 봉사하기로 결정되어 그 가사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살던 딸이 갈 곳이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경우 딸은 차자가 살던 곳으로 바꾸어 들어가는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장자나 衆子가 아닌 家婦나 딸 자식의 경우 이 시기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확산 및 男系 중심의 거주율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거주 문제는 생존의 문

29)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30) 『세종실록』 43권, 세종 11년 3월 14일.

31) 김윤정,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2009 ;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7월 18일.

제이었다. 의례의 변화는 단순한 절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자가례』를 준용하는 친영례 시행의 어려움도 사실 그것이 단순히 혼례절차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관련되는 법들이 마련되어야만 하였다. 전기에는 『수교집록』 등의 교령집에 등재되고 후기에 가면 『신보수교집록』이나 『전록통고』 그리고 대전류에 등재되었다.³²⁾

조선사회에서 종법사상이 확대되면서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가족 내의 구성원의 위상이 변화되고, 혼례 및 상제례 등이 변화되고, 고려시기 이래의 양측적 친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주율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종법 사상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것이 국가적 차원의 것이 아닌 문종의 범위에서 적용되었다. 친족 안에서는 宗族 개념이 점차 형성되었다. 종가를 구성하고 그를 중심으로 종과 족의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종회, 족계회를 만들어 혈연적 결속력을 강화하였으며 족보를 만들어 정체성을 확인하였다.

가묘제는 단순히 조선봉사의 방법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회의 제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가묘의 운영이나 종족 범위 내에서의 여러 제사는 향촌사회 안에서의 서원의 제향의례를 어렵지 않게 준용하는 기반이 되었다. 조선후기 이러한 여러 제례는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8,19세기의 이른바 문중서원의 출현은 겉으로 보아 이러한 제례의 통합처럼 보였다.

32) 『受教輯錄』 禮典「奉祀」 374. [長子無後…](1556년, 명종 11년) “長子無後, 次子奉祀, 則當入處有祠堂家舍. 其亡子女息, 無所於歸, 而次子曾居家舍, 元係祖先傳來之物, 則換給亡子女息, 俾不失所, 合於情義, 永爲恒式. 嘉靖丙辰承傳”.

『受教輯錄』 禮典「奉祀」 375. [長子無後…](1556년, 명종 11년) “長子無後, 次子奉祀, 則立廟家舍, 法當傳給主祭子孫, 而曾傳長子之家, 已爲頽落, 自備物力改造, 則換給不當, 以此科斷. 嘉靖丙辰承傳”.

『受教輯錄』 禮典「奉祀」 376. [立廟家舍…](1556년, 명종 11년) “立廟家舍, 主祭子孫, 世世相傳, 而年久頽落, 無力修創, 與堅固家相換者外, 無後之人, 擅自放賣者, 則一切禁斷. 嘉靖丙辰承傳”.

Ⅲ. 서원의 역사적 성격

1. 소수서원의 건립과 사액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1542년(중종 37)에 풍기 백운동에 安珮(1243, 고종30~1306, 충렬왕 32)의 사당을 세우고, 이듬해 1543년(중종 38)에 향교를 고을 북쪽으로 옮겼으며, 사당 앞에 따로 서원을 세웠다.³³⁾ 서원이 세워진 죽계는 先賢의 유적이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다 터를 잡고 서원을 지은 것이었다. 향사의 대상은 이름난 유학자이며 그가 살던 곳이 서원 자리가 되는 것이었다. 서원은 사당을 지어 주향과 배향을 모시고 학습과 遊息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백운동서원 이후 대부분 서원의 건립 주체가 私人이어서 서원은 사립의 상징적인 교육기구로 알려졌으나 서원을 처음 세운 존재는 지방관이었다. 향교를 옮기는 등 교학에 관심이 높았던 수령이 학교 교육을 진흥하려는 생각에서 서원을 건립하였다. 후대의 서원들 가운데에서도 지방관의 여러 후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참여까지 가능케한 진원이었다.

1549년(명종 4)에 백운동서원의 사액을 감사에게 요청한 李滉은 서원의 건립 목적, 운영의 특징, 사회적 기능 등을 거론했다.³⁴⁾ 퇴계의 소수서원에 대한 이와 같은 언급은 이후 서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과 같은 것이었다.

이항은 서원을 건립한 이유를 현 교육제의 문제에서 찾았다. 국학이나 향교가 읍내 등에 있으며 한편으로 學舍에 구애되고 한편으로는 科擧를 위한 공부에 치중되어있다는 비판이었다. 서원의 학습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

33) 『竹溪志』, 「竹溪志序」, “明年壬寅大飢。其年。立晦軒祠堂於白雲洞。又明年癸卯。移建學宮於郡北。別立書院於晦軒廟前。”

34) 『退溪先生文集』 卷9, 書1, 上沈方伯(通源○己酉). 소수서원의 창립과 사액과정에 관해서는 申光漢, 『企齋文集』 卷之一, 記, 〈紹修書院記〉(應製)에 정리되었다. 예조판서 尹覲가 신광한에게 이름을 짓고 그 뜻을 밝히도록 명하여 白雲洞 紹修書院 이름을 지은 응제문이다.

할 수 있기에 개인의 학문적 성취는 물론이고 나라의 인재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³⁵⁾

관찰사의 업무 가운데 하나가 교화이어서 당연히 서원 사액의 일을 해결해야 되며 더군다나 그것은 한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라는 군주의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원은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배울 곳을 제공하고 土風을 진작시켜 교화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었다.³⁶⁾ 서원은 그와 같이 선현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존송을 의미하는 尊賢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興學을 중요하게 여기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李珣는 1579년(선조 12)에 서원 건립의 목적이 藏修와 崇德報功에 있기 때문에 향선생 중에 후학들이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람을 구하여 사당을 세우고 공경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다.³⁷⁾ 서원은 선현이 이룬 학문적 성취를 따라 배우고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를 가능케한 선현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것이었다. 학덕을 갖춘 선현을 모신 사당을 지어 봉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서원을 건립하려면 봉사할 선현이 전제로 되는데 소수서원의 경우에는 선현은 존재하였으나 서원을 건립한 주체는 그에게서 배운 그 지역의 문도들이 아니고 수령이었으며 사액을 요청한 인물도 수령이었다. 넓게 보아서는 同道이었다. 서원 내에서 과업을 위한 수학을 규제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35) 『退溪先生文集』 卷9, 書1, 上沈方伯(通源○己酉). “其視國學鄉校在朝市城郭之中. 前有學令之拘礙. 後有異物之遷奪者. 其功效豈可同日而語哉. 由是言之. 非惟士之爲學. 得力於書院. 國家之得賢. 亦必於此而優於彼也.”

36) 『退溪先生文集』 卷9, 書1, 上沈方伯(通源○己酉). “伏惟閣下任旬宣之寄. 崇教化之務. 凡係一面利害. 亦宜陳達. 況此聖世宏模之所關乎”, “惟有書院之教. 盛興於今日. 則庶可以救學政之缺. 學者有所依歸. 土風從而丕變. 習俗日美. 而王化可成. 其於聖治. 非小補也”

37) 『栗谷先生全書』 卷13, 記, 道峯書院記(己卯) “書院之設. 本爲藏修. 而兼舉崇德報功之典. 故必求鄉先生可爲後學矜式者. 立祠致敬. 以興起多士希賢之志焉.”

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였음은 서원의 건립이나 운영과정에서 관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이유이었다. 퇴계도 거론하였듯이 국가에 도움이 되는 현자는 교화의 주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인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수서원이 입원 자격을 과거 입격자 위주로 규정한 것은 주세붕이 처음부터 서원을 쇠퇴한 관학의 기능을 대신하는, 科業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인식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³⁸⁾

소수서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원은 선현이 살던 곳이나 머물던 곳에 세웠는데 처음부터 사당을 둔 교육시설을 세우지 아니하고 사당을 세워 선현을 봉사하다가 이어서 강학공간을 세워 두 기능을 갖추는 것을 정한 절차처럼 밝기도 하였다. 이 시기 사당을 갖추지 아니한 書齋나 精舍와 같은 교육기구도 있던 터에 선현봉사와 강학 기능을 함께 갖춘 서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다.

2.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

우리는 소수서원의 사례에서 지역의 수령이 뛰어난 유학자를 존송하여 유학자와 관련이 있는 곳에 건립하고 또 다른 수령이 사액을 요청하여 사액서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잘알려진 것처럼 서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여러 측면의 관계망이 작동하였다. 院·祠는 後孫, 門人, 鄉人에 의해 건립되었는데 그러한 “원사는 그 祭享人의 후손들이 族의 연결과 유대를 유지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제향인으로 대표되는 당색을 지닌 당인의 근거지요 지방 양반들의 향촌 통제의 중심지가 되었다.”³⁹⁾

서원을 둘러싼 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은 서원의 건립 및 운영의 배경이기

38) 金紫雲,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58, 2014.

39) 鄭萬祚,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1997, 312~313쪽.

도 하였으며 서원의 운영 결과 그러한 관계는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서원의 향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서원 건립과 운영 주체들의 학문적 연관성, 지역적 연관성, 혈연적 연관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서원과 학연관계망의 형성

서원 건립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학문적 계기로 형성된 관계망 곧 학연관계망이었다. 피봉사자인 선현의 문인들이거나 혹은 그 학문을 인정하고 존송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선현 혹은 선정의 학덕을 기리고 학문적 성과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소수서원 이후의 서원들은 서원에 따라 수령 혹은 관찰사의 개입이나 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학연관계망을 배경으로 건립되었다. 남계서원의 창립을 주도했던 姜翼(1523~1567), 林薰(1500~1584), 吳健(1521~1574), 盧禎(1518~1574), 金宇顒(1540~1603) 등은 모두 남명의 핵심 문도들이었다.⁴⁰⁾ 옥산서원의 경우에도 이언적의 문인 權德麟 등이 건립을 추진하였다.⁴¹⁾ 도산서원도 문인과 향인들이 건립에 나섰고 필암서원은 김인후의 문인 卞成濶이 건립에 나섰다.

도동서원의 건립주체들은 김굉필과 학문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울러 혈연과 지연을 매개로 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감사를 비롯한 현 풍헌 및 인근 지방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특히 한훤당의 외증손인 정구와 감사의 역할이 컸다. 정구는 「백록동규」를 모범으로 「도동원규」를 제정

40) 남계서원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丁淳佑, 安承俊, 金文澤, 「남계서원의 고문서」, 『고문서집성24책』 해제, 1995 ;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운동」, 『남명학연구』 15, 2003 ;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南冥學研究』 26, 2008 ; 김기주, 「濼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南冥學研究』 52, 2016이 참고가 된다.

41) 이수환, 「晦齋 李彥迪과 玉山書院」, 『慶州史學』 16, 1997, 405쪽 ; 이수환·이광우·박은정·채광수·이병훈, 『옥산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8.

하였다. 병산서원의 건립을 주도한 사람들은 역시 류성룡의 문인들이었다.

무성서원의 피봉사자인 申潛이 수령으로 치적을 쌓은 것 가운데 하나가 교육기구의 운영이었다. 서원의 건립은 태인에 4학을 설치하여 지역의 인재를 기른 결과이기도 한 것이었다. 돈암서원은 金長生이 타계한지 3년 후인 1634년(인조 12)에 그의 문인들이 스승을 추모하여 위패를 봉안할 사우를 김장생의 옛집 왼편에 건립하였다. 사당 앞에 강당을 건립하면서 서원으로 전환하여 갔다.

17세기로 넘어가면서 서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은 학파의 분화이었다. 각 학파는 ‘도통’ 의식에 입각하여, 특정 학파의 주요 인사를 제향함으로써 자신들을 ‘도통’의 계승자로 천명하였다. 이는 해당 서원에 성리학적 명분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다. 예를 들어 퇴계 사후 퇴계학파가 분화하는 가운데, 각 학파의 再傳 문인은 자신들과 연결된 直傳 문인을 경쟁적으로 서원에 제향하였다.⁴²⁾

그러한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居接이었다. 물론 이러한 居齋의 수업목표가 과업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관심을 끄는 것은 수업형태의 특이성에 있었다.⁴³⁾ 거접 혹은 거재는 여러 의미가 있었다. 단순히 머물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지만 거재는 대단히 독특한 학습체계를 갖춘 것이었다. 일상의 집단 생활 속에서 생활양식을 바꾸면서 학문을 전승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위양식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었다. 「거접절목」 혹은 「거재절목」을 두어 생활학습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거재절목」은 학습자세, 학습과정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양식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⁴⁾ 거재하는 동안 서원의 훈장이나 師長 등뿐만 아니라 고을의 수령이 격려의 글을 통하여 학

42) 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2, 2021.

43) 金紫雲,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58, 2014.

44) 金東鎮, 『貞山先生文集』 卷5, 雜著, 〈紹修書院居齋節目(戊申)〉; 李仁行, 『新野先生文集』 卷5, 雜著 〈伊山書院講學所居齋節目〉

습을 독려하기도 하였다.⁴⁵⁾ 서원에서는 생활을 함께하면서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생활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朔望의 회장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옥산서원의 거점은 가문 상호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⁴⁶⁾

서원의 교육은 관리 및 향촌사회의 지식인을 양성하였으며, 이들은 조정에서의 공론 및 향촌사회에서의 향론 형성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하였다.⁴⁷⁾ 학문적 연관성은 서원 건립의 배경이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서원의 운영의 결과 서원을 중심으로 강화·확대된 학연관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2) 서원과 지연관계망의 형성

서원 건립의 또 다른 배경은 지역적 관계망 곧 지연관계망이었다. 서원을 건립하는 사람들은 같은 고을이나 혹은 고을을 넘어서는 특정한 지역적 연관을 내세웠다. 출생지나 혹은 所居地 혹은 寓居地를 말하거나 혹은 수령 등의 관력을 가지게된 읍과 같은 연관성이었다. 우거지는 넓은 범위에서 謫所를 포함하였다. 귀양지이어서 그곳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관계를 형성한 경우이었다. 1504년(연산군 10)에 김굉필이 사망하고 그를 향사하는 최초의 서원은 1565년(명종 20)에 그가 별세한 적소이었던 순천에 세운 玉川書院이었다. 서원은 이러한 지역적 배경을 두고 건립되기도 하였다.

유배처와 같은 적소는 해당 유배자가 사는 곳일뿐만 아니라 지역인물들과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곳이었다. 그러한 관계망을 이루는 인물은 초학 수준

45) 金世濂, 『東溟先生集』 卷3, 詩. 〈道東書院. 示居接儒生〉. “學海爭雄氣格豪. 青衿縹軸映緋毫. 使君地主安能長. 諸子天才莫厭勞. 金山雨歇蟬聲急. 洛水秋生月色高. 一日圖南應不遠. 會看鵬翼擊波濤.”

46)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변화」, 『한국서원학보』 11, 2011, 147~150쪽.

47)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학연관계망을 배경으로 건립된 영남 서원들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였다.

일수도 있고 이미 일정한 정도의 학문적 성취가 있는 인물일수도 있는데 대체로 유배자는 관직에서는 異爵者이며 학문적 성취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 적소 현지의 인물과 사제관계를 맺기도 하는 것이었다. 적소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는 유배자가 자신들의 선생일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과 연고를 가진 인물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지역단위는 주로 행정단위인 면, 읍, 도 등이었으며 때로는 영남 혹은 호서 등 그 단위의 범위도 다양하였다. 지역은 과거급제자나 관인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요소이기도 하였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거론될 때에 범죄자의 출생지와 소거지에 대한 논의를 함께하였다.

이러한 지역단위의 설정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향인, 읍인 등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결과로 나타나고 그것이 서원 건립을 추동하는 동력이기도 하였다.

① 지역정체성과 행정편제

이러한 지역적 정체성의 형성에는 행정편제가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의 등장 이후 마을은 단독 혹은 복수로 국가권력의 파악 단위가 되었다. 국가 부세 수취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군사력 징발의 매개가 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을은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단위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단위 안에는 몇 개의 생활권으로 구성되었다.

고려 이래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지방행정편제가 조선시기에 재편성되면서 조선사회의 지역정체성이 형성되었다. 군현민은 각각의 처지에 따라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행정편제에서 속현이 없어지게 된 종전의 속현민은 새롭게 편성되어 들어간 군현이 아닌 거리가 떨어진 이전의 주읍을 자신의 읍으로 생각하였다.

안동의 내성인은 지리적인 위치에서는 봉화 지역이면서 주읍인 안동인이라는 생각이 강하였다. 독자적인 편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독자성을 보이는 里社의 건립으로 나타났다. 이사는 곧 鄉賢祠이었다. 지역의

인물을 봉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 지역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이러한 정체성에 영향을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앞서 살펴 본 종족의식의 확산, 거주율의 변동 등으로 새로운 곳에 세거하게된 상황이었다. 貫鄉을 보다 넓게 사용하면서 면 단위도 있지만 주로 읍 단위가 본관지로 사용되고 각 세거지에서 입학조를 내세우면서 지역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각 지역에서 문중을 형성하고 派譜를 갖게된 宗族人들은 어느 곳 사람인가를 인식하게 되었다.

② 지역정체성과 지연관계망

일정한 지역에 사는 지역인이 지역적 연관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었다. 지역 인재의 양성과 지역 교화 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기실 지역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촉발되어 자신의 지역에 서원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된 지역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세거한 경우도 있으며 처향 등에 입학하여 누대에 걸친 경우도 있겠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경제적, 인적 지역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은 특정 邑人 혹은 특정 鄉人들이 되었다. 예를 들어 東京人, 安東人과 같은 개념이었다. 정체성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을 지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군현 혹은 다른 읍 사람이라는 구별이 따랐다. 자신을 특정 지역의 인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③ 지역 연고와 서원건립

서원에서 봉사하는 인물이 학문적 존숭의 대상이라 하여도 지역과의 연관성을 건립의 이유로 내세웠다. 심지어는 그 고을이 소속된 도의 관찰사이었음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봉산의 문정서원은 1681년(숙종 7)에 건립하여⁴⁸⁾ 이이와 김장생을 제향하였다. 1686년(숙종 12) 황해도 봉산의 진사 梁沆 등

48) 『東國院宇錄』에는 1693년(숙종 19)에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의 사액 요청의 근거는 이이가 황해도 감사이었다는 것이고 김장생과 김집이 임진왜란 이후 그 고을에 살면서 문인 자제들과 강습하였다는 것이었다.⁴⁹⁾

사실 전국적 명망을 가진 인물들은 지역성이라는 것을 굳이 내세울 이유가 없었다. 흥학이라는 개념은 지역성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서원이 지역의 학교라는 성격을 버릴수 없기 때문이었다.

향사 대상자가 선현, 선정신, 공신이라든가 특히 종묘와 문묘중사자라면 지역성은 논의가 되었다. 대표적인 유자들의 문집에는 「院享錄」이 등재되어 있다. 율곡을 봉사하는 전국 제향 서원도 22곳이 있었다.⁵⁰⁾ 율곡의 서원은 주로 황해도에 집중되어 있었다. 礪山黃山의 竹林書院, 청주의 莘巷書院, 청송의 屏巖書院이 있었던 지역은 제자나 문인들과 연관된 지역이었다. 또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⁵¹⁾

④ 서원건립과 지연관계망의 의미

안동지역에서 끊임 없이 퇴계를 제향하는 서원이 건립되며 사액 요청이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었다.⁵²⁾ 영남에 있는 이황을 제향하는 서원 중에서 예안의 도산서원, 안동의 虎溪書院, 榮川의 伊山書院, 예천의 鼎山書院, 진보의 鳳覽書院, 단양의 丹山書院은 사액을 받았다는 것을 내세워 봉화의 文巖書院이 사액 요청을 하였다. 봉화가 이황이 살았던 고을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문암서원은 결국 1694년(숙종 20)에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성에 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넓은 범위의 인물로 인식하여

49) 『서원등록』 숙종 12년 3월 초7일.

50) 『栗谷先生全書』 卷34, 附錄 二, 「院享錄」. 紹賢書院, 紫雲書院, 松潭書院, 竹林書院, 莘巷書院, 龜巖書院, 飛鳳書院, 文會書院, 白鹿書院, 鷲峯書院, 景賢書院, 屏巖書院, 文公書院, 雲田書院, 龍巖書院, 道東書院, 鳳巖書院, 鳳岡書院, 文井書院, 花谷書院, 正源書院, 德水書院.

51) 薛錫圭,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社會的 基盤」, 『國史館論叢』 34, 1992.

52) 『서원등록』 숙종 19년 9월 24일.

지역경계를 의미가 없게 만든 것이었다.

서원은 유자들의 지역연대의 매개이었다. 도동서원의 『尋院錄』을 분석한 글에 의하면 내방인들의 거주지가 대체로 성주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강문인을 비롯하여 경상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찾아왔다. 물론 이러한 관계망은 서원이 소재한 군현지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영향력이 큰 서원은 지역적 한계를 거론할 필요도 없었다. 영향력이 큰 서원이란 제향인물이 보편적으로 선현이나 선정신으로 불리우거나 서원 운영의 주도세력이 관 異爵者이거나 향촌사회에서 명망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원을 말한다. 보다 넓은 지역이 영향력 있는 서원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갖게되는 것이었다.

도동서원의 『謁祠錄』은 본향 인사들의 내방을 기록하였다. 현풍 사람들은 公事, 享祀, 墓祀, 公會, 院會, 官行, 白日場, 기우제 등의 서원 내의 대소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원생이 아니라 하여도 지역인들의 향사 참여를 권장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⁵³⁾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서원이 유사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에도 부외 인사들의 명단인 『尋院錄』과 부내 인사들의 명단인 『本鄉尋院錄』이 남아있다.⁵⁴⁾

서원은 학생들만 찾았던 것은 아니며 심원 이유도 단순한 심방으로부터 강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관료나 유자들은 서원이 소재한 곳에 가면 서원을 방문하였다. 趙根은 박세채 등과 교유하였던 우암의 문인이었는데 1671년(현종 12) 災傷敬差官으로 영남에 왔던 길에 백운동서원, 도산서원, 역동서원, 옥산서원, 臨臯書院을 차례로 방문하였다.⁵⁵⁾

갈암 이현일은 1658(효종 9) 12월, 仲兄 및 네 동생들과 도산서원에 가서 「퇴계집」 講에 참여하였다. 서원은 소속 원생들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었다. 특별히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열려있는 강좌를 개설하여 학문적 향유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식의 공유이자 가치의 공유이었다.

53) 이수환, 앞의 논문, 1997, 20쪽.

54)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변화」, 『한국서원학보』 11, 2011.

55) 『損菴集』 卷4, 記 「尋白雲洞書院日記」 (嶺南敬差時).

지역의 서원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공문을 형성하고 일정한 의견을 수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문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통일된 의견을 조정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서원향사는 서원간 상호 집사 분정 등을 통하여 인근의 서원생들과 교류하고 연대하였다. 서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대할 기회를 만들어 갔다.

3) 혈연관계망의 형성

16·17세기의 서원 건립은 아직은 양측적 친속관계가 유제로 남아있으면서 점차 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상황에서 혈연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다. 종가와 문중이 형성되면서 종족의식 역시 점차 확산되었다. 한편으로는 종회나 족계가 종가나 문중을 확인하고 그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조직으로 등장하였다.

17세기 중엽 이후 점차 부계친 중심의 친족결속력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 및 친족 결합모습이 정착되어 갔다. 족원 수가 확대되고 친진과 대진 이후의 조상제사에 대한 대안으로 소종가계를 포함하는 조직인 종회가 출현하였다. 이는 종족마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종가, 선영, 서당 등 여러 혈연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들과墳山 및 종도 등의 사회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다.⁵⁶⁾

무엇보다도 종법사상을 배경으로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구성의 원리가 변동하고 있었다. 물론 양측적 친속관계의 유제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사회에서는 여전히 外孫奉祀나 화회문기의 妻邊 등으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후기로 넘어가면서 더욱 현상화되고 서

56)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의 概念과 性格 問題」,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2000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 2003 ; 정승모,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23, 2006.

원은 그 변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존립하였다. 18,19세기 문중서원의 확장은 이러한 가족관계 운영의 원리, 종족적 질서 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였다.

조선후기의 이러한 서원 설립과정을 보고 “영남 사람들은 가묘를 鄉祠로 만들고 향사를 서원으로 만드는데 서로 모방하여 거의 없는 고을이 없다”고 하였다.⁵⁷⁾ 자신의 祖先의 제사를 고을 제사로 만들고 그것을 서원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立祠 혹은 立廟 후 建院의 절차가 보편화되었다.

조선국가는 사적인 존재인 門長을 국가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연대책임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공신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문장에게 연대 책임을 물었다. 충의위 단자에는 문장과 嫡長이 保擧로서 서명하도록 하였다.⁵⁸⁾

공신 적장을 일자로 적통을 삼은 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속여서 충의위에 몰래 들어가려다 적발되면 소속된 충의와 적장, 문장은 모두 사목에 의거하여 전가사변하였다. 자신에게 부과된 역을 피하여 불법적으로 혈역 등에 속하는 충의위 등에 冒屬하였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원래의 역에 충정되었다. 그 경우 적장·문장·보거인과 鄉所가 연대책임을 졌다.⁵⁹⁾

1735년(영조 11)의 「乙卯忠翊衛事目」은 이 시기 충의위 운영에 관한 종합 대책이었다. 해당자를 기재한 단자를 수봉하는 조직과 방법 그리고 그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다.⁶⁰⁾ 여전히 공신 자손들의 직을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문장의 역할이 존속되었다. 이 시기 즈음이면 확실하게 문중이 형성되고 국가는 이 문중 조직을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였던 것이다. 문장이 서명하는

57) 宋楊燮, 「書院의 祠廟成立過程에 關한 考察」, 『춘천교육대학논문집』 29, 1989.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2월 29일, “聞嶺南之人, 以家廟而爲鄉祠, 以鄉祠而爲書院, 轉相倣效, 幾乎無邑無之云, 誠一痼弊.”

58)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178. [忠義單子...](1683, 숙종 9) “忠義單子, 門長·嫡長, 保擧着名, 向壁者, 全家徙邊. (康熙癸亥承傳).”

59) 『비변사등록』 40책, 숙종 12년 6월 5일.

60) 『新補受教輯錄』 吏典 「功臣」 192. [乙卯忠翊衛事目].

그 籍을 만들기 위하여 거둔 적장손의 都單子は 각각의 宗 아래에 기록하였다. 곧 국가의 공신 후예를 파악하는 구분 기준도 종을 강으로 하여 그 아래에 각 지파의 적장들이 기록되는 것이었다.⁶¹⁾ 이러한 기재 방식은 확산되어 가는 종족의식에 따라 관의 문서 작성에서도 종족을 하나의 범위로 파악하였던 것을 의미한다.⁶²⁾

3. 서원의 공공성과 그 사회적 의미

1) 학교제의 공공성

서원 향사가 公祭로 거론되는 것은 서원이 가진 공공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학교는 공공재이었다. 서원이 단순한 사적인 기구가 아닌 사회적 의미를 가진 교육제에 포함되어 향교와 더불어 거론된다는 것이 일차적인 공공성의 출발이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공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 서원의 사액이며 관과의 관계이었다. 국가적 절차를 통한 학교로서의 인정, 지방관들에 의한 재정적 지원 등이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해주었다. 국가가 사우의 첩설 금지 등에 나서는 순간, 이미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우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인되는 것이었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서원의 신설을 금지하였지만 서원의 신설은 그치지 않았다.

17세기 서원이나 향현사 건립이 대폭 늘면서 그에 대한 규제가 뒤따랐다. 1657년(효종 8)에 서원을 창건하려는 자는 배향하려는 사람의 행적을 갖추어서 반드시 조정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배향자 결정은 서원에서 하지만 반드시 배향하려는 사람의 행적을 밝혀 조정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61) 『新補受教輯錄』 吏典「功臣」193. [乙卯忠翊衛事目](1735, 영조 11) “嫡長都單子, 亦爲收捧, 各其宗下, 一一懸錄, 與保單子相准, 無欠然後, 口傳成給”.

62) 이상 문장에 대해서는 김무진, 「조선후기 길재 봉사손 녹용의 역사적 성격」, 『아은길재의 재인식』(구미성리학회사관 학술대회발표문), 2022를 참고하였다.

후에 건립토록 하였다. 서원은 사설이지만 공공성을 띠었기에 공적인 검증 절차를 두고 있었다.⁶³⁾

서원의 인재양성을 통한 향촌 교화 역할이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액서원은 그 안에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의 공적 영역과 사류의 藏修處라는 사적 영역이 함께 존재하게 된 것이었다. 이는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육 기관을 국가의 공적 영역으로 인정한 것이었다.⁶⁴⁾

사실 조선정부의 학교제의 중심은 관학이었다. 정부는 관학의 교육기준인 「學令」 등의 학규를 제정하고 끊임없이 개정하였다. 1407년(태종 7) 권근의 「勸學事目」을 비롯하여 1534년(중종 29)에 韓效元 등이 마련한 「勸學節目」 그리고 1582년(선조 15)에 이이가 제정한 「學校模範」과 「學校事目」이나 1629년(인조 7)에 趙翼이 만든 「學校節目」 등을 통하여 기존의 학교제의 내실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교화 대상을 확보한다는 양 측면을 충족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이후 교육기구를 세우거나 운영할 때에 이것들은 典範이 되었다. 조선후기 독립학교인 영학을 운영하고 서당의 확산 등에 따라 면훈장제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양사재 건립과 함께 향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학의 제도적 변용이라고도 할수 있다.⁶⁵⁾ 그리고 이 시기 관학에서의 학규 등은 사학인 서원이나 서재의 교육과정에서 수용되고 준용되었다. 교육의 과정이나 학습자세 등에 관한 규정 등은 관학과 사학의 구별이 크게 의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사학에서도 정사나 서당 혹은 서원과 구별되기 어려웠다.

대구의 伊洛書堂은 1800년(정조 24) 전후에 대구에서 성주로 건너가는 금

63) 『受教輯錄』 禮典「雜令」 389. “書院·鄉賢祠欲爲創建者, 具其行跡, 必聞朝廷, 蒙許然後, 施行. (順治丁酉承傳).

64) 신동훈, 「16세기 서원(書院)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2015, 276쪽.

65) 김무진, 「조선후기 교화체제의 정비와 면훈장제의 성격」, 『역사교육』 56, 1995 ; 이성심, 「조선후기 도 단위 학교, 영학(營學) 연구」, 『한국교육사학』 39-2, 2017 ; 이성심, 「조선후기 면학(面學)의 교수체제 연구-도훈장제 및 면훈장제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7-2, 2017.

호강의 나루 위의 언덕에 세워졌다. 가까이엔 정구가 말년에 거주하던 곳과 서사원이 살던 곳이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락서당에서는 한강과 낙재 두 선생의 『講學立規』를 써서 여러 벽에 걸어두고 공부하였다. 정구의 경우 『講法』이 알려져 있으며⁶⁶⁾ 서사원의 경우에는 『學校模範』과 『仙查精舍學規』가 있었다. 이 『학교모범』은 손처눌 등을 통하여서도 대구지역에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⁶⁷⁾

그런데 이 『학교모범』은 율곡의 것이었다. 『낙재집』에도 이 『학교모범』은 낙재선생이 손수 그 글을 베꼈으며 강학조건을 지었다고 기술하였다.⁶⁸⁾ 손처눌은 낙재공과 함께 『學規』와 『約條』로 이루어진 『通讀之規』를 만들 때에 先正이지은 바에 의거하였다고 밝혔다.⁶⁹⁾ 선정은 율곡이었다. 낙재의 『학교모범』은 율곡의 것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학교모범』 등은 조선 후기 곳곳의 서원에서 강독하고 준용하였던 학규이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여러 서원에서 『백운동규』를 강학례에서 강독하듯이 조선에서 만든 학규를 강독하였다. 관학과 서원을 학교라는 범주에서 인식하고 있었기에 관학의 학규를 굳이 배척할 것은 아니었다.

2) 서원 사액과 공공성

서원의 공공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 사액이었다.⁷⁰⁾ 서원을 건립하여

66) 『寒岡集 續集』 卷4, 雜著 〈講法〉

67) 『慕堂先生文集』 卷6, 附錄 〈年譜〉上 “會校堂講學校模範 先生曰此書眞名教中藥石 令人醉夢欲醒

68) 『樂齋先生文集』 卷6, 雜著 “學校模範 (此模範 先生手寫其文 作講學條件 而藏在遺篋 今付劊劊 以俟更考).

69) 『慕堂先生文集』 卷6, 附錄 年譜上 “與樂齋徐公 講定諸生通讀之規 (學規及約條 一依諸先正所著)

70) 서원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신동훈, 「16세기 서원(書院)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2015에서 전개하였다. 『역사와 현실』 93호 특집 「조선후기 ‘공(公)’ 담론의 새로운 모색」 2013 ; 『동방학지』 164호 특집 「유

향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사제를 공제로 전환한다는 생각이었다. 경상도 관찰사 姜士尙은 남계서원에 사액을 청하는 함양 진사 姜翼 등이 狀告한 것을 보고하면서 “선현을 봉사하는 것은 공제이어서 가묘에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사우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다.⁷¹⁾

사액의 절차는 공공성을 확인하는 절차이었다. 藝文館은 3가지의 액호를 적어 올린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비망에 낙점을 받아 결정한 뒤 예조의 낭관을 보내어 宣額致祭도록 하였다. 일종의 견관치제이었다. 치제일자는 서원에서 정하도록 명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예조에 관련 문서를 보내도록 하였다.⁷²⁾ 시호 결정을 알리는 宣謚가 내려지면 延謚가 그에 응하는 절차가 되듯이 사액이 선포되면 연액례가 진행되었다.

1696년(숙종 22)에 武城서원은 사액 결정이 되어 宣額禮를 하였다. 그리고 실제 사액이 되어 예관이 내려오고 사액의 절차를 밟으면서 延額禮를 하였다.⁷³⁾ 使者는 예조좌랑 柳格이었으며, 大祝은 순창군수 李潁, 奉香은 정읍현감 申喜澄, 奉爐는 태인현감 李堂이었다.⁷⁴⁾ 연액은 서원만의 의례가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포함하는 행례이었다. 그 밖의 제집사는 원임과 원생들이 맡도록 하였다. 춘추 향사 등에서와 같이 현관을 인근 서원의 원임이나 혹은 학덕을 갖춘 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태인현감 및 인근 고을인 순창군수, 정읍현감의 수령이 맡도록 하여 사액이 국가 곧 관의 행례라는 점을 의미하였다. 이 선택례와 연액례는 일종의 사제의 절차이었다. 서원은 관찰사 이하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부조를 받는 한편 앞서의 예관을 비롯한 대축, 봉향, 봉로 그리고 예

교 전통 속의 공공성, 2013 ; 『조선시대사학보』 71호 특집 「조선왕조의 정치와 공론」, 2014 등이 참고가 된다.

71) 『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6월 15일, 『一蠹先生續集』 卷2, 附錄〈濶溪書院請額啓[姜士尙]〉.

72) 『六典條例』 卷5, 禮典 禮曹 稽制司 學校, “祠院賜額, 則藝文館, 撰定額號, 備望受點, 遣本曹郎官, 宣額致祭. 致祭日子, 令本院擇定, 報于觀察使, 移文本曹”.

73) 『延額記事』(무성서원 소장).

74) 『무성서원지』 상, 「祭文」.

조의 서리와 馬頭에 이르기까지 폐물을 드렸다.

사액이 결정되어 치제를 하게 되면 예조의 낭청이 額號와 香祝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시행하였다. 정구와 晳好益을 제향하는 평안도 成川의 學翎書院은 1660년(현종 1) 사액서원이 되었다. 이 서원에 치제하는 일로 京官이 가게 되면 백성들에게 폐를 끼친다 하여 예조의 서리가 향축과 액호를 가지고 가고 해당 도의 도사가 예관이 되어 치제를 거행하도록 하였다.⁷⁵⁾

예조의 사액 서원 치제에 관리를 보낼 때에는 병조의 협조를 받기도 하였다. 1661년(현종 2) 경상도 청도의 紫溪書院에 金克一, 金駟孫, 金大有를 향사하고 사액하였을 때에 예조는 병조로부터 낭청의 騎卜馬와 色吏의 기마 등을 전례대로 지급받았다.⁷⁶⁾

정구는 사액을 받은 서원은 곧 國庠이라고 보았다. 국학은 從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유를 갖추어 상소하여 윤휴가 내려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⁷⁷⁾ 그렇다고 정구는 서원의 운영에 국가의 개입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원에 본부의 관리 5인이 내속해오자 2인을 돌려보내면서 “유자의 입장에서 서원에 관속이 많이 머무는 것은 사리에 옳지 않다”고 하였다.⁷⁸⁾

그러한 점에서 향사의 축문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609년(광해 1) 도동서원의 향사를 둘러싼 논의는 학교제로서의 서원의 위상과 제사의 성격을 말해준다. 예조가 경상도 관찰사 姜籤의 보고를 토대로 향사의 문제를 거론하

75) 『서원등록』, 현종 원년 8월 초8일.

76) 『서원등록』, 현종 2년 3월 초10일, 현종 4년 7월 초3일, 금산의 星谷書院과 殉義壇 사액 건.

77) 『寒岡先生文集』 卷6, 答問, 〈答金施普〉 “朱子於白鹿洞書院. 請賜額以爲國庠. 今亦旣蒙賜額. 當爲國庠矣. 然則從祀重事. 不得不經啓稟. 而徑自擅舉. 似不若具由上疏. 蒙允回下而後爲之也.”

78) 김부진, 「한강 정구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 226쪽.

였다. 도동서원에서 춘추향사와 가묘제를 실행할 때에 축문에 ‘조정의 명을 받들어 거행한다’는 뜻이 없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국가가 선현의 사당에 사액을 하거나 賜祭를 하여 그 선현을 존중하고 도를 중하게 여기고 있으니, 별도의 치제할 때와 서원의 춘추향사에 별도의 祭文을 내리거나 ‘조정의 명령을 삼가 받들어 지낸다’[恭承朝命]는 것을 칭하도록 결정하였다.⁷⁹⁾ 축문의 頭辭에 ‘承奉朝命’ 혹은 ‘欽奉朝命’이라 하는 것은 서원이 비록 사립이지만 사회적 위상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조정의 명이라 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러한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조정이 나서서 서원의 그러한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사액서원이 조정에 아뢰지 않고 제멋대로 배향을 하면 감사는 무겁게 추고하고 지방관은 파직하며 앞장서서 주동한 유생은 3년동안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⁸⁰⁾ 1741년(영조 17)에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안 관찰사는 파직하고 수령은 나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⁸¹⁾ 먼 고을에 있으면서 이름도 없는 향현사 영당을 관찰사가 알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 시기 서원 건립에 대한 통제는 사액서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원이나 향현사 혹은 영당, 精舍, 里社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넓은 범위의 祠院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⁸²⁾

문묘나 서원의 어느 곳에 제향되는가에 따라서 서원의 원액을 정하였다. 1707년(숙종 33) 문묘 중향인을 배향하는 서원은 30인, 사액서원인 경우에는

79) 『광해군일기』[중초본] 19권, 광해 1년 8월 1일.

80) 『續大典』禮典「雜令」“各道賜額書院，不稟朝家擅自配享者，道臣重推，地方官罷職，首倡儒生，限三年停學。

81)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7월 2일, “而先朝令甲，則以道臣從重推考，守令罷職爲定，而今番則改以聞知道臣罷職，守令拿問矣。” 『비변사등록』 153책, 영조 45년 10월 15일. 위 조치에 대하여 거듭 논의하였다.

82) 『비변사등록』 109책, 영조 17년 8월 22일, 『續大典』禮典「雜令」“諸道各邑，以影堂·精舍別立名目者，依祠院例屬罪，生祠堂，一體禁斷。

15인으로 원생수를 제한하였다. 이것이 1713년(숙종 39)에는 문묘종향자를 배향하는 서원의 원생을 20인으로 줄였다. 사립학교이어서 원생의 정원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숫자는 피역 가능수를 의미하였다.⁸³⁾

사액서원은 토지, 募入에서 일반 서원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국학은 아니었다.⁸⁴⁾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의 모입 문제는 한동안 논란을 거듭하였다.⁸⁵⁾ 예안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현풍의 도동서원, 안음의 龍門書院, 양주의 道峰書院, 延日의 烏川書院에는 일찍이 백성을 모집하여 들여보낸 자를 그대로 두어 침탈하지 말고, 다만 한결같이 추가해 모집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액서원은 서원 철폐 과정에서도 별도의 취급을 받았다. 1864년(고종 1) 사액서원 이외의 관봉 제물을 혁파한다는 것은 사액서원의 관봉 제물은 여전히 유지한다는 의미이었다.⁸⁶⁾

3) 지방관과 공공성

지방제는 조선국가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구현시키는 기구이었다. 관찰사와 수령에 이어지는 통치체계의 중요한 기능은 예치의 실현이었다. 지방제의 두 기능을 정령의 전달과 교화의 실현이라고 하는데, 부세의 수취와 현 지배체제의 안정을 의미하는 정령의 전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화의 실현이었다. 수령의 7가지 업무 가운데 興學校는 단순히 학교제도의 원만한 운영만을

83)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遼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1, 2022, 177쪽.

84) 『續大典』 戶典 諸田 「學田」, “書院田, 本院自備, 雖未滿三結, 勿以民結充給, “賜額書院 三結, 未賜額, 則無免稅位.

85) 『서원등록』, 숙종 2년 11월 초10일.

86) 『各司謄錄』 京畿道篇 4, 開城府留營關報牒謄錄1, 「甲子十二月十五日」, “賜額書院外, 官封祭物革罷之意, 前已知委矣, 一體查實以聞是矣. 又或如前延拖, 不念國綱, 則必當有別般勘處矣. 其各惕念舉行宜當向事”.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원인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의미하였다. 이 학교의 범주에 우리가 논의하는 서원이 포함되었다. 서원의 교육과 향사에 관이 개입하고 지원하는 근거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서원의 건립을 지방관이 주도하기도 하였다. 소수서원은 수령이 설립을 주도하고 사액 역시 수령에 의해 전개되어 실행되었다.⁸⁷⁾ 남계서원의 건립의 주체는 사람들이었으나 지방 수령들의 후원이 컸다. 1564년(명종 19) 서원의 재실 건립에는 함양군수 金宇弘(1522~?)이 도왔다. 관찰사는 주로 건립이나 사액 요청의 중간 통로이어서 나서기도 하였다.

전임 수령이 피봉사자인 무성서원에서는 원장이나 제장, 강장 등의 직임을 관인들이 맡고 있었다. 1876년(고종 13)의 원장은 1875년에 태인현감으로 부임한 李敏泰이었으며, 1876년에 부임한 閔觀鎬, 그 후에 부임한 1881년(고종 18)의 李定植, 1883년의 鄭履源 등이 현감원장이었다. 1883년의 緡紳講長을 현감 申岐朝가 맡았다. 강장도 진신강장과 유림강장으로 나누어 진신강장을 찰방으로 선임하기도 하였다.⁸⁸⁾ 서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도 경주의 옥산서원은 인근의 수령이 지속적으로 심방하였으며 경주부윤은 강론을 하기도 하였다.⁸⁹⁾

흔히 서원의 제수는 官備와 院備로 표현되었다. 지방관은 서원에서 거행하는 춘추향사, 식망분향제 등의 각종 제례에 香燭을 封進하였다. 관아에서 제수를 지급하는 곳은 향교와 사액서원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도 官封이라 하여 제수를 지급하였다. 제수지급의 관행은 관의 부담을 가중시켜 서원의 폐단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전국의 서원이 훼손되기까지 지속되었다.⁹⁰⁾

87)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소수서원의 관권과의 관계변화에 따른 양상을 추적하였다.

88) 『武城書院誌』하 「갑을기사」 이하.

89) 이병훈, 앞의 논문, 2011, 157쪽.

90) 한국국학진흥원 「절목」 문서 해제.

대구부 13곳의 서원의 제물은 해당 서원이 스스로 준비하였다고 하지만 지방관의 지원도 있었다. 대구부 행정의 일부는 관찰사가 겸하고 있기에 1834년(순조 34)에 관찰사 徐熹淳이 別備錢 700냥을 마련하여 그 이자 140냥을 관의 서원 향사 제물 진봉에 사용하였다. 1868년(고종 5)에 朝令에 따라 미사역 서원은 일체 隳撤하고 원생과 下典은 군으로 이속시키고 1871년(고종 8)에 別비전 700냥을 감영에 바쳤다.⁹¹⁾ 주지하다시피 대구의 사액서원인 研經書院, 表忠書院, 洛濱書院도 모두 隳撤되었다.

이 서원 隳撤은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개되었다. 1864년(고종 1)에는 사액서원에서 自備田 結 3결은 법전에 따라 면세하되 그 외의 토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액서원의 모입은 새로 조사하여 규정된 액수를 지키도록 하였으며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과 향현사의 官封을 금지시켰다.⁹²⁾ 서원 첩설 금지 등은 이미 정한 법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조치가 쉽게 시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몇 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해의 사액서원의 관봉은 개성부에서도 확인된다.⁹³⁾

1868년(고종 5)에는 사액서원이 규정된 모입수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획득된 토지의 결세를 다시 거두어들이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향사에 필요한 물품을 관에서 지급하고 있기에 취한 것이었다. 서원의 신설은 금지하되 사액서원의 추배는 허용하였다. 나아가서는 고위 관리들이 서원의 원장을 맡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액서원에 내린 혜택을 줄이고 관리들의 서원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⁹⁴⁾ 국가와 서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었다.

대구부의 경우 1869년(고종 6)에는 조령으로 서원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91) 『大邱府事例』 「己巳因朝令祭物停封矣 更據禮曹關及邑狀還爲官封辛未因朝令毀撤」(奎貴12198) 이 책의 표지명은 『邑事例』이다.

92) 『고종실록』 1권, 고종 1년 8월 17일.

93) 『各司謄錄』 京畿道篇 4, 開城府留營關報牒謄錄1, 「甲子十二月十五日」

94)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9월 3일 ; 정순우,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 1998.

정지시켰다(停封)가 다시 예조 관문 및 邑狀에 근거하여 관봉으로 바뀌었는데 1871년(고종 8)에는 조령에 따라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읍이나 향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사우에 대해서는 관이 일시 제물을 봉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寒泉書院과 鳳山書院은 1870년 鄉狀으로 인하여 관봉하였으며,⁹⁵⁾ 龜巖書院은 읍장으로 관봉하였으며, 龍崗祠는 예조관문으로 1873년(고종 10) 관봉하였으며, 伊江書院은 1884년(고종 21)에 예조 관문에 따라 관봉하였다.

예안 관내의 향교와 도산서원, 역동서원 각각에 제수를 보냈다. 도산서원이 받은 것을 보면 주향과 중향 몫을 각각 달리 배정하여 지급하였다.⁹⁶⁾

이러한 서원에 대한 지원은 도단위에서도 마련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선혜청의 영남청에서는 제향에 쓰이는 脯幣, 紙燭筆墨價 및 校院과 各壇의 魚鹽 등의 비용으로 米 1,464석 11두 8승을 책정하였으며, 사액서원의 幣帛價로 每位 10두씩 도합 米 82석, 黃燭價로 매위 1두 6승씩 도합 米 11석 3두를 책정하였다.⁹⁷⁾

이울러 도산서원의 향사를 유지하기 위해 인근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을 부담토록 하였다. 예를 들어 熾村洞은 布錢條 46냥兩을 견감해주는 대신 매년 추향 시에 돛자리(席子) 3좌를 마련하게 하였다.⁹⁸⁾ 이러한 견감은 지방관

95) 『大邱府事例』에서는 두 곳 모두 因鄉狀庚戌官封이라 기록하였는데 庚午로 바로 잡는다.

96) 庚申八月十五日粧 『校院祭物贈錄』, (한국국학진흥원) “酒大米三升, 眞曲一圓, 飯大米二刀五合, 黍米二刀五合,” 중향위從享位도 같은 종류 같은 양이라 하였지만 서미가 果田米로 바뀌었다. 제수에 드는 각종의 진찬류들과 종이, 황필, 먹까지 다 양하였다. “鹿醢 三升 米一刀五合, 魚醢 上尙(향교와 같은 一斗 米五升), 大黃燭 二柄 每二兩半, 中燭 二柄 每一兩半, 乾大口魚一尾, 鹿脯三條, 大棗三升, 柏子三升, 菁菹, 菹 三升, 牲一口, 製布十八尺, 灯油一升, 眞油五合, 祝文紙一張, 草案紙五張, 油紙二張, 筭一部, 食筭, 黃筆, 眞墨, 香. 從享位: 鹿脯三條, 芹菹 三升 院備, 柏子三升 官備, 刺燭十五柄, 草席一立”.

97) 『嶺南廳事例』 0001권, 奎15233, 041b면.

98) 절목003, 「春間規整條件」, 한국국학진흥원

의 후원없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서원에서 준비하는 원비와 함께 군현단위와 도단위인 관에서 준비하는 관비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 견관치제하는 경우에는 이것 이외의 별도의 명을 내려 특정 제수를 준비토록 하였다.

무성서원은 강습례를 할 때에 면훈장을 학임의 다음 차례에 자리하여 학임과 같이 배움토록 하였다. 이 시기 수령은 면훈장제를 통하여 서당 교육을 통제하고 있었던 터에 이들을 서원의 강습례에 참여시켜 관주도의 교육과 결합하고 있었다.

4) 遣官致祭의 공공성

서원의 공공성은 견관체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견관치제는 일종의 賜祭이었다. 그 대상은 공신·선현·절의자 등이었으며, 큰 전쟁을 치른 이후에는 전쟁의 유공자나 전망자가 포함되었다. 때로는 당상관 등 고위관료의 사망에도 견관치제하였다. 혹은 단군과 기자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의 삼국시조 또는 고려 등의 시조가 그 대상이었다. 다양한 사상의 등장에 따라 正學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러 서원에 치제하기도 하였다. 서원의 경우는 사액이 결정되면 견관치제하였고, 춘추향사 혹은 군주의 일시적인 결정에 의해 견관치제하였다.⁹⁹⁾

사제가 결정되면 임금이 직접 제문을 짓거나 혹은 신하들에게 제문을 지어 승지 등의 近侍, 宮官, 홍문관 관원을 예관으로 파견하면서 내려보냈다. 예관의 선발은 이조가 천망단자를 올리고 왕이 그에 대해 비답을 내리는 절차를 두었다. 예관은 奉命致祭하는 것이었다. 임금은 제수를 하사하기도 하는데, 치제하러 가는 京官은 향축과 폐백을 가지고 가며 지방관에게 명하여 치제를 돕도록 하였다.¹⁰⁰⁾ 제사치는 묘소 혹은 제향하고 있는 서원이나 사당 그

99) 이하 견관체제에 대해서는 김무진, 앞의 논문(2022), 50~54쪽을 참고하였다.

리고 사망한 지역이나 전망처이었다. 묘나 사당에 제사하는 일반적인 사제는 춘추 제향이였다.

역대시조에 대한 견관치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역사적 정통성의 유지와 천명이 배경이었으며 그리고 그를 주재하는 임금의 왕권 강화가 엮보이는 일이었다. 또한, 견관치제는 치제의 대상 인물들에 대한 예우이었으며 치제에 따라서는 앞서 거론한대로 조선국가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확인이고 宣化이었다. 곧 고위관리나 선현들의 국가에 대한 봉직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리도록 하고 전망자에 대한 예우를 통하여 충성을 포장하는 것이었다. 영조와 정조 시기의 견관치제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도산서원에는 어제 치제문들이 보존되어 있다.

도산서원이나 옥산서원은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동시에 견관치제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⁰¹⁾ 1781년(정조 5)에 옥산 서원과 도산 서원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할 때에는, 제관과 祀品은 연전의 華陽書院에 치제할 때의 예에 의거하였다.¹⁰²⁾ 1792년(정조 16)에 도산서원과 옥산서원에 치제하였는데¹⁰³⁾ 도산에서는 치제일에 시험을 보았으며 정조가 직접 성적을 매겨 뽑았다.¹⁰⁴⁾

필암서원에도 여러 건의 사제문이 전한다. 1662년(현종 3)에 사액에 따른 현종의 사제문, 1786년(정조 10)에 좌부승지 朴天行을 보내어 치제하였을 때의 것, 1796년(정조 20) 좌부승지 李勉兢을 보내 치제하였을 때의 내각직제하

100) 『제물등록祭物贈錄』, 「致祭」 장서각 K2-2558, 『치제등록致祭贈錄』

101) 도산서원의 견관치제에 관해서는 李炳勳,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67, 2021.이 참고가 된다.

102) 이 견관치제에 대해서는 중요 관변 기록에 모두 등재되었다. 『정조실록』 11권, 정조 5년 4월 23일 ; 『승정원일기』 정조 5년 4월 23일 ; 『일성록』 정조 5년 4월 23일, 『승정원일기』, 정조 5년 5월 5일, 『일성록』 정조 5년 5월 5일.

103)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3월 2일 ; 『일성록』 정조 16년 임자(1792) 3월 2일 ; 『비변사등록』 180책, 정조 16년 3월 3일 ; 『일성록』 정조 16년 임자(1792) 3월 3일.

104) 『홍재전서』 제22권, 祭文4 「玉山書院致祭文」 ; 『홍재전서』 제184권, 「羣書標記」 6, 命撰2, 『嶠南賓興錄』 2권.

李晩秀의 치제문, 그리고 1828년(순조 28), 1855년(철종 6)의 사제문 등이 전한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인근 고을의 인사들이 치제에 참여함으로써 그를 통하여 선정신의 후손이 또 다른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치제가 빈번해지면서 「致祭儀」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1788년(정조 12)의 『춘관통고』는 「書院致祭儀」라는 항목을 두어 설명하였으며, 1810년(순조 10)의 『國朝五禮通編』은 「치제의」를 신증하여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서원의 경우를 덧붙여 설명하였다.¹⁰⁵⁾

IV. 서원 제향 의례의 역사적 의미

1. 향교의 제향의례와 서원의 의례

서원의 제향의례는 학교의 제향의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조선후기에는 校院이라는 용어처럼 학교의 범주에 향교와 서원을 함께 염두에 두고 거론하였다. 『춘관통고』의 「서원치제의」를 보듯이 엄연한 학교제의 범주에 들어가 있었다. 또한, 1830년(순조 30)에 간행한 『상변통고』는 「학교례」에서 그 대상을 향교와 서원의 의례로 설명하였다.¹⁰⁶⁾

그 의례의 기준은 향교의 의례이었다. 의례가 가치관의 구체적 행위규범의 표현이기에 서원 향사는 향교에서처럼 유학적 가치관의 행위규범이었다. 석전 혹은 석채례, 석채의로 부르는 향교의 제례는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었다. 「州縣釋奠文宣王儀」를 규정하면서 진설 및 행례가 규정되고 『국조오례의

105) 『春官通考』 卷39, 吉禮 院祠二 「書院致祭儀」; 『國朝五禮通編』 卷7, 吉禮 「致祭儀」.

106) 『상변통고』 제27권 ○學校禮, 書院 이어지는 校院服色 등 각종의 의례에 관한 설명에서 향교와 서원 그리고 성균관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서례』에는 時日과 齋戒 그리고 省牲器가 규정되었다.¹⁰⁷⁾

향교의 제사 시일은 觀象監에서 期日 세달 전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 서 틈로 아뢰고 중앙과 지방에 널리 알리게 하였다. 담당부서는 직책에 따라 맡아서 처리하였다. 제사에는 일정한 날이 있는데 仲春과 仲秋의 上丁에는 문선왕에게 釋奠을 지내고, 朔望에는 문선왕에게 奠을 드리도록 하는데 朔日에 석전을 만나면 석전만 행하도록 정하였다.¹⁰⁸⁾

이러한 규칙은 조선말까지 준용되었다. 1894년(고종 31) 추향 시 경상도는 관상감 첩정으로 예조로부터 일자를 통보받아 제향일자를 예방색리에게 통고하였다.¹⁰⁹⁾ 곧, 서원은 조선말까지 변하지 않는 향교의 祭日 선택 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향사일을 결정하고 있었다.

향교의 제향을 석전이라고 부르는데서 알수 있듯이 향교의 가장 우선적인 제향 대상이 공자를 비롯한 중국의 先聖先師와 우리나라의 선현이었다. 주자를 봉사하는 극히 일부의 서원 이외의 봉사대상자는 조선의 유학 선현이었다. 조선사회에서 배우고 지키고자 하였던 유학은 엄밀히 말하자면 성리학이었다. 물론 서원에서의 학습 내용이 성리학이라 해서 모든 서원의 향사 인물이 성리학자라는 이유에서 奉祀되는 것은 아니었다. 향사 인물의 학문적 성취 정도만이 유일한 선정 기준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유학이 지향하는 가치인 德이나 그 실천인 節義를 또 다른 기준으로 내세우는 사례도 있었다.

서원의 의례는 크게 보아 제향의례와 일반의례로 나눌 수 있다. 서원 제향의례의 기본은 춘추향사이었다. 정초의 정알례나 월마다의 삭망분향례는 규

107) 『國朝五禮儀』卷2, 吉禮 「州縣釋奠文宣王儀」.

108) 『國朝五禮序例』卷1, 吉禮 「時日」, “時日 觀象監, 前期三朔, 報禮曹, 禮曹啓聞, 散告中外. (攸司隨職供辦) 凡祀有常日者. 中略. 仲春·仲秋上丁 釋奠文宣王, 朔望, 奠文宣王(朔值釋奠, 只行釋奠.)”

109) 『各司謄錄, 慶尙道篇 3』, 禮房色來報關錄 2, 「甲午七月初五日」, “七月初五日到付巡甘, 秋享各祭設行事關文, 節到付禮曹關內節啓下教, 觀象監牒呈內乙用良, 今甲午年七月以, 十二月至, 各朔內, 行各道各祭, 中略. 八月內行, 社稷大祭, 上戊日是白在, 初四日行, 文宣王釋奠祭, 上丁日是白在, 初三日行.”

정대로 신설된 제수를 갖추고 현관이 준행하는 격식이 필수인 의례는 아니었다. 이른바 특수의례라 부르는 追享禮·致祭禮·賜額禮는 해당 사건의 발생에 따라 행하는 일시적 의례이었다.¹¹⁰⁾

서원의 일반의례는 강학에 따른 강학례 혹은 강습례와 그 외의 서원생 상호간이나 혹은 외부인과의 상음례 그리고 심방인의 알례와 같은 것이 있었다. 이 범주 이외에 향촌사회의 여러 의례가 제향의례나 강학례와 결합하여 준용되었다. 예를 들어 향음주례, 향약례, 향사례와 같은 것들이었다.

도산서원에서는 축문 작성이 끝나면 유사가 「백록동규」, 「李子鄉約條」, 「藍田呂氏鄉約」을 낭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다른 서원이 이들을 강학례등과 결합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이었다. 이 역시 「백록동규」가 그러하듯이 조직의 약문이라기보다는 선언적 수신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필암서원의 참제자 전원은 동서로 서로 향하여 읊을 하고 각각 그 자리로 가서 「백록동학규」를 읽고 돌아가면서 차례로 강하도록 하였다. 「백록동규」강독을 향사와 결합시켰다. 한편으로는 瞻講禮와 相揖禮를 행하였다. 침알례는 향약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음례는 학생을 동반과 서반으로 나누어 曹司와 班首를 두어 진행하였다. 이 때에 「小學題辭」 및 『大學』과 『中庸』의 各首章, 「백록동규」, 「여씨향약」을 읽는데 이러한 의례를 위하여 「土相見禮儀節」, 「鄉飲酒禮儀節」, 「鄉約儀節」, 「鄉射儀節」을 두고 있었다.

「藍田呂氏鄉約」이라 부르는 향약의 경우에도 실제 향약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수신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예속상교 조항이 혼인, 상장, 제사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주고 받는 문서에 관한 것이고 경조사 역시 구체적인 경제적 부조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조직 내의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환난상휼조 역시 해당되는 사안을 적시하였지만 구체적인 賻物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서원에서 일반 의례로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함께 두었다. 향음

110) 채광수, 앞의 논문(2020).

주례가 행례하는 사람들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향사례는 그에 비하면 수신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병산서원에서는 향음례를 하였다. 당시 안동부 풍서면에 살던 安昌烈(1847~1925)은 1878년(고종 15) 늦봄에 병산서원에서 향음례를 하였다.¹¹¹⁾ 무성서원에서는 향음주례를 시행하였는데 대단히 이른 시기에 정극인은 태인에서 향음주례와 여씨향약을 시행하였다.¹¹²⁾

2. 서원 제향의례의 사례와 의미

서원들은 제향의례에 관하여 院規에 규정하든지 「享禮儀」와 같은 것이나 혹은 별도의 「笏記」 등을 마련하였다.¹¹³⁾ 기왕의 연구에서 상세히 검토되었기에 몇 가지 주목되는 것만을 중심으로 거론한다.

1) 소수서원

소수서원을 건립하면서 주세붕이 안향을 향사 인물로 선정하고 곧 이어 1544년(중종 39)에 安軸(1282, 충렬왕 8~1348, 충목왕 4), 安輔(1302, 충렬왕 28~1357, 공민왕 6) 형제를 배향하였다. 주세붕이 봉안하면서 안축은 충효와 덕이 있고 말을 남긴 것, 안보는 청렴과 충효를 두 사람의 추배 이유로 꼽았다. 안축의 大節과 효성 그리고 학문에 연원이 있다는 평가이었고 안보는 正

111) 『東旅文集』, 戊寅暮春, 行鄉飲禮于屏山書院, 仍修契軸拈韻;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3-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1999.

112) 『不憂軒集』 卷1, 詩「泰仁鄉約契軸」; 『不憂軒集』 卷2, 文「洞中鄉飲酒序」, 1475년(성종 6)에는 「洞中鄉飲酒序」를 지었다.

113) 서원의 의례에 관해서는 본고의 주 1)에서 제시한 논저가 참고 된다.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173~179쪽에서는 16세기 몇 서원의 향사의례에 관하여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 『한국서원학보』 11, 2020에서는 남계서원을 남인계 서원으로 분석하였다.

氣와 청풍이 있는데 그 역시 私淑한 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¹¹⁴⁾ 이는 안향의 文成廟 從祀 고유제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초 서원의 제향인물의 봉사결정에서 학문만이 유일한 기준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서원에서 건립하는 당시의 향사 인물은 건립 주체들이 선정하지 만 그 후의 追配 인물은 서원의 운영자들이 선정하였다. 서원의 운영과정에서 결정되는 추배는 그 당해 시기의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았음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 추배과정에서 곡절을 겪기도 하는데 그 과정이나 시기가 어떠한 대상인물의 공통점은 학문적 지향이 같다는 점이다. 배향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추배 인물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향 인물과 같은 도학의 수학자이고 전승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소수서원의 행례에서는 초헌례, 이헌례 그리고 중헌례를 마칠때마다 道東 曲의 首·中·末의 각 3章을 부르는 매우 독특한 차례가 있었다. 소수서원의 행례를 퇴계가 조율하였지만, 소수서원의 祭式 역시 향교의 제식을 준거로 삼고 있었다.¹¹⁵⁾

2) 남계서원

남계서원은 정여창을 주향으로 1552년(명종 7)에 건립되어 1566년(명종 21)에 사액되었다. 1642년(인조20)에 鄭蘊과 성종대의 俞好仁을 별묘에 강익과 병향하였다.¹¹⁶⁾ 1663년(현종 4)에는 남계서원에 정은 배향을 요청하였으

114) 『竹溪志』 行錄後「奉安文貞公祭文, “允忠允孝. 有德有言. 展也君子. 配我晦軒. 「奉安文敬公祭文, “夷廉孟闊. 入孝出忠. 凜然如生. 萬古清風. 「祭告文成廟從祀文貞文敬文」.

115) 『竹溪志』 行錄後「祭式」에 그 일개를 간략히 소개하고 “餘皆如校禮”라 하였다.

116) 남계서원 건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丁淳佑, 安承俊, 金文澤, 「남계서원의 고문서」, 『고문서집성24책』 해제, 1995 ;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운동」, 『남명학 연구』 15, 2003 ; 윤희현, 「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南冥學研究』 26, 2008 ; 김기주, 「濼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南冥學研究』

며¹¹⁷⁾ 사액한 이후 합사를 하려는 생각에서 절차를 밟으면서 1675년(숙종 원년)에는 강익과 정온의 배향을 요청하여 1677년(숙종 3)에 정온만이 배향되었다. 1689년(숙종 15)에 강익을 서원에 배향할 것을 청하는 梁天翼 등의 상소가 있었으며¹¹⁸⁾ 강익은 그 해 9월에 허락을 받았다.¹¹⁹⁾ 사액서원이라서 절차에 따라 배향을 결정한 것이었다.

남계서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추향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원은 별묘 혹은 향현사라는 이름으로 본원 봉안 이외의 제향시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짧지않은 시일이 걸리는 추향에 대응하는 조처이기도 하고 다른한편으로는 본원에 봉사하지 않는 인물을 본원과 같은 경내에 봉사할수 있는 길이기도 하였다.

남계서원의 「春秋享禮儀節」에는 다른 향례의처럼 시일과 재계, 省牲, 진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學生位와 飲福位 등을 덧붙여 규정하였다. 이 의절에 의하면 執事官, 獻官, 祝, 執禮, 奉香, 掌饌, 贊引, 掌牲, 領牲, 大祝, 判陳, 司尊, 司壘, 奉爐, 奉爵, 典爵이 참제하고 있다.

실제 「참제록」에는 시기에 따라 조금 다른 직책이 있었다. 「참제록」의 1888년 추향은 헌관 3인, 대축, 집례, 판진 5인, 찬인 4인, 有司 2인, 典任을 두었는데 1889년의 춘향 이후에는 전임을 典有司라 부르다가 다시 전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1892년의 추향에서는 봉향, 봉로를 두었는데 이후 시기에 따라 이 둘은 출입이 있었다. 연도에 따라서는 집사 혹은 掌議를 두기도 하였다.

52, 2016 ;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9, 2019가 참고 된다.

117) 『서원등록』, 현종 4년 정월 29일.

118) 『승정원일기』 334책 숙종 15년 윤 3월 9일.

119) 『서원등록』, 숙종 15년 9월 19일.

3) 옥산서원

장현광이 옥산서원의 국휼 시의 제례에 관한 물음에 답한 것은 제례의 조율과정이었다. 여기에서의 기준은 두 경우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서원이 제향하는 인물이 전대인가 본조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색의 문제로 齋服과 祭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었다. 西岳書院과 臨臯書院은 전대의 선현을 모신 서원이니, 향사의 예를 본조의 선현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곧 옥산서원은 본조의 선현이니 당조의 신하에 맞는 위상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 여현은 제복의 선택에 향교와의 위상을 고려하였다. 私祭이기에 현실을 고려한 재량에 따른 변경이 가능하지만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여현의 자문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¹²⁰⁾ 옥산서원은 單獻을 올리고 受胙하지 않는 것을 권하였다.

서악서원은 재계할 때는 소복, 향사 때에는 두 번째의 吉服을 착용하였는데 옥산서원의 경우에도 복색은 서악서원을 따르는 것으로 제안하였다.¹²¹⁾ 재계와 치제에는 복색의 구별이 있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서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4) 도산서원

도산서원의 향사는 매년 춘추 2월과 8월의 中丁日에 거행되었다. 만약 國忌日에 해당되거나 유고의 경우에는 下丁日에 행하고, 이때도 적합한 날이 없으면 亥日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도산서원의 향사의 기록으로 「儀節草」와 「享禮笏記」가 있다. 「의절초」에는 서원 출입시의 복장 등의 일상

120) 『여현선생문집』 제5권, 문목에 답함[答問目] 「又答再稟」.

121) 『여현선생속집』 제2권, 書 「答玉山書院士林」.

적 범례, 알묘례와 춘추향사 등의 각종 의례수행의 절차, 조직과 역할 등의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소상하게 수록되어 있다. 「의절초」에는 축문 작성이 끝나면 유사가 「백록동규」, 「李子鄉立約條」, 「藍田呂氏鄉約」을 낭독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¹²²⁾ 도산서원이 소장하고 있는 「홀기」는 앞서 거론한 『춘관통고』의 「서원치제의」이었다. 그 규식대로 主祭는 유생이 맡도록 되어 있었다.¹²³⁾

5) 필암서원

필암서원에는 「院儀節」을 두어 원임이 月朔望焚香에 돌아가면서 말아야 할 것과 춘추석채시 헌관 및 제집사 선정에 관한 것, 춘추향사와 관련한 약간의 일들에 관하여 규정하였다.¹²⁴⁾

필암서원의 향사는 장의 및 색장이 담당하였으며, 유사는 향사 시 의절을 봉행하였다. 향사는 매년 춘추 2중월 중정에 행하였다. 國忌와 겹치면 末丁이나 亥日을 이용하였다. 향사 1일전 원임이 상의하여 글을 알고 행실이 바른 사람을 제관으로 차정하였다. 춘추향사의 제관을 원외의 유림에서 선정하였다. 제관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망첩을 보내어 청하였다.

필암서원의 祭官은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을 비롯하여 陳設, 執禮, 祝, 奉香, 奉爐, 奉爵, 奠爵, 司尊, 掌牲, 典飼, 洗爵, 滌器, 盥洗, 贊引, 贊者, 謁者 등이었다. 필암서원의 祭服은 儒巾에 제사 때에 입는 齊服을 입고 大帶를 두르고 滕襪을 한 복색이었다.

122) 이상 도산서원 향사는 김미영, 「서원 향사亭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2, 2013을 옮겼다. 이 글에서 「의절초」의 경우 작성 연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123) 도산서원 「笏記」, “主人則主祭儒生”, 한국국학진흥원.

124) 『筆巖書院誌』, 「院儀節」; 『守宗齋集』 10, 祝文 「筆巖書院 鼓巖梁公春秋享祝文」; 『宋子大全拾遺』 卷之八, 祝文 「筆巖書院春秋享祝文」; 『河西先生全集』 附錄 卷2, 「筆巖書院春秋釋菜祝文門人徐台壽」.

6) 도동서원

도동서원은 김굉필을 봉향하였는데 증진하면서 정구 배향에 힘을 들였다. 1664년(현종 5)에 정구의 추향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²⁵⁾ 서원의 추향과 같은 일은 서원이나 인물의 사회적 비중에 따라 해당 서원이나 혹은 해당 읍의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역을 넓혀서 도단위까지 확대되기도 하였으며 중앙 관료의 지원을 받았다. 관찰사가 나서고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관여하였다.

1678년(숙종 4)에 정구를 봉안하였다. 추향의 경우에도 창건시의 제향 인물 선정처럼 여러 연관성을 내세웠다. 현풍이 정구의 外鄉이고 정구는 김굉필의 외증손일뿐만 아니라 학문에서도 嫡傳이어서 집안에서 一家兩賢이라 부른다는 것이다.¹²⁶⁾ 혈연과 학연을 동시에 거론하였다.

도동서원의 학구의 첫 번째 항목은 謹享祀이었다. 학습에 우선하여 서원을 바로 세우는 일은 향사부터이었다. 혹 향사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 같은 목적의 새로운 교육기구가 건립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원규」로 서원의 중요한 일인 향사 일자를 향교의 석전을 피하여 정하였다. 院任은 항상 丁日을 만나면 경내의 유생을 인솔하고 미리 한자리에 모여 釋奠을 행한 뒤에 서원의 향사는 중정中丁에 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혹 향교나 서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배타적인 갈등을 없애고 일체감을 갖게 하되 선현에 대한 향사가 선후의 순서가 있다는 것을 「院規」에서 천명하는 것이었다. 향사하는 날 신진 영입을 논의하여 결정하듯

125) 鄭必達, 『八松先生文集』 卷4, 疏 「道東書院請躋享寒岡先生疏」.

이하 도동서원에 관해서는 李樹煥, 「道東書院의 沿革과 所藏資料의 검토」, 『道東書院誌』, 1997을 참고하였다. 李樹煥, 「道東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 『史學研究』 60, 2000 ;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2014가 참고가 된다. 김굉필의 제향에 대해서는 이수환, 「김굉필의 문묘종사와 제향서원」, 『국학연구문충』 25, 태민국학연구원, 2020이 참고가 된다.

126) 鄭必達, 『八松先生文集』 卷4, 疏 「道東書院請躋享寒岡先生疏」 甲辰.

이 서원에서의 향사는 중요한 행례이었다. 서원 스스로 향교 다음의 차례임을 분명히 하여 생도 상호간은 물론 기구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 하려는 것이었다.

도동서원에서는 언제나 삭망 때에는 서원에 있는 유생은 靑衿을 정중히 차려입고 선생의 사당에 분향 재배토록 하였으며¹²⁷⁾ 춘추로 향사를 지내고, 서원 뒤에 있는 김굉필의 묘소에서 墓祭를 지냈다. 도동서원은 朱子の 「滄洲精舍釋菜儀」를 비중있게 준용하였다.

7) 병산서원

병산서원은 1575년(선조 8) 서당을 병산으로 옮기고 ‘병산서원’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는데¹²⁸⁾ 류성룡의 사후 1614년(광해군 6)에 유생들이 그 옆에 사당 尊德祠를 지어 위판을 봉안하고 釋菜禮를 행하였다.¹²⁹⁾ 정경세, 이준 등 문인들이 추진하였다.

서애선생의 위판은 1620년(광해12) 합향하는 과정에서 여강서원으로 옮겨다가 1629년(인조 7)에 다시 병산에 복향하였다. 당시 서애 선생의 위판을 여강서원과 병산서원에 봉안하는 문제를 두고 “一邑兩院竝享”과 “一邑一院奉安” 등 의견이 있었으나 주자의 예에 따라 한 고을 두 서원에 병향해도 무방하다 하여 두 서원에 병향하게 되었다.¹³⁰⁾ 1662년(현종 3)에 서애의 셋째아들인 柳

127)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한국서원학보』 2, 2013.

128) 李樹煥, 「17, 18세기 安東 屏山書院의 社會·經濟的 基盤 : 屏山書院 古文書 分析」, 『嶠南史學』 3, 1987 ; 김학수, 앞의 논문(2007) ; 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129) 『西厓先生 年譜』 제2권, 年譜, 萬曆 42년 갑인 4월 5일(정해), 四十二年甲寅四月丁亥. 奉安位版於屏山書院. 行釋菜禮. 院在河隈上流五里許. 豐山縣舊有豐岳書堂. 先生以堂在官道傍. 不合藏修之所. 諭本縣學子. 移建于此. 至是儒生立祠其側. 『東儒書院叢錄』에는 1613년(광해군 5) 건립으로 기록되었다.

130) 김학수, 앞의 논문(2007)에 위패봉안을 둘러싼 논의의 정치적 의미 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祔(1582, 선조 15~1635, 인조 13)의 위패를 중향하였다.

병산서원의 춘추향사일은 3월과 9월의 초정일이었다. 入齋日은 1일전이어서 향사일 전날에 향사에 참가할 헌관과 모든 집사들이 서원에 모인다. 分定禮를 통하여 집사를 분정하였다. 주향과 종향을 나누어 헌관과 제집사를 분정하였다. 병산서원에는 正講과 香講의 講廟禮가 있었다. 향알은 식방분향례이었다.

8)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崔致遠(857, 현강왕 1~908년 이후)과 申潛(1491, 성종 22~1554, 명종 9)을 제향하는 서원이었다. 태인의 향인들이 최치원의 사당을 창건하여 泰山祠라 하였다.¹³¹⁾ 1549년(명종 4) 신잡을 태산사에 배향하였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신잡의 수령 경력에 대한 태인현민들의 평가는 일반적 통치의 공적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가 세운 四學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단순한 지역성이라기 보다는 그 교육기구에서 수업한 향인들과의 학연이 겹쳐있던 것으로 여겨진다.

1630년(인조 8) 정극인·宋世琳·鄭彥忠·金若默을 배향하고, 1675년(숙종 1) 金灌을 추가 배향하였다. 태인은 정극인의 처향이었으며 그는 訓導教授로 학령을 개정하여 생도들을 가르쳤다.¹³²⁾ 앞의 4명은 모두 15~16세기 태인의 사족들로서 가까운 친·인척이었다. 태산서원에 추배된 1630년은 이들이 타계한지 각각 149년·111년·73년·72년이 지난 후이었다. 멀리는 이미 5세대가 지났고, 가까이 2세대가 지난 인물들을 같은 해에 함께 추배한 것이었다.

131) 『武城書院誌』 「請額疏」. 무성서원에 대해서는 박종배, 「19세기 후반 武城書院의 講習禮에 관한 일 고찰」, 『한국서원학보』 1, 2011 ;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 武城書院의 건립과 운영 - 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2018이 참고 된다.

132) 『不憂軒集』 제2권, 文 「學令」 (訓導教授時).

1615년에 태산서원을 건립하였으니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태인의 향현들이 대거 추배된 것이었다.

9) 돈암서원

돈암서원을 건립한 해에 송시열과 송준길이 사계 김장생을 돈암서원에 봉향하기 위한 「享禮儀節」의 초안을 만들었다. 김집은 1647년(인조25)에 「儀禮圖」를 강독하기도 하였다.¹³³⁾ 춘추 향사 때에도 입재한 원생들은 먼저 祭儀를 익히고 난 다음에 이황이 지은 행장이나, 이이가 지은 誌文을 읽도록 했다. 제향의례의 과정은 전승되는 지식의 학습 기회이었다.

1658년(효종 9)에 그의 아들 金集을 배향했으며¹³⁴⁾ 1660년(현종 1)에 사액하였다.¹³⁵⁾ 이 때에 현종은 건관치제하였다. 그 후 1688년(숙종 14) 송준길을,¹³⁶⁾ 1695년(숙종 21)에는 송시열을 추배하였다. 이러한 송준길, 송시열의 추배는 돈암서원이 노론서원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추배는 아울러 학문적 계통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추배를 지지하던지 혹은 다른 의견을 가졌든 자신들에게까지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통하여 학문 전승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 학문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향촌사회 안에서는 향론의 주도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일은 서원 안팎의 인사들과 의견 교환을 통하여 정리되기도 하였다.¹³⁷⁾

133) 김문준, 「돈암서원의 강학」,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134) 『신독재전서』 제16권, 부록 「年譜」 하, 무술년(1658, 효종 9), “9월 13일에 돈암서원에 종향되었다.”

135) 『宋子大全』 卷171, 碑 「遯巖書院廟庭碑」; 『신독재전서』 제18권, 부록 「院亭錄」.

136)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 3월 7일 “連山幼學洪友顔等上疏, 請以文正公 宋浚吉, 配食于本縣文元公 金長生所享遯巖書院. 下禮曹覆啓, 許之.”

137) 金鎭圭, 『竹泉集』 卷13, 書 「論遯巖書院配享. 與連山儒生書. 與伯氏及從叔參議公聯名」.

때로는 서원의 진로를 놓고 갈등이 있을 때에 제향의 담당 조직이 불안정할 때도 있었다. 남계서원의 경우 논란의 외중에 남계서원의 춘추향사에 향사집사를 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문경호는 이것이 신계서원과 남계서원의 입록된 원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남명을 모시는 龍巖·德川·新山 세 서원의 사례를 들어 입록된 모든 원생을 대상으로 향사집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¹³⁸⁾ 아울러 그는 유사 서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장악이 문제가 있음을 거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견의 제안은 서원이 공공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¹³⁹⁾ 서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성을 거론하였지만 문제의 핵심은 서원의 운영을 맡은 중심세력간의 갈등이 현실의 제향에 영향을 미친 사례라는 것이다. 1740년(영조 16) 문헌공 정여창의 위패를 분실하였다.¹⁴⁰⁾ 범인을 체포하여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 위패작변인 것으로 보인다. 서원이 정치적으로 노론정권의 인물들과 유착되면서 발생한 일로 여겨진다.

V. 서원 제향의례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무형문화유산은 그 문화가 존재하는 시대와 사회의 문화를 나타낸다. 그 문화는 문화 구현을 통하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단순한 의례의 전승이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과 기술의 전승을 의미한다. 그러한 문화는 그 문화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공유된 문화이다.

138) 文景虎, 『嶧陽先生文集』 卷4, 雜著「通諭咸陽士林」(丁巳).

139) 김기주, 「濼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南冥學研究』 52, 2016은 1612년(광해군 4)부터 1685년(숙종 11)까지의 약 73년에 걸친 남계서원의 기록이 공백으로 비어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은 정인홍 혹은 복인정권과의 관련성을 지우기 위한 남계서원의 노력으로 짐작된다고 하였다.

140) 『서원등록』 영조 16년 2월 28일.

1. 서원 제향의례의 역사성

서원은 조선사회의 여러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서원은 조선사회의 가치 체계인 유학을 기본 사상으로 가지면서 그러한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이끄기 위한 학습이 전개되고 아울러 그러한 가치관에 입각한 의례가 실천되던 곳이었다. 그를 위하여 교육체계를 구성하고 각종 기능의 공간을 건립하고 그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체계를 세우고 전승하였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그러한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설립된 서원과 마찬가지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서원들의 건립과정이 조선사회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한편 개별 지역에서의 특수성을 지닌 것처럼 제향의례는 학교제라는 범주 안에서의 서원의 제향의례라는 보편성을 지니면서 각 서원별 특수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그러한 것은 서원에서의 다른 일반 의례의 준용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수서원은 수령이 건립하여 수령이 사액을 요청하였던 서원이었다. 소수서원의 제향의례는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이황에 의해 조율되었던 것이었으며 향교의 제식을 서원 제식의 준거로 삼았다. 소수서원 이후의 서원들은 선현의 문인 혹은 지역적 인적관계나 혈연적 인적관계를 가진 관계망이 작동되고 한편으로는 지방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 사회의 서원들은 각각 건립의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건립되고 운영되면서 각각의 조건에 맞는 제향의례를 형성시켜갔다. 도동서원이 朱子の 「滄洲精舍釋菜儀」를 준용하였듯이 중국의 서원의 역사성에 유의하고 국내의 여러 교원의 제향의례에 관심을 가지면서 각 서원별 제향의례를 가지게 되었다. 무성서원의 배향인물인 정극인은 선초 이른 시기에 태인에서 향음주례와 여씨향약을 시행하였는데 후대의 무성서원에서는 향음주례를 시행하였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처음 제정한 것을 준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옥산서원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앞서의 것을 보완하여 의례를 완성시켜 나갔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원의 제향의례는 역사적 산물이었고 문화이었다.

2. 전승 계보의 명확성

서원을 건립하는 당시의 향사 인물이나 그 후의 추배 인물의 선정은 그 당해 시기의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았다. 그 과정이나 시기가 어떠하든 대상 인물의 공통점은 학문적 지향이 같다는 점이다. 배향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추배 인물에 대한 학문적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주향 인물과 같은 도학의 수학자이고 전승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계서원과 같이 정치적 지향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서원은 정치적 지향이나 학문적 지향이 조선말까지 크게 변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학문적 분화와 종족적 범위의 확산과 더불어 서원의 건립이 확대되고 이른바 문중서원까지 등장한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지만 개별 서원별 학문적 지향성의 큰 변화는 쉽지 않았고 현상화되기도 쉽지 않았다.

각 서원은 서원 제향의례의 「笏記」를 작성하고 「春秋享禮儀節」, 「陳設圖」 등 각종 의례에 관한 기록물을 생성하여 보존함으로써 원형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남계서원의 「春秋享禮儀節」, 도산서원의 「儀節草」와 「享禮笏記」, 필암서원의 「院儀節」, 돈암서원의 「享禮儀節」 등은 그러한 산물이었다.

이울러 그러한 의례는 서원의 임원뿐만 아니라 원생들을 의례에 적극 참여시켜 의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승할 수 있었다. 서원은 구성원들이 건립으로부터 사액에 이르기까지 존현과 흥학이라는 동일한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아울러 지역 내의 다른 서원과의 집사분정을 통하여 제향의례를 공유하였다. 서원 안에서 형성된 제향의례에 관한 지식과 행위규범은 학문적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승되었다. 이 점에서는 어느 문화보다 명확한 전승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전통적 지식체계의 학습과 발전적 전수

이울러 서원들은 먼저 만든 의례를 전범으로 하여 수정하여 사용한다는 점

에서 지식의 공유와 그것의 공고화를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지식의 내용과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퇴계가 소수서원의 향사례를 수정하듯이 일정 시기까지 의례는 수정되었다. 천곡서원의 향사를 둘러싸고 정구가 제자와 논의한 사례를 보면 행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향사의 「홀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토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 천곡서원의 「홀기」에는 희생에 관한 언급이 없었기에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였다. 각종의 의례서와 현실의 조건 등을 고려한 논의로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⁴¹⁾

오산서원의 향사례는 선행한 여러 서원의 향사례를 모범으로 하여 변형 수용한 것이었다. 전해오는 지식체계를 현실의 조건에 맞추어 교정하여 계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통 지식과 경험의 공동의 전승이고 학습이었다. 말 그대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의논하여 고치는 것이었다.¹⁴²⁾ 이렇게 의례는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유지되어 왔다. 일부 진찬의 진설이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큰 틀을 변경하는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여겨진다.¹⁴³⁾

돈암서원의 김집은 「儀禮圖」를 강독하기도 하였으며 춘추 향사 때에도 원생들은 祭儀를 익히고 이황이 지은 행장이나, 이이가 지은 誌文을 읽도록 했다. 제향의례의 행례과정은 전승되는 지식의 학습 기회이었다. 아울러 제향의례를 행하는 것은 학문적 계통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자신들에게까지 어떠한 인적 관계망을 통하여 학문 전승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이었다. 학문적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향촌사회 안에서는 향론의 주도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141) 『寒岡先生文集』 卷6, 答問 「答李景發」.

142) 『寒岡先生文集』 卷6, 答問 「答李以直」, “齊會之日, 僉共議改之”. 천곡서원의 별사 충현사의 위판을 봉안하는 문제를 두고 여러 종류의 의견을 나누던 중 제례의 복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구의 답변이었다.

143) 한재훈, 「退溪의 書院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 - 白雲洞書院 享祀禮 修正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김영미,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22, 2013.

4. 전승 내용의 수월성

사제지간의 계보를 통하여 전승된 서원 향례는 때로는 수정되어 전승되었는데 이는 전통 지식의 보존을 의미하였다. 조선사회의 서원은 여러 면에서 주목되는 교육기구이었는데 그 기구의 존재가치의 한 축이 의례이었다. 의례가 생성된 근원 학문의 수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유학 수업의 진전없이 행례를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의 준용은 그 의례의 문화원리인 유학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문화의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유교 가치를 가장 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규범으로서의 제례이었기에 끊임없이 선례를 확인하고 교정하였다. 그를 통하여 생산된 각종의 관련 문서는 한편으로는 탁월한 기록문화의 생성이었으며 다른한편으로는 의례라는 행위규범의 지속적인 체현이었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조선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체계의 작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라는 명제의 실현으로서 실행되었다. 단순한 의례의 절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유교적 가치체계의 구현으로서의 의례이었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이러한 서원의 기능 위에서 전개되는 것이고 항상 역시 서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자리잡았던 것이었다. 서원의 제향의례를 통하여 원생들은 유학의 가치기준을 확인하고 구성원들의 상호관계를 확인하고 그러한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 갔다. 그들은 전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거나 혹은 향촌사회의 선현들을 제향하였고, 제향인물을 통해 강한 학문적 계보를 형성하였다. 그를 통하여 성리학이 조선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로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서원이 가지는 사회적 공공성을 기반으로 서원에 따라 일부 행례를 조정하면서 준행되었다. 그를 통하여 학문적, 지역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한편으로는 혈연적 유대를 심화하기도 하였다. 서원은 학교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액 및 견관치제, 지방관의 후원 등을 통하여 사회적 공공성이 확인되는 공공재이었기에 서원에서 행하는 의례는 공공성을 가지

는 것이어서 私祭인 가정에서의 제향과 함께 조선사회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규범으로 인식되었다.

5. 학습과 계승의 보장성

현재의 서원은 제향의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육과 제례를 위한 공간 구조물, 운영 및 관리자 집단, 후원 집단인 유림을 두고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필수 공간 요소인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휴식공간을 구성하는 각 건축물뿐만 아니라 원래의 지형, 주변환경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제향공간을 구성하는 사우와 사우 내부의 위패, 전사청 등이 온전하게 존재하며, 강학공간을 구성하는 강당과 재사, 도서관 등이 보존되고 있다. 각 서원은 의례를 준용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형을 보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9개 서원은 연합하여 향사 자료를 수합한 자료집을 간행하였다.¹⁴⁴⁾ 각종 기록의 보존과 전승, 행례 등의 규범화를 통한 의례의 보편성의 유지노력, 행례의 수정과 보완을 통하여 「홀기」를 완성시켜 나가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유학이 한 시대의 이데올로기이었지만 그 학문적 성과를 시대를 넘어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는 유림이라는 전승집단이 있다는 점과 그들이 조직화 되어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전승의 확실한 조건이다. 특히 현재 시연되고 있는 살아있는 의례라고 하는 점은 전승을 보장하는 첫째 조건이다. 물론, 전승집단인 유림이 조선시대의 서원생도들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문제로 남는다 하겠다.

144) 李東晝編, 『韓國의 書院 儀節』, 世界文化遺産 韓國의書院協議會, 2013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향사』, 2011-20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동아시아 서원의 기원과 제의례의 완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46, 2022 등이다.

VI. 나오는 말

조선사회에서는 여러 수준의 관계를 만들어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서원의 제향의례는 서원에서의 여러 행례 가운데 하나이었다. 의례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의 구체적 행위규범의 표현이라면 서원 향사는 유학적 가치관의 행위규범이었다. 조선사회의 유교적 질서화는 이 행위규범을 세우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서원의 제향의례이었다.

그러한 서원의 제향의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 관계에 대한 존중이었다. 학문적 가치에 대한 공동 인식과 그를 공유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 지역적 관계에 대한 존중, 혈연적 관계에 대한 존중이었다. 선현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 전통에 대한 존중, 역사의 공유, 문화의 공유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서원 제향의례는 문화의 正體性和 계속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적 유대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무형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고, 전달하는 집단이나 개인은 그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승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곧 살아있는 문화 유산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문화는 행례자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전 사회의 문화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서원의 제향의례를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보존할 필요와 당위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備邊司謄錄』,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經國大典』, 『國朝五禮儀』, 『國朝五禮儀序例』, 『受教輯錄』, 『新補受教輯錄』, 『春官通考』, 『六典條例』, 『各司謄錄』, 『慶尙道篇3』, 『各司謄錄』, 『慶尙道篇4』, 『書院謄錄』, 『校院祭物謄錄』(한국국학진흥원), 『祭物謄錄』(장서각 K2-2558), 『嶺南廳事例』 1권(奎15233), 『延額記事』(무성서원) 『大邱府事例』(奎貴12198)

『濼溪書院誌』, 『道東書院誌』, 『武城書院誌』, 『吳山書院誌』, 『竹溪志』, 『筆巖書院誌』, 『樂齋先生文集』, 『東溟先生集』, 『損菴集』, 『旅軒先生文集』, 『栗谷先生全書』, 『貞山先生文集』, 『竹泉集』, 『退溪先生文集』, 『寒岡集』

2. 저서

李東壽編, 『韓國의 書院 儀節』, 世界文化遺產 韓國의 書院協議會, 2013.

李範稷, 『韓國中世禮思想研究－五禮를 中心으로－』, 일조각, 1991.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鄭萬祚, 『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1997.

3. 논문

姜制勳, 「朝鮮初期 國家儀禮 정비의 지향과 원칙－吉禮·凶禮의 상호 영향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8, 2015.

강제훈, 「조선 세종조의 國家禮 정비와 五禮의 성립」, 『한국사학보』 82, 2021.

권삼문, 「향사의 역사와 구조」, 『역사민속학』 12, 2001.

김기주, 「道東書院과 寒岡學의 전개」, 『한국학논집』 57, 2014.

김기주, 「濼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南冥學研究』 52, 2016.

김명자, 「조선후기 屏山書院 院長 구성의 시기별 양상」, 『한국서원학보』 6, 2018.

- 김무진, 「조선후기 교회체제의 정비와 면훈장제의 성격」, 『역사교육』 56, 1995 .
- 김무진, 「한강 정구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조선중기의 '낙중학' 한강 정구의 삶과 사상』,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7.
- 김무진, 「조선후기 길재 봉사손 녹용의 역사적 성격」, 『아은길재의 재인식』(구미 성리학역사관 학술대회발표문), 2022.
- 김문준, 「돈암서원의 강학」, 『한국철학논집』 58,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 김미영, 「서원 향사享祀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의미 - '도산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22, 2013.
- 김윤정,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2009.
- 金紫雲, 「16세기 소수서원 교육의 성격」, 『儒敎思想文化研究』 58, 2014.
- 김자운, 「조선 서원의 강학 의례와 교육적 의미」, 『民族文化論叢』 76, 2020.
- 김자운, 「조선시대 서원교육의 公的 기반 변화와 그 대응 - 소수서원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18-2, 2015.
- 김학수, 「영남지역 서원의 정치사회적 성격」, 『국학연구』 11, 2007.
- 金勳植, 「『三綱行實圖』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1998
- 김훈식, 「朝鮮前期 倫理書 보급의 변화」, 『코기토 81』, 2017.
-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9, 2019.
- 宋楊燮, 「書院의 祠廟成立過程에 關한 考察」, 『춘천교육대학논문집』 29, 1989.
- 송준식, 「남명학파의 서원건립운동」, 『남명학연구』 15, 2003.
- 薛錫圭, 「肅宗朝 院宇動向과 朋黨의 社會的 基盤」, 『國史館論叢』 34, 1992
- 신동훈, 「16세기 서원(書院) 사액(賜額)과 국가의 서원 정책」, 『역사와 현실』 98, 2015.
-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南冥學研究』 26, 2008.
-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 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81, 2022.
- 이광우, 「조선시대 학파의 '도통' 의식과 서원의 확산 -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 『한국서원학보』 12, 2021.
- 이병훈, 「조선시대 경주 옥산서원의 위상변화」, 『한국서원학보』 11, 2011,
- 李炳勳, 「18~19세기 도산서원의 위상 변화」, 『大東漢文學』 67, 2021.
- 이성심, 「조선후기 도 단위 학교, 영학(營學) 연구」, 『한국교육사학』 39-2, 2017.
- 이성심, 「조선후기 면학(面學)의 교수체제 연구 - 도훈장제 및 면훈장제를 중심으로 -」, 『교육사학연구』 27-2, 2017.

- 李樹煥, 「17, 18세기 安東 屏山書院의 社會·經濟的 基盤; 屏山書院 古文書 分析」, 『嶠南史學』 3, 1987.
- 이수환, 「晦齋 李彥迪과 玉山書院」, 『慶州史學』 16, 1997.
- 李樹煥, 「道東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 基盤」, 『史學研究』 60, 2000.
- 이수환, 「김굉필의 문묘종사와 제향서원」, 『국학연구론총』 25, 태민국학연구원, 2020.
-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의 概念과 性格 問題」, 『李樹健教授停年紀念 韓國中世史論叢』, 2000.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화' 경향과 친족조직의 변질」, 『역사와 현실』 48, 2003.
- 임근실, 「16세기 書院 學規에 대한 검토와 그 특징」, 『한국서원학보』 6, 2018.
- 임근실, 「조선시대 서원의 향사의례에 대한 특징과 의미-남인계·서인계 서원을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1, 2020.
- 임민혁, 「朱子家禮를 통해 본 朝鮮의 禮治」, 『정신문화연구』 80(23권 3호), 2000.
- 임선빈, 「17세기 무성서원武城書院의 건립과 운영-제향인물과 사액과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35, 2018.
- 宋楊燮, 「書院의 祠廟成立過程에 關한 考察」, 『춘천교육대학논문집』 29, 1989.
- 鄭萬祚, 「17~18세기의 書院祠宇에 대한 試論」, 『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1997.
- 丁淳佑, 安承俊, 金文澤, 「남계서원의 고문서」, 『고문서집성24책』 해제, 1995.
- 정순우, 「조선시대 제향공간의 성격과 그 사회사적 의미」, 『사회와 역사』 53, 1998.
- 정승모, 「조선후기 문중형성과 문중계 운영방식」, 『역사민속학』 23, 2006.
- 채광수, 「서원의 특수 의례 종류와 실제-追享禮·致祭禮·賜額禮를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0, 2020.
- 최순권, 「도동서원 제향의례의 특징」, 『韓國書院學報』 2, 2013.
- 한재훈, 「退溪의 書院 享祀禮 定礎에 대한 考察-白雲洞書院 享祀禮 수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 한재훈, 「조선시대 서원향사례 비교연구-9대서원 향사의절을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2017.
- 한재훈, 「한국 서원 의례의 종류와 의의: 강학례, 향사례 그리고 향음주례」, 『韓國書院學報』 11, 2020.

Abstrac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Seowon Ritual of Sacrifice and Its Value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im, Moo Jin*

The Seowon was built on the basis of Neo-Confucianism, which is the universal value ideology of Joseon society. It was one of the units of society that reproduced its values and expanded the order to which they were directed.

The Seowon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taught and learned about Neo-Confucianism. At the same time, it was a mechanism to honor those who had sought and practiced its values earlier.

The ritual of sacrifice of performed by the Seowon has the same character as the school ritual as the Hyanggyo Seokjeon, which is a public ritual of the state. It paved the way for the ritual to spread throughout society. The ritual of Seowon was a ritual as the embodiment of the Confucian value system.

The Seowon ritual of sacrifice was followed by adjusting some of the rituals according to the Seowon based on the social publicity of the Seowon. The Seowon made efforts to maintain and pass on the original form by creating and preserving records of the Seowon-making rituals.

The Sewon ritual of sacrifice has been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hrough cultural embodiment, and it is not just the transmission of

* Sungcheon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 paldalkim@naver.com

rituals, but the transmission of richer knowledge and skills.

Key word : Confucianism, the ritual of sacrifice, Publicity, Cultural Transmission,
Predecessors scholar

논문 투고일: 2023. 11. 15 심사 완료일: 2023. 11. 30 게재 확정일: 2023. 12. 01

■ 일반 논문

- ▣ 조선후기 금산 성곡서원의 창건과 운영
- ▣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의 장서(藏書) 운영
- ▣ 조선후기 華陽書院의 건립과 『華陽誌』 편찬의 의미
- ▣ 海原君 李健의 流配를 통해 본 조선후기 宗親의 존재 양상
- ▣ 청대 駐防 旗人서원과 교육
- ▣ *Studia* and Monastic Itinerancy. The Case of S. Giusto in Volterra after the Black Plague

조선후기 금산 성곡서원의 창건과 운영*

이 경 동**

- I. 머리말
- II. 성곡서원의 창건과 사액
- III. 성곡서원의 운영과 그 특징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금산 성곡서원의 창건과 운영을 통해 兩湖 지역 서원 운영의 추이와 성격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곡서원은 금산군수였던 이안눌과 지역 사족들의 주도로 1617년(광해군 9) 건립되었다. 건립 당시 金旿, 尹澤, 吉再, 金淨, 高敬命, 趙憲의 6명을 선정하여 배향하였다. 서원의 사액은 1663년(현종 4) 韓秀臣의 주도로 청액소를 제출하여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선열 21인을 배향한 從容祠와 함께 사액되었다.

성곡서원의 院任은 洞主(堂中)-掌議-有司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금산 인근 지역에 위치한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원생은 입원생의 명단을 수록한 『星谷書院 菁莪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최대 195명에서 최소 12명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되었다. 향사는 仲春, 仲秋의 上丁일에 연 2차례 시행했는데, 院中의 대소사를 향사와 함께 결정하는 사례들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서원의 주요한 모임의 하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學規를 별도로 제정하여 서원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5787). 이 논문은 2023년 7월 5일 “금산의 유현을 모신 성곡서원의 역사와 자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geistkd@hanmail.net

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유태의 「星谷書院儒生勸學規」와 같이 講會 및 責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원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외부 인사가 성곡서원을 방문한 사례는 『尋院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심원록』은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방문한 총 711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배향인물 6인의 후손이나 양호 지역에 위치한 주요 가문들의 방문 빈도가 높다. 이들은 금산을 경유하는 과정이나, 향사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곡서원을 방문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곡서원은 금산 지역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으로서 尊賢과 養士의 양대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외부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위상을 획득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星谷書院, 錦山, 李安訥, 金侁, 尹澤, 吉再, 金淨, 高敬命, 趙憲

I. 머리말

書院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주요 교육 기관의 하나이다. 조선초기 관학으로서 鄉校가 전국 군현에 설립되었지만, 교관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 방식 전반의 약화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¹⁾ 16세기부터 조선사회에 출현한 서원은 尊賢養士를 기본 목표로 향촌사회의 교육 기능을 수행해 갔다. 이후 서원은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儒疏·萬人疏의 疏廳 역할을 수행하거나 門中書院과 같은 사족의 결집처로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향촌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²⁾

1) 이범직, 「朝鮮 前期 儒學教育과 鄉校의 機能」, 『歷史教育』 20, 1976 ; 김정신,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 『중원문화연구』 13, 2010 ; 신동훈, 『조선 초기 향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2)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

조선후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다양한 서원이 건립되는 경향 속에서 鎭山 지역도 서원·사우가 건립되었다. 1908년(융희 2) 간행된 『增補文獻備考』에 의하면, 금산 지역에는 星谷書院(1617년 건립), 從容祠(1647년 건립), 別祠(미상), 鄉祠宇(1680년 건립)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³⁾ 금산 지역은 조선 후기 다른 郡邑에 비해 그 수치는 높지 않지만, 서원과 사우를 중심으로 사족 활동이 이루어졌던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성곡서원은 금산지역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의 하나이다. 1617년(광해군 9)에 지방유림의 公議로 건립되었으며, 金旿·尹澤·吉再·金淨·高敬命·趙憲을 배향하였다. 1663년(현종 4) '星谷'으로 사액되면서 금산의 대표 서원으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건립을 전후로 李惟泰·宋時烈·俞槩 등 호서지역 山林들이 성곡서원에서 활동했던 사례들도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성곡서원은 금산의 교육과 함께 사족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성곡서원과 관련한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에 분포하는 서원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었다.⁴⁾ 해당 연구들은 성곡서원 자체보다는 금산 지역 서원의 분포와 그에 대한 일반설명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 성곡서원의 배향인물에 대한 연구,⁵⁾ 성곡서원 관련 고문서에 관한 개략적 현황을 소개한 연구 등이 있다.⁶⁾ 冶隱 吉再의 배향서원과 관련하여 설립 경위

閣, 2001 ;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3) 『增補文獻備考』 第212卷, 學校考10, 各道祠院2, 全羅道, 鎭山. 이외에도 금산에는 산천재서원, 용강서원, 청풍사, 반계서원, 류곡서원 등이 있었다. 해당 서원들은 18세기 이후 조정에서 추진된 서원 훼손 정책에 따라 치폐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홍계연, 「금산향교 소장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鎭山의 재지세력」, 『역사와담론』 88, 2018, 130~134쪽).

4)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忠南의 書院·祠宅』, 충청남도, 1999 ; 이동인,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당, 2001 ; 한국서원연합회 편, 『韓國書院總覽』, 한국서원연합회, 2011.

5) 이정오, 「충암(冲庵)을 배향(配享)한 서원(書院)」, 『충청문화연구』 19, 2017.

6) 금산문화원 편,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등을 분석하면서 성곡서원에 주목한 연구들도 확인된다.⁷⁾ 특히 길재의 배향 서원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성곡서원이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곡서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성곡서원이 금산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이었으나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에 의해 文廟從享人·忠節人을 중심으로 ‘一人一院’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성곡서원과 관련한 자료는 『星谷書院 菁莪錄』(18세기 추정), 『尋院錄』(18세기 전반), 『尋院錄』(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 『六賢配享繩典序』(1933년), 『星谷書院事疏儒』(1894년 추정) 등 제한적인 점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곡서원은 금산 지역의 최초 사액 서원이자 향촌 교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금산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원이 향촌사회 사족활동의 중심지라는 점에 주목해 볼 때, 성곡서원과 관련된 연구는 금산 지역 사족 활동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관찬사료나 문집, 고문서 등을 중심으로 성곡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성곡서원을 둘러싼 금산지역 사족 활동의 구체적 실상을 복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성곡서원의 창건과 사액

성곡서원은 금산 지역 사족의 주도로 1617년(광해군 9) 건립되었다. 이후 1663년(현종 4) ‘星谷’으로 사액되었다. 성곡서원의 건립과 사액에 관한 정보는 조선시대 서원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들에서 확인된다. 배향인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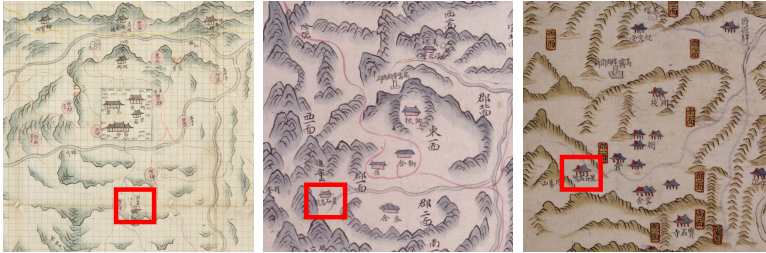
7) 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韓國書院學報』 15, 2022 ; 이경동, 「朝鮮時代 治隱 吉再에 대한 인식과 위상」, 『嶺南學』 84, 2023.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당 자료에서 제시한 건립 및 사액 등에 관한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다.

〈표 1〉 조선시대 서원 관련 자료에 나타난 성곡서원 관련 정보

자료	편찬시기	주요 정보
東國輿地志	1656	건립 - 광해군대 (邑人에 의해서 건립) 위치 - 進樂山 東北, 萬德寺 洞口
列邑院宇事蹟	1759~1760	건립 - 1613년(癸丑, 광해군 5) 봉안 - 1617년(丁巳, 광해군 9)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위치 - 郡의 남쪽 進樂山下, 尹澤의 遺址(栗亭)
書院可攷	18세기 후반	건립 - 1617년(丁巳, 광해군 9)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위치 - 郡의 남쪽 진악산하(進樂山下)
燃藜室記述	18세기 후반(추정)	건립 - 1617년(丁巳, 광해군 9)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錦山郡邑誌	18세기 후반(추정)	건립 및 사액 정보 없음 위치 - 郡(郡)의 남쪽 10리(里)
俎豆錄	19세기 중반	건립 - 1617년(丁巳, 광해군 9)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輿圖備誌	1853~1856년경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위치 - 治南의 10리
大東地志	1861~1866년경	건립 - 1617년(丁巳, 광해군 9)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增補文獻備考	1908	건립 - 1617년(丁巳, 광해군 9) 사액 - 1663년(癸卯, 현종 4)

〈표 1〉에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 건립과 사액 그리고 서원의 위치 등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대체로 건립은 1617년에 사액은 1663년에 이루어졌으며, 서원의 위치는 邑治의 남쪽 10리에 위치한 進樂山 인근으로 여겨진다. 18세기에 편찬된 고지도를 통해 성곡서원의 대략적인 위치를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호남지도』(18세기) 〈그림 2〉 해동지도(18세기) 〈그림 3〉 광여도(18세기)

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곡서원의 위치는 읍치의 남쪽 진악산 인근으로 추정된다. 지도에 따라 위치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화법과 구도의 차이로 이견 등의 큰 변화없이 창건이후 본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원 건립 경위에 대해서는 『列邑院宇事蹟』 星谷書院 조항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郡의 남쪽 進樂山 아래에 있는데 栗亭 尹先生(尹澤)의 舊址 인근이다. 선생께서 치사하고 돌아오시고 나서 진락산 중턱에 머무르셨는데 옛 터가 宛然히 존재한다. 東岳 李公(李安訥)이 군수로 재임할 적에 多士들의 청에 따라 遺址의 옆에 서원을 건립하고 여섯 선생들을 배향하였다…(중략)…萬曆 癸丑年(1613) 창건할 적에 군수 이안눌이 실로 도왔고, 萬曆 丁巳年(1617)에 봉안할 적에는 군수 金元祿이 주관하였다.⁸⁾

성곡서원은 1613년(광해군 5) 금산군수로 재임하고 있던 李安訥과 인근 사족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서원이 위치한 자리는 본래 尹澤이 進樂山에 은거

8) 『列邑院宇事蹟』 全羅道2, 錦山, 「星谷書院」 “在郡南進樂山下 卽栗亭尹先生遺址之傍 盖先生致仕而歸 棲遲于進樂山中 遺墟宛然 東岳李公爲郡守時 循多士之請 就遺址之傍 建書院并六先生而俎豆之 …… 創建萬曆癸丑郡守李安訥實相之 奉安萬曆丁巳九月日郡守金元祿主之”

하면서 기거한 栗亭이 위치했던 장소로서, 이안눌이 금산 사족들의 청원에 따라 율정의 遺址 인근에 서원을 짓게 되었다. 서원은 癸丑年인 1613년에 건립이 착수되었고, 위패의 봉안은 이안눌의 후임인 金元祿에 의해 1617년(광해군 9)에 완공되었다. 『열읍원우사적』의 내용에 근거하면, 1613년에 서원 건립이 착수되고 1617년 최종적인 서원 건립이 완료된 후 위패를 봉안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곡서원의 배향인물은 金旸·尹澤·吉再·金淨·高敬命·趙憲의 6명으로 건립과 동시에 並享되었다. 배향인물의 선정은 특별한 논의과정을 파악할 수 없어 그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금산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던 인물들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건립초 배향인물을 배향한 이후에는 별도의 追享이 있지는 않았다.

배향 인물들은 대부분 금산에 거주했거나 금산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율택, 김신, 길재, 김정은 금산에 은거한 인물들이며, 고경명과 조현은 임진왜란 당시 금산전투에서 전사한 인물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성곡서원에서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금산 지역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인물을 선정하면서 금산을 상징하는 인물의 배향 서원으로서 위상을 획득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원 건립에는 인근 지역의 지방관들과 저명인사들의 참여가 확인된다. 記文은 군수였던 김원록이, 題詠은 이안눌과 서산군수 김대덕이, 學規는 이유태가 찬하고 진보현감 이진병이 썼으며, 院規는 이유태가 찬하였다.⁹⁾ 대부분 금산·서산·진보 등 인근 지역의 지방관들이며, 이유태의 경우는 창건을 주도한 이안눌의 同宗으로 건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원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서원 건립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은 서원 훼손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가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아 그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서원 내부 구

9) 『列邑院宇事蹟』 全羅道2, 錦山, 「星谷書院」 “院記 金公元祿撰 題詠 李公安訥撰 瑞山郡守金公大德撰 …… 學規 草廬李先生撰 眞寶縣監李震炳書 院規 草廬李先生撰”

정을 의미하는 院規와 더불어 원생의 학문과 규율을 정한 學規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규가 서원의 운영 전반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학규는 講學, 居齋 등 원생의 교육방식과 행동규범을 규정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원규와 학규가 분화된 양상은 서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으로 미루어보아, 성곡서원의 운영에서 강학 등의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¹⁰⁾

건립 당시 관련 자료 중에서 성곡서원의 건립에 군수로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李安訥의 문집인 『東岳集』에는 성곡서원 건립 당시 작성한 題詠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錦山郡의 諸生들이 금산 지역을 살펴보고서, 이에 진락산 동북쪽 기슭 萬德寺의 洞谷을 ‘星谷’이라고 부르고 새롭게 사우를 건립하여 김참정, 윤율정, 길야은, 김충암, 고제봉, 조중봉의 여러 선현들을 향사하는 장소로 삼았다.】

進樂山前谷號星	진악산 앞골짜기 성곡이라 부르니,
廟宮新闢儼丹青	廟宮이 새로 지어지니 단청이 선명하구나
朝廷自昔褒參政	조정에서는 옛날부터 참정을 포중하였고,
父老如今誦栗亭	父老들은 지금도 栗亭을 칭송하는구나
冶隱冲菴留軌躅	야은, 충암이 여기에서 자취를 감추고,
霧峯提督凜英靈	제봉, 제독은 영령이 깃들어 있구나
崇賢本要鄉風勵	현인을 숭상하는 본뜻에 鄉風이 진작되어,
芹藻千年好薦馨	芹藻 천년에 그윽한 향기 좋도다 ¹¹⁾

10) 院規와 學規를 이원적으로 운영한 사례는 초기 서원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17세기 이후부터 일부 서원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魯城 魯岡書院의 경우 원규와 함께 재규(齋規)를 두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 深谷書院·忠烈書院·石室書院 등 경기지역 서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확인된다(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2021 ;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遯巖書院, 魯岡書院, 竹林書院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81, 2022). 이러한 점은 성곡서원의 운영에서 교육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11) 『東岳先生集』 卷10, 錦溪錄, 「題星谷書院」.

이안눌의 제영을 통해 보면, 星谷의 명칭은 서원이 건립된 지역을 따라 명명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배향인물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원의 건립 의미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원의 사액은 서원 건립 이후 50여년이 지난 1663년(현종 4)에 이루어졌다. 사액은 韓秀臣 등 금산지역의 사족들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사액의 정당성 및 목적은 아래의 請額疏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도를 중시하고 현인을 숭상하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國學과 鄉校는 한결같이 中朝를 따라 先聖과 先師를 追享하는데, 우리나라의 名儒에 미쳐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道德·學問·忠孝·節義로 표창하여 후세에 師法으로 삼아야 할 자들은 각기 그 향촌에서 서원을 건립하고 額號를 宣賜하니 이 어찌 태평한 시대의 훌륭한 일이며 여러 선비들이 흥기할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臣 등이 거주하는 지역은 비록 심히 僻遠하나 名賢이 많이 배출되어 예부터 풍속이 淳厚하다고 일컫는 것이 그 유래가 있습니다.

(b) 참정 김신이란 이가 있는데 고려 사람으로 덕행이 있습니다...(중략)...문정공 윤택은 本州 사람으로 학행이 세상에 알려졌으며, 고려 조정에 사환하여...(중략)...길재의 호는 야은인데 전조의 注書로 다시 아조에 벼슬하지 않아 세칭 동방의 伯夷라 합니다. 선왕께서 그 절의를 포창하시어 그 집을 부역에서 면제해 주고 또 그 자손을 등용하였습니다. 그의 학문은 文忠公 鄭夢周 등 여러 어진 이에게서 나와 성대하게 한시대의 큰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취한 바가 이와 같으니 일월과 함께 빛을 다룰만하며, 그 풍도를 들으면 나약한 사람도 뜻을 세우니 백세의 스승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본읍은 그가 왕래하며 노닐던 곳이며 그 어머니와 부인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중략)...문간공 김정은 絕異의 자질로서 삼대의 학문을 추구하고 종종대 丕世의 만남에 감응하여 문정공 조광조와 함께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중략)...충렬공 고경명은 응응의 자질로서 문학의 뛰어남을 겸비하여 백가 구류의 책을 추구하지 않은게 없었고 상수학에 더욱 밝았습니다...(중략)...문열공 조현은 문성공 이이에게 수학하여 개연히 요순이 지향했던 君民의 뜻이 있어 늦게 태어나 옛것을 좋아하고, 중화를 사모하고 오랑캐를 천히 여겼는데, 直道로 세상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沃川의 田廬에서 退去하고 성현의 학문을 연마하고 性理書를 침

잡하여...(후략)...

(c) 옛 판서 臣 李安訥이 군수가 되어 여러 선비들의 뜻을 따라 군의 10리가량 되는 곳에 서원을 건립하여...(중략)...본군의 서원에서 배향하는 인물들은 모두 충효와 도학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殉義堂에서 배향하는 절의의 선비들은 모두 선조에서 일찍이 포승, 증작, 정려했던 자들입니다. 祠宇가 있는 곳에는 모두 액호를 내려주라는 명이 있었는데, 유독 本郡에 세워진 곳에는 제외되었으니 어찌 聖朝의 欠典으로 많은 선비들이 꺼리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엇드려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선왕의 功烈을 크게 받드시어 다스림을 도모하심은 매우 절급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시니 忠義로운 선비들로 하여금 모두 今日에 展力함이 있기를 바라신다면 마땅히 기왕의 것은 포중하여 후래자들을 권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천리를 마다하고 머리를 들어 한번 울부짖사옵니다. 무릇 院宇가 편액이 있거나 없거나 죽은 자에게는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은 전하의 일입니다. 엇드려 청하옵건대 該曹에 명을 내리시어 특별히 서원의 액호를 宣賜해주시고 또 殉義堂의 액호를 내려주신다면 보고 듣는 자들이 기뻐할 것입니다.¹²⁾

청액소는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중국 서원과 다른 조선 서원 배향인물의 차이점이다(a). 조선시대 서원은 관학인 成均館 및 鄕校와 비교하여 배향인물의 차이가 있었다. 관학은 대성전에 공자를 비롯한 배향 인물이 규정된 반면, 사학인 서원은 지역 및 학맥과 관련된 동방의 유현을 배향한다는 점에서 서원 구성원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향인물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은 孔子·孟子 등 先聖과 당대의 유학자인 時賢을 함께 배향했던 중국 서원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데,¹³⁾ 특히 지역과 연관된 인물을 배향하면서 지역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조선시대 서

12) 『草廬先生文集』 卷4, 「錦山星谷書院請額疏(己亥疏頭韓秀臣)」

13) 중국의 대표적인 白鹿洞書院, 嶽麓書院, 崇陽書院의 경우 강학 영역과 함께 별도로 大成殿을 건립하여 孔子 및 先聖들을 배향하고 있다. 지역과 연관된 인물들이나 時賢에 해당하는 유학자들은 대성전과는 별도로 복합형으로 조성되어 있다. 중국 서원의 배향 인물 및 제향 공간과 관련해서는 鄧洪波, 「岳麓書院祭祀四記」, 『한국서원학보』 15, 2022 참조.

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¹⁴⁾ 따라서 청액소에서는 금산을 대표하는 6인을 배향하는 서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들의 행적과 실천을 본받아 금산의 사족들을 양성하는 서원을 사액받고자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서원 건립의 당위성에서 주목되는 것은 배향 인물이 가지는 상징성이다(b). 金旒을 비롯하여 6명의 배향인물이 가지는 학문적 수준과 行誼를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특정 학맥·정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 아니라 금산이라는 지역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김신과 윤택은 고려시대 인물로서 금산과의 연고가, 길재·김정은 정몽주에서부터 조광조로 이어지는 동방 도통의 한 흐름과 함께 이들이 금산과 연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고경명·조현은 금산 지역에서 발생한 왜군에 대한 항전이 주요한 배향 이유였다. 배향 인물들은 금산이라는 지역과의 관련성에 따라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강조점은 금산 지역에 아직까지 사액된 서원이 없었으며, 종용사와 함께 사액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c). 금산 지역에 사액 서원이 없다는 것은 국가의 欠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곡서원의 사액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성곡서원과 함께 從容祠의 사액을 동시에 추진했다. 종용사는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21인의 선열을 모신 祠宇로서 임진왜란 과정에서 희생한 인물들의 충절을 상징하고 있다. 종용사 또한 금산전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우였으며, 이와 성곡서원을 동시에 배향한다는 점은 지역 서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충절 개념을 기반으로 사액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엿볼 수 있다. 두 院宇를 동시에 사액하려는 시도는 청액소를 제출하기 2년 전인 1661년(현종 2)에 이유태가 禮曹判書였던 鄭知和와 서간을 통해 성곡서원의 사액이 추

14) 조선시대 건립된 서원 중에서도 白鹿洞書院이나 關里祠 등 공자 및 주희를 배향한 서원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배향 인물 선정의 방향은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 혹은 文廟從享人 등이었다. 이외에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이황, 이이, 송시열 등 학파의 종장을 배향한 서원이 존재한다(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이병훈, 「16세기 한국 서원의 출현과 정비」, 『한국서원학보』 10, 2020). 이러한 점은 大成殿 등 공자를 비롯한 주요 성현을 배향한 사우를 별도로 두고 있는 중국 서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진되던 초기 단계부터 중용사와의 공동 사액을 목표로 하였다.¹⁵⁾ 실제로 두 院宇의 동시 사액은 조정에서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청액소에 대한 예조의 回啓에서도 사액의 중복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액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청액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였다.¹⁶⁾

청액소의 제출과 조정 내부의 논의를 통해 성곡서원은 중용사와 함께 사액이 결정되었다.¹⁷⁾ 사액의 額板은 송준길에 의해 작성되었으며,¹⁸⁾ 별도의 명명없이 기존의 명칭인 '星谷'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액을 기리는 致祭를 위해 禮曹郎廳 鄭東燁이 파견되었는데, 치제관들이 한양에서 금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兵曹에서는 騎卜馬와 色吏의 騎馬 등을 지급하였다.¹⁹⁾

7월 15일에 성곡서원에서 치제가 이루어졌다. 모든 배향인물의 치제문이 모두 남아있지는 않으나, 『治隱集』에 수록된 길재의 치제문은 다음과 같다.

至如注書 特立高標	注書는 홀로 높은 표준을 세웠나니
砥柱頹波 貞松後凋	횡류를 거슬러 우뚝 솟은 砥柱와 같고 시들지 않는 貞松과 같네
獨扶綱常 炳如日月	혼자서 강상을 붙들어 일월처럼 빛나거니
一片烏山 萬古長青	금오산 한 모퉁이 만고에 푸르리 ²⁰⁾

- 15) 『草廬先生年譜』卷2, 辛丑(先生五十五歲) 六月, “與禮判鄭公(知和)書, 論錦山星谷書院從容堂請額事”
- 16) 『重峯先生文集附錄』卷7, 祠院, 星谷書院, 「星谷書院從容祠請額疏(顯宗朝癸卯○李惟孚)」 “禮曹回啓云云 文烈公趙憲之道學功業 精忠壯節 尤爲卓異 表表在人耳目 大有功於風教 宜其建之書院 以爲俎豆之奉 而尙稽賜額之舉矣 趙憲從容死節 而李光輿趙完基諸人 亦皆同時舍命 義聲俱彰 卽其殉節之地 分壇合享 作堂扁額 而因其已揭之號 冀蒙特賜之典 以耀聽 多士叫閭 有此陳請 并賜額號 顯加褒獎 實是勸後之道 似當依願施行 而如此重典 該曹不敢擅便 上裁何如 特施”
- 17) 『大東地志』卷11, 全羅道, 錦山, 「祠院, “星谷書院(光海主丁巳建 顯宗癸卯賜額)…從容祠(仁祖丁亥建 顯宗癸卯賜額)”
- 18) 『列邑院宇事蹟』全羅道2, 錦山, 「星谷書院, “書額 同春宋先生”
- 19) 『書院譜錄』癸卯 7월 초3일 馬文.
- 20) 『治隱先生續集』卷中, 附錄, 「賜祭文(顯廟癸卯七月十五日 禮官鄭東燁奉命致祭於星谷書院 宣額時全文中抄錄先生措語一段).

길재의 치제문을 통해 살펴볼 때, 백이·숙제와 연관되는 砥柱, 충절을 상징하는 貞松, 그리고 길재가 말년에 은거했던 金烏山 등을 시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인물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바탕으로 치제문을 작성했을을 유추해 볼 수 있다.²¹⁾ 길재의 치제문 이외에 다른 배향 인물의 치제문이 남아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길재의 사례를 미루어 보아 배향자 6인의 각기 다른 치제문이 작성되었을 것이며, 아울러 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수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성곡서원은 17세기 건립과 사액이 동시에 추진되며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해나갈 수 있었다. 금산지역 사족과 함께 이안눌을 비롯한 지방관의 노력으로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서인-산림계였던 이유태 등의 도움으로 서원의 원규, 학규를 비롯한 운영 전반이 확립될 수 있었다. 사액의 결과 성곡서원은 금산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자 사족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Ⅲ. 성곡서원의 운영과 그 특징

성곡서원은 건립 이후 금산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해갔다. 이러한 점은 성곡서원에서 이루어진 운영과 활동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성곡서원의 운영은 원임과 원생, 향사, 교육, 교류 활동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院任과 관련하여 李惟泰가 작성한 「星谷書院儒生勸學規」에 구체적인 내용을

21) 시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금산보다는 金烏山 등 영남지역 선산과 인동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금산은 본래 부친 吉元進을 안장하고 3년상을 지냈던 지역으로서, 富利面 姑洞에 길재의 후손들의 先塋이 조성되어 있었다. 아마도 길재의 사당인 淸風祠가 1711년(숙종 37)에 건립되기 시작하면서 금산 인근의 길재와 관련한 기념물들이 건립된다는 점에서 청풍사가 건립된 이전 시기에 추진된 치제에는 부득이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시문이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리면을 중심으로 한 길재와 관련된 정보는 김무진, 『구미야은 길재 종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157~164쪽 참조.

확인할 수 있다. 李安訥에 의해 서원 건립이 추진된 이후 서원 운영은 院長과 유사한 洞主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건립 직후 동주는 이유태의 伯父인 李時가 맡았고, 다음으로는 이유태의 형인 李惟澤이 맡았다.²²⁾ 배향인물이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정에 근거하여 특정 가문이 주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초기 서원의 운영은 건립을 주도했던 이안눌·이유태 가문을 중심으로 서원이 운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동주라는 명칭은 다양하게 변모하였다. 18세기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星谷書院 菁莪錄』에는 말미에 원임의 확인을 뜻하는 堂中과 掌議의 手決이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아 堂中이 洞主와 같은 원장직이거나, 동주와 장의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원임을 마련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²³⁾ 다만, 堂中으로 표현한 경우 2~3인이 동시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복수로 운영되었다.

洞主와 함께 원임으로 掌議와 有司가 있다. 英祖 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錦山郡邑誌』에 의하면, 성곡서원에는 장의 2인, 유사 2인 체제로 운영되었다.²⁴⁾ 성곡서원이 동주·장의·유사로 원임이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인근 지역의 서원 운영, 특히 서인계 서원들의 원임 구성과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이유태 등 성곡서원의 초기 운영에 참여한 대부분의 인물들이 西人系임을 고려해 볼 때, 院長-掌議-有司-直月的 체제로 원임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²⁵⁾ 다만, 일반적인 서인계 서원들은 원장이 직접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계나 학파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추대하는 반면에, 성곡서원의 洞主는 초기에 이안눌, 이시, 이유택 등 금산 인근에서 활동하는 사족이 선임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인계 서원의 원장 운영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점은 금산지역이 가진 지역적 특수성과 더불어 성곡서

22) 『草廬先生文集』 卷23, 雜著, 「星谷書院儒生勸學規」.

23) <표 3> 참조.

24) 『錦山郡邑誌』 書院, 「星谷書院」在郡南十里 主配享參奉金侁文貞公尹濼治隱吉再文簡公金淨忠烈公高敬命文烈公趙憲 賜額 掌議二人 有司二人 額內院生二十五人 額外無也).

25) 일반적으로 서인계 서원은 이이가 제정했던 서인계 서원의 원임 구성에 대해서는,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118~127쪽 참조.

원의 운영 자체가 중앙정계보다는 향촌내부에 지향점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성곡서원의 원임은 인근 지역 주요 서원들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금산 인근지역 주요 서원의 원임구성

지역	서원	원임(인원)	비고
鎭山	星谷書院	洞主(1)·堂中(2~3)-掌議(2)-有司(2)	장의-사족
連山	遯巖書院	院長(1)-掌議(1)-有司(2)-直月(1~2)	장의-연산현감
魯城	魯岡書院	院長(1)-掌議(1)-有司(2)-直月(1)	장의-노성현감
礪山	竹林書院	院長(1)-掌議(1)-有司(2)-直月(1)	장의-여산현감

〈표 2〉에서와 같이 금산 인근 지역의 서원들은 원장-장의-유사-직월의 기본 원임구성을 취하고 있다. 원임 구성의 유사성은 이 지역이 김장생 등 서인계 인물들이 활동하였으며, 『隱屏精舍學規』를 비롯한 이이의 서원관을 반영하여 서원을 운영했던 사실에 기인한다. 성곡서원도 원임 구성의 인근 지역 서원들과 유사성이 확인되는데, 서원의 실무 운영자인 掌議를 2인으로 구성한 점은 차이가 있다. 돈암서원 등 성곡서원 인근 서원들에서 장의는 서원이 위치한 수령이 겸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서원의 실무는 유사들이 수행했다. 이에 비해 성곡서원에서는 금산군수 혹은 인근지역 邑宰로서 장의 역임자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변 서원들의 운영 경향으로 미루어 장의 2인 중 1인은 지방관이 역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생은 원임과 함께 서원을 구성하는 주요 인원이다. 피교육자로서 서원 내에서 강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을 받으며, 교육 기관으로서 서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여준다. 『鎭山郡邑誌』에 의하면 額內院生을 25인으로, 액외원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²⁶⁾ 액내와 액외를 구분한 당시의 서원 원생의 구

26) 『鎭山郡邑誌』書院, 「星谷書院」在郡南十里 主配享參奉金侁文貞公尹澤治隱吉再文簡公金淨忠烈公高敬命文烈公趙憲 賜額 掌議二人 有司二人 額內院生二十五人 額外

성과 달리 성곡서원에서는 액내의 별도로 된 규정을 두지 않았다. 액내원생의 규모는 국가에서 규정한 숫자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래 1707년(숙종 33) 문묘 중향인을 배향하는 서원의 경우 30인, 사액서원일 경우 15인으로 원생을 제한하였다.²⁷⁾ 성곡서원의 경우 배향자에 문묘 중향인이 없는 사액서원으로서, 기준에 비해 10인의 액내원생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곡서원 입원생의 규모는 『星谷書院 菁莪錄』에서 확인된다. 『성곡서원 청아록』에는 입원생의 명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²⁸⁾

〈표 3〉 『성곡서원 청아록』에 기재된 입원생 명단

시기	인원			手決者
	금산	타지	총계	
(癸丑)	195	0	195	堂中(3) 梁○○ 全○○ 李○○ 掌議(2) 朴○○ 全○○ 有司(1) 趙○○
(甲寅)	40	1	41	堂中(3) 朴○○ 朴○○ 趙○○ 掌議(2) 李○○ 梁○○ 有司(1) 朴○○
(乙卯)	51	9	60	堂中(3) 全○○ 金○○ 金○○ 掌議(1) 李○○
丙辰	37	14	51	當中(2) 朴○○ 朴○○ 掌議(2) 朴○○ 李○○
丁巳	16	21	37	堂中(3) 朴○○ 朴○○ 全○○ 掌議(2) 朴○○ 李○○ 有司(2) 辛○○ 李○○
(戊午)	12	0	12	堂中(3) 朴○○ 朴○○ 梁○○ 掌議(2) 朴○○ 金○○

※ 괄호로 간지를 표시한 경우, 연도가 부기되지 않아 자료의 편철을 통해 추정된 것임

無也)

- 27) 『春官志』 卷1, 「書院(祠宇附)」 肅宗朝, “先是仁祖甲申 禮曹以入院儒生 多不學冗雜之徒 啓請一院毋過二十人上非時急之事 姑令置之 至肅廟丁亥 又定式 文廟從享大賢之院則三十人 賜額書院十五人 其後癸巳 又故(改)令減三十人爲二十人”
- 28) 『성곡서원 청아록』에는 간지를 제외하고 작성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어렵다. 『성곡서원 청아록』과 함께 남아있는 『성곡서원 심원록』과 유사한 시기인 18세기에 작성된 자료로 추정되나, 확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청아록』에 수록된 인물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원생은 매년 차이가 있었다. 많은 해에는 195명이, 적은 해에는 12명 정도가 入院하였다. 이러한 점은 『금산군읍지』에서 정해진 액내원생의 규모인 25인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원생의 운영은 시기별로 유동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산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유입된 원생들도 확인된다. 丁巳年의 경우는 총 입원생 37명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명의 타지 출신이 입원하였다. 타지 출신의 입원 경향은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서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과 더불어, 성곡서원이 타지에서도 유입될 정도로 교육적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곡서원 청아록』에는 수결과 더불어 ‘丙辰十二月初一日薦’ 혹은 ‘丁巳十二月二十七日薦’이라는 내용이 附記되어 있다. 해당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입원생은 원임을 포함한 서원의 구성원들에 의한 추천 방식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성곡서원 청아록』에 근거해 볼 때, 매년 12월에 입원생에 대한 추천과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원임에 해당되는 堂中, 掌議, 有司의 최종 결정으로 승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추천 방식은 원생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던 것과 동시에, 인근 지역 서원들의 입원 방식과 동일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한편, 『성곡서원 청아록』에는 원생의 입원과 黜陟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 중에서 향사에 관한 조항도 일부 확인된다. 春享을 2月初 10일에 시행했으며,³⁰⁾ 秋享을 8월에 시행했다는 내용이다.³¹⁾ 해당 내용에 근거할

29) 입원생의 선발 과정에서 추천과 최종 승인 과정은 금산 인근 지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산 정회당은 초시입격자 혹은 衆인이 共知한 자의 경우 입학 을 허락했으며, 여산 죽림서원은 書儒 2원의 추천과 有司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했다. 노성 노강서원은 입원을 위해 齋儒 10인의 完議를 거쳐야 했다(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81, 2022, 174~177쪽 참조). 추천과 원임의 승인 과정은 당시 보편적이었으며, 이는 성곡서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星谷書院 菁莪錄』.

때, 성곡서원의 향사일은 仲春, 仲秋의 上丁日로 시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祠宇의 位次와 관련해서 주향-종향의 관계로 하였는지, 6인을 並享 했는지는 현존하는 자료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일부 자료에서 향사의 축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복원은 가능하다.³²⁾ 향사일에는 원생의 黜陟이나 입원 등의 결정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점에서 원내의 대소사를 이 기간에 처리하였던 것도 알 수 있다.

원생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서원 내에서 강학을 포함한 주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서원이 養士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했는가의 주요한 척도가 된다. 성곡서원의 경우 講會錄·講紙 등 강학 활동과 관련한 고문서가 현존하지 않아 그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유태가 작성한 『星谷書院儒生勸學規』를 통해 단편적인 강학의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³³⁾ 그 내용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星谷書院儒生勸學規』에 나타난 원생 관련 주요 규정

구분	내 용
講會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講紙에 책에 읽을 곳을 표시하고 혹은 五六朔에 한곳에 모여서 나이 50 이상은 다른 사람의 강을 받고, 그 이하로 36세에 이르기까지는 臨講하여 文義가 不通하면 面責하고, 35세 이하는 암송을 하지 못하면 二物을 사용하고, 2년 동안 강회에 불참하는 자는 내쫓는다. - 50세 이상은 또한 이 모임에서 각자 『家禮』 1권을 가지고 서로 함께 講明하고, 중간에 諸生들과 함께 순서에 따라 연습을 하고 往往 鄉飲酒를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 1책이 다 마치면, 다시 다른 책으로 바뀌어서 조금의 間斷도 없게 하는데 날마다 계획하는 것은 부족하니, 달마다 계획하는 것은 여유가 있을 것이다. - 행하기를 6-7년간 하게 되면 사서감경을 모두 통독하게 될 것이니 泐科를 얻을 수 있다. 또 이것이 眞儒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것이니, 제생들은 힘쓸지이다.

31) 『星谷書院 菁莪錄』

32) 『治隱先生續集』 卷中, 附錄, 「星谷書院治隱先生常享祝」; 『重峯先生文集附錄』 卷7, 祠院, 星谷書院, 「春秋享祝文」.

33) 『草廬先生文集』 卷23, 雜著, 「星谷書院儒生勸學規」.

<p>郷社와 儒生의 관계</p>	<p>- 지금 郷所의 직임은 業儒들이 맡아워하지 않으니 門地나 才志에 있어 儒라고 해서 더 낫고 郷이라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니다. 양호는 영남과 다르니 儒의 한 자취가 郷所에 미침이 있으니 무릇 사람의 모임에 참여함이 없을 뿐이다. - 우리 고을이 근래에 선비들이 모두 학업에 힘쓰니 升庠한 자에 미처서도 또한 향임이 되더라도 이후에 유생으로 제외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城主가 말하기를, “학자는 각자 그 직무를 담고, 독서에 능한자가 있다면 어찌 감히 다른 임무로 흔들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절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였으니, 자기에 게 있는 것을 다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과 같이 할 수 없다.</p>
<p>責罰 규정</p>	<p>- 만일 혹 郷射堂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름이 講紙에 있는자는 齋任부터 通諭하고,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서원의 모든 구성원이 聯名하여 관에 고소하여 圖免하여도 무방하다. - 그렇게 되면 제생들은 각기 서로 학업에 스스로 힘쓸 뿐이니, 어찌 다시 怨尤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이에 怨尤할 일이 없을 수 없다면 무릇 자기에게 대하는 것은 엄하고 타인을 책벌하는 것을 박하게 하는 것이 옳다.</p>

「성곡서원유생권학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講會이다. 강회는 서원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성곡서원이 금산의 교육기관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강회는 사전에 講紙에 읽을 범위를 표시하고 5朔 내지는 6朔에 1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강회는 서원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50세 이상은 강회를 평가하고, 49세 이하의 구성원은 臨講하였다. 35세 이상으로 文義가 不通하거나, 35세 미만으로 암송을 하지 못하거나, 2년 이상 불참하는 경우는 각기 처벌을 받았다. 강회는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年齒로 구분하고 피평가자의 경우 다시 35세를 기준으로 2그룹으로 나눈다는 점은 세분화된 평가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³⁴⁾ 정기적인 강회와 함께 『家禮』

34) 이와 같이 서원 강학에서 講誦·試講의 상세한 구분과 상벌 규정은 18세기 李穡가 운영했던 서원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심곡서원의 경우 매달 강회를 개최하여 40세 이상은 臨講, 40세 이하는 背講을 하였으며, 背講 대상자의 경우 壯紙·筆墨과 같은 시상과 함께 面責이나 회초리 등의 처벌 규정을 두었다. 도기서원은 강회와 함께 春秋에 1차례씩 師長의 주관으로 試講을 개최하였다. 시강의 대상은 30세를 기준으로 臨講과 背講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었다(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2021, 542~549쪽). 이

를 읽고 鄉飲酒를 행하는 것은 金長生·金集을 중심으로 禮學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이 지역의 학풍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³⁵⁾ 이유태는 강회를 6~7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사서삼경을 모두 통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서원 강학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했다.

강회 규정과 더불어 鄉任과 서원 활동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이유태는 향임을 맡게 되면 士林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서원에서 활동하는 것에는 어떠한 규제도 가할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유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兩湖 즉 湖西와 湖南 지역에 통용되는 사례로서 「성곡서원유생권학규」를 통해 한 차례 더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원 내의 처벌에 대해서는 鄉射堂을 침해하는 경우 서원과 관련된 講紙에 포함된 인원이면 齋任이 타이르는 通諭와 서원의 구성원이 聯名하여 관에 고소하는 경우로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사당이 성곡서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자료상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향촌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향사당을 침해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서원의 구성원이 향사당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성곡서원유생권학규」를 통해 서원 내부 원생들의 활동의 내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강회와 같은 교육과 더불어 서원과 官의 관계와 향사당과 관련한 責罰 규정 등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의 역할과 더불어 향촌사회 사족 활동의 중심지로서 성곡서원이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사와 강학 이외에도 성곡서원을 중심으로 한 사족들의 교류 활동도 확인된다. 교류의 대표적인 자료가 『尋院錄』이다. 『심원록』에는 서원을 방문한

와 같이 강회의 평가기준이 세분화된 사례들은 18세기 이후에 집중되는 것에 비해, 성곡서원의 사례는 17세기 중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적용된 것이다.

35) 이경구,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 김태완, 「울곡학파의 예학」, 『울곡사상연구』 20, 2010 ; 김태환, 「사계 김장생의 예학과 사회정치사상」, 『울곡사상연구』 21, 2010 ; 김문준, 「김장생의 예학정신과 한국가정의 문화전통」, 『한국사상과 문화』 90, 2017.

사람의 인명을 포함한 출신지역, 관직, 방문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서원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족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영천 임고서원은 16세기에 연간 5~30명 내외의 인원이,³⁶⁾ 공주 충현서원은 17세기에 연간 4~18명의 인원이 방문했다.³⁷⁾ 안동 도산서원은 18세기에 연평균 200여명의 인원이,³⁸⁾ 경주 옥산서원은 19세기에 연평균 외지 229명, 본향 277명의 인원들이 서원을 방문하였다.³⁹⁾ 이러한 현상들은 시기별로 서원 방문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도산서원 등 학파나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족들의 방문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성곡서원에도 2종의 『심원록』이 존재한다. 첫 번째 『심원록』은 1723년(癸卯) 11월 초하루부터 1741년(辛酉) 7월 10일까지 총 417명이, 두 번째 『심원록』은 1757년(丁丑) 3월 22일부터 1811년(辛未) 8월 27일까지 294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심원록에 수록된 연도별 방문자 수

『심원록』 A ⁴⁰⁾		『심원록』 B ⁴¹⁾	
연도/간지	방문인원	연도/간지	방문인원
1723/癸卯	28	1757/丁丑	36
1724/甲辰	36	1758/戊寅	19
1725/乙巳	30	1759/己卯	24
1726/丙午	32	1760/庚辰	6
1727/丁未	27	1761/辛巳	5
1728/戊申	11	1762/壬午	4

36) 이종문, 「초창기 임고서원 연구」, 『한국학논집』 63, 2016.

37) 서흥석, 「충현서원 『심원록(尋院錄)』 분석」 『考古와 민속』 13, 2010.

38) 김명자, 「『심원록(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도산거원(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39) 이병훈, 「19세기 韓中서원 자료를 통해 본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慶州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한국서원학보』 14, 2022.

1729/己酉	20	1763/癸未	14
1730/庚戌	24	1764/甲申	7
1731/辛亥	19	1765/乙酉	6
1732/壬子	23	1766/丙戌	4
1733/癸丑	20	1767/丁亥	0
1734/甲寅	16	1768/戊子	2
1735/乙卯	18	1769/己丑	0
1736/丙辰	23	1770/庚寅	4
1737/丁巳	11	1771/辛卯	6
1738/戊午	16	1772/壬辰	5
1739/己未	32	1773/癸巳	2
1740/庚申	17	1774/甲午	1
1741/辛酉	14	1775/乙未	11
총계	417	1776/丙申	17
		1777/丁酉	1
		1778/戊戌	6
		1779/己亥	0
		1780/庚子	11
		1781/辛丑	4
		1782/壬寅	0
		1783/癸卯	0
		1784/甲辰	1
		1785/乙巳	4
		1786/丙午	6
		1787/丁未	0
		1788/戊申	6
		1789/己酉	7
		1790/庚戌	0
		1791/辛亥	4
		1792/壬子	12
		1793/癸丑	3
		1794/甲寅	4
		1795/乙卯	0
		1796/丙辰	0

1797/丁巳	0
1798/戊午	0
1799/己未	0
1800/庚申	1
1801/辛酉	0
1802/壬戌	3
1803/癸亥	11
1804/甲子	3
1805/乙丑	2
1806/丙寅	15
1807/丁卯	0
1808/戊辰	4
1809/己巳	1
1810/庚午	0
1811/辛未	12
총계	294

※ 자료 출처 : 금산문화원 편,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 40) 『심원록』 A의 경우, 해제에 의하면 작성 연대를 1783년(정조 7)로 추정하고 있다(금산문화원 편,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72쪽). 그러나 심원록 내 관료들의 방문과 이들의 관력을 살펴보면 이 자료는 1723년부터 1741년까지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심원록』에는 1724년(甲辰) 仲秋에 李宇夏는 鎭山郡守를 떠나면서 성곡서원을 방문하였는데, 1722년 금산군수로 부임하여 1724년까지 재임한 것이 확인된다(『承政院日記』 536冊, 景宗 2년 1월 22일 戊申 政事 …… 李宇夏爲鎭山郡守 ; 『承政院日記』 570冊, 景宗 4년 6월 11일 壬子 以備邊司 言啓曰 …… 取考諸道查狀 …… 全羅道鎭山郡守李宇夏爲居未). 1732년(壬子) 2월 22일 茂州府使 金東鼎이 성곡서원을 방문하였는데, 1731년 茂州府使에 제수되어 1732년에 재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承政院日記』 719冊, 英祖 7년 3월 18일 辛巳 金東鼎爲茂朱府使 ; 『承政院日記』 751冊, 英祖 8년 11월 5일 戊子 以備邊司 言啓曰 …… 取考諸道辛亥年捧未捧啓本 …… 茂朱府使金東鼎 別會米 居未).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본 자료는 1723년부터 1741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41) 『심원록』 B의 경우 관료의 방문이 없기 때문에 연대기 사료로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일부 방문자의 경우 ○○代孫이라는 표현으로 대략적인 인물의 생물연대가 확인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1757년부터 1804년까지의 자료로 추정된다.

『심원록』 A는 연평균 21.9명이, 『심원록』 B에는 연평균 5.3명의 인사들이 서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기적으로 『심원록』 A는 18세기 전반, 『심원록』 B는 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으로 이후 시기일수록 방문자의 빈도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서원을 방문하였으나 『심원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까지 고려하면 실제 방문 인원의 수치는 이보다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목적은 ‘禘謁·來謁·敬謁·拜謁’로 기재되어 알묘를 위한 것이었으며, 參祀 즉 춘추향사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외지에서 방문하기도 하였다.

가문이나 출신 지역이 확인 가능한 방문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우선 배향자의 후손이 방문하는 빈도가 높다. 이들은 某代孫·曾孫·外曾孫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신의 조상을 배향하는 서원으로서 인근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방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恩津宋氏·潘南朴氏·光山金氏 등 호서·호남 지역을 연고로 한 서인-울곡학과 계열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방문이 다른 지역 및 학파에 비해 높다. 이러한 점은 17세기부터 李惟泰 가문이 서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宋時烈 등 서인계 인물들의 방문들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⁴²⁾ 또한 18세기를 전후로 금산 지역의 사족들이 노론화 경향이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성곡서원 또한 서인-울곡학과 계열들의 영향 속에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⁴³⁾

서인-울곡학과 계열과 성곡서원의 관련성은 성곡서원에서 발송한 祭文에서도 확인된다. 유계의 제문을 성곡서원의 청액소를 주도했던 韓秀臣 등이

42) 『宋子大全附錄』 卷6, 年譜 5, 崇禎 42년 己酉 4월.

43) 물론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노소분기의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18세기 시점에는 금산의 노론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홍재연, 「금산향교 소장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鎬山의 재지세력」, 『역사와담론』 88, 2018, 133~134쪽). 이와 함께 배향자의 후손들이 청아록이나 심원록에 간헐적으로만 등장한다는 점에서 문중의 관여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한국서원학보』 15, 2022, 337쪽). 성곡서원은 배향자의 문중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으며, 오히려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높던 노론계의 주도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작성했으며,⁴⁴⁾ 尹文擧의 제문을 서원 유생들이 작성하기도 했다.⁴⁵⁾ 윤선거는 『重峰集』 간행에 성곡서원의 춘추향 제문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보낼 정도로 성곡서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⁴⁶⁾ 제문의 당사자들이 성곡서원의 건립과 사액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했던 이유대와 친밀한 관계였으며, 일정 기간 금산에서 강학활동을 했던 사실을 고려해보면, 성곡서원의 운영에도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⁴⁷⁾

국가 차원에서도 성곡서원은 금산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인식되었다. 정조대 『御定奎章全韻』 반포시에 금산에서는 從容祠와 함께 배포대상에 포함되었다.⁴⁸⁾ 전국적으로 배포된 『어정규장전운』의 대상 서원들이 각 지역별로 할당되었고, 금산에서 성곡서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금산을 대표하는 사액서원으로서 18세기 후반까지도 그 위상을 갖추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성곡서원의 운영은 인적 구성을 차지하는 원입과 원생, 그리고 직접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향사, 강학(강회), 교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菁莪錄』과 『尋院錄』을 통해 서원에서 활동하거나 방문했던 인사들은 금산 지역 이외에도 다양하며, 그 과정에서 성곡서원은 금산 지역 사족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었다. 특히 강회의 사실은 서원이 ‘尊賢’ 즉 향사에만 치중되었던 당시의 경향 속에서도 ‘養士’인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4) 『市南先生文集附錄』 卷3, 祭文, 「祭市南先生文(星谷書院儒生韓秀臣等)」

45) 『石湖先生遺稿』 卷8, 附錄下, 「祭文(星谷書院儒生)」.

46) 『古文書集成 4-坡平尹氏篇』, 「1636년 尹宣擧 簡札」 “重峰先生集刊役 已始於綾州云 而附錄中 當載義塚及星谷書院 春秋享祭文矣 右兩件祭文 使我膺載 故謹因其便 委告于執事者 幸卽臚出 淨寫付送于此便如何”

47) 이유대는 금산 유곡리에 文會堂을 건립하였고, 俞榮는 병자호란 이후 척화죄로 유배되어 윤선거와 함까 마하산 아래에서 산천재를 지으면서 강학활동을 하였다(홍제연, 앞의 논문, 2018, 129~130쪽). 다만, 17세기 후반 노소분기를 전후로 금산지역의 노론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경향에 따라 성곡서원에서도 소론보다는 노론계 인사들과의 교류가 주류를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48) 『日省錄』 정조 20년 8월 11일 癸未.

IV. 맺음말

이상에서 금산 지역을 대표하는 서원인 성곡서원의 창건과 운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성곡서원은 1617년(광해군 9) 건립, 1663년(현종 4) 사액으로 금산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자리잡았으며,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까지 尊賢養士의 양대 기능을 유지하였다. 서원철폐령 이후 성곡서원과 관련한 자료들은 대부분 유실되어 그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현존하는 자료를 토대로 성곡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원을 단순히 사립 교육기관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조선후기 서원의 피상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생각된다. 성곡서원도 교육기관으로서 강회를 비롯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접근은 건립 과정에서의 금산 지역 사족의 주도적 참여, 건립 이후 入院生과 방문자들의 지역적 다양성, 그리고 호서·호남지역의 학문적 경향과 성곡서원의 위상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료의 제한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는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내용으로도 성곡서원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은 일정부분 파악되었다고 여겨진다.

성곡서원은 훼손이후 복원되지 못하면서 遺墟址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성곡서원의 배향인물은 금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금산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이 인물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성곡서원은 이러한 인물을 배향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닮아가기 위해 존재했던 수많은 금산 사족들의 활동지로서, 그리고 향촌의 지식인 양성소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한 면에서 성곡서원의 이해는 곧 금산이 축적한 역사적·문화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 논문에는 금산향교와 성곡서원과의 관계, 산천재서원, 용강서원, 청풍사, 반계서원 등 금산지역에 건립되었던 서원들과 성곡서원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해당 부분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자료가

확보된다면, 성곡서원이 가지는 금산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星谷書院 菁莪錄』 『星谷書院 尋院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東國輿地志』 『書院可攷』 『書院稽錄』 『輿圖備誌』 『燃藜室記述』 『列邑院宇事蹟』 『俎豆錄』 『春官志』
『錦山郡邑誌』 『大東地志』 『增補文獻備考』
『東岳先生集』 『石湖先生遺稿』 『宋子大全』 『市南先生文集』 『冶隱先生續集』 『重峯先生文集』 『草廬先生文集』
『古文書集成 4－坡平尹氏篇』

2. 저서

- 금산문화원 편, 『금산지역의 고문서』, 금산문화원, 1997.
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集文堂, 1997.
이경구, 『17세기 조선 지식인 지도』, 푸른역사, 2009.
이동인, 『조선시대 충청지역의 예학과 교육』, 백산서당, 2001.
이수환, 『朝鮮後期書院研究』, 一潮閣, 2001.
이해준, 『朝鮮後期 門中書院 研究』, 경인문화사, 2008.
충청남도 문화관광과, 『忠南의 書院·祠宅』, 충청남도, 1999.
한국서원연합회 편, 『韓國書院總覽』, 한국서원연합회, 2011.

3. 논문

- 김명자, 「『尋院錄』을 통해 본 18세기 전반 陶山書院의 방문과 그 의미」, 『퇴계학과 유교문화』 53, 2013.
김문준, 「김장생의 예학정신과 한국가정의 문화전통」, 『한국사상과 문화』 90, 2017.
김정신, 「조선전기 향교의 정치·사회적 성격과 쇠퇴 원인」, 『증원문화연구』 13,

2010.

- 김태완, 「율곡학과의 예학」, 『율곡사상연구』 20, 2010.
- 김태환, 「사계 김장생의 예학과 사회정치사상」, 『율곡사상연구』 21, 2021.
- 서흥석, 「충현서원 『심원록(尋院錄)』 분석」 『考古와 민속』 13, 2010.
- 신동훈, 『조선 초기 향교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경동, 「조선시대 근기지역 서원의 강규와 강학」, 『민족문화논총』 79, 2021.
- 이경동, 「조선시대 논산지역 서원의 운영과 특징」, 『민족문화논총』 8, 2022.
- 이경동, 「朝鮮時代 治隱 吉再에 대한 인식과 위상」, 『嶺南學』 84, 2023.
- 이범직, 「朝鮮 前期 儒學教育和 鄉校의 機能」, 『歷史教育』 20, 1976.
- 이병훈, 「19세기 韓中서원 자료를 통해 본서원의 출입과 그 목적-慶州 玉山書院과 廣州 廣雅書院을 중심으로-」, 『韓國書院學報』 14, 2022.
- 이전오, 「충암(冲庵)을 배향(配享)한 서원(書院)」, 『충청문화연구』 19, 2017.
- 이종문, 「초창기 임고서원 연구」, 『한국학논집』 63, 2016.
- 임근실, 「조선시대 길재 제향 서원의 건립 추이와 성격」, 『韓國書院學報』 15, 2022.
- 홍제연, 「금산향교 소장 고문서를 통해 본 19세기 錦山의 재지세력」, 『역사와담론』 88, 2018.

Abstract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Seonggok-seowon in Late Joseon

Lee kyung-d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operating seowon in Chungcheong-do and Jeolla-do through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Seonggok-seowon located in Geumsan, Jeolla-do in late Joseon. Seonggok-seowon was founded in 1617 under the leadership of Geumsan-gun County Governor Lee Ahn-nul and local intellectuals. Along with the foundation, six figures, Lee An-nul (李安訥), Kim Sun (金旒), Yoon Taek (尹澤), Gil Jae (吉再), 金淨 (Kim Jung), Go Gyong-myong (高敬命), and Cho-hun (趙憲), were selected and enshrined. All of the figures enshrined wer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Geumsan. The official approval at the national level was promoted in 1663 (the 4th year of King Hyeonjong's reign).

Seonggok-seowon was operated by academy managers, and they consisted of three positions: Dongju (洞主), Jangeui (掌議), and Yusa (有司). They led the operation and education of the seowon, and it was similar to seowon located in the area near Geumsan. The students of the seowon can be checked through the books containing the list of enrolled students, and it was operated flexibly with students from a minimum of 12 to a maximum of 195 annually. The seowon's regular ritual rites were held twice, in the second and eighth lunar months, and as the majority of people related to the seowon attended

* Research Professor, Kongju University / geistkd@hanmail.net

the rites, various issues within the seowon were decided then. The regulations related to education present learning procedures and punishment rules for students in detail.

Seonggok-seowon was also visited from various areas outside. The existing guest books of the seowon contain total 711 people who visited there in the 18th century, and they are identified to have been the descendants of the enshrined figures, influential families in the region, and bureaucrats. They visited Seonggok-seowon while passing through the Geumsan area or for the purpose of attending the two regular ritual rites.

As described above, Seonggok-seowon as one of the private seowon representing the Geumsan area not only performed the functions of ritual rites and education but acquired a social status through the visits of outside people as well.

Key word : Seonggok-seowon(星谷書院), Guemsan(錦山), Lee Ahn-nu (李安訥), Kim Sun (金旻), Yoon Taek(尹澤), Gil Jae(吉再), 金淨(Kim Jung), Go Gyong-myong(高敬命), Cho-hun(趙憲)

논문 투고일: 2023. 11. 15 심사 완료일: 2023. 11. 30 게재 확정일: 2023. 12. 01

함양(咸陽) 남계서원(藍溪書院)의 장서(藏書) 운영

윤혜민*

- I. 머리말
- II. 남계서원의 건립과 장서의 확보
- III. 서원의 사액(賜額)과 장서의 확충
- IV. 전란(戰亂)으로 인한 장서의 소실과 복구
- V. 맺음말

【국문초록】

남계서원(藍溪書院)은 함양(咸陽)과 인근 지역의 사족 및 지방관의 협조로 건립되었다. 1552년(명종 7) 남계서원의 건립부터 1566년(명종 21) 사액(賜額)을 받기 전까지의 건립 초기 장서 목록을 살펴보면, 함양 및 인근 지역의 사족과 지방관의 기증이 주된 서적 확보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장서의 특징으로는 성리서(性理書)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과 이정(李楨)이 간행한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새로운 향촌 기구로 지방 사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정황과 성리서 위주의 지식 확산이 요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66년(명종 21) 남계서원이 사액을 받게 되면서, 서원의 장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사(頒賜)된 서적이 존재했고, 서원 자체에서 직접 구입한 서적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남계서원의 확충된 장서에는 경서류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성리서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정이 간행한 서적들이 다량 유통되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로써 당시 서적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던 지방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서책의 학술적 보급과 활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서원들보다 남계서원에서 이정의 간행 서적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남계서원이 학

* 건국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지역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은 건물을 재건하면서 소실된 서적도 복구해 나갔다. 이 시기의 서적은 주로 자체적인 구입으로 확보되었으며, 일부는 향교로부터 옮겨오거나 기증의 형식으로 입수되었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의 장서는 조선 학자들의 문집류가 다수 포함된 특징이 보인다. 조선 후기 개인 문집의 간행이 성행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계서원이 서적을 간행하는 지식인 집단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였다. 남계서원 또한 『문헌공실기(文獻公實紀)』와 『개암집(介庵集)』을 간행함으로써 편간 서책의 학술적 보급과 활용이라는 지식 문화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남계서원의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이 지방에서 지식인들에게 서적을 접하게 해주는 공적인 장소로 기능하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남계서원(藍溪書院), 사액(賜額), 이정(李楨), 문헌공실기(文獻公實紀), 개암집(介庵集)

I. 머리말

조선시대 서원(書院)은 선현(先賢)에 대한 제향(祭享)과 강학(講學) 활동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서원은 교육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장서(藏書)의 확보와 관리에 힘을 기울였다. 이는 각 서원의 원규(院規)에 공통적으로 서적의 보존을 위한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서원 밖으로의 서적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규정과 서적의 주기적인 점검 및 포쇄(曝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¹⁾

1) 周世鵬, 『竹溪誌』, 「雜錄後」; 盧慶麟, 『迎鳳志』, 「學規錄」; 李滉, 『退溪集』卷41, 「伊山院規」; 柳雲龍, 『吳山志』卷3, 「學規防檢」, 「學規點書」; 『院規』(1923),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참조.

서원은 서적을 매개로 지역의 지식인들을 결집시키는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원은 지식을 생산하거나 전파함으로써 주변의 지역인들에게 지식을 향유할 수 있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서원의 장서에 대한 분석은 해당 서원에서 활용한 강학 교재를 확인시켜 줌은 물론이고, 당시의 학문적 경향과 지식의 유통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지식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서원의 장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서지학계에서는 서원문고를 주제로 다룬 논문들이 제출되었다.²⁾ 역사학계에서 서원 장서를 검토한 개론적인 연구로는 서원의 도서관 기능에 집중한 연구,³⁾ 서원 기록 자료의 전승 상태 및 정리 현황을 다룬 연구,⁴⁾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를 탐구한 연구⁵⁾가 있다. 시기를 한정하여 16~17세기 영남지방의 서원을 대상으로 장서의 성립과 성격을 고찰한 서지학계의 논문⁶⁾과 16세기 간행·필사된 서원의 장서 관련 기록을 분석하여 그 현황과 특징을 파악한 역사학계의 논문⁷⁾도 있다.

특정 서원만을 분석한 사례도 나타나는데, 소수서원(紹修書院)⁸⁾·도산서원(陶山書院)⁹⁾·도동서원(道東書院)¹⁰⁾·옥산서원(玉山書院)¹¹⁾의 장서를 검토한 성

2) 이춘희 편, 『李朝書院文庫目錄』,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69 ; 김윤식, 「朝鮮朝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3)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4)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5) 이병훈,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6) 배현숙,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7)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8) 배현숙,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옥영정, 「죽계지(竹溪志)의 편찬과 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9) 옥영정,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

과이다. 다양한 서원들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들은 여러 서원의 장서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반면에, 개별 서원을 중점적으로 고찰한 논문들은 그 서원의 역사적 변천과 장서의 특징을 세밀하게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양측의 연구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남계서원(濼溪書院)의 장서를 고찰하고자 한다. 남계서원은 1552년(명종 7) 정여창(鄭汝昌)의 고향인 함양(咸陽)에 건립되었다. 이곳은 문묘(文廟)에 종향된 정여창을 모시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1566년(명종 21)에 사액(賜額)을 받고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에도 존속했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서원이다. 그러나 현재 남계서원에 관한 연구는 서원의 건립 과정과 활동을 개설적으로 다루거나¹²⁾ 정치적으로 서원의 주도 세력이 ‘북인계-남인계-노론계’로 변화하였음을 강조한 연구만이 발표되었다.¹³⁾

남계서원에는 장서를 수록하고 있는 『부보록(褒寶錄)』(1552~1931)이 남아 있어 주목된다.¹⁴⁾ 『부보록』의 앞부분에는 1552년(명종 7)부터 1684년(숙종

리, 2012 ; 최우경, 「안동 도산서원 광명실의 장서관리」, 『안동학』 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10) 이병훈,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김정운, 「18세기 도동서원의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11) 이병훈,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12) 윤희면, 「경상도 함양의 濼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 26, 남명학연구소, 2008 ; 김기주, 『남계서원-맑은 강물 같은 문화의 흐름』, 경인문화사, 2015 ; 오용원, 「남계서원의 건립과 개암 강익」, 『남명학연구원총서』 10, 남명학연구원, 2017.

13) 김기주, 「濼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남명학연구』 52, 남명학연구소, 2016 ;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14) 『부보록』(1552~1931) 이미지는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73~325쪽 참조.

10)까지 서책의 구비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뒷부분에는 「비망록(備忘錄)」이라 하여 1552년(명종 7)부터 1931년까지 미곡(米穀) 등 기타 물품의 납부 실태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서책과 물품의 보유 상황은 물론이고 입수 경위와 기증자 등도 열거되어 있어, 시기별 서적의 규모와 학문적 경향 및 서원의 운영과 관리의 실상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보록』을 중심으로, 남계서원의 시기별 장서의 경향과 운영 방식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남계서원의 건립 과정을 살펴본 후, 건립 초기 서적을 확보한 방법과 장서 규모를 검토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남계서원이 사액을 받게 된 경위와 반시(頒賜)를 비롯해 여러 경로로 입수된 서적들을 분석해 보고, 서적 유통의 측면에서 서원의 역할을 규명해 보려 한다. IV장에서는 전란(戰亂) 이후 남계서원의 장서 상태를 정경운(鄭景雲)의 『고대일록(孤臺日錄)』을 통해 제시하고, 이후의 장서 복구 과정과 소장 서적의 변화를 지식 문화적인 틀 속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존재 양식과 장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서원을 통한 지식 문화의 교류 양상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남계서원의 건립과 장서의 확보

1552년(명종 7) 함양의 남계서원은 강익(姜翼)의 주도로 건립되었다.¹⁵⁾ 강익은 정여창의 고향인 함양에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후학을 양성할 공간을 조성할 것을 발의하였다. 유림 박승임(朴承任)·노관(盧瀾)·정복현(鄭復顯)·임희무(林希茂) 등이 호응하면서, 서원의 건립이 추진되었다.¹⁶⁾ 남계서원의 건

15) 강익은 1552년(명종 7)부터 1567년(명종 22)까지 남계서원의 원장(院長)을 역임하였다(「藍溪書院經任案」(1552~1687),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6) 남계서원의 건립 과정은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참조.

립을 추진한 인물들은 대체로 함양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남명학파의 영향을 받은 특징이 있었다.

서원 공사 초기에 소요된 물력과 인력은 고을의 사족(士族) 및 함양군수(咸陽郡守) 서구연(徐九淵) 등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서원의 공역은 강당부터 시작되었는데, 서구연이 체차(遞差)되고 흥년이 든 데다 서원 건립에 소극적인 군수들이 부임하면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7년 뒤인 1559년(명종 14) 군수 윤확(尹確)의 후원으로, 서원의 공역이 재개되었다. 이때, 강당을 비롯한 곳간과 부엌 등의 부속 건물이 마련되었으며, 정여창의 위패를 모실 묘우(廟宇)의 공사도 시작되었다. 1561년(명종 16)에 묘우가 완공되고, 1564년(명종 19) 군수 김우홍(金宇弘)에 의해 동재(東齋)·서재(西齋)기 세워지면서, 남계서원은 30여 칸 규모로 서원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강익은 「남계서원기(藍溪書院記)」에서 10년 동안 서원의 공역을 부지런히 지휘하고 계획한 것이 함양군수를 지낸 서구연·윤확·김우홍의 세 인물임을 강조하였다.¹⁷⁾ 남계서원의 건립에 지역의 사족 못지 않게 관(官)의 지원도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나타내는 발언이다. 이는 강익이 감사(監司) 이상감(李相戡)에게 인재 양성의 수용(需用)에 대비하기 위해, 식염(食鹽)·어해(魚鱈)·어장(漁基)을 서원에 영속시켜 줄 것을 청했던 사례¹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서원의 운영에 있어 지방관들의 보조가 중요했음은, 남계서원이 기증 받은 내역을 담은 부보록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⁹⁾

17) 姜翼, 「藍溪書院記」, 『一蠹續集』 卷3, 附錄.

18)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19) 1555년(명종 10)부터 1559년(명종 14)까지 초창기 서원의 부조 내역을 담고 있는 『을묘년서원부보록(乙卯年書院褒寶錄)』을 예로 들면, 지례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禎), 함양군수 김응상(金應祥), 함양군수 조우신(趙又新), 산음현감(山陰縣監) 전운무(田胤武), 안음현감(安陰縣監) 박영한(朴永漢), 단성현감(丹城縣監) 정복시(鄭復始), 함양군수 윤확, 관찰사(觀察使) 이감(李戡), 관찰사 홍담(洪曇), 순창군수(淳昌郡守) 인명 미상 등의 수령이 지원한 내용이 보인다(「乙卯年書院褒寶錄」(1555~1559),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565년(명종 20)에는 완공된 서원에서 강학을 하는 데에 서적이 없고 재곡(財穀)이 부족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강익은 노관에게 서책을 구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 양홍택(梁弘澤)에게 재산을 모으는 책무를 맡게 하였다.²⁰⁾ 당시 서적과 재곡의 모금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원에 학도(學徒)들이 모여 강업(講業)하고자 했으나, 서적이 없고 재곡이 많지 않았다. 선생(강익)이 인재를 기를 수 없음을 크게 걱정하여 도암(徒庵) 노관에게 서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맡기고, 죽암(竹庵) 양홍택에게 재보(財寶)를 모으는 책임을 맡겼다. 시종 협력하여 마침내 이 일을 성취하니 서적이 모두 100여 권이 되었고, 재곡이 선비를 공양하기에 남음이 있었다. 선생이 이에 옥계(玉溪) 노진(盧禎), 구졸(九拙) 양희(梁喜) 두 선생과 상의하여 서원의 재곡을 각 경내(境內)의 서당 및 동내(洞內)에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기 혼례와 상례, 그리고 춘추(春秋)의 강신례(講信禮)를 행하는 데에 보태게 했다. 마침내 이것이 일향(一鄉)의 정식(定式)이 되었다.²¹⁾

남계서원의 건립이 시작된 1552년(명종 7)부터 노관의 책임 하에 서책을 구비하게 된 시점까지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에 보유한 장서의 현황은 『부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모록』에는 서적의 입수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적의 입수 순서대로 목록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적의 목록 가운데 1566년(명종 21) 남계서원이 사액을 받으면서 얻게 된 내사(內賜) 목록의 앞까지가 이 시기의 서원 보유 장서라고 추정된다.

20) 「남계서원경임안(藍溪書院經任案)」에서도 그들의 역할이 확인되며, 노관은 강의에 이어 1567년(명종 22)~1568년(선조 1) 남계서원의 원장을 지냈다(「藍溪書院經任案」(1552~1687),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1)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院中學徒, 交集講業, 而書籍無存, 財穀不多. 先生大懼無以養育人材, 以盧徒庵禎, 掌備書之任, 以梁竹庵弘澤, 典裒資之責. 終始協心, 克有成就, 書秩凡百餘卷, 財穀有裕於供士. 先生乃與玉溪九拙兩先生定議, 分院財, 各授境內書堂及洞內, 使之各助其昏喪, 而春秋行講信禮. 遂爲一鄉定式.”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 서적의 입수 경로는 크게 기증과 원비(院備)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기증은 주로 지방관과 함양의 사족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비는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서원의 건립 초기에는 공역으로 인한 물력의 소모가 많아 대부분의 서적들이 기증의 방식으로 구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서적 기증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함양군수를 지낸 서구연·윤확·김우홍의 기증 서적들이 나타난다. 서구연은 『주자어류(朱子語類)』 50권과 『계지(溪志)』 3권, 윤확은 『대전(大全)』 10권과 『언행록(言行錄)』 12권 및 『예기(禮記)』 16권, 김우홍은 『춘추(春秋)』 8권을 기증하였다. 남계서원의 원장(院長)인 강익과 서원의 서책·재산을 담당한 노관·양홍택도 각각 『심경(心經)』 1권, 『이학유편(理學類編)』 2권, 『통감소전(通鑑小傳)』 7권을 부조하였다. 또, 노관의 형인 노진(盧禎)은 담양부사(潭陽府使) 시절과 진주목사(晉州牧使) 시절에²²⁾ 각각 『십구사략(十九史略)』 8권과 『심경』 1부, 『의려집(醫閭集)』 3권과 『성리자의의(性理字義)』 1권을 기증하였다.

특히, 남계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함양 사족의 인물들이 서적의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노관·노진·강익·양홍택 등이 포함된 함양 개평(介坪)과 함양읍(咸陽邑)의 풍천노씨(豐川盧氏), 함양 거평(巨坪)과 국계(菊溪)의 진주강씨(晉州姜氏), 함양 송평(松坪)의 제주양씨(濟州梁氏) 등이 대표적이다.²³⁾ 이밖에 장성(長城)·나주(羅州)·순천(順天) 등의 지방관들을 비롯하여, 함양과 그 인근 지역의 사족들이 서적을 보태기도 했다.

이상을 바탕으로,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에 구비된 장서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2) 노진은 1561년(명종 16)에 담양부사, 1564년(명종 19)에 진주목사로 임명되었다(『明宗實錄』 卷27, 明宗 16年 3月 19日(己卯); 『明宗實錄』 卷30, 明宗 19年 閏2月 28日(辛丑); 盧禎, 『玉溪集』, 年譜).

23) 이들 가문은 모두 넓은 범위에서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김경선 외,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3·17쪽).

〈표 1〉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1552~1566) 장서 목록

	입수 경로	종류		입수 경로	종류
1	密陽府使 徐九淵	朱子語類 50卷	22	幼學 全大中	後集 4卷
		溪志 3卷	23	都事 金啓	近思錄 4卷
2	咸■郡守 尹確	大全 10卷	24	幼學 張伋	晦庵文抄 3卷
		言行錄 12卷			朱子封事 2卷
		禮記 16卷	25	羅州牧使 李俊民	朱子詩集 4卷
3	潭陽府使 盧禎	十九史略 8卷	26	都事 李求仁	宋鑑 12卷
		心經 1部			論語 7卷
4	幼學 鄭業	大學衍義 12卷	27	幼學 朴義卿	韋蘇州 2卷
5	幼學 朴承元	家禮 6卷	28	幼學 李德悅	性理群書 12卷
6	幼學 姜文弼	左傳 17卷	29	進士 朴忠侃	春秋 13卷
7	幼學 鄭復顯	伊洛淵源錄 2卷	30	幼學 張思善	杜詩 8卷
		小學 3卷	31	院備	詩傳 10卷
8	進士 姜翼	心經 1卷	32	學諭 林希茂	孔子通紀 2卷
9	幼學 盧祿	理學類編 2卷	33	幼學 李光祖	理學類編 2卷
10	幼學 陳克興	讀書錄 1卷	34	府使 李楨	通鑑 17卷
		孟浩然集 1卷	35	院備	二程全書 15卷
11	幼學 梁弘澤	通鑑小傳 7卷	36	尙州教授 姜霽	楚辭 2卷
12	幼學 申石潏	小學 2卷	37	晉州牧使 盧禎	醫問集 3卷
13	進士 崔樂壽	春秋 4卷			性理字義 1卷
14	長城縣監 趙惟誠	大學 1卷【大字】	38	學諭 林希茂	朱子年譜 2卷
15	進士 金禧年	理學類編 2卷	39	縣令 閔德鳳	性理群書 11卷
16	正字 都希寧	伊洛淵源續錄 2卷	40	府使 李楨	程氏遺書 8卷
17	幼學 李師瓘	文章軌範 1卷	41	都事 趙惟誠	唐鑑 5卷
18	幼學 李維	中庸或問 1卷	42	牧使 崔應龍	大學或問 3件
19	幼學 韓壽祿	性理大全 25卷	43	院備	朱子大全 80卷
20	幼學 ■翼臣	近思錄 4卷	44	郡守 金宇弘	春秋 8卷
21	幼學 鄭乘	陸宣公奏議 4卷			

※ 1552년(명종 7) 남계서원의 건립 시기부터 1566년(명종 21) 사액을 받기 전까지의 장서 목록임.

※ 『哀實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참조.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 장서를 보면, 『주자어류』·『근사록(近思錄)』·『성리

군서(性理群書)』 등 성리서(性理書)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십구사략』·『춘추』·『통감(通鑑)』 등의 역사서가 비중있게 소장되어 있었다. 서원에서 구입한 서적으로는 『시전(詩傳)』 10권, 『이정전서(二程全書)』 15권, 『주자대전(朱子大全)』 80권이 있었다. 서원에서는 권수가 많은 서적들을 위주로 구입했던 것으로 보이며, 경서(經書)와 성리서를 구비한 것을 볼 수 있다.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 장서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이정(李楨)이 간행한 서책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이다.²⁴⁾ 이정은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이황의 서원 보급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활발하게 서적을 유통시킨 인물이다.²⁵⁾ 이황은 기존에 풍기군수(豊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안향(安珦)의 고향에 설립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본인의 풍기군수 재임 시절에 사액받는 데에 큰 공을 세운 적이 있다.²⁶⁾ 이것이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인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남계서원도 축조된 것이었다.²⁷⁾

이정이 간행한 서책은 남계서원에 다른 인물들을 통해 기증되기도 하고, 순천부사(順天府使) 시절 본인에 의해 직접 기증되기도 했다. 이정의 간행 서적 중에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은 정복현(鄭復顯)이, 『독서록(讀書錄)』은 진극흥(陳克興)이, 『이락연원속록(伊洛淵源續錄)』은 도희녕(都希寧)이, 『주자시집(朱子詩集)』은 이준민(李俊民)이, 『의려집』은 노진이, 『공자통기(孔子通

24) 이정의 서적 편찬과 간행에 대해서는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1 ; 우정임,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 김학수, 「龜巖 李楨의 인적 네트워크 - 지식문화적 교유망과 '龜巖學統'의 實際-」, 『퇴계학보』 152, 퇴계학연구원, 2022 참조.

25) 우정임, 앞의 논문, 2008, 217쪽.

26) 『明宗實錄』 卷10, 明宗 5年 2月 11日(丙午).

27) 『明宗實錄』 卷33, 明宗 21年 6月 15日(甲戌).

紀』는 임희무(林希茂)가, 『당감(唐鑑)』은 조유함(趙惟誠)이 기증하였으며, 『정씨유서(程氏遺書)』는 본인이 기증하였다. 이때 기증된 서적들은 대부분 성리학자들의 어록·독서록·시집 등이었으므로, 성리학 지침서들이 유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남계서원의 건립은 함양과 인근 지역의 사족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여기에 지방관들의 협조가 이루어져 완성될 수 있었다. 남계서원의 운영과 서적의 구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부보록』을 통해 1552년(명종 7) 남계서원의 건립부터 1566년(명종 21) 사액을 받기 전까지의 건립 초기 장서 목록을 살펴보면, 함양 및 인근 지역의 사족과 지방관의 기증이 주된 서적 확보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장서의 특징으로는 성리서의 비중이 컸다는 점과 이정이 간행한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남계서원의 초기 장서를 구축한 방법과 서적의 성격을 통해 서원이 새로운 향촌 기구로 지방 사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정황과 성리서 위주의 지식 확산이 요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서원의 사액(賜額)과 장서의 확충

남계서원은 건립 초기에 지방의 사족과 지방관의 후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었지만, 보다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의 토지와 노비 분급 등을 통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여기에 더해 당시 남계서원의 원장인 강익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서원의 사우(祠宇)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합당해 진다고 주장하며, 도내를 순찰하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게 서원의 사액을 받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였다.²⁸⁾

28) 당시 경상도관찰사가 『개암집』 연보와 「남계서원경임안(1552~1687)에는 박계현(朴啓賢)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경상도선생안(慶尙道先生案)』에 의하면, 박계현은 1567년(선조 즉위)에 부임하였고, 강사상(姜士尙)이 1565년(명종 20)

지금 이미 사우를 세웠으니 마땅히 서원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제기(俎豆)를 마음대로 진설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청하는 바의 말씀을 올렸으나, 그 기미를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덕(德)을 좋아하는 현인(賢人)이 드물어 전달할 수 있는 때를 만나지 못했는데, 다행히 김후(金侯, 김우홍)가 수령으로 와서 힘을 입고, 또 상공(相公) 박계현(朴啓賢)의 관풍(觀風)을 만나 비로소 상달(上達)할 수 있었다.²⁹⁾

1566년(명종 21) 6월 서원의 사액을 받기 위해 강익을 소두(疏頭)로 하는 30여 명이 장고(狀告)하였고, 그것을 경상도관찰사 강사상(姜士尙)이 치계(馳啓)하였다. 그 장고에는 특히 남계서원의 사우 건립이 선조(先朝)의 유명(遺命)을 따른 것임이 강조되어 있다. 이어서 임고(臨臯)와 소수(紹修) 두 서원은 조정(朝廷)의 명이 있거나 사전(祀典)에 실린 것도 아는데 모두 사액 받고 서책·노비·토전(土田)을 하사받았으니, 선조의 유지(遺旨)에 의해 세워진 남계서원도 은전(恩錢)을 지극히 해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³⁰⁾ 최초의 사액 서원인 소수서원과 또다른 사액서원으로서 정몽주(鄭夢周)를 모신 영천(永川) 임고서원의 예에 따라 남계서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7월, 마침내 명종은 서원 옆으로 흐르는 시내의 이름인 '남계(藍溪)'를 따라 '남계서원'이라는 편액(扁額)을 내렸으며, 서책을 하사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였다.³¹⁾ 이때, 강익은 사액을 받는 데에 있어 중간에서 주선했던 함양 출신의 중앙 관료 노진·양희(梁喜)·이후백(李後白)이 실지로 힘이 되어주었다고 평하였다.³²⁾ 서원의 사액으로 인한 재정의 확보는 이후의 전사청(典祀廳)·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재임하였으므로, 당시 남계서원의 사액을 요청받은 경상도관찰사는 강사상으로 판단된다(윤희면, 앞의 논문, 2008, 371~372쪽 각주 17번 참조).

29)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今既立祠, 則當致祭於院, 而擅陳俎豆, 不合禮法, 故陳辭丐請, 不知其幾. 而世罕好德之賢, 未遇轉達之期, 幸賴金侯來守, 又遭朴相公啓賢觀風, 始得上達.”

30) 『明宗實錄』 卷33, 明宗 21年 6月 15日(甲戌).

31)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明宗實錄』 卷33, 明宗 21年 6月 15日(甲戌).

32) 姜翼, 『介庵集』 下, 附錄, 年譜.

상고(樓上庫)·서변고(西邊庫) 등 건물의 추가 건립³³⁾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액을 받은 후, 서원의 서적 또한 큰 폭으로 증대되었다.

사액서원에 서책을 반사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소수서원에 서책을 반사할 것을 청하면서, 설경(說經) 안수(安璫)가 “뜻 있는 선비들이 제반 서책을 박람(博覽)하고자 하나, 궁벽한 시골이라 서책이 귀하어 선비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책을 간행할 때 한 건(件)씩 반사하소서.”³⁴⁾라고 언급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지방에는 서책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서책이 절실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종대 지방에 서사(書肆)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절목(節目)까지 마련되었으나, 끝내 실현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³⁵⁾ 중종은 성인(成人)이 배우는 사서오경(四書五經)과 『사기(史記)』 등의 책은 모두 학자에게 요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서사가 없어 선비들이 필요한 책을 모두 가질 수도 없고 빌려보려 하다가 얻지 못하면 학업을 그만두는 자도 있다고 우려하였다.³⁶⁾ 행 부사과(行副司果) 어득강(魚得江)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어찌 여러 책을 널리 찍어 서사에 보내겠는가.’라고 하는데, 이는 서사를 한번 설치해 놓으면 서적들이 저절로 모여들어 마치 온갖 물건이 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처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³⁷⁾ 즉, 지방까지 서적의 보급이 긴요하게 요구되었던 상황과 나라에서 서책을 일단 제공해주면 그 후로 사회적인 호응이 있을 것이라는 선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장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원이

33) 「藍溪書院經任案」(1552~1687),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4) 『明宗實錄』 卷13, 明宗 7年 3月 28日(庚戌). “有志之士欲博覽諸書, 而窮鄉下邑, 簡策稀罕, 必貽有志之嘆. 請於印冊之時, 各頒一件.”

35) 『中宗實錄』 卷36, 中宗 14年 6月 8日(庚午), 6月 9日(辛未), 7月 3日(甲午), 7月 8日(己亥); 『中宗實錄』 卷44, 中宗 17年 3月 4日(辛亥), 3月 6日(癸丑).

36) 『中宗實錄』 卷87, 中宗 33年 3月 11日(甲申).

37) 『中宗實錄』 卷98, 中宗 37年 7月 27日(乙亥).

탄생할 수 있었고, 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초기 사액서원에 대한 국가의 서책 지원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계서원의 『부보록』에는 반사된 서적이 내사(內賜)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566년(명종 21) 사액이 이루어진 당시 『논어(論語)』 7권, 『맹자(孟子)』 7권, 『중용(中庸)』 1권, 『대학(大學)』 1권의 사서(四書)가 반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남계서원보다 앞서 사액된 소수서원과 임고서원에 공통적으로 반사된 서적은 사서오경이었다.³⁸⁾ 따라서 사액서원이 가장 먼저 하사받는 서적이 경서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남계서원에 내사 서적들이 입수되었다. 반사된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연도 파악은 어렵지만, 동일 시기에 기록된 다른 반사 기록들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³⁹⁾ 『부보록』에 실려 있는 내사 서적은 사서 외에 『주자대전』 95권, 『주자어류』 75권, 『국조유선록(國朝儒先錄)』 4권, 『정충록(精忠錄)』 3권, 『언해소학(諺解小學)』 4권 등 5종이 있다. 이 중에서 『주자대전』·『주자어류』·『국조유선록』은 1577년(선조 10) 옥산서원(玉山書院)에 반사되었으며, 『정충록』은 1585년(선조 19) 이황에게 하사되었다. 또, 『언해소학』은 1588년(선조 22) 도산서원(陶山書院)에 반사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서적이 반사된 해에 남계서원에도 함께 반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계서원이 사액 받은 이후의 장서 목록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내사에 이어 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액을 받은 후에 서원의 재정이 안정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원에서 직접 구입한 서적은 33종인데, 『주역(周易)』 14권, 『유주집(柳州集)』 21권, 『태백집(太白集)』 15권, 『서산집(西山集)』 17권, 『동문선(東文選)』 68권 등 권수가 많은 서적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내사와 원비 서적 외에 사족과 지방관의 기증 서적도 여전히 존재했다. 특히, 노진은 충청감사(忠淸監司) 시절에도 『의절(儀節)』 4권, 『감홍

38) 『明宗實錄』 卷13, 明宗 7年 4月 25日(丁丑); 『明宗實錄』 卷17, 明宗 9年 11月 2日(己亥).

39) 배현숙, 앞의 논문, 2016, 289쪽 참조.

시(感興詩)』 1권, 『연평문답(延平問答)』 2권, 『성리자의』 1권 등의 서적을 지속적으로 기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액 이전 53종의 서적을 구비하고 있던 남계서원은 사액 이후에 56종의 서적을 추가 확보하여,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丁酉再亂) 전까지 총 109종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된다. 『부보록』의 서적 목록 중 유학(幼學) 임희수(林希秀)가 『비간록(比干祿)』 1권을 기증한 내역 아래에 ‘이상 천질(千軼)의 서책은 만력(萬曆) 정유년에 왜노(倭奴)에 의해 불태워졌다(已上千軼萬曆丁酉爲倭奴所焚).⁴⁰⁾’라는 기록이 있어, 이를 구분점으로 삼은 것이다. 남계서원이 사액 받은 이후부터 정유재란으로 서적들이 소실되기 전까지의 확충된 장서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⁴¹⁾

<표 2> 남계서원의 사액 시기(1566~1597) 장서 목록

	입수 경로	종류		입수 경로	종류
1	內賜	論語 7卷	13	院備	家禮 2卷
		孟子 7卷			讀書錄 1卷
		中庸 1卷			樊川集 4卷
		大學 1卷			唐音 9卷
2	典籍 張範	春秋 7卷			兩山墨談 5卷
3	忠淸監司 盧禎	儀節 4卷			大學補遺 1卷
		感興詩 1卷			朱子實紀 5卷
		延平問答 2卷			朱子書節要 10卷
4	幼學 權汝謙	擊壤集 4卷			夙興夜寐箴 1卷
5	院備	周易 14卷			二程粹言 2卷
		紫陽集 10卷			翼傳 3卷
		大學講義 2件			秋江集 5卷

40) 『哀寶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41) 예외적으로, 『부보록』의 장서 목록 외에 기타 물품의 목록을 기록한 「비망록」에 1591년(선조 24) 감사(監司) 김수(金睟)가 『언해소학』 1권을 기증한 내역이 보인다. 『備忘錄』, 『哀寶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通鑑前紀 4卷			朱子行狀 1部
		論孟或問 7卷			童蒙須知 1卷
		小學日記 3卷			大廣益會 3卷
6	縣監 金淸	周易 14卷			皇明名臣言行錄 4卷
7	郡守 李長榮	小學 2件			晦齋集 4卷
8	監司 朴大立	大學 1卷			續蒙求 4卷
		中庸 1卷			選詩 10卷
		論語 7卷			歷代要錄 1部
9	監司 盧禎	性理字義 1卷			儀禮圖 10卷
10	幼學 李慶	上蔡語錄 1卷			柳州集 21卷
11	察訪 李榮春	禮部韻 1卷			太白集 15卷
12	內賜	朱子大全 95卷			西山集 17卷
		朱子語類 75卷			三蘇文 5卷
		國朝儒先錄 4卷			東文選 68卷
		精忠錄 3卷			陸放翁 2卷
		諺解小學 4卷	14	幼學 林希秀	比干祿 1卷

※ 1566년(명종 21) 사액 받은 이후부터 1597년(선조 30) 전란으로 소실되기 전까지의 장서 목록임.

※ 『哀實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참조.

남계서원이 사액된 이후의 장서를 보면, 건립 초기와 유사하게 성리서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두 시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립 초기보다 사액 이후에 경서류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건립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이정이 간행한 서적들이 남계서원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된다. 이정이 간행한 『의절』·『감흥시』·『연평문답』은 노진에 의해 기증되었고, 『독서록』·『주자실기(朱子實紀)』·『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이정수언(二程粹言)』·『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은 원비로 입수되었다. 특히, 노진은 건립 초기에 이정의 간행 서적인 『의려집』을 기증한 것에 이어, 사액 이후에도 3종의 이정 간행 서적을 유통시켰다.

16세기 이정이 간행한 서적이 24종인데, 남계서원의 건립 초기에 8종이 들어오고 사액 이후에 8종이 추가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총 16종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는 남계서원의 이정 간행 서적 확보율이 66.67%인 것으로, 여타의 서원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임고서원이 3종(12.5%), 옥산서원이 6종(25%)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정의 스승인 이황과 관련이 깊은 도산서원에도 11종(45.83%) 밖에 소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6세기 간행 서적의 보급 현황과 서적의 활용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남계서원이 지역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1566년(명종 21) 남계서원이 사액을 받게 되면서, 서원의 장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사된 서적이 존재했고, 서원 자체에서 직접 구입한 서적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남계서원의 확충된 장서에는 경서류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성리서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정이 간행한 서적들이 다량 유통되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남계서원의 서적 유통과 보유 상황을 통해, 당시 서적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던 지방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서책의 학술적 보급과 활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서원들보다 남계서원에서 이정의 간행 서적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남계서원이 학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지역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IV. 전란(戰亂)으로 인한 장서의 소실과 복구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남계서원에서는 7월에 일부 서책과 집물(什物)을 두류산(頭流山)의 무주암(無住庵)에 옮겨 보관하였다.⁴²⁾ 그러나 전란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서원은 묘우에 비가 새고 담장이 무너지

42) 『藍溪書院經任案』(1552~1687),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⁴³⁾ 서책 또한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서책의 상황은 정경운의 저작인 『고대일록』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정경운은 남계서원에서 1594년(선조27)부터 1603년(선조 36)까지 유사(有司)의 직임을 맡고 있었기에,⁴⁴⁾ 전란 중에도 빈번하게 서원을 방문하고 서책의 실상을 점검했던 것이다.

1595년(선조 28) 6월 7일, 정경운은 왜적이 무주암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그는 “계기(祭器) 및 제복(祭服)과 서책 등의 물건을 저 절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런 무뢰한 자들에게 도적질을 당했으니, 반드시 산실(散失)되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⁴⁵⁾라고 한탄하였다. 위기 의식을 느낀 정경운은 3일 후에 남계서원의 원장이었던 노사상(盧士尙)을 비롯하여 진경운(陳慶胤)·강응황(姜應穰)과 함께 논의하여, 서책을 실어 오기로 결정하였다.⁴⁶⁾ 서원으로 서책을 옮겨왔지만, 여러 차례 검열하는 과정에서 국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주자대전』 6권이 분실되는 등 서책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⁴⁷⁾ 이후, 정경운은 서원으로 가서 서책을 포쇄하거나 묘우의 담을 쌓는 등 관리와 복구에 노력을 기울였다.⁴⁸⁾

그러나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정경운은 진경운과 다시 서원의 서책을 옮기고, 정여창의 위판을 땅에 묻었다.⁴⁹⁾ 이윽고 왜군들은 함양까지 쳐들어와 분탕질을 하였다.⁵⁰⁾ 왜군이 물러간 후에 정경운은 서원의 유허(遺墟)를 찾았는데, 위판은 완전하게 보존되었으나 서책들은 모두 불에 타

43)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5年(乙未) 2月 1日(甲辰).

44) 『濶溪書院經任案』(1552~1687),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45)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5年(乙未) 6月 7日(戊申). “書祭器及祭服書冊等物, 藏于彼寺, 而遭此無賴之窃, 必散失無遺.”

46)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5年(乙未) 6月 10日(辛亥).

47)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5年(乙未) 8月 28日(戊辰).

48)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6年(丙申) 7月 10日(乙亥), 閏8月 8日(壬申).

49)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7年(丁酉) 8月 7日(乙丑).

50)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7年(丁酉) 8月 16日(甲戌), 8月 18日(丙子).

서 남아 있지 않았다.⁵¹⁾ 그는 개심사(開心寺)의 승려를 불러 서책의 일부를 감춘 곳을 물었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다.⁵²⁾ 전란이 끝난 후에 정경운은 서책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였다.

㉔ 서원의 서책을 점검해보니, 단지 『두시(杜詩)』만 전질(全秩)이 있을 뿐이고, 기타 『어류(語類)』나 『성리대전(性理大全)』은 반 이상 흩어져 없어졌고, 그 나머지는 전부 불에 타버렸으니, 너무 통탄스럽다.⁵³⁾

㉕ 서원에 가서 진경운과 함께 문적들을 펴서 조사하였다. 보존된 것은 기록하였는데, 파책(破冊)이 오십여 권이 남아 있을 따름이었다.⁵⁴⁾

1599년(선조 32) 남계서원에 남아있던 서적은 건립 초기 유학(幼學) 장사선(張思善)이 기증한 『두시』 8권과 유학 한수록(韓壽祿)이 기증한 『성리대전』 25권 중 일부, 그리고 함양군수를 지낸 서구연이 기증했던 『주자어류』 50권 중 일부나 국왕이 하사한 『주자어류』 75권 중 일부로 추정된다. 정유재란 이전 남계서원에 100여 종의 서적이 소장되어 있던 데에 반해, 전란 이후 겨우 3종만이 남아있던 것이다. 전란의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서적에 대한 복구는 서둘러 시행되지 못했다. 우선, 참혹하게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서원의 노비들을 위해 도사(都事)에게 쌀과 콩을 받거나 순찰사(巡察使)에게 소와 나무꾼 등을 얻을 뿐이었다.⁵⁵⁾

1600년(선조 33)부터는 서원을 나촌(羅村)에 이건(移建)할 것을 계획하였

51) 鄭慶雲, 『孤臺日錄』 卷2, 1597年(丁酉) 9月 11日(己亥).

52) 鄭慶雲, 『孤臺日錄』 卷3, 1598年(戊戌) 6月 21日(甲戌).

53) 鄭慶雲, 『孤臺日錄』 卷3, 1599年(己亥) 1月 28日(己酉). “搜見書院冊子, 只有杜詩全帙, 而其他語類及性理大全散失過半, 其餘盡焚, 可痛.”

54) 鄭慶雲, 『孤臺日錄』 卷3, 1599年(己亥) 4月 10日(己未). “往書院, 與陳君述繙閱文籍. 存者記之, 只餘破冊五十餘卷.”

55) 鄭慶雲, 『孤臺日錄』 卷3, 1599年(己亥) 閏4月 11日(己丑), 1600年(庚子) 11月 7日(丁未).

다.⁵⁶⁾ 이건은 1605년(선조 38)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면서 완료되었다.⁵⁷⁾ 이듬해에는 병화(兵火)로 소실된 편액을 다시 하시받아, 사액 서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가에서 표장(表彰)하는 뜻을 드러낼 수 있었다.⁵⁸⁾ 이후, 1612년(광해군 4)에는 본래 남계의 옛 터로 서원을 환건(還建)하였는데, 환건한 사적(事蹟)이 전부 사라져 그 내막은 전하지 않는다.⁵⁹⁾

한편, 서원을 재건해 가는 과정에서 서적도 조금씩 확보해 나갔다. 1604년(선조 37) 4월에 가장 먼저 원비로 『통감』 14권을 구입하였다. 원비인데도 특별히 『부보록』에 경상도도사(慶尙道都事) 박여량(朴汝樑)의 이름이 부기(附記)되어 있어,⁶⁰⁾ 그의 지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듬해인 1605년(선조 38)은 나훈에 정여창의 위판을 봉안하면서 일차 이건을 마무리 했던 때로, 본격적인 강학을 위해 향교(鄕校)의 서적을 옮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향교로부터 학습의 기본 서적들인 『논어』 7권, 『맹자』 7권, 『중용』 1권, 『대학』 1권, 『소학』 4권 등의 경서들을 우선적으로 들여왔다.

이어서 『부보록』을 보면, 1684년(숙종 10)까지 구비된 장서 목록이 실려있다. 이 시기 서적의 주요 입수 방법은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원비였으며, 간혹 기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의 장서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남계서원의 정유재란 이후(1597~1684) 장서 목록

	입수 경로	입수 연도	종류
1	院備	1604년(선조 37) 4월	通鑑 14卷

56) 『濼溪書院誌』(1935),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57) 鄭慶雲, 『孤臺日錄』 卷4, 1605年(乙巳) 3月 12日(丙戌).

58) 『宣祖實錄』 卷206, 宣祖 39年 12月 26日(庚申).

59) 『濼溪書院誌』(1935),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0) 『裒實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2	校中移送	1605년(선조 38)	論語 7卷
			孟子 7卷
			中庸 1卷
			大學 1卷
			小學 4卷
3	幼學 盧脊	1605년(선조 38)	晦齋先生年譜
4	左議政 奇自獻	1606년(선조 39)	德陽遺藁 1卷
5	院備	1606년(선조 39)	詩傳 10卷
6	栗峰察訪 姜縝	1611년(광해군 3)	或問大學 2卷
7	幼學 姜渭明	1614년(광해군 6)	心經 2卷
8	院備	1617년(광해군 9)	綱目 76卷
			朱子書節要 10卷
			大學衍義 12卷
			孟子 4卷
			唐音 4卷
		近思錄 4卷	
		1621년(광해군 13)	韻會 13卷
			三經釋義 1卷
			四書釋義 1卷
			孟子或問 2卷
			禮部韻 1卷
			南冥集 4卷
		1743년(영조 19) 重刊	文獻公實紀
1641년(인조 19)	高麗史 71卷		
	家禮 2卷		
1648년(인조 26)	小學諺解 4卷		
	禮記 20卷		
9	監司 李昞	1649년(인조 27)	朱文酌海 8卷
			書傳大文 2卷
10	院備	1663년(현종 4)	杜詩諺解
		1684년(숙종 10)	朱子大全 65卷
			心經 2卷
		德溪集 4卷	

※ 『부보록』의 정유재란 기록 이후에 있는 1604년(선조 37)부터 1684년(숙종 10)까지의 장서 목록임.

※ 『褒賞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 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참조.

『부보록』에 따르면, 전란 이후 남계서원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은 총 34종으로 파악된다. 경전류·성리서류·역사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기존과 유사하나, 1641년(인조 19)에 원비로 『고려사(高麗史)』 71권을 구입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의 장서 목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선 학자들의 문집류가 다수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남계서원이 조선 후기 개인 문집의 간행이 성행하였던 시대적인 흐름에 보조한 결과로 보인다.

당시 남계서원에서 보유하고 있던 조선 학자의 문집류는 총 5종으로 파악된다. 1605년(선조 38)에 노진의 손자인 유학 노척(盧脊)이 기증한 『회재선생 연보(晦齋先生年譜)』는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63)의 연대기를 정리한 기록이다. 1606년(선조 39)에는 좌의정(左議政) 기자현(奇自獻)이 『덕양유고(德陽遺藁)』 1권을 기증하였다. 『덕양유고』는 기준(奇遵, 1492~1521)의 문집으로, 그의 증손(曾孫)인 기자현이 그 해에 간행한 것을 직접 기증한 것이었다. 이 외에 서원에서 직접 구비한 문집류로는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의 문집인 『남명집(南冥集)』 4권,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언행과 행적을 정리한 자료인 『문헌공실기(文獻公實紀)』,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의 문집인 『덕계집(德溪集)』 4권이 있다.

그 중에서도 『문헌공실기』는 남계서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서원에서 직접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1621년(광해군 13) 『운회(韻會)』 13권을 원비로 갖출 때, '서원에서 종이를 마련하고 원장 강린(姜縑)의 힘을 입어 인출하여 소장하였다[院備紙地賴院長姜校理縑印藏].⁶¹⁾'라고 인출된 사례는 보이지만 별도의 간행 기록은 없어, 이 책이 남계서원의 첫 간행물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여창을 제향하는 서원으로서 그와 관련된 서적을 간행하는 데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문헌공실기』는 정구(鄭球, 1543~1620)가 광해군 대에 편집한 후, 1635년(인조 13)년 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35년(인조 13)에 작성된 장현광(張顯光)의 발문(跋文)⁶²⁾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때 간행된 판본

61) 『哀實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이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마모되고 파손되자, 1743년(영조19) 서원의 유생들은 이재(李縉)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문헌공실기』를 중간(重刊)하였다.⁶³⁾ 이에 『부보록』에도 『문헌공실기』 항목 아래 ‘계해년 봄에 옛 것을 불태우고 새로 만들었다[癸亥春焚舊爲新].’⁶⁴⁾라고 내력이 부기되어 있다.

『부보록』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1686년(숙종 12)에는 남계서원에서 양천익(梁天翼)의 주관 하에 『개암집(介庵集)』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개암집』의 권말(卷末)에 ‘송정 갑신 후 병인년(1686) 중춘일 함양 남계서원 개간[崇禎甲申後丙寅仲春日咸陽藍溪書院開刊]’이라는 간기(刊記)로 확인 가능하다. 강익은 남계서원의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원장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계서원에 배향된 인물이기도 하다.⁶⁵⁾ 정여창의 『문헌공실기』에 이어 강익의 문집인 『개암집』을 남계서원에서 간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서원 배향 인물의 위상을 재고하고 그들의 학문적 소양을 널리 공유하여, 지식 문화를 전파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전란 이후 남계서원은 건물을 재건하면서 소실된 서적도 마련해 갔다. 서적은 주로 자체적인 구입으로 확보되었으며, 일부는 향교로부터 옮겨오거나 기증의 형식으로 입수되었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의 장서에는 조선 학자들의 문집류가 다수 포함된 특징이 있다. 조선 후기 개인 문집의 간행이 성행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계서원이 서적을 간행하는 지식인 집단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였다. 남계서원 또한 『문헌공실기』와 『개암집』을 간행함으로써 편간 서책의 학술적 보급과 활용이라는 지식 문화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였다.

62) 張顯光, 「實紀跋」, 『一蠹遺集』 卷3, 附錄 참조.

63) 李縉, 「實紀重刊跋」, 『一蠹遺集』 卷3, 附錄.

64) 『哀實錄』(1552~1931),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65) 『藍溪書院誌』(1935),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V. 맺음말

조선시대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향과 강학 활동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이었다. 아울러 서적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서적을 간행하는 출판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본고에서는 서원의 장서 기능에 집중하여, 함양 남계서원의 시기별 장서의 경향과 운영 방식을 분석해 보고, 서원을 통한 지식 문화의 교류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남계서원은 함양과 인근 지역 사족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지방관의 협조가 이루어져 완성될 수 있었다. 남계서원의 운영과 서적의 구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1552년(명종 7) 남계서원의 건립부터 1566년(명종 21) 사액을 받기 전까지의 건립 초기 장서 목록을 살펴보면, 함양 및 인근 지역의 사족과 지방관의 기증이 주된 서적 확보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장서의 특징으로는 성리서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과 이정이 간행한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남계서원의 초기 장서를 구축한 방법과 서적의 성격을 통해 서원이 새로운 향촌 기구로 지방 사족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던 정황과 성리서 위주의 지식 확산이 요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66년(명종 21) 남계서원이 사액을 받게 되면서, 서원의 장서가 크게 증가하였다. 반사된 서적이 존재했고, 서원 자체에서 직접 구입한 서적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남계서원의 확충된 장서에는 경서류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성리서류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이정이 간행한 서적들이 다량 유통되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남계서원의 서적 유통과 보유 상황을 통해, 당시 서적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던 지방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서책의 학술적 보급과 활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서원들보다 남계서원에서 이정의 간행 서적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남계서원이 학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하여 지역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은 건물을 재건하면서 소실된 서적도 복구해 나갔다. 이 시기의 서적은 주로 자체적인 구입으로 확보되었으며, 일부는 향교로부터 옮겨오거나 기증의 형식으로 입수되었다. 전란 이후 남계서원의 장서는 조선 학자들의 문집류가 다수 포함된 특징이 보인다. 조선 후기 개인 문집의 간행이 성행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남계서원이 서적을 간행하는 지식인 집단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였다. 남계서원 또한 『문헌공실기』와 『개암집』을 간행함으로써 편간 서책의 학술적 보급과 활용이라는 지식 문화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남계서원의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이 지방에서 지식인들에게 서적을 접하게 해주는 공적인 장소로 기능하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지식정보를 집적하고 보급하는 데에 큰 기여를 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사료

『中宗實錄』, 『明宗實錄』, 『宣祖實錄』

姜翼, 『介庵集』

盧慶麟, 『迎鳳志』

盧禎, 『玉溪集』

柳雲龍, 『吳山志』

李況, 『退溪集』

鄭慶雲, 『孤臺日錄』

鄭汝昌, 『一蠹集』

周世鵬, 『竹溪誌』

「蓋溪書院經任案」(1552~1687)

「蓋溪書院誌」(1935)

「院規」(1923)

「乙卯年書院哀實錄」(1555~1559)

『哀實錄』(1552~1931)

2. 연구논저

김경선 외, 『서원향사: 남계서원·도동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김기주, 『남계서원-맑은 강물 같은 문화의 흐름』, 경인문화사, 2015.

이춘희 편, 『李朝書院文庫目錄』,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196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24-남계서원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김기주, 「蓋溪書院의 성격변화와 一蠹 鄭汝昌의 위상」, 『남명학연구』 52, 남명학연구소, 2016.

김윤식, 「朝鮮朝 書院文庫에 관한 一考察」, 『서지학연구』 41, 한국서지학회, 2008.

- 김정운, 「18세기 동동서원의 지식 체계 구축과 공유」, 『한국서원학보』 7, 한국서원학회, 2018.
- 김학수, 「龜巖 李楨의 인적 네트워크- 지식문화적 교유망과 '龜巖學統'의 實際-」, 『퇴계학보』 152, 퇴계학연구원, 2022.
- 박소희, 「16~18세기 함양 정여창 가와 남계서원의 노론화 과정」, 『한국서원학보』 9, 한국서원학회, 2019.
- 배현숙, 「紹修書院 收藏과 刊行 書籍考」,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_____, 「嶺南地方 書院藏書의 淵源과 性格」, 『대동한문학』 46, 대동한문학회, 2016.
- 안현주, 「龜巖 李楨의 圖書刊行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1.
- 오용원, 「남계서원의 건립과 개암 강익」, 『남명학연구원총서』 10, 남명학연구원 2017.
- 옥영정, 「죽계지(竹溪志)의 편찬과 판본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31, 한국서지학회, 2005.
- _____, 「엄격한 서책 관리와 도서관 역할」, 『도산서원과 지식의 탄생』, 글항아리, 2012.
- 우정임, 「退溪 李滉과 그의 門徒들의 서적 간행과 書院의 기능」, 『지역과 역사』 22, 부경역사연구소, 2008.
- _____, 「龜巖 李楨의 서적편찬과 간행이 道統 확립에 미친 영향」,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의 도서관 기능 연구」, 『역사학보』 186, 역사학회, 2005.
- _____, 「경상도 함양의 藍溪書院 연구」, 『남명학연구』 26, 남명학연구소, 2008.
- 이병훈, 「도동서원(道東書院) 소장 자료의 현황과 특징」, 『한국서원학보』 2, 한국서원학회, 2013.
- _____, 「경주 옥산서원의 장서 수집 및 관리 실태를 통해 본 도서관적 기능」, 『한국민족문화』 5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 _____, 「한국 서원 장서의 구축과 관리 제도의 변화」, 『한국서원학보』 12, 한국서원학회, 2021.
- 이수환, 「서원 기록자료 정리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논총』 5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 임근실, 「16세기 書院의 藏書 연구」, 『한국서원학보』 4, 한국서원학회, 2017.
- 최우경, 「안동 도산서원 광명실의 장서관리」, 『안동학』 20, 한국국학진흥원, 2021.

Abstract

The Management of Books at the Namgye Seowon(藍溪書院) in Hamyang(咸陽)

Yun, Hye-min*

During the Joseon Dynasty, Seowon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where people offered sacrifices to sages and discussed scholarship. It also fulfilled the functions of a library, where books were collected and managed, and a publishing house, where books were published. This paper focused on the library function of Seowon, analyzed the trend of books possessed over time and the operation of the library at Namgye Seowon in Hamyang.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d the aspects of intellectual and cultural exchange through Seowon.

The construction of Namgye Seowon was promoted by the local clans of Hamyang and was completed with the cooperation of local officials. The same pattern was seen in the operation of the Seowon and the collection of books. The books collected at that time are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works on Neo-Confucianism and a large number of books published by Lee Jeong(李楨). It reveals that the Seowon was gaining attention from the local clans as a new local institution, and that there was a demand for the spread of knowledge centered on Neo-Confucianism texts.

When the Namgye Seowon was received royal accreditation in 1566, the number of books possessed by the seowon increased significantly. The increased

*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History, Konkuk University

number of books included a large number of Confucian scriptures. In addition, while Neo-Confucian books were dominant, Lee Jeong's books were circulated in large numbers. We can confirm that the scholarly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compilation books centered on Seowon was carried out in the provinces where books were not well distributed at the time. In particular, the high number of books published by Lee Jeong at Namgye Seowon compared to other seowon suggests that it had a well-developed academic network and played a central role in aggregating and disseminating knowledge information in the community.

After the war, Namgye Seowon rebuilt the building and recovered the books that had been destroyed. The books from this period were acquired primarily through Seowon own purchases, with some being transferred from the Hyanggyo(鄉校) or donated. At this time, seowon's books are characterized by the inclusion of a large number of collections of personal writings by Joseon scholars. This was the result of Namgye Seowon's active interaction with intellectual groups publishing books in the late Joseon era, when the publication of private literary collections became popular. Namgye Seowon also participated in building a knowledge culture infrastructure of academic dissemin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shed books by publishing *Munheongongsilgi* (文獻公實紀) and *Gaeamjip*(介庵集).

Through example of Namgye Seowon, we can see that seowon in the Joseon Dynasty functioned as public places that provided access to books for intellectuals in the provinces and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aggreg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in local communities.

Key word : Namgye Seowon(藍溪書院), Royal accreditation(賜額), Lee Jeong(李楨), Munheongongsilgi(文獻公實紀), Gaeamjip(介庵集)

논문 투고일: 2023. 11. 15 심사 완료일: 2023. 11. 30 게재 확정일: 2023. 12. 01

조선후기 華陽書院의 건립과 『華陽誌』 편찬의 의미*

임 근 실**

- I. 서론
- II. 화양서원의 건립과 지식문화공간의 경영
- III. 『화양지』의 편찬과 지식사적 의미
- IV. 결론

【국문초록】

華陽書院은 1696년(숙종 22)에 尤庵 宋時烈(1607~1689)를 제향하기 위해 그의 문인 權尙夏(1641~1721) 등이 건립하였다. 창건되던 해에 賜額을 받았고, 1716년(숙종 42) 숙종의 御筆 편액을 하사받았다. 더욱이 1704년(숙종 30)에는 명의 神宗과 毅宗을 제향하는 萬東廟가 화양구곡 안에 건립되었다. 신종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도와준 이력이 있는 명의 황제였다. 또한 의종은 명의 마지막 황제로 그의 친필 “非禮不動”을 송시열이 보고서 禮를 지켜낸 군주로 칭송하고 그 글씨를 화양동 석벽에 새겼다. 이와 더불어 효종과 북벌을 상기시키는 읍공암, 명의 유물을 모아둔 환장암 등 화양동의 곳곳엔 송시열의 尊周大義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정리한 서적이 『華陽誌』였다.

『화양지』는 18세기 중반 宋周相(1695~1751)이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동, 송시열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집적하여 편찬한 종합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1861년(철종 12)에 宋達洙·宋近洙·宋秉琦 등이 증수한 『화양지』에는 편찬 후 중간되기까지 화양서원의 역사가 추가되었다. 증수본 『화양지』는 총 2책으로 목할자본이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며, 내용 구성은 제1편 「地名沿革」, 제2편 「厓刻事實」, 제3편 「皇廟事實」 上, 제4편 「皇廟事實」 下, 제5편 「書院事實」, 제6편 「總論大義」로 이루어져 있다. 증수본 『화양지』에는 화양서원의 享祀禮와 관련한 내용인 儀注와 陳設圖가 추가되었고, 만동묘의 건립으로 인한 화양서원의 이건과 관련된 기록들도 수록되었다. 더 붙여 송시열의 문집인 『宋子大全』의 판각 및 보관과 관련한 내용도 증수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은 송시열의 존주대의를 시각화한 장소라는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그 의미는 『화양지』에 고스란히 수록되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이 가지는 지식문화의 실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정보가 集積된 『화양지』가 가지는 지식문화의 생성이라는 지식사적 의미도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화양서원, 『화양지』, 송시열, 권상하, 송주상, 지식

I. 결론

조선 후기 宋時烈(1607~1689)은 華陽洞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문인을 양성하였다. 權尙夏(1641~1721)를 비롯한 송시열의 문인들은 스승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하여 華陽書院과 萬東廟을 건립하였다. 또한 화양동은 朱子의 九曲을 계승하여 華陽九曲을 형성한 장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화양구곡, 화양서원, 만동묘는 송시열의 尊周大義를 가시화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尤庵學派의 인물뿐만 아니라 西人 老論系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에 대한 정보가 集積된 『華陽誌』가 현존하여 그 중요성이 크다.

朱熹는 武夷精舍에서 강학 활동을 하면서 武夷九曲을 설정하였다.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주희의 성리학을 조선에 적용하면서 서원 운영과 구곡 경영을 계승하였다. 이는 조선 지식인들이 성리학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추구한다

는 점에서 學派와 政派에 무관한 양상이었다. 서인 중에서는 李珥(1536~1584)의 高山九曲, 金壽增(1624~1701)의 谷雲九曲, 洪良浩(1724~1802)의 耳溪九曲 등이 있다. 하지만 그 공간에 서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지식정보를 서적으로 편찬한 사례는 『화양지』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화양서원과 『화양지』의 존재는 조선 후기 지식인의 지식문화공간 운영과 그 사상적 기반을 확인하고, 이를 서적을 통해 지식화하여 후대에 전승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양서원과 『화양지』는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중요시한 공간의 사상사·문화사 의미와 그 내용을 담은 서적이 가지는 지식사적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지식인의 공간 운영과 그 사상 기반의 확인, 서적 편찬을 통해 후대에 전승한 사례에 대한 유기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까지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 등 공간에 대한 분석¹⁾과 『화양지』²⁾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이에 대

-
- 1) 吳甲均, 「華陽洞 事蹟에 對한 調查 報告」, 『역사교육』 11·12, 역사교육학회, 1969 ; 조상희, 「朝鮮後期 萬東廟의 建立과 變遷研究」, 청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 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 研究」, 『역사와담론』 18, 호서사학회, 1990 ; 이주상,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교육과학연구』 13,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裴晟, 「숙종조 만동묘 건립 논쟁에 대한 일연구」, 『청계사학』 15, 청계사학회, 2001 ;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학맥·학풍과 화양서원」, 『충북학』 4, 충북연구원, 2002 ; 이완우, 「華陽洞과 尤庵 事蹟」, 『장서각』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권오영, 「화양서원의 강학과 학풍」,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이상해, 「존주대의와 조침제 관점에서 본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건축」,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정만조,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서원」,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이주상, 「湖南地域 士林들의 華陽九曲 探訪과 華陽九曲詩 - 趙鍾稷과 趙愚植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정은주, 「華陽九曲圖를 통해 본 尤庵 학통의 계승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 2) 노상복, 「華陽誌(2-4400)」, 『한국학』 17-2,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 김용남, 「『화양지』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김용남, 「성해응의 〈화양동기〉에 드러나는 우암과 화양동」, 『우암논총』 3, 충북대학교 우

한 종합적인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선행연구 중에서 일부는 노론계 首院이라고 할 수 있는 화양서원의 폐해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경향도 있다.³⁾ 하지만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의 공간적 상징성과 그 사실을 수록한 『화양지』는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봐야만 할 것이다.

화양서원과 만동묘는 송시열의 사상과 성리학적 이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대표적인 장소였다. 송시열은 명에 대한 報恩을 강조하였고, 그의 문인들은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화양구곡이란 공간 전체를 존주대의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정리하고, 후대에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편찬된 서적이 『화양지』였다. 화양서원을 위시한 화양동의 공간이 가지는 사상·문화적 의미가 『화양지』에 고스란히 수록되어 후대에 전해진 것이다.

따라서 지식문화를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이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지식정보가 수록된 『화양지』가 가지는 지식사적 의미를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화양서원과 그 서원지인 『화양지』에 대한 연구는 조선 후기 노론계 서원을 운영한 지식인의 사상적 기반을 살필 수 있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화양서원과 만동묘의 건립, 화양구곡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피고, 『화양지』의 체제와 내용적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 노론계 지식인의 서원 운영과 공간 경영의 사례를 확인하고, 지식문화의 실천공간으로서 화양서원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식문화가 생성되는 장소로서 화양서원과 『화양지』가 가지는 지식사적 의미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암연구소, 2010.

- 3) 최완기, 「화양서원」, 『사학』 5, 1977; 김병우, 「대원군정권의 권력기반과 개혁정책」,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김대식, 「고종대 만동묘와 서원 휘철 논의의 전개」, 『교육사상연구』 30, 한국교육사상학회, 2016.

II. 화양서원의 건립과 지식문화공간의 경영

화양서원은 송시열의 생전에 강학 활동을 하던 화양동에 그의 사후 문인 권상하에 의해 건립되었다. 하지만 송시열의 생전부터 화양동과 구곡의 조성은 시작되었다. 즉, 조선 후기 尊周大義를 주장한 송시열의 사상이 화양동의 여러 장소에 반영되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구나 송시열의 사후에 그 문인들은 스승을 현창하면서 ‘구곡’과 ‘서원’이란 성리학적 이상세계를 조성하였다. 즉, 우암학파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사상을 현실세계에서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양서원과 화양구곡을 조성한 것이었다.

17세기 중반부터 송시열은 화양동에서 강학 활동을 하였다. 이전부터 경치가 아름다운 화양동을 다니던 송시열은 1666(현종 7)년 8월에 草堂을 세우고, 이후 본격적으로 강학 활동에 매진하였다. 송시열은 화양동에 머물며 존주대의 사상을 강론하고 다듬었다. 송시열은 학문을 탐구함에 있어서 정신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에서 한걸음 더 진전하여 의복제도에서까지 존주대의를 실천하였다.⁴⁾ 이 때문에 송시열이 강학활동을 한 화양동은 존주대의를 현실화한 공간으로 당대 지식인들에게 전파되었다. 더욱이 그의 사후에 문인들에 의하여 화양구곡이 형성되고, 경영되면서 송시열의 존주대의 사상을 계승한 지식인들은 이곳을 순례하며 시를 짓고 그림을 남기는 모습을 보였다.⁵⁾

화양구곡은 朱熹의 武夷九曲에 상응하는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권상하는 화양동의 상징적 공간을 제1에서 제9곡까지 지정하여 각각의 장소를 명명하였다.⁶⁾ 권상하는 화양구곡의 경영을 통해 송시열의 존주대 의와 서인 노론계

4) 『宋子大全』 附錄 卷5, 「年譜」.

5) 화양구곡에 대한 詩와 그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주상(「湖南地域 士林들의 華陽九曲 探訪과 華陽九曲詩- 趙鍾惠과 趙愚植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과 정은주(「華陽九曲圖를 통해 본 尤庵 학통의 계승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의 연구를 참고할 것.

6) 『研經齋全集』 外集 卷30, 華陽洞志, 基址第一.

의 道統을 가시화하였다. 화양구곡의 상세한 위치와 각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자.

제1곡은 擎天壁이다.⁷⁾ 경천벽은 화양동의 입구에 해당하는 장소로 절벽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형상에서 그 명칭이 지어졌다. 더불어 경천벽의 인근은 송시열이 화양동에 처음 머물렀던 장소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서원도 이 인근에 처음 건립되었다. 제2곡은 雲影潭이다.⁸⁾ 운영담은 화양 계곡 옆의 연못으로, 그 명칭은 주희의 시구인 ‘天光雲影共徘徊하늘 빛과 구름 그림자가 서로 함께 떠도네.’에서 유래하였다. 제3곡은 泣弓巖이다.⁹⁾ 읍궁암은 화양 계곡의 큰 바위로, 孝宗(1619~1659, 재위: 1649~1659)의 기신일에 송시열이 그에게서 하사받은 갓옷을 안고 활[弓]처럼 몸을 구부린 상태로 통곡[泣]했다는 사건에서 명명되었다. 제4곡은 金沙潭이다. 이곳의 이름은 화양 계곡의 금가루처럼 아름다운 모래에서 유래하였다.¹⁰⁾ 금사담의 북쪽 언덕 위에 송시열이 강학 활동을 하며 후학을 양성했던 巖棲齋가 있었다. 제5곡¹¹⁾은 凌雲臺로, 내의 북쪽에 있고, 바위가 냇가에 우뚝 솟아 있어 명명된 명칭이다. 능운대는 명의 유물을 봉안하였던 煥章庵의 동쪽, 애각의 북쪽에 있었다.¹²⁾ 제6곡은 瞻星臺이다. 침성대는 낙양산 아래에 여러 바위가 대를 이루며 쌓여져 형성된 장소였다.¹³⁾ 침성대는 대 아래 磨崖石龕이 있고, 그곳에 皇筆인 명 의종의 어필 ‘非禮不動’을 새겼다. 그 인근에 조선 선조의 어필인 ‘萬折必東’이 새겨져 있었다. 제7곡은 臥龍巖으로, 용이 누워있는 모양의 바위에서 그 이름이 지어

7)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8)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9)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華陽誌』 卷1, 「地名沿革」, 泣弓巖事實.

10)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華陽誌』 卷1, 「地名沿革」, 卜居始末, 巖棲齋事實.

11) 제5곡과 제6곡은 능운대와 침성대인데, 여기서는 『華陽誌』의 순서에 따라 능운대를 제5곡으로 보았다.

12)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華陽誌』 卷2, 「厓刻事實」, 煥章庵事實.

13)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華陽誌』 卷2, 「厓刻事實」.

졌다.¹⁴⁾ 제8곡은 鶴巢臺로, 예전에 청학이 둥지를 틀었다는 일화에서 명명되었다.¹⁵⁾ 제9곡은 巴串으로 내 가운데 흰 바위가 넓고 평평하여 몇 십명이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름이 지어졌다.¹⁶⁾

화양구곡은 송시열과 그의 사상인 존주대의와 관련하여 설정된 장소가 다수였다. 조선 후기 노론계 지식인들이 송시열의 사후 화양동 일대를 학파의 사상적 상징을 가시화하여 조성하고 경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주희와 송시열의 도통을 연결하고자 하였다. 주희의 고사를 인용해 구곡을 형성하고 주희의 시에서 제2곡의 명칭을 지었다. 또한 읍궁암을 통해 효종과 약속한 송시열의 북별론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리고 능운대와 침성대에선 명에 대한 재조지은과 존주대의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송시열의 강학 장소에 그를 제향하는 서원을 건립하여 그의 학통을 계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희의 고사를 활용한 구곡의 형성은 조선 후기 도통의 중심인물로 송시열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 송시열은 사사되기 전 권상하에게 ‘학문은 마땅히 주자를 중심으로 해야만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¹⁷⁾ 그리고 송시열의 사상은 제자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제자들은 주자와 송시열의 도통을 연결하였다. 조선시대 서원에 있어서 제향인물은 서원의 특성을 규정지을 만한 결정적 요소였다. 서원의 제향인물은 연고지를 따라 선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므로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는 주자를 선택한 서원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조선 후기 주자를 제향하는 서원의 사회사적 성격은 당파적 성향을 내포하였는데,¹⁸⁾ 노론계에서는 주자와 송시열로 도통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주희의 무이구곡 고사, 詩의 구절 등을 활용한 화양구곡의 명명은 이를 변용하여 주자와 송시열의 도통을 연결한 것이라고

14)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15)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16) 『華陽誌』 卷1, 「地名沿革」, 九曲洞天.

17) 『宋子大全』 附錄 卷11, 「年譜」. “學問則當主朱子.”

18) 정현정, 「朝鮮後期 朱子祭享書院의 社會史的 性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할 수 있다.

또한 명의 유물을 봉안한 장소를 화양구곡의 제5곡을 삼고, 명 황제의 어필이 있는 장소로 제6곡으로 설정한 것은 학파의 사상적 기반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송시열은 명 의종의 어필인 ‘非禮不動’을 화양 계곡에 암각하였다.

1669년(현종 10) 송시열은 閔鼎重(1628~1692)에게 명의 마지막 황제인 승정제 의종의 어필을 받았다. 그리고 1672년 3월 18일 송시열은 의종의 기일을 맞아 어필에 발문을 작성하였다.

“위는 승정황제의 어필이다. 대저 성인(聖人)이 시군(時君) 당시의 임금)에게 고한 말로는 구경(九經)보다 더 구비된 것이 없고, 구경 중에는 이 어필 네 글자(四字) 『중용』 구경장(九經章)의 비례부동(非禮不動)을 말함(가) 제일의 요도(要道)이다. 이제 우리 황제 폐하의 표장(表章)이 홀로 여기에 있으니, 성학(聖學)의 고명(高明)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갑신년(1644, 인조22) 3월의 변(變) 유적(流賊) 이자성(李自成)이 북경을 함락한 것을 말함(가)에 황제께서 나라가 망하면 임금이 사직(社稷)에서 죽는 바른 도리를 잃지 아니하여 후세에 그지없는 성훈(聖訓)을 밝혔으니, 어찌 기록하지 않은가. 아, 이 같은 임금이 있었는데도 천하가 마침내 상망(喪亡)하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당시 신자(臣子)의 죄가 아니겠는가. 상서(尙書) 민정중(閔鼎重)이 일찍이 북경(北京)에 가서 값을 아끼지 않고 승정제의 유필(遺筆)을 구할 때 한 사람이 이 어필을 가지고 와서 보이므로, 정중히 받아들고 슬피 흐느끼고는 주머니를 털어서 사들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뜻을 알고는 그 값을 도로 사양하고 가 버렸으니, 이 어찌 저자에 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민 상서가 이를 백 겹으로 싸 가지고 돌아와 화양동(華陽洞) 산중(山中)에 기증하였다. 내가 삼가 받아서 백 번 절하고 돌에 새기고는 그 원본을 목궤(木櫃)에 넣어서 깊이 간직하였는데, 마침 휘일(諱日)을 맞이하니 눈물과 콧물이 나도 모르게 뺨을 적셨다.

승정 신해년(1671, 현종12) 3월 18일에 배신(陪臣) 송시열은 삼가 쓴다.”¹⁹⁾

19) 宋時烈, 『宋子大全』 卷147, 跋, 崇禎皇帝御筆跋. “右崇禎皇帝御筆也. 夫聖人告時君之言. 莫備於九經. 而九經之中. 惟此四字. 爲第一要道矣. 今我皇帝陛下之表章. 獨在於是. 則聖學之高明. 可知矣. 故其甲申三月之變. 不失國亡君死之正. 以明聖訓於無窮. 豈不盛哉. 嗚呼. 有君如是. 而天下竟至於淪喪. 豈當時臣子之罪哉. 閔尙書鼎重嘗

송시열은 송정제 의종을 강조하며 존주대의를 상기시켰다. 송시열은 먼저, 의종의 죽음을 현창하고, 민정중을 통해 의종의 어필을 소장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그리고 의종의 기일에 격렬한 감정을 토로하며 발문을 남겼던 것이다. 이후 송시열은 존주대의를 잊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화양 계곡에 皇筆을 암각하였고, 그 인근에 환장암을 건립하고 어필을 봉안하였다.²⁰⁾ 그리고 권상허를 필두로 한 노론계 지식인들은 송시열의 사후 화양계곡의 절벽에 다양한 어필과 존주대의를의 문구를 암각하여 송시열의 사상을 강조해나갔다.²¹⁾

화양구곡은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노론계 지식인들이 지식문화의 공간으로 경영하였다. 노론계 지식인들은 송시열의 학문적 지향점을 가시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화양구곡에서 명 황제의 어필과 명의 유물을 강조하여, 송시열의 존주대의를 시각화하고 지식문화의 실천공간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송시열의 사상을 현창하는 활동들은 그를 제향하는 서원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송시열의 사후 그를 제향하는 서원이 화양동에 건립되었다. 조선 후기 서원의 건립은 정치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제향 인물의 선정에 따라 여러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²²⁾ 송시열은 1689년(숙종 15) 己巳換局으로 賜死되었고, 1694년의 甲戌換局으로 복권되었다. 이후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이 조선 전역에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였다.²³⁾ 화양서원도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건립되었다.

화양서원은 갑술환국의 직후인 1695년에 화양동의 만경대에 설립되었고,

至燕山。購求遺筆無所愛。有一人以此來示。鼎重欽奉悲咽。將傾囊貨之。其人識其意。便推以與之而却走。亦豈義人之隱於市屠者耶。閱尚書百襲以歸。寄贈於華陽山中。余敬受百拜。因摸勒入木而藏之。適值奉諱之日。不覺涕泗之交頤也。崇禎辛亥三月十八日。陪臣宋時烈謹記。”

20) 『華陽志』 卷2, 「厓刻事實」, 煥章庵事實.

21) 權尙夏, 『寒水齋先生文集』 卷22, 題跋, 華陽崖刻御筆跋.

22) 정만조, 「英祖14년의 安東 金尙憲書院建立是非」, 『朝鮮時代書院研究』, 집문당, 1997.

23)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노론계 지식인들은 국가의 공인인 사액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²⁴⁾ 그중 李 畬(1645~1718)는 기사환국때 실각했다가, 갑술환국 시기에 형조참판으로 발탁되어 「中宮復位敎命文」을 지어 대사간이 된 인물이었다. 이어는 연이어 성균관 대사성, 대제학, 대사헌, 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는 등 당시 노론계의 여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화양동에 건립된 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논지를 살펴보자.

“송시열은 살아있을 때 화양을 매우 아껴서 누대를 짓고 그곳에서 유생들과 도리를 강론하며 학문을 수양하였습니다. 또한 송정제의 어필을 암석에 새겨서 그 뜻을 나타내었으니, 참으로 송시열이 왕래하였던 다른 곳과는 같지 않습니다. (중략) 화양에 대한 송시열의 마음은 참으로 주자가 무이(武夷)에 대하여 애정을 쏟은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 송시열의 서원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기왕에 서원을 건립하도록 한다면 화양은 덕원, 수원, 정읍에 견주어 더욱 중요하니 어찌 서원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성상께서 특별히 사액을 명하신다면 합당할 듯합니다.”²⁵⁾

이어는 크게 3가지의 논리를 들어 화양서원의 사액을 요청하였다. 이어는 먼저, 송시열이 생전에 화양을 아껴서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을 수양한 점을 꼽았다. 두 번째로 명 의종의 어필이 암각된 장소라는 점을 거론하며 그에 담긴 송시열의 사상을 상기시켰다. 즉, 명 의종의 厓刻을 강조하면서, 존주대의로 대변되는 송시열의 사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송시열의 존주대의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장소인 화양에 서원을 건립하고, 그 기관이 사액을 받아야만 더 큰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송시열과 화양구곡을 주자와 무이구곡과 같은 의미를 가진 공간

24) 『華陽誌』 卷5, 「書院事實」.

25) 『書院瞻錄』 3冊, 肅宗 22年 9月 6日. “宋時烈生時甚愛華陽川石築臺其中與章甫等講道藏修. 又刻崇禎皇帝御筆於岩石以寓其意實與他間或往來之所有不同矣. …然宋時烈之華陽洞實同朱子之武夷, 若不爲宋時烈設院, 則已既令設院華陽比諸三處尤有重焉. 何可不爲許設乎.”

으로 설정하였다. 즉, 화양구곡은 송시열의 강학 공간이자, 존주대의를 가시화된 상징적인 장소로 주자의 무이구곡과 같은 공간으로 성리학적 이상세계로 상징하였다. 따라서 화양구곡은 송시열의 사상적 기반을 형상화한 장소이며, 그의 도통을 주자에서부터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화양구곡에 서원을 건립하고, 사액을 요청하여 국가적 공인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국왕 숙종도 이상의 논리를 인정하고 화양서원을 사액하였다.²⁶⁾ 더구나 화양구곡은 송시열이 생전부터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는 지식문화의 실천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송시열을 제향한 화양서원은 우암학파에서 운영한 지식문화의 실천공간으로도 의미를 가졌다. 화양서원은 사액시 致祭를 주관하는 祭官 등도 조정의 관심을 받았다.²⁷⁾ 그리고 화양서원은 이후 萬東廟의 설립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였다.

1704년(숙종 30) 만동묘가 화양서원의 인근에 설립되었다. 1704년은 甲申年으로 1644년(明 崇禎 17)에 명이 멸망한 갑신년이 처음으로 돌아와 1주갑 [60년]이 되던 해였다. 따라서 명의 멸망 후 1주갑을 맞는 1704년 조선의 지식인들은 명을 추송하는 존주대의를 현창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송시열의 遺訓을 받든 권상하는 신종과 의종을 제향하는 廟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송시열은 임진왜란 시기 조선을 구명해 준 신종과 명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을 제향하는 廟를 건립하려 하였다. 하지만 명 황제의 신하인 조선 왕의 신하인 조선의 관료들은 陪臣의 지위였다. 일국의 황제에게 신하인 국왕이 아닌 배신이 제향을 올리는 상황은 禮에 어긋나는 참람한 일이었다. 따라서 송시열의 주도로 명 신종과 의종의 묘를 설립하고 제향을 지내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송시열의 사후 그의 문인인 노론계 지식인들은 禮制를 재정립하여, 權道로써 존주대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虞帝廟와 昭王廟의 사례를 활용하여 황묘 설립의 근거를 제시하였다.²⁸⁾ 그리고 노론계 지식인들은

26) 『肅宗實錄』 卷30, 肅宗 22年 9月 6日(己未).

27) 『書院叢錄』 3冊, 肅宗 22年 11月 21日.

28) 박소희, 「조선후기 ‘華陽洞’ 공간의 정치적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선왕 선조의 어필에서 황묘 설립의 정당성을 찾았다.

황묘의 명칭은 선조의 어필인 ‘萬折必東’의 ‘萬東’에서 유래하였다.²⁹⁾ ‘만절필동’은 황하의 물줄기가 굴곡이 심하지만, 서고동저인 지형의 특성상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군자의 의리로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곡절을 겪어도 결국 원래 뜻한 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졌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만절필동’과 ‘재조지은’은 명에 대한 의리를 상징하는 하였다. 그렇기에 노론계 지식인들은 선왕 선조의 어필을 근거로 하여 만동묘 설립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만동묘는 1703년(숙종 29)에 건립되었고, 갑신년이 되는 이듬해부터 春秋 孟月 上丁日에 제향의례를 시행하였다.³⁰⁾ 또한 만동묘는 화양서원보다 위상이 높았기에, 묘의 설립은 서원의 위치와 향사일을 변화시켰다.³¹⁾ 만동묘가 건립되자 화양서원은 묘의 북쪽으로 이진되었다. 권상하는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위치도 의식하였다. 그는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근거리에 위치시키기 위해 蜀 소열제와 제갈량 사당의 고사를 인용하였고, ‘왕-충신’이라는 관계를 명의 두 황제와 송시열에 대입하여 양자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자 했다.³²⁾ 또한 서원의 향사일도 기존의 정월 上辛日에서 春秋 上丁日로 변경되었다.³³⁾ 음력 仲月[2월과 8월]의 상정일은 본래 문묘에서 문선왕 공자에게 석전의례를 봉행하는 날이다. 따라서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제향일이 문묘의 석전례와 한달의 시차를 두고 진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춘추 계월 상정일로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제향일이 변경된 후 동일한 공간의 동시에 의례를 시행했던

2003, 22~28쪽.

29) 『華陽誌』 卷3, 「皇廟事實」 上.

30) 만동묘의 제향일은 춘추 맹월 상정일에서 이후 춘추 季月 上丁日로 변경되었다(『華陽誌』 卷3·4, 「皇廟事實」 上).

31) 『華陽誌』 卷5, 「書院事實」.

32) 박소희, 「조선후기 『華陽洞』 공간의 정치적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4쪽.

33) 權尙夏, 『寒水齋先生文集』 卷23, 告文, 「華陽書院移建後奉安告文」.

것이다. 그리고 만동묘는 大報壇의 설립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에서 존주대의
를 현창하는 의례를 제정하였다. 대보단은 1704년 1월에 창덕궁의 후원에
설립되었고, 매년 3월 상순에 국왕의 친제로 제향의례가 시행되었다. 즉, 대
보단과 만동묘, 화양서원은 매해 3월 제향의례를 시행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1716년(숙종 42) 국왕 숙종은 화양서원에 어필 편액을 하사하여 권위를 더
욱 향상시키는 조치를 하였다.³⁴⁾ 즉, 송시열의 존주대의를 담고 지식문화를
실천하는 공간으로 경영되었던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은 조선이란 국
가의 전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그리고 노론계 지식인들의 존주대의 사상은
조선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는 조선중화주의로 이어졌다.³⁵⁾ 더구나 노론계
지식인들은 이와 관련한 여러 내용은 『화양지』에 수록하여 사상과 지식정보
를 후대에 전승하였다.

Ⅲ. 『화양지』의 편찬과 지식사적 의미

조선시대 노론계 지식인들은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을 지식문화의
실천공간으로 완성한 후 『화양지』를 편찬하였다. 『화양지』는 1744년(영조
20) 송주상이 화양동·만동묘·화양서원의 연혁과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편찬
한 서적이다. 송주상이 편찬한 초고본은 그의 현손인 송익수가 보관하다가
1853년(철종 4)에 화양서원에서 간행하였다. 하지만 수정할 부분이 많은 것
을 발견하고 송달수에게 『화양지』의 증수를 맡겼고, 이후 송달수의 아우 송
근수의 아들 송병기와 화양서원의 원임인 卞翊來가 간행의 역사를 맡았다.³⁶⁾
따라서 1861년(철종 12) 송달수·송근수·송병기 등이 후보하여 간행한 증수

34) 『華陽誌』 卷5, 「書院事實」, 御筆賜額事實.

35)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96~107쪽.

36) 『華陽誌』 卷末, 識.

본에는 서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사실들이 다수 추가되었다.

『화양지』는 현존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初草本, 草稿本, 初刊本, 增修本の 과정을 거치면서 전승되고 간행되었다.³⁷⁾ 『화양지』의 서지사항은 김용남과 노상복의 선행연구에 자세하다.³⁸⁾ 증수본 『화양지』의 간행에 관련한 내용은 송익수와 송근수의 발문이 남아 있어 알 수 있는데, 「崇禎四辛酉孟秋之日宋近洙謹識」이란 문구를 통해 1861년(철종 12)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양지』는 화양동·만동묘·화양서원의 연혁과 지리적 조건, 관련 인물과 논의를 모아서 종합정리한 서적이다. 화양지의 첫머리에는 총목과 범례, 송주상의 서문이 있어 편찬 의도를 알 수 있다. 화양지의 끝에는 송익수와 송근수의 발문이 있어 증수한 연유를 확인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 구성으로 제1편은 地名沿革이다. 지명연혁에는 山水源委·洞天九曲·泣弓巖事實·洞天上下諸編·卜居始末·巖樓齋事實 등으로 나누어 서술되었다. 즉, 화양동의 산천과 주요 지형 등을 지리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연혁을 시대순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송시열이 화양동에 오게 된 배경과 관련 글들을 수록하였다. 제2편은 厓刻事實로 화양 계곡의 석벽에 각자된 명의 종의 글씨에 대한 내용을 주요하다. 애각사실에는 煥章庵事實·雲漢閣事實·大統曆跋·社倉事實 순으로 수록되었다. 특히 민정중이 중국 북경에서 명 의종의 친필인 「非禮不動」를 얻어왔고, 그것을 송시열에게 주어 이를 화양 계곡에 새겨놓은 일화가 수록되었다. 제3편과 제4편에는 皇廟事實을 배치하여 명 황

37) 『화양지』의 초초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華陽故事』이며, 초고본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 『화양지』 필사본 乾·坤 2冊이다. 『화양지』의 간행본은 2종인데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소장본 『화양지』로 목판본 2권 2책이며 1853년에 간행되었다. 증수본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으로 목활자 6권 3책(또는 2책)이며 1861년에 간행되었다(김용남, 「『화양지』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38) 노상복, 「華陽誌(2-4400)」, 『한국학』 17-2,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 김용남, 앞의 논문, 2008.

제를 제향하는 만동묘와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주로 만동묘와 관련한 여러 역사적 사실과 묘의 제문, 상량문, 비문 등의 글들을 담았다.

제5편은 書院事實로 화양서원과 관련한 기록을 모았다. 서원사실은 御額事實·影楨圖贊·移建事實·大全板事實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서원사실에는 화양서원과 관련한 여러 역사적 사실과 서원의 제문, 상량문, 축문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국왕의 어필 편액과 사액에 관련한 내용 및 만동묘의 설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서원의 이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원의 제향인물인 송시열의 문집 『송자대전』의 판각과 관련한 내용도 수록하였다.

제6편은 總論大義로 송시열이 작성한 禮說을 수록하였다. 즉, 현종시대 발생한 禮訟과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송시열이 작성한 글들을 모아둔 것이다. 그리고 『화양지』의 마지막에는 발문을 수록하여 1853년 간행한 『화양지』를 추보하여 증수본을 간행한 사실을 넣었다.

그럼 『화양지』의 편찬 배경을 살펴보자. 송주상은 『화양지』에 序文을 수록하여 편찬의 배경을 설명하였다.³⁹⁾ 송주상은 먼저, 『화양지』의 모태가 되는 서적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화양구곡의 환장암에 鄭澣(1648~1736)의 『尊周錄』이 송주상이 『화양지』를 편찬할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송주상은 정호의 『존주록』에서 누락된 부분을 언급하였다. 송주상은 『존주록』이 화양동의 사실을 개략적으로 실었으나 서원의 御額 등의 빠진 부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저술한 인물을 알 수 없는 속편도 만동묘와 서원, 환장암 등의 기록이 뒤섞여 산만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송주상은

39) 『華陽誌』 卷首「序文」. “崇禎踐阼之再周丁卯歲，與士友會講春秋，數往來洞天，瞻依廟院，益多激感，而煥章庵有丈巖鄭公所編『尊周錄』者，槩載洞中事實，而稍有闕漏。【如書院御額事及他文字不可遺者】其續編則未知誰所錄，而散漫無統，又多猥雜者。【如不分廟院·菴齋事實而混錄之，又有無緊閑吟咏者】茲敢不揆陋劣，更加聿話，就以添刪，編次緒正，定爲六編如右總目凡例，而謾聞寡識，未及悉收所當載之文字。【如書院諸文字】故各編之末，間置空白，以擬隨得隨錄，而藏之庵裏，以備山中之圖經焉。若其舛謬疎漏之失，專輒僭易之罪，則又以俟夫同志諸君子之並加釐正云。是歲夏六月甲子，崇禎遺民，忠顯後孫，潭谷宋周相謹書于華陽之巖棲齋。”

화양동에 관련한 내용을 보충하여 재정리하고, 편차도 다듬어서 ‘산중의 도경[山中之圖經]’으로 『화양지』를 편찬한 것이다. 즉, 송주상은 새로이 『화양지』를 편찬하여 『존주록』의 부족한 부분들을 증보하고, 체제도 다시 정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송주상은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에 대한 지식을 모두 수록한 『화양지』를 편찬하길 바랐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양지』는 노론계 지식인의 서원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화양지』는 송시열의 존주대의 사상을 담은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을 지식문화의 실천공간을 경영한 노론계 지식인들의 서적이었다. 특히, 송시열의 존주대이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사적들을 주목하고, 그 연혁과 내용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서적에 담았다. 따라서 『화양지』에 실린 자료는 송시열이 직접 저술한 것이든 타인의 저술이든 모두 ‘尊周’ 곧 ‘尊明’의 뜻을 붙인 것으로 송시열의 尊周攘夷의 사상을 드러내고 계승하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⁴⁰⁾

『화양지』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러 판본을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 분류의 차이와 지식의 축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편찬자 송주상의 편찬 의도를 살펴보자. 송주상은 처음 『화양지』를 편찬할 때 관련 내용들을 크게 ‘山中事實’, ‘廟院事蹟’, ‘總論大義’로 분류하였다.

“위의 5편에 이미 산중의 사실과 묘원(廟院) 사실을 갖추어 실었으니 우거(寓居)하신 곳으로서 존주(尊周)의 뜻을 나타내지 않음이 없다. 이 밖에 소장(疏章)과 시편(詩篇)은 모두 존왕양이(尊王攘夷)와 토복(討復)의 글이다. 「영릉지만(寧陵誌挽)」과 「춘추강의(春秋講義)」류도 모두 빠뜨릴수 없는 것이기에 총론대의로서 따로 말편(末篇)을 만들었다.”⁴¹⁾

40) 김용남, 앞의 논문, 358~359쪽.

41) 『華陽誌』. “上五編, 既備載山中事實及廟院事蹟, 則無非用寓尊周之義, 而此外疏章詩篇, 凡係尊攘討復文字及寧陵誌挽·春秋講義之類, 亦有不可遺者, 故以總論大義, 別爲末篇云.”

위의 인용문을 보면 송주상이 이미 ‘산중사실’과 ‘묘원사적’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이후 간행본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산중사실’은 권1과 권2에 있는 「지명연혁」과 「애각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묘원사적’은 권3과 권4의 「황묘사실」上·下와 권5의 「서원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지막 「총론대의」는 권6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화양지』의 주요 내용과 판본의 변화상을 살펴보자.⁴²⁾

‘산중사실’은 증수본에선 권1 「지명연혁」과 권2 「애각사실」이다.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이 위치한 화양동의 공간과 그 중 암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수록하였다. 山水源委, 九曲洞天, 泣弓岩事實, 洞天上下諸詩篇 등이다. 지명 및 연혁에 대한 내용과 화양구곡에 대한 내용이 주이나, 오히려 부기된 읍궁암사실과 洞天上下諸篇의 더 많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즉, 북벌론으로 연결되는 효종과의 일화가 있는 읍궁암사실⁴³⁾과 송시열과 그 제자들이 작성한 화양구곡과 관련한 여러 시문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卜居始末과 송시열이 강학활동을 하였던 암서재에 대한 사실도 강조하였다. 「애각사실」에선 송시열이 송정제가 쓴 ‘비례부동’을 구하게 된 연유와 여러 애각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명의 유물을 보관한 환장암과 운한각에 대한 기록을 부기하여 송시열의 존주대의를 나타내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산중사실[권1 「지명연혁」/권2 「애각사실」]에서도 효종과의 일화, 우암 학파의 詩作, 존주대위의 강조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 ‘묘원사적’은 증수본에선 권3 「황묘사실」上, 권4 「황묘사실」下, 권5 「서원사실」이다. 그 내용은 만동묘와 화양서원에 관련한 정보를 모아서 수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만동묘의 위치는 송시열이 화양동에서 처음 거처를 정하고 강학활동을 하였던 草堂을 내려다보는 장소에 위치하였다. 낙양산의 중봉에 있으면서 북향을 하였기에 명 황제인 신종과 의종이 있는 중국을

42) 화양지의 판본 사이의 차이를 본문에 서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표는 가독성을 위해 부록에 위치하였다.

43) 『華陽志』 卷1, 「地名沿革」, 泣弓巖事實.

향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⁴⁴⁾ 그리고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연결을 위해 만동묘를 설립한 후 이미 건립하여 사액까지 받은 화양서원을 묘의 인근으로 이견하기도 하였다.⁴⁵⁾

화양서원과 만동묘에 대한 부분은 송시열의 존주대의를 그의 제자들이 계승한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만동묘와 서원의 관계부터 보여주고 있다. 화양서원이 만동묘보다 먼저 설립되었으나, 그 중요성에 따라 서원이 체제상 뒤에 위치한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만동묘가 설립된 후 서원이 만동묘의 인근으로 이견되면서 자연스레 이러한 체제를 가능하게 하였다.⁴⁶⁾

이처럼 송시열의 사상적 기반인 존주대의는 만동묘의 공간 배치와 『화양지』의 체제에서도 명백히 반영되었다. 그렇기에 더욱 화양서원과 만동묘가 노론계 지식인들이 송시열의 유지를 계승하여 전략적으로 구성한 공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즉 노론계 지식인들은 화양서원과 만동묘를 송시열의 존주대의를 가시화한 장소인 지식문화의 실천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그 사실을 『화양지』의 체제에서도 들어내었던 것이다.

「서원사실」은 화양서원의 연혁을 수록하였다. 화양서원은 1695년(숙종 21)에 萬景臺書院이란 명칭으로 건립되었다.⁴⁷⁾ 그 위치는 화양동의 박인 침류정 아래였고, 서원의 역사는 을해년인 1695년 2월 19일에 시작하여 4월 2일 巳時에 상량하였다.⁴⁸⁾ 그리고 서원은 ‘화양’이란 명칭으로 사액을 받았다. 이후 만동묘가 건립된 후 1710년(숙종 36)에 만동묘의 아래로 위치를 옮겨서 중건하였다. 이로써 송시열을 제향하는 화양서원과 명의 신종과 의종을 제향하는 만동묘를 한 공간에 위치하게 되었다. 즉, 廟와 院을 동일한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송시열의 존주대의는 더욱 가시화되었고, 이를 『화양지』를 통

44) 김용남, 앞의 논문, 361쪽.

45) 『華陽誌』 卷5, 「書院事實」.

46) 『華陽誌』 卷5, 「書院事實」.

47) 『華陽誌』 卷5, 「書院事實」, 自萬景移建華陽時事實.

48) 김용남, 앞의 논문, 362쪽.

해 기록으로 정리하여 전승한 것이다.

「서원사실」에는 서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여러 내용과 상량문 및 제문류, 숙종의 어필 사액과 관련한 내용 등도 수록되었다. 그리고 서원의 향사의례와 관련한 내용인 享祀儀注와 陳設圖, 서원의 이건과 관련된 〈自萬景移建華陽時事實〉이 있다. 또 『송자대전』의 판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大全校閣事實〉도 수록되어 있다.

더불어 송시열을 제향하는 여러 서원과 影堂을 정리하여 부기하였다. 화양 서원을 필두로 하여 梅谷書院, 寒泉書院, 滄洲書院, 崇賢書院, 遯巖書院, 竹林書院, 道峯書院, 忠賢書院, 象賢書院, 魯峯書院, 鳳巖書院, 樓巖書院, 龍津書院, 盤谷書院, 橘林書院, 考巖書院, 草江書院, 仁山書院, 寒泉書院, 龍江書院, 宗晦堂, 山仰祠, 集成祠, 龍門影堂, 蘭谷影堂, 玉溪書院 등 20개소의 서원과 影堂 및 祠宇의 위치 및 연혁을 수록하였다.⁴⁹⁾ 즉, 화양서원의 제향인물인 송시열을 제향하는 서원을 『화양지』에 수록하여, 제향인물과 관련한 지식정보를 집성하고 있는 것이다.

「서원사실」에서 주목되는 내용 중 하나는 화양서원의 역대 山長 명단도 부기한 부분이다. 산장은 서원의 院長을 뜻하는데, 만경대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李秀彦(1636~1697)부터 권상하, 鄭澁(1648~1736), 閔鑑遠(1664~1736), 李宜顯(1669~1745), 李緯(1680~1746), 朴弼周(1665~1748), 閔應洙(1684~1750), 趙觀林(1691~1757), 兪拓基(1691~1767), 金元行(1702~1772), 金亮行(1715~1779), 宋煥箕(1728~1807), 南公轍(1760~1840), 趙寅永(1782~1850)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다.⁵⁰⁾

화양서원의 師長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장의 명단을 통해 화양서원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화양서원의 역대 원장들은 모두 노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로, 당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수언부터 권상하,

49) 『華陽志』 卷5, 「書院事實」, 諸書院影堂號額.

50) 『華陽志』 卷5, 「書院事實」, 本院山長.

정호까지는 ‘門人’으로 표기하고, 민진원부터는 ‘後學’에 표기하여 구분하였다. 즉, 노론계 지식인들은 『화양지』에 화양서원의 역대 원장을 부기하여 서원의 지식정보를 후대에 전승하고, 학문의 계통을 가시화하여 학파의 자긍심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론대’는 송시열의 존주대의 사상이 명확하게 드러난 己丑封事와 丁酉封事, 春秋講義 등과 禮說이 수록되어 있다.⁵¹⁾

『화양지』의 특징을 살펴보면 명칭의 변경, 체제의 변화, 서원관련 지식정보의 추가 등이 있다. 『화양지』는 송주상이 초초본을 작성하는 단계일 때 이미 명칭이 한번 변경되었다. 초초본의 五까지는 ‘華陽故事’였다가 六부터 ‘華陽誌’로 권수제가 변경된다. 따라서 『화양지』는 처음엔 ‘화양고사’라는 명칭으로 편찬되었다가 중간에 ‘화양지’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²⁾

『화양지』의 체제적 변화는 초간본 이후 증수본이 간행될 때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화양지』 체제의 변화를 보면 증수본을 간행할 때 대대적으로 정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양지』의 초초본에서 초간본까지 권1 「지명연혁」, 권2 「복거시말」, 권3 「애각사실」로 구성되었으나 증수본에서 권2 「복거시말」이 권1 「지명연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권이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전까지 하나의 권이었던 「황묘사적」을 上·下로 나누어 각각 권3과 권4로 나누어 구성함으로써 전체 6권의 구성은 계속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판본에 따라 지식을 분류하는 기준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즉, 1861년(철종 12) 증수본을 간행한 송달수·송근수·송병기는 복거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만동묘에 대한 지식정보를 보다 중시하여 분량을 증가시켰던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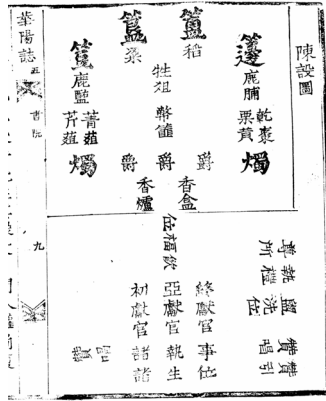
그리고 증수본에서는 화양서원에 대한 지식정보가 다량 추가되었다. 먼저, 서원의 이건과 관련된 〈自萬景移建華陽時事實〉도 증수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증수본 『화양지』는 화양서원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집적한 서

51) 『華陽誌』 卷6, 「總論大義」

52) 김용남, 앞의 논문, 368쪽.

원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서원과 묘의 향사의례와 관련한 내용인 享祀儀注와 陳設圖는 증수본에 추가되어 수록되었다. 화양서원의 향사의 주를 보면 향사일의 하루 전[前一日] 유사가 廟 내외를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향사 후 位版을 다시 봉안하고 饌을 치우고 나오는 것이 마지막 절차였다.⁵³⁾ 화양서원의 향사의례와 관련한 정보는 <그림 1 진설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31

<그림 19> 『華陽誌』 陳設圖

화양서원에서는 헌관 3인(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자(執禮, 贊唱 2, 贊引 등), 學生들이 향사의례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화양서원에서는 각 3종의 籩豆에 鹿脯, 乾棗, 栗黃, 鹿醢, 菁菹, 芹菹를 올렸다. 또한 牲은 犧牲의 1종이었고, 籩簋에 稻, 梁을 올렸다.⁵⁴⁾ 아래는 화양서원과 만동묘, 그리고 향교의 釋奠禮 및 臨臯書院의 祭品을 비교한 표이다.

華陽書院·萬東廟과 鄉校 및 臨臯書院의 祭品 비교표

	祭需	鄉校	萬東	華陽	臨臯
籩豆	刑鹽	○			
	漁鱸	○	魚脯		○
	乾棗	○	○	○	○
	栗黃	○	○	○	○
	榛子	○			
	菱仁	○			
	芡仁	○			
	鹿脯	○	肉脯	肉脯	○
韭菹	○			○	

53) 『華陽誌』 卷5, 「書院事實」, 享祀儀注(增).

54) 『華陽誌』 卷5, 「書院事實」, 陳設圖.

	醢醢	○			
	菁菹	○	○	○	○
	鹿醢	○		○	○
	芹菹	○	○	○	
	兔醢	○	肉醢		
	筍菹	○			
	魚醢	○	○		○
	計	左八邊 右八豆	左四邊 右四豆	左三邊 右三豆	左四邊 右四豆
		鄉校	華陽	華陽	臨臯
腥俎	牲牛		○	○	
	羊腥	○			
	豕腥	○			
	雞腥				○
簠簋	稻	○	○	○	○
	梁	○	○	○	○
	黍	○			○
	稷	○			○
	計	二腥 二簠 二簋	一腥 一簠 一簋	一腥 一簠 一簋	一腥 二簠 二簋

위 표를 통해 화양서원에서 진설한 제품의 규모를 알 수 있다. 서인 노론계 지식인들이 운영하는 私學인 화양서원의 만동묘의 제품을 지역의 官學인 향교 및 남인계 지식인이 운영하는 臨臯書院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화양서원과 향교에서 진설하는 籩豆, 簠簋, 犧牲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향교보다 서원과 만동묘에서 진설하는 제품의 수가 적었다.⁵⁵⁾ 그리고 화양서원은 변두에 올리는 제품의 수가 각 3종씩이어서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화양서원에선 희생으로 牲牛를 사용하고 있었다.⁵⁶⁾ 이와 대비하여 향교에서는 羊腥과 豕腥을 올렸고, 임고서원에서도

55) 『華陽誌』 卷3, 「皇廟事實」 上, 享祀儀注(增·陳設圖).

56) 『화양지』 「서원사실」에선 별도의 기록이 없으나 「황묘사실」에선 만동묘의 祭品

雞脰를 희생으로 올렸다.⁵⁷⁾

화양서원의 향사의례의 의식절차와 제품은 서원의 향사의례에서 일반적인 수준으로 특이한 점은 없었다. 오히려 화양서원의 향사의례 때 인근에서 많은 양의 물품을 받치기 위해 곤란하였다는 기존의 통설에 비해서는 소략한 수준의 제품이 진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그렇지만 화양서원은 만동묘와 동일한 공간에 위치한 서원으로써 그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제품의 수는 많지 않으나 희생으로 소를 사용하여 지역의 향교보다 높은 격을 보여주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처럼 『화양지』의 초간본에는 없었던 서원과 만동묘의 향사의례와 관련한 지식정보가 증보된 점은 중요하다. 먼저,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증수본 『화양지』는 보다 많은 지식정보를 담고 있다. 증수를 주관한 송달수가 화양서원과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증수본 『화양지』에 수록하여 후대에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또 증수본 『화양지』에서 증보된 지식을 통해 화양서원의 위상도 확인하였다. 앞서 살펴본 향사의례의 제품을 통해서 지역의 관학보다 격을 높이고자 했던 화양서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의 판각과 장판각에 관련한 내용인 〈大看板閣事實〉도 증수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송시열의 문집은 권상하를 중심으로 수습되어 1711년(숙종 37)에 黃江本이 완성되었다. 이후 송시열의 문

으로 牲牛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華陽志』 卷3, 「皇廟事實」 上, 享祀(儀注)(增). “牲牛. 長六尺純色.”) 그리고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향사의례 진설도에서 肉脯와 鹿脯 등을 구분하고 있어 화양서원의 희생으로 牲牛를 사용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57) 임고서원에서는 희생으로 雞脰를 올렸는데, 이는 남인계 지식인들이 시행한 향사의례의 특징 중 하나였다. 현재도 남인계 서원에서는 닭을 희생으로 준비하는 사례가 있다(윤숙경, 「鄉校와 書院의 祭禮에 따른 祭需에 관한 연구」,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3, 1998, 256~258쪽.).

58) 물론 노론계의 首院이라 할 수 있는 화양서원의 향사의례에 다수의 인물이 참석하였고, 그들을 접객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물품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화양서원의 향사의례에서 사용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판단했을 때는 특별히 사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집은 1717년 국왕 숙종의 지시로 교서관에서 간행하게 되었다. 2년 후인 1719년에 『尤菴先生文集』이란 명칭으로 원집 158권, 별집 9권 도합 167권 63책이 금속활자로 간행되었다. 이후 1730년(영조 6)에 『經禮問答』이 포함되었고, 2년 후 연보도 5책이 간행되어 문집의 체제를 갖추었다. 그리고 국왕 정조가 즉위 후 효종의 묘정에 송시열을 배향하고, 만동묘에 어필로 사액을 내리면서 遺文의 수집을 지시하였다.⁵⁹⁾ 이후 宋煥箕(1728~1807)를 중심으로 수집된 유문을 합쳐 正本을 만들었고, 1787년(정조 11) 9월에 국왕 정조의 명으로 평안감영에서 간행되었다. 『송자대전』의 원판은 정조의 명으로 120板이 화양동으로 내려왔다. 이후 장판각을 건립하여 『송자대전』을 보관하였는데, ‘宋子大全板本藏閣’이란 8글자는 金正喜(1786~1856)의 글자였다.⁶⁰⁾ 이러한 사실은 『화양지』에 기록되어 화양서원의 인쇄·출판 기능 및 도서관적 기능도 확인할 수 있다.⁶¹⁾

이처럼 『화양지』는 그 편찬의 목적부터 수록된 내용 및 증보된 내용, 판본별 체제의 변화를 통해 볼 때 조선후기 노론계 지식인들의 존주대의 사상이 반영된 서적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화양서원과 만동묘, 화양구곡의 경영을 통해 송시열의 사상을 현실화하여 지식문화 공간으로 경영하였고, 그 내용을 지식정보로 집대성하여 후대에 전승하였던 것이다.

IV. 결론

조선후기 서인 노론계 지식인은 송시열의 강학치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적

59) 최재기, 「『宋子大全』 解題」, 한국고전번역원.

60) 『華陽誌』 卷5, 「書院事實」, 大看板閣事實(增).

61) 화양동에 보관되었던 『송자대전』은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소실되었다. 1907년 정미조약에 반대한 의병이 쫓겨하였고, 9월 일본군이 장판각이 있던 환장사를 의병들의 숙소라는 이유로 불을 질렀고 목판은 소실되었다(오항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韓國史學報』 33, 고려사학회, 2008, 304쪽).

기반인 존주대의를 시각화한 지식문화 공간을 경영하였다. 바로 충청도 화양동 지역에서 화양서원을 운영하며 그들의 사상과 지식을 전파하고, 지식집단인 學派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론계 지식인들은 화양서원의 역사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식화하여 『화양지』를 편찬하였다. 따라서 화양서원, 만동묘, 화양구곡의 공간적 상징성과 그 사실을 수록한 『화양지』를 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노론계 지식인의 사상이 유기적으로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양지』는 초초본에서 초고본, 초간본, 증수본을 거치며 편차와 수록 내용이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노론계 지식인의 지식 분류의 한 단면을 알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서원 지식이 증가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화양지』의 체제는 중국 明·淸의 서원지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화양동이라는 공간을 시작으로 점차 서원 및 제향인물과 관련한 내용이 수록된 양상은 形勝과 沿革이 앞서 수록되는 중국의 서원지와도 흡사하다. 이는 노론계 지식인들이 서원을 운영함에 있어 제향인물과 관련한 다양한 공간의 상징성을 활용하고, 인근에 九曲을 경영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지면의 관계상 『화양지』와 성해응의 『華陽洞志』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성해응의 『화양동지』는 『화양지』 초고본과 초간본 사이에 저술되었기에 간본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추후 연구를 통해 『화양지』와 『화양동지』를 비교 분석하여 둘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부록 1. 『회양지』 체재의 비교표⁶²⁾

편차	草初本	편차	草稿本	편차	初刊本	편차	增修本
華陽故事 一 地名沿革	山水源委, 九曲洞天, 泣弓岩事實, 洞天上下諸詩篇	華陽誌 一 地名沿革	山水源委, 九曲洞天, 泣弓岩事實, 洞天上下諸詩篇	華陽誌 一 地名沿革	山水源委, 九曲洞天, 泣弓岩事實, 洞天上下諸詩 篇	華陽誌 一 地名沿革	山水源委, 洞天九曲, 泣弓岩事實, 洞天上下諸篇, 上居始末 , 巖棲齋事實
華陽故事 二 卜居始末	岩棲齋事實, 年譜略節	華陽誌 二 卜居始末	巖棲齋事實, 年譜略節	華陽誌 二 上居始末	巖棲齋事實, 年譜略節	華陽誌 二 匡刻事實	煥章菴事實, 雲漢閣事實, 大統曆跋, 社會事實
華陽故事 三 匡刻事蹟	煥章菴事實, 雲漢閣事實, 大統曆跋, 社會事實, 絳雲菴記, 華陽感懷, 書院學規, 戊寅新定院規, 廟院籌錄, 萬東廟傳掌記	華陽誌 三 匡刻事實	煥章菴事實, 雲漢閣事實, 大統曆跋, 社會事實	華陽誌 三 匡刻事實	煥章菴事蹟, 雲漢閣事實, 大統曆跋, 社會事實	華陽誌 三 皇廟事實上	
華陽故事 四 皇廟事實	大報壇事實, 甲子筮說	華陽誌 四 皇廟事實	大報壇事實, 甲子筮說	華陽誌 四 皇廟事蹟	大報壇事實, 甲子筮說	華陽誌 四 皇廟事實下	大報壇事實, 甲子筮說
華陽故事 五 書院事實	御筆賜額事實, 影須圖贊, 諸書院影堂號額, 疏·跋·詩章 , 春秋講義 , 癸丑創建萬景垵, 庚寅移建華陽	華陽誌 五 書院事實	御筆賜額事實, 影須圖贊, 諸書院影堂號額	華陽誌 五 書院事實	御額事實·影須 圖贊, 諸書院影堂號 額	華陽誌 五 書院事實	御額事實, 影須圖贊, 移建事實 , 大全閣事實 , 舊本有諸院號 額
華陽誌 六 總論	春秋大義, 寧陵誌挽	華陽誌 六 總論大義	寧陵誌挽, 疏·跋·詩章 , 春秋講義	華陽誌 六 總論大義	寧陵誌挽 疏·跋·詩章, 春秋講義	華陽誌 六 總論大義	春秋講義, 舊本有寧陵誌 挽

62) 『회양지』 판본의 차이를 비교한 표는 김용남(김용남, 앞의 논문, 2008.)의 연구에 기반하여, 본문에 언급한 주요한 변화를 굵은 글씨로 밑줄 그어 표기하였다.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宋子大全』; 『寒水齋集』; 『研經齋全集』; 『華陽誌』

2. 연구논저

- 권오영, 「화양서원의 강학과 학풍」,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김대식, 「고종대 만동묘와 서원 휘철 논의의 전개」, 『교육사상연구』 30, 한국교육사상학회, 2016.
- 김병우, 「대원군정권의 권력기반과 개혁정책」, 경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학맥·학풍과 화양서원」, 『충북학』 4, 충북연구원, 2002.
- 김용남, 「『화양지』 고찰」, 『한국사상과 문화』 44,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김용남, 「성해응의 〈화양동기〉에 드러나는 우암과 화양동」, 『우암논총』 3,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10.
- 노상복, 「華陽誌(2-4400)」, 『한국학』 17-2, 한국학중앙연구원, 1994.
- 박소희, 「조선후기 ‘華陽洞’ 공간의 정치적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박정해, 「만동묘와 화양서원 입지의 풍수적 특징 분석」, 『한국문화연구』 2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 裴晟, 「숙종조 만동묘 건립 논쟁에 대한 일연구」, 『청계사학』 15, 청계사학회, 2001.
- 吳甲均, 「華陽洞 事蹟에 對한 調查 報告」, 『역사교육』 11·12, 역사교육학회, 1969.
- 오향녕, 「尤菴 宋時烈 문집의 편찬과 간행」, 『韓國史學報』 33, 고려사학회, 2008.
- 이상해, 「존주대의와 조침제 관점에서 본 만동묘와 화양서원의 건축」,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이완우, 「華陽洞과 尤庵 事蹟」, 『장서각』 1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이주상,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교육과학연구』 13, 청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1999.
- 이주상, 「湖南地域 士林들의 華陽九曲 探訪과 華陽九曲詩—趙鍾惠과 趙愚植을 중심

- 으로-」,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 임부연, 「유교 의례화의 정치학-만동묘와 대보단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1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9.
- 전용우,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대한 一 研究」, 『역사와담론』 18, 호서사학회, 1990.
- 정만조,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서원」, 『우암논총』 1,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2008.
- _____, 『朝鮮時代書院研究』, 집문당, 1997.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정은주, 「華陽九曲圖를 통해 본 尤庵 학통의 계승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87,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정현정, 「朝鮮後期 朱子祭享書院의 社會史的 性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진준현, 「華陽九曲圖연구」, 『한국고지도연구』 9-2, 한국고지도연구, 2017.
- 조상희, 「朝鮮後期 萬東廟의 建立과 變遷研究」,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최완기, 「화양서원」, 『사학』 5, 대한사립학교장회, 1977.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Hwayang Seowon and Hwayangji in the Late Joseon Dynasty*

Lim, Geun-Sil**

Hwayangseowon Confucian Academy was established in 1696 (the 22nd year of King 肅's reign) by his literary man Kwon Sang-ha(權尙夏, 1641-1721) and others to pay tribute to Uam Song Si-yeol(宋時烈, 1607-1689). In the year of its foundation, he was given a private solution(賜額), and in 1716 (the 42nd year of King Sukjong's reign), he was given an appeal (御筆) and a single solution (扁額). Moreover, in 1704 (the 30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Mandongmyo Shrine was built nearby for the ancestral rites of King Yi Jong and King Shin Jong was an emperor with a history of helping Joseon during the Imjin War. In addition, Uijong, the last emperor of the Ming Dynasty, praised his handwritten "proportional wealth" as the monarch who protected courtesy in Song Si-yeol's report and engraved the words on the stone wall of Hwayang-dong. These Hwayangseowon Confucian Academy and Mandongmyo Shrine were famous among the Confucian Academy in Joseon. The book that summarized the facts related to this was "*Hwayangji*".

"*Hwayangji*" is a comprehensive collection of records related to Song Ju-sang (1695-1751) in the mid-18th century regarding Hwayangseowon Confucian Academy, Mandongmyo, Hwayang-dong, and Song Si-yeol, the

* 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23

** Dankook Univ. assistant professor of Liberal Arts College

sacrificial figure of Seowon. *Hwanyangji* is a total of two books and woodworking capital, and its contents consist of the first part of the geographical history, the second part of the stone carving, the third part of the Hwangmyo Shrine, the fourth part of the Hwangmyo Shrine, the fifth part of the Seowon, and the sixth part of the general opinion. In 1861 the 12th year of King Cheoljong's reign, Song Sun-soo, Song Geun-soo, and Song Byeong-ki supplemented and published it. At the head of the book is the preface of the general, the example, and the editor, and at the end of the book is the inquiry of Song Ik-soo and Song Geun-soo. In addition, *Hwayangji* influenced the compilation of *Hwayangdongji* by Yeongyeongjae Sung Hae-eung(1760-1839),

In conclusion,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the space of Hwayang-dong, including Hwayangseowon Confucian Academy, can be said to be the visualization of the honorifics. And its meaning was contained intact in "*Hwayangji*". Therefor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extends primarily to Hwayangseowon Confucian Academy, Mandongmyo Shrine, and Hwayanggugok can be seen.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historical meaning of knowledge of "*Hwanyangji*", where information on this is accumulated.

Key word : Hwayangseowon, *Hwanyangji*, Song Si-yeol, Kwon Sang-ha, Song Ju-sang, knowledge

논문 투고일: 2023. 11. 14 심사 완료일: 2023. 12. 06 게재 확정일: 2023. 12. 07

海原君 李健의 流配를 통해 본 조선후기 宗親의 존재 양상

노 춘 수*

- I. 머리말
- II. 海原君 李健의 家系와 流配 경위
- III. 海原君 李健의 流配생활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海原君 李健의 流配를 통해 조선후기 宗親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본고에서는 이건의 家系와 流配 경위를 살폈다. 이건家は 큰 틀에서 南人[淸南]을 표방하고 있었고, 外戚 혹은 相門[大丘徐氏 徐文道家·光州盧氏 盧守愼家·同福吳氏 吳端家·靑松沈氏 沈之源家·海州崔氏 崔奎瑞家]과도 혼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건의 生父인 仁城君 李珪은 宣祖의 庶7子로 어머니는 靜嬪閔氏이다. 宣祖代 이공은 宗室의 제반 要務를 관장했고, 癸丑獄事(1613)와 戊午庭請(1618) 당시에는 종실을 대표하여 '廢母殺弟'를 극력 주창한 인물이었다. 仁祖反正(1623) 이후 이공은 정치적 守勢 국면에 맞닥뜨렸다. 특히 인조 초반의 여러 獄事에서 이공이 거론되었지만, 인조는 숙부 이공을 철저히 비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공을 둘러싼 治罪 政論이 반정 이후 5년 동안 지속되었고, 인조 또한 政務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공에게 自決을 명했고 이공은 1628년(인조 6) 5월 두 번째 유배지였던 珍島에서 자결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박사과정
/ ncs2028@naver.com

이공이 자결한 이후, 그의 3남 이건은 伯兄 海平君 李佺·仲兄 海安君 李億과 함께 濟州로 出置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이건이 경험한 8년의 제주 유배생활과 襄陽 移配 이후에 겪었던 避亂[丙子胡亂] 여정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유배 당시 이건의 聞見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명이 이뤄졌지만, 이건의 유배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光海君~仁祖代 정치상을 바탕으로 이건의 <濟襄日錄>·<濟州風土記> 등을 중심으로 유배 경위와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했다.

이건은 ‘종친’이라는 특수성을 내재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 곡절을 겪었던 이들에 국한해서는 일정한 보편성을 가지는 인물로 생각된다. 이건의 유배가 정치·생활·문화 등 다양한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주제어 : 계축옥사(癸丑獄事), 무오정청(戊午庭講), 인조반정(仁祖反正),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 해원군(海原君) 이건(李健), 규창유고(葵窓遺稿)

I. 머리말

1623년에 발생한 仁祖反正은 光海君의 ‘廢母殺弟’에 대한 反旗이자, 300년 서인집권체제의 발판이었다. 이후 정치 구도가 再造되는 과정 속에서 엄혹한 정치적 網打를 겪어야 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鄭仁弘(1535~1623)을 중심으로 하는 ‘大北派’는 멸절되었고, ‘폐모살제’를 주창했던 이들 또한 정치적 守勢에 몰렸다. 癸丑獄事(1613)와 戊午庭講(1618) 당시 宗室에서는 仁城君 李珙(1588~1628)이 중심이 되어 仁穆王后의 유폐를 주창했다. 반정 이후에는 延平府院君 李貴(1557~1633)가 이공에 대한 治罪 政論을 주도했고, 이후 이공은 인조 초반의 각종 獄事에 연루되어 정치적 파란을 겪게 된다. 1628년(인조 6) 5월, 이공은 自決하라는 인조의 하교에 따라 두 번째 流配地였던 전라도 珍島에서 자결했다. 이후 이공의 妻子들은 모두 濟州로 出置되었다.

이들이 경험했던 제주 流配의 실상은 이공의 3남 海原君 李健(1614~1662)¹⁾

의 문집인 『葵窓遺稿』에 수록되어 있다.²⁾ 유배와 관련된 이건의 기록은 크게 제주의 풍토를 기록한 〈濟州風土記〉와 10년 유배생활의 전반을 기록한 〈濟襄日錄〉³⁾으로 구분된다. 이건이 8년 간(1628년(인조 6)~1635년(인조 13)) 유배되었던 제주는 조선시대 極惡地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특히 1635년 12월에 강원도 襄陽으로 移配된 후 丙子胡亂의 발발로 인해 겪게 된 避亂 여정은 한 인간이 겪은 유배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되어준다.

이건의 유배는 양순필의 연구에서 최초로 조명되었다. 양순필은 이건이 남긴 〈제주풍토기〉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바 있고,⁴⁾ 제주 뿐만 아니라 유배문학 연구에 대한 대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건의 사례를 논급한 바 있다.⁵⁾ 양순필의 두 연구는 각각 자료에 대한 소략한 해제와 국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료의 실체와 구성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 1) 字는 子强, 號는 葵窓·命慕堂이다. 1746년(영조 22)에 ‘忠孝(臨患不忘國曰忠, 慈惠愛親曰孝)’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太常謚狀錄』 9冊(K2-478), 〈贈嘉德大夫海原君兼五衛都總府都總管行承憲大夫海原君請謚行狀〉 참고
- 2) 한국고전종합DB에서 확인되는 문집은 총 1,259종이며, 그 중 王族의 문집은 총 4건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海原君 李健의 『葵窓遺稿』는 자료의 희소성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왕족의 문집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君號 및 諱(生沒)	家系	文集名	편찬자 / 편찬시기
富林君 李湜(1458~1488)	世宗의 孫子 (父 桂陽君 李璿)	四雨亭集	(子)李韞·李軾 / 1500(연산 6)
月山大君 李焞(1454~1488)	德宗의 長男	風月亭集	(後孫)李夏相 / 1727(영조 3)
海原君 李健(1614~1662)	宣祖의 孫子 (父 仁城君 李珙)	葵窓遺稿	(子)李洮 / 1712(숙종 38)
麟坪大君 李滉(1622~1658)	仁祖의 三男	松溪集	(玄孫)李鎭翼 / 1774(영조 50)

- 3) 이건이 처음 지은 題名은 〈流竄記〉이다.
- 4) 양순필, 「李健의 「濟州風土記」考」, 『한국언어문학』 16, 1978; 「李健의 「濟州風土記」小考」, 『어문논집』 21, 1980.
- 5)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濟州島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기묘사화 당시 제주로 유배갔던 金淨(1486~1521)이 저작한 <濟州風土錄>과 이건의 <제주풍토기>를 비교·분석한 김상조는 두 기록이 100여 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⁶⁾ 이 연구를 통해서서는 제주를 바라 본 김정과 이건의 인식을 선명하게 대조할 수 있었고, 100년의 시간 동안 변화된 제주 풍토의 변화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이건이 남긴 漢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도한 장유승의 연구⁷⁾는 이건의 전반적인 생애와 함께 『규창유고』의 간행 경위·체제·수록된 한시 등을 주목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예술에 조예가 깊었던 이건의 作家的 면모를 잘 부각하였다. 김유리는 <제주풍토기>를 교육·교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했으나⁸⁾, 이건이 실제로 전개한 교육·교화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민주는 조선시대 양반들이 남긴 제주와 관련된 다양한 풍토 기록을 통해 당시의 제주의 특색있는 모자 양식이 조선의 ‘갯’ 문화에 끼친 영향을 규명했다.⁹⁾ 이와 함께 조선시대 제주가 가진 고유한 복식이 육지로 파급될 수 있는 항구와 유통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 연구는 제주와 관련된 여러 기록을 수렴하여 제주의 특징적인 복식 문화가 육지의 복식과 습합되는 양상을 소상하게 규명하였다.

한편 학문·문화의 移植과 交差의 관점에서 제주를 주목한 연구도 주목된다. 김학수는 제주가 絶海의 지리로 인해 대표적 流刑處로 활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목사로 파견된 관료의 공적 직무 수행과 유배 지식인의 사적 교화 활동을 통해 유교적 지식·문화가 보급된 사실을 규명했다.¹⁰⁾ 김학수는 학술·

6) 김상조, 「中庵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葵窓 李健의 『濟州風土記』 비교 연구」, 『大東漢文學』 13, 2000.

7) 장유승, 「悲運의 王孫, 盛世의 宗親—海原君 李健의 生涯와 漢詩」, 『韓國漢詩作家研究』 11, 2007.

8) 김유리, 「규창 이건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20, 2012.

9) 이민주, 「제주 복식의 다름이 조선의 ‘갯’ 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 43, 2020.

10) 김학수, 「제주지역 유교 지식(知識)·문화(文化)의 수용 양상과 ‘제주학풍(濟州學

문화적 균질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教化論의 작동과 관련하여 ‘유배’를 조명함으로써, 필자의 식견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김학수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근기남인(京南) 가문인 旴州柳氏 淸聞堂家の 존재 양상에도 주목했다.¹¹⁾ 이 연구에서 柳頤(1595~1655)의 출사 초기, 조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이공 치죄론’에서 견지한 정치적 입장을 소상히 규명했다. 김학수는 이공을 비호한 유석의 행적을 통해 진주류씨 청문당가의 정치적 성향을 확인함은 물론, 이 시기의 정치사적 맥락을 정치하게 언급함으로써 본고의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인조 초반의 왕권 실태와 정국 상황을 규명한 연구도 매우 주목되며,¹²⁾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과 ‘인성군 역모 사건’을 유기적으로 검토한 논고는 본고의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¹³⁾ 두 연구는 반정 이후 道德的名分主義와 政治的現實主義가 대립하던 상황과 ‘廢母殺弟’를 주창했던 이들에 대한 治罪論이 전개된 정치적 내막을 정치하게 규명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위 연구들을 통해 인조반정 전후의 정치적 상황과 제주 유배 당시 이건의 聞見에 대해서 일정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고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두고 이건의 家系와 유배 경위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폭넓게 수렴하면서 관련 연대기 사료와 사찬 史書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다음으로는 이건의 유배생활에 대해 검토했다. 여기서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제주풍토기> 뿐만 아니라 <제양일록>을 주목했다. 여기에는 이건의 10년 유배생활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유배인의 삶을 비교적 생동감있게 살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건이 유배지에서 겪었던 다양한

風) - 주자학적 예교론(禮教論)과 사림과 학풍의 유입을 중심으로, 『한국학』 43, 2020.

11) 김학수, 「진주유씨 청문당가(淸聞堂家)의 가계와 정치·사회·문화적 전개 - 조선 후기 근기남인가(近畿南人家)의 굴절과 명암」, 『성호학보』 21, 2019.

12) 김한신, 「仁祖代 前半期 왕권과 정치질서 재편」, 『한국사학보』 78, 2020.

13) 김용흠, 「仁祖反正의 名分과 政權의 正統性 論爭」, 『역사학연구』 27, 2006.

사건들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고는 유배 죄인 생활상의 사례 연구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향으로써,¹⁴⁾ 이공·이건 부자의 사례를 통해 조선후기 宗親의 존재 양상을 바라보는 보다 풍부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海原君 李健의 家系와 流配 경위

1. 海原君 李健의 家系와 生父 仁城君 李珙의 光海君代 정치활동

海原君 李健의 생부인 仁城君 李珙은 조선 14대 왕 宣祖의 庶7子이자, 靜嬪 閔氏의 장남이다. 이공은 海平郡夫人 尹氏(尹承吉 女) 사이에 海平君 佶·海安君 億·海原君 健·海寧君 伋·海陽君 僖·南壽星 妻·沈長卿 妻 등 5남 2녀를 두었다. 仁興君 李瑛·貞仁翁主·貞善翁主·貞謹翁主와는 형제·남매지간이다. 이공의 처가인 海平尹氏는 선조대 영의정을 역임한 尹弘彦이 孝寧大君의 5세손 長臨守 李舜民의 딸과 혼인한 것을 계기로 宗室과 連婚 양상을 보인다. 윤희언의 3자 윤승길은 이공을, 4자 尹承勳(1549~1611)은 密城君 李琛(세종 서5자)의 7세손인 李敬輿를 사위로 맞게 되면서¹⁵⁾ 해평윤씨는 선조대 외척 가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공은 왜군을 피해 황해도(海西)를 거쳐 義州로 피신했고, 1597년(선조 30)에 宰臣이었던 許潛은 선조의 하교를 받들어 이공과 함께 평안도 成川으로 피신했다. 이후 1599년(선조 32)에 還京하여 12세에 人성군으로 책봉되었다.¹⁶⁾

14) 심재우, 「조선시대 유배제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도서문화』 58, 2021, 64~65쪽.(심재우는 이 논문에서 제도적 틀 속에서 유배형을 보다 명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 생활사 지역사 연구 영역에서 유배가 주목되고, 관련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만큼 사례 연구의 축적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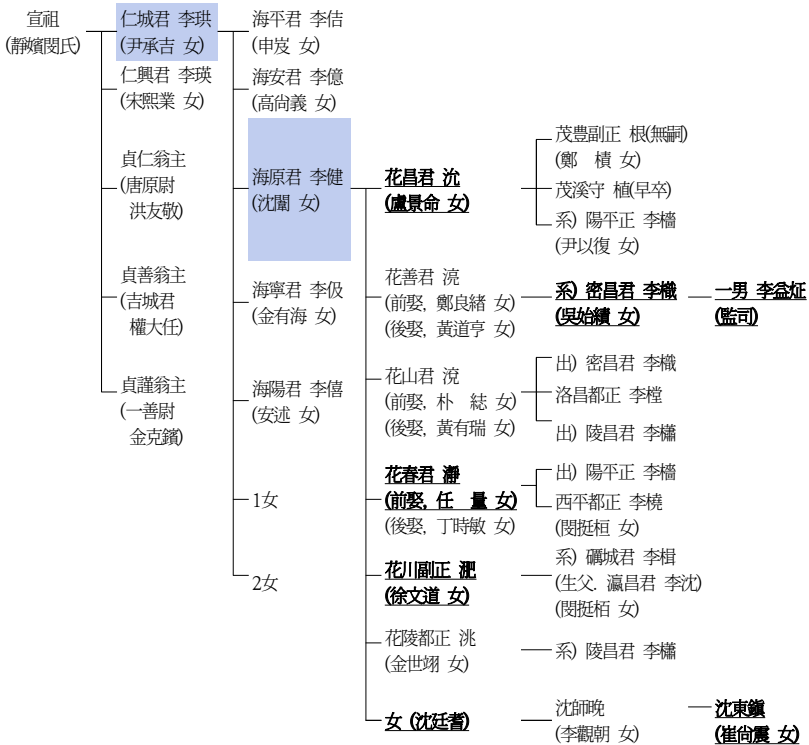
15) 한국학자료센터-인물관계정보 '尹承吉'.

16) 李健, 『葵恣遺稿』 卷12, 「墓誌」, 〈先府君仁城君墓誌〉, “壬辰之變, 避兵海西, 仍向義州. 丁酉, 上命宰臣許潛, 護往成川, 以避倭鋒. 己而還京, 十二, 封仁城君.”

이건의 처는 1·2차 왕자의 난 당시 李芳遠을 도운 공으로 佐命功臣 4등에 책록된 豐川君 沈龜齡(1350~1413)의 7대손인 沈闡의 딸이다. 이건은 슬하에 花昌君 沈·花善君 澆·花山君 澆·花春君 澹·花川副正 澀·花陵都正 洮와 딸 한 명을 두었다. 장남 이연의 妻父 盧景命(1609~1667)은 盧守愼(1515~1590)의 曾孫이며,¹⁷⁾ 이건의 2남 이량은 후사가 없어 이연(이건의 3남)의 장남인 密昌君 李穡을 양자로 맞이하였다. 이직은 同福吳氏의 吳始績의 딸과 혼인하였다. 오시적은 麟坪大君의 妻父 吳端(1592~1640)의 손자이자 숙종 초반 우의정을 역임한 吳始壽(1632~1681)의 아우이며,¹⁸⁾ 이직의 손자는 영조대 경기도관찰사를 역임한 李益炆(1699~1782)이다. 4남 이정의 前娶 任氏는 任量의 딸로서, 妻兄은 숙종대 강원도·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한 任胤元(1645~1712)이다. 5남 화천부정 이비의 처부인 徐文道는 대구서씨 徐燾(1537~1559)의 玄孫이다. 서문도의 叔祖는 貞愼翁主의 부마인 達城尉 徐景靄(1579~1643)이며, 손녀는 貞聖王后(1692~1757)이다.¹⁹⁾ 이건의 딸은 효종대 영의정을 역임한 沈之源

17) 許穆, 『記言別集』 卷17, 「丘墓文」, 〈司憲府監察盧公墓碣銘〉.

18) 李瑞雨, 『松坡集』 卷15, 「墓碣」, 〈贈議政府領議政行黃海道觀察使吳公墓碣銘〉; 숙종 초반에 남인은 甲寅禮訟(1674)으로 정국을 장악한 뒤에 淸南과 濁南으로 분기되었는데, 청남은 許穆·尹鑄를 중심으로 三福(麟坪大君의 세 아들)의 外叔 吳挺昌을 비롯하여, 吳挺緯·吳始壽·李瑞雨 등이 청남계열의 대표적 인물들이었다. 또한 정빈민씨는 仁城君 李珙·仁興君 李瑛 외에 3녀[貞仁翁主(唐原尉 洪友敬)·貞善翁主(吉城君 權大任)·貞謹翁主(一善尉 金克鑽)]를 두었다. 권대임은 숙종조 남인 정권의 영수였던 권대운의 종형, 김극빈은 동서분당 당시 동인(後 남인)의 영수였던 김효원의 조카이다. 즉 정빈민씨의 자손들은 큰 틀에서 남인을 표방하고 있었고, 이는 정빈민씨의 묘지명을 허목이 찬술한 사실과 정선옹주의 두 손녀가 각각 吳始壽[同福]·洪萬朝[豐山]와 혼인한 사실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인성군 이공 → 해원군 이건으로 이어지는 가계는 청남을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이건의 묘지명을 앞서 언급한 이서우가 찬술한 사실에서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17~20쪽; 김학수, 앞의 논문, 2019, 85쪽 각주 59번 재인용; 신채용, 「家系와 婚脈을 통해서 본 仁興君家の 政治·社會的 位相」, 『文化史學』 58, 2022, 146~147쪽; 許穆, 『記言』 卷19, 「丘墓」, 〈靜嬪閔氏墓誌〉; 李瑞雨, 『松坡集』 卷13, 「墓誌」, 〈海原君墓誌銘〉).



〈그림 1〉 仁城君 李珙·海原君 李健家 婚班 개관

(『濬源續譜』(K2-4725); 『萬家譜』; 李健, 『葵窓遺稿』卷12, 「墓誌」, 〈先府君墓誌〉; 李瑞雨, 『松坡集』卷13, 「墓誌」, 〈海原君墓誌銘〉을 참고하여 작성)

(1593~1662)의 손자 沈廷耆(1651~1695)와 혼인하였다. 심정기의 孫婦는 崔奎瑞(1650~1735)의 손녀이다.²⁰⁾ 즉 이진과 그 자손들은 큰 틀에서 南人[淸南

19) 大丘徐氏의 가문의 형성 과정과 18세기 정치적 전개, 家學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만진초, 『조선후기 大丘徐氏의 정치활동과 학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참조.

20) 崔奎瑞는 숙종대 소론계 관료이자 완소계열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1699년(숙종 25) 예조판서를 끝으로 宦路에서 退去하여 龍仁 鄉邸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戊申亂(1728)의 事體를 파악하고 조정에 최초로 고변함으로써,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조력한 인물이다. 최규서의 가계와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노춘

을 표방하면서도 外戚 혹은 相門大丘徐氏 徐文道家·光州盧氏 盧守愼家·同福吳氏 吳端家·青松沈氏 沈之源家·海州崔氏 崔奎瑞家과 婚班을 형성함으로써, 조선후기 정치·사회적 전개에 있어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이진 자손들의 혼반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1604년(선조 37)에 이공은 宗戚들을 거느리고 임진왜란을 平定한 선조의 업적을 기리는 휘호를 청한 것을 통해²¹⁾ 종실에서 이공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李德壽(1673~1744)가 찬술한 이공의 謚狀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 경술년(1610, 광해 2), 司饗院·宗簿寺 都提調를 겸임하고, 宗親府 有司提調를 맡게 되었다. 아랫 사람을 통솔함이 관대하면서도 엄격했고, 官事의 다스림이 家事의 다스림과 같았다. 낭관(郎僮)을 가려 일을 맡기고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자는 啓聞하여 汰去시킴으로써[啓汰] 용서하지 않았다. 일찍이 임금에게 음식을 올리는 자가 거짓 자문(僞凡)을 가지고 있음을 발각했는데, 魯氏姓을 가진 아전이 간여한 것이었다. 아전이 涕泣하며 죽기를 빌었다.²²⁾

위 인용문을 통해 이공이 궁궐 및 종실과 관련된 관아의 주요 직책을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명한 사리판별을 기반으로 察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612년(광해 4)에 사간원에서는 臺諫을 대하는 체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길에서 왕자나 대신을 만나면 대간이 먼저 下馬하고, 왕자나 대신도 하마하여 서로에게 揖을 하는 것이 규례이나 이공은 버젓이 말을 타고 지나갔다”는 말과 함께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공의 태도가 매우 거만하다고 진언했다.²³⁾ 물론 이공이 대간들을 대하는 규례를 어긴 것

수, 「崔奎瑞의 생애와 정치활동」, 『조선시대사학보』 102, 2022' 참조.

21) 『선조실록』 권177, 37년(1604) 8월 20일 무술.

22) 李德壽, 『西堂私載』 卷11, 「謚狀」, 〈王子仁城君謚狀〉; 『王子仁城君孝愍公世家行錄』(K2-446), “庚戌, 兼司饗院宗簿寺都提調, 又管宗親府有司提調. 御下寬以嚴, 治官事如家事. 擇郎僮任以事, 不職者啓汰之不貸. 嘗有領納御羞者, 持僞尺事覺, 稱魯姓吏所與, 吏涕泣求死…”

은 잘못된 일이나, 이공을 중심으로 한 宗親들의 成勢를 견제하고자 했던 대간의 정치적 의도도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癸丑獄事’(1613, 광해 5)의 발발과 함께 이공은 “저간의 흥역과 저주가 모두 李璡(永昌大君)에서 비롯된다”는 말과 함께 처벌을 진언했다.²⁴⁾ 1614년(광해 8)에는 大北派의 鄭仁弘(1535~1623)·李爾瞻(1560~1623) 등이 중심이 되어 仁穆王后의 폐위를 주장했지만 무산되었다.²⁵⁾ 1617년(광해 9) 幼學 尹唯謙이 인목 왕후 폐위에 대해 상소하였고,²⁶⁾ 이를 계기로 종친 및 조정의 중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아래 인용문은 윤유겸의 상소 이후 이공이 개진한 의견이다.

▶ 선비들의 상소는 대개 임금을 위한 충성과 종묘사직을 안정시킬 중대한 제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종친의 반열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의리로 보아 나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목숨을 바쳐야 할 사람이 시골에 홀로 사는 여러 선비들보다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오직 묘당에 달려 있으니, 빨리 公共의 요청에 따라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십시오.²⁷⁾

이후 1618년(광해 10)에 왕후 폐위에 대한 庭請이 전개되었다. 이른바 ‘戊午庭請’ 당시 문무백관들은 왕후 폐위 상소를 올렸고, 종실에서는 이공이 이를 주도했다. 1618년 정초부터 이공은 “西宮이 흥당들과 결탁하여 성상을 해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광해군은 “종척인 경들마저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말로 일축했지만,²⁸⁾ 1618년 2월에 이공은 정청에 불참한 백관과 종친들의 명단을 작성해 사헌부에 보내고,²⁹⁾ 10월에는 낭청에 종친들을 쓰러

23)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9, 4년(1612) 11월 1일 신묘.

24) 『광해군일기』[중초본 권68, 5년(1613) 7월 25일 신사.

25) 광해군대 정국과 廢母論의 원인·전개과정 등에 대해서는 ‘김한신, 『광해군대 廢母論의 전개과정』, 『조선시대사학보』 106, 2023’ 참조.

26) 尹善道(1587~1671)의 7촌 族叔으로 확인된다.(『광해군일기』[중초본] 권110, 8년(1616) 12월 21일 정사)

27) 오항녕 역주, 『추안급국안』 3(1617, 광해군 9), 흐름, 2014, 188쪽.

28)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23, 10년(1618) 1월 5일 을축.

할 것을 청하는³⁰⁾ 등 1618년에 이공이 주도한 폐모 논의만 5번에 달했다.³¹⁾

계축옥사와 무오정청에서 ‘廢母殺弟’를 적극 주창한 이공은 인조반정으로 정국이가 바뀌면서 守勢의 국면에 맞닥뜨렸다. 仁祖의 執政이 성공한 이듬해인 1624년, 反正의 元勳이었던 李貴는 이공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며, 일찍이 이공을 처단하지 못했던 자신을 治罪할 것을 제청했다.

▶ 우찬성 李貴가 차자를 올리기를, “仁城君 李珣은 왕자의 몸으로서 宗戚을 거느리고 母后를 폐하자고 청하였고 수의한 내용도 극히 패악하였으니, 왕법에 있어 죽여야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비가 복위하던 날도 당연히 대궐에 나아가 앞뒤로 대죄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소장을 진달하는가 하면 숙부로 자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反正하던 날에 신이 대의를 들어 인성군을 처치하지 못하였는데 대사헌이 되어 비로소 수의한 내용이 패악스러운 것을 보고도 마침 다른 관직을 제수받았기 때문에 미처 논죄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신이 애당초 의리를 밝게 보지 못한 죄를 다스리고 다음에 삼사가 입을 다물고 관망만 한 죄를 다스리소서.”³²⁾

이귀가 올린 상소의 핵심은 무오정청에 가담한 이공의 행적과 그의 거만한 언행이다. 이귀의 상소는 兩司의 승령로 이어졌고,³³⁾ 이공에 대한 부정적 政論이 점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이공에 대한 이귀의 공세는 지속되었고,³⁴⁾ 이공의 치죄 정론은 ‘李适의 亂’(1624)을 계기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29)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24, 10년(1618) 2월 7일 정유.

30)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33, 10년(1618) 10월 8일 계해.

31) 각주 28·29·30번 이외에도 ‘『광해군일기』 권132, 10년(1618) 9월 2일 정해 ; 『광해군일기』 권133, 10년(1618) 10월 5일 경신’까지 포함하면 이공이 주도한 폐모 논의는 총 5번이다.

32) 『인조실록』 권3, 1년(1623) 10월 27일 갑신.

33) 『인조실록』 권3, 1년(1623) 윤10월 16일 임인.

34) 『인조실록』 권5, 2년(1624) 3월 26일 경진.

2. 인조 초반의 정국과 仁城君 李珙의 정치적 곡절

‘이괄의 난’은 이공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였지만, 평소에 임금의耳目인 대간을 무례하게 대하는 등 평소 이공의 방자한 행동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³⁵⁾ 1623년(인조 1) 8월, 사간원은 대간을 무례하게 대하는 이공의 언사와 궁궐 출입에 대한 기강이 매우 해이하다고 진언했지만, 인조는 왕자들의 高雅한 체면을 앞세우며 이러한 臺論을 기각했다.³⁶⁾ 이러한 이공의 행동들은 이귀와 같은 반정공신들에게 攻勢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조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이공에 대한 치죄 정론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인조가 즉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1624년(인조 2) 1월, 文晦·李佑 등이 이괄의 변란을 고변했다. “인성군이 微服의 차림으로 반란 모의를 하고 있었고, 白金 3천냥을 내어 군사를 모집하도록 했다”는 진술이 硃批에서 드러남으로써,³⁷⁾ 이공의 처벌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 고변 초반에는 이공에게 혐의가 있음에도 보름 동안 이괄을 비롯한 首魁에 대한 처벌 논의만 제기되다, 2월이 되어서야 이공과 仁興君 李瑛·興安君 李璉과 같은 종친에 대한 처벌 논의가 시작되었다. 주론자는 이귀였고,³⁸⁾ 일주일 뒤 인조가 이공을 비롯하여 인흥군·義昌君 李玠 등 여러 종친들을 인견한 사실은 종실에 대한 조정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³⁹⁾

35) 이공의 행적에 당대 관료들의 인식·언급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김용흠, 김학수, 김한신의 논고에 상세히 논급되어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조와 이공을 중심으로 연대기 자료를 재검토함으로써, 이공의 치죄에 대한 국왕의 논리를 살펴보고자 했다.

36) 『인조실록』 권2, 1년(1623) 8월 23일 신사.

37) 『인조실록』 권4, 2년(1624) 1월 17일 임신.

38) 『인조실록』 권4, 2년(1624) 2월 2일 병술.

39) 『인조실록』 권4, 2년(1624) 2월 9일 계사(소상한 기록의 부재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 해의 『승정원일기』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황상 인조가 반란 가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이들에게 下問했거나, 대신들의 激論에 대한

같은 해 11월 ‘朴弘壽 역모 사건’이 발생했다. 골자는 박홍구의 아들들과庶姪들이 主謀했다는 것으로, “인조를 폐하고, 인성군에게 傳位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인조는 “인성군이 흥적의 구실이 되었으나, 相應한 흔적이 없다”는 말로 일축함으로써⁴⁰⁾ 이공을 비호했다.

그렇다면 인조가 이공을 이토록 비호한 이유가 무엇일까? 주자하듯 인조 반정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는 ‘폐모살제에 대한 반기’였고, 이에 동참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혹한 司正 정국을 조성했다. 이귀와 같은 반정공신들이 인목왕후의 폐위를 제청했던 ‘무오정청’의 주도 세력에 대한 처분에 중점을 두었던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또한 국왕 주위의 특권 세력에 대한 견제의 목적도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왕실의 연장자에 속했던 이공은 광해군이 매우 꺼릴 정도로 종친들 사이에서 명망이 깊었고, 이는 반정공신들이 이공을 매우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⁴¹⁾ 한편 인조는 이공에 대한 처분의 반려 근거로 이른바 ‘광해의 일’을 지속적으로 거론하였고, 大司諫 鄭蘊(1569~1641)이 “인성군을 제거하면 다른 왕자들도 모반에 연루되어 ‘骨肉之變’의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 언급한 것은⁴²⁾ 이공에 대한 처분을 원치 않았던 인조의 내심을 읽어낸 결과였다.

1625년(인조 3) 정초부터는 이공에 치죄 정론이 더욱 격화되었다. 결국 인조는 4개월에 걸쳐 전개된 신하들의 陳請을 이기지 못하고 이공을 江原道 杆城에 圍籬安置하는 안건을 재가했다.⁴³⁾ 인조는 이공의 장남 海平君 李佺을 인견한 자리에서 아버지의 안치 사유를 얘기하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⁴⁴⁾ 이는 골육을 안치시켜야 하는 괴로움과 반정의 명분론을 지켜야 하는 인조의 번민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인조는 이길의 편으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0) 『인조실록』 권7, 2년(1624) 11월 8일 무오.

41) 김용흠, 앞의 논문, 2006), 174쪽.

42) 『인조실록』 권7, 2년(1624) 12월 2일 임오.

43) 『인조실록』 권8, 3년(1625) 2월 23일 임인.

44) 『인조실록』 권8, 3년(1625) 2월 25일 갑진.

로 숙부의 안치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手札로 써서 보냈다.

▶ 군정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여 일이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소. 앞서 했던 말을 저버린 결과가 되어 부끄럽기만 하여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소. 叔父가 어떻게 저간의 사정을 아시겠소. 이번에 억지로 따르게 된 것은 조금도 다른 뜻이 없고 실로 온전하게 보호해 드리려는 생각에서였소. 이 어찌 옛날 왕족들이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소. 우선은 여론이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소환하겠소.⁴⁵⁾

위 인용문은 조선시대 ‘유배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공의 위리안치는 ‘군신 간의 알력’을 일시적으로 해열시키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고, 집정 초반기에 발생한 과도한 정쟁으로 인해 政務를 살피지 못하는 상황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⁴⁶⁾ 이공이 간성에 유배된 지 7달이 지났을 때 석방 논의가 제기되었으나⁴⁷⁾ 신료들의 반대로 기각되었다가, 이후 원주로 移配되었고⁴⁸⁾ 이듬해인 1626년(인조 4)에 모친 靜嬪閔氏의 병환이 더욱 위독해져 석방되었다.⁴⁹⁾

한편 이공에 대한 논죄는 西·南 對立의 관점에서도 일정한 해석이 가능할 듯 하다. 이공이 유배되어 있던 1625년 10월, 남인계 관료였던 睦性善(1597~1647)·柳碩(1595~1655)은 상소를 통해 이공의 무죄를 진언했다.⁵⁰⁾ 淸西派의 重臣이었던 副提學 金尙憲(1570~1652)⁵¹⁾은 ‘睦性善 등이 역적들이 거론하고

45) 상동.

46) 宗親·高官 등에게 내려진 圍籬安置의 정치적 목적과 관련해서는 ‘심재우, 『조선 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2000, 203~204쪽 참조.

47) 『인조실록』 권10, 3년(1625) 10월 18일 계사.

48) 『인조실록』 권10, 3년(1625) 11월 15일 경신.

49) 『인조실록』 권14, 4년(1626) 11월 1일 경오.

50) 각주 47번과 같음; 유석의 四寸妹弟가 목성선이다.(한국학자료센터-인물관계 정보, ‘柳碩’)

51) 『인조실록』 권10, 3년(1625) 10월 24일 기해; 김상헌의 혼맥에서도 비판적 인사의 배경이 감지되는데, 김상헌 繼子인 金光燦(1597~1668)은 金梯男(인목왕후

있는 왕자에게 빌붙고 있다'는 말로써 이공을 두둔하는 이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⁵²⁾

이공이 석방되고 2년 뒤인 1628년(인조 6), 竹山에 거주하던 金振聲·金得聲 등이 승정원에 심상치 않은 내용을 上變하면서 이공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들이 상변한 내용은 죽산에 사는 최하위직 관리들과 일부 常漢들이 규합하여 도성을 범하고 인성군을 왕으로 추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제천으로 유배되어 있던 광해군의 처조카 柳孝立(1579~1628)이 연루되어 있어 조정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⁵³⁾ 이후 義禁府에서는 이공을 제주 旌義縣으로 出置시킬 것을 진언했지만, 인조는 전라도 珍島에 출치시키고 처자식들도 같이 보내 이공의 심기를 보전하는데 일말의 도움을 주고자 했다.⁵⁴⁾ 이후에도 이공에 대한 처벌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인목 왕후 조차도 인조에게 이공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諺書를 보냈는데,⁵⁵⁾ 이는 무오정청 당시 이공의 행적에 대한 반감도 내재된 것으로 풀이된다.

진도로 간지 40여 일이 지났을 때, 幼學 任之後가 승정원에 고변한 내용 또한 '역모 이후 인성군을 추대'한다는 내용이었다.⁵⁶⁾ 이 당시에도 이공의 처벌을 두고 인조와 신료들 간에 대립각이 세워졌다. 1628년 5월 14일, 결국 인조는 이공에게 自決할 것을 하교했다.⁵⁷⁾

▶ 지금은 일이 전날과는 크게 달라져 서로 호응한 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난 듯하다. 몇 개월 사이에 큰 옥사가 계속해서 일어나 전후로 내린 自決(仁穆王

父, 1562~1613)의 孫嬭가 된다. 이는 김상헌이 이공을 두둔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52) 이공의 처분을 두고 金尙憲과 柳碩·睦性善이 대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학수, 앞의 논문, 2019, 83~95쪽에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3) 『인조실록』 권18, 6년(1628) 1월 3일 을축.

54) 『인조실록』 권18, 6년(1628) 1월 21일 계미.

55) 『인조실록』 권18, 6년(1628) 2월 21일 계축.

56) 『인조실록』 권18, 6년(1628) 3월 4일 을축.

57) 『인조실록』 권18, 6년(1628) 5월 14일 갑술.

된의 전교가 매우 엄하였으며, 百司가 업무를 폐한 지 반 년이 다되어 간다. 이에 내가 종사를 위하여 부득이 공문을 따라 그로 하여금 自決하게 한대(使)의 自處. 골육 간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항상 통탄하였는데, 오늘날 차마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하였다. 이것이 어찌 나의 본마음이겠는가. 비통하고 애통하여 곧장 죽고 싶을 뿐이다.⁵⁸⁾

위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필자주)은 이공에 대한 처분 이유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목왕후의 嚴教는 인조가 이공을 더 이상 비호할 수 없는 정치적 명분이었다. 그간에 있었던 조정의 논의들이 모두 이공의 처벌로만 향해 있어 국왕의 정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인조는 이공을 형률로써 처형하지 않고 자결[自處]을 명함으로써, 종친으로서 최소한의 체모를 지켜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공이 사망한 뒤에 그의 妻子들은 濟州로 出置되었고, 인조는 牧使⁵⁹⁾로 하여금 각별히 배려할 것을 하교했다.⁶⁰⁾ 이공을 둘러싼 역욕은 그의 자결로써 일단락되었다. 이공의 자결 이후, 그의 처자식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장을 달리하여 살피기로 한다.

58) 상동.

59) 이건 형제가 제주에 출치되었을 당시 牧使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이건이 제주에 入島했을 당시에 목사에 재임 중이었던 박명부의 고신은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古文書集成 119-咸陽 安義 密陽朴氏 朴明搏宗家 古文書』, 2016, 77쪽'에 수록되어 있고, 목사의 명단은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440쪽'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목사	본관	부임기간
朴明搏	密陽	1627년(인조 5) 4월 ~ 1629년(인조 7) 6월
李眞卿	全義	1629년(인조 7) 6월 ~ 1632년(인조 10) 2월
李廓	全州	1632년(인조 10) 3월 ~ 1634년(인조 12) 8월
申景琥	平山	1634년(인조 12) 9월 ~ 1637년(인조 15) 5월

60) 『인조실록』 권18, 6년(1628) 5월 27일 정해.

Ⅲ. 海原君 李健의 流配생활

1. 海原君 李健의 濟州 流配생활

앞서서는 仁城君 李珣의 활동과 그를 둘러싼 다양한 獄事 그리고 이공의 처분에 대한 仁祖와 大臣들의 대립 등을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李健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의 流配생활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다.

〈濟襄日錄〉의 서두에서 “기사년(1629, 인조 7), 봉작된 3명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모두 방환되었다”⁶¹⁾는 기록이 확인된다. 한편 1631년(인조 9) 9월 9일자 기록에는 『徒流案』의 오류를 바로 잡는 계문에서 “당초 定配할 때 맏아들 길, 둘째 아들 억, 셋째 아들 건은 이미 장성하여 封爵을 받았으므로 承傳대로 정배하지만, 넷째 아들 급과 다섯째 아들 僖 두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아직 봉작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배하지 않는다”⁶²⁾는 기록을 통해 이공의 장남 길·차남 억·삼남 건 등 3명이 제주로 유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61)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己巳, 春有仍置封爵者三人外, 其餘老妻稚兒並放還.”

62) 『승정원일기』 33책, 인조 9년(1631) 9월 9일 경진, “禁府啓曰, 前因都承旨李聖求上疏禮曹回啓, 逆珙子佶·億·伋外, 其妻及三女幼弱子等, 竝令出陸事, 移文濟州矣. 今見濟州牧使牒報, 本府辭緣, 則當初定配時, 長子佶, 第二子億, 第三子健, 已爲年長封爵, 故依承傳定配, 而第四子伋, 第五子僖兩人, 則年歲幼弱, 未及封爵, 故不爲定配, 而今見本府公事, 則佶·億·伋外, 其餘竝令出陸云, 健之名則落漏不書, 幼弱未封爵, 當初不定配之伋名, 在於未放之中, 前後關各異, 伋出送與否, 更爲定奪文云. 臣等取考本府徒流案, 則逆珙子, 只佶·億·伋·僖四人之名現付, 而健名則果爲落漏不書, 極爲駭愕. 當初本案次知郎廳, 殊無詳察之意, 請推考, 色吏令收司囚禁. 罪人伋, 放送出陸與否, 何以爲之? 敢稟. 答曰, 依啓. 伋, 放釋.”

63) 『徒流案』에 이름을 올려 유배인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이공의 一男 海平君 李佶·二男 海安君 李億·三男 海原君 李健 등 3명이었지만, 〈濟襄日錄〉을 살펴보면 제주 유배 중에 동생(四男 海寧君 李伋, 五男 海陽君 李僖)들의 행적이 산견된다. 즉 3명의 아들과 어머니 海平尹氏 그리고 이건의 형제·남매들이 함께 제주로 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제주에서 강원도 양양으로 移配된 후 이건의 어머니가 동생과 누이를 데리고 상경하였다. 이건의 형제들이 해배되기 전임에

이건은 1628년(인조 6) 6월 26일 海南의 海倉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27일에 배를 타고, 28일에 제주 別刀浦에 도착했다. 牧使 朴明搏(1571~1639)⁶⁴⁾가 매우 정성스럽게 대우하고 섬사람들 또한 자신을 마치 遊宦과 같이 대접해 준⁶⁵⁾ 것에 대해 이건은 아래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 실로 지은 죄가 심히 무겁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聖明의 치세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어 영구히 바다 밖으로 放逐된 신하인데, 섬사람들은 淳朴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또한 가소롭다.⁶⁶⁾

죄인의 신분으로 제주에 당도한 이건의 모습과 목사 섬사람들의 환대는 매우 대비되는 장면이다. 이건의 일행을 각별히 배려하라는 인조의 하교에 따라 목사는 죄인의 아들이 아닌 宗親으로서 그를 예우했다. 섬사람들의 순박함 또한 일생에 보기 어려운 왕가의 식구를 실견했다는 생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신의 여정 초기에 목도한 섬사람들의 성품은 후일 제주를 바라보는 인식으로 작용했다. 한편 자신보다 먼저 제주에 유배 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주목된다.

도 불구하고 이건의 동생 海寧君 李倓이 1636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호종하기 위해 남한산성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유배인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보다 상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64) 앞서 2장 1절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공·이건家は 정치적으로 남인(청남)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목사 박명부 또한 鄭述의 門人이자 정치적으로 남인을 표방하고 있었다. 박명부가 이건 형제들에게 이러한 후의를 베푼 것은 정치적 동질성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노인환, 「함양 밀양박씨 박명부 종가 고문서의 현황과 특징」, 『古文書集成 119-咸陽 安義 密陽朴氏 朴明搏宗家 古文書』,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2016)

65)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入接於邑內客舍洞官人之家, 是日仲氏與海寧落馬重傷, 時牧使朴公明搏待之甚款, 島人承風相待, 如游宦之人。”

66) 상동, “實不知負罪深重, 無所容於聖明之世, 永作海外放逐之臣, 島人淳朴之性, 可見而亦可笑也.”

▶ 본 섬의 流配人은 前 僉正 柳希顔, 前 縣監 成宏烈, 及第 李宗英, 盲人 金禹鼎이 있었다. 모든 使人은 정성을 다했고 致款, 골육이 온 것처럼 봐주었다. 이들은 모두 평소에 잘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인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유희안은 힘이 세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이종영은 教授로서 여러 유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또 들으니 旌義縣에 流竄人으로 韓泳·禹弼甸·徐旻이 있는데 徐는 필법이 超絶하다고 한다.⁶⁷⁾

자신보다 먼저 섬에 유배된 인물들의 이름과 생활을 소상히 기록한 것은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과 육지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徐旻의 비범한 필법에 대해 관심있게 서술한 것은 서예와 시문에 조예가 깊었던 자신의 기호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목사·섬사람들의 환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고 느낀 고마움과 안도감은 잠시였고, 이내 이견은 낮선 섬의 풍토로 인해 고단한 생활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로 뱀[蟒蛇]을 꼽았다. 계절에 관계없이 도처에 뱀이 있고, 어두운 밤에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더욱 두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섬의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로 인해 瘴氣가 있다고 언급했다.⁶⁸⁾ 제주의 이러한 풍토 때문인지 유배 4년차가 되던 1631년에는 두 여동생

67) 상동, “是時本島流配人, 有前僉正柳希顔, 前縣監成宏烈, 及第李宗英, 盲人金禹鼎在焉. 皆使人致款, 如見骨肉之來. 此皆素昧平生之人, 而人情有自然矣. 柳希顔力農資生, 李宗英教授諸生, 賴以糊口. 又聞旌義縣流竄人有韓泳, 禹弼甸, 徐旻. 徐則筆法超絶云.”

68) 李健, 『葵恣遺稿』 卷11, 「記」, 〈濟州風土記〉, “島中可畏者, 無過於蟒蛇. 無論冬夏, 到處有之. 至於夏日草長瘴濕之時, 閨房屋簷床底席下, 無不穿入. 若是夜黑睡高之時, 則雖欲謹避, 勢不可得, 此是第一可畏者也. ……島中瘴氣蒸鬱, 土地濕螿.” [1614년(광해 6) 永昌大君이 죽자 광해군에게 直言하다 제주 大靜縣으로 유배를 갔던 鄭蘊(1569~1641)의 〈大靜縣東門內圍籬記〉에는 제주의 풍토에 대해 島民과 나는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정현은 바닷가가 유독 가깝고 지형이 낮아서 瘴毒의 기운이 세 읍 중에서 가장 심하고, ② 불순한 기후로 인해 추위와 더위가 뒤바뀌어서 의복·음식 조절이 어려워져 질병이 발생하기 쉽고, ③ 뱀·지네·지렁이 등 구물거리는 것들이 겨울이 지나도 죽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

이 痘瘡에 걸려 막내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⁶⁹⁾ 이건은 여동생의 病死를 목도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워했다. 이듬해인 1632년(인조10)에 거처를 옮긴 후에는 여동생의 喪으로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쳐 세상일과 단절하고자 집에 누워있기만하고, 매일 술로써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 등⁷⁰⁾ 이건의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다. 유배인 이건의 割半之痛을 詩文으로 달랠 수밖에 없었다.

▶ 손아래 누이를 곡하며

昨夕憂君病	어제 저녁에 너의 병을 걱정했더니
今朝恨不隨	오늘 아침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도다
九原如有識	九泉(九原)에도 식견이 있다면
應念老親遺	응당 老母가 계신 것을 생각할지어다 ⁷¹⁾

위의 시는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자신의 어머니 만큼은 병환없이 지내시길 바라는 이건의 염원이 담겨있다. 한편 인조는 이건을 제주로 출치시킨 후에도 수차례 석방을 명했지만, 兩司의 습啓로 인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해배 여부를 떠나 석방의 소식이 섬에 당도하면 목사는 분주히 움직였다.

이 등장한다.(鄭蘊, 『桐溪集』 卷2, 「記」, 〈大靜縣東門內圍籬記〉, “其人曰, 然, 環瀛洲一域, 莫非洋中窮島, ①而此縣濱海尤近, 地形卑下, 瘴毒之氣, 三邑中最甚…… ②然冬或不寒, 夏或不暖, 氣候回互, 寒暑逆置, 故衣食難節, 疾病易生, ③至如蛇虺·蜈蚣·蠅蚋等蠢蠕之物.”) 이건이 제주목에서 유배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정온의 사례와는 큰 차이가 없다. 장독·뱀·전염병 등의 풍토는 제주가 당시 極惡地이자 流刑處로 활용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에 유배된 죄인들을 더욱 고단하게 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69)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辛未閏十一月, 兩妹患痘, 致有季妹捐世之痛.”
 70) 상동, “壬申春, 不佞移寓於牆外數椽之屋, 自喪妹之後, 大損心神, 意絕世事, 長臥此屋, 麴孽度日.”
 71) 李健, 『葵窓遺稿』 卷1, 「五言絕句」, 〈哭妹〉.

▶ 이 해(1633년, 인조 11) 8월, 天災가 일어나 冤獄에 대한 審理를 하라는 擧條가 있었고, 나와 3형제에게 放釋의 명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家奴 董乃가 밤을 새서 들어와 그 소식을 전했다. 그날 목사[牧伯]가 말을 타고 달려와 술자리를 베풀며 하례했다. 그 후 대간이 成命을 환수할 것을 청했고, 연이어 몇 달 동안 논쟁했다. 또한 異論을 내세워 대간을 공격하면서 역적을 비호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섬에서)나오지 못했다. 이해 12월에 이르러 비로소 들으니 명이 환수되었다고 한다.⁷²⁾

위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목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 술자리를 베풀며 하례한 것’이다. 이는 이건 형제를 특별히 배려하라는 인조의 하교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⁷³⁾ 목사 주관의 ‘석방 축하연’은 이건의 기록에서 산견된다.

▶ 을해년(1635년, 인조13) 봄, 원종대왕이 太廟에 祔廟되는 경사가 있었고, 3형제를 방환한다는 특명이 내려졌다. 목사가 곧 말을 타고 달려와서 술자리를 베풀어 稱賀했다.⁷⁴⁾

이때에 내려진 인조의 해배 하교 또한 양사의 합계로 인해 명이 환수되었지만,⁷⁵⁾ 어김없이 목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 이건에게 술자리를 베풀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방면의 하교가 실행되지 않았지만, 목사가 달려와 술자리를 베풀어주고 축하해준 것은 유배의 괴로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던 기억으

72)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是年八月, 因天災有審理冤獄之擧. 不佞三兄弟, 首命放釋. 家奴董乃罔夜入來, 以傳其報. 是日, 牧伯馳來, 設酌以賀. 其後臺諫以還收成命, 連月論啓. 且攻立異之臺諫, 目以護逆, 因此不得出來. 至是年十二月, 始聞還收之命.”

73) 이 당시 제주 목사는 李廟(1590~1665)이다. 이확은 태종의 서장자 敬寧君 李裶의 7세손이다. 이확이 하례를 베푼 것은 ‘왕실의 자손’이라는 양자 간의 동류의 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74)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乙亥春, 有元宗大王祔太廟之慶, 特命放還三兄弟. 牧伯即爲馳來, 設酌稱賀.”

75) 상동, “時兩司合啓, 以罪目深重, 雖有大慶, 不可放還, 請以還收成命, 爭之甚峻, 亦有立異而避嫌之臺官.”

로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목사와 관련된 기록이 확인되는데, 1634년(인조 12) 겨울에는 동생 이급이 머물고 있는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야심한 밤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달려와 민인들을 모아 소화를 도와주는 등⁷⁶⁾ 목사의 배려는晝夜를 가리지 않았다. 이건 형제에 대한 목사의 배려는 인조가 하교했던 ‘이공의 가족에 대한 포괄적 배려’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

1635년 8월에 이건 형제를 蔚珍으로 移配시키라는 하교가 있었으나, 고을의 상황이 좋지 않아 강원도 襄陽으로 이배지가 변경되었다.⁷⁷⁾ 이건 형제에게 이배 명령이 하달된 뒤, 제주 목사·향리·섬사람들은 이건 형제의 餞別宴을 열어주었다. 이건은 전별연의 정확한 날짜와 동석했던 妓女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그 날의 일들을 인상 깊게 회고했다. 아래의 인용문은 전별연의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 11월 10일, 別刀浦에서 바람을 기다렸다. 목사 申景琥⁷⁸⁾가 노자(路費)를 주었는데 자못 넉넉했다. 일찍이 牧城에 있을 때에 군관 金禮男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맞이해주고 술자리를 열어 餞別해준 적이 있었는데, 별도포에 나온 후에는 또 말을 타고 달려와 연회를 열어 전별해준 것이다. 섬의 향리들과 백성들이 술을 가지고 와서 전별해 준자가 자못 많았다. 그 중 기녀 海雲·溫香·老香은 더욱 정성을 다하였고, 술자리에서 노래를 권유하였는데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모두 詩로써 사례하였다.⁷⁹⁾

위 기록만 본다면, 죄인이라는 이건의 신분을 망각할 정도로 매우 遊樂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전별연을 통해 목사는 이건을 육지에서 재회

76) 상동, “甲戌, ……冬有海寧所寓家回祿之變, 牧使申公景琥冒夜馳來, 聚民救火.”

77) 『인조실록』 권31, 13년(1635) 8월 15일 임진.

78) 『승정원일기』 45책, 인조 12년(1634) 11월 9일 신유; 『승정원일기』 50책, 인조 13년(1635) 11월 23일 기사.

79)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十月二十日, 待風于別刀浦. 牧伯申公贈路費頗優. 曾在本城之時, 送人致迎於其軍官金禮男家. 置酒餞別, 及出別刀之後, 又爲馳來, 設宴餞之. 島中吏民, 携酒來別者頗多. 其中妓女海雲·溫香·老香, 尤爲致款, 置酒歌侑, 不忍別, 皆以詩謝之.”

할 날을 기약한 것이고, 섬사람들은 육지로 떠나는 종친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더욱 융숭한 대접을 한 것이었다.

이건 형제들은 당시 極惡地였던 제주에 유배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말라는 인조의 하교에 힘 입어 목사의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종친’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유배 사유가 ‘緣坐’라는 사실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말의 동정심을 자아내는 대목이기도 했다.

2. 海原君 李健의 襄陽 移配와 丙子胡亂

앞서 1절에서 언급했듯이, 1635년(인조 13) 8월에 인조는 이건 형제들을 강원도 양양으로 이배하라는 하교를 내렸다. 그러나 12월 22일까지 바람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12월 26일에 배를 운항할 수 있는 바람을 만나서야 제주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1635년 12월 26일 추자도에 도착한 후 일주일 간 머무르다 1월 3일 海南의 海倉에 도착했다. 해남에서 이배지인 양양에 이르기까지의 총 26개 지역을 관통, 1,355리의 여정을 거쳐 1월 26일에 도착했다.⁸⁰⁾ 육지에서의 이동 거리와 경유한 관아의 수를 통해 볼 때,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약 55리 정도로 산출된다.⁸¹⁾ 이건의 〈道路行程記〉를 바탕으로 이배 여정을 재구성하면 〈그림 2〉와 같다.

80) 상동, “十二月初二日, 放舡至海中無風, 還碇于別刀浦. 二十二日, 又放舡至中洋, 風勢不順, 還入別刀浦. 二十六日, 東南風大作, 三舡齊發. 日晡時, 到泊楸子島, 夜大風雪, 因此留滯七日. ……丙子正月初二日, 始發楸子島, 黃昏向於蘆鎮, 因潮退, 不得入浦, 乃下碇于洋中, 是夜宿於舟中. 初三日, 泊舡於海南海倉. ……歷全南忠清江原三道二十六官, 行一千三百餘里, 至同月二十六日, 始到襄陽, 接於東門外校外生金恪家.”

81) 流配人의 一日行程은 대략 86리로, 各道별 편차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는 道內 각 지역 간의 격차도 심하지 않아 대략 80~90리 정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보면, 移配 당시 이건의 행정은 위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결코 여유로운行程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 55·56, 1998, 377~378쪽 참고)

〈그림 2〉李健의 ‘海南 → 襄陽’ 移配 旅程⁸²⁾



82)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道路行程記〉, “自海倉[海南地] 至海南縣三十里, 縣至石池院[唐津地]四十五里, 院至靈岩郡四十里, 郡至新安院[羅州地]五十里, 院至羅州牧三十里, 牧至仙岩院[光山]地三十里, 院至長城縣五十里, 縣至川源驛[井邑地]五十里, 驛至井邑縣二十里, 縣至泰仁郡三十里, 郡至金溝縣四十里, 縣至全州府三十里, 府至參禮驛[全州地]三十里, 驛至礪山郡四十五里, 郡至恩津縣三十里, 縣至連山縣三十里, 縣至嶺岑縣四十五里, 縣至懷德縣三十里, 縣至文義縣四十里, 縣至淸州牧四十里, 牧至淸安縣五十里, 縣至槐山郡四十里, 郡至水山店[忠州地]四十里, 店至忠州牧四十里, 牧至院西倉[堤川地] 四十五里, 倉至堤川縣四十五里, 縣至楊淵驛[寧越地]四十里, 驛至寧越郡二十里, 郡至延平驛[寧越地]三十五里, 驛至平昌郡三十五里, 郡至大和驛[江陵地]四十五里, 驛至珍富驛[江陵地]四十五里, 驛至江陵府十五里, 府至連谷驛[江陵地]四十里, 驛至洞山驛[襄陽地]四十里, 驛至洋雲驛[襄陽地]三十里, 驛至襄陽府二十里. 已上二十六官, 一千三百五十五里.”(주요 지역의 출발·도착 날짜는 〈濟

이건 형제에 대한 이배 하교가 내려진 1635년 8월 15일이었지만, 12월 26일이 되어서야 출발할 수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그 이유는 바람 때문인데, 이건의 또 다른 著述인 〈濟州風土記〉에 바람과 入島에 관련된 내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섬에)들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서북풍으로, 나오는 데는 반드시 동남풍으로 해야 한다. 만약 순풍을 얻으면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배일지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건널 수 있으나 순풍을 얻지 못하면 비록 억세로 날랜 송골매의 날개가 있더라도 온갖 변화가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건널 수가 없다. 파도가 동남풍일 때는 낮고, 서북풍일 때는 높아서 들어갈 때는 그 세가 조류를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 항해가 자못 쉬운 편이나, 나올 때는 그 세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항해가 심히 어렵다. 그러므로 나올 때의 어려움이 들어갈 때보다 곱절이 된다고 한다.⁸³⁾

위 기록은 이배 하교 140여 일 후에 여정을 출발하게 된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목사·도민들이 베풀어 준 전별연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사실은 順風〔東南風〕을 기다리는 데에 12월 한 달을 꼬박 기다렸다는 것이다. 이건 가족이 양양에 도착한 뒤인 1636년 9월, 이건의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상경하게 되어 仲兄 李億과 함께 고성 原巖驛에서 배웅했다. 이건 형제가 가족과의 이별에 비통함을 억누르지 못하자⁸⁴⁾ 襄陽府使 朴弘美는⁸⁵⁾ 아래와 같은 말로 이건 형제를 위로했다.

襄日錄)를 참고하여 추가하였고, 진한 글씨와 밑줄로 표기해 둔 지명이 〈그림 2〉에 표기한 곳임을 밝혀둔다)

83)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州風土記〉, “其入也, 必以西北風, 其出也, 必以東南風, 若得順風, 一片孤帆, 朝發夕渡, 不得順風, 雖有鷹鷂之翼星霜之變, 無以可渡. 而海波東南低, 西北高, 入去時則勢如順流而下, 舟行頗易, 出來時則勢若遡流而上, 舟行甚難. 故出來之艱, 有倍於入去時云.”

84)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州風土記〉, “九月, 慈堂率弟妹上京, 不佞與仲氏陪往, 辭別於元岩驛, 歸至海邊, 下馬而坐, 兄弟相對痛哭.”

85) 『승정원일기』 56책, 인조 14년(1636) 2월 16일 병술.

▶ 부사(府伯)를 入見했는데, 부사 朴公(朴弘美)이 母子兄弟와의 送別의 고통을 묻고, 차림새를 갖추어 술잔을 건네며 위로하길, “성명께서 在上하시고 은전을 입을 날을 생각해보면 필히 멀지 않았으니, 아무쪼록 膝下에 오랫동안 떠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약 外傷이나 癘厲가 생기거나 마음의 병으로 悲戚하셔서 치료하기에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친리 타향에서 가엾게 여겨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살아 돌아가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천만토록 스스로를 아끼십시오.”라고 하였다.⁸⁶⁾

양양부사의 말을 요약하면, ‘釋放의 恩典을 곧 입을 것이니 몸과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양양부사를 만나고 3개월 뒤에 丙子胡亂이 발생했다는 邊報을 접했다. 이건은 1636년 12월 16일에 家奴 香男을 통해 戰亂의 소식을 처음 접했고, 사내중 中男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가 강화도로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와 함께 이건은 “강화도는 평소 적군들이 크게 욕심을 내던 곳이고, 강원도와 강화도는 길이 遼遠해서 存亡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써 어머니의 신변에 큰 걱정을 내비쳤다. ‘유배’라는 현실 속에서 이건의 형제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⁸⁷⁾ 아래 인용문은 어머니의 신변과 전란의 현황을 주시하던 이건의 심리가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12월)19일, 관문에서 전언하길 서울이 함락되어 大駕가 남한산성으로 移駐하셨다고 하고, 또 서울의 士女들이 적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된다. 적의 소식을 들은 뒤부터 노쇠하신 어머니와 숙부, 형과 누이들이 무사히 전란을 피했는지 기별을 알 수 없다. 일찍이 밥 한 숟갈 먹지 못하고, 낮밤

86)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入見府伯, 府伯朴公問母子兄弟送別之苦, 爲之動容. 舉酒慰之曰, 聖明在上, 蒙恩之日, 想必不遠, 幸勿以久離膝下, 浪自悲痛. 倘或外傷癘厲, 內疚悲戚, 致有難醫之域, 千里他鄉, 無人憐救, 況望生還之理乎, 千萬自愛云.”

87) 상동, “十二月十六日夜, 家奴香男來告邊報, 十八日初更, 奴中男自京下來, 書中詳寄邊報, 而有慈堂欲向江都之語, 以此憂悶罔極, 蓋敵人之所欲素在江都, 而江都之與關東, 途道遼遠, 彼此存亡, 有不可聞, 昆弟兩人, 踽踽相對哭泣而已.”

으로 통곡하며 울었다. 수 차례 自決하고자 했지만, 형제가 서로 말리며 말하길, “확실한 소식을 기다리고 결정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⁸⁸⁾

이건은 어머니·숙부·형제들의 신변을 알 수 없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심지어 自決까지 결심했던 것이다. 또한 형제들이 ‘확실한 소식을 기다린 후에 자결해도 늦지 않다’는 말로써 이건을 만류한 것을 통해 볼 때, 이건의 모든 형제들은 가족들이 불미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의 거취를 생각해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에 대한 이건의 우려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 (12월)21일 밤,三更에 이르러 등불 앞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사내아이종이 급하게 불러서 일어났더니, 소식을 전하는데 어머니께서 내려오신다는 기별이었다. 옷을 여미고 문을 열어 그것에 대해 물었더니, 祥雲驛의 驛吏 洪永天이라는 자가 공무 차 서울로 올라가면서 元岩驛에 이르렀을 때, (어머니가) 행차하신다는 앞선 소식을 듣고 告目を 보내왔는데 20일에 쓴 것이었다. 내일 嵐效驛에 당도할 것이라 하니, 몹시 초조하고 마음 졸이고 있던 중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 地下에서 天上의 기별을 듣는 듯 했다. 아침까지 앉아서 기다렸다가 종과 말을 보내 행차 도중에 迎逢하도록 하였다.⁸⁹⁾

이건은 祥雲驛의 驛吏가 전한 모친의 행차 소식을 듣고 매우 다행스러워했다. 모친이 당도하는 때를 맞추기 위해 아침까지 침소에 들지 않고 기다리고, 모친을 빨리 상봉하기 위해 종과 말을 보낸 것은 이건이 저간에 느꼈던 불안감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준다. 12월 24일 이건은 중형 이억과 함께 元

88) 상동, “十九日, 自官門傳言陷京及大駕移駐南漢之報, 又有京城士女盡陷賊陣之語, 尤用心慮. 自聞賊報之後, 未知老親叔父及弟妹無事避兵之奇. 未嘗食一匙飯, 日夜痛泣. 累欲自決, 而兄弟旋相止之曰, 姑待消息之真的, 決之未晚也.”

89) 상동, “二十一日夜, 至三更假寐於燈前, 忽有童僕急呼而起, 傳報老親一行下來之奇. 攬衣推戶, 問其所以, 則祥雲驛吏洪永天者, 因公上京, 至元岩驛, 得聞規行先聲, 告目送之. 而二十日所也, 明日當到嵐效驛, 煎慮之中, 得聞此報, 如聞天上奇於地下也. 坐待鷄鳴, 送奴馬, 使之迎逢於中路.”

岩驛에서 모친과 재회했고, 12월 25일에 配所에 도착했다.⁹⁰⁾ 1637년(인조 15) 1월에 접어들면서 적군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건은 1월 20일에 모친을 山幕으로 피신시켰고 자신은 配所에 그대로 머물렀다.⁹¹⁾ 유배 중에 겪은 전쟁은 이건의 심기를 더욱 불안하게 했다. 또한 정치적 곡절 속에서 아버지를 잃었기에 모친의 존재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1월 24일, 이건은 산막에 머물고 있는 모친을 문안하고 오는 길에 ‘적병 10여 騎가 麒麟驛에 들어와 노략질을 하고, 내일은 반드시 고개를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길에서 듣고, 거처에 도착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산으로 피신한 것을 보면서 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결국 그는 다음 날 모친이 머물고 있는 산막으로 피신하고자 행장을 꾸렸다.⁹²⁾ 다음 날인 1월 25일에 이건은 伯兄 이길에게 산막으로 피신할 것이라 통보하고 길을 나섰다.

▶(1월)25일 아침이 되어 큰 형의 거처에 사람을 보내서 피해 들어갈 의사를 통보했는데, 이미 지난 밤에 온 가족이 산에 올라가서 단지 문이 잠겨있는 고요한 빈 집만 있다고 한다.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사내중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산막에 이르렀다. 어머니의 일행도 이미 지난 밤에 적병의 기별을 듣고서 산 끝짜기에 옮겨 들어가셨다. (...) 주저한 끝에 산 끝짜기 돌 사이에 하얗게 잘린 소나무 한 그루를 두 가지에 묶어 놓은 것이 있었다. 이상하게 보여 이것을 쫓아갔고, 또 수십 수여 보를 걸었더니 연달아 이러한 標式이 있었다. 아마 어머니의 일행이 산에 올라갈 때에, 내가 반드시 올 것이며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을 걱정하셔서 나무를 잘라 가지에 묶고 종적의 표시를 하신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을 따라 십여리를 찾아 가니 어머니·형제·여동생이 모두 설산에 앉아있었다. 서로 보며 오열했는데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⁹³⁾

90) 상동, “二十四日, 與仲氏冒雪往迎于元岩驛. 二十五日, 陪到配所, 自是以後, 訛傳日至, 莫知其真偽.”

91) 상동, “丁丑正月, 再三送人于山城, 而至嶺內, 皆還曰, 敵兵瀰滿, 未由前進, 又聞於道路, 兵火日熾, 無處不及云. 二十日, 避入於山幕, 不佞獨在配所.”

92) 상동, “二十四日, 上山觀親而來. 至中路, 得聞敵兵十餘騎, 入掠麒麟驛, 明日必越嶺云. 比到所寓, 則洞里大小人民, 盡數上山, 無一人存者. 是日達夜治裝, 坐而待朝.”

93) 상동, “至二十五日朝, 送人于伯氏所寓, 通其避入之意, 則已於去夜, 闔家上山, 只有

이건의 불안·초조·다행·급박한 감정을 위 인용문에서 모두 간취할 수 있다. 우선 이건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산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산에 도착한 뒤에도 처음에 마련한 산막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가족들의 은신처를 찾느라 고전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잘린 소나무를 보고 이건은 ‘어머니가 남긴 표식’으로 확신하고 따라 올라간 것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발휘된 인간의 직감이었다. 이날 밤, 이건의 명으로 戰況을 살피고 온 사내중은 “오늘 길에 밤이 되어 지척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고개 위에 불빛이 보이고 사람 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적병들이 이미 고개를 넘었고 밤이 깊어 陳을 치고 묵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건과 그의 가족들은 서둘러 식사를 하고 거처를 옮기고자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냈고,⁹⁴⁾ 다음 날인 1월 26일 새벽이 되자마자 이건의 일행은 피신길을 재촉했다. 이건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1월)26일 해가 뜰 무렵, 또 산 하나를 넘어 정상에 오르려고 했으나, 얼음벽[水圍]이 여러 층이고, 눈 쌓인 봉우리가 여러 겹이라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이 발을 붙일 수 없었고, 마주보며 울기만했다. 산 아래에서 잠깐 쉬고, 사내중을 시켜 먼저 상봉 정상에 오르게 하여 喬木에 줄을 매달아서 서로서로 扶携하여 그 줄을 붙잡고 올랐다.⁹⁵⁾

한양에서 왕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소년 이건에게 ‘유배’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지속되는 피란 행정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특

空舍寂然閉鎖云。聞來大驚，卽封鎖門戶，與數奴馳至山幕。……躊躇之際，忽見澗石之間，斫白一株松木而結其兩枝，疑其有異，趁此而往，則或數十步十餘步，連有此標。蓋老親一行上去時，想不佞之必來而恐其難尋，斫木結枝，以爲尋蹤之標也。因此得尋行至十餘里，則老親及兄弟姊妹，皆坐於雪山。相見嗚咽，不能出聲。”

94) 상동. “卽令奴僕伐松木，假構依幕。是夜宿於其中，因送兩奴，下往邑內，探聽消息，則至夜半還來云，至中路夜黑，不辨咫尺，嶺上有火光，火中有人語，此必賊兵已越嶺，因夜深留陳於此也，茲以還來云。上下聞之，相顧驚惶，遂促食待曉。”

95) 상동. “二十六日平明，又越一山，欲上絕頂，氷崖千層，雪峯萬疊，老親幼妹，不能接足，相對淚下。少休于山下，使奴僕先上峯頭，懸索於喬木，相與扶携，攀其索而上。”

히 추운 겨울에 눈이 쌓여 길을 조차 험겨워했던 노쇠한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의 처절한 모습은 이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이건의 가족은 산 정상에 한 바위 아래에서 하룻밤을 묵었다⁹⁶⁾ 이틀 뒤인 1월 28일, 이건은 釋放의 명령을 접했지만,⁹⁷⁾ 그에게는 해배의 기쁨보다는 목숨의 부지가 우선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혼란스러웠던 전황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2월)13일 아침, 連谷(現 강릉시 연곡면 일대)으로 향하여 중형이 오기를 기다리고자 했으나, 다시 진퇴를 의논하다 읍내에 이르렀다. 크고 작은 피난민들이 앉거나 서서 도로가에 가득했고, 앉거나 서서 7~8명이 무리를 이루며, 놀랍고 두려운 안색이 있음이 보였다. 물으니 곧 모두 말하길, “杆城과 固城 근처에는 이미 적군이 이르렀다”고 한다. 이 말을 한번 듣고는 일행과 노복은 모두 낙담했고, 앞으로 나갈 뜻이 조금도 없었다. 부득이 大倉驛에 들어가 머물고, 사람을 시켜 읍내를 탐문하고 오도록 했는데, “이내 성문이 닫혀있어 길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고, 사사로이 왕래한 자가 있으면 곧바로 호시하였습시다. 그 당시 斬首하여 성 위 깃대에 매달아 놓은 것이 세 네頭に 이르렀습시다.”라고 하며, 그 곳을 갔던 종이 놀랍고 두려워하며 와서 말하였다. 도로에서 들었다고 하며, “청나라 군대가 北道에서부터 고성과 통천의 경계에 이르고 머지 않아 이곳에 당도할 것이다.” 혹은 “북도에서 병사들이 패하고, 군량미가 떨어지면[絶糧] 음식을 먹으러 온다.” 혹은 “본 부의 군수가 피난민들을 몰아서 내쫓고 그 돈과 재산을 탐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놀래키거나 겁박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위협한다는 등 이와 같은 얘기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비록 지혜가 있는 선비라 할지라도 또한 명백하게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다.”⁹⁸⁾

96) 상동, “二十六日平明, 又越一山, 欲上絕頂, 氷崖千層, 雪峯萬疊, 老親幼妹, 不能接足, 相踉蹌下. 少休于山下, 使奴僕先上峯頭, 懸索於喬木, 相與扶携, 攀其索而上. 是夜宿於岩下, 凭石假寐, 忽與叔父舍弟團團如昔, 而欠伸驚覺, 乃一夢也.”

97) 상동, “二十八日, ……義信自嶺南來, 是時入山已久, 事多艱苦. 且聞放釋之命.”

98) 상동, “十三日朝, 還向連谷, 欲待仲氏之來, 更議進退. 行至邑中. 大小避亂之人, 塞於途街, 或坐或立, 七八成群, 似有驚懼之色. 問之則皆云杆城高固城近處, 賊兵已至. 自聞此語, 一行奴僕, 盡皆落膽, 少無前進之意. 不得已入接於大倉驛, 使人往探於邑內, 則城門牢閉, 不入行路之人, 如有私自往來者, 旋即梟示. 其時斬首而方懸于城上旗竿者, 亦至三四頭, 所往之奴驚懼而來曰. 只聞於道路, 則或以爲賊兵自北道, 已

이건의 기록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은 자신이 들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사로이 왕래하다 적발된 사람을 참수하여 梟示했다는 노비의 보고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소문에 대해서는 이건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이라는 공포 속에서 명확한 전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실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8일에 이건은 적군의 형세가 더욱 심해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강릉으로 향했고, 19일에는 羽溪村(現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 머물렀다. 2월 25일이 되어서야 이건은 서울로 향하는 行程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⁹⁹⁾ 3월 1일에 原州에 도착한 이건은 10년 유배살이에 대한 소회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곳은 아버지 이공이 ‘박흥구 역모 사건’에 연루되어 간성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배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에 아버지를 따라 원주에 왔었던 이건은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소년기와 달리 변함없는 山川을 보고 感傷에 젖었다.

▶ 3월 초1일, 원주의 경계에 이르러 묵었다. (...) 초3일, 원주 읍내에 도착하였고, 成季春의 집에 머물렀다. 이날 사내중 元伊를 먼저 보내서 서울(洛中)에 소식을 전했다(通信). 이 고장의 노인들이 모두 아버지(故老)의 병인년의 일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두 왔는데,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목사 또한 사람을 시켜 음식과 물건을 보냈다. 이곳에 다시 돌아오니 人家는 옛 모양과 변함이 없고, 山川도 바뀐 것이 없었다. 같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일이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어제 아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세월은 이 같이 흘러 이미 10년이 지났다. 지난 날 어린 애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식솔을 거느리고, 당시에 소년들은 모두 老大해졌다. 이를 보니 酸辛해져 종일 눈물이 흘렀다.¹⁰⁰⁾

至高城通川之境，不日當到此。或以爲北道敗兵，因其絕糧，欲爲取食而來云。或云本府太守欲驅逐避亂之人，探其貨財，故爲虛驚而劫之，佯殺無辜而威之。如此之說，不一而足，雖使有智之士當之，亦難明辨也。”

99) 상동, “至十八日，傳聞賊勢尤急，乃更作南行，至江陵地止宿。十九日，行至羽溪村止宿。……二十五日，自羽溪離發向京，時已聞大駕還都之奇，及敵兵捲歸之報。故直向京城，至丘山驛留宿。”

이건은 자신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던 반정공신들과, 신하들의 強請으로부터 아버지를 끝까지 보호하기 못했던 인조에게 일말의 원망도 없었을까? 이건의 내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차치하고서라도, 아버지의 정치적 곡절로 인해 소년 시절부터 겪어야했던 10년간의 유배는 이건으로 하여금 정치의 냉혹함과 세상의 고단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자손들에게 남긴 訓示에서는 군주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자신을 무사히 방면시켜 준 인조에 대한 ‘충성 서약’이기도 했다.

▶ 형제들 가운데 가장 약한 몸이 귀양살이라는 무거운 죄를 입어 탐라 유배지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보냈다. 마침내 물에 빠져 죽는 것(魚腹之藟)을 면하게 되었고, 왕도(鞏殿之下)로 살아 돌아왔다. 다시 조정의 반열 뒤에 섞여 태평한 세상을 앉아서 누리게 되었다. 이는 성스러운 임금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積善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자손에게 미친 것이니, 밤 중에 이를 생각하면 감격스러운 눈물이 흐른다. 무릇 나의 자손들은 이를 유념하여 세세대대로 忠孝의 節概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¹⁰¹⁾

‘忠’을 통해 군주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내비쳤는데, 이는 保身策이자 추후 유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한 처사이기도 했다. 아울러 ‘孝’를 강조한 것은 종친으로서 응당 지켜야 할 行身임과 동시에 그 행간에는 자손들이 현실 정치에 뜻을 두지 않고 修身과 齊家에만 진력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1746년(영조 22) 이건에게 ‘忠孝’라는 諡號가 내려진 것은 이건의 훈시

100) 상동, “三月初一日, 至原州境止宿。……初三日, 到原州邑內, 接於成季春家。是日先送奴元伊, 通信於洛中。此地故老追思丙寅之事, 皆來見之, 猶恐不及。牧伯亦使人送食物。復到此地, 人家依舊, 山川不改。所不同者人事也。追思往事如在昨朝, 而日月如流, 已過十年。舊日兒童, 已成項領, 當時少年, 俱爲老大。觸目酸辛, 終日下淚。”

101) 상동, “以人中最弱之身, 蒙流竄之重典, 謫耽羅之罪地, 經最久之歲月。而終免魚腹之葬, 生還鞏殿之下, 重廟宗班之後, 坐度太平之世。此無非聖朝生成之恩, 祖先積善之慶。中夜言念, 感淚時零。凡我子孫, 體念于此, 世世代代, 益懋忠孝之節。是余所望也。”

가 결코 위선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 두 인용문을 통해 해배 후, 學藝와 食술들의 건사에 진력하는 이건의 삶을 확인할 수 있다.

▶ 諡狀(趙泰億 撰)

兄嫂를 섬기는 情理와 禮儀를 능히 갖추었고, 부모 잃은 조카를 어루만지는 것을 자신의 자식과 다름없이 했다. 불쌍히 여기고 구휼하는 것에 미치지 않고, 宗黨에 외롭고 가난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을 집으로 거두었다. (...) 일찍이 (그의) 자손들이 한 畝의 땅을 개척한 적 없고, 名利와 財貨에는 막연하고 관심도 없었다. 찾아 온 손님을 들이지도 않고, 오직 방 한칸에서 서예와 소나무와 대나무를 그렸다.¹⁰²⁾

▶ 祭文(表從弟 尹昌門 撰)

지난 辛巳년(1641, 인조 19)에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公[이건]은 나의 喪事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도와주셨다. 두터운 정분(契)에 힘입어 영구를 모시고, 비를 무릅쓰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넜으니, 내가 사사롭게 받은 큰 은혜를 마땅히 어찌 해야하는가? 感銘을 마음과 뼈에 새기고, 목숨을 바쳐 보은하려고 했는데(殞結圖酬), 다른 급한 어려움으로 서로를 구제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서로간에 우환을 돌봐주었다. 마음에 맺힌 감회를 다 얘기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함께 구경했던 적은 진실로 해야 할 수도, 말로 다 할 수도 없다.¹⁰³⁾

한편 이건의 긴 유배를 통해 주변 친척들에 대해 再考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아래 인용문에서는 유배 당시 친척들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102) 趙泰億, 『謙齋集』 卷38, 「諡狀」, 〈宗室海原君諡狀〉, “事兄嫂, 情禮克備, 撫孤姪, 無間己出. 憐窮恤困如不及, 宗黨之孤貧無依者, 赴之如家. ……性素儉, 幼不喜華靡, 食不兼味, 衣無華采. 未嘗爲子孫拓一畝地, 名利貨財, 漠然無所關心, 惟却掃一室, 書畫松竹.”

103) 李健, 『葵窓遺稿』 附錄, 「祭文」, 〈祭文(尹昌門)〉, “往在辛巳, 余遭大故, 公匍匐救助, 靡極不用. 受契奉柩, 冒雨跋涉, 余之所以私其大惠者, 宜何如也. 感銘心骨, 殞結圖酬, 而及其他急難之相救, 憂患之相顧. 心懷之開陳, 美景之共賞, 固不可數計而盡言也.”

데, 그 내용이 자못 흥미롭다.

▶ 이는 耽羅에 들어가서 8년, 2년의 襄陽 유배살이의 대략이다. 일찍이 耽羅에 있을 때에 전후의 牧使들과 判官(通判) 그리고 大靜縣과 旌義縣의 守丞(倂들이 와서 보지 않은 적이 없었고, 서로를 매우 후하게 대우하였지만, 그 중 判官 鄭侗은 사람이 매우 해괴하고, 宋鎌은 愚劣함이 土塊와 같았다. 8년 동안에 무릇 질병을 醫藥으로 구제해주고, 굶주림과 추위에 衣食을 보내주고, 또한 死生存沒을 서로 위문한 것은 오직 仁興君 삼촌 뿐이다. 시종일관 질병에서 구제하고, 추위와 굶주림에서 구제하는 것은 홀로 맡으셨으니, (인홍군의 배려는) 천리가 無間하게 끊이지 않았다. 그 밖에 宮家에서는 단 한번도 서로 위문하지 않았는데, 오직 眞正翁主가 편지를 한 번 보내 死生을 물었다. 順和君夫人은 鄕校洞의 本家를 사고 싶다고 편지를 보내 겁박하였고 또 威福을 보였지만 끝내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¹⁰⁴⁾

이건은 궁지에 몰렸던 자신에게 厚意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절절한 문장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家産을 빌미로 자신을 겁박하거나 위문하지 않았던 친척들에 대해서는 다소 단호한 문투로 서운함을 표현했다. 이는 죄인의 신분일 때 자신을 괘시한 친척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던 것이다.

한편 해배의 명을 받았지만 전란으로 인해 이건 형제들이 강원도의 山川을 해매고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먼저 還京했던 동생 海寧君 李偲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1636년 가을에 인조로부터 하사 받은 말을 타고 南漢山城에 급히 入城했다. 이에 인조는 “인성의 아들이 과인을 호위하러 왔다”는 말로써 그의 입성을 미쁘고 든든하게 여겼다.¹⁰⁵⁾ 병자호란 당시 이건의 남한산성 입

104)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州風土記〉, “此其八年耽羅, 二年襄陽, 謫居事略也. 曾在耽羅時, 前後爲牧使·通判及大靜·旌義倂者, 無不來見. 待之甚相厚, 而其中判官鄭侗爲人, 極怪戾, 宋鎌愚劣如土塊. 八年之間, 凡疾病醫藥之救, 飢寒衣食之資, 及死生存沒之相問, 唯仁興君三寸. 終始獨當, 救其疾病, 周其凍餒, 千里無間, 源源不絕. 其他宮家, 一不相問, 唯眞正翁主, 一番抵書, 問其死生. 順和君夫人, 欲買鄕校洞本家, 抵書怯之, 且示威福而終不得焉.”

105)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24, 「仁祖朝古事本末」, 〈仁城君珙之死〉. [이궁익의 『연

성은 혼란스러운 인조 초반 정국 속에서 자결했던 이공과 그의 아들들이 겪고 있던 難苦를 환기시킨 계기가 되었다. 還都한 인조는 1637년 3월 23일에 이공의 復官과 그 아들들을 모두 忠臣부의 직을 제수할 것을 전교했다.¹⁰⁶⁾ 1637년 1월 18일 해배의 명을 받았지만, 피란으로 인해 3월 10일에 入京했고,¹⁰⁷⁾ 1637년 3월 23일에 임궐하여 인조를 謁見했다. 인조와의 대면은 〈濟襄日錄〉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 (3월)23일, 비로소 복직의 명이 있었고, 肅謝의 날에 주상께서 인견하셔서 濫諭하셨다. 주상의 말씀은 간곡했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아! 王戚의 禍가 어느 시대인 들 없었겠는가! 무진년(1628, 인조 6)부터 정축년(1637, 인조 15)까지 모두 10년이다. 임금의 뜻으로 이에 돌아왔고, 지극한 원한이 비로소 씻겨졌다. 이것은 실로 聖明의 生成之恩이며, 조상들의 선행으로 인해 자손이 받은 경사이다.¹⁰⁸⁾

또한 인조는 1637년 6월 8일에 右副承旨 宋國澤(1597~1659)에게 이공 자녀들의 혼인에 대한 啓稟을 서두를 것을 전교하였고,¹⁰⁹⁾ 1639년(인조 17) 3월

려실기술』에는 이급이 남한산성에 입성한 날짜가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이 건이 강원도에서 이급의 입성 소식을 접한 시기가 1636년 12월 23일로 확인된다.(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二十三日朝, 奴愛男自行次來傳消息, 始見親札, 書中有海寧扈往山城之語.”) 인조가 1636년 12월 14일에 남한산성에 도착했으므로(『인조실록』 권33, 14년(1636) 12월 14일 갑신.), 이급은 인조가 입성한 후 대략 일주일 정도 뒤에 남한산성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106) 『승정원일기』 56책, 인조 15년(1637) 3월 23일 임술, “傳曰, 今因變亂, 大小罪犯, 毋論輕重, 盡行蕩滌, 而至親中名在罪籍, 獨未免大段恩澤, 事涉未盡, 前仁城君珙, 復其官爵, 其諸子竝爲除職.”

107) 李健, 『葵窓遺稿』 卷11, 「記」, 〈濟襄日錄〉, “初十日, 一行皆入京中, 獨不佞與仲氏省掃於先塋. 十一日, 叔父與伯氏以寒食祀事出來. 十二日, 罷祭後, 一時入城.”

108) 상동, “二十三日, 始有復職之命, 肅謝之日, 上引見濫諭. 天語丁寧, 不覺感泣. 噫, 王戚之禍, 何代無之. 而自戊辰至丁丑, 凡十周年. 而天意乃回, 至冤始雪. 此實聖明生成之恩, 祖先餘慶之致也.”

109) 『승정원일기』 58책, 인조 15년(1637) 6월 8일 을사, “傳于宋國澤曰, 仁城君子女婚嫁時, 自該曹定給事, 頃年, 傳教矣. 亂後則不爲啓稟, 此何故耶? 若或廢略而然,

25일에는 이들의 定婚單子를 봉입하도록 전교했으며,¹¹⁰⁾ 같은 해 7월 11일에 이공의 딸이 정혼했다고 하자, 해당 관서로 하여금 혼수를 내려주도록 조치하는 등¹¹¹⁾ 오랜 유배 이후, 이공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공의 자녀들에게 베푼 인조의 特典은 정치적 곡절 속에서 숙부를 살리지 못했던 죄책감을 덜고, 왕실 내부의 伸冤을 통해 전란 수습을 위한 國論의 결집을 피하고자 했던 인조의 내심도 깃들어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反正功臣들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졌던 執政 초반기의 행태를 탈피하고자 한 인조의 정치적 의도도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¹²⁾

IV. 맺음말

이상으로 海原君 李健의 流配를 통해 조선후기 宗親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한다.

우선, 이건家の 정치적 좌표는 큰 틀에서 南人[淸南]이었고, 外戚 혹은 相門 [大丘徐氏 徐文道家·光州盧氏 盧守愼家·同福吳氏 吳端家·青松沈氏 沈之源家·海州崔氏 崔奎瑞家]과도 혼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건의 유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生父 仁城君 李珙의 光海君~仁祖代 활동상을 검토했다. 이공은 선조~광해군대 종실의 가장 연장자이자,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종실의 제반 업무를 관할했다. 이후 광해군대 癸丑獄事와 戊午庭請 당시에는 종실을 대표해 ‘廢母殺弟’를 극력 주창했는데, 이는 仁祖反正 이후 이공이 守勢 國

則事甚駭愕，問于該曹，以啓。”

110) 『승정원일기』 68책, 인조 17년(1639) 3월 25일 임오, “傳于沈諮曰，頃日仁城君子息定婚單子入之。”

111) 『인조실록』 권39, 17년(1639) 7월 11일 병인.

112) 이 부분은 이건의 석방을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 결과서의 소견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적실한 지적과 함께 필자가 착안하지 못했던 자료를 소상하게 알려주신 익명의 심사위원회 감사드린다.

면을 맞닥뜨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朴弘耆 역모 사건’과 인조 초반의 여러 獄事에서 이공이 원흉으로 지목되었고, 반정공신의 元勳인 李貴가 중심이 되어 ‘이공 治罪論’을 주도했다. 인조의 갖은 비호에도 불구하고 兩司·弘文館 그리고 宰相들이 중심이 되어 이공에 대한 전방위적인 攻勢를 전개했고, 1625년(인조 3)에 인조는 이공의 가족들을 강원도 杆城에 圍籬安置했지만 1년 여 뒤에 석방했다. 그러나 柳孝立 獄事를 계기로 이공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공의 가족들은 珍島로 유배되었지만, 이공에 대한 치죄 정론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이공은 自決하라는 인조의 하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공이 자결한 뒤인 1628년(인조 6)에 그의 처자들은 모두 濟州로 出置되어 8년 동안 제주에서 유배살이를 해야했다. 이건은 8년의 제주 유배와 강원도 襄陽으로 移配된 이후의 일들을 모두 기록했다. 이를 통해 이건 형제의 10년 유배에 대한 全論을 검토할 수 있었다.

1628년 6월, 제주에 도착한 이건은 牧使와 섬사람들의 환대를 받았는데, 이는 이건의 형제에 대한 각별히 배려하라는 인조의 하교에 기인한 것이었다. 인조는 이건 형제에 대한 釋放을 지속적으로 하교했지만, 兩司의 맹렬한 습격로 인해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석방의 하교가 섬에 당도하면 목사는 이건 형제를 찾아가 잔치를 베풀어 축하했다. 또한 집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晝夜를 가리지 않고 助力했다. 이배지인 강원도 양양으로 가기 전에는 목사와 도민들은 別刀浦에서 융숭한 餞別宴을 열어 이들 형제를 歡送했다. 목사가 ‘유배인 이건’에게 이와 같이 베풀었던 배려는 인조의 하교를 비롯하여 인적 관계망이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8년의 제주 유배 이후 이배지인 양양에 도착한 이건은 丙子胡亂으로 인해 流配人임과 동시에 避亂民 신세가 되었다. 이건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피란 행정을 함께 했다. 그는 피란 중에 가족의 소식을 알 수 없어 식음을 전폐하거나 자결을 결심하는 등 불안한 심리 상태를 여지 없이 드러냈다. 가족들이 또 다른 山幕에 피신하자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동물적인 직감을 발휘하

며 온 산을 찾아 해맸다. 극한의 상황에서 이건은 고귀한 ‘왕족’이 아닌 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이건이 겪은 10년의 유배는 주변을 정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궁지에 몰렸던 자신에게 끊임없는 至誠으로 배려했던 숙부 仁興君 李瑛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유배 간 사이 本家 등 자신의 家産을 탐냈던 長水黃氏 順和君의 蕪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고, 제주에서 만났던 목사들이 베풀어 준 배려도 잊지 않았다. 解配된 뒤에는 聖恩의 망극함을 되새기고, 아버지 이공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主君에 대한 ‘忠孝’를 深刻했다. 또한 學藝와 近寸의 식솔들을 건사하는데 진력했고,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했다.

본고에서는 인성군 이공의 정치적 곡절과 그의 3남 해원군 이건이 남긴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왕족 유배를 정치·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종친은 조선 사회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일정한 보장을 받는 계층임과 동시에 정치적 사안에 깊이 연루가 되면 맹렬한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건의 기록을 통해서 연좌율로 다스려진 한 인간의 곡절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이건이 해배된 이후에 취해진 이공 및 그의 자녀들에게 내려진 인조의 特典과 伸冤은 王室의 기강과 國運을 바로잡고 왕·신하 간의 역학 관계를 되찾고자 했던 군주의 의중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공·이건 부자는 기본적으로 ‘종친’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인물이지만, ‘광해군~인조대’에 정치적 곡절을 겪었던 인물들의 ‘보편성’을 추출함에 있어 양질의 論題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본고가 통해 조선시대 유배 죄인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연대기 자료

『광해군일기』; 『선조실록』; 『승정원일기』; 『인조실록』

2. 原典

『謙齋集』(趙泰億); 『葵窓遺稿』(李健); 『記言』(許穆); 『桐溪集』(鄭蘊); 『西堂私載』(李德壽); 『璿源續譜』(K2-4725); 『松坡集』(李瑞雨); 『燃藜室記述』(李肯翊); 『王子仁城君孝愍公世家行錄』(K2-446); 『太常謚狀錄』(K2-478)

3. 단행본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오향녕 역주, 『추안급국안』 3(1617, 광해군 9), 흐름, 2014.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古文書集成-咸陽 安義 密陽朴氏 朴明博宗家 古文書』 119, 2016.

4. 박사학위논문

만진초, 「조선후기 大丘徐氏의 정치활동과 학풍」,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 濟州島를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3.

5. 연구논문

김경숙, 「朝鮮時代 流配刑의 執行과 그 事例」, 『사학연구』 55·56, 1998.

- 김상조, 「冲庵 金淨의 『濟州風土錄』과 葵窓 李健의 『濟州風土記』 비교 연구」, 『大東漢文學』 13, 2000.
- 김용흠, 「仁祖反正의 名分과 政權의 正統性 論爭」, 『역사학연구』 27, 2006.
- 김유리, 「규창 이건 「제주풍토기」의 교육적 의미」, 『국학연구』 20, 2012.
- 김학수, 「진주유씨 청문당가(淸聞堂家)의 가계와 정치·사회·문화적 전개 - 조선 후기 근기남인가(近畿南人家)의 굴절과 명암」, 『성호학보』 21, 2019.
- _____, 「제주지역 유교 지식(知識)·문화(文化)의 수용 양상과 '제주학풍(濟州學風)' - 주자학적 예교론(禮敎論)과 사림과 학풍의 유입을 중심으로」, 『한국학』 43, 2020.
- 김한신, 「仁祖代 前半期 왕권과 정치질서 재편」, 『한국사학보』 78, 2020.
- _____, 「광해군대 廢母論의 전개과정」, 『조선시대사학보』 16, 2023.
- 노춘수, 「崔奎瑞의 생애와 정치활동」, 『조선시대사학보』 102, 2022.
- 신채용, 「家系와 婚脈을 통해서 본 仁興君家の 政治·社會的 位相」, 『文化史學』 58, 2022.
- 심재우, 「조선전기 유배형과 유배생활」, 『국사관논총』 92, 2000.
- _____, 「조선시대 유배제도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도서문화』 58, 2021.
- 양순필, 「李健의 『濟州風土記』 考」, 『한국어문학』 16, 1978.
- _____, 「李健의 『濟州風土記』 小考」, 『어문논집』 21, 1980.
- 이민주, 「제주 복식의 다름이 조선의 '갓' 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 43, 2020.
- 장유승, 「悲運의 王孫 盛世의 宗親 - 海原君 李健의 生涯와 漢詩」, 『韓國漢詩作家研究』 11, 2007.

6. DB

한국학자료센터 - 인물관계정보(『萬家譜』)

Abstract

Joseon Dynasty's exile examined through the cases of Inseong-gun Lee Gong and Haewon-gun Lee Geon

Nho, Choon-soo*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exile of the Joseon Dynasty in terms of political, life, and cultural history through the examples of Inseong-gun Lee Gong(仁城君 李珙), and Haewon-gun Lee Geon(海原君 李健). First, in this paper, the family relationship of Lee-geon and the cause of his exile were examined. The so-called Lee Geon family was professing for a Nam-In[Cheong-nam] in a large framework, He also formed a marriage relationship with King Yeongjo's queen's family and politically important families.

Lee Gong is the seventh child of a concubine of King Seonjo, and his mother is Jeong Bin(靜嬪閔氏). During the King Seonjo, engineers were in charge of all affairs of the royal family and were seen taking the lead in major political issues(癸丑獄事, 戊午庭請). After Injo-banjeong(仁祖反正), Lee Gong became politically disadvantaged. Even though King Injo wanted to protect him, he exiled Lee Gong to Jindo island(珍島) at the strong demands of many of his vassals. Public opinion continued to punish Lee Gong, and after four months of exile, King Injo ordered Lee Gong to commit suicide.

After Lee Gong's death, his third son Lee Geon was exiled to Jeju island(濟州) along with his eldest brother Haepyeong-gun Lee Gil(海平君 李佶) and his

* Ph.D. student,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second brother Hae-an-gun Lee Eok(海安君 李億). What is noteworthy is that Lee Geon's eight years of exile in Jeju and his actions in the evacuation(The Manchu War in 1636) after being moved to Yangyang(襄陽) are recorded. Although previous research has provided some insight into Lee Geon's experiences at the time of his exile, it is judged to have the limitation of not providing a comprehensive view of Lee Geon's exile.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closely examined the circumstances and reality of his exile, focusing on Lee Geon's records(〈濟襄日錄〉·〈濟州風土記〉·〈道路行程記〉), based on the political situation between Gwanghaegun and King Injo. Although Lee Geon is a character with inherent special characteristics as a royal, the 10 years of exile he experienced clearly shows the turbulence experienced by a person who lived between Gwanghaegun and Injo. This is why Lee Geon's exile must be analyzed in various contexts, including politics, life, and culture.

Key word : Gyechuk-oksá(癸丑獄事), Muo-jeongcheong(戊午庭請), Injo-banjeong(仁祖反正), Inseong-gun Lee Gong(仁城君 李珙), Haewon-gun Lee Geon(海原君 李健), Lee Geon's anthology(葵恣遺稿), Exile

논문 투고일: 2023. 11. 07 심사 완료일: 2023. 12. 04 게재 확정일: 2023. 12. 05

청대 駐防 旗人서원과 교육

김수경*

- I. 서론
- II. 龍興 땅의 교육 태동
- III. 受命天子的 역설
- IV. 騎射國語와 과거 시험의 당착
- V. 주방 기인 서원 교육의 착오
- VI. 결론

【국문초록】

여진 부락에서 왕조가 된 청은 국가 운영 강령을 '국어기사(國語騎射)'로 세웠다. 모어를 유창하게 하고 무예에 뛰어난 만주인으로 대제국이 완성되는 분본(粉本)을 그렸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위계 구조에 맞는 교육을 구상했다. 당(唐), 송(宋), 명(明)의 교육제도를 승계하고 종학(宗學), 관학(官學), 부주현학(府州縣學), 도시와 농촌 서원을 관리해 교육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했다. 만주족이 굴기한 동북 지역의 주방(駐防) 기인(旗人) 교육에는 더 신중하고 엄격했다. 이곳의 만주족 정체성은 더욱 공고하게 지켰다. 동북삼성(東北三省)을 보호구로 정하고 한족과의 소통도 차단시켰다. 요녕(遼寧),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에 사는 주방 기인들에게는 모든 이에게 있는 과거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만주어, 승마, 궁술 교육만 진행했다.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누리게 해 달라는 주방 기인들의 요구는 외면했다. 청 건국 60년 만에, 그리고 전국에 서원이 4,000개가 넘게 생기고 난 후에야 흑룡강성 영안현(寧安縣) 한 구석에 첫 번째 주방 기인 서원이 생겼다.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2A01079774).

** 상지대학교 FIND칼리지 / soosoo@sangji.ac.kr

서원 운영과 교육 내용은 정부가 정하고 관리했다. 수십 년간의 간구로 스물다섯 개의 주방 기인 서원이 설립됐다. 그러나 이 곳에서는 황실에서 하라는 공부만 해야 했다. 교사는 지침에 따라 만주어를 가르치고 승마, 궁술을 훈련시켰다. 소수민족의 언어는 빠르게 한족의 언어로 대체됐다. 거친 말에서 내려온 만주족들은 온화한 삶에 쉽게 익숙해졌다. 무력과 고집으로 막는다고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다. 만주족은 한족의 언어와 문화에 빠르게 동화되었다. 그리고 청말 주방 기인에게 열린 문시 자유화 정책은 주방 만주 기인을 촉발했다. 주방 기인 서원 교육은 딜레마에 빠졌다. 형질은 만주어이고 내용은 한문화인 개념교육, 나무를 깎아 만든 말로 한 승마 훈련, 연마할 곳을 찾아 방랑한 활쏘기 연습은 만주본성을 지키는 요체의 교육이 되지 못했다. 주방 기인 서원은 지방 관료들이 지역 교육을 견인하고자 설립했다. 위는 여기서 만주족의 정체성을 지키길 원했고 아래는 여기서 공명을 실현하고자 했다. 동북지역 주방 기인 서원은 만주족의 본령 수호도 기인들의 영달 실현도 조력하지 못했다.

주제어 : 淸, 滿洲族, 書院, 八旗, 國語騎射, 科擧

I. 서론

주변국에 조공을 바치던 만주족의 선조 여진은 12세기 중원의 변수가 되어 말에 오르지 20년 만에 금(金)을 세우고 화북을 점령했다. 만주족은 말과 활의 저력을 믿었다. 한결같이 용감했고 잘 싸웠다. 다시 활을 들고 말 등에 올라 광활한 번부(藩部)를 통일하고 수명천자(受命天子)가 되었다. 담용과 박력으로 정복왕조를 창성했지만 절실한 것은 수성이었다. 현안의 해결 방안은 만주족의 무예는 고수하되 유구한 한족의 문예는 만주족의 호방한 문화로 바꾸는 것으로 세웠다. 급히 모어를 만들어 한족 문화를 만주어로 포장했다. ‘국어기사(國語騎射)’를 국가 본령으로 삼고 이를 행정, 문화, 교육에 모두 적용했다.

청 태조 누르하치는 “한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모두 이해할 것이다. 몽고국의 글을 (몽고국의 말로)읽으면 글을 모르는 사람도 역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글을 몽고말로 읽으면 우리나라의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말로 쓰면 어찌 어려울 것이며 다른 몽고국의 말은 어찌 쉽겠는가?”¹⁾라고 말했다. 그리고 1616년 마침내 국가 시스템을 완성했다. ‘팔기(八旗) 제도였다. 팔기는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말을 타고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 전선으로 향하는 군대가 되었다. 신속하고 강하며 기동력 있는 군대로 양성했다. 팔기군은 청의 최고 정예부대가 되었다. 팔기는 청이 중국 본토와 한족을 다스리는 핵심이 되었다. 누르하치에게 언어와 팔기를 물려받은 홍타이지(皇太極)는 팔기 군사들에게 ‘옛날 금 희종(熙宗)은 한족의 풍속을 따라 한족의 옷을 입고 자국어(를) 다 잊어버리니 태조, 태종의 업이 마침내 쇠하였다. 무릇 우리의 장기는 궁술인데, 지금 직접 말을 타고 활을 쏘지 않고 오직 연회만 즐기면 군비는 해이해질 것이다. 짐은 사냥을 나가면 말을 타고 화살 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 부지런히 병사들을 단련했다. 여러 제왕, 패력은 서로 전하여 경계하고 알려 후세로 하여금 조종의 제도가 변하지 않도록 하라.’²⁾고 했다.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말은 금과옥조가 되어 청 기인 교육의 기준이 되었다. 만주족의 민족성, 풍속, 습관, 정신을 고수하는 ‘국어기사’가 최우선 된 교육이 시작됐다.

청대 최고 통치자가 중원으로 들어가고 많은 만주족이 이를 좇았다. 또 중원에 있던 한인들은 대거 동북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했다. 동북 지역에 생활 기반이 잡혔고 이렇게 만난 만주족과 한족은 서로 융합했다. 침투될 것

-
- 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역,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2014년, 25쪽.
 - 2) 『清史稿·太宗本紀二』: 昔金熙宗循漢俗, 服漢衣冠, 盡忘本國言語, 太祖·太宗之業遂衰. 夫弓矢我之長技, 今不親騎射, 惟耽宴樂, 則武備浸弛. 朕每出獵, 冀不忘騎射, 勤練士卒. 諸王貝勒務轉相告誡, 使後世無變祖宗之制.

은 침투되고 변이될 것은 변이되고 소멸 될 것은 소멸됐다. 한족의 문화는 깊이 있고 다양하고 정교했다. 한족의 문화가 만주족의 문화에서 받는 영향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럴수록 청 황실은 '용흥의 땅'과 만주본습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황실은 만주어, 기마, 사예를 강화했다. 동시에 한족 관료 지배를 위한 통역기구를 설치해 만주어와 한어가 제대로 소통되게 했다. 과거 시험에 번역과를 설치해 두 언어 모두 능란한 만주인을 양성했다. 주둔지에서 방비를 맡고 있던 주방 기인들도 세류에 맞는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공명을 실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변방 주방 기인들은 관학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기도 과거 한 번 응시하러 가기도 멀고 어려웠다. 황실을 향해 편벽한 대륙 동북 주방 기인들을 위한 서원을 세워달라고 했다. 교사와 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조정은 기마인의 정신이 태만해질 것을 우려해 쉽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 주방 기인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청 개국 60년이 지나고 주방 기인 서원이 세워졌다. 전국에 4,000개³⁾가 넘는 서원이 생기는 동안 동북지역에는 고작 25개만의 서원 설립이 허가됐다. 청 황실은 동북 주방 기인 서원에서 청어와 기사, 승마, 한어 교육을 요구했다. 이상적인 주방 기인 교육을 하기에는 서원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다. 청 중기부터 만주어는 한어에 동화되기 시작했고⁴⁾ 더 이상 만주족의 기마와 궁술도 한인보다 월등하지 않았다. 스물다섯 개 서원 교육으로 만주어와 만주족의 무예가 성장할 수는 없었다. 외면하지 말고 강제하지 말고 폭넓게 지원했어야 했다. 몇

3) 「清代書院緣何大發展」, 『人民論壇』. 鄧洪波, 2017, 142쪽.

4) 1741년에 건륭제는 유시를 통해 “근래 만주족 자제들이 점차 안일해져 본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宗室, 武官, 侍衛 등이 ‘騎射’를 익히지 않고 ‘淸語’를 학습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모두 漢語를 말한다.” 『淸高宗實錄』 卷138, 987쪽; 정재남, 「만주어 언어교체(소멸)의 역사적 과정 및 원인 분석 試論」, 『東아시아 古代學』, 2018, 148쪽 재인용. 이 외에도 李雲霞, 「滿文的基源及其發展演變」, 『滿語研究』, 2003年 第1期, 66쪽; 이훈,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18, 270~271쪽; 김미성, 「소프트파워 관점에서 본 만주어의 쇠퇴 과정과 소멸 원인 고찰」, 『동아인문학』 53, 2020, 87쪽. 등에서 강희 중엽부터는 만주어가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 년간 분투한 기인 서원은 만주인의 정체성도 지키지 못했고, 학문의 상아탑도 쌓지 못했으며, 인재를 배양하지도 못했다. 이곳에서 ‘칭어’, ‘마술’, ‘궁술’이 교육되길 바라는 조정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인들은 각몸을 꾸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팔기 관학(官學), 의학(義學), 사학 등과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러나 만주 주방(駐防) 기인 서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다. 유관한 두 편의 연구는 청대 주방 기인 서원이 설립된 과정과 설립에 기여한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이다.⁵⁾ 선행 연구는 청 중기 기인 서원의 창건자는 기인 장군, 도통(都統) 등이고, 만청 창건자는 한인 장군과 한인 순무 등임을 밝혔다. 이는 곧 만청 조정에 만주족 관리보다는 한족 관리들의 영향이 크게 끼치고 있었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본 연구는 황실이 주둔 기인의 교육을 조력할 수 있는 주방 기인 서원 설립을 제한했던 까닭, 주방 기인 서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주목한 조사이다.

II. 龍興 땅의 교육 태동

교육 기반이 없던 청은 ‘학교를 교화의 본원으로 삼는다.’는 한족 왕조의 교육 취지를 수계했다. 과거 시험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것도 계속했다. 교육 열의도 컸다. 황실은 국·관·사학을 고루 살폈다. 서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했다. 건국 초기에는 서원이 ‘결당’, ‘무위도식자들의 집합’, ‘공담 폐업’, ‘칭탁과 모사의 근거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립을 금지했다. 순치(順治) 8년까지의 일이다. 위반할 경우 ‘제학어사(提學御史)는 도찰원(都察院)의 처분을, 제학도(提學道)는 순안(巡按)의 탄핵을, 선비는 심문을 받는다.’⁶⁾ 처벌 규정도 단행했다. 그러나 1,000여 년간 이어온 서원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

5) 팔기서원에 대한 연구는 顧建娣의 『清代的旗人書院』(2015), 『晚清的旗人書院』(2017) 두 편이다.

6)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83卷, ‘禮部·學校·勸懲優劣’.

했다. 순치 14년 서원 금역 정책이 완화됐고 각지에 서원 설립이 재개됐다. 옹정(雍正)은 '서원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자 국가 발전에 있어 체계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양질의 교육을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요체'⁷⁾로 인정했다. 그리고 서원을 관학 체제에 편입시켰다. 서원은 국가 관리하에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옹정은 11년(1733년) 조서를 내려 각 성에 창건한 23개의 성회서원(省會書院)⁸⁾을 18개 성의 최고학부로 기능하게 했다. 건륭(乾隆)도 서원을 관학 교육체계에서 관리했다.⁹⁾ 서원의 교육목적과 운영 방안은 확고해졌고 당시 교육 기능을 상실한 학교를 대신하기도 했다. 가정(嘉慶)과 도광(道光)은 서원이 안고 있던 산장(교장) 인선 문제를 해결하고 서원을 정비했다. 도광은 각 성의 총독(總督)과 순무(巡撫)가 서원으로 소속될 것을 명령하고 '성품이 올곧고 학문적 역량이 출중한 신사를 초청하고 서원에 거주하게 하여 지도하도록 하며 그가 관내에 가지 않고, 월급만 받는 폐단은 영원히 금한다.'고 했다. 각 소속 교원의 겸직을 금하고 전업하게 하여 책임을 가중시켰다. 서원을 건립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서른네 차례 표창도 했다. 함풍(鹹豐)시기 서원 건설이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동치(同治)·광서(光緒)시기에는

7)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95卷, '禮部·學校·各省書院'

8) 청대는 서원이 가장 번영한 시기로 당시 운영된 서원은 총 5836개로 추정된다. 이른바 4대서원으로 일컬어 지던 天府書院, 嶽麓書院, 白鹿洞書院, 嵩陽書院에서 크게 확장되어 조령(詔令)으로 省會書院이 걸립되었다. 지방 인력, 재정자원, 학술인재 양성, 교육을 위해 각 성의 성도에 중점 서원을 세우고 옹정 11년(1733년)각 총독에 지시해 성도(成都)서원을 운영하게 했다. 이에 총독과 순무들의 직접 통제와 관리로 성회서원이 설립 운영되었다. 성회서원은 18개 성에서 최고 교육기관으로 작용하며 관영 서원교육 체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성의 도원(道員)이 엄격하게 심사하여 각 성(省) 별로 200여 명을 모집했고 입원후에도 總督, 巡撫會, 學政 등이 단계별로 심사와 관리를 했다. 교과 과정과 수업내용은 조정의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했다. 경서와 역사 그리고 소위 청대의 고증학으로 불리는 박학(樸學-乾嘉)등이 핵심을 이루었다. 이는 당송원명대에는 없던 것이다. 당시 성회서원에 청 황실이 상당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清代書院緣何大發展」, 『人民論壇』. 鄧洪波, 2017, 142~143쪽.

9)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95卷, '禮部·學校·各省書院'

중국번(曾國藩)과 같은 지방관이 적극 서원을 건립하면서 1,000개 넘는 서원이 신설됐다. 청의 서원은 조정의 교육 요구를 들어주며 발전하고 변화했다. 중앙 국자감(國子監)과 지방 부주현(府州縣)학의 학교를 연결하고 유생들의 지적성장과 거업(學業)을 도왔다. 청 서원의 양적, 질적 성장은 수뇌가 된 만주족이 학문과 서원의 순기능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청 황실의 진취적이고 이완된 서원 설립과 운영 정책, 학문 장려에 대한 믿음은 중국 동북 지역과 지방 주방 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동북 일대에서 굴기만 만주족은 이 지역을 ‘용흥의 땅’으로 여겼다. 홍타이 지(皇太極)가 황제(帝)로 불린 요녕(遼寧), 심양(沈陽), 흑룡강, 길림 등은 애신각라(愛新覺羅)에게 매우 각별했다. 통치자들은 철저히 이 지역을 간수했다.¹⁰⁾ 동북 지역은 대청 왕조만을 위한 땅, 한족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정한 땅, 팔기 정예가 만주의 문화와 조상 전통을 지키는 땅, 인삼, 모피, 황금 같은 중요한 자원을 만주족이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으로 지키고자 했다. 황실은 동북 지역 만주족 주둔군을 한인과 격리하고 만주족끼리 모

10) 처음부터 동북부터 봉금됐던 것은 아니다. 사실상 요동지역은 명말 청초 전쟁으로 사망이나 관내 이주로 인구가 크게 줄었고 1644년(순치 원년) 만주족이 입관하면서 팔기병과 만주족들이 대거 이동하게 되어 요동지역은 황량한 상태로 변했다. 그러자 청 조정은 입관 직후 요동지역 팔기의 주방을 강화하고 관내 한인들은 관외로 나가 토지 개간을 하도록 권장했다. 1649년(순치 6)에는 ‘산해관 외에 황무지가 너무 많아 민인 중 산해관 밖으로 나가 개간을 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산해도에 등록하게 하고 토지를 분배하여주고 그곳에 거주케 하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것이 바로 1653년(순치 10)에 반포한 ‘遼東招民開墾條例(요동초민개간조례)’이다. 조례 반포 후 순치(1644~1661)말부터 강희(1662~1722)중엽까지 이 지역 인구가 다섯 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자 강희는 이내 ‘봉금’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는 곧 만주의 풍속을 지키고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여 만주 팔기의 경제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인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청대 중기 이후 요동지역의 만주족과 한족은 급속하고 광범하게 혼합되고 문화적으로 융합되었다. 이에 황실은 만주 본성을 지키기 위해 청어기사에 더 힘쓰도록 명령했다. 유지원의, 『이민과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2011, 27~28쪽.

여 살게 했다. 만주족과 한인의 결혼도 금지했다. 만주족의 문화적 응집력과 존속성 유지는 동북 삼성 지역의 최대 과제였다. 강희(康熙)는 동북 지역에 ‘봉금지책(封禁政策)¹¹⁾’을 단행했다. 이 지역에 ‘사냥으로 무예를 가르치는 일은 절대 폐지 해서 안 된다.’¹²⁾는 과업을 내렸다. 동북 지역에 한문화 침투는 엄격하게 근절됐다. 일부 지역은 ‘신만주(新滿洲)로까지 조직했다. 동북에 대한 정책에 따라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 정책을 따라갔다. 동북의 교육 목표와 특색은 어떤 지역보다 명확하고 확고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제도 수립과 기존 제도의 보완, 발전 모색 등은 필요 없었다. 만주족의 모든 것을 간직한 민족성을 지키는 교육만이 필요했다. 한족의 학문과 인문 정신, 과거 시험 등은 만주족의 기질을 지키는데 방해 될 소지가 다분하니 배척해야 했다. 주체의 의지는 확고했으나 객체의 실상은 달랐다. 청 중기부터 다시 시작된 한족의 북방 이동은 공권력으로 막을 사안이 아니었다. 한족이 가지고 온 문덕(文德), 문물, 문명은 억지로 눈과 귀를 막고 ‘만주본습(滿洲本習) 수구해야 했던 당시 만주족을 자극했다. 그러나 여전히 만주족의 청을 배태한 ‘용흥의 땅’에서는 영예 수호의 과업이 이행되어야만 했다. 황실은 요녕, 길림, 흑룡강의 정체성을 ‘국어기사’로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조치했다. 원칙의 정신은 쉽지 않았다. 교육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은 변해도 기존 교육을 수정하거나 가감하기는 어려웠다. 세류에 맞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

천총(天聰) 3년(1629년) 동북 지역 최초로 팔기 교육 기관인 문묘학궁(文廟學宮)이 설립됐다. 이후 팔기 교육을 위한 ‘성경관학(盛京官學)’, ‘길림관학(吉

11) 청조가 만주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 봉금지책은 1740년(건륭 5)부터 시작하여 100여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유민의 유입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선행연구에서 정책 실패원인으로 분석한 것은 첫째, 예외적 사례의 빈번한 발생, 둘째, 건륭 연간 이후 관내지역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만주 지역으로 인구 이동, 셋째, 만주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방팔기와 관료들의 기지, 관장(官莊), 황장(皇莊) 등을 경작할 농민 요구 등이다. 周喜峰, 「清朝前期黑龍江」, 『江民族研究』, 南開大學, 2003, 123쪽.

12) 『清聖祖實錄』 第119卷, 康熙二十一年.

林官學), '흑룡강관학(黑龍江官學)'이 세워졌다. 청 초기 성경에 2개, 길림에 12개, 흑룡강에 4개의 기인 관학이 세워졌다.¹³⁾ 모두 주요 주둔지에 설치됐다.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관학과 유사한 교육을 했다. 다만 만주어와 승마, 궁술 교육이 크게 강조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개의 관학으로 기인 교육이 충분히 진행될 수 없음이 감지됐다. 변방 편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방 기인들은 중심지에 있는 관학에서 수학하기가 어려웠다. 주방 기인 교육을 위한 서원을 설립해 달라는 주청이 나왔다. 상부의 허가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동북지역 주방 기인 서원 건립과 운영에 대해 청 황실은 매우 신중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소수의 만주족 황실은 다수의 한족 지식인을 통제하며 만주족의 문화적 능력과 포용력을 보여주어야 했다. 주방 기인 서원이 세워진다면 만주족 정체성 수호와 만주 기인들을 엘리트로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했다. 황실이 숙고하는 중에도 동북 지역에 주둔 기인 서원을 설립 달라는 주청은 계속됐다. 청 황실은 반응을 보여야 했다. 결국 동북 지역 주방 기인들의 주요 거점 지역에 서원 설립을 허가 했다. 대신 교육 체제는 엄격히 규정했다.

순치(順治) 원년인 1643년 11월 한림원 시독(侍讀)학사와 국자감 제주(祭酒)를 관리하는 이약림(李若琳)¹⁴⁾은 동북쪽 외진 곳에 거주하는 만주 주방 기인들은 관학이 멀어 수료가 어려우니 만주 팔기 주둔지의 빈 공간에 서원을 세우고 교사를 두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주청을 올렸다.¹⁵⁾ 이것이 기인 서원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계청이다. 주둔지에서 관학까지 거리가 멀다는 호소와 기인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안을 담은 상소가 계속됐다. 그러나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처음 주방 기인 서원 설립 상소가 나온 지 33년이 지난 강희 15년(1676년) 첫 번째 주방 기인 세원이

13) 王娣, 『邊疆經濟與文化』, 「簡述清前期東北地區漢人滿語學習」, 第2集, 2002, 74쪽.

14) 李若琳(1600~1651): 한족, 청초기 관리로 國子監祭酒, 翰林院侍讀學士, 禮部侍郎 등을 지냈다.

15)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65卷, '禮部·貢舉·駐防翻譯鄉會試'

설립됐다. 강희는 영고탑(寧古塔) 장군(將軍) 합달(哈達)에게 10개 향의 서원 운영 규정을 편성하고 체재를 조직하게 하여 영고탑에 주방 기인 서원을 세우게 했다. 교육 대상은 만주 주방 기인 자제들이고 교육 내용은 만주어와 중국어, 승마와 공술이었다. 강희는 주방 기인 서원을 세우고 ‘용성서원(龍城書院)’이라는 이름과 편액을 하사했다.¹⁶⁾ 강희 15년부터 옹정, 건륭, 가정, 도광, 광서, 동치에 이르는 188년 동안 동북 지역과 변방 주둔지, 주요 기인 거주지에 龍城書院(1)[강희], 維新書院(1)[옹정], 勵才書院(1)[건륭], 梅靑書院 白山書院(2)[가경], 八縣書院, 龍光書院, 蘭陽書院, 智珠書院(4)[도광], 龍光書院, 淸文書院, 明達書院, 少城書院, 啓秀書院(長白書院), 廣州同文館(6)[동치], 輔文書院, 滿營書院, 搶才書院, 崇文書院, 荀魁書院, 海岱書院, 正誼書院, 昌明書院, 梅靑書院, 中俄書院(10)[광서] 등 총 25개의 주방 기인 서원이 세워졌다.

청 중기까지 설립된 주방 기인 서원은 강희·옹정·건륭 세 왕조에서 각 1개, 가정시기 2개, 도광시기 4개로 총 9개이고 청 후기 설립된 서원은 16개이다. 후기에 들어 서원의 수는 두 배 정도 늘었다. 그러나 동치시기 일반 서원이 총 380개, 광서시기 총 682개 설립¹⁷⁾된 것에 비하면 주방 기인 서원은 전체 서원 수의 고작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청 조정은 주방 기인 서원¹⁸⁾의 운영과 교육을 심하게 제약했다. 만주본습(滿洲本習)과 전투력 유지를 위해 ‘국어기사’ 교육만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길림 최초 주방 기인 서원인 백산서원(白山書院)을 통해 살핀 서원의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백산서원은 몇몇 지방 관리의 지역 백성의 교육을 염려로 건립되었다. 부준(富俊)은 가경 19년(1814년) 길림 장군으로 초임 되었을 때 길림의 외진 곳에 민가 다섯 칸을 사서 백산서원을 꾸렸다.¹⁹⁾ 청이 대륙을

16) 陳鵬, 「清代“新滿洲”八旗子弟教育研究」, 『民族曆史』, 2019, 33쪽.

17) 鄧洪波, 『中國書院史』, 台灣大學出版中心, 2000, 222~223쪽.

18) 이하 기인 서원이라 표현 하는 것은 동북 지역에 설립된 주방(駐防) 기인서원을 지칭한다.

19) 길림 장군 부준(富俊)과 장춘 통판(通判) 이금용(李金鏞)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은 낙후된 길림에 직면하고 이곳의 교육사업개혁을 추진했다. 顧建焯, 「晚清的旗人

통치한 지 3분의 2의 시간이 흐른 200년이 지난 후이다. 서원은 세웠으나 황실로부터 운영과 자금 등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자금과 교사의 문제가 발생했다. 도광 2년 교사를 파견해 달라는 주청을 올렸지만 황실의 비난을 받았다. 도광은 ‘서원을 궁구하는 것은 문예를 구하는 것으로 인재를 만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주어가 생소해지고 궁마가 약해져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는 것으로 집의 기대를 크게 잃게 된다.’²⁰⁾고 했다. 지방 관리들의 술선과 기부, 민간의 모금으로 건립된 백산서원은 이후에도 계속 자체 자금 조달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 증축에 기부, 도서 기증, 명사 초빙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가 있었다. 부준의 노력으로 입학 인원도 계속 증가했다. 청나라 초부터 도광 초기까지 200년 동안 길림에서는 진사 2명, 거인 4명, 공생 39명의 합격생이 나왔다. 그러나 부준이 주방 기인 서원을 운영한 뒤로 도광 시기에만 길림에서 진사 4명, 거인 7명, 공생 12명이 나왔다. 광서 말년 길림의 과거 합격자는 180여 명에 달했다.²¹⁾ 이전 200년 보다 4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이 수치는 백산서원이 길림 교육과 관료 배출에 기여했다는 것, 주방 기인들의 과거 공부를 조력했다는 것을 입증한다.²²⁾ 이렇듯 주방 기인 서원은 분명 북방지역 교육과 인재 양성에 일조했다. 그러나 더 깊고 폭넓은 영향을 끼치기에는 서원 수는 너무 적었고 존속 기간은 짧았다.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주방 기인 서원 25개는 전국 서원의 분포로 봤을 때 최저수치이다.

書院,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2017年, 第4期, 34쪽.

20) 『清宣宗實錄』 第34卷, 道光二年六月辛未.

21) 長順修, 李桂林纂, 李澍田點校, 『吉林通志, 卷30(下)』, 吉林文史出版社, 1986, 322~331쪽.

22) 백산서원은 길림부에 위치한다. 길림부는 비교적 일찍 개발되었고 경제 기반이 양호한 편이었다. 또 지방 관리들이 문화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그나마 서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변방 지역으로 개발이 늦고 교통이 불편한 길림 북부 지역까지는 서원이 설립되지 않았다.

청대 지역별 서원 수²³⁾

지역	廣東	江西	四川	福建	浙江	江蘇	直隸	湖南	雲南	山東		
서원수	531	392	353	351	336	253	251	233	219	213		
지역	河南	安徽	湖北	山西	陝西	廣西	甘肅	貴州	東北		총	4365
서원수	211	188	172	168	160	117	101	83	33			

서원 수도 많지 않았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기엔 너무 늦게 생겼고 규모도 작았다. 가경, 도광, 함풍 시기는 서원이 쇠락하는 분위기였지만 전국에 1,177 개의 서원이 새로 지어졌다. 길림에 두 번째 기인 서원이 생긴 것은 백산서원이 생기고 나서 58년이 지난 후이다. 60여 년 가까운 공백 기간은 청이 길림 지역 주방 기인 문교사업을 어느 정도 제약했는지 보여준다.

Ⅲ. 受命天子的 역설

청의 통치자들은 한문화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컸다. 흥타이지가 일찍이 여러 친왕(親王) 군왕(郡王), 패륵(貝勒)등을 모아 ‘후대의 자손은 모두 만주의 이전 제도를 잘 알고 삼가 따르며 승마, 궁술을 배우고 만주어를 익히게 해라.’라고 한 훈계는 비석에 새겨져 자금전정(紫禁箭亭), 어원인견루(御園引見樓), 시위교장(侍衛教場), 팔기교장(八旗教場) 등과 같은 교육 기관에 세워졌다. 이것은 곧 만주 후예들의 교육 지침이었다.

순치제는 한인 관료와 그 문화에 친화적이었지만 만주어 보존에는 엄격했다. 순치 9년(1653년) 누르하치와 그 형제들의 직계 후손인 종실(宗室) 교육을 위한 종학(宗學)과 누르하치의 아버지 탁시 형제의 직계 후손인 각라(覺羅) 교육을 위한 각라학(覺羅學)이 설립됐다. 종실은 열 살이 되면 종학에 입학해

23) 鄧洪波, 『中國書院史』, 台灣大學出版中心, 2000, 219~211쪽.

서 만주어를 배워야 했다. 그런데도 많은 종실이 만주어를 배우지 않고 한어를 배웠다. 순치는 종실에 한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문 공부를 금지했다. 교육 기관을 세워 만주어를 강제했음에도 종실의 만주어 교육은 성공하지 못했다. 당연히 황제들은 만주족을 어떻게 교육해야 본질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하고 엄격했다. 종실뿐만 아니라 만주 기인들의 교육도 바로 세워야 했다. 동북 지역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야 했다.²⁴⁾ 이런 이유로 청 황제들은 주방 기인들의 과거 시험 응시 요구나 서원 설립 요구가 올라와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京師의 禁旅八旗, 直省의 駐防八旗, 東北의 駐防八旗들은 신분과 처우가 달랐고 ‘주둔 기인’들의 과거 응시는 크게 제한했다.²⁵⁾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다.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주방 기인에게 과거 응시 자격을 주면 문시에 몰두해 만주어와 기사를 소홀히 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주방 기인들의 과거 시험 응시 요청과 기인 서원을 설립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각 황제들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강희(1661~1722)

강희 4년 호남(湖南) 布政使(포정사) 통은(通恩)은 각 지역마다 주방 기인들의 별도 정원을 정하고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보게 한 뒤 다시 북경으로 가서

24) 팔기 자제들의 향시 응시는 순치 8년(1651년) 허용됐고, 강희시기에 팔기의 과거는 상설 고시로 확정되었다. 이후 기인들의 과거 응시 자격은 청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순치 9년 처음 팔기자제의 첫 회시 응시가 시작된 이후 광서 30년(1904년)까지 총 102차례 과거에 응시했다. 多洛肯, 路鳳華, 『清代八旗科舉考試 曆史敘略』, 『科舉學論叢』, 2019, 50쪽.

25) 京旗에게는 과거를 허용하고 주방 동북기인 과거 참여를 제한 하는 것은 동북 기인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평등한 정책이었다. 또 동북 주방 하급장교와 주방기인 자녀들은 북경에서만 진행되는 시험을 보러 가기도 어려웠고 경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했다. 여기에 당시 시험 관리 방식으로 주방 기인 군인들이 북경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에 주둔 기인이 과거를 응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潘洪綱, 『清代駐防八旗與科舉考試』, 『江漢論壇』, 第6集, 2006, 86쪽.

향시에 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2년 뒤인 강희 6년(1667) 주방 기인도 문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북경 주재 기인은 거주지 근처에서 진행되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며 북경 외의 성에 거주하는 기인은 북경에서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²⁶⁾

2) 옹정(1722~1735)

옹정·건륭 연간에 주둔지 거주한 기인들은 가까운 곳에서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옹정은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hacilame wesimbure jedz』

만약 말을 다루지 못하면 점차 만주의 기질과 멀어져 한인과 똑같아진다. 말을 타지 못하고 활을 쏘지 못하고 말을 다룰 줄 모르면 그 자손도 말을 탈 수 없게 된다. 모두 무용지몰이 된다.²⁷⁾

강희시기 한시적으로 기인들의 과거 시험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는 오래 가지 못했다. 옹정시기 편벽한 주둔지에 거주하는 기인들이 근처에서 과거 응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 옹정의 입장은 단호했다. 옹정은 과거 시험 몰두는 곧 만주인의 퇴보로 이어진다고 확신했다. 옹정은 허명을 좇고 국어기사를 경시할 것을 우려하여 동북기인들의 향시 응시를 제한했다. 동북 기인들에게 향시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를 완곡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기인 서원 교육의 의미는 조정에서 근무할 인재 양성에 있고 기인의 본령은 거업을 통한 출세가 아닌 만주족의 얼을 지키는 것에 있으니 기

26) 『清史稿』 卷106, 志81, '選舉'

27) 『宮中檔雍正朝奏摺滿文諭摺五』 第32輯, 144~146, 「伊裏布奏請增編駐守天津之馬匹和口糧摺」, 雍正十三年十一月十一日. 葉高樹, 「清雍乾時期的旗務問題: 以雍正十三年滿、漢文「條陳奏摺」為中心」, 『臺灣師大歷史學報』, 2007年, 第38期, 102쪽에서 재인용.

인이 서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그리고 이 뜻을 각지의 기인들에게 알리게 했다.

3) 건륭(1735~1795)

건륭은 옹정의 뜻을 견지했다. 주방 기인들이 시험 장소가 멀어 불편함이 있다는 호소에 대한 건륭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清高宗實錄』

북경에 있는 팔기의 수가 많고 가까운 곳에서 시험을 치르면 훈련에 지장이 없다. 그러나 각 성의 수비 담당 무관이 얼마 되지 않는데 만약 歲試와 科試를 근처에서 치르게 하면 헛된 명성만 좇게 되고 騎射는 등한시하게 되어 수비군을 세운 근본 취지를 잃을 것이다.²⁸⁾

청 황실은 주방 기인들이 과거 준비에 시간과 정신을 쏟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개인의 영달이 선 순위가 되고 국가와 민족이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청은 자신들의 장치인 무(武)로 대륙을 평정했기 때문에 용감함과 병법의 힘을 믿었다. 중무경문(重武輕文) 정책이 기본이었고 주방 기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다. 물론 개국 후 문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인지했다. 그러나 청은 곧 대규모의 ‘준가르반란’을 평정해야 했다. 건륭은 모든 만주족을 동원해 전쟁을 이끌어야 했다. 이런 상황에 변방의 수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기인들이 문시나 준비하고 번역, 향회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에 이로운 게 없다고 판단했다. 건륭은 임기 수행 20년이 다 되어가는 건륭 19년 3월 시험에서 번역 생원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건륭은 주방 기인의 문화적 소양 개발은 반대했지만 일반 서원은 체계적으로 관학화 시켰다. 서원을 ‘옛 제후국의 학교(書院卽古侯國之學也)’라고 단정하

28) 『清高宗實錄』 第72卷, 乾隆三年七月壬戌.

고 서원이 곧 관학임을 분명하게 했다. 나이가 각 성의 총독·순무·학정(學政) 중 모범이 되는 사람을 ‘書院之長’에 뽑으라고 지시²⁹⁾하며 서원의 관리에 국가 개입을 깊이 했다. 그러나 건륭 재위 60년 동안 세워진 주방 기인 서원은 여재 서원(勵才書院) 단 한 곳이다. 이곳의 교육은 만주어와 기사로만 한정했다.

4) 가경(1796~1820)

주둔군들에게 과거 시험응시의 기회 요구와 거리 문제로 관학에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호소는 가경대에도 계속됐다. 이전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가경은 가경 18년 각 성의 주둔군의 자제들이 ‘거리와 경비 문제로 북경에서 치르는 향시 응시를 주저한다.’는 상소가 올라오자 각 성의 응시생들이 성에서 한꺼번에 향시를 치르게 하라고 조치해 주었다.³⁰⁾ 가경은 주둔군의 동시와 향시 참가를 순차적으로 허락했고 주방 기인 서원 설립을 크게 제약하지는 않았다. 가경 시기 매청(梅靑)서원과 백산(白山)서원이 설립됐고 이곳에서는 시문과 한문의 교육도 진행했다. 가경 이후 설립된 기인 서원에서는 한어를 가르쳤고 경서와 예문(藝文), 문예(文藝) 과목도 개설됐다.³¹⁾

주방 기인의 과거 응시 허가 5년 후인 가경 23년(1818년) 가경은 ‘국가의 팔기인재 양성의 기본은 기사이다. 문과 시험은 하찮은 기술일 뿐이다. ... 설령 이것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팔기 인재에는 손상됨이 없다.’³²⁾는 무거운 발언을 내놓으며 다시 주방 기인의 과거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후에 가경은 이 주장을 군기대신과 다시 의논했다. 나중에 이전의 정책을 파악한 가경은 5년 후에 ‘주둔 기인에게 이 성의 문생 시험을 허용하는 것은 각별한 은혜이다. 만약 오로지 이것에만 힘쓰고 청어 기사를 방기하면 즉시

29) 季嘯風, 『中國書院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6, 31쪽.

30) 『欽定大清會典事例』第381卷, ‘禮部·學校·駐防考試’

31) 季永海, 「論清代“國語騎射”教育」, 『滿語研究』, 11集, 2011, 76~78쪽.

32) 『欽定大清會典事例』第365卷, ‘禮部·貢舉駐防·翻譯童試’

이 예를 폐기하고 만주어와 기마에 소홀하면 바로 이 용례를 중단하고 시험을 불허한다. 청어기사 훈련을 숙련했을 때 비로소 시험을 허가한다.³³⁾고 제한을 두었다.

5) 도광(1820~1850)

학문적으로 갈급해진 주방 기인들은 과거 시험의 기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서곤(徐錕)은 서안(西安) 주방 팔기 각 좌령 하에 생원들과 이미 관직에 오른 동생(童生)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서원을 설립하고 순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마창)馬廠의 토지 임대료에서 남은 은냥은 창고에 두셨다가 임시로 대출해 주십시오. 발상생식(發商生息)해 주십시오. 이는 교사 임금과 수업의 장학금으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만주의 풍속대로 만주어와 승마 공술을 중히 여기고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열심히 하여 위로 나아갈 것입니다. 스스로 교사의 자격을 얻고자 한다면 어찌 관직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각 성의 서원들도 해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모두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³⁴⁾

이와 같은 요청에 도광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도광은 가정의

집이 잘 알고 있다. 장군은 서원을 설립하는 데 황실 지원을 요청했다. 시행한 지 오래되었다. 쓸데없는 말이다. 인재를 만드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소한 것을 실행 할 수 없다. 이렇게 명하니 알도록 하라.³⁵⁾

또한 도광은 과거 가정의 정책을 재 확인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33)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65卷, '禮部·貢舉駐防·翻譯童試'

34) 『清宣宗實錄』 第35卷, 道光二年五月.

35) 『清宣宗實錄』 第35卷, 道光二年五月.

“집이 가정 5년의 선황의 성지를 삼가 읽어보니, ‘각성의 주방기인들에게 該省의 고시 문생을 허락한 것은 본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린 것이었다. 만약 그것에만 전심으로 몰두하여 淸語와 騎射를 방기한다면 곧 이러한 특혜를 중지하고 고시를 불허해야 한다. 그리고 淸語와 騎射를 연습하여 숙련되었을 때 비로소 고시를 허가할 것이다.’³⁶⁾

이처럼 도광은 주방 기인 서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 길림 장군 부준은 흑룡강에 파견된 마서진(馬瑞辰)을 길림에 주둔하게 해 백산서원에서 주방기인 자제들에게 문예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광은 ‘황당무계한 의견’이며 ‘본말을 전도하지 말라’³⁷⁾고 질책했다.

도광은 동삼성(東三省)이 청의 근간이 되는 지역임을 강조하고 여전히 ‘청 어기사(淸語騎射)’에 중점을 두라고 했다. ‘학생들이 토론하고 문예를 배우게 되면 반드시 만주어가 날로 낯설어지고 말 타는 능력이 퇴보하게 된다.’³⁸⁾고 하며 부준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전달했다. 도광 18년 우루무치 도통 복주(福奏)가 만주 군영 지역에 있는 지주서원(智珠書院) 건설에 힘쓴 인물들에 대한 포상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도광은 ‘외람된 일이다.’라며 힐책했다. 우루무치는 변방에 있으므로 ‘이 지역의 도통은 오직 군비를 강화하고 방어에 힘쓰며 둔전 개관과 식량과 군비 비축에 힘써 마땅히 양식과 병력이 충족되게 하는 것이 도리이다.’³⁹⁾라고 했다. 복주 및 지주서원의 전임 도통은 모두 중앙부처의 감사에 회부 되었다.

주둔 기인이 근처에서 문시에 응시해야 한다는 정책에도 도광 시기 팔현 서원(八縣書院), 용광서원(龍光書院), 난양서원(蘭陽書院), 지주서원(智珠書院) 등 총 4개의 기인 서원이 생겼다. 주방 기인들의 교육 열망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광은 여전히 ‘한문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불모의

36)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65卷, 禮部·貢舉駐防·翻譯童試

37) 『淸宣宗實錄』 第35卷, 道光二年六月.

38) 『淸宣宗實錄』 第35卷, 道光二年五月.

39) 『淸宣宗實錄』 第308卷, 道光十八年四月壬寅.

산업으로 전향하라.', '동3성은 만주의 근거지이다. 변방 우루무치에 서원을 세우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⁴⁰⁾라고 하며 주방기인 서원 설립을 반대했다. 도광은 건륭 47년 태어나 가경에 이르는 동안 청의 흥망성쇠를 목도했다. 백련교의 난을 직접 경험하고 친정하게 된 이후로는 기인 군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방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청 말에 이르러 팔기 수비군은 더는 위용이 없었다. 오히려 말을 탈 줄 모르고 화살을 쏠 줄 모르는 한족 관료의 방비가 더 뛰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함풍은 아예 주방 기인의 문과 시험을 전면 부활시켰다. 함풍 10년 '이후 주둔군은 번역 시험을 보고 다시 주둔지로 돌아와 거인과 생원이 되며 모두 향의 회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번역과 함께 채용한다.'⁴¹⁾는 것으로 기인의 과거 응시 규정이 바뀌었다.

IV. 國語騎射와 과거 시험의 당착

만주족과 한족의 조우로 만주어와 한어의 병존은 불가피했다. 한어의 역사, 사용범위, 어휘량, 영향력에 만주의 그것은 비할 바가 없었다. 입관진천 총 연간(1627~1635)부터 만주족은 한어의 영향을 걱정했다. 이 시기 만주족 일상 언어에 상실의 감지될 정도는 아니지만 한어는 분명 만주족의 언어를 내침하고 있었다. 만주족의 지배 영역이 확장되면 만주어보다 한어의 영향이 확대됐다. 그리고 점점 다수의 한인과 한인 관료들이 국가의 주요 인력 역할을 하며 국가행정에도 한어가 크게 작동했다. 결국 만주어는 한어에 파동됐다. 지역차⁴²⁾와 개인차가 있었지만 강희 중엽부터 한어의 영향이 가시화됐다.

40)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65卷, '禮部·貢舉·駐防翻譯童試'

41) 『欽定大清會典事例』 第364卷, '禮部·貢舉·駐防翻譯鄉會試'

42) 1980년대 이후 중국의 여러 檔案館에서 외부에 공개하기 시작한 청대 당안까지 참고하여 좀더 많은 사례를 분석한 근래의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경사가 지방의

옹정에 이르러서는 한어가 만주어를 완전히 역전했다.⁴³⁾ 강희는 1669년 친정을 시작하며 만주족이 한어를 못하면 한인 통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만주족에게 한어 학습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로써 야기될 만주어의 쇠퇴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입관한 지 20여 년이 지난 후로 만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중국에 입관한 만주족은 만주어를 사용하며 만주족의 풍속대로 살았다. 만주족이 모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므로 만주어의 쇠퇴는 상상하지 않았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만 구상했다. 강희제 자신이 만주어·몽골어·한어를 자유롭게 구사했기 때문에 만주족이 한어를 습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만주어의 쇠퇴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강희는 만주족의 공고한 통치를 위해 만주 관원에게 한어의 습득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여외였다.

순치 8년(1651) 과거시험에 만문 번역 관련 번역과(翻譯科)가 신설됐다. 만주 번역과와 몽고 번역과로 구분했다. 이 시험으로 계심랑(啓心郎), 필첩식(筆帖式)과 같은 관료를 선발했다.⁴⁴⁾ 일반적인 과거와 마찬가지로 동시(童試), 향시(鄉試), 회시(會試)로 구분하고 생원(生員), 거인(舉人), 진사(進士)를 선발했다. 시험의 내용이나 규정은 문과 시험에 비해 유동적이었다. 어떤 경우는 회시는 거인만 응시 가능했다가, 어떤 경우는 필첩식(筆帖式)과 현직 관리 중 번역에 능통한 사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합격자 수는 응시 인원 에 따라 달랐다. 만주어와 한어를 잘하는 서른 명 안에 들면 관료가 될 수 있었다. 건륭 11년(1746)에는 번역과 진사 합격자는 전시(殿試) 없이 바로 관직에 임용되기도 했다. 성적이 우수한 자는 정6품인 육부(六部)의 주사(主事)가 되기도 했다.⁴⁵⁾ 이렇게 만주어와 한어를 잘하면 주요 관직으로의 빠르게 승진해

주방보다 더 나중까지 만주어를 유지했고, 지방에서도 가장 대규모 주방인 서안의 만주어가 다른 주방보다 더 나중까지 유지되었다.

43)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는 만주족이 옹정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만주어를 사용했으나 건륭기부터 급격히 모어를 상실했다고 보았다. 宮崎市定, 「清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宮崎市定全集 14』, 岩波書店, 1991, 335쪽.

44) 王麗, 「清代翻譯科述論」, 『遼寧大學學報』 第4期, 2001, 43쪽.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671년(강희10) 3월 5일 강희는 각 아문에 배치되어 있던 통역관(通事)을 모두 폐지하게 했다. 만주족 관원이 한어를 알고 있으니 통역이 없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고령의 만주족 관원은 한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통역 도움 없이 한문으로 작성된 공문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어를 못하는 관원은 퇴임하기도 했다.⁴⁵⁾ 통역과의 폐지와 일부 만주족 관원의 사임은 만주 관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그들은 관직 유지를 위해 한어를 배웠다. 강희 중엽 고위 관원 선발에 한어 능력이 이전보다 더 중시됐다. 한어 능력은 승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1689년(강희28) 강희는 이번원(理藩院)의 업무 기록에 한자의 부수적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도찰원 좌도어사(都察院 左都御史) 마제(馬齊)의 요청을 수락했다. 이 조치로 인해 마침내 조정 중앙에서 한문을 사용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서였던 이번원까지 한어와 한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강희제는 한인을 더 잘 지배하기 위해, 그리고 만주족이 모어와 한어 모두 능통하길 원해 만주족이 한어를 잘하기를 기대했다.

과거의 기회는 만주족과 한인 모두에게 있었다. 주방 기인들도 한어와 과거 공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한어로 소통하는 세상에 살며 한어를 잘하면 더 나은 삶이 보장됐으니 만주어는 나중이었다. 황실이 했던 만주어의 쇠퇴 우려가 현실이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건륭 11년(1746년), 좌우 양의 중학 재학생 226명이 만주어와 승마 공술에 모두 서툰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 27년(1762년) 왕작(王爵)을 계승한 제자들이 모두 만주어를 하지 못하고 공술 실력도 평범한 것이 드러났다. 심지어 마

45) 청대 보통 殿試에서 1甲으로 합격한 사람들은 翰林院修撰(종6품) 혹은 編修(정7품)로 임용되었고 그 밖에 翰林院檢討가 종7품, 知縣이 정7품인 이었다고 한다. 이를 참고했을 때 번역 시험으로 중앙 부서 정6품이 된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최형섭, 「언어와 번역을 통해 본 17-18세기 중국 사회」, 『중국문학』 65권 2010, 5쪽.

46) 1675년(강희13) 浙江巡撫직에 있던 滿洲正白旗人 다두(達都)가 만주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흔이 넘도록 제대로 만주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활을 당기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 39년(1774) 9월, 건륭이 황실 종실인 애신각라(愛新覺羅) 승액(僧額)을 만났는데 그는 만주어를 하지 못했다. 50년(1785), 한림학자가 중에도 만주어를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가경 5년(1800) 은기위(恩騎尉) 상안(常安)은 황제가 만주어로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화살 세 개를 모두 과녁에 적중시키지 못했다. 만주어를 등한히 하는 것은 주방 기인 사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 도광 7년(1827), 광주(廣州)에 주둔한 장군 경보(慶保)는 공문뿐만 아니라 안부까지 한문으로 썼다. 도광은 경보(慶保)에게 각 성의 장군, 부도통(副都統)에게 송사 및 곡물 판매 수익 관련 사항은 한문으로 상소해야 하지만 만주 진영 관련된 사안은 전례에 따라 모두 만주어로만 상소하라고 명령했다. 도광은 1850년 12월, 안휘(安徽)의 유격수 살령아(薩齡阿)를 만났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만주어를 배우지 않아 일상 회화도 구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함풍은 살령아(薩齡阿)를 다시 건예영(健銳營)⁴⁷⁾으로 보내 만주어와 승마, 궁술을 익히게 하고 관직을 3품에서 4품으로 강등시켰다. 동치 10년 (1871년), 몽골군 사령관 두알이(杜嘎爾)가 한문을 몰랐고 동치는 급한 일이 있을 경우 만주어로 쓰라고 허락했다. 만주어와 한문은 조정을 혼란하게 했다. 건륭시기부터 만주어를 할 줄 모르는 기인이 더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한문으로 소통을 시도했다.⁴⁸⁾

한어와 소통도 해야 하고 모어도 지켜야 했다. 한어를 알아야 한족 지배를 할 수 있었다. 언어 문제가 현상으로 드러나면 황실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했다. 모어 수호는 만주족 기인들에게 ‘국어기사’에 더 몰두하게 하는 것으로 대책 했다. 소통은 과시에 만주어 번역 과목을 두고 언어에 능한 사람에게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특단했다. 한어를 유창히 하면 출세 할 수 있는 것과 만주어를 강제로 익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상

47) 健銳營 : 황제를 직접 경호하는 만주 팔기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

48) 王剛, 「滿洲根本-清代中期駐防旗人的滿語能力與滿文官學教育」, 『歷史檔案』 第1期, 2023, 91~93쪽.

치했다.

상부는 만주어와 무예의 쇠퇴가 과거를 통한 출세 도모로 저마다 문시에만 매달려 기마와 궁술을 등한히 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기인들에게 특히 더 만주어 학습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주방 기인 서원에서는 만주어와 승마, 기사 교육만 하게 했다.

기인 서원의 부침은 주방 기인에 대한 과거 시험 응시 정책과 흐름을 같이 했다. 청 초기 주방 기인들의 문시 응시가 금지됐을 때 동북 지역 기인 서원은 거의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청대 중후기 주방 기인 자제들의 과거 참여 요구가 촉발되고 점진적으로 주방 기인의 과거 준비 및 응시가 허가되며 주방 기인 서원도 증가했다. 만주족들의 과거를 통한 공명 실현 욕구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문화가 서로 교류 융합되고 동화되며 동북 주방 기인 교육 내용도 자연스럽게 일변했다. 공식적으로 만주본습 수호로 제정된 동북 주방 기인 서원의 교육도 과거 시험 대비로 일부 수정되었다. 주방 기인의 과거 참여는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전면 개방으로 수정됐다. 기인 서원의 영도권은 완벽하게 조정에 있었고 조정은 동북 주방 기인 교육의 원칙을 만주본습의 완성화(完善化)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동북 주방 기인서원에서 자율적인 강화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런 강제가 확장,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팔기 과거 시험은 순치 8년 시작됐다. 그러나 응시 준비는 순치 원년 이미 시작됐다. 순치제는 기인 관료 임용에 승마 궁술 능력을 더 강화했다. 기인의 기사(騎射)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계속됐지만 건륭에 이르러서는 종실, 각라, 대신의 자손들까지 구실을 붙여 기사를 소홀히 했다. 건륭은 1741년 기인들이 만주어와 승마, 활쏘기 강화를 명하는 『명팔기만주근습기사유(命八旗滿洲勤習騎射諭)』를 반포했다. 건륭 2년(1757)에는 향시에 응시하는 팔기 동생(童生)들의 기사 시험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가경 22년(1817년)에는 승마 궁술 시험을 대리로 치루거나 나이를 줄여 시험을 기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어기사를 등한히 해서 나오는 부정이 드러나자 도광은 아예 주방기인의 문과 시험을 중지했다.

동북 주방 기인 서원 설립 요구와 주방 기인들의 과거 시험 응시 허가에 대한 청 조정의 입장은 순차-기마, 궁술 합격 기인에게 응시 허가(순차 8년 번역과 신설), 강희-조건부 허가, 옹정-금지, 건륭-잠정 중단, 가경-일부 허가, 도광-금지, 함풍-허가로 계속 변했다. 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만주어, 승마, 사격에 익숙한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주방 기인의 과거는 제한 됐지만 한문화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되려 많아졌다. 주방 기인의 과거 응시를 막는다고 만주본습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인의 과거 참여로 한문의 사용과 이해는 당연히 높아졌다. 만주어 위상이 갈수록 떨어졌다. 주방 기인 자제들의 번역 시험 응시율도 갈수록 저조했다. 건륭 시기 번역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각 과에 5,600명 정도였다. 그러나 도광 8년에는 13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 응시자 가운데 중국어를 만주어로 제대로 번역한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주방 기인들이 만주어와 기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광(23년)은 각지 주둔군에게 통번역 시험을 보게 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선발하지 않았다. 함풍(11년)은 주둔군의 과거 시험 참여를 다시 허가했다.

주방 기인 서원은 청대 교육 내용이 가장 완고한 교육 기관이었다. 그러나 주방 기인들의 과거에 대한 열의까지 제어되지는 않았다. 국가는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했고, 청 황실은 주방 기인 서원에서 만주어와 기사에 능한 재원이 양성되길 기대했으며 서원의 재학생은 거시를 통한 영달을 도모했다.

V. 주방 기인 서원 교육의 착오

대륙 동북 지역과 주요 주둔지를 봉쇄하는 것으로 만주족과 한족의 형질 분리는 됐다. 그러나 무형의 문화가 섞이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었다. 왕조를 세운 뒤 창제한 부족민의 신생 언어에 수천 년 간 축적된 학문, 문물, 제도를 담아야 했다. 광활한 대륙을 얻고 명명해야 할 것도 많아졌다. 기존 만주어로 해

결 될 수가 없었다. 만주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한족의 개념과 어휘는 발음만 한어인 만주어가 됐다. 청은 만주어는 지키고 만주족의 견식을 높이기 위해 한족의 지식을 만주어로 학습시켰다. 또 말과 활로 1억 명을 정복한 30만 만주족의 기마 공술은 천부이자 불변일 줄 알았다. 북방 벌판을 달리지 않는 삶을 사는 만주 기인에게 말과 활은 이내 낯설어졌다. 기인이 기마, 공술에 다시 능란하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은 훈련을 도왔어야 했다. 그러나 정책만 있었고 지원은 없었다. 황실은 주방 기인 서원 교육 지침을 아래와 같이 세워 진행했다.

1) 청어(淸語)교육

동북 주방 기인 서원에서 사용한 교재 목록이나 조사는 없다. 다만 당시 종학(宗學), 관학(官學), 의숙(義塾)에서 『청문계몽(淸文啓蒙)』, 『청문지요(淸文指要)』, 『청문비고(淸文備考)』, 『(만한자청문계몽)滿漢字淸文啓蒙』⁴⁹⁾등의 교재가 사용된 것으로 주방 기인 서원도 이 책들 위주로 만주어 기초 교육을 진행했을 것이 짐작된다.⁵⁰⁾ 만주어 초급 과정을 이수하면 『(만몽한삼문합벽교과서)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를 공부했다. 이 책은 청 말기 동북과 북경 팔기학당, 만몽학당의 교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삼성(東三城) 총독(總督) 석량(錫良)과 정덕전(程德全)이 기인 학자와 제자들에게 간행하게 한 책이다.⁵¹⁾ 『만몽한삼문합벽교과서』를 이해하면 만주어로 번역된 한적을 공부했다. 또 '만문 한적 학습에는 어제(御製)의 만주문자 책을 참고하라.'는 기록이 있어 『어

49) 王婉, 「簡述淸前期東北地區漢人滿語學習」, 『邊疆經濟與文化』, 2022, 73쪽.

50) 위에 열거한 책들은 만주어 자모와 발음, 쓰기, 만한(滿漢) 회화, 독해, 문법, 어휘 등을 학습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청대 간행된 만주어 교재는 약 20여 종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인 것은 『淸文啓蒙』, 『淸文指要』으로 만주어를 교육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이를 활용한 정황이 여럿 남아있다. 屈六生, 「論淸末滿語的發展—兼評『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 『滿語研究』, 2004.

51) 『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은 만주어와 함께 상식, 윤리, 관습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큰 호평을 받았으며 선통(宣統)원년(1901)까지 여러 차례 재간행 되었다.

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과 『어제청문감(御製淸文鑑)』이 주방 기인 서원의 중요한 교구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방 기인 서원에서 어떤 만주어 번역 한적을 학습했는지 조사된 바는 없다. 다만 당시 만주 팔기의 지침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은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에 기인 서원에서 사용한 몇 종의 도서와 교학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어 참고가 된다. 다음은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의 기록이다.

『kulun-i ujui debtelin』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입는다. 하늘이 첩첩이 복을 주는 사람은 청렴함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를 빗댄 진실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만주어로 이야기를 만들고 인품이 훌륭한 관원 중 한 명을 뽑아 그에게 선생을 맡기고 아문의 한 곳에 학교를 세우니 모든 旗人관료들의 자제가 왔다. 그중 단정하고 우수한 열 사람을 뽑은 후 일제히 책을 읽게 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한 편으로 학생들에게 『聖諭廣訓十六條』를 읽게 하고, 한편으로 해설했다.⁵²⁾

『dosin-i sunjaci debtelin』

이 안에는 출세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었다. 만주 선생은 그들을 모아 함께 한적을 일게 했다. 이미 완성된 『만한합벽유주사서(滿漢合璧有註四書)』가 있으니 한 편으로 한문 사서를 읽게 하고 한편으로 만주어 주해가 있는 번역본을 읽고 참고하게 해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가르쳤다. 쉽게 한자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자연히 번역을 깨우치게 된다.⁵³⁾

52)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kulun-i ujui debtelin』 : aisi be butara niyalma urunakū jobolon de tušambi. hanja i yabure niyalma be dergi abka dabtame huturi isibumbi sere duibulen gisun be. manjurame meyen i bithe banjibufi. ujen fisin hafan be emke sonjofi sefu obume. yamun i sula boode emu taciku ilibufi. bisirele gūsai hafasai juse deote be gajifi. coohai ursei dorgi niyalma tob giltukan ningge be juwasime sonjofi. sasa bithe hulabuha. ere meyen bithe be hulame wajija juse de. enduringge tacihyan be neileme badarambuha bithei juwan ninggun hacin be emu derei hulabume.emu derei giyangname ulhibume.

53)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dosin-i sunjaci debtelin』 :

『dosin-i sunjaci debtelin』:

서원에서 통역을 배우라고 한 학자들은 모두 『滿漢合璧有註四書』를 읽는다. 또 왕이 지은 『성리정의(性理精義)]를 읽게 하고 동시에 이 책의 해설을 하게 하고 차례로 학생들에게 번역을 시킨 다음 ‘어제의 만주문자 책(御製清文鑑)’을 참고 하게 하여 자기의 번역을 다듬게 하고 각자 번역한 것을 이해한다. 주자(周子)의 『태극도(太極圖)], 『통서(通書)], 장재의 『정몽(正蒙)]과 같은 책은 한 문 뜻을 쉽게 이해 할 수는 없으나 만주어로 번역된 것을 보니 과연 해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달 할 수 있었다.⁵⁴⁾

『aššan-i duici debtelin』

『名臣傳』이라고 하는 책에는 악비(嶽飛)와 관련된 일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만주어로 번역된 『通鑑』을 보면 그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주어를 익힐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두 종의 글을 보아라.⁵⁵⁾

erei dorgi hūwašara muru bisirengge be. manju sefu uthai šorgime nikan bithe be suwaliyame hūlabumbi. beleni manju nikan hergen i kamciha suhe hergen bisire duin bithe bisire turgunde.emu derei nikan hergen-i duin bithe be hūlabume. emu deri manjurame ubaliyambuha suhe hergen bisire duin bithede acabume niyelebume ulhibume giyangnabumbi. nikan bithei gunin be ja-i ulhimbime. ubaliyambure be ini cisui bahanambi.

- 54)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dosin-i sunjaci debtelin』 : bithei boo ubaliyambure-be tacire juse-be gemu manju nikan hergen-i kamcibuha suhe hergen bisire duin bithe-be hūlabumbi. kemuni han banjibuha banin giyan narhūn jurgan-i nikan bithe-be hūlabume giyangnabume. hacin aname muwašame ubaliyambubufi han-i araha manju hergen-i bithede acabume tuwancihiyame dasahai. teisu teisu gemu ubaliyambume bahanahabi. Jeo Zi'-i Tai Gi Tu nirugan. Tung šu bithe. Jang Zi'-i Jeng Meng sere bithe-i nikan hergen yūnin-be ja-i ulhime muterakū. manju hergen-i ubaliyambure-be tuwahade. yala giyangnarakū-de ulhimbi
- 55)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aššan-i duici debtelin』 : gebungge amban-i ulabun sere bithe de Yo-U-Mu-i baita be yongkiyame araha babi. manjurame ubaliyambuha hafu buleku bithe be tuwahade. terei baita fassan be saci ombime. manju gisun be inu urebume tacici ombi sembi. tede bi juwe hacin-i bithe be baifi tuwahai. tuwahai.utala baita be saha bime. manju gisun inu urehebi.ere yala gucu-i tusa kai.

위에서 언급된 ‘yamun i sula boode emu taciku ilibufi.’(아문의 한 곳 학교)와 bithei boo(글의 집)이 주방 기인 서원으로 추정된다. 『sakda-i gisun sarkiyān』에 근거해 주방 기인 서원에서 『(성유광훈십육조)聖諭廣訓十六條』, 『(만한합벽유주사서)滿漢合璧有註四書』⁵⁶⁾, 『(태극도)太極圖』, 『(통서)通書』, 『(정몽)正蒙』, 『(성리정의)性理精義』⁵⁷⁾, 『(명신전)名臣傳』, 『(통감)通鑑』 등을 교재로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목록을 통해 주방 기인 서원에서는 황제가 남긴 교훈, 유학, 우주의 이치, 윤리, 철학, 성리학, 역사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학습과 이해가 시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치우침이 없어 역대 중국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도한 것이 가능된다. 특히 선조 급에 대항해 싸웠던 남송의 악비에 대해 이해를 도모한 것으로 미루어 학습 내용에 편협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 주방 기인 서원에서는 만주어로 번역된 한적 학습 외에 주군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만주어, 남자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잇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책으로 엮어 성경성(盛京城) 각 지방으로 배포했다.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하길 바란다.(niyalma tome ulhikini seme neileme yarhūdame tacibubuha sembi.)⁵⁸⁾’는 문장이 있어 기인의 처세에 대한 글을

56) 앞에 언급된 『有註四書』는 주희의 『四書集註』의 만주어 번역본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조사된 『四書集註』는道光 18년(1838년)번역된 것으로 앞의 기록에 언급된 『有註四書』가道光 18년 번역된 책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57) 『性理精義』: 총 1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康熙 56년 간행됐다.淸 李光地 등이 상세하게 주석을 달고 ‘御饌’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해 전국에 반포했다.明 胡廣의 『性理大全』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周敦頤, 邵雍, 程顥, 程頤, 張載, 朱熹 등의 문집과 어록을 선별하고 太極圖說, 西銘, 皇極經世, 家禮 등과 같은 주제에 따라 재편집했다. 강희가 직접 서문을 달고 청대 문인들의 필독서로 삼게 했다.

58)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kulun-i ujui debtelin」: tacikū-de dosimbufi bithe hūlabuha. ejen-de tondo ojoro niyaman-de hiyoosun ojoro. manju gisun. haha ubu-be onggoci ojurakū babe bithe banjibume arafi Mukden hoton-ci geren karmangya. yasan tokso-de dendeme bubufi. niyalma tome ulhikini seme neileme yarhūdame tacibubuha sembi. ere yala saiin jiyanggiyūn kai.

읽어 읽고 학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책의 제목이나 소장처가 불명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

주방 기인 서원 교육은 『청문계몽』으로 만주어 기초를 다지고 『만몽한삼 문합벽교과서』로 어학과 지식을 확충한 뒤 만주어로 번역한 유교 경전, 사서, 교훈서 등으로 심화 교육을 한 것으로 정리된다. 심화 교육에서는 명확하게 한족의 문화 정수를 공부했다. 한족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만주군의 주요 주둔지에 기인 서원이 세워지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교육 과정도 철저히 고민했지만, 실제 교육은 한족의 학문과 정신 이해가 도모되고 있었다.

2) 기사(騎射)교육

조사에 근거하면 용성(龍城)서원, 여재(勵才)서원, 용광(龍光)서원, 보문(輔文)서원, 창명(昌明)서원 등에 기사과목이 설강⁵⁹⁾ 되어 있었다. 승마와 궁술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백산서원의 설립을 건의하고 운영한 부준이 남긴 문장을 통해 기인 서원에서 승마와 궁술 교육이 매우 불안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kulun-i ujui debtelin」

궁술은 연습하기 쉽다. 그러나 말을 타며 활을 쓰는 것은 말이 없으면 평소 연습은 한다 해도 말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말을 타며 활을 쏠 수 있겠는가? 가령 매 달 몇 번씩 성 밖으로 나가 말을 빌려 연습하면 기인 자제들은 많은 돈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며 이렇게 놀고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어 학업을 그르치게 된다. 지금 나는 계획을 세워 학교 서원(tacikūi) 옆에 궁터를 궁도장으로 (이용할 것을 여러분과) 의논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은 스무 냥 정도를 모아 목수에게 건네주고 (말이) 달리는 모양에 본뜬 단단한 목마 한 필을 만들고 네 발이 위치하는 곳에 바퀴 네 개를 단다. 앞에는 쇠사슬을 묶은 쇠갈고리를 박고 낡은 안장 두, 세 개를 사서 교대

59) 陳鵬, 「清代“新滿洲”八旗子弟教育研究」, 『民族曆史』, 2019, 33쪽.

로 쓸 수 있게 준비해 둔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목마 바퀴의 너비에 맞게 궁도장에 흙을 파겠다. 말이 달리는 방향으로 승마 경주도로로 사용할 것이다. 말이 달리는 방향 쪽 끝에 도르레를 만들면 모두 말이 달리는 것처럼 차례로 돌리고 달릴 것이다. 매일 학생들이 흠어질 무렵 한두 번 승마와 궁술 연습을 한다.⁶⁰⁾

동북 주방 기인 서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승마와 활쏘기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 궁리와 대비를 했다. 다만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고 먼 곳의 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면 학생들의 일탈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다. 악조건이었지만 주방 기인에게 승마와 궁술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박시(baksi)는 목마를 만들어 연습할 방법을 고안했다. 경비 조달은 뜻이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했다. 여기서 기사의 중요성을 주창한 황실이 주방 기인 서원 교육에 금전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해 주지 않은 것이 파악된다. 청이 농경사회로 변하며 승마와 일상이 계속 멀어졌을 것은 자명

60)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kulun-i ujui debtelin」 : tuttu bicibe. beri tatara gabtara be hono ja de urebumbi. niyamniyara emu hacin morin akū oei. udu an-i ueuri dodome urebume umesi ureshūn de isinaeibe. morin be saburakū geleme ohode. adarame niyamniyambi. aika bayadari udu mudan hoton-i tule genefi. morin be turime urebuci. šabisa labdu jiha fayambime. ba bade šodohoi. ekenderi sargašara omicara ohode. elemangga bithe holarā be tookabure. jai ehe tacire ai boljon. te bi emu arga gūnime叔ibufi. uhei hebšei tacikūi salbade gabtara untuhun hūwa bi. aģesa uhei orin šurdeme yan menggun šufafi. mooi faksi de afabufi. feksire durum i songkoi akdukan-i emu mooi morin weilefi. duin bethei teisu duin muheren sindame. julergi de futa huwaitara selei goho hadabume. jai juwe ilan yohi fe enggemu udafi. halanjame tohome baitalara de belhebuki. yooni jabduha manggi. mooi morin muheren-i onco isheliyen de teisulebume. gabtara hūwa de emu gabtara-i gese yohoron fetefi. niyamniyara jurgan obume. morin-i feksime fororo ici jurgan-i ebergi dubede. hūcin de baitalara tatakū-i šurgeku be weileme ilibufi. geren-i kutule se be halanjame futa-i morin be šurdeme ušabume. uthai morin-i elhei feksire adali ombi. šabisa be inenggidari facara erinde. emu juwe mudan yalume nimniyara be urbuki sehe manggi.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승마를 연습할 기회조차 없어 나무를 깎아 만든 말로 연습했다. 승마와 궁술의 퇴화는 예정되어 있었다.

청 황실에서는 주방 기인 서원에서 만주어를 교육하고 기인들이 속히 만주어를 익혀 능숙하게 되길 바랐으나 교육을 위한 교재 대부분은 한적이었다. 즉 외국어를 모어로 번역한 것을 읽고 모어를 익힌 것이다. 번역 과거 시험도 한문 경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주방 기인들은 한문 경전을 익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만주어로 번역된 한적을 보는 것으로 한문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완화됐는지 한문 문화가 한껏 흡수됐는지 알 수는 없다. 분명 둘 다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인 서원에서 교재로 사용한 『(御制翻譯禮記) han i araha ubaliyambuha dorolon i nomun』의 경우를 보면 또 다른 침잠 문제가 확인된다. 만주어로 제대로 번역되지 않은 문장을 보고 한적과 만주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禮記·坊記』

(원문)公儀仲子之喪, 檀弓免焉. 仲子舍其孫而立其子. 檀弓曰何居我未之前聞也. 趨而就子服伯子於門右

(번역)公儀仲子の喪에 檀弓이 袒免을 하였다. 仲子가 適孫子를 버려두고 庶子를 후계자로 세우자, 檀弓이 말하기를 “무슨 까닭인가?

(만주어 번역)gung I jung zi' I sinagan de tan gung subehe⁶¹⁾ hūwaitahabijung zi' ini omolo be waliyafi ini jui be ilbuhe tan gung hundurne aibe songkolohebi erei ongolo bi umai donjiha be akū sefi⁶²⁾

(번역)공의 중자의 상(喪)에 허리끈을 묶었다. 중자의 손자를 버리고 그의 아들을 세웠음에 단궁 말하길 무엇에 따랐나? 이 전에 나는 전혀 들었던 것이 없다.

『예기』에 언급된 ‘단면(袒免)의 服은 자신과의 관계가 5대가 지난 친족이

61) subehe : 1. 나뭇가지의 끝, 머리털의 끝 2. 비단으로 만든 끈 3. 상복을 매는 허리끈.

62) 『(御制翻譯禮記) han i araha ubaliyambuha dorolon i nomun』

나 타국에서 죽어 상주가 없는 친구에게 행하는 특별한 것이다. 중자(仲子)는 단궁(檀弓)과 5대 친족이 아니고, 중자가 타국에서 죽은 것도 아니니 단궁이 단문을 한 것은 복을 입을 관계가 아닌데 복을 입은 것이다. 복을 입을 관계가 아닌데 복을 입은 것은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야 할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것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쓴 것이다. 적자가 사망한 경우 적손을 후사로 삼는 것이 도리인데 단궁은 중자가 적손을 버려두고 서자(庶子)를 세웠기 때문에 지나친 단면(袒免)을 하고 조문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단면’을 번역한 만주어 ‘subehe’는 띠를 의미한다. 『어제증정청문감(御製增訂淸文鑑)』에 이 글자는 ‘상복을 매는 끈’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만주어로는 단순히 ‘상복을 입고 띠를 맨 것’으로만 번역하고 있다. 해당 문장은 후계 계승에 대한 정도를 설명한 것이다. ‘袒免’을 ‘띠를 묶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는 이 문장이 쓰인 의도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를 단순히 ‘만주어 표현의 한계’로 간주 할 수 없는 것은 이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었다면 부연과 설명이 당연히 따랐어야 하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못한 번역서로 학습하는 것은 한문 경전 번역 방법을 배우게 할 뿐, 모어로 사고하는 ‘원어민’이 되도록 지도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주방 기인 서원은 제대로 만주어를 할 수 있는 기인을 양성하지도 승마와 궁술에 뛰어난 무관을 기르지도 지식문화의 거점으로서 지역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지도 못했다.

VI. 결론

중국을 정복하고 티벳·신강·몽골까지 지배 영역을 확장한 만주족은 마침내 번듯한 중원왕조의 외피를 입었다. 그들에게 최고 권력을 갖게 해 준 것은 기마와 궁술이었다. 타고난 용맹함을 지키고 기신의 언어를 만들어 이미 잘 형성된 타자의 문화를 이용해 권력이 유장하길 계획했다. 문(文)으로 일구어진 세상을 무(武)로 얻었지만 문덕으로 쌓은 선적(先跡)의 위여함을 간과하

지 않았다. 전대가 일구어 놓은 관부의 교육, 육예의 교육, 인재 선발의 교육, 그리고 학문을 계승했다. 국학, 관학, 서원, 의숙, 사숙 전부에 두루 관심을 두고 세심하게 관리했다. 주방 기인들의 교육은 더욱 개선했다. 교육원칙은 국가 운영의 기본원칙과 동일하게 세웠다. 국가 정체성과 민족 본질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었다. 우선과 중점은 ‘국어기사’에 두었다. 부락의 여진을 대륙의 국가로 만들어 준 영예의 땅인 동북 지역의 교육은 보통의 것과는 달랐다. 이곳의 교육원칙은 모어와 용맹함을 수호하는 것에만 두었다. 그러나 이상은 현실과 달랐다. 북방 국경 주둔지에 한인과 한문화와 한어가 들어왔다. 동북 주방 기인들도 교육 받길 원했고 공명 실현도 꿈꾸었다. 이 지역의 기인들도 과거를 통해 출세를 이상했다. 그러나 변방에 사는 주방 기인들은 성경, 길림 중심지, 흑룡강 중심지에 있는 관학으로 교육을 받으려 다니기 어려웠다. 과거를 보러 가기도 너무 멀었고 공부 할 기회도 부족했다. 청 황실이 서원에 대한 입장을 ‘沽名釣譽’에서 ‘興賢育才’로 바꾸고 물질 지원을 해 주어 전국 도처의 서원은 전대미문의 발전을 하게 됐다. 동북 주방 기인들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서원 설립을 요구했다. 상당 기간 ‘불필요한 소리’라는 시달만 계속됐다. 청 중후기까지 주둔지의 장군과 부모통이 가담해 계속 상주했다. 마침내 동북지역의 주방 기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원이 설립됐다. 강희 15년 녕고답에 용성서원(龍城書院)을 시작으로 광서 13년 중어서원(中俄書院)까지 총 25개의 기인 서원이 생겼다. 황실은 서원의 설립을 허가하며 운영은 장군과 도통에게 맡겼다. 여느 서원과 마찬가지로 서원의 교육은 산장이 총괄했다. 산장의 선임도 정부에서 맡았다. 운영 자금은 유력인들의 기부와 지역 거주인들의 모금으로 조달했다. 주요 교육은 만주어와 미술(馬術), 궁술이었다. 후에 생긴 서원에서는 한어와 경서도 강화했다. 그러나 주방 기인 서원의 영도권은 완벽하게 정부에 있었다. 황실은 동북지역의 주방 기인 서원에서 만주어와 기사교육을 공고히 하여 만주본습이 완전화(完善化) 되기를 기대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내 주방 기인의 과거 응시를 제한했다. 이렇게 하면 과거에 들이는 노력이 모어와 무예를 익히는 데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수준 높은 문화를 동반한 한어는 동북지역 만주족 생활 깊이가 들어왔고 만주족들은 말을 타지 않는 유연한 삶에 익숙해졌다. 주방 기인 서원의 만주어 교육은 한적을 만주어로 번역한 번역서로 진행됐다. 한족의 정신을 만주어로 써서 운격은 익히고 모어는 지키려는 방편이었다. 그러나 만주족의 언어에는 한족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유구하고 심오한 뜻이 담기지 않았다. 한적을 만주어 번역하면 그 뜻을 다 표현하기도 어려웠고 오류도 생겼다. 뜻이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언어 습득에도 문제가 생겼다.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동북 주방 기인 서원 학생들은 승마 연습은 나무를 깎은 말로 했고, 습사(習射)를 위해 근처 빈 곳을 찾아 방랑했다. 마음을 과거 문시에 둔 동북 주방 기인들에게 모어를 강제하고, 한족의 얼을 주입시키고, 기마 교육은 철저하지 못했다. 동북 주방 기인 서원 교육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했다. 결국 주방 기인의 언어는 완전히 퇴화했고 그들의 정신은 피지배자의 것으로 점철되었으며 더 이상 말과 화살을 능란히 다루지 못하게 됐다. 동북 기인 서원은 주방 기인 교육을 이바지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 『清史稿』, 中華書局, 1977年.
- 『清世宗實錄』, 中華書局, 1985年.
- 『清實錄』 (<https://www.zhonghuadiancang.com/shudan/qingshilu/>)
- 昆岡, 李鴻章, 『欽定大清會典事例』(<https://ctext.org/zh>)
- 유지원외, 『이민과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2011.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연구회역,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2014년.
- 유소맹(이훈·이선에·김선민 역), 『여진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 이훈,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2018.
- 최형섭, 「언어와 번역을 통해 본 17-18세기 중국 사회」, 『중국문학』, 65권, 2010.
- 김선민, 「『舊滿洲檔』에서 『滿洲實錄』까지- 청 『태조실록』의 편찬과 수정」, 『史叢』, 77권, 2012.
- 정재남, 「만주어 언어교체(소멸)의 역사적 과정 및 원인 분석 試論」, 『東아시아 古代學』, 2018.
- 長順修, 李桂林纂, 李澍田點校, 『吉林通志, 卷30(下)』, 吉林文史出版社, 1986年.
-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 關孝廉, 屈六生, 惠編審, 王小虹譯, 『翻譯康熙朝滿文朱批奏折全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年.
- 季嘯風, 『中國書院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6年.
- 鄧洪波, 『中國書院史』, 台灣大學出版中心, 2000年.
- 王鑣翰, 「國語騎射與滿族的發展」, 故宮博物院院刊.
- 張 傑, 「清前期東北地區的滿文學校」, 『中國邊疆史地研究』, 1993年, 第4期.
- 蘇 德, 「清代達斡爾族滿文官學與私塾教育」, 『前沿』, 1995年, 第5期.
- 多洛肯, 路鳳華, 「清代八旗科舉考試歷史敘略」, 『科舉學論叢』, 2019, 第1期.
- 白新良, 「論清代八旗教育在乾隆時期的轉變」, 『南開學報』, 2001年, 第4期.
- 王 麗, 「清代翻譯科述論」, 『遼寧大學學報』, 2001年, 第4期.
- 李雲霞, 「滿文的基源及其發展演變」, 『滿語研究』, 2003年, 第1期.
- 屈六生, 「論清末滿語的發展 - 兼評『滿蒙漢三文合璧教科書』」, 『滿語研究』, 2004年.
- 潘洪綱, 「清代駐防八旗與科舉考試」, 『江漢論壇』, 2006, 第6集.
- 葉高樹, 「清雍乾時期的旗務問題: 以雍正十三年滿、漢文「條陳奏摺」為中心」, 『臺灣師

大歷史學報』, 2007年, 第38期.

張 傑, 「清代東北滿語文的使用狀況」, 『滿語研究』, 2009年, 第2期.

季永海, 「論清代“國語騎射”教育」, 『滿語研究』, 2011年, 11集.

顧建娣, 「晚清的旗人書院」,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2017年, 第4期.

陳 鵬, 「清代“新滿洲”八旗子弟教育研究」, 『民族歷史』, 2019年.

王 娣, 「簡述清前期東北地區漢人滿語學習」, 『邊疆經濟與文化』, 2022年, 第2期.

王 剛, 「滿洲根本: 清代中期部族旗人的滿語能力與滿文官學教育」, 『歷史檔案』, 2023年, 第1期.

宮崎市定, 「清朝における國語問題の一面」, 『宮崎市定全集 14』, 岩波書店, 1991年.

松筠, 『Emu tanggū orin sakda-i gisun sarkiyān』, 北京圖書館所藏本, 1791年.

『(御制)翻譯禮記 han i araha ubaliyambuha dorolon i nomun』.

Abstract

Qing Dynasty occupation forces Eight Banners Academy and Education*

Kim, soo kyung**

The doctrine of the Qing Dynasty that turned the Jurchen village into a state was “Riding and Shooting Manchu.” It conceived of building a great empire for Manchus who fluently spoke their mother tongue and were good at horseback riding and archery as well as an education that fits the entirely-transformed hierarchical structure. The Qing inherited the education systems of Li Tang, Zhao Song, and Zhu Ming, managed Zongxue, Guanxue, and Fuzhou County schools, and administered urban and rural Seowon, so that education would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The Qing was even more prudent and strict on the education of bannermen in the northeast region where the Manchus rose for the full preservation of their ethnic identity.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wer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and blocked from communication with the Han Chinese. The stationed bannermen living in Liaoning, Heilongjiang, and Jilin we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take the Civil Service Exam that everyone had and were only taught Manchu, horseback riding, and archery, and their request for more educational opportunities was ignored. 60years after the Qing Dynasty was established and more than 5,000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A 2A01079774).

** Sangji University / soosoo@sangji.ac.kr

Seowon were built nationwide through ups and downs, the first Bannermen Seowon was created in the northeastern corner. In the following decades, 25 bannermen Seowon were erected in total, with their operation and training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eaching the Manchu, horseback riding, and archery according to instructions. However, the continent's nomadic economy shifted to an agricultural economy, and the nomadic social languages were quickly replaced by agricultural social languages. Coming down from harsh horses, the Manchus easily accustomed themselves to a mild life, but the culture of the Han people could not be stopped forever by force and obstinacy. Northeastern bannermen were also assimilated greatly into Han Chinese culture, and the literary liberalization policy toward the stationed military forces in the late Qing Dynasty triggered bannermen, driving the Seowon education to a dilemma. Conceptual education at Bannermen Seowon was delivered in Manchu only as a form but taught Han Chinese culture, horseback riding was trained with horses carved out of wood, and archery wandered in search of a place to practice. Such education could not preserve Manchurian customs.

Bannermen Seowon was established to lead local education driven by the passion and efforts of local officials. However, Seowon in the Northeastern region was a social product that had entirely become Guanxue. The top wanted this place to be a foothold to protect the original Manchurian customs, while the bottom wanted to realize resonance here. Bannermen Seowon could neither help defend the essence of the Manchus nor realize the banner men's prosperity ; it was unsuccessful.

Key word : Qing, Manchrians, Seowon, Eight Banners, Knight, Archery, Civil Service Examination

논문 투고일: 2023. 11. 14 심사 완료일: 2023. 12. 05 게재 확정일: 2023. 12. 06

Studia and Monastic Itinerancy. The Case of S. Giusto in Volterra after the Black Plague*

Andrea Barsacchi**

- I. Aperto Psalterio: Camaldoli and Culture from the beginning to the XIV century.
- II. Ubi vigere gramatichale studium consuevit: the grammar school of S. Giusto.
- III. The Library of S. Giusto (1284 and 1315): an instrument of knowledge and teaching? A look at some Tuscan monastic and non-monastic libraries from the 14th and 15th centuries
- IV. Conclusions

【국문초록】

11세기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계율 개혁 과정에서 로무알도 성인(s. Romualdo)에 의해 창건된 카말돌리화는 중세 후기 중부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대표적인 주요 수도회 중 하나이다. 카말돌리회 수사들의 생활은 '침묵'과 '기도'로 요약되는데, 이는 금욕주의나 계시에 비해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은수자(隱修者) 중심의 모델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카말돌리회의 배움과 문화에 대한 태도는 13-14세기에 이르러 대학 문화의 수용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일부 카말돌리회 수도원 내에서 차츰 전통적인 고독 속에서의 지식 추

* Acronym used in the text: ASFi Archivio di Stato di Firenze (State Archive of Florence).

** post PhD, University of Pisa

구, 즉 사피엔티아(sapientia)에서 탈피하여 교육 제도를 통한 배움, 즉 스튜디오(studia)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338년 문법 교육과정 설립을 위해 선택된 볼테라(Volterra)의 산 주스토(S. Giusto) 수도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수도사들로 하여금 소속 수도원 내부 혹은 동일 수도회 소속 다른 수도원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타협인 동시에 중세 대학 사회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등 다른 수도회들을 따라잡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카말돌리회 총장이 취한 정책, 특히 볼테라의 수도원을 부흥시키고 1348년의 흑사병 이후 배움의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1355년부터 1372년까지의 신규 학생 및 수련 수사 파견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력 이동은 카말돌리회가 기존의 보수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1338년부터 새로이 설립된 학교들을 번성시키고자 한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14~15세기에 작성된 도서관의 장서 목록 분석을 통해 산 주스토 수도원의 도서관과 카말돌리회 은수처(隱修處, Hermitage) 도서관, 피사의 카말돌리회 수도원 산 제노(S. Zenò) 도서관, 피사 근교 고르고나(Gorgona) 섬 소재 베네딕트회 수도원 산 고르고니노(S. Gorgonino) 도서관 및 볼테라의 산 안드레아(S. Andrea) 수도원 도서관과 볼테라 대성당 성구실 부속 도서관을 비교하여 볼테라의 산 주스토 수도원 및 피사의 산 제노 수도원 내에 배움(studia)의 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이 수도원의 도서관 장서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강의에 필요했을 새로운 서적들이 구입되거나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전례서의 성격을 띠는 문헌들이 소장되었고, 비교 대상인 도서관들의 장서 목록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 대체로 설교나 종교적 감화, 내부 종교 행사 등에 필요한 문헌만이 장서 목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다시 말해 스튜디오(studia)가 설치된 수도원의 도서관과 그렇지 않은 도서관 사이에 눈에 띄는 만한 차별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곧 강의에 필요한 서적들이 수도원들간의 도서 대출의 형식 등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었거나 현재는 사료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등록되어 보관되어 있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수도원 중심의 지식(sapientia)과 중세 대학 중심의 학문(scientia)간의 충돌은 적어도 카말돌리 수도회 내에서는 후자에 대한 전자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주제어 : 중세, 볼테라, 카말돌리회, 수도원 학교, 도서관

The 28th of December of 1355 the prior general of the Camaldolese congregation and of the Hermitage of Camaldoli, Giovanni degli Abbarbagliati¹⁾, ordered the transfer of the monk Bartolomeo da Anghiari from the monastery of S. Michele in Borgo (Pisa) to S. Giusto in Volterra²⁾. The decision was justified by the need to repopulate the latter, probably severely affected by the Plague of 1348. Furthermore the prior specified that the monastery of Volterra was the seat of a grammar school, suggesting that the transfer also served to revitalize teaching (*ubi vigere gramaticale studium consuevit*). The provision, followed by others in the following years, attested the importance for the Camaldolese of these *studia* and led to a series of transfers to S. Giusto.

But what was the proces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se monastical schools? And what was the Camaldolese attitude towards culture and teaching of the time, now dominated by universities and by the great *studia* of Mendicant orders? What kind of cultural relationships inside the congregation are legible behind these provisions?

The main goal of the present paper is to provide a general overview of the cultural situation in the Camaldolese congregation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start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a single case study,

1) Giovanni had been elected prior general of the congregation the 15th July 1348, after being abbot of S. Michele in Borgo. For his biography see R. Manselli, *Abbarbagliati, Giovanni in Dizionario Biografico degli Italiani*, I, Rome, Istituto della Enciclopedia Italiana, 1960, *sub voce*.

2)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17v.

the monastery of S. Giusto in Volterra. Before examining the latter, however, it is worth taking few steps back and look at the process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ese schools inside the monasteries of the congregation and, more importantly, at its attitude towards culture³⁾.

I. Aperto Psalterio: Camaldoli and Culture from the beginning to the XIV century.

Born as part of the Benedictine monastic reform in the 11th century, the attitude of the Camaldolese monasticism towards culture has always been profoundly contradictory, although great intellectuals such as Pier Damiani or the humanist Ambrogio Traversari were included among its ranks.

The roots of this contradiction can be traced in the same figure of the founder, St. Romuald of Ravenna, in the *Vita Romualdi* written by Pier Damiani. The saint is presented as an *idiota*, an illiterate who, as soon as he opened his psalter, could miraculously read and explain the Holy Scriptures⁴⁾. This portrait of the founder was affected by a typical

3) These two processes have been studied by Cécile Caby (C. Caby, *De l'ermite rural au monachisme urbain. Les camaldules en Italie la fin du Moyen âge*, Rome, cole Française de Rome, 1999, in particular pp. 168-171 and pp. 267-281) and, for the attitude towards culture of Camaldoli, by Maria Elena Magheri Cataluccio and Ugo Fossa (M. E. Magheri Cataluccio, A. U.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Dal medioevo all'umanesimo*, Rome, Editrice Anselmiana, 1979).

4)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8 and Caby, *De l'ermite rural*, cit., p. 169.

hermitic conception, oriental style, in which wisdom coming from prayer, ascetism and God (*sapientia*) was preferred to the knowledge deriving from study and books (*scientia*)⁵⁾. Contempt for the culture of urban schools, as opposed to the "cloister schools", was a common and well-rooted element in monastic thought and found in figures such as St. Bernard or William of St. Thierry excellent spokesmen⁶⁾: the application itself of the methods of logic and philosophy to theology was considered a cause for contempt⁷⁾.

The portrait of Romuald by Pier Damiani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ooks like the psalter in monastic education, together with the *Vitae Patrum*, John Cassian, the Bible and the *Regula Sancti Benedicti*⁸⁾: and the Psalter itself of St. Romuald became an object of worship and a relic jealously guarded in the Hermitage⁹⁾.

The 4th prior general, Rodolfo (1074-1089), for the first time indicated the monastery of Fontebono, near Camaldoli, as a place of formation for the novices¹⁰⁾, but neither he nor later his successor, Placido (1180-1189), made any mention of studies, use of book or library in their constitutions for the congregation¹¹⁾. This silence clashes with the situation of some Camaldolese monasteries, which have already long had

5)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14.

6) J. Le Goff, *Les intellectuels au moyen ge*, Paris, ditions de Seuil, 1957 [it. transl. *Gli intellettuali nel Medioevo*, Milan, Arnoldo Mondadori Editore, 1981, pp. 22-24].

7) Le Goff, *Gli intellettuali*, cit., p. 63.

8)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10 and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ibidem.

9)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8, n. 8.

10)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20.

11)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27.

their own cultural autonomy, like S. Michele in Borgo in Pisa or S. Bartolomeo in Anghiari, with its library of almost 50 books of a liturgical, biblical and patristic nature (1144)¹².

The half of the 13th century represents an important caesura. In 1253 the three books of *de Moribus* by the prior general Martino III (1248-1259), although linked to a wisdom still of traditional monastic foundation, for the first time drew up a list of recommended readings for monks: the *Missal*, the *Epistolary*, the *Antiphonarium diurnum et nocturnum*, the *Manuale*, the *Lectionarium*, the *Martyrologium* and the *Statuta generalia nostri ordinis*¹³. The *de Moribus* established that the monks could possess their own books, if written by them or already possessed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monastery¹⁴. But, more importantly, established that the novices were subjected to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their morals and culture (*de moribus et scientia*), sanctioning an aristocratization in a strictly cultural sense of the Camaldolese congregation¹⁵. In particular, this growing recruitment of clerics with a good cultural

12)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170. For a look at the library of the first see S. Martinelli, *Bono come committente dell'arredo* liturgico, in M.L. Ceccarelli Lemut, G. Garzella (edited by), *S. Michele in Borgo. Mille anni di storia*, Pisa, Pacini Editore, 2016, p. 24: the library consisted of about 35 books, including 5 missals and 8 antiphonaries, 3 biblical commentaries, the Rule of St. Benedict (*Regula sancti Benedicti*) and the *Pastoral care* by pope Gregory I, plus some classic texts of monastic spirituality (*Summum bonum Liber* by Isidore of Seville, *Dialogues* by pope Gregory I and the *Diadema monachorum*).

13)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62-69 and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171.

14)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70-71,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ibidem.

15)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64-65.

formation led to a progressive alteration of the internal physiognomy and to a decisive shift in favor of scientia to the detriment of the traditional monastic sapientia. A similar process can be traced also in the Franciscan order, in the Constitutions of 1239/40, in which it was established that the entry into the order was reserved only for clerics educated in one of the main disciplines of the time (grammar, logic, medicine, law, theology)¹⁶⁾. The Mendicant orders, and in particular the Dominicans, also known as Order of Preachers (*Ordo Preadicatorum*), established a strong connection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resulting from the cultural and urban renaissance of the 12th century¹⁷⁾. This new attitude, embodied in the combination of to study and to preach (*studere et praedicare*), implied a new conception of culture and teaching in general, where knowledge found its outcome in preaching and no longer only in the spiritual perfection of the monk. This led to a new interest in words and communication in Scholasticism which, in this new cultural climate of the 13th century, had become an instrument for imposing religious orthodoxy¹⁸⁾. This meant that the study of grammar became the

16) G.G Merlo, *Nel nome di san Francesco. Storia dei frati Minori e del francescanesimo sino agli inizi del XVI secolo*, Padua, Editrici Francescane, 2003, pp. 108-109.

17) See J. Verger, *La renaissance du XII^e siècle*, Paris, Cerf, 1996 [it. transl. Il rinascimento del XII secolo, Milan, Jaca Book, 1997] and Le Goff, *Gli intellettuali*, cit., p. 102.

18) Merlo, *Nel nome di san Francesco*, cit., p. 113. See also, in particular for the Dominicans, L. Pellegrini, *Cultura e devozione: i Frati Predicatori, la politica e la vita religiosa in Europa fra il 1348 e il pontificato di Martino V*, in *Vita religiosa e identit politiche. Universalit e particolarismi nell'Europa del Tardo Medioevo*, Fondazione Centro di Studi sulla Civilt del Tardo Medioevo, San Miniato (Pisa), Pacini Editore, 1998, pp. 408-409.

very basis of Scholasticism itself¹⁹⁾.

Camaldoli's response to all these suggestions was timid, and closely connected to the need to preserve its religious identity. The world of universities and public schools, which in the meantime the Mendicant orders had begun to frequent assiduously, often setting up their own *studia* at convents²⁰⁾, in fact posed a series of compatibility problems both with the hermitic vocation of the congregation and with the *stabilitas loci* sanctioned by the Benedictine rule²¹⁾.

The tensions within Camaldoli emerged in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priors between the end of the 13th and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In 1278 the Constitutions of Gerardo (1274-1291) authorized book's culture even in the Hermitage itself—proposing however a series of readings for the monks that, especially in the choice of titles (among which the very classic *Diadema monachorum* stands out, together with the *Vitae Patrum* and the *Vitae* of Romuald and Anthony), betrayed a traditional structure²²⁾—, the IV book of *de Moribus*, issued the following year, had the advantage of explicitly posing the problem of monks attending public schools²³⁾. The possibility for the Camaldolese monks to attend the faculties of Law and Theology was admitted but public

19) Le Goff, *Gli intellettuali*, cit., p. 91.

20) See J. Verger, *Studia mendicanti e universit*, in R. Greci (edited by), *Il pragmatismo degli intellettuali. Origini e primi sviluppi dell'istituzione universitaria*, Turin, Scriptorium, 1996, pp. 147-164.

21)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106.

22)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82-84,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p. 171-172.

23)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85,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267.

teaching was strictly prohibited²⁴⁾ ; besides a common fund was also established for the whole congregation to support the monks who wished to study²⁵⁾.

It is therefore evident how these first openings of Camaldoli had begun to seriously undermine the centrality of the hermitic culture, opening to the monks new cultural perspectives arising from the comparison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s and culture.

The next steps, still characterized by a strong experimentalism, were taken during the general chapters of Poppiana in 1308 and 1315. If the first in fact led to the planning of a general school within the congregation reserved for only six monks, with the elaboration of a *cursus studiorum* (3 years in grammar, 2 in dialectics and 6 in another discipline), the latter eliminated the previous limited number and instituted a special fund for a centralized school for the entire congregation²⁶⁾.

The impressive flowering in the following years of teachings and schools within the Camaldolese monasteries allowed the decisive overcoming of the last more conservative resistances. In 1328, while reaffirming the ban on teaching publicly, most of the reasons for excommunication were removed²⁷⁾. Ten years later the general chapter of Faenza (1338) had to take note of the situation by officially decreeing the birth of schools in grammar, philosophy and theology, often set up in previous years as simple groups of student monks gathered around a

24)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ibidem.

25)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85 and 89.

26)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101 and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272.

27)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273.

professor monk²⁸⁾. Further provisions in the general chapter of Pisa of 1372 finally fixed the fees for the professors and the population of student monks necessary for these new schools²⁹⁾.

II. Ubi vigere gramatichale studium consuevit: the grammar school of S. Giusto.

It was precisely in the context determined at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by these novelties regarding access to culture that it is possible to trace the first signs of grammar teaching at the monastery of S. Giusto in Volterra.

The 11th of September 1320 the prior general Bonaventura ordered the monk Niccol of Arezzo to move from Volterra to S. Zeno in Pisa for his competence in grammar, so as to be able to satisfy the thirst for knowledge within that monastery³⁰⁾. 9 days later, two monks from Volterra were sent to Fontebono monastery, where Giovanni da S. Giovanni was appointed as professor³¹⁾.

The presence of the monk Nicola within the walls of S. Giusto must have left its mark, and in the following years a grammar teaching is attested in the monastery, together with others in the Camaldolese monasteries of Pisa and Florence³²⁾.

28)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103-104 and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p. 278-279.

29)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280.

30)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277.

31)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ibidem.

32) Caby, *De l'rmittisme rural*, cit., p. 278.

In 1338, in the general chapter of Faenza, S. Giusto was one of the monasteries chosen for the creation of the new schools of the Camaldolese congregation, along with those of S. Michele and S. Zeno of Pisa, S. Apollinare in Classe (Ravenna), Camaldoli in Florence, S. Salvatore of Siena, S. Maria di Urano (Bertinoro) and S. Maria della Vangadizza (Verona)³³⁾: the *studium gramaticale* was finally born.

In 1351 the general chapter of the Camaldolese finally met in S. Giusto itself³⁴⁾. The meeting of the whole congregation and the presence of the prior general Giovanni was also an opportunity to view the state of the monastery and reaffirm its importance since its entry inside the congregation, which dated back to the beginning of the 12th century, in a moment of great expansion of Camaldoli in Tuscany³⁵⁾.

33)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104, note 333 and Caby, *De l'ermittisme rural*, cit., pp. 279-280, in particular the note 76.

34)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104-105.

35) About the whole history of the monastery of S. Giusto see *La Badia Camaldolese* in A. Furiesi, C. Guelfi, F.A. Lessi, C. Baglini, *La città e il territorio*, in L. Lagorio (edited by), *Dizionario di Volterra*, II, Pisa, Pacini Editore, 1988, pp. 575-579. About the role of S. Giusto inside the congregation and about the relationship with the bishop of Volterra during the 14th century see C. Caby, *Conflits d'identités dans un ordre religieux au XIV^e siècle. L'abb de San Giusto de Volterra et le chapitre général camaldolese*, in F.J. Felten, A. Kehnel, S. Weinfurter (edited by), *Institution und Charisma. Festschrift für Gert Melville zum 65. Geburtstag*, Cologne-Weimar- Vienna, Bhlau Verlag, 2009, pp. 111-126. About the diffusion of the Camaldolese congregation in Tuscany, and in particular in Pisa, during the 12th century see M. Ronzani, *Una presenza in città precoce e diffusa: i monasteri camaldolesi pisani dalle origini all'inizio del secolo XIV*, in C. Caby, P. Licciardello (edited by), *Camaldoli e l'ordine camaldolese dalle origini alla fine del XV secolo*, Acts of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occasion of the millennium of Camaldoli (Camaldoli, 31 maggio-2 giugno 2012), Cesena, Italia Benedettina, 39, 2014, pp. 153-182.

Indeed, the Black Plague of 1348 must have seriously affected S. Giusto and its school. This is suggested by the mentioned provision of December 1355 relating to the transfer of the monk Bartolomeo da Anghiari³⁶⁾. In particular, the text of the provision relating to the grammar school seems to suggest an interruption of teaching, as underlined by the use of the verb in the past (*ubi vigere gramatichale studium consuevit*), and a scarcity of monks within the monastery, which is instead contrasted by the overpopulation of S. Michele, Bartolomeo's monastery of origin (*ex abundantia monachorum predicti monasterii Sancti Michaelis volentes monasterium Sancti Iusti de Vulterris indigentie providere*).

The need to revitalize teaching and to repopulate the monastery of Volterra must have been the main reason that animated a whole series of transfers in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A few days later indeed, the 17th of January 1356, the monk Silvestro was transferred from his monastery of S. Gioconda to Volterra³⁷⁾; and two years later, the 10th of January 1358, Angelo da Fermo was also sent from Osimo to S. Giusto³⁸⁾.

Subsequent provisions reveal much more their educational and cultural purposes.

The 28th of April 1358, the novice Nicola was sent to S. Giusto in order to complete his education: *ut in lectione et cantu ac divinis offitiis aliisque regularibus observantis comode ausiliante Domino instruatis*³⁹⁾. The same motivation was at the basis of the provision for Paolo di

36)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17v.

37)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21r.

38)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47v.

39)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48r.

Arezzo, a novice of S. Salvatore in Siena (20th of September 1362)⁴⁰. Similarly, the transfers of the monk Pietro da Bibbiena and of the novice Leone de *Balneo* to S. Giusto, the 16th of August 1364, were intended in an educational perspective⁴¹. Other transfers, such as those arranged for the monks Bernardo (the 22th of June 1360)⁴² and Leonardo (the 10th of December 1362)⁴³, seem instead to underlie the logic of repopulating the Volterran monastery.

In any case, following the general chapter of Pisa, in which the presence of grammar teachers was arranged for novices' education in the monasteries of S. Giusto, S. Michele of Pisa, S. Maria di Urano and S. Maria della Vangadizza⁴⁴, the 22th of August 1372 the prior general wrote to the abbot of S. Giusto to inform him of the arrival in Volterra of the monk Matteo *de Burgo*, particularly versed in grammar, *quod in tuo monasterio studium teneretur*⁴⁵.

These provisions, if on the one hand attest to the care of the priors general for the maintenance of the internal schools established in 1338, together with a vocation for the novices' formation, on the other place S. Giusto within a lively cultural network with other Camaldolese monasteries. It is clear that, given the grammar specialization of the *studium* of Volterra, those monks who wanted to specialize in other disciplines were forced to look elsewhere. In fact, arise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quest of the monk Nicola, the 26th of October 1362, to

40)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c. 116v-117r.

41)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c. 131v-132r.

42)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68v.

43)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 120v.

44) See in particular Caby, *De l'rmitisme rural*, cit., p. 280 and the note 78.

45)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8, c. 90bisr.

be transferred to *Arezzo ut in studio commorari*, and the permission given by the prior general, the 6th of September 1364, to Leonardo, prior of S. Marco and monk in S. Giusto, to move to Siena to study canon law, a discipline not foreseen in the *curriculum studiorum* in Volterra⁴⁶⁾.

Therefore, if all the documents mentioned so far allow us to observe the development of the *studium* of Volterra during the 14th century, what can we say about the functioning of this school? What tools for study and teaching were at its disposal?

III. The Library of S. Giusto (1284 and 1315): an instrument of knowledge and teaching? A look at some Tuscan monastic and non-monastic libraries from the 14th and 15th centuries

A further aspect that makes S. Giusto important as a case study is the fact that we have two inventories of its library, drawn up between the end of the 13th and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⁴⁷⁾. Inventories like these make it possible to reconstruct not only the material consistency

46) ASFi, Fondo Camaldoli Appendice, *Registrum generalis 15*, cc. 132v-133r.

47) Both the inventories of 1284 and 1315 have been edited by Andrea Puglia in A.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nel Medioevo*, in *Laboratorio Universitario Volterrano*, Quaderno XVI (2012-2013), Tipografia di Agnano, 2013, pp. 78-80. On the importance of inventories, and on the necessary precautions, for the study of medieval libraries see B. M. Olsen, *Le biblioteche del XII secolo negli inventari dell'epoca*, in G. Cavallo (edited by), *Le biblioteche nel mondo antico e medievale*, Roma-Bari, Editori Laterza, 2008, pp. 137-162.

of the library and the circulation of books, but also the *milieu* and cultural addresses of the religious institution⁴⁸⁾.

While bearing in mind the dispersion and loss of books due to events such as the Florentine sack of Volterra in 1472⁴⁹⁾, it is possible to get a fairly complete idea of the library.

Both inventories have been compiled by the notary Bartolomeo within a larger list of all properties owned by the monastery. The first one, dated 1284, collects 82 texts in 63 *items*⁵⁰⁾. The liturgical books alone make up 54% of the entire collection, followed by 7/8 psalters and 2 manuals for the education of monks. Among the authors, we find works by the Doctors of the Church (Augustine, Ambrose, Gregory the Great), the *Diadema monachorum*, texts of penitential nature, examples of the Rule of St. Benedict, of St. Augustine and the *Regula monachorum* by St. Isidore from Seville, the *Vitae Patrum, Summae* on virtues and deadly sins and the *Summa Abel* by Peter Cantor. The impression one gets from this inventory is of a classic monastic library of a liturgical and edifying nature⁵¹⁾.

The inventory of 1315, however, marks some important changes: although listing 53 books and 73 texts, starting again with those of a liturgical nature, the library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the first of which is of a general nature and a second one, of approximately 20

48)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 72.

49)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ibidem.

50)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 73. I chose the word text referring to the bibliographic units and the word *book/item* for the codicological units: in fact, often the same book could have a miscellaneous character and contain several texts within it.

51)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p. 73 and 78-79.

books, is instead kept in the abbot's room for his personal use. In the first we find the same authors mentioned above, in the second section we find works for preaching, like the sermons of Giordano da Pisa and the *Breviloquia* by Bonaventura da Bagnoregio, classical authors like Boethius and, above all, texts of grammatical nature, like the *Summae dictaminis* by Guido Faba and Bene da Firenze. The loan of a psalter from the convent of S. Agostino is mentioned, attesting to a circulation of texts within Volterra between different religious institutes⁵²⁾.

The entry of new authors in 1315, and the broadening of cultural horizons implied by texts relating to preaching and grammar, represents further proofs of the cracking of traditional knowledge proposed by Camaldoli until then. The presence of *summae dictaminis* is undoubtedly striking, all the more considering the birth in those same years of the first teaching activity within the monastery of Volterra. However, what the two inventories describe is still a traditional monastic library, which seems unlikely to constitute a valid teaching tool for the *studium*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decades.

Looking at the library of the Hermitage of Camaldoli, as it is described in the inventory of 1406, we can trace similarities in the typology of texts and authors with those of S. Giusto⁵³⁾.

Composed of about 305 books, preserved in a special room above the sacristy, we find within a large liturgical component (missals, antiphonaries, *Processionalia*, *Cantatoria*, *Epistolaria*, *Breviaria*, *Manualia*, psalters, collection of hymns etc.), where Bibles and biblical commentaries

52)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p. 73-74 and 79-80.

53) The inventory is edited in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139-259.

(including that of Bede the Venerable on Gospels of Mark and Luke)⁵⁴⁾ represent 30% of the entire library and reach 50% if lectionaries and homilies are added⁵⁵⁾. The inventory then continues with a large collection of homilies by the most varied authors (Bruno di Segni, Origen, Bede, St. Jerome, St. Isidore, Haimo and Remigius of Auxerre, Berengaud, the pseudo-Hugh of St. Victor, St. Augustine, the pseudo-John Crysostom, St. Ambrose and many others)⁵⁶⁾ and 4 exemplars of the *Moralia* by Gregor the Great, together with his commentary on Ezekiel⁵⁷⁾. The library also contains a nucleus of law texts, rather meager and more of a practical nature: the *Decretum* of Gratian, the papal Decretals, the collections of Burkhard of Worms, the *Polycarpus* and the *Verbum Abbreviatum* by Peter Cantor⁵⁸⁾. The collection of *Summae* ranges from themes such as penance, vices, those of an apologetic and theological nature (like the works of Bartolomeo di S. Concordio, Raymund of Penyafort, Goffredo da Trani and the *Polycraticus* by John of Salisbury)⁵⁹⁾. The presence of *libri sententiarum* is rather scarce, among which we find the works of Egidio Romano, Pietro Lombardo and St. Isidore⁶⁰⁾. The *Rule* of St. Benedict is present in several copies, together with the commentary by Paul the Deacon, the *Regula heremitica* by Pier Damiani and the *Constitutions* of Camaldoli. The inventory also

54)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337-338.

55)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326.

56)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339-340.

57)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328-329.

58)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368-369.

59)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p. 373 and 381-382.

60) Cataluccio, Fossa, *Biblioteca e cultura a Camaldoli*, cit., p. 380.

lists numerous works by St. Augustine, together with St. Bernard, and a text dear to the monastic tradition such as the *Diadema monachorum*; the presence of a specimen of the *Legenda maior sancti Francisci* by Bonventura da Bagnoregio is striking. There is little interest in works of theological nature.

A subdivision similar to that found in the library of S. Giusto emerges from the inventory of the Camaldolese monastery of S. Zeno in Pisa (1386), which had also been chosen in 1338 as one of the seats of the schools of the congregation. The inventory enumerates just under 40 books⁶¹⁾. Almost all of them were kept in the sacristy, with the exception of a Bible, the Camaldolese rule and the *Concordantia Evangeliorum*, which the abbot kept at his disposal in his room⁶²⁾. The list includes mainly biblical and patristic texts, typical of any monastic library: the Bible, biblical commentaries by St. Augustine and St. Jerome, the *Regula sancti Benedicti*, 2 books of *Gesta* and *Passiones sanctorum*, a numerous collection of sermons, homilies and liturgical texts—which form the main part of the library. In addition S. Zeno housed works by Gregory the Great (*Moralia* and the *Canticum*), John Cassian (*Conlationes Patrum*), St. Isidore (*Synonimorum sive soliloquiorum libri duo*) and Origen⁶³⁾.

Other monastic libraries, such as that of the Benedictine monastery of S. Gorgonio on the island of Gorgona and its Pisan dependency of S. Vito (described in an inventory in 1379,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61) The inventory is edited in E. Virgili, *L'inventario dell'Abbazia di San Zeno di Pisa (1386)*, in *Bollettino Storico Pisano*, LIV (1985), Pisa, Pacini Editore, pp. 123-129.

62) Virgili, *L'inventario dell'Abbazia di San Zeno*, cit., p. 120.

63) Virgili, *L'inventario dell'Abbazia di San Zeno*, cit., pp. 120-122.

Carthusian order, which enumerates 134 *items* or books)⁶⁴, show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presented so far: a pre-eminence of liturgical texts, collections of sermons and homilies, biblical and evangelical commentaries, the *Diadema monachorum*, the *Rule* of St. Benedict, the *Vitae Patrum*, texts of ecclesiastical history and of the Doctors of the Church. Particularly interesting is the presence of a music book and a couple of medical texts (one of which by Galen), the *Liber sententiarum* by Pietro Lombardo and the *Breviloquia* by Bonaventura. The *Summae* sector, usually well represented in the Camaldolese inventories, is here limited to two examples of the *Summa* of Raymond of Penyafort and that of Hugh of St. Victor ; the theological texts are here limited to two copies only.

After looking at the libraries of S. Giusto and other Camaldolese and Benedictine monasteries, the time has finally come to turn to the inventories of other religious institutes in Volterra, in particular the Olivetan monastery of S. Andrea (1382)⁶⁵ and the sacristy of the city cathedral (1417)⁶⁶, and to draw the final conclusions.

The inventory of S. Andrea lists 97 books, to which must be added some works of logic and rhetoric. The library is divided into 7 sections, with the majority represented by liturgical, patristic and devotional texts, Bibles and grammar books: among the latter, several miscellaneous works of ancient grammarians stand out, an element that has led to

64) Edited in G. Murano, *I manoscritti del fondo Certosa di Calci nella 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di Firenze*, Florence, Edizioni Regione Toscana, 1996, in particular at pp. 45-54.

65)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p. 74-76.

66)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p. 76-77 and 80-81.

suppose that S. Andrea represented a fundamental support for the grammar school in S. Giusto⁶⁷⁾.

The inventory of the sacristy of the cathedral of Volterra was drafted in 1417, enumerating about 80 *items* and 95 texts. As in the case of the Camaldolese monasteries, the books were the object of particular care as regards their conservation: the rules on the subject would in fact be reaffirmed a few years later by bishop Stefano da Prato, on the occasion of the pastoral visit of all the churches in the diocese of Volterra (1421-1423)⁶⁸⁾. Again, the majority of the books' *corpus* consists of liturgical texts, together with pontificals, calendars and *ordines*. Biblical commentaries, collections of sermons and homilies served as study material and preaching aids for the resident canons and the bishop himself.

IV. Conclusions.

In conclusion, the library of S. Giusto, as we could see through its inventories, did not differ broadly from those of other religious institutes in Volterra (S. Andrea, the cathedral) nor from those of other Camaldolese monasteries. If from a quantitative point of view it was in fact average, the authors and texts contained therein were also in line with those available in the libraries of Camaldoli itself, S. Zeno and even in that of

67) Puglia, *Le infrastrutture della cultura a Volterra*, cit., p. 76.

68) J. Paganelli (edited by), *La visita pastorale di Stefano da Prato, 2 (1421-1423)*, Volterra, Accademia dei Sepolti, 2023, p. 25: An custos ecclesie ceterique ecclesiarum rectores teneant bona sacrestie, calices, cruces sanctorum, reliquias, paramenta, libros et alia ecclesiastica ornamenta reverenter, munde et honesto loco prout convenit unicuique rerum

S. Gorgonio.

These are provisional conclusions and linked to the occasional nature of the sources in our possession. What is certain is that the process of openness towards the university culture that seems to characterize the Camaldolese congregation betwee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had an all in all a limited impact on the book collections listed in the inventories.

The Camaldolese libraries at the end of 14th century seem to remain rather anchored to the model of a functional collection for carrying out the liturgical life and for the spiritual edification of the monks: instruments of liturgical aid rather than a support to teaching and study. An aspect all the more evident if also the libraries of monasteries (S. Giusto, S. Zeno) that housed schools within followed this model. It must therefore be assumed that for the teaching activity there were alternative ways of accessing the texts (sharing, loan between monasteries and monks), which the inventories have not recorded. Or, more simply, that these books constituted a *corpus* distinct from the library, perhaps at the direct disposal of the monks and professors and not officially registred.

What changes is the attention that the congregation of Camaldoli pays to keeping these *studia* alive, as the case of S. Giusto clearly demonstrates. The transfer of monks that animates this policy, as it go beyond the Benedictine *stabilitas* loci, constitutes a further step forward.

Finally, it is evident how retracing the events of a single monastery has made it possible to draw a broader overview of macroscopic phenomena through the study of published and unpublished documentation and a comparative approach.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and room for further research.

Abstract

Studia and Monastic Itinerancy. The case of S. Giusto in Volterra after the Black Plague

Andrea Barsacchi*

The attitude towards culture and teaching in the Camaldolese order changed deeply during the 13th and 14th century thanks to the new Universities and their cultural suggestions. This process slowly led to the overcoming of the traditional hermitic *sapientia* and to the creation of a system of schools (*studia*) within some monasteries of the Order: San Giusto in Volterra was one of those chosen to establish a grammar teaching in 1338.

The paper looks at the policy of the Camaldoli's prior general to repopulate the monastery of Volterra and to revitalize its school after the Black Plague by sending there new students and novices between 1355 and 1372. The last part is a short overview of the S. Giusto library compared to some others monastic libraries between 14th and 15th century seen through their books' inventories, like those of Camaldoli's Hermitage and of the Camaldulese monastery of S. Zeno (Pisa), of the Benedictine monastery of S. Gorgonio (Gorgona island, near Pisa) and in Volterra itself the libraries of the S. Andrea monastery and of the sacristy of the city cathedral.

Key word : Middle Ages, Volterra, Camaldolese Order, Monastic School, Library

논문 투고일: 2023. 11. 15 심사 완료일: 2023. 12. 04 게재 확정일: 2023. 12. 05

* University of Pisa

- 후보

1. 주요 연혁

2023. 09. 22. : 2023년 한국서원학회 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과 조선후기 영남공론(嶺南公論)>

2023. 11. 09~10 : 제10회 <동아시아 서원과 유학> 국제학술회의

2. 활동

■2023년 한국서원학회 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과 조선후기 영남공론(嶺南公論)>(2023. 09. 22)

기조강연 퇴계학맥(退溪學脈)의 전개와 호계강회(虎溪講會)(권오영,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① 호계서원 건립기 영남학파의 학문적 지형과 판도
- 예안 도산서원 사림과의 경제적 공조관계를 중심으로 -
(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17세기 정치상황과 호계서원의 공론 형성(이근호, 충남대학교)

발표 ③ 18세기 정국 동향과 호계서원의 공론 주도(이육, 순천대학교)

발표 ④ 19세기 후반 국내의 정세변화와 영남유림의 대응
- 호계서원을 중심으로 - (김지은, 경북대학교)

발표 ⑤ 한국근대 안동인의 항일투쟁과 호계서원(강윤정, 안동대학교)

■제10회 <동아시아 서원과 유학> 국제학술회의(2023. 11. 09~10)

발표 ① 한국 서원(書院)의 인문성(人文性)과 서양 중세 수도원(修道院)과의 비교연구의 가능성(김학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 ② 한국 서원(書院) 경관(景觀)의 고유성(固有性)과 진정성(真正性)
- 중국과 한국 서원의 위치(位置)·경관(景觀)을 비교(比較)하는 관점(觀點)에서 - (김덕현, 경상국립대학교)

발표 ③ 조선 후기 서원의 강학과 학파(정재훈, 경북대학교)

발표 ④ 도동서원의 학술활동과 학파 (김정운, 경북대학교)

발표 ⑤ 조선후기 화양서원(華陽書院)의 건립과 『화양지(華陽誌)』의 편찬
(임근실, 단국대학교)

발표 ⑥ 선조·광해군대 허균(許筠)의 명인(明人) 접촉과 대외 활동
(리샤오칭, 경북대학교)

3.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1) 9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일시: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안건

- (1) 주요 행사 일정 확인
- (2) 2023년 한국서원학회 기획학술회의 <호계서원과 조선후기 영남공론
(嶺南公論)> 상황 점검
- (3) 한국서원학보 제17호 원고 모집 공고(안) 논의

2) 11월 임원회의 및 편집회의

-일시: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17~19시

-장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4호

-안건

- (1) 제10회 <동아시아 서원과 유학> 국제학술회의 상황 점검
- (2) 한국서원학보 제17호 투고 논문 확보 방안 논의

회 칙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 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1. 연구논문 발표회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5. 학회지 발간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 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12.15.〉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이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 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 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 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 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7.01.20.〉
2. 부회장(1인):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2인): 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4. 삭제 〈2017.01.20.〉
5. 이사(20인 이내):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 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 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2. 삭제 <2017.01.20.>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 19조 삭제 <2017.01.20.>

제 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 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22조(기능)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 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 <개정 2018.12.25.>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

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 (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

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 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 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 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 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 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 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 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01.20.>

제 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

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20.>

제 37조(기금의 조성¹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편집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의 학회지인 『韓國書院學報』(이하 ‘학보’라 약칭함)의 편집 및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학보는 서원 연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① 연구논문
- ② 비평논문(說林, 論壇 등을 포함)
- ③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부합되는 글

제3조(인쇄 및 발행)

학보는 년2회 정기적으로 간행한다.

- ① 인쇄일은 6월 23일, 12월 23일로 한다.
- ② 발행일은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4조(투고 제한)

학보에는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주저자가 회원이어야 하며, 공동저자가 특수 관계인[미성년자·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 친인척)]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만 투고를 인정한다. <개정 2021.3.15.>

제5조(논문 심사)

-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원고작성규정의 준수유무, 학회지 성격에 부합 여부를 우선 심의한 후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별도의 전문 학자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8.12.15.>
-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위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편집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같은 소속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 ③ 심사과정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6조(논문 심사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가 (A), 수정후 게재(B), 재심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②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일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A,A) (A,A,B):게재
 (A,B,B) (B,B,B):수정 후 게재
 (A,A,C) (A,A,D) (A,B,C) (A,B,D):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A,C,C) (B,B,C) (A,C,D) (B,C,C) (B,B,D) (C,C,C):수정후 재심사
 (A,D,D) (B,C,D) (B,D,D) (C,C,D) (C,D,D) (D,D,D):게재불가

- ⑤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고의 기한)

원고의 투고와 논문게재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① 원고의 투고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 ②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에 한해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인쇄일(6월 23일, 12월 2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청구)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심사료와 게재료를 청구한다. <개정 2018.12.15.>

제9조(지적재산권)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의거하여 《한국서원학보》에 수록된 원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학회에 귀속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이 편집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7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편집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학술지 『韓國書院學報』에 게재하는 논문의 투고와 작성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종류)

논문은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으로 나뉘며,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된다.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기획하여 특정 연구자에게 집필을 위촉한 논문을 가리킨다. 일반투고논문은 기획과 무관한 개별적 자유투고 논문을 가리킨다.

제3조(원고의 분량)

논문은 편집된 논문집 기준으로 35쪽(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 쪽수는 본문, 각주, 도표, 그림,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35쪽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게재료(원고지 5매당 10,000원)를 부과한다.

제4조(원고의 조건)

- ① 논문은 기준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 ② 국문으로 논문 제목, 저자 성명 및 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5개 내외),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 초록, 외국어 주제어(5개 내외) 순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 ③ 우리 학회의 특성상 본문은 외국어(중문, 일문, 영문)로 작성이 가능하다. 단 중문·일문 논문의 경우 초록은 한글과 영문의 2종을 제출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에도 한글과 영문 초록을 제출한다. 한글 논문의 외국어 초록은 英文을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회의 특성상 中文·日文 투고도 인정한다. 단 중문·일문으로 투고시에는 영문으로 제목, 필자명, 주제어를 병기해야 한다.
- ④ <원고작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투고 기한)

논문집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 2회 발간한다. 논문의 투고 기한은 발행 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며, 논문의 게재는 발행일 1개월 전에 심사가 완료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들 기한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될 수 있다.

제6조(원고의 투고 제한)

- ① 회원만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③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향후 투고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료와 게재료 납부)

- ①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논문은 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비를 요청하며, 심사료를 납부한 논문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18. 12.15>
-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책정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8.12.15>

- ③ 심사료와 게재료는 한국서원학회 개설 계좌로 납부한다.

제8조(논문 작성)

논문은 ‘한글과컴퓨터 워드프로그램[한글 2002이상, *.HWP]’ 또는 그것과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제9조(원고 투고)

투고하는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원고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규정을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반려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한국서원학회 홈페이지(www.ksw2007.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털에서 ‘한국서원학회’ 검색]
- ②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위에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논문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한다 (접수 : ksw2007@ksw2007.or.kr).
- ③ 논문 투고시 홈페이지에서 <논문접수신청서>와 <저작권이용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 ④ 투고자는 해당 논문을 <KCI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내지 기타표절프로그램에서 검사를 마친 후 결과서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원고의 저작권 이양 동의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

논문 투고자는 우리 학회에서 정한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를 읽고, 투고자의 논문이 《韓國書院學報》에 게재됨과 동시에 투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한국서원학회’ 이양함을 동의하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별도의 서명이 없더라도 논문 투고시 동의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논문접수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투고 시스템이나학회 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저작권 이양 동의서의 내용 및 단서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8.12.15>

1)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

- ① 논문의 내용으로 기술된 특허, 등록상표, 독창적인 신기술, 연구 기법 및 응용에 관한 권리 및 기타 법으로 보장된 권리.
- ② 저자가 저자의 논문을 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거나 저자의 취직, 진급,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작성, 연구 결과의 비수익성 광고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사, 복제 및 인쇄를 할 권리.
- ③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실이 논문에 표시된 단체, 저자의 개인 WEB SITE에 논문의 전문 혹은 일부를 게재하고 배포할 권리.
- ④ 저자가 교과서 등 서적과 종설의 기술, 저자에 의한 강의, 연구발표 및 워크숍 등을 위한 교재 제작을 위하여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권리.

2) 저작권 이양 후에 저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서

- ① 위에 허락된 목적으로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이 한국서원학회에 속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단, I(1)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3) 저작권의 소유 및 서명에 대한 단서

- ① 저자 중 1인(논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저자)이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본 저작권이양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② 게재논문의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저자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 회사, 연구소 혹은 단체에 속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는 해당 단체의 저작권 담당자가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③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및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혹은 단체가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④ 본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본 논문이 학술대회에서의 초록을 제외한 다른 형태로 발간되지 않았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서약 한다.
- ⑤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경우라도 학회지 게재 이후에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회지에 발간된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할 수 없다.
- ⑥ 상기인(들)은 저작권 이양동의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⑦ 본 저작권이양동의서 파일을 작성하여 한국서원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으로 서명을 대신한다.

4) 온라인 투고시 시스템 상에서의 <저작권 이용 동의>에 서명하면,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1.3.15>

5) 공동논문의 경우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경우 반드시 <논문접수신청서>에 주저자와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 메일이나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접수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11조(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 배제 요청)

논문 투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를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개정 2021.3.15>

- ① 논문 투고자는 특정인물에 대한 심사자 배제 요청시 그 사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논문 투고시 학회 메일로 제출한다. 단, 사유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요청인의 성명, 소속 및 배제자의 성명, 소속을 명기하고,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 인물의 배제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접수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3자를 논문 심사자로 선정한다.

부 칙

-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논문투고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원고작성 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I. 1. 1) (1) / II. 1. 1) (1) / III. 1. 1) (1) / IV.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IV.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저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 「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

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曹植 『南冥集』 卷2, 〈遊瑣流錄〉, “新雨水肥, 激石瀆碎 ….”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심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¹⁾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²⁾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 2007, 41~42쪽.

정만조, 앞의 책, 2012, 22쪽.

이수환, 앞의 논문, 2015, 17쪽.

정순우, 앞의 논문, 2013a, 213쪽.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 「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 『한국서원학보』 1, 한국서원학회, 2011, 17쪽.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150~153쪽.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개정 2018.12.15>

부 칙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1년 11월 01일 제정

2017년 0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2021년 03월 1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서원학회 관련 연구물을 간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이 규정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

제1조(목적)와 제2조(기능)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에서 10명 내외로 편집위원장 이 구성한다. 단, 편집위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개정 2018.12.15.>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부재시에는 편집위원과 연구이사 중 위원장이 위임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8.12.15.>

제4조(표절 및 중복게재)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본문이나 주 등에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표절’로 간주한다.
- ② 이미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연구내용을 침삭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중복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 ③ 주저자는 논문 투고시 공동저자와의 관계와 논문에서의 역할, 기여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보고·신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공동저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자녀·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족의 경우 19세를 초과한 성인이며, 연구에 대한 기여도가 30% 이상일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저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5조(심의 및 판정)

- ①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논문표절시스템(KCI 문헌유사도 검사서비스 등)으로 검증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개정 2018.12.15.>
- ② 표절 및 중복게재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논문의 심의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한다. <개정 2021.3.15.>

제6조(제재조치)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행한다.

- ① 해당 논문 투고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투고를 금지하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 ② 해당 논문이 이미 학보에 게재된 경우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7조(공고)

표절 및 중복게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한국서원학회 회보에 공지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 및 이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1.3.15.>

제8조(소명기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제9조(기타)

제4조에 해당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 외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고의로 자료나 통계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 ② 학회 명의를 도용하여 연구사업이나 출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표절 및 중복게재’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윤리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기 임원명단(2022.3~2024.2)

고 문	: 정만조, 이해준, 정순우, 이수환
회 장	: 김학수(한중연)
부 회 장	: 이근호(충남대)
총무이사	: 정수환(한중연)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재무이사	: 윤혜민(건국대)
연구이사	: 조영화(교남문화유산원), 김종석(한국국학진흥원),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 김경옥(목포대), 정우락(경북대), 손수경(부산가톨릭대), 김대식(경인교육대), 권오영(한국학중앙연구원), 최석기(경상대), 배창현(울산대), 임근실(단국대), 이창일(한국학중앙연구원), 신채용(국민대), 이치영(공주대),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강문식(송실대), 백광렬(서울대), 신정수(한국학중앙연구원), 이민주(한국학중앙연구원), 김연수(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이사	: 이병훈(영남대), 김지운(공주대), 임근실(단국대)
출판이사	: 이우진(공주교대), 채광수(영남대)
지역이사	: 경기·강원 이왕무(경기대), 김수경(상지대) / 전라·제주 김봉근(원광대), 박정민(전북대) / 경상 정재훈(경북대), 이남옥(한국국학진흥원) / 충청 김의환(충북대), 이상균(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보이사	: 김순한(영남대)
총무간사	: 권지은(한중연)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 이근호(역사, 충남대)
편집위원	: 등흥파(역사, 중국 호남대), 정수환(역사, 한중연), 정우락(문학, 경북대), 한형조(철학, 한중연), 조준호(역사, 경기도박물관), 정재훈(역사, 경북대), 어강석(문학, 충북대), 이치영(철학, 공주대), 김지운(교육사, 공주대), 김봉근(역사, 원광대)
편집이사	: 김정운(경북대)
편집간사	: 이자영(한중연)

중신회원(2006~2023)

강대걸, 권오영, 김덕현, 김문택, 김순한, 김정자, 김의환, 김자운, 김학수, 박종배,
안상천, 이병갑, 이병훈, 이상해, 이수환, 이우진, 이해준, 정만조, 정수환, 정순우,
조준호

韓國書院學報 제17호

값 15,000원

인쇄일 2023년 12월 23일
발행일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학수
발행처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형관 301호
전화 031-730-8840
이메일 ksw2007@ksw2007.or.kr
홈페이지 www.ksw2007.or.kr
학회비 종신회원(60만원), 일반회원(3만원)
기관회원(5만원), 외국회비(\$50)
회비납부계좌: 김학수(한국서원학회)
KB국민은행 673601-04-074420
제작 도서출판 온샘(02-6338-1608)

ISSN 2234-8603